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Ⅰ.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1.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지표 결산 ····· 3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11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 25

Ⅱ. 2025회계연도 결산 총평

1. 2025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 ····· 29
2.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33
3. 연말 국고금 부족에 따른 이월·불용 문제 ····· 40
4. 4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검토 ····· 46
5. 재정제도 개선과제 ····· 62

Ⅲ. 재정 총괄 검토

1. 재정 수입 ····· 73
2. 재정 지출 ····· 109
3. 국가결산체계 개편 ····· 141
4. 예비비 결산 ····· 166

5.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 ····· 183
6. 추가경정예산 집행 점검 ·····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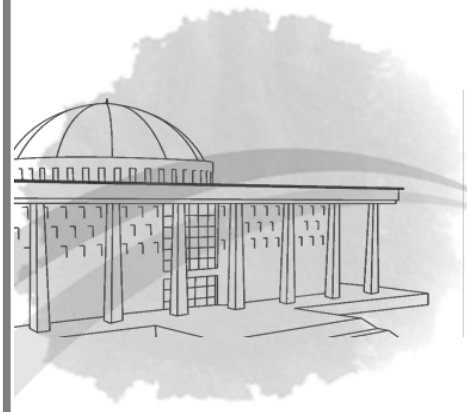
Ⅳ. 유형별 검토

1. 공공기관 결산 ····· 253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316
3. 성과관리제도 ····· 347
4. 국가 R&D 사업 ····· 380
5.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 444
6. 정보화 사업 ····· 470
7. 국고보조사업 ····· 503

Ⅴ. 정책별 검토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551
2. 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 599
3. 지방공동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 분석 ····· 621
4. 재정 외 자금 ····· 668
5. 정책펀드 사업 ····· 725
6.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 ····· 775
7. AI 지원 사업 ····· 815

Ⅰ.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1.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지표 결산

가. 총수입 및 총지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수입은 637.4조원으로 예산 642.4조원 대비 5.0조원(△0.8%) 미달되었으나 전년 대비 42.9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37.4조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

총지출은 684.1조원으로 예산 703.3조원 대비 19.1조원(△2.7%) 미달되었고, 전년 대비 46.1조원 증가하였음.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가로 전년대비 총지출은 증가했으나, 기금지출 감소 등으로 예산 대비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음.[1)]

[2025회계연도 총수입 및 총지출 결산]

(단위 : 조원)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대비 (C-B)	
Ⅰ. 총수입[1)]	594.5	642.4	637.4	△5.0	42.9
1. 국 세	336.5	372.1	373.9	1.8	37.4
2. 세외수입	29.6	37.6	32.1	△5.5	2.5
3. 기 금	228.2	232.8	231.3	△1.5	3.1
※ 세입예산외[2)]	0.1	-	0.1	0.1	△0.0
Ⅱ. 총지출[1)]	638.0	703.3	684.1	△19.1	46.1
1. 일반회계	344.5	383.5	379.4	△4.1	34.9
2. 특별회계	78.6	83.8	82.9	△0.9	4.3
3. 기 금	214.5	235.9	221.7	△14.3	7.2
※ 세출예산외[3)]	0.4	-	0.2	0.2	△0.3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도 제외됨
2)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3)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자료: 재정경제부

문의: 02-6788-5684, 02-6788-5701

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4.6.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73.92조원으로 예산 372.09조원 대비 1.83조원(0.5%) 초과되었고, 전년도 실적 336.53조원 대비 37.37조원(11.1%) 증가하였음.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61.49조원으로 예산 361.46조원 대비 0.03조원(0.0%),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2.43조원으로 예산 10.62조원 대비 1.80조원(14.5%) 각각 초과 수납되었음.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30.45조원으로 예산 126.82조원 대비 3.63조원(2.8%) 초과 수납(전년대비 13.03조원, 11.1%)되었고, 법인세는 84.61조원으로 예산 83.57조원 대비 1.04조원(1.2%) 초과 수납(전년 대비 22.1조원, 35.4%)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79.18조원으로 예산 83.33조원 대비 4.15조원(△5.0%) 적게 수납(전년 대비 △3.1조원, △3.7%)되었음.

2024년과 달리 2025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2)]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세수입 합계	336.53	372.09	373.92	1.83	37.39
○ 일반회계	326.18	361.46	361.49	0.03	35.31
- 내국세	298.26	329.15	330.24	1.09	31.98
· 소득세	117.42	126.82	130.45	3.63	13.03
· 법인세	62.51	83.57	84.61	1.04	22.10
· 상속증여세	15.30	15.44	16.48	1.04	1.18
· 부가가치세	82.24	83.33	79.18	△4.15	△3.06
· 개별소비세	8.66	8.75	8.51	△0.23	△0.14
· 증권거래세	4.76	3.85	3.44	△0.40	△1.32
· 인지세	0.85	0.88	0.76	△0.12	△0.08
· 과년도수입	6.53	6.52	6.80	0.28	0.27
- 교통·에너지·환경세	11.39	14.00	13.24	△0.77	1.85
- 관세	6.97	8.41	7.64	△0.77	0.67
- 교육세	5.37	5.78	5.72	△0.05	0.35
- 종합부동산세	4.18	4.12	4.65	0.53	0.47
- 방위세	0.00	-	0.00	0.00	-
○특별회계	10.35	10.62	12.43	1.80	2.07
- 주세	3.33	3.21	3.21	0.00	△0.12
- 농특세	7.02	7.42	9.21	1.80	2.19

자료: 재정경제부

2)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5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2026.2.10.

2025회계연도 세외수입 실적은 32.1조원으로 예산 37.6조원 대비 5.5조원(△14.6%) 미달(전년 대비 2.5조원, 8.4%)되었으며, 이는 주로 관유물매각대가 예산 대비 △4.6조원, 경상이전수입이 예산 대비 △1.3조원 각각 미달된 것에 기인함.

기금수입 실적은 231.3조원으로 당초 계획액 232.8조원 대비 1.5조원(△0.6%)이 미달(전년 대비 3.1조원, 1.4%)되었으며, 이는 주로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가 당초 계획보다 △8.2조원 미달된 것에 기인함.

[2025회계연도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실적(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 세외수입	29.6	37.6	32.1	△5.5	2.5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8.2	8.1	8.1	0.0	△0.1
- 재산수입	4.1	7.6	8.4	0.9	4.3
- 경상이전수입	12.5	12.7	11.4	△1.3	△1.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6	2.8	2.6	△0.2	0.1
- 수입대체경비수입	0.3	0.2	0.3	0.0	△0.0
- 관유물매각대	1.2	5.3	0.7	△4.6	△0.5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0.8	0.8	0.6	△0.2	△0.2
■ 기금수입	228.2	232.8	231.3	△1.5	3.1
- 사회보장기여금	92.8	96.5	95.9	△0.6	3.1
- 재산수입	52.8	45.7	54.9	9.1	2.0
- 경상이전수입	40.5	39.6	38.3	△1.3	△2.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1	10.9	10.8	△0.1	△24.2
- 수입대체경비수입	0.0	0.0	0.0	△0.0	0.0
- 관유물매각대	2.8	3.0	2.6	△0.4	△0.2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2	37.1	28.8	△8.2	△0.4
□ 합 계	257.8	270.4	263.4	△7.0	5.6

주) 2025년 기금수입의 예산은 당초계획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12대 분야별 결산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은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01.5%로 가장 높고, 이어 공공질서・안전(100.8%), 교육(100.6%), 일반・지방행정(10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99.2%), R&D(99.0%) 순이었으며, 외교・통일분야가 89.0%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12대 분야별 지출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일반・지방행정 분야(19.5조원, 18.0%), 보건・복지・고용 분야(15.6조원, 6.5%), 교육 분야(11.5조원, 13.5%)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음.

[2025회계연도 12대 분야별 지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예산 (B)	결 산 (C)	집행률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 보건·복지·고용	239.9	251.7	255.5	101.5	15.6	6.5
○ 교육	85.3	96.2	96.8	100.6	11.5	13.5
○ 문화·체육·관광	8.5	8.9	8.8	98.9	0.3	3.5
○ 환경	11.2	12.9	12.1	93.8	0.9	8.0
○ R&D	26	29.7	29.4	99.0	3.4	13.1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7.9	35.3	35.0	99.2	7.1	25.4
○ SOC	25.3	26.0	25.3	97.3	0	0.0
○ 농림·수산·식품	24.5	28.2	27.2	96.5	2.7	11.0
○ 국방	58.6	61.3	59.4	96.9	0.8	1.4
○ 외교·통일	6.4	7.3	6.5	89.0	0.1	1.6
○ 공공질서·안전	24.3	25.8	26.0	100.8	1.7	7.0
○ 일반·지방행정	108.3	127.2	127.8	100.5	19.5	18.0

주) 세입세출예산외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지출의 성질별 지출실적을 보면, 예산외지출을 제외하고 이전지출(11.7%), 상환지출(9.6%), 인건비(4.4%), 예비비 및 기타(1.0%) 항목의 전년 대비 지출액은 증가한 반면, 자산취득(△11.0%), 물건비(△1.0%)는 전년 대비 지출액이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성질별 지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예산 (B)	결산 (C)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 총지출	638.0	703.3	684.1	97.3	46.1	7.2
○ 인건비	47.9	50.6	50.0	98.8	2.1	4.4
○ 물건비	31.2	31.4	30.9	98.4	△0.3	△1.0
○ 이전지출	440.6	490.7	492.3	100.3	51.7	11.7
○ 자산취득	88.2	96.5	78.5	81.3	△9.7	△11.0
○ 상환지출	28.4	29.8	31.1	104.3	2.7	9.6
○ 전출금등	-	-	-	-	-	-
○ 예비비 및 기타	1.2	4.3	1.2	28.4	-	1.0
○ 예산외지출	0.4	-	0.2	-	△0.2	△61.9

자료: 재정경제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5년 의무지출 결산은 368.5조원으로 예산 364.8조원 대비 101.0%가 집행되었고, 이는 전년보다 26.0조원(7.6%) 증가한 것임.

또한 2025년 재량지출 결산은 315.6조원으로 예산 338.4조원 대비 93.3%가 집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20.1조원(6.8%)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24			2025			전년 대비	
	예산	결산 (A)	(C/B)	예산 (B)	결산 (C)	(C/B)	증감액 (D=C-A)	비율 (D/A)
□ 총지출	656.6	638.0	97.2	703.3	684.1	97.3	46.1	7.2
○ 의무지출	347.4	342.5	98.6	364.8	368.5	101.0	26.0	7.6
(비 중)	(52.9)	(53.7)	101.5	(51.9)	(53.9)	103.8	0.2	0.4
○ 재량지출	309.2	295.5	95.6	338.4	315.6	93.3	20.1	6.8
(비 중)	(47.1)	(46.3)	98.3	(48.1)	(46.1)	95.9	△0.2	△0.4

주) 결산치 세출 외 항목으로 의무·재량 총합과 총지출 간 차이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6.7조원 적자(GDP 대비 △1.7%)로, 적자 규모는 예산 대비 14.2조원 개선되었고, 전년 대비 △3.2조원 악화되었음.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7.5조원 흑자(GDP 대비 2.1%)를 기록하였으며, 흑자 규모는 예산 대비 6.8조원 증가하고, 전년 대비 △3.7조원 감소하였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GDP 대비 △3.9%)로, 적자 규모는 예산 대비 7.4조원, 전년 대비 0.5조원 각각 개선되었음.

[2025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Ⅰ. 통합재정수지	△43.5	△60.8	△46.7	14.2	△3.2
(GDP 대비)	(△1.7)	(△2.3)	(△1.7)	(0.5)	(△0.0)
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1.2	50.8	57.5	6.8	△3.7
(GDP 대비)	(2.4)	(1.9)	(2.1)	(0.2)	(△0.2)
Ⅲ. 관리재정수지	△104.8	△111.6	△104.2	7.4	0.5
(GDP 대비)	(△4.1)	(△4.2)	(△3.9)	(0.3)	(0.2)

자료: 기획예산처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0.4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1.2조원 악화된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56.2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2.8조원 악화되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0.1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0.4조원 개선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1.0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0.2조원 악화되었음.

[2025회계연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4 결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 합 계	61.2	50.8	57.5	6.8	△3.7
○ 고용보험기금	1.5	2.2	0.4	△1.8	△1.2
○ 국민연금기금	59.0	46.5	56.2	9.7	△2.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0.6	0.9	△0.1	△1.1	0.4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3	1.1	1.0	△0.1	△0.2

자료: 기획예산처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1,304.5조원으로 GDP 대비 48.7%를 기록하였음. 이는 예산기준 전망치보다 31.2조원 증가하고 전년 대비로는 129.4조원 증가한 것임.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채무는 1,268.1조원으로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29.5조원 증가하고 전년 대비 127.0조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 중에서 국고채권이 전년 대비 113.5조원 증가하였음. 지방정부 순채무는 잠정적으로 36.4조원으로 전망되어 예산 대비 1.7조원 증가하고 전년 대비 2.5조원 증가할 전망임.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잠정)	1,175.0	1,273.3	1,304.5	31.2	129.4
(GDP 대비, %)	(45.8)	(48.1)	(48.7)	(0.6)	(2.9)
○ 중앙정부 채무(A)	1,141.2	1,238.7	1,268.1	29.5	127.0
■ 국 채	1,139.8	1,237.0	1,266.5	29.5	126.7
- 국고채권	1,047.9	1,127.9	1,161.3	33.4	113.5
- 국민주택채권	79.1	77.6	75.6	△2.0	△3.5
- 외평채권(원화)	-	20.0	13.7	△6.3	13.7
- 외평채권(외화)	12.8	11.5	15.8	4.3	3.0
■ 차입금	1.2	1.5	1.5	0.0	0.3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1	0.1	-	△0.0
○ 지방정부 순채무(B)	33.9	34.7	36.4	1.7	2.5

주 1) GDP 대비 채무비율은 산출시기 마다 GDP 전망치가 달라 변동이 있음
2)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치(2025~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사용)

자료: 기획예산처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가 925.7조원으로, 전체 채무 중 71.0%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성 채무는 378.8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29.0%를 차지하고 있음.[3)]

적자성 채무는 예산 대비 46.3조원, 전년 대비 110.5조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적자성 채무 중에서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가 870.4조원으로 전년대비 113.7조원 증가하였음.

금융성 채무는 예산 대비 15.1조원 적었으나 전년 대비 18.9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한 채무가 2.5조원 감소하였으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전년 대비 21.4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 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1,175.0	1,273.3	1,304.5	31.2	129.4
○ 적자성 채무(A)	815.2	879.5	925.7	46.3	110.5
(구성비)	(69.4)	(69.1)	(71.0)	(1.9)	(1.6)
- 일반회계적자보전	756.7	824.6	870.4	45.8	113.7
- 공적자금국채전환 등	58.5	54.8	55.3	0.5	△3.2
○ 금융성 채무(B)	359.8	393.9	378.8	△15.1	18.9
(구성비)	(30.6)	(30.9)	(29.0)	(△1.9)	(△1.6)
- 외환시장 안정	210.3	238.2	231.7	△6.4	21.4
- 서민주거 안정 등	149.5	155.7	147.1	△8.7	△2.5

자료: 기획예산처

3) 국가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자산이 확보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분됨.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결산잉여금은 6.9조원(총세입 597.9조원 - 총세출 591.0조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이 발생하였음.[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총세입 결산 (A)	총세출 결산 (B)	결산상잉여금 (A-B)	이월액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597.9	591.0	6.9	3.7	3.2
일반회계	493.2	491.0	2.2	2.1	0.1
특별회계	104.7	100.0	4.7	1.6	3.1

자료: 재정경제부

총세입 597.9조원은 전년 대비 62.0조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2.1조원 적은 규모임. 이 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493.2조원으로 전년 대비 55.9조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3.8조원 미달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세입은 104.7조원으로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1.7조원 초과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회계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4 결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합 계	535.9	600.0	597.9	△2.1	62.0
일반회계	437.3	497.0	493.2	△3.8	55.9
특별회계	98.6	103.1	104.7	1.7	6.1

자료: 재정경제부

4) 총세입·총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계로 산출되어 기금을 포함하지 않고,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총수입·총지출과는 차이가 있음.

세입예산의 성질별 징수실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1.8조원 초과되었음. 세외수입은 22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4.6조원 증가하였고, 관유물매각대 및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예산 대비 △3.9조원 미달되었음.

[2025회계연도 성질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국세수입					세외수입				
	2024 결산 (A)	2025				2024 결산	2025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합 계	336.6	372.0	373.9	1.8	37.4	199.4	227.9	224.0	△3.9	24.6
일반회계	326.2	361.5	361.5	-	35.3	111.1	135.5	131.7	△3.8	20.5
특별회계	10.4	10.6	12.4	1.8	2.0	88.3	92.4	92.3	△0.1	4.1

자료: 재정경제부

총세출은 591.0조원으로 전년 대비 61.5조원 증가한 반면,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13.7조원 적었음. 이 중 일반회계 총세출은 491.0조원으로 전년 대비 55.6조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4조원 적었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은 100.0조원으로 전년 대비 6.0조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보다 △6.3조원 적었음.

[2025회계연도 회계별 세출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4 결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액	예산현액 (B)	결산 (C)	예산현액 대비 (C-B)	
합 계	529.5	600.0	604.7	591.0	△13.7	61.5
일반회계	435.4	497.0	498.4	491.0	△7.4	55.6
특별회계	94.0	103.0	106.3	100.0	△6.3	6.0

주) 예산현액(B)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및 초과지출 승인액 등을 합한 금액임
자료: 재정경제부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493조 1,79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597조 4,460억원의 82.5%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55조 8,612억원이 증가하고 예산 대비 △3조 7,868억원 적게 수납된 것임.

이 중 국세수입 수납액은 361조 4,94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445조 7,007억의 81.1%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35조 3,148억원이 증가하고 예산 대비 338억원 많이 수납된 것임.

세외수입 수납액은 131조 6,84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51조 7,453억원의 86.8%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20조 5,464억원이 증가하고, 예산 대비 △3조 8,205억원이 적게 수납된 것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4 결산 (A)	2025					전년 대비 (D-A)
		예산 (B)	징수 결정액 (C)	수납액 (D)	수납률 (D/C)	예산 대비 (D-B)	
합 계	4,373,178	4,969,658	5,974,460	4,931,791	82.5	△37,868	558,612
국세수입	3,261,793	3,614,604	4,457,007	3,614,941	81.1	338	353,148
세외수입	1,111,385	1,355,055	1,517,453	1,316,849	86.8	△38,205	205,464

자료: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445조 7,007억원 대비 81.1%인 361조 4,941억원이 수납되었으며 2조 6,956억원은 불납결손 처리되고 81조 5,110억원은 미수납되었음.

세목별 수납액을 살펴보면, 소득세 130조 4,526억원, 법인세 84조 6,090억원, 부가가치세 79조 1,790억원, 상속증여세 16조 4,799억원, 교통에너지 13조 2,351억원, 개별소비세 8조 5,144억원, 관세 7조 6,409억원, 과년도 수입 6조 7,989억원, 교육세 5조 7,235억원, 종합부동산세 4조 6,542억원, 증권거래세 3조 4,430억원, 인지세 7,637억원, 방위세 1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261,793	3,614,604	4,457,007	3,614,941	26,956	815,110
■ 내국세	2,982,594	3,291,519	4,103,427	3,302,404	26,740	774,283
1.소득세	1,174,180	1,268,192	1,369,797	1,304,526	11	65,260
2.법인세	625,113	835,671	867,886	846,090	1	21,795
3.상속증여세	152,981	154,437	174,206	164,799	-	9,407
4.부가가치세	822,358	833,292	889,049	791,790	3	97,256
5.개별소비세	86,566	87,479	88,939	85,144	0	3,795
6.주세	-	-	605	-	1	605
7.증권거래세	47,602	38,454	34,508	34,430	-	78
8.인지세	8,460	8,836	7,638	7,637	-	1
9.과년도수입	65,334	65,156	670,799	67,989	26,724	576,086
■ 관세	69,723	84,093	91,805	76,409	31	15,365
■ 방위세	1	-	4	1	-	2
■ 교통에너지환경세	113,891	140,012	132,546	132,351	16	178
■ 교육세	53,738	57,765	57,936	57,235	33	668
■ 농어촌특별세	-	-	4,093	-	64	4,028
■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67,198	46,542	71	20,585

자료: 재정경제부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31조 6,849억원이 수납되어 예산 대비 △3조 8,205억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20조 5,464억원 증가하였음.

수납액 규모는 정부내부수입및기타가 113조 9,895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조 7,982억원,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3조 6,858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3조 119억원, 정부출자수입 1조 7,126억원, 전년도이월금 1조 4,416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조 4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4 실적 (A)	2025			전년대비 (C-A)
		예산 (B)	실적 (C)	예산 대비 (C-B)	
합 계	1,111,385	1,355,055	1,316,849	△38,205	205,464
■ 재산수입	29,948	68,033	75,982	111.7	7,949
- 관유물대여료	902	934	874	93.6	△60
- 정부출자수입	16,033	10,454	17,126	163.8	6,672
- 전대차관이자수입	-	-	-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012	56,644	57,982	102.4	1,337
■ 경상이전수입	77,551	80,624	69,179	85.8	△11,445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4,152	38,182	36,858	96.5	△1,324
- 변상금및위약금	264	1,269	77	6.1	△1,192
- 가산금	2,762	2,072	2,124	102.5	52
- 기타경상이전수입	40,372	39,101	30,119	-	△8,98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56	10,543	10,403	98.7	△140
■ 수입대체경비수입	2,536	2,131	2,416	113.4	285
■ 관유물매각대	1,156	38,188	2,374	6.2	△35,81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4	0	4.0	△4
■ 전년도이월금	20,056	-	14,416	-	14,416
■ 세계잉여금	-	2,184	2,184	100.0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70,082	1,153,263	1,139,895	99	△13,368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	85	-	-	△85

자료: 재정경제부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액은 491조 9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8.5%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55조 5,792억원 증가하였음. 16대 기능별 결산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집행액이 126조 6,804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 분야 97조 7,320억원, 사회복지 분야 82조 4,39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6조 3억원, 국방 분야 59조 9,01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분야에서 집행률이 95%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예비비(55.9%)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전년 대비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27조 5,403억원)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교육 분야(11조 1,28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4조 3,335억원), 농림수산 분야(2조 3,978억원) 등의 집행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합 계	4,354,305	4,969,658	4,984,420	4,910,097	98.5	555,792
일반·지방행정	991,401	1,269,817	1,277,234	1,266,804	99.2	275,403
공공질서및안전	223,556	237,031	242,544	238,479	98.3	14,923
통일·외교	43,446	46,436	46,720	45,303	97.0	1,857
국방	589,885	617,718	627,389	599,016	95.5	9,131
교육	866,038	971,452	978,683	977,320	99.9	111,282
문화및관광	44,983	46,811	48,004	46,637	97.2	1,654
환경	54,756	65,016	65,034	64,966	99.9	10,210
사회복지	822,247	824,110	828,750	824,399	99.5	2,152
보건	157,624	158,667	159,634	158,970	99.6	1,346
농림수산	92,515	117,070	118,372	116,493	98.4	23,97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6,668	160,384	160,433	160,003	99.7	43,335
교통및물류	170,558	193,436	194,591	184,889	95.0	14,331
통신	8,999	30,594	30,675	30,441	99.2	21,442
국토및지역개발	87,569	104,195	104,941	101,093	96.3	13,524
과학기술	77,680	88,919	89,102	88,394	99.2	10,714
예비비	6,383	38,000	12,314	6,889	55.9	506

자료: 재정경제부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특별회계 세입 결산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104조 7,40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1,343억원 증가하였고, 예산 대비 1조 6,905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예산 대비 3조 1,348억원)의 수납 실적이 예산을 상회한 데 주로 기인함.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실적 총괄]

(단위: 억원)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합 계(a)	986,065	1,030,503	1,047,408	16,905	61,343
■ 기타특별회계 소계(a)	821,113	870,872	885,484	14,612	64,37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6,695	163,068	163,074	5	6,379
교도작업특별회계	1,313	1,237	1,347	110	34
교통시설특별회계	163,470	156,297	154,731	△1,566	△8,73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0,189	162,159	163,575	1,416	23,386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489	15,003	6,151	△8,852	△3,33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6,883	155,512	186,860	31,348	39,977
등기특별회계	2,650	2,786	2,631	△155	△19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1,969	22,843	23,318	475	1,3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348	1,211	1,371	161	2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775	61,459	53,832	△7,627	△94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908	11,059	8,668	△2,391	△24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566	31,020	32,578	1,557	1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121	5,721	5,929	208	8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09	2,205	2,984	779	77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153	2,049	314	△1,735	△3,839
환경개선특별회계	69,375	77,242	78,121	879	8,746
■ 기업특별회계 소계(b)	164,952	159,631	161,924	2,293	△3,028
양곡관리특별회계	28,704	27,925	31,397	3,472	2,693
우체국예금특별회계	66,751	57,868	61,223	3,355	△5,528
우편사업특별회계	48,286	53,784	49,130	△4,653	844
조달특별회계	9,125	7,377	7,730	353	△1,39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085	12,677	12,443	△234	358

자료: 재정경제부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12조 4,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721억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비 1조 8,006억원 초과 수납되었음. 세외수입은 92조 3,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623억원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1,100억원이 미달되었음.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성질별 세입 수납액]

(단위: 억원)

구 분	2024 실적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실적(C)	예산 대비 (C-B)	
합 계	986,065	1,030,503	1,047,408	16,905	61,344
■ 국세수입	103,531	106,246	124,252	18,006	20,721
- 주세	33,282	32,093	32,120	27	△1,163
- 농특세	70,249	74,153	92,132	17,979	21,883
■ 세외수입	882,534	924,257	923,157	△1,100	40,623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81,720	80,772	81,006	234	△714
- 재산수입	11,272	7,712	8,504	792	△2,767
· 관유물대여료	874	989	978	△11	104
· 정부출자수입	3,609	2,849	3,471	622	△138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789	3,874	4,055	182	△2,733
- 경상이전수입	47,716	46,337	44,444	△1,893	△3,272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676	706	507	△198	△169
· 변상금및위약금	88	178	210	32	121
· 가산금	54	54	109	55	55
· 기타경상이전수입	46,897	45,399	43,618	△1,781	△3,27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554	17,918	16,091	△1,826	537
- 수입대체경비수입	176	94	190	95	14
- 관유물매각대	10,780	14,820	4,578	△10,242	△6,201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756	8,419	5,942	△2,477	△1,814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	-	-	-	-
- 전년도이월금	8,134	-	15,246	15,246	7,112
- 세계잉여금	35,823	25,763	30,472	4,709	△5,35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63,603	722,422	716,682	△5,739	53,079

자료: 재정경제부

(2) 특별회계 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집행액은 100조 325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 106조 2,947억원의 94.1%를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6조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16조 9,250억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2조 8,972억원 증가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15조 8,368억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2조 2,835억원 증가하였음.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4조 9,971억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4,888억원 감소하였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233억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3,871억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대비 (C-A)
		예산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합 계	940,325	1,030,503	1,062,947	1,000,325	94.1	60,000
■ 기타특별회계 소계(A)	790,118	870,872	902,446	850,203	94.2	60,08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5,422	163,068	163,143	161,591	99.0	6,169
교도작업특별회계	1,183	1,237	1,237	1,204	97.3	21
교통시설특별회계	154,859	156,297	163,280	149,971	91.8	△4,88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5,533	162,159	164,380	158,368	96.3	22,835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708	15,003	15,726	6,016	38.3	30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0,278	155,512	173,700	169,250	97.4	28,972
등기특별회계	2,500	2,786	2,810	2,385	84.9	△115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1,638	22,843	22,843	22,830	99.9	1,19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52	1,211	1,363	1,163	85.4	1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847	61,459	61,470	52,644	85.6	△20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887	11,059	11,065	8,660	78.3	△22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322	31,020	32,309	32,309	100.0	△1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765	5,721	6,077	5,860	96.4	1,09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356	2,205	3,058	1,751	57.3	39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104	2,049	2,058	233	11.3	△3,871
환경개선특별회계	67,664	77,242	77,927	75,968	97.5	8,304
■ 기업특별회계 소계(B)	150,207	159,631	160,501	150,122	93.5	△85
양곡관리특별회계	27,451	27,925	27,935	27,906	99.9	455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6,134	57,868	57,935	54,673	94.4	△1,461
우편사업특별회계	47,130	53,784	54,353	48,247	88.8	1,117
조달특별회계	8,009	7,377	7,411	7,274	98.2	△73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484	12,677	12,867	12,023	93.4	539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집행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16개 기타특별회계의 평균 집행률은 94.2%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10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99.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99.0%), 환경개선특별회계(97.5%) 등이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11.3%),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38.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57.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한편 5개 기업특별회계의 평균 집행률은 93.5%이며, 양곡관리특별회계(99.9%), 조달특별회계(98.2%), 우체국예금특별회계(94.4%) 등이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우편사업특별회계(88.8%)가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라. 이월 및 불용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 규모는 3.7조원으로 전년 대비 0.7조원(△16.4%)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은 2.1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44.7%)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이월은 1.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조원(△45.7%)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이월액 (A)	2025년			전년 대비	
		예산현액 (B)	이월액 (C)	이월액 비율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합 계	4.5	604.7	3.7	0.6	△0.7	△16.4
일반회계	1.4	498.4	2.1	0.4	0.6	44.7
특별회계	3.0	106.3	1.6	1.5	△1.4	△45.7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 규모는 10.0조원으로 전년 대비 10.1조원 감소하였음. 정부는 결산상 불용액을 ① 회계 간·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내부거래, 4.5조원), ② 예비비 집행잔액(0.5조원), ③ 이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4.9조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불용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 불용액	20.1	14.7	5.4	10.0	5.3	4.6
세입여건변화	6.5	6.5	-	-	-	-
내부거래	4.3	2.1	2.2	4.5	2.0	2.5
예비비 미집행	2.5	2.5	-	0.5	0.5	-
사업비 불용	6.8	3.6	3.2	4.9	2.8	2.1

자료: 재정경제부

마. 세계잉여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6조 8,777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3조 7,223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 1,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480억원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30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 7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110억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 세계잉여금 (A)	2025					전년대비 증감액 (G=F-A)
		총세입(B)	총세출(C)	결산상잉여금 (D=B-C)	이월액 (E)	세계잉여금 (F=D-E)	
합 계	20,074	5,979,199	5,910,422	68,777	37,223	31,554	11,480
□ 일반회계	4,458	4,931,791	4,910,097	21,694	20,865	828	△3,630
□ 특별회계	15,616	1,047,408	1,000,325	47,083	16,357	30,726	15,1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237	163,074	161,591	1,482	622	861	△37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719	186,860	169,250	17,610	586	17,023	27,742
교통시설특별회계	1,628	154,731	149,971	4,760	8,923	△4,163	△5,791
등기특별회계	126	2,631	2,385	246	-	246	120
교도작업특별회계	129	1,347	1,204	143	-	143	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17	53,832	52,644	1,188	194	994	△923
환경개선특별회계	1,043	78,121	75,968	2,153	476	1,677	634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6	8,668	8,660	8	5	3	△1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5,929	5,860	69	143	△74	△7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0	2,984	1,751	1,233	1,268	△35	△35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058	6,151	6,016	135	135	-	△3,05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0	314	233	82	5	77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4	1,371	1,163	208	92	116	△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54	163,575	158,368	5,207	2,917	2,290	△16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44	32,578	32,309	269	-	269	25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331	23,318	22,830	489	-	489	158
양곡관리특별회계	1,243	31,397	27,906	3,491	26	3,465	2,222
조달특별회계	1,083	7,730	7,274	456	13	444	△639
우편사업특별회계	629	49,130	48,247	884	697	187	△44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0,550	61,223	54,673	6,550	65	6,485	△4,06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62	12,443	12,023	421	190	231	△231

주) 세계잉여금이 음수(△)라는 것은 해당 규모만큼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23조 3,226억원에서 2024년 2조 74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25년에는 3조 1,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480억원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 계	233,226	91,498	26,835	20,074	31,554
일반회계	179,949	60,248	364	4,458	828
특별회계	53,275	31,250	26,470	15,616	30,726

자료: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국가재정법」재90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채무상환, 추경안 편성,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등의 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근거 법률에 따른 조치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조치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지방교부세법」제5조제2항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
2.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1의 공제액 제외금액의 30/100 이상)
3. 다음 각 호의 채무상환에 사용(1+2의 공제액 제외금액의 30/100 이상)
   - 국채·차입금 원리금,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차입 원리금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4.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5. 최종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조치

자료:「국가재정법」제90조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 전액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였으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채무상환 및 추경 재원으로는 활용하지 않았음.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사용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A)	처리내역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B)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C)	비율 (C/(A-B))	채무상환(D)	비율 (D/(A-B-C))	추경 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21 (2022)	179,949	113,382	19,970	30.0	13,979	30.0	32,618	-
2022 (2023)	60,248	4,103	16,843	30.0	11,790	30.0		27,511
2023 (2024)	364	364	-	-	-	-		-
2024 (2025)	4,458	-	1,337	30.0	936	30.0	2,184	-
2025 (2026)	828	828	-	-	-	-		-

자료: 재정경제부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68개 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액은 971.3조원으로 전년 대비 37.2조원 감소하였음.

기금 수입의 구성내역을 보면, 차입금(266.3조원), 자체수입(245.2조원), 여유자금회수(236.7조원), 정부내부수입(223.1조원) 순으로 규모가 컸으며, 차입금은 전년 대비 84.3조원, 자체수입은 2.7조원 각각 증가한 반면, 정부내부수입(△67.4조원), 여유자금회수(△56.9조원)는 감소하였음.

기금 지출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운용(317.2조원), 정부내부지출(267.0조원), 사업비(198.8조원), 차입금원금상환(151.4조원), 차입금이자상환(33.9조원), 기금운영비(3.0조원) 순으로 규모가 큼.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차입금원금상환(7.9조원), 여유자금운용(17.6조원), 사업비(5.2조원), 차입금이자상환(2.4조원), 기금운영비(0.1조원)는 증가한 반면, 정부내부지출(△70.4조원)은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4 결산 (A)	2025			수정계획 대비 (D-C)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당초(B)	수정(C)			
수입	자체수입	242.5	247.0	247.1	245.2	△1.9	2.7
	정부내부수입	290.5	227.2	232.6	223.1	△9.5	△67.4
	차입금	182.1	237.7	269.0	266.3	△2.7	84.3
	여유자금회수	293.5	243.0	244.6	236.7	△7.9	△56.9
합 계		1,008.5	955.0	993.3	971.3	△22.0	△37.2
지출	사업비	193.5	205.1	218.0	198.8	△19.2	5.2
	기금운영비	2.9	3.0	3.1	3.0	△0.1	0.1
	정부내부지출	337.4	237.8	271.8	267.0	△4.8	△70.4
	차입금원금상환	143.6	177.7	177.8	151.4	△26.4	7.9
	차입금이자상환	31.5	33.5	34.4	33.9	△0.5	2.4
	여유자금운용	299.6	298.0	288.3	317.2	28.9	17.6

자료: 재정경제부

기금 유형별로 수입·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329조 5,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 4,173억원 증가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계정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461조 5,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 2,919억원 감소하였음.

또한 금융성기금은 29조 4,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945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성기금은 150조 7,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6,472억원 감소하였음.

수정계획 대비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기금은 수정계획 대비 결산 규모가 48조 7,446억원 초과된 반면, 계정성기금은 △31조 4,590억원, 금융성기금은 △4조 2,492억원, 사업성기금은 △35조 615억원 각각 미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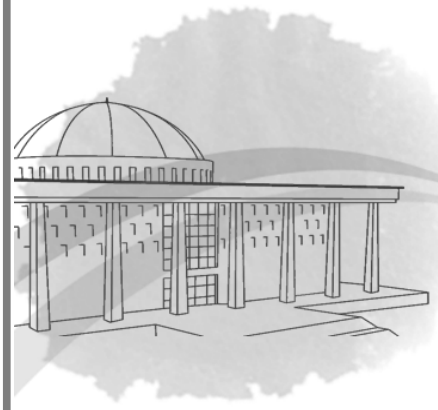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 실적 (A)	2025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수정계획 대비 (D-C)	
		당초(B)	수정(C)			
합 계	10,085,316	9,550,172	9,933,403	9,713,152	△220,250	△372,164
■ 사회보험성기금(6개)	2,981,025	2,807,752	2,807,752	3,295,198	487,446	314,173
■ 계정성기금(5개)	5,198,166	4,609,772	4,929,836	4,615,247	△314,590	△582,919
■ 금융성기금(8개)	311,935	332,782	337,482	294,990	△42,492	△16,945
■ 사업성기금(49개)	1,594,189	1,799,866	1,858,333	1,507,717	△350,615	△86,472

자료: 재정경제부

Ⅱ. 2025회계연도 결산 총평



1. 2025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

2025년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에 전기 대비 △0.2%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분기 이후 소비심리 개선, 추경 편성 효과 및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고,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운용이 내수 및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음.

2025년 세계경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 등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특히 미국과 대규모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0.2%p 증가한 3.4%의 성장세를 보였음.[1)]

반면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블록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었고, 대내적으로는 2024년 말부터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민생·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2025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였음.

이에 정부는 2025년 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과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였음.[2)3)]

---

1)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

	2022	2023	2024	2025
▸**세계**	3.8	3.5	3.2	**3.4**
▸**선진국**	3.0	1.7	1.8	**1.9**
- 미국	2.5	2.9	2.8	2.1
- 유로	3.6	0.4	0.9	1.4
- 일본	0.9	1.5	0.1	1.2
▸**신흥국**	4.3	4.7	4.3	**4.4**
- 중국	3.1	5.4	5.0	5.0
- 러시아	△1.4	4.1	4.3	1.0

자료: IMF, 「4월 세계경제전망」, 2026.4.

2)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되었고, 국회는 정부안(12.2조원)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예산 확대, 농수산물 할인 지원, 임대주택 및 도로·철도 SOC 사업 확대 등을 추가 반영하여 1.6조원을 증액한 13.8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2025년 5월 1일 확정하였음.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2025년 1분기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분기에는 0.6%, 3분기에는 1.4% 성장하는 등 경기 침체 국면에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기 회복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함께 반도체 수출 호조, 소비심리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운용이 내수 및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2024~2025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기대비)]

(단위: %, 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계정항목	2024/Q1	2024/Q2	2024/Q3	2024/Q4	2025/Q1	2025/Q2	2025/Q3	2025/Q4
국내총생산(GDP)	**1**	**△0.2**	**0.1**	**0.2**	**△0.2**	**0.6**	**1.4**	**△0.1**
비농림어업GDP	1	△0.2	0.1	0.2	△0.2	0.7	1.4	△0.1
농림어업	2.3	2.2	△0.9	0.2	0.8	△1.7	1.7	△1.1
제조업	1.2	0.4	0.3	0.6	△0.6	2.1	1.7	△0.6
건설업	5.4	△4.6	△4	△3	△1.5	△2	-0.3	△3.7
서비스업	0.4	0.2	0.3	0.4	△0.1	0.7	1.2	0.6
ICT산업	0.1	△0.4	2.1	1.5	1.2	3.6	3.8	△0.4
비ICT산업	1.1	0	△0.1	0	△0.4	0.4	1.1	△0.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편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기여는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 1.1% 중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5%p로 민간의 성장기여도(0.6%p)에 비해서는 소폭 낮은 수준이었으나,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2021년 4.1%p에서 2025년 0.6%p로 급락하면서, 최근 5년간 민간 대비 정부의 성장기여도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p)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4.7	2.9	1.5	2.2	1.1
민 간	4.1	2.5	0.9	1.6	0.6
정 부	0.7	0.5	0.5	0.5	0.5

주 1)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을, 민간과 정부는 각각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의미
2) 단수조정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합계가 경제성장률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지출항목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2026.6.

한 민생 안정, 세입경정을 통한 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국회는 정부안(30.5조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보조율 상향,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가 반영하여 1.3조원을 증액한 31.8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2025년 7월 4일 확정하였음.

2025년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신속집행과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 과정에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가 확대되어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향후 정부는 신속집행의 경기 대응 효과와 이에 따른 차입 및 이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집행 정책의 규모와 추진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중앙정부 기준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주요사업비 내 관리 실익이 있는 주요 비목을 대상으로 연간계획(241.1조원) 대비 66.8%인 161.1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였고, 연간계획 대비 69.5%인 167.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음.

[공공부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 %p)

구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연간 계획 (a)	상반기 집행액 (b)	집행률 (c=b/a)	연간 계획 (d)	상반기 목표 (e)	상반기 집행액 (f)	집행률 (g=f/d)	상반기 목표대비 (f-e)	집행액 (f-b)	집행률 (g-c)
합 계	618.7	389.1	62.9	622.3	390.3	406.1	65.3	15.8	17.0	2.4
❶ 재 정	549.5	349.4	63.6	551.1	349.9	363.8	66.0	13.9	14.5	2.4
중 앙	240.6	159.4	66.3	241.1	**161.1**	**167.5**	**69.5**	6.4	8.1	3.2
지 방	282.5	170.2	60.2	283.5	171.5	177.3	62.6	5.8	7.1	2.3
지방교육	26.4	19.8	74.9	26.6	17.3	19.0	71.4	1.7	△0.8	△3.4
❷ 공공기관 투자	63.5	37.0	58.2	66.0	37.6	39.9	60.4	2.3	2.9	2.2
❸ 민간투자	5.7	2.8	48.6	5.2	2.8	2.4	46.1	△0.4	△0.4	△2.6

자료: 기획재정부,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5.7.10.

또한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였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의결(5.1.) 후 총 13.8조원 중 예비비(1.4조원) 등을 제외한 12.0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회 통과 후 3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 70% 수준인 8.4조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5년 8월 재정집행점검회의 결과, 7월말까지 8.8조원(74%)이 집행되어 목표대비 4.0%p 초과집행되었음.[4)]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국회 의결(7.4.) 후 총 31.8조원 중 세입경정(10.3조원) 등을 제외한 20.7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이 지난 9월 말까지 87.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5년 10월 재정집행점검회의 결과, 9월

4)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제2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5.8.7.

말까지 19.1조원(92.4%) 집행되어 목표대비 5.0%p 초과집행되었음.[5)]

이와 같은 정부의 상반기 신속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의 3개월 내 조기집행 기조로 인해 상반기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도 크게 발생하였음.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평균적으로 1,716억원이었으나, 2023년 및 2024년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정부의 단기 차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자비용은 2023년 4,244억원, 2024년 4,86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은 3,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8억원 감소하였음에도 최근 10년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음.

2025년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재정의 신속집행과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정부는 신속집행의 경기대응 효과와 이에 따른 차입 및 이자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집행 정책의 규모와 추진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차입 현황]

(단위: 조원,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 일시차입 한도		30.0	30.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40.0
■ 차입실적(누계)		29.9	9.9	2	84.7	142.5	36.4	50.5	162.1	214.8	203.5	37
- 한은차입		9.0	2.0	-	36.0	97.2	7.5	34.2	117.6	165.0	155.5	17.0
- 재정증권 발행		20.9	7.9	2.0	48.7	45.3	28.9	16.3	44.5	49.8	48.0	20.0
■ 차입실적(평잔)		3.7	1.22	0.1	10.1	12.5	5	4.6	12	14.1	13.4	8.6
- 한은차입		0.2	0.02	-	2.3	4.8	0.1	1.8	4.4	5.9	5.8	2.0
- 재정증권		3.5	1.2	0.1	7.8	7.7	4.9	2.8	7.6	8.2	7.6	6.6
■ 이자비용		555	160	24	1,648	1,133	293	667	4,244	4,865	3,567	166
- 한은차입		26	2	-	280	523	18	273	1,497	1,901	1,541	166
- 재정증권		529	158	24	1,368	610	275	394	2,747	2,964	2,026	-
이자상환	운용수익금	555	160	24	1,648	951	212	668	4,244	2,758	1,504	-
	예산(일시차입금 이자상환)	-	-	-	-	182	81	-	-	2,107	2,063	166
	〈합계〉	555	160	24	1,648	1,133	293	668	4,244	4,865	3,567	166

주) '운용수익'은 국고금 운용수익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5)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제2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5.10.16.

2.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1) 국세수입: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정부는 2025년도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및 세수재추계 과정에서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세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먼저 2025년 국세수입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 등으로 인해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목에서 세수오차가 발생하였음.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79조 1,790억원으로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이 예측치를 상회하여 본예산 대비 8조 4,596억원(△9.7%) 부족하였고 전체 세목 중 가장 큰 결손액을 기록하였음. 법인세 역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으로 3조 6,453억원(△4.1%) 부족하게 수납된 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3조 6,334억원(2.9%) 초과 수납되었음.

자산시장 관련 세목에서도 상속증여세(13.6%)와 종합부동산세(12.9%)는 높은 초과수납률을 보인 반면,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대비 10.5% 부족하게 수납되는 등 두 자릿수의 높은 오차율이 발생함.

다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경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연중 세수결손 우려에 따라 정부는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비교적 증감이 확실한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 6개 세목에 대해 총 10조 3,447억원을 감액경정하였음.

감액경정한 세목은 감액경정에 따라 세수오차가 본예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경정내역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주식시장 호조세나 대외 지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경정하지 않은 증권거래세·관세·종합부동산세에서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하여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경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6)]

---

6) 기획재정부는 ① (증권거래세) 6월 주식시장 호조세가 상당하여 하반기 세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10.5% 적게 수납되었고, ② (관세) 중동사태 및 미국 관세정책 향방에 따라 환율 및 수입액 등의 전망이 불확실하여 관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9.1% 적게 수납되었으며, ③ (종합부동산세) 공동 공시지가 등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수를 본예산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12.9% 많이 수납되었음.

한편 정부가 2025년 9월 실시한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9월까지의 세수실적을 고려한 세수재추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오히려 세수오차가 확대되거나 여전히 세수오차가 5% 이상 발생하는 세목이 존재함.

증여세(10.1%)와 증권거래세(9.8%)는 4분기 중 발생한 자산시장의 단기 거래량 급증 등 변동성을 세수재추계 모형이 포착하지 못해 재추계액 대비 초과 수납되었고, 과년도수입은 11.1% 초과 징수되며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재추계 오차율을 기록한바, 향후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행정소송 경과 등을 반영한 미시적인 모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2025년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및 세수재추계 결과에서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세목들이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세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조세지출 정비 및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기준 강화 필요

첫째, 2025년 조세지출 국세감면율은 전망과 실적 모두 법정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재정경제부는 일몰기한의 원칙적 적용, 일몰기한 연장 제한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7]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8]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5%p, 0.4%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였음.

---

7)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수납액(또는 국세수입 예산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임

[2020~2026년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실적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실적	2026전망
국세감면액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05,171	761,084	805,277
국세수입액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3,656,829	4,021,024	4,195,673
국세감면율	**14.8**	**13.5**	**13.0**	**15.8**	**16.1**	**15.9**	**16.1**
법정한도	**13.6**	**14.3**	**14.6**	**14.3**	**14.6**	**15.5**	**16.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2026년에는 국세감면율이 법정상한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국세감면율의 하락이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의 효과와 세수증가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임.[9)]

조세특례는 한번 도입되면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조세특례가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폐지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대상 및 잠재적 관리대상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의 원칙적 적용, 일몰기한 연장 제한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10)11)]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주된 면제사유로 활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제1호는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2018~2025년 정부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건수보다 면제건수가 많고,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건수는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면제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제1호에 근거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제1호가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가산하는데, 2023~2025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16%대를 유지함에 따라 법정한도가 2023년 14.3%에서 2026년 16.5%로 상승하였음.

10) 참고로 OECD는 직접세에 대한 조세지출을 줄이고 간접세 및 교정과세를 확대하는 등의 조세개혁을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7.)

11) 참고로 재경부는 2026년 3월 2026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통해 일몰도래시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시 폐지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일몰 재도래시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설계 등을 의무화하는 일몰제도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이 실제 준수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18~202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1	2	3	1	1	1	2	1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9	3	2	3	7	6	6	3
면제비율	90%	60%	40%	75%	87.5%	85.7%	75%	75%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제1호							

자료: 재정경제부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ㅇ [지적사항] 2018~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건수보다 면제건수가 많고,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건수는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음. 또한 모든 면제사유가 추상적·포괄적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제1호(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근거하여 면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 2025.12.

재정경제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로 '예타면제요건 구체화 방안 마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 중'으로 조치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하였고, 2026년 8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음.

다만 정부가 구체화하였다고 발표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는 '경제전반,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의 위축 또는 위축 우려,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 악화 우려' 등 종전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분류하여 상술(詳述)한 것일뿐 객관화된 지표를 사용하는 등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조특법 §142, 조특령 §135)]

현행	개정안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 면제사유 구체화
ㅇ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신 설> ㅇ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추진사항 ㅇ 국제대회, 국가행사 등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사항 ㅇ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를 개선하는 경우	ㅇ 다음의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 거친 사항 -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 또는 위축 우려 -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에 위축 또는 위축 우려 -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 악화 우려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적용시기> 20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신규 특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사전에 평가하여,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추상적·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면제를 최소화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3) 국세외수입: 대규모 국세물납주식 매각 실패에 따른 총세입 결손

정부는 2025년 3.7조원의 ㈜NXC[12]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인해 세외수입의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계상 시 매각 차질로 인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부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2년 2월 넥슨 故김정주 회장의 별세에 따라 2023년 2월 ㈜NXC 주식 851,968주(지분율 약 29.3%, 물납주식 가치 4조 7,149억원)를 상속세로 물납받아 2대 주주가 되었음. 정부는 해당 주식의 규모를 고려하여 2025년과 2026년 연내 매각을 목표로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 예산을 2025년 3조 7,441억원, 2026년 1조 63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3년 12월 2회의 온비드 공개경쟁입찰 유찰에 이어, 2025년 매각자문사단 선정 및 법률·회계실사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예비입찰마저 모두 유찰되며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NXC 주식 매각 실패로 인해 2025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 3조 7,441억원 중 수납액은 3.5%에 불과한 1,307억원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3조 6,134억원의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2025년 총세입 중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9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감소(△3.7조원)에 기인함.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1.8조원 초과 수납되었으나 세외수입이 △3.9조원 과소 수납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총세입이 예산 대비 △2.1조원 과소 수납되었음.

[2025년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예산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535.9	600.0	597.9	△2.1	62.0
국세수입	336.5	372.1	373.9	1.8	37.4
세외수입	199.4	227.9	224.0	△3.9	24.6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보도자료”, 2026.2.10.

12) (주)NXC(NeXon Corporation)은 글로벌 투자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기업인 넥슨의 모기업임.

세입 측면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출 역시 집행재원 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기 어려움. 일반회계의 경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이 828억원에 불과하였으며, 국방비 등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불용 규모도 상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결손의 영향으로 연말 세출예산의 집행과 이월이 제약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향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계상 시 매각차질로 인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납주식 매각 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25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상 잉여금 (A-B)	이월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597.9	591.0	6.9	3.7	3.2
일반회계	493.2	491.0	2.2	2.1	0.1
특별회계	104.7	100.0	4.7	1.6	3.1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보도자료”, 2026.2.10.

3. 연말 국고금 부족에 따른 이월·불용 문제

2025년 연말 정부는 국고금 통합계정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 집행하여야 할 일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예산을 불용한 후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사실상의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통상적이지 않은 재정운용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급식·피복비, 군수유지비 및 전력운영비 등 1조 3,038억원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사고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13]

정부는 당해 연도 내 출납을 완결하지 못하고 해당 미지급 금액을 사고이월 등의 방식으로 2026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차년도인 2026년 1월 9일에 이르러서야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이월 자금을 집행하여 대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등을 수습하였음.[14]

국고금 통합계정의 연말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사업예산의 미집행 및 이월·불용 사태는 ① 국세물납주식의 매각 부진, ② 연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보수적 산정,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재원의 미확보, ④ 세수 재추계 환류 체계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①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에 따른 국세외수입 부족

2025년 3.7조원의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인해 세외수입의 결손이 발생하고 연말 국고금 관리의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물납주식매각대 계상 시 매각차질로 인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시부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3) 총 1조 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전말은 이렇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5년도 예산안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지급 받지 못 했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운영비는 부대 운영비이고, 무기 체계 관련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무 부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조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12월 5주차에 쓸 예산 1조 1,200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그런데 재경부는 마지막 주 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방사청도 비슷한 시기 1조원 넘는 자금을 요청했으나 국고 계좌가 텅 빈 관계로 이를 받지 못 했다. 그 결과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국방부·방사청이 1조 3,038억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중앙일보, "초유의 1.3조 국방비 펑크 사태…"통상 있는 일" 이라는 정부", 2026.1.13.)

14) 관계부처 합동, "2025년 말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XC 주식 매각 실패로 인해 2025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 3조 7,441억원 중 수납액은 3.5%에 불과한 1,307억원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3조 6,134억원의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물납주식 매각 실패는 경영권 거래가 아닌 비상장기업의 2대 주주 지분이라는 특성상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제약 요인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대규모 비상장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2대 주주 지분이라는 특성상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므로, 비상장 물납주식의 시장 소화 능력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특정 자산의 매각 지연이나 세입결손 발생 시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금 관리와 연계한 매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② 연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보수적 산정

정부는 2025년 12월 말 한국은행 일시차입 한도를 전년과 같이 5조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연말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 산정 시 13월 세입 예상 규모와 연말 집행소요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출납정리기한(1월 20일)까지 이른바 “13월의 세입”으로서 전년도 귀속 수입을 추가적으로 수납하고 있고,[15] 기획재정부(2026년부터 재정경제부)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연말에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원을 일시 차입한 후 다음연도 1월에 수납된 13월의 세입으로 상환하였음.[16]

---

15)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수입금의 수납기한)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16)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수 있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최근 10년간 12월 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잔액 추이]

(단위: 조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잔액	-	-	-	-	-	-	-	4.0	5.0	5.0

자료: 재정경제부

국고금 통합계좌의 일시차입은 해당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2025년 연말까지의 실제 집행소요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재원 규모에 맞게 차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음.

2026년 1월 20일까지 수납된 일반회계 세입(13월의 세입)이 7.3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만일 재정경제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를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였다면 1.5조 원 규모의 국방비 역시 당해연도에 이월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미지급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정부는 상환불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나, 결과적으로 13월의 세입 예측치와 연말의 시급한 집행 소요 간에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

③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재원 축소에 따른 단기 유동성 부족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 재원의 운용 과정에서 연말 여유재원이 소진되는 등 단기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부는 향후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최소 유지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부문 자금 수급을 조절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일반회계 자금 부족분에 대해 일반회계 예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는 공공부문 일반회계의 자금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로 작용함.

2025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한국은행 예치금 잔액은 43억원으로, 2022년 5조 2,121억원, 2023년 7,857억원, 2024년 1조 5,094억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말잔 규모도 2023년 3조 2,715억원, 2024년 1조 6,616억원, 2025년 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96.3% 급감하였음.

[2023~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및 한국은행 예치금 잔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여유자금 말잔	58,639	15,461	32,715	16,616	604
한국은행 예치	44,433	52,121	7,857	15,094	43

2025년 연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소진은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완충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회계연도를 마감했음을 뜻함.[17] 회계연도 말에는 각 부처의 마감 지출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국고금 수급 변동성이 극대화되는데, 이 시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바닥나고 한국은행 차입 한도마저 소진될 경우, 재정당국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단기 유동성 공백이 발생하게 됨.

참고로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국고채권의 발행한도액 230조 8,360억원의 98.0%인 226조 2,220억원만 발행되어 4조 6,140억원의 발행가능 여력이 있었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발행한도 1조 3,000억원의 92.7%인 1조 2,056억원만 발행되어 944억원의 발행 가능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18]

④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른 세출 계획 조정 부족

정부는 2025년 9월 세수재추계 결과 세입감소가 예상됨에도 지출계획을 변경 없이 유지하여 세입 대비 과다한 세출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연말에 국고금 부족으로 이어진바, 지출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을 372조 849억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보다 2조 1,557억원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였음. 다만 정부는 2025년 9월 세수재추계 결과는 발표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출·지출 계획은 별도로 변경하지 않았음.

---

17) 재정경제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예치금 잔액 급감 사유에 대해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간에 발생하는 잔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말 공자기금 자금을 운용한 결과 연말 기준 발생한 집행잔액 43억원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였다" 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결과값을 그대로 사유로 제시한 동어반복에 가까움.

18)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재원 부족 이유로는 국고채 발행 부족 이외에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우체금예금특별회계 및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이 계획대비 각각 7,302억원, 4,689억원 및 5,208억원 부족하게 수납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특별회계 예수금이 계획액 4조 1,893억원보다 1조 7,225억원이 부족한 2조 4,668억원만 수납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른 세출·지출 계획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출·지출계획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12월 국방비 미지급(1조 5,000억원)이 발생하였음.[19] 참고로 9월 세수재추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1,557억원 감액 전망되었는데, 이에 상응하여 세출·지출계획을 조정하였다면 연말 예산 집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임.

세입 감소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부적으로 세출 예산의 집행 속도를 제어하거나 지출 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유지함에 따라, 연말 사업 집행소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세입 대비 과다한 세출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국고금의 부족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기적으로는 9월 세수재추계 결과에서 유의미한 추가 세입 감소가 확인될 경우, 세출예산을 유연하게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함. 세수재추계 발표와 동시에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분류하여 배정을 유보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일정 수준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세출을 줄이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 지출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는 2025년 연말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지 못하고 배정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재정운용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연말 국고금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이월 이외에도 정부는 2025년 말 신규 체결한 사업 계약에 대해 2025년도 예산을 불용한 후 20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19) 총 1조 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전말은 이렇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5년도 예산안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지급 받지 못 했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운영비는 부대 운영비이고, 무기 체계 관련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무 부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조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12월 5주차에 쓸 예산 1조 1200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그런데 재경부는 마지막 주 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방사청도 비슷한 시기 1조원 넘는 자금을 요청했으나 국고 계좌가 텅 빈 관계로 이를 받지 못 했다. 그 결과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국방부·방사청이 1조 3,038억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중앙일보, "초유의 1.3조 국방비 펑크 사태…"통상 있는 일" 이라는 정부", 2026.1.13.)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의 일부 R&D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5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연말 해당 업체에 착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 결의를 하였으나, 재정당국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예산을 미집행하고 동 사업의 미집행된 일반연구비를 2026년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국방비 세출예산 이월 및 미집행 관련 국방부·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

○ 보도내용
- 2026.1.11. 국민일보는 “국방부 ” 이월 예산 60% 제한 “… 올 軍사업 비상” 보도에서, 국방부가 각 군 본부와 책임 부서에 이월액을 60%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올해 국방부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방부·재정경제부 입장
- 국방부는 2025년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연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1.9일)부터 정상 집행중입니다.
- 반면 2025년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2026년에 실제 납품 등이 발생하므로 2025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은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실제로 1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품이 다음 연도에 이뤄지는 선금 지급의 경우 최근 과다지급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2025년 미지금액(5,002억원)의 60% 선에서만 이월하여 집행하라는 지침을 제공한 바 없으며, 2025년말 미지급건을 최우선 지급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5년 국방비 세출예산 이월은 재정집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2026.1.11.

국방부 및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2025년 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2026년에 실제 납품 등이 발생하므로 2025년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20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은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5년 연말 재원 부족으로 인해 배정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재정운용 행위는 「국가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이후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연내 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등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음.

4. 4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검토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① 국가재정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②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③ 재정 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중점투자 분야를 설정하였음.

구체적으로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를 위해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등을 강화하고, ② '경제활력 확산' 을 위해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등을 추진하며, ③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을 위해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등을 지원하고, ④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하기 위해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려 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
경제활력 확산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 선도형 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 인재·산업·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 군 자긍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 ○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 창출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5년도 예산안」, 2024.8.

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정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를 기조로 더 두텁고 폭넓은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전검토 미흡,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정산금 처리,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 등이 확인되어 당초 계획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1)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보건복지부는 사업 준비 부족 및 집행 관리 미흡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보강 및 인력 충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부액 대부분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2025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교부액 1억 5,800만원 중 9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5.7%)되고 1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 교부액 4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이는 사업 대상 기관(대전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이 2025년 7월 30일에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 설계용역 업체 선정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기능보강비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고, 당초 10명분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간호사 1명, 생활지도원 3명만 채용되면서 인건비 대부분이 불용되었기 때문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사업 대상 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서 수정에 약 8개월이 소요되었고 인력 충원 계획도 실제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방비 부담능력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교부액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임.

(2) 주거급여지원 사업(국토교통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정산금 처리

국토교통부는 보조금이 교부된 해가 아닌 차년도 이후에 수급자 반환금이 반납되는 경우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급자 반환금의 처리 절차를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맞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수급자에게 지급된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이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에 따라 과잉지급분을 수급자로부터 반환받도록 규정하고 있음.[20]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급자 반환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여야 함.

그러나 보조금이 교부된 연도에 수급자 반환금이 회수되지 않고, 수급자의 자격기준 변동이나 부정수급 사실이 사후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어 차년도 이후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인 만큼 반환금 처리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기준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소관 예산사업에서 발생한 수급자 반환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 보조금 정산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집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급자 반환금의 처리 절차를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맞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3) 의료급여 사업(보건복지부):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추경을 통해 의료급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2,244억 4,900만원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의료급여 예산 소요 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 증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의무지출 항목의 부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18~2025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695억 4,300만원, 1,898억 5,1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2,244억 4,900억원이 지급되지 못하였음.

[2018~2025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69,543	189,851	55,296	11,493	-	-	-	224,449

주 1) 2018년, 2019년, 2025년의 미지급금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2020년과 2021년의 미지급금은 연말 지급을 위한 전산처리 이후 차년도 지급(행정처리기간 소요)으로 인한 것임
2) 국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본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21]을 통해 2,828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6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165만 7,251명인데 비해 2026년 4월 기준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66만 2,518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이미 추경 편성 기준 인원을 초과하였음.

의료급여 예산 소요 추계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22]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진료청구액, 고령화 추이, 물가상승률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재가 의료급여 사업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자를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6년 3월 31일 정부 제출, 4월 10일 국회 의결)

22)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시정조치요구사항이 있었음.

(4)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사업출연금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양육비이행지원금 선지급 집행률이 각각 47.5%, 47.7%에 불과하므로, 선지급제 시행 초기의 실적과 월별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출연금의 수요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87억 3,000만원 전액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집행되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집행액은 194억 1,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7.6%임. 특히 기관운영출연금은 77억 6,400만원 전액이 실집행된 반면, 사업출연금은 209억 6,600만원 중 116억 5,500만원만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5.6%에 그쳤음.

사업출연금의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양육비이행지원금 선지급의 집행이 저조한 데 기인하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6억 100만원 중 7억 6,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7.5%였고, 양육비이행지원금 선지급은 162억원 중 77억 3,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7.7%에 그쳤음.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출연금 내역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601	761	840	47.5
양육비이행지원금 선지급	16,200	7,730	8,470	47.7
법률지원서비스 등 기타 사업	3,165	3,164	1	100.0
합계	20,966	11,655	9,311	55.6

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2025년 6월 종료, 양육비이행지원금 선지급 사업은 2025년 7월 시행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시행 초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으며, 선지급 요건 확인과 심사 절차가 필요하여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2025년 양육비이행지원금 선지급 집행률이 47.7%에 그친 만큼,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태조사 기반 수요 추계가 실제 신청·심사·지급 실적과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나. 경제활력 확산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목표로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선도형 연구개발(R&D) 체계 개편 및 첨단산업 육성, 수출 모멘텀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재정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지원, 소수 대기업에 대한 대출 편중, 원금손실이 발생한 펀드 운용 사례 등이 확인되어 재정 투입의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었음.

(1)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혜자 도덕적 해이 예방책 마련 등 개선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 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점포철거비 사업의 1평당 지원단가와 최대 지원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점포철거 소상공인 및 철거업체가 철거비용을 실제 소요된 금액 대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역시 증가할 수 있으나, 2021~2024년간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이 2건에 불과하는 등 사업 규모에 비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정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부터 점포철거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신고센터의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11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음.

또한 지원요건에 따르면 유사 사업의 수혜자는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관련 사업의 지원 실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기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점포철거비 이상징후 탐지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유사 사업 지원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금융위원회):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재정의 마중물 역할 수행 개선 필요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려는 당초 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와 달리 민간에서도 저리 차입이 가능한 소수 우량 기업에 저리대출이 집중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효과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대출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73개 기업 중 5개 기업에 대해 전체 대출액(6조 9,107억원) 중 73.7%(5조 900억원)가 승인되는 등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가 소수 기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음.

[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 지원 기업 중 대출액 기준 상위 5개 기업]

(단위: 억원)

순위	대출 시기	신용등급	대출액(비중)
1	2025. 4., 2025. 12.	AAA	36,000(52.1%)
2	2025. 4., 2025. 12.	AA+	10,000(14.4%)
3	2025. 5.	A0	2,250(3.3%)
4	2025. 8.	AA-	1,500(2.2%)
5	2025. 5., 2025. 12.	A-	1,150(1.7%)
전체(73개 기업)	2025. 2. ~ 2026. 3.		69,107(100.0%)

자료: 금융위원회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 치열한 경쟁 구도에 있고, 소수 대기업에 관련 산업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우량 기업 위주로 대규모 설비투자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여 국가 간 경쟁 구도에서 주력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도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당초 목적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투자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공적 자금이 아니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저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우량・우량・양호 등급의 기업에 95% 이상의 대출을 집중 승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효과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정책펀드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원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펀드사업 추진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2025년 청산된 21개의 자펀드 중 18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펀드별 투자성과 등을 점검하여 출자 및 펀드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펀드 출자 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투자 분야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청산 실적이 있는 펀드는 운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의 운용성과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청산된 자펀드의 현황을 보면, 총 21개의 자펀드가 청산되었으며 이 중 문화산업·제작초기 및 게임 분야의 총 3개의 자펀드를 재외한 18개의 펀드에서 모두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음. 특히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분야의 자펀드의 경우, 정부 출자금액 70억원 중 회수금액은 5억 4,600만원에 그쳐 64억 5,400만원의 손실(손실률 △92.2%)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제작초기·드라마 등 민간투자가 부족한 투자 소외 분야에 정책적으로 투자하였으나, 문화·영화 산업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하고,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펀드의 경우 2015년 12월 결성되어 투자기간(2016~2020년) 중 한한령 및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의 영향까지 더해져 수익률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수의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기존의 출자 중인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성과와 수익성을 점검하여 추가 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신규 펀드 조성 시에는 투자 분야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23)]

23) 문화체육관광부는 펀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분야(장르) 제한 완화, 수익률이 저조한 운용사에 대한 출자사업 평가 감점제도 도입('23~), 민간 재무적 출자자의 지분투자 참여 확대를 위한 가점 부여('23~)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다.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일·가정 양립, 돌봄 및 주거 지원을 통한 저출생 대응,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재정사업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의료취약지 및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 미흡, 불용이 예상되는 장학금 예산을 활용한 학업장려금 지원 등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1) 아이돌봄 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아이돌보미 공급 및 연계관리 필요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교육 이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 수와 평균 대기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이돌보미의 확보·유지 및 서비스 연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는 18만 3,794가구로 전년보다 4만 4,286가구 증가하였고, 매칭가구도 15만 9,804가구로 전년보다 4만 1,678가구 증가하면서 연계율이 2023년 70.2%에서 2025년 86.9%로 개선되었음.

[최근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대기 현황]

(단위: 가구, %, 일)

구분	연계 현황			대기 현황	
	신청가구 (A)	매칭가구 (B)	연계율 (B/A)	대기가구 수	대기일수
2023년	122,729	86,100	70.2	13,031	33.0
2024년	139,508	118,126	84.7	9,519	32.8
2025년	183,794	159,804	86.9	11,645	39.4

주) 대기가구 수는 해당 연도말 기준 대기 상태에 있는 가구의 수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러나 2025년 대기가구 수는 1만 1,645가구로 전년 대비 2,126가구 증가하였고, 평균 대기일수도 39.4일로 전년 대비 6.6일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양성교육기관 확대, 단축교육과정 신설 및 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는 3만 1,718명으로 예산편성 기준인원 3만 6,000명보다 4,282명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충원율은 88.1%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아이돌보미 수 목표 대비 충원 및 양성교육 이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예산상 아이돌보미 목표 인원수 (A)	실제 아이돌보미 인원수 (B)	전년 대비 아이돌보미 증감	목표 대비 편차 (B-A)	충원율 (B/A)	양성교육 이수자
2023	29,000	28,071	1,396	△929	96.8	3,946
2024	35,000	29,635	1,564	△5,365	84.7	8,901
2025	36,000	31,718	2,083	△4,282	88.1	12,736

주) 2025년은 예산편성 인원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양성교육 이수자는 2023년 3,946명에서 2025년 1만 2,73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는 같은 기간 2만 8,071명에서 3만 1,718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는 양성교육 확대가 실제 활동인력 확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교육 이수 이후 실제 활동 전환 여부와 활동 지속 여부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실적을 단순 교육실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자가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로 전환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 이수 후 미활동 사유와 중도 이탈 사유를 분석하여 실제 활동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지역별 대기가구와 대기일수를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확보·유지 및 서비스 연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및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시니어의사의 33.3%는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고 시니어의사의 52.4%가 주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취약지 및 주요 진료과목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니어의사의 근무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총 84명의 시니어의사가 선정되어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56명(66.7%)이고 의료취약지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8명(33.3%)이며, 부산과 충북의 경우 모든 시니어의사가 의료취약지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시니어의사의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시니어의사는 40명(47.6%)이고, 확대 진료과목 및 기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시니어의사는 44명(52.4%)으로, 주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더 많이 진료하고 있음.

사업설계와 다르게 시니어의사의 33.3%는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고 시니어의사의 52.4%가 주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근무 여부 및 주요 진료과목 진료 여부에 따라 채용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이나 대도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주요 진료과목 진료에 국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의료원[24]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의사의 경우 계속 지원의 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3)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교육부):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 활용을 위한 일회적 학업장려금 지원의 적절성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서 2025년 2학기 한시적으로 104억 300만원의 학업장려금(생활비)을 지원한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까지는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에서 등록금 외에 신·편입생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도부터는 신·편입생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금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1학기 장학금 지급계획도 이를 전제로 수립·시행되었음.[25]

그러나 2025년 7월 28일 교육부가 승인한 2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에서는 2025년 2학기에 한시적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까지의 학생에게 2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500만원) 이내의 학업장려금(생활비 명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안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 6월 23일 국회 제출)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는 새로운 제도를 국회 심의 없이 수정한 것임.

---

24)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25) 다만,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포항 재난 가족 대학교육비,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등 재난장학금은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활용하는 점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집행됨.

[2025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	
예산액	2,600억원	1,300억원	1,247억 8,000만원	
내역	・등록금 지원 ※ 다만, 재난장학금(세월호・포항・여객기사고・특별재난지역) 동 사업예산에서 충당		・등록금 지원	1,141억 4,600만원
			・재난장학금 지원	2억 3,100만원
	-		**・학업장려금 지원**	**104억 300만원**

자료: 교육부

생활비 명목의 학업장려금을 도입한 결과, 2025년 국가장학금(2유형은) 등록금 1,141억 3,600만원, 학업장려금 104억 300만원, 재난장학금 2억 3,100만원을 합하여 총 1,247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추가경정예산액 1,300억원의 96.0%에 달하게 되었음.

생활비 명목의 학업장려금은 종래 국가장학금에서 지원된 적이 없는데,[26] 2025년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며 2유형 참여율이 저조하여 예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2026년에는 2025년과 같은 생활비 명목의 학업장려금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사업수혜자인 일반 학생들의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우려가 있음.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고,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적 선심성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6) 학자금 대출의 한 유형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생활비대출은 시행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진 적은 없음.

라.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정부는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구현을 목표로 재해의 체계적 예방·대응, 국민 권리구제 강화, 전략적 외교 추진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익 증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재정사업에서는 부품 수급 차질 등에 따른 장비 도입 지연, 국회 심의 없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사례, 집행률 제고를 위한 예산 전용 등이 확인되어 당초 기대한 사업효과를 충분히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1)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관세청): 부산신항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지연

부산신항 컨테이너 검색기는 주요 부품의 다수 고장으로 인한 수급 차질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으므로, 관세청은 향후 노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 추진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컨테이너 검색기 중 부품 수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청은 가속기 주요 부품인 전자총의 고장으로 인해 부품 수급 후 중간검수를 진행하였고, 부품 수급 지연으로 계약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음.

관세청은 당초 계약기간(2024.12.17.~2025.11.17.)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지체상금 발생을 통보하고,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자 컨테이너 검색기 사업 계약기간을 지체상금 부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2024.12.17.~2026.3.31.)하고, 사업 완료(2026.5.11.) 후 현재 가동 중으로, 7월 지체상금 9.6억원을 부과하였음.[27)]

과거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사업에서도 이와 같이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지연 및 해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28)29)] 향후 노후화된 컨테이너 검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사업진행 상황 협의 등을 통해 부품 수급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산 신항 컨테이너 검색기 인·허가 시 심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4차

27) 지체상금은 당초 계약기간 완료 다음일(2025.11.18.)로부터 사업완료시점(2026.5.11.)까지 지체상금 일수(175일)를 계산하여 9.6억원을 부과함.

28) 2018년도 해상 특송화물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X-ray 검색기의 주요 기능이 제안요청서 등의 요건에 미달되어 계약을 최종 해지하였음.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처별 1권」, 2019.10.

례의 보완요구 후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용허가가 승인되는 등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도 지연이 발생하였음.

관세청은 인·허가 준비 시 통상 소요기간(30일)을 고려하였으나, 국내 최초 방식의 장비로 인해 심의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이 많았고,[30]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완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약 100일) 소요되어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그리고 지속적인 보완요구 통보와 인·허가 대행업체 현장 방문 등 전문 인·허가 업체 추가 섭외 지시 등 조속한 대응을 독촉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입장임.

다만 컨테이너 검색기 계약 당시 혼합방식의 도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준비 시 통상적인 소요기간을 상정하였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신규 방식 도입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의 지연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 12대 중 2대가 이미 내용연수를 도과하여 향후 노후 컨테이너 검색기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상황이므로, 관세청은 향후 노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 추진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 사업(경찰청):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따른 계약 체결 필요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디캠 장비 구매를 위해 2년간 총 154억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된 이후 국회 심의 내역과 달리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기간 5년(2025년~2029년)의 총사업비 194억 8,600만원 규모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한 내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이하 “바디캠”)의 사용요건·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바디캠 17,533대를 순차 보급할 계획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총 구매장비 대수의 1/2인 바디캠 8,766대를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430-01목) 예산 77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30) 기존에는 투과형 단일 방식이었으나, 이번 컨테이너 검색기는 투과 방식과 후방산란형이 혼합된 방식으로서, 최초 방식인만큼 방사선 안전 시뮬레이션(MCNP) 결과 등의 추가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바 있음.

그러나 경찰청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직후 동 사업을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개별 장비구매가 아닌 바디캠 영상 송신·저장·관리시스템 구축과 장비(14,000대) 제작·보급·유지보수 등을 포괄하는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함.

2025년 2월 6일 적정사업기간 심의를 받고,[31] 3월 19일 당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된 77억 1,4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전용한 후, 동 사업에 5년간(2025년~2029년) 총 194억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전제 아래 KT 컨소시엄과 '경찰 바디캠 도입사업 계약'(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장기계속계약[32]은 사업기간 동안 각 연도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사실상의 제약이 발생하므로[33] 장기계속계약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예산이 소요되는 동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찰바디캠 도입 사업 연도별 소요예정 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비용	7,714	2,943	2,943	2,943	2,943	19,486

자료: 경찰청

3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 심의를 말함.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후단에서 장기계속계약도 (국회에서 매년 심의·확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이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18.10.30. 선고 2014다235189)는 (예산일년주의,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등을 근거로) 장기계속계약의 사업기간과 총사업금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국가가 계약상대방과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등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각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에서 "사실상" 제약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은 장기계속계약의 사업기간과 총사업금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임.

(3) 국별협력사업(ODA)(외교부): 과다한 사업간 예산 전용·조정 축소 필요

국별협력사업의 연도별 전용조정규모가 2022년 1,225억 3,700만원에서 2025년 2,549억 7,800만원으로 108.1% 증가하여 같은 기간 국별협력사업 전체 예산 증가율(45.7%)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연도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의적 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국별협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282억 8,400만원에서 2025년 6,238억 9,600만원으로 45.7%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전용조정규모는 2022년 1,225억 3,700만원에서 2025년 2,549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전용조정액은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따라 국별협력사업간 또는 국별협력사업과 다른 사업간 조정한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국별협력사업 본예산 규모가 45.7% 증가(2022년 4,282억 8,400만원 → 2025년 6,238억 9,600만원)하는 동안 전용조정규모는 108.1% 증가(2022년 1,225억 3,700만원 → 2025년 2,549억 7,800만원)한 것임.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국별협력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전용조정규모 또한 증가하였고, 수원국의 정세 등에 따라 집행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간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전용조정규모 증가율이 국별협력사업의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과 실제 집행내역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의 및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와 협력단은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과다한 사업간 예산 전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5. 재정제도 개선과제

(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및 점검 필요

정부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가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계속해서 조치중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완료 여부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국회의 실질적인 확인·점검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국회법」에 근거하여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송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정부는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결산 의결일 다음 해인 5월 말에 제출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율을 보면, 2021회계연도는 83.0%, 2022회계연도는 82.6%, 2023회계연도는 80.0%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의 조치율은 80.7%의 조치율을 보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1회계연도나 2022회계연도에 비하여는 감소한 상황임.

[최근 4년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단위: 건, %)

회계연도	합계				결산				예비비			
	계(1+2)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소계(1)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소계(2)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2021	1,416	1,175	241	83.0	1,394	1,159	235	83.1	22	16	6	72.7
2022	1,916	1,582	334	82.6	1,889	1,559	330	82.5	27	23	4	85.2
2023	2,319	1,855	464	80.0	2,293	1,831	462	79.9	26	24	2	92.3
2024	1,987	1,603	384	80.7	1,967	1,583	384	80.5	20	20	-	100.0

주) 각 연도 4월 30일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다음으로 결산에 첨부되어 의결되는 부대의견의 연도별 후속조치 조치율을 보면, 2021회계연도는 66.7%, 2022회계연도는 65.4%, 2023회계연도 61.8%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의 조치율은 43.8%로 전년대비 18%p 하락하였고 연도가 경과할수록 조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3년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단위: 건, %)

회계연도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조치율
2021	21	14	7	66.7
2022	26	17	9	65.4
2023	34	21	13	61.8
2024	16	7	9	43.8

주) 각 연도 4월 30일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정부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각 연도 5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는 조치중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결과 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2021회계연도 241건, 2022회계연도 334건, 2023회계연도 464건, 2024회계연도 384건이 조치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었으며, 부대의견의 경우 2021회계연도 7건, 2022회계연도 9건, 2023회계연도 13건, 2024회계연도 9건이 조치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었음.

지금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으면 국회가 제기한 지적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정책 반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 제도의 핵심 기능인 사후 환류(feedback)와 재정통제 기능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시정요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이 점검·보고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조치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국회의 실질적인 결산 심사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4]

34) 제21대 국회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음.(의안번호 제2109327호,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2) 법률의 위임 없이 훈령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단위를 규정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를 세부사업과 일부 내역사업으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향후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등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사업 단위에 관해서는 정한 바 없음.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예산처훈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35)]

이 지침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나 내역사업의 하위인 내내역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예산안이 편성될 우려가 있음.

「국가재정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단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획예산처훈령에서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사업단위를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

35)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추경 편성 시에도 R&D 사전 검토·심사 제도를 거치도록 할 필요

정부가 R&D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해 도입한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심사 제도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전 검토·심사 절차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다음 연도 추진 예정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3제3항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제도 모두 본예산 편성 절차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본예산과 달리 편성 절차가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국비지원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나 사업추진심사를 거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 예산 편성을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도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거나 면제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그 대체제도인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심사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규모 R&D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공백 사항이 지속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대규모 R&D 사업 추진이 사전 검토·심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대체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적용 방안 또는 대체 절차를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국고금 관리법」의 국고금 운용수익·비용 상계 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 부족분을 다른 사업 예산 이용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통합계정 운용수익으로 이자비용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운용수익과 이자비용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집행이 없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더 많은 재원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용(移用)하여 집행하였음.

이는 일차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으로 인해 본예산 편성 시보다 한국은행 일시차입 수요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과소추계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이자비용 충당규정으로 인해 국고금 통합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예산 편성 시에 계상하기 어려워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함.

[2021~2026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60,800	60,800	-	-	60,800	8,096	-	52,704
2022	25,000	25,000	-	△5,916	19,084	-	-	19,084
2023	-	-	-	-	-	-	-	-
2024	99,209	99,209	-	111,500	210,709	210,709	-	-
2025	99,209	99,209	-	109,835	209,044	206,307	-	2,737
2026	110,000	110,000	-	-	-	-	-	-

자료: 재정경제부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재정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총액에 온전히 계상되어야 하나, 현행 「국고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고금 통합계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조달 및 지출 방식은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을 장부상에서 상계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가재정 상태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예산운용의 기본원칙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이처럼 국고금 운용수익과 이자비용이 예산 체계 밖에서 상계처리됨에 따라, 정부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 지출의 총액과 국고금 운용을 통해 확보한 총수익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의 일시차입금 조달 규모 및 운용 내역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거나, 사후 결산 과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특히 국고금 운용수익과 이자비용 상계를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4항은 2005년 1월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의 총계주의 근거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고금 관리법」을 개정하여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과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각각 세입과 세출예산에 투명하게 반영하고, 국고금 이자수익과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명확히 산출하여 이를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공공기관 사업출연금 사후정산에 관한 통일된 규정 마련 필요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통일된 관리기준이 없어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일관된 사후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정부 R&D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출연금(360목)과 정부 R&D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되는 일반출연금(350목)으로 구분되며, 일반출연금은 다시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으로 구분됨.

연구개발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은 현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일반출연금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필요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관운영출연금은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기관의 세입에 계상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기관운영출연금·사업출연금의 사후정산 관련 지침]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207)」 일반출연금(350목)
o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러나 사업출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기준을 주무부처 또는 개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부처별·기관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수의 공공기관은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등을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여 기관운영비에 사용하거나 기관 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출연금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교부되는 재원으로 기관운영출연금과 성격이 다르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해서만 기관 세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출연금의 목적과 예산 통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는 출연금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기관의 자체재원으로 축적되는 경우 국회가 승인한 출연사업의 실제 소요 규모와 집행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통제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산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이 기관별 재량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6) 공자기금의 예수·예탁 사업의 회계·기금별 세부사업 개별 편성 필요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타 회계·기금으로의 예수·예탁사업을 구체적인 회계·기금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자금의 융통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였는바, 사업구조의 세분화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획변경 시 국회의 면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회계기금간 거래' 프로그램(8000대) 및 '기금간거래' 프로그램(9000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분류체계(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3단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36] 실제로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한 개 또는 두 개에 불과하여 회계·기금별 분리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회계기금간거래 및 기금간거래 프로그램의 편성구조]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해당 회계·기금 수 (집행기준)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8520 일반회계 예탁	8520-851 일반회계 예탁	일반회계
	8540 기타회계 예탁	8540-853 특별회계 예탁	4개 특별회계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8601 기타회계예수원금상환	8601-900 특별회계 예수원금상환	5개 특별회계
		8601-901 일반회계 예수원금상환	일반회계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8712 기타회계예수이자상환	8712-900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5개 특별회계
		8712-901 일반회계 예수이자상환	일반회계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9020 기타기금예탁	9020-900 기타기금 예탁	18개 기금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9130 기타기금예수원금상환	9130-910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15개 기금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9220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9220-920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17개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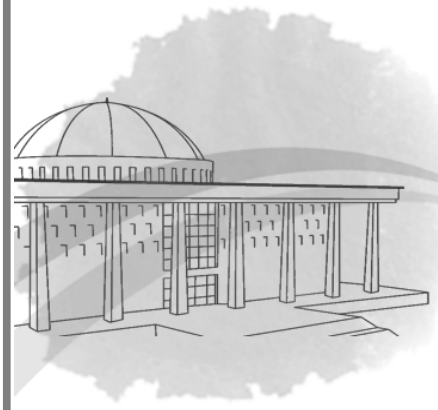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36)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이처럼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특별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사업은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개별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개별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내부거래 계획액이 잘못 편성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행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기존에 예수·예탁 예산이 편성된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자금 소요 조정은 주요항목(프로그램) 내 변동이므로 조정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으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자체의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증액 범위가 20% 이내인 경우 또는 회계·기금에 신규로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 등에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만으로 자금 소요를 조정할 수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다른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다른 특별회계·기금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① 예탁·예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회계·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고, ② 그 외 회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서에 회계·기금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재정 총괄 검토



1. 재정 수입

가. 개 요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수입은 637.4조원으로, 예산(642.4조원) 대비 5.0조원(△0.8%) 감소하였고, 전년 결산(594.5조원) 대비 43.0조원(7.2%) 증가하였음.

국세수입은 373.9조원이 수납되어 예산(372.1조원) 대비 1.8조원(0.5%)의 초과수납이 발생하였고, 전년 결산(336.5조원) 대비 37.4조원(11.1%) 증가하였음.

국세외수입은 263.4조원으로 예산 대비 7.0조원(△2.6%)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 결산 대비 18.5조원(7.2%) 증가하였음. 국세외수입 중 예산수입은 32.1조원으로 예산 대비 5.5조원(△14.6%)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 결산 대비 2.5조원(8.4%) 증가하였고, 기금수입은 231.3조원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1.5조원(△0.6%)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 결산 대비 3.1조원(1.4%)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 (A)	결산 (B)	본예산 대비 (B-A)	예산(C)	결산 (D)	예산 대비 (D-C)	전년 대비 (D-B)
총수입	612.2	594.5	△17.7	642.4	637.4	△5.0	43.0
1. 국세수입	367.3	336.5	△30.8	372.1	373.9	1.8	37.4
2. 국세외수입	244.9	257.8	12.9	270.4	263.4	△7.0	18.5
- 예산수입	28.2	29.6	1.4	37.6	32.1	△5.5	2.5
- 기금수입	216.7	228.2	11.5	232.8	231.3	△1.5	3.1
3. 세입세출외	-	0.1	0.1	-	0.1	0.1	△0.0

주) 세입세출외는 국고금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자료: 재정경제부

문의: 02-6788-5679

나. 국세수입

(1) 현황

2025년 국세수입은 총 373조 9,193억원이 징수되었음. 3대 세목인 소득세는 130조 4,526억원, 법인세는 84조 6,090억원, 부가가치세는 79조 1,790억원 수납되었음.

2025년 국세수입은 2024년 12월 국회 심의를 거친 본예산과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두 차례 편성되었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2025년 국세수입 수납실적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세수재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본예산 382조 4,296억원 대비 8조 5,103억원(△2.2%) 적게 징수되었고,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8,344억원(0.5%) 많이 징수되었으며, 세수재추계 결과 대비 3조 9,901억원(1.1%) 많이 징수되었음.

[2025년 국세수입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본예산 (2024.12.)	추경예산 (2025.6.)	세수재추계 (2025.9.)	결산
총국세	3,824,296	3,720,849	3,699,292	3,739,193
일반회계	3,718,050	3,614,603	3,582,302	3,614,941
○ 내국세	3,381,292	3,291,519	3,273,936	3,302,404
- 소득세	1,268,192	1,268,192	1,283,584	1,304,526
- 법인세	882,543	835,671	836,355	846,090
- 부가가치세	876,388	833,293	809,381	791,790
○ 교통세	151,048	140,012	130,824	132,351
○ 관세	84,093	84,093	73,970	76,409
○ 교육세	60,402	57,765	57,768	57,235
○ 종합부동산세	41,215	41,215	45,805	46,542
특별회계	106,246	106,246	116,989	124,252
○ 주세	32,093	32,093	32,025	32,120
○ 농어촌특별세	74,153	74,153	84,965	92,132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61.5조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2.4조원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추경예산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년 결산 대비 35.3조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추경예산 대비로는 1.8조원 증가하고, 전년 결산 대비로는 2.1조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 (A)	결산 (B)	본예산 대비 (B-A)	본예산	추경 예산 (C)	결산 (D)	예산 대비 (D-C)	전년 대비 (D-B)
총국세	367.3	336.5	△30.8	382.4	372.0	373.9	1.8	37.4
일반회계	356.1	326.2	△29.9	371.8	361.5	361.5	-	35.3
특별회계	11.2	10.4	△0.8	10.6	10.6	12.4	1.8	2.1

자료: 재정경제부

참고로 2025회계연도의 세목별 국세수입은 다음과 같음. 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68조 4,216억원, 종합소득세 21조 2,830억원, 양도소득세 19억 8,855억원 등을 합해 총 130조 4,526억원이 수납되었고, ② 법인세는 86조 6,090억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는 16조 4,799억원, ④ 부가가치세는 79조 1,790억원, ⑤ 개별소비세는 8조 5,144억원, ⑥ 3조 4,430억원, ⑦ 인지세는 7,637억원, ⑧ 과년도수입은 6조 7,989억원, ⑨ 교통·에너지·환경세 13조 2,351억원, ⑩ 관세 7조 6,409억원, ⑪ 교육세 5조 7,235억원, ⑫ 종합부동산세 4조 6,542억원, ⑬ 주세 3조 2,120억원, ⑭ 농어촌특별세 9조 2,132억원, ⑮ 방위세 1억원이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세목별 국세수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실적 (A)	2025년		2024년 실적대비		2025년 예산 대비	
		추경예산 (B)	실적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증감액 (E=C-B)	증감률 (E/B)
총국세	**3,365,324**	**3,720,850**	**3,739,193**	**373,869**	**11.1**	**18,344**	**0.5**
○ 내국세	2,982,594	3,291,519	3,302,404	319,810	10.7	10,885	0.3
1.소득세	1,174,180	1,268,192	1,304,526	130,346	11.1	36,334	2.9
신 고 분	362,116	414,698	411,685	49,569	13.7	△3,013	△0.7
-종합소득세	195,265	220,582	212,830	17,565	9.0	△7,752	△3.5
-양도소득세	166,852	194,116	198,855	32,003	19.2	4,739	2.4
원 천 분	812,063	853,494	892,840	80,777	9.9	39,347	4.6
-이자소득세	71,958	63,121	70,137	△1,821	△2.5	7,016	11.1
-배당소득세	42,680	46,757	45,530	2,850	6.7	△1,227	△2.6
-사업소득세	46,828	51,060	49,625	2,797	6.0	△1,435	△2.8
-근로소득세	610,491	647,310	684,216	73,725	12.1	36,906	5.7
-연금소득세	5,591	6,914	6,880	1,289	23.1	△34	△0.5
-기타소득세	23,533	26,647	24,021	488	2.1	△2,626	△9.9
-퇴직소득세	10,982	11,685	12,430	1,448	13.2	745	6.4
2.법인세	625,113	835,671	846,090	220,977	35.3	10,419	1.2
3.상속증여세	152,981	154,437	164,799	11,818	7.7	10,362	6.7
4.부가가치세	822,358	833,292	791,790	△30,568	△3.7	△41,503	△5.0
5.개별소비세	86,566	87,479	85,144	△1,422	△1.6	△2,335	△2.7
6.증권거래세	47,602	38,454	34,430	△13,172	△27.7	△4,024	△10.5
7.인지세	8,460	8,836	7,637	△823	△9.7	△1,200	△13.6
8.과년도수입	65,334	65,156	67,989	2,655	4.1	2,832	4.3
○교통·에너지·환경세	113,891	140,012	132,351	18,460	16.2	△7,661	△5.5
○관세	69,723	84,093	76,409	6,686	9.6	△7,684	△9.1
○교육세	53,738	57,765	57,235	3,497	6.5	△530	△0.9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46,542	4,695	11.2	5,327	12.9
○방위세	1	-	1	-	-	1	-
○주세	33,282	32,093	32,120	△1,162	△3.5	27	0.1
○농어촌특별세	70,249	74,153	92,132	21,883	31.2	17,979	24.2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정부는 2025년도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예산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재추계를 실시하여 9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고, 2025년 말 국세수입 실적은 9월 재추계 결과 대비 3조 9,901억원(1.1%) 증가하였음.

[2025년도 국세수입 예·결산내역 및 재추계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추경예산(A)	2025년도 재추계(B)	2025년도 결산	추경(A) 대비		재추계(B)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총 국 세	**3,720,850**	**3,699,292**	**3,739,193**	**18,344**	**0.5**	**39,901**	**1.1**
[일반회계]	3,614,604	3,582,302	3,614,941	338	0.0	32,639	0.9
◇ 내 국 세	3,291,519	3,273,936	3,302,404	10,885	0.3	28,468	0.9
ㅇ 소 득 세	1,268,192	1,283,584	1,304,526	36,334	2.9	20,942	1.6
■ 종 합 소 득 세	220,582	209,456	212,830	△7,752	△3.5	3,374	1.6
■ 양 도 소 득 세	194,116	195,628	198,855	4,739	2.4	3,227	1.6
■ 근 로 소 득 세	647,310	675,123	684,216	36,906	5.7	9,093	1.3
ㅇ 법 인 세	835,671	836,355	846,090	10,419	1.2	9,735	1.2
ㅇ 상 속 증 여 세	154,437	161,582	164,799	10,362	6.7	3,217	2.0
ㅇ 부 가 가 치 세	833,292	809,381	791,790	△41,503	△5.0	△17,591	△2.2
ㅇ 개 별 소 비 세	87,479	82,702	85,144	△2,335	△2.7	2,442	3.0
ㅇ 증 권 거 래 세	38,454	31,371	34,430	△4,024	△10.5	3,059	9.8
ㅇ 인 지 세	8,836	7,758	7,637	△1,200	△13.6	△121	△1.6
ㅇ 과 년 도 수 입	65,156	61,201	67,989	2,832	4.3	6,788	11.1
◇ 교통·에너지·환경세	140,012	130,824	132,351	△7,661	△5.5	1,527	1.2
◇ 관 세	84,093	73,970	76,409	△7,684	△9.1	2,439	3.3
◇ 교 육 세	57,765	57,768	57,235	△530	△0.9	△533	△0.9
◇ 종합부동산세	41,215	45,805	46,542	5,327	12.9	737	1.6
[특별회계]	106,246	116,989	124,252	18,006	16.9	7,263	6.2
◇ 주 세	32,093	32,025	32,120	27	0.1	95	0.3
◇ 농어촌특별세	74,153	84,965	92,132	17,979	24.2	7,167	8.4

자료: 재정경제부

(2)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 세수재추계 시 세입경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재정경제부는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세수 재추계 과정에서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세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먼저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살펴보자면,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 등으로 인해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목에서 세수오차가 발생하였음.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79조 1,790억원으로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이 예측치를 상회하여 본예산 대비 8조 4,596억원(△9.7%) 부족하였고 전체 세목 중 가장 큰 결손액을 기록함. 법인세 역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으로 3조 6,453억원(△4.1%) 부족하게 수납됨. 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3조 6,334억원(2.9%) 초과 수납됨.

자산시장 관련 세목에서도 상속증여세(13.6%)와 종합부동산세(12.9%)는 높은 초과수납률을 보인 반면,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대비 10.5% 부족하게 수납되는 등 두 자릿수의 높은 오차율이 발생함.

다음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입경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5년 세수결손이 우려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비교적 증감이 확실한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 6개 세목에 대해 총 10조 3,447억원을 감액경정하였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경정한 세목과 감액경정하지 않은 세목에 대해 살펴보면, 감액경정한 세목은 감액경정에 따라 세수오차가 본예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경정내역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주식시장 호조세나 대외 지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경정하지 않은 증권거래세·관세·종합부동산세에서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하여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경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1)]

1) 기획재정부는 ① (증권거래세) 6월 주식시장 호조세가 상당하여 하반기 세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연중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의 감소세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정 내역에 반영하지 않아 두 자릿수 이상의 오차율을 기록하였음. 관세는 내국세와 달리 대외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6월 추경 시점의 통관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감액 경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변동 및 보유세 관련 정책 변수가 추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또한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감액 및 증액 경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5% 이상의 오차가 지속되어 추계 모형 보정 작업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세수재추계 결과 역시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8월까지의 세수실적을 고려한 세수재추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오히려 세수오차가 확대되거나 여전히 세수오차가 5% 이상 발생하는 세목이 있음.

증여세(10.1%)와 증권거래세(9.8%)는 4분기 중 발생한 자산시장의 단기 거래량 급증 등 변동성을 세수 재추계 모형이 포착하지 못해 재추계액 대비 초과 수납됨. 또한 과년도수입은 11.1% 초과 징수되며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재추계 오차율을 기록한 바, 향후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행정소송 경과 등을 반영한 미시적인 모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세수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말까지의 집행 및 불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함께 보고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9월 재추계 결과는 당해 연도말까지의 국세수입의 수납액 전망을 바탕으로, 집행소요의 충당 가능성 및 기금 여유재원 투입 규모나 불용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함.

2025년 9월 발표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른 세출·지출 계획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출·지출계획이 연말까지 이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연말 재원부족이 초래된 측면도 있어 보임.

는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10.5% 적게 수납되었고, ② (관세) 중동사태 및 미국 관세정책 향방에 따라 환율 및 수입액 등의 전망이 불확실하여 관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9.1% 적게 수납되었으며, ③ (종합부동산세) 공동 공시지가 등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수를 본예산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12.9% 많이 수납되었음.

[2025년 국세수입 예산 및 결산 세부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B) 대비		세수재추계(C) 대비	
	본예산 (A)	추경예산 (B)	세수 재추계(C)	결산 (D)	차액 (D-A)	비율 (D-A)/A	차액 (D-B)	비율 (D-B)/B	차액 (D-C)	비율 (D-C)/C
총국세	3,824,296	3,720,849	3,699,292	3,739,193	△85,103	△2.2	18,344	0.5	39,901	1.1
일반회계	3,718,050	3,614,603	3,582,302	3,614,941	△103,109	△2.8	338	0.0	32,639	0.9
○ 내국세	3,381,292	3,291,519	3,273,936	3,302,404	△78,888	△2.3	10,885	0.3	28,468	0.9
1. 소득세	1,268,192	1,268,192	1,283,584	1,304,526	36,334	2.9	36,334	2.9	20,942	1.6
종합소득세	220,582	220,582	209,456	212,830	△7,752	△3.5	△7,752	△3.5	3,374	1.6
양도소득세	194,116	194,116	195,628	198,855	4,739	2.4	4,739	2.4	3,227	1.6
이자소득세	63,121	63,121	67,618	70,137	7,016	11.1	7,016	11.1	2,519	3.7
배당소득세	46,757	46,757	43,375	45,530	△1,227	△2.6	△1,227	△2.6	2,155	5.0
사업소득세	51,060	51,060	49,563	49,625	△1,435	△2.8	△1,435	△2.8	62	0.1
근로소득세	647,310	647,310	675,123	684,216	36,906	5.7	36,906	5.7	9,093	1.3
연금소득세	6,914	6,914	6,799	6,880	△34	△0.5	△34	△0.5	81	1.2
기타소득세	26,647	26,647	23,986	24,021	△2,626	△9.9	△2,626	△9.9	35	0.1
퇴직소득세	11,685	11,685	12,037	12,430	745	6.4	745	6.4	393	3.3
2. 법인세	882,543	835,671	836,355	846,090	△36,453	△4.1	**10,419**	**1.2**	9,735	1.2
신고분	658,569	596,604	603,666	609,029	△49,540	△7.5	**12,425**	**2.1**	5,363	0.9
원천분	223,974	239,067	232,689	237,061	13,087	5.8	**△2,006**	**△0.8**	4,372	1.9
3. 상속증여세	145,059	154,437	161,582	164,799	19,740	13.6	**10,362**	**6.7**	3,217	2.0
상속세	84,637	94,015	103,066	100,393	15,756	18.6	**6,378**	**6.8**	△2,673	△2.6
증여세	60,422	60,422	58,516	64,406	3,984	6.6	3,984	6.6	5,890	10.1
4. 부가가치세	876,388	833,293	809,381	791,790	△84,598	△9.7	**△41,503**	**△5.0**	△17,591	△2.2
5. 개별소비세	96,663	87,479	82,702	85,144	△11,519	△11.9	**△2,335**	**△2.7**	2,442	3.0
6. 증권거래세	38,454	38,454	31,371	34,430	△4,024	△10.5	△4,024	△10.5	3,059	9.8
7. 인지세	8,837	8,837	7,758	7,637	△1,200	△13.6	△1,200	△13.6	△121	△1.6
8. 과년도수입	65,157	65,157	61,201	67,989	2,832	4.3	2,832	4.3	6,788	11.1
○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	140,012	130,824	132,351	△18,697	△12.4	**△7,661**	**△5.5**	1,527	1.2
○ 관세	84,093	84,093	73,970	76,409	△7,684	△9.1	△7,684	△9.1	2,439	3.3
○ 교육세	60,402	57,765	57,768	57,235	△3,167	△5.2	**△530**	**△0.9**	△533	△0.9
○ 종합부동산세	41,215	41,215	45,805	46,542	5,327	12.9	5,327	12.9	737	1.6
특별회계	106,246	106,246	116,989	124,252	18,006	16.9	18,006	16.9	7,263	6.2
○ 주세	32,093	32,093	32,025	32,120	27	0.1	27	0.1	95	0.3
○ 농어촌특별세	74,153	74,153	84,965	92,132	17,979	24.2	17,979	24.2	7,167	8.4

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을 경정한 세목은 굵은 글씨로 표현함

자료: 재정경제부

(나) 지속적인 조세지출 정비 및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기준 강화 필요

첫째, 2025년 조세지출 국세감면율은 전망과 실적 모두 법정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재정경제부는 일몰기한의 원칙적 적용, 일몰기한 연장 제한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일반 재정지출과 달리 세법상 감면·공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어 규모와 효과가 사전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매년 정부가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간 조세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경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2)3)]

2026년 2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이 신설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4)]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3)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8월 조세지출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음.

재정경제부의 「2025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1조원으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5년도 국세감면액 전망치 76.5조원에 비해 감소하였음.[5)]

[2023~2026년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2026년 전망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전망	조세지출결산서 기준 실적	
○ 국세감면액 (A)	69.8	70.5	76.5	76.1	80.5
○ 국세수입총액[1)] (B)	370.4	365.7	400.3	402.1	419.6
○ 국세감면율 [A/(A+B)]	15.8	16.1	16.0	15.9	16.1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4.3	14.6	15.5	15.5	16.5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3) 2025년 전망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25.9.)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의 연도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및 2025년도 조세지출 결산서를 재가공함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6)]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7)]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5)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5년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0조원임.

6)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수납액(또는 국세수입 예산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임

그러나 최근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5%p, 0.4%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였음.

[2020~2026년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실적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실적	2026전망
국세감면액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05,171	761,084	805,277
국세수입액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3,656,829	4,021,024	4,195,673
국세감면율	14.8	13.5	13.0	15.8	16.1	15.9	16.1
법정상한	13.6	14.3	14.6	14.3	14.6	15.5	16.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2026년에는 국세감면율이 법정상한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국세감면율의 하락이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의 효과와 세수증가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임.[8)]

정부는 조세지출의 항목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보유정도에 따라 각 조세지출 항목을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및 구조적 지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9)]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항목 242개 중 구조적 지출이 8개, 잠재적 관리대상이 43개, 적극적 관리대상이 191개임.

[조세지출 관리대상 유형]

구분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
내용	조세지출의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	조세지출의 특성을 일부 갖춘 항목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어 정비가 곤란한 항목
관리가능성	비과세·감면 정비 가능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고 조세지출 특성 중 한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 곤란	정비가 사실상 곤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이 중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항목 수를 살펴보면,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63개(33.0%),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128개(67.0%)임. 다만 일

8)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가산하는데, 2023~2025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16%대를 유지함에 따라 법정한도가 2023년 14.3%에서 2026년 16.5%로 상승하였음.

9) '특정성'은 조세지출이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대체가능성'은 조세지출이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며, '폐지가능성'은 특정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행가능 하여야 함을 의미함.

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 128개 중에서도 일몰이 4회 이상 연장된 항목이 71개(적극적 관리대상 전체의 37.2%)임.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적극적 관리대상의 일몰 현황]

<table>
<tr><td colspan="4">적극적 관리대상: 191개(100.0%)</td></tr>
<tr><td colspan="2">일몰기한 없음</td><td colspan="2">일몰기한 있음</td><td>128개(67.0%)</td></tr>
<tr><td colspan="2" rowspan="3">63개
(33.0%)</td><td colspan="3">일몰기한 연장 횟수</td></tr>
<tr><td colspan="2">3회 이하</td><td>57개(29.8%)</td></tr>
<tr><td colspan="2">4회 이상</td><td>71개(37.2%)</td></tr>
</table>

주 1) 조세특례의 일부라도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몰기한이 있는 것으로 봄
2) 괄호 안의 비중은 적극적 관리대상 191개 대비 비중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잠재적 관리대상의 일몰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19개(44.2%),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24개(55.8%)임.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 24개 중에서도 일몰이 4회 이상 연장된 항목이 12개(잠재적 관리대상 전체의 27.9%)임.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잠재적 관리대상의 일몰 현황]

<table>
<tr><td colspan="4">잠재적 관리대상: 43개(100.0%)</td></tr>
<tr><td colspan="2">일몰기한 없음</td><td colspan="2">일몰기한 있음</td><td>24개(55.8%)</td></tr>
<tr><td colspan="2" rowspan="3">19개
(44.2%)</td><td colspan="3">일몰기한 연장 횟수</td></tr>
<tr><td colspan="2">3회 이하</td><td>12개(27.9%)</td></tr>
<tr><td colspan="2">4회 이상</td><td>12개(27.9%)</td></tr>
</table>

주 1) 조세특례의 일부라도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몰기한이 있는 것으로 봄
2) 괄호 안의 비중은 잠재적 관리대상 43개 대비 비중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조세특례는 한번 도입되면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조세특례가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폐지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대상 및 잠재적 관리대상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의 원칙적 적용, 일몰기한 연장 제한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10)11)]

10) 참고로 OECD는 직접세에 대한 조세지출을 줄이고 간접세 및 교정과세를 확대하는 등의 조세개혁을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7.)

11) 참고로 재경부는 2026년 3월 2026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통해 일몰도래시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시 폐지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일몰 재도래시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설계 등을 의무화하는 일몰제도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이 실제 준수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조세지출 관리 강화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나,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치 중'인 사항으로 보고한 바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조세지출 관리 강화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ㅇ [지적사항]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국세감면율 한도제, 예비타당성 평가제, 의무심층 평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또한 국가 세입·세출결산서에 조세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 조세지출을 통한 정책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 및 의무심층 평가제 등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직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을 최대한 조기에 제출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 2025.12.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주된 면제사유로 활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제1호는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12)]

2018~202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 건수보다 면제 건수가 많고,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건수는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으며, 모든 면제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제1호에 근거하여 면제하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 ⑥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 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고 있음.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제6항제1호가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2018~202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1	2	3	1	1	1	2	1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9	3	2	3	7	6	6	3
면제비율	90%	60%	40%	75%	87.5%	85.7%	75%	75%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제1호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응’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예비타당성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면제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평가 면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항목, 내용 및 사유]

항목	내용	면제사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	(제1호) 저출산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녀 양육부담 완화 필요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15~45%)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제1호)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부문 유도를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한 대응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제1호) 저출산 극복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근로자 부담 완화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이유로 예비타당성평가에 대한 면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종합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13)14)]

13) 예를 들어, 2022년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2023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024년 ‘결혼세액공제 신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2025년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예체능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2018~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건수보다 면제건수가 많고,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건수는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음. 또한 모든 면제사유가 추상적·포괄적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제1호(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근거하여 면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 2025.12.

재정경제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로 ‘예타면제요건 구체화 방안 마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 중’으로 조치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하였고, 2026년 8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음.

다만 정부가 구체화하였다고 발표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는 ‘경제전반,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의 위축 또는 위축 우려,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 악화 우려’ 등 종전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분류하여 상술(詳述)한 것일뿐 객관화된 지표를 사용하는 등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저출산 대응을 사유로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였음.

1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26.1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조특법 §142, 조특령 §135)]

현행	개정안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 면제사유 구체화
ㅇ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신 설> ㅇ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추진사항 ㅇ 국제대회, 국가행사 등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사항 ㅇ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를 개선하는 경우	ㅇ 다음의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 거친 사항 -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 또는 위축 우려 -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에 위축 또는 위축 우려 -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 악화 우려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적용시기> 20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신규 특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사전에 평가하여,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추상적·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면제를 최소화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다)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재정경제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조세지출결산서의 제출기한을 앞당김으로써 국회의 예산안·결산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인 조세지출 현황 및 적정성 등을 실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2025년 조세지출 정비현황을 담아 신설·폐지·제도 재설계 항목의 개수와 내역 그리고 2026년 세수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15]

1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26.10.

첫째,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서 ‘단순 일몰연장’ 항목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조세지출예산서의 정보만으로는 전체적인 조세지출 정비현황을 알기 어렵고 실질적인 조세지출 정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순 일몰연장은 종료되었어야 할 조세특례가 유지되면서 추가적인 국세 감면을 유발하므로 조세지출 정비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나,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해당 정보가 누락되어 단순 일몰연장된 조세특례의 내역과 세수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둘째,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단순히 정비된 항목의 내용과 개수만 제시되어 조세지출 정비가 국세감면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고, 시계(視界)가 3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이미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 전망이 완료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도 추정 곤란으로 표시하고 있음.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서는 세목별·연도별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에 개별 조세특례의 세수효과 등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조세특례 내용과 개수만 표시하였음. 또한 세법개정안의 첨부자료에는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가 분석되어, 다음다음 연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연도별 세수효과를 적시하였으나 조세특례예산서에서는 다음연도 세수효과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있음.[16)]

또한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는 국회의 면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출기한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7)] 이는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시에 조세지출결산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심사하기에 매우 촉박함으로써 면밀한 심사가

16) 직접세의 경우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다음 연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고,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해에는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현행의 t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t-2년도 실적, t-1년도 잠정치, t년도 전망치를 제시하는 3년 단위의 시계에서 작성되고 있으나, 조세특례 정비실적에 한해서라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t+1년도 세수효과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5년간 결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

회계연도	위원회 수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미완료 위원회
			최초	최종	최초	최종	
2020	17	2021.6.1.(화)	8. 17.(화)	9. 13.(월)	8. 25.(수)	9. 16.(목)	1
2021	17	2022.7.25.(월)	8. 17.(수)	9. 15.(목)	8. 19.(금)	9. 27.(화)	1
2022	17	2023.6.1.(목)	8. 17.(목)	9. 4.(월)	8. 24.(목)	9. 7.(목)	2
2023	17	2024.6.11.(화) (최초) 2024.6.27.(목) (최종)	8. 13.(화)	9. 9.(월)	8. 26.(월)	9. 25.(수)	-
2024	17	2025.6 2.(월)	8. 18.(월)	9. 2.(화)	8. 20.(수)	9. 4.(목)	1

주 1) 정보위원회 포함
2) 최종 상정일, 최종 의결일은 미상정, 미의결 위원회 제외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 5년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 일정을 살펴보면, 2024년(2023회계연도 결산)에는 8월 13일, 그 외에는 8월 17일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개시하였음. 조세지출결산서가 8월 16일에 제출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기에도 촉박하여, 재정지출 결산과 조세지출 결산을 면밀히 연계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재정경제부는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은 전년도 세수실적 마감 및 분석이 완료되어야 가능한 측면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8월 16일로 규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에 기반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지려면 조세지출 실적은 법정기한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에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재정경제부의 주장대로 조세지출 실적이 늦게 도출될 경우에는 차년도 조세특례 정비사항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18] 전년도 조세지출 결산실적에 대한 분석이 8월 중순에서야 완료된다면 이를 분석·검토하여 조세특례 개정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고 9월 초에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19] 제도폐지·구조

18)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2026.7.15.

19)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입법예고가 7월 말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의 개정사항이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조세지출 결산이 적어도 6월에는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재설계·재정지출로의 전환 등이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에 기반하여 면밀히 검토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 없이 조세지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처럼 조세지출결산서의 제출을 앞당기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의 조세특례 정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경제부는 이를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법정기한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국세외수입

(1) 현황

총수입 기준 2025회계연도 국세외수입 수납실적은 263조 4,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6,028억원(2.2%)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로는 6조 9,342억원(△2.6%) 감소하였음.

이 중 예산수입은 32조 1,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890억원(8.4%)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5조 4,569억원(△14.5%) 감소하였고, 기금수입은 231조 2,952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3조 1,139억원(1.36%)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1조 4,772억원(△0.6%)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총수입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A)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대비 (D-C)	전년대비 (D-B)
국세외수입	2,449,007	2,578,034	129,027	2,703,404	2,634,062	△69,342	56,028
- 예산수입	281,959	296,220	14,262	375,680	321,110	△54,569	24,890
- 기금수입	2,167,048	2,281,814	114,766	2,327,724	2,312,952	△14,772	31,13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2025년 국세외수입의 수입관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기여금은 95조 9,066억원, 재산수입은 63조 3,055억원, 경상이전수입은 49조 6,536억원, 융자및전대차관 원금회수는 29조 4,299억원이 수납되었음.

[국세외수입 연도별 결산 현황(총수입 기준)]

(단위: 억원)

수입관(코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국세외수입	2,263,599	2,215,420	2,295,754	2,578,034	2,634,062	56,028
사회보장기여금(07)	781,036	834,444	889,175	928,022	959,066	31,044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10)	81,200	65,212	80,251	81,720	81,006	△714
재산수입(11)	566,349	472,339	423,692	569,375	633,055	63,680
경상이전수입(12)	419,539	446,538	479,365	530,004	496,536	△33,468
재화및용역판매수입(13)	107,609	113,149	122,329	126,273	134,690	8,417
수입대체경비수입(14)	1,382	1,764	2,674	2,724	2,660	△65
관유물매각대(15)	26,196	30,068	36,997	39,663	32,751	△6,912
융자및전대차관 원금회수(20)	280,287	251,607	261,271	300,253	294,299	△5,954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31)	-	300	-	-	-	-

자료: 재정경제부

(2) 검토의견

(가) 대규모 국세물납주식 매각 실패에 따른 총세입 결손 발생 문제

2025년 3.7조원 규모의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인한 세외수입의 결손은 연말 국고금 부족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는바, 정부는 향후 물납주식매각대 계상 시 매각차질로 인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시부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납세자가 상속세의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물납된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후 가치평가를 거쳐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며,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함.

정부는 2022년 2월 넥슨 故김정주 회장의 별세에 따라 2023년 2월 ㈜NXC 주식 851,968주(지분율 약 29.3%, 물납주식 가치 4조 7,149억원)를 상속세로 물납받아 2대 주주가 되었음. 정부는 해당 주식의 규모를 고려하여 2025년과 2026년 연내 매각을 목표로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 예산을 2025년 3조 7,441억원, 2026년 1조 63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3년 12월 2회의 온비드 공개경쟁입찰 유찰에 이어, 2024년 매각자문사단 선정 및 법률·회계실사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예비입찰마저 모두 유찰되며 2025년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결과적으로 ㈜NXC 주식 매각 실패로 인해 2025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 3조 7,441억 4,000만원 중 수납액은 3.5%에 불과한 1,307억 4,300만원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3조 6,134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주)NXC 매각 절차 추진 경과]

(단위: 주, 억원)

연도	회차	방식	입찰기간	구분	주식수	매각예정가액	비고
2023	1회	공개경쟁[1)]	12.18~12.19	비상장	851,968	47,149	유찰
	2회	공개경쟁[1)]	12.25~12.26	비상장	851,968	47,149	유찰
2025	본공고	공개경쟁[2)]	6.30~8.25[3)]	비상장	851,968	-	유찰
	재공고	공개경쟁[2)]	8.27~9.08[3)]	비상장	851,968	-	유찰
2025	(주)NXC의 자사주 매입			비상장	7,962	463	-
2026	(주)NXC의 자사주 매입			비상장	184,001	10,227	-

주: 1) 온비드 국유증권 공개경쟁입찰 진행건
2) 매각주간사를 통한 주식 매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진행건
3) 2단계 절차(예비입찰절차 및 최종입찰절차) 중 예비입찰절차 기간 해당
자료: 재정경제부

이러한 세외수입 결손은 일반회계 세입의 실질적 결손으로 이어져 연말 국고금 관리의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였음. 2025년 결산 기준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9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감소(△3.7조원)에 기인함.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1.8조원 초과 수납되었으나 세외수입이 △3.9조원 과소 수납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총세입이 예산 대비 △2.1조원 과소 수납되었음.

[2025년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예산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535.9	600.0	597.9	△2.1	62.0
국세수입	336.5	372.1	373.9	1.8	37.4
세외수입	199.4	227.9	224.0	△3.9	24.6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보도자료”, 2026.2.10.

세입이 당초 계획 대비 과소 수납됨에 따라, 세출 역시 계획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의 경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이 828억원 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국방비 등의 세입 재원 부족에 따른 불용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세입결손으로 연말 세출예산 집행 및 이월이 제약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상 잉여금 (A-B)	이월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597.9	591.0	6.9	3.7	3.2
일반회계	493.2	491.0	2.2	2.1	0.1
특별회계	104.7	100.0	4.7	1.6	3.1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보도자료”, 2026.2.10.

만약 ㈜NXC 주식 매각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국방비 등의 필수 예산 역시 정상적으로 집행 가능했을 것이므로, 향후 물납주식매각대 계상 시 매각차질로 인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정부출자수입의 과소추계 시정 및 편성 투명성 제고 필요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의 과소추계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및 배당성향 등을 면밀히 산정하여 추계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2025.5.) 및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2026.5.)를 통해 당해연도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배당내역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음.

2025년에는 40개의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19개 기관을 제외하고 21개 정부출자기관이 정부배당으로 총 2조 2,987억원을 납부하였음. 2026년에는 40개의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20개 기관을 제외하고 20개 정부출자기관이 정부배당으로 총 2조 7,951억원을 납부하였음.

[2025년 및 2026년 정부출자기업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2025년 정부배당금			2026년 정부배당금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기금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기금
1	한국토지주택공사	1,491	331	1,160	-	-	-
2	중소기업은행	5,053	5,053	-	5,968	5,968	
3	한국산업은행	7,587	6,972	615	8,806*	8,101	705
4	한국주택금융공사	593	557	36	380	357	23
5	한국수출입은행	2,828	2,801	27	4,762	4,717	45
6	한국가스공사	351	302	49	279	240	39
7	한국공항공사	-	-	-	-	-	-
8	부산항만공사	265	265		109	109	
9	한국자산관리공사	104	87	17	521	465	56
10	울산항만공사	163	163	0.1	92	92	0
11	인천항만공사	272	201	71	287	212	75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93	93	-
13	한국조폐공사	39	39	-	48	48	-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18	-	4	4	-
15	한국부동산원	37	37	-	35	35	-
16	한국방송공사	-	-	-	-	-	-
17	한국농어촌공사	54	54	-	188	188	-
18	한국전력공사	249	249	-	1,802	1,802	-
19	한국관광공사	-	-	-	-	-	-
20	한국교육방송공사	-	-	-	-	-	-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22	한국수자원공사	-	-	-	-	-	-
23	한국석유공사	-	-	-	-	-	-
24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	-
25	한국철도공사	-	-	-	-	-	-
26	서울신문사	-	-	-	-	-	-
27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28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29	새만금개발공사	-	-	-	-	-	-
30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	-	-	-	-	-
31	한국도로공사	340		340	260		260
32	인천국제공항공사	2,210		2,210	3,194		3,194

(단위: 억원)

기관명		2025년 정부배당금			2026년 정부배당금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기금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기금
33	주택도시보증공사	-	-	-	-	-	-
34	한국투자공사	1,138	-	1,138	835	-	835
35	대한송유관공사	40	-	40	42	-	42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	-	-	-	-	-
37	한국지역난방공사	155		155	246		246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9	대한석탄공사	-	-	-	-	-	-
40	주식회사에스알	0	-	0	-	-	-
합 계 (배당실시기관)		22,987 (21개)	17,126 (15개)	5,860 (14개)	27,951 (20개)	22,430 (15개)	5,521 (12개)

주) 2026년 한국산업은행의 정부배당에는 재정모펀드 회수자금(2,494억원)이 포함됨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3년간 정부출자수입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정부출자수입은 과소편성으로 인해 6,000억원 이상의 초과수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반대로 특별회계·기금의 정부출자수입은 과다편성으로 인해 2024년 2,617억원, 2025년 4,360억원, 2026년 302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2024~2026년 정부출자수입 예산 및 결산 내역]

(단위: 억원, %)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예산	실적	증감	비율	예산	실적	증감	비율	예산	실적	증감	비율
배당수입	17,729	21,322	+3,593	20.3	20,674	22,987	+2,313	11.2	20,324	27,951	+7,627	37.5
일반회계	9,823	16,033	+6,210	63.2	10,454	17,126	+6,672	63.9	14,501	22,430	+7,929	54.7
특별회계·기금	7,906	5,289	△2,617	△33.1	10,220	5,860	△4,360	△42.7	5,823	5,521	△302	△5.2

자료: 재정경제부

정부는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심사 시 기관별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정부출자수입의 과소·과다편성에 대해 검토할 수 없는 반면, 결산 심사 시에는 전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부배당의 적정 여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논의할 실익이 크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20]

20) 2025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결산은 실질적으로 정부출자기업의 2024년도 당기순이익의 전망과 실적의 차이를 2026년도에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부터 결산 심사까지 2년간의 시차가 발생함.

참고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 대해 기관별 예상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에 대해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으나,[21] 재정경제부는 개별 기업별 금년도 예상 당기순이익은 상장법인의 공시되지 않은 당기순이익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투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정보에 대한 공정공시 의무 위반 우려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서는 정보의 적시성 제공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이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0개의 정부출자기업 중 실제 장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은 4개(중소기업은행·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불과하고 그 외 기업은 주식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경제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22]

또한 이미 정부출자기업의 정부배당이 완료된 이후 국회에 사후적으로 제출되는 설명자료 역시 정부배당 협의·조정 내역이 갈수록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어, 재정경제부는 향후 배당내역 자료를 보다 성실히 작성·제출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매년 5월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살펴보면, ① 2023년까지는 기관별 배당성향 도출 시 기관의 목표배당성향에 대해 '40%±3%'로 기재하여 목표수준 및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이를 생략하고 있고, ② 2024년까지는 최종배당성향의 계량지표에 대해 전년 우수배당기업(△1%), 사회책임지표(△0.2%)의 증감요인을 표시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이를 생략하고 있음.[23]

---

21) 기관별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경우 기관별 예상 배당금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충실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관별 예상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22) 재정경제부는 상장기업수가 적어 비상장기업 수치만 선별적으로 공개할 경우, 전체 예산 규모와의 연동성으로 상장기업의 실적 전망을 자의적으로 추정 가능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 질서 유지 위해 신중 필요

23) 재정경제부는 2024년까지는 최종배당성향의 계량지표는 도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 생략한 것으로 향후 자세히 표기 하겠다고 설명함.

[정부 배당 산정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배당 여부 판단	**기관별 배당성향 도출**				**최종배당성향**
당기순이익 - 이월결손금액 - 법정적립금 > 0 → 배당가능	당기 순이익 (A)	기관별 목표배당성향 (B)	특이사안 반영(± α) (C)	실제배당 가능금액 (D=A×B-C)	기관별 특이소요 반영(부채비율 등) → 기업별 배당성향 확정
	→ 기업별 배당성향(D/A) 도출				

자료: 재정경제부

(다) 세입·수입예산 과소 계상

일부 수입과목은 연례적으로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과소 계상되고 있으므로, 과거 연평균 수납액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수납실적과 관계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수탁수입 및 자체수입예산의 과소추계(국무조정실)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초과수입과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수탁수입예산이 실제 수입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자체수입 과소계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근 결산실적을 수탁수입예산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등 편성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및 2025년 결산 결과를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육아정책연구소·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5개 기관은 2년 연속 30억원 이상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4개 기관은 30억원 이상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음.

정부 정책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수탁수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기관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초과수입과 결산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수입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동일 기관에서 매년 대규모 수입 과소추계가 반복되는 행태는 특별한 경영성과 개선이나 예산 절감 노력 없이도 매년 초과수입 목표를 손쉽게 달성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켜 기관 평가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② 신용보증기금 수입과목 연례적 과소 계상(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기금 수입과목 중 정부출자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고정자산매각익 등은 매년 꾸준히 수입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입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소 계상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정부출자수입의 유동화회사보증 SPC 출자배당금 및 대물주식배당금 등은 유동화회사보증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매년 꾸준히 수입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또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구상채권 회수 실적과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채권·주식 회수 실적이 매년 계획 대비 꾸준한 차이를 보임.

일시적 수입의 발생 시기에 대한 정밀 예측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계획과 실적 간 격차가 최소 6배에서 최대 1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③ 한국은행 잉여금의 과소 계상(기획재정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 과소추계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초과수납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한국은행이 추계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에 따라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예산안을 산정하나, 실제 결산액과의 괴리가 지속되었음.

2024년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은 7조 8,189억원이며, 이 중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한국은행 잉여금(정부납입금) 5조 4,491억원이 수납되었음. 당초 본예산에서는 4조 2,0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월 말 수납이 완료된 이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초과수납분 1조 2,491억원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경정하였음.

2025년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3,275억원으로,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한국은행 잉여금 10조 7,050억원이 2026년 2월에 수납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3조 4,369억원이 초과수납된 것임.

이처럼 한국은행 잉여금의 규모가 10조원을 상회하여 주요한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재정경제부는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를 보다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④ 정부출자수입의 과소 계상(기획재정부)

최근 3개년 정부출자수입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정부출자수입은 과소편성으로 인해 6,000억원 이상의 초과수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별회계·기금의 정부출자수입은 과다편성으로 인해 2024년 2,617억원, 2025년 4,360억원, 2026년 302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이처럼 정부출자수입의 추계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배당 대상 정부출자기업들이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배당성향 산정의 구체적 기초자료와 내부 산출근거가 국회에 투명하게 제출되지 않고 세외수입 예산안의 배당내역이 간략하게 작성되고 있음.

이는 국회가 사후적으로 재정당국의 기관별 배당성향 도출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며, 정부배당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국회에 함께 제출하고 정부배당내역을 충실히 작성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⑤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 과소 계상(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과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각각 175.7%, 269.0%로 과소계상에 따른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최근 3년간 예산액·계획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과년도 수납 실적만으로는 해당 수입의 발생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추계 시 과년도 수납액 평균에 주로 의존하기보다, 회계·기금별 국고보조금 교부 규모, 전년도 집행잔액 전망, 정산 완료 예정액, 반납 가능 시기 및 과년도 미수납액 회수 가능액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계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세입·수입예산 과다 계상

일부 수입과목은 수납실적에 비해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재원부족에 따른 재정운용상 어려움을 발생시키거나 수납가능성이 없는 과목이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① 토지대여료 세입예산 과다 편성(대법원)

대법원 소관 국유 토지에 대한 임대 및 대여 수입을 관리하는 토지대여료 세입과목은 실제 임대계약 가능 여부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풀려 편성됨에 따라 세입예산의 신뢰성이 우려됨.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대법원이 당초 계상한 토지대여료 세입예산액은 9억 1,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을 거쳐 수납된 금액은 3억 6,600만원에 불과하여 예산 대비 수납률이 39.9% 수준에 머무름. 이와 같은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은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을 유발하므로 대법원은 소관 국유지의 실제 임대차 계약 현황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과다 편성(기획재정부)

국세물납주식매각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물납증권 매각대금의 정산 납입금을 국고에 세입 조치하는 비목으로, 정부는 2022년 2월 넥슨 故 김정주 회장의 별세에 따라 2023년 2월 ㈜NXC 주식 851,968주(지분율 약 29.3%, 물납주식 가치 4조 7,149억원)를 상속세로 물납받아 2대 주주가 되었으며,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을 2025년 3조 7,441억원, 2026년 1조 63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그러나 비상장 주식인 ㈜NXC의 공개경쟁입찰 및 예비입찰이 모두 유찰되며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2025년 12월 자사주 취득 절차를 통해 463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침. 결과적으로 2025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 3조 7,441억 4,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3.5%에 불과한 1,307억 4,300만원에 머물러, 예산 대비 3조 6,134억원 규모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은 일반회계 세입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져 세외수입 예산이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9조원 감소하는 데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고 연말 국고금 관리의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비상장주식 매각 시장 상황과 차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마)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과태료 및 가산금 등 일부 수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수납실적 저조사유를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①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 수납 부진(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은 각각 45.9%, 61.0%, 0.7%이고 세입과목의 수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수납된 체납 세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체납 발생 경과 기간에 따른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의 장기 미수납 건의 비중이 상당하여 수납률이 낮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가산금은 과징금·과태료의 체납에 대해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행정벌이므로, 과징금·과태료의 미수납이 장기화될수록 가산금의 미수납 또한 장기화될 수 있음.

특히 2026년 이후 제분·당 담합에 대해 가격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향후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악화되지 않도록 미수납된 체납 세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② 시설계약사업수입 미수납액 증가(조달청)

조달청의 공사계약·기술용역·맞춤형서비스·총사업비 검토·설계적정성 검토 및 공사원가사전검토에 따른 수수료가 수납되는 세입과목인 시설계약사업수입의 미수납 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설계약사업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중은 2021년 4.9%, 2022년 7.1%, 2023년 8.8%, 2024년 9.6%, 2025년 9.8%로 5년 연속 상승하였고 2025년 미수납 누적액은 60억 8,500만원에 달함.

특히 국회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조달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시설계약 요청 시 조달수수료 납부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설계약사업수입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채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③ 징계부가금 미수납 채권 관리 강화 필요(국방부)

국방부는 징계부가금의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2024년도 및 2025년도 징계부가금 수납률은 0.7%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군 내부 비위 행위자 등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의 체납 채권이 상당한 규모로 미수납된 채 관리되고 있음. 국방부는 미수납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군에 안내하는 등의 노력하였다고 설명하나,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증가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향후 국방부는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인 국세청에 미수납 채권 관련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미수납 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④ 변상금 미수납 채권 관리 강화 필요(국방부)

국방부는 변상금과 관련하여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고 미수납 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변상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85.3%, 2023년 78.4%, 2024년 13.8%, 2025년 13.7%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수납액의 규모는 2022년 104억 7,600만원, 2023년 114억 900만원, 2024년 112억 4,000만원, 2025년 101억 9,900만원으로 매년 100억원을 상회하였음. 한편 국방부는 2025년에 11억 5,600만원에 달하는 미수납 채권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2025년 기준 미수납액 101억 9,900만원을 미수납 사유별로 살펴보면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은 90억 2,300만원(88.5%), 납기 미도래는 7억 5,300만원(7.4%), 징수유예 등은 4억 2,400만원(4.1%)으로 나타남.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 채권은 적극적인 회수 전략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까지의 수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불납결손 처리는 징수권 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은닉재산 추적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재 파악 등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⑤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지자체 반납 지연(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반

납이 매년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징수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반납 지연을 방지하고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미수납액은 50억~180억원 수준으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2,870억~4,700억원 수준으로 수납률이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이전에 징수 결정되었으나 미수납된 금액이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6억 7,4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은 346억 5,200만원으로, 3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보조사업 완료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수납되지 못하였음.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금 추가 교부 중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납지연 등으로 인한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저조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사업별 수납관리와 장기 미수납액 회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774억 6,9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은 748억 6,7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6.6%를 차지함. 특히 2024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만 697억 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93.2%가 직전연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반납 지연에서 발생하였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정산 후 반환받는 성격의 수입이므로, 징수결정 이후 실제 수납이 지연될 경우 보조사업 정산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미수납액을 지자체별·사업별·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회수 가능성, 납부협의 진행상황 및 법령상 불납결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바) 수입대체경비 예산 관련

수입대체경비는 예견하기 어려운 행정서비스 수요 급증 시 해당 세입으로 즉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고 과소계상으로 인한 초과 수입·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①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인건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보건복지부)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은 일용임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성 경비에 지출이 불가능함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초과수입이 사용되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초과수입의 지출가능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초과지출승인액으로 집행한 인건비성 경비 현황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6명에게 2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시험연구비로 기간제근로자(연구원) 8명에게 3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음.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액으로 외부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 등 기간제근로자에게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사례임.[24)]

보건복지부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초과수입의 지출가능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일용임금과 시험연구비가 아닌 상용임금으로 집행해야 할 성질이므로 예산 편성 시 상용임금에 계상하여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초과지출승인 규모 과다(보건복지부)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24) 이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는 상용임금에 계상하겠다고 설명함.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사업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고 있음. 2021~2025년 초과지출승인액은 2021년 24억 5,300만원, 2022년 28억 5,000만원, 2023년 37억 3,800만원, 2024년 31억 4,700만원, 2025년 33억 8,300만원이고,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1년 845.6%, 2022년 904.7%, 2023년 1,241.8%, 2024년 1,427.2%, 2025년 1,521.7%에 달함.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과소계상할 경우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타 사업 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국회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초과지출을 통해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은 수입대체경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③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예산 미편성 사업 수행 부적정(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사업,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사업 등을 수입대체경비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대체경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비를 계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5년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입 및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사업, 직장인 정신건강 사업 운영 사업,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사업을 수입대체경비로 수행하면서 각각 3,000만원, 1,300만원,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립나주병원은 이러한 사업들을 약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초과지출승인을 통해 사업비를 전액 조달하고 있는데,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업까지 적용하는 것은 수입대체경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통합발주 재원 혼용 및 적정성 재검토(교육부)

사학진흥기금 학교경영 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일반회계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예산과 함께 정보시스템 계약 통합발주 재원으로 사용된 것은 예산의 체계적 편성·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사업은 수입대체경비 지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초과지출 승인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해보임.

교육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University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고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

로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4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실무에서는 U-ERP 고도화(新시스템 개발)사업과 U-ERP 운영・유지보수(舊시스템 운영)사업 계약을 통합발주하고 있음.

특정 정보화시스템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와 사학진흥기금에 각각 분리하여 편성한 후 동일한 계약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예산 편성・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입대체경비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상호 관련성이 있어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경비 지출예산을 다른 사업예산과 함께 통합발주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재정 지출

가. 개 요

(1) 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지출은 684.1조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46.1조원(7.2%) 증가한 반면, 예산 대비 19.1조원(△2.7%) 감소하였음.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9.4조원으로 전년 대비 34.9조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9조원, 기금은 221.7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조원, 7.2조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비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각각 4.1조원·0.9조원 및 14.3조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총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대비 (C-B)	
총지출[1]	638.0	703.3	684.1	△19.1	46.1
1. 일반회계	344.5	383.5	379.4	△4.1	34.9
2. 특별회계	78.6	83.8	82.9	△0.9	4.3
3. 기 금	214.5	235.9	221.7	△14.3	7.2
※ 세출예산외[2]	0.4	-	0.2	0.2	△0.3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도 제외됨
2)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지출의 12대 분야별 결산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 대비 15.6조원(6.5%)이 증가한 255.5조원으로 가장 큰 지출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127.8조원, 교육 분야 96.8조원, 국방 분야 59.4조원 순임.

문의: 02-6788-5679

[2025회계연도 12대 분야별 지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예산 (B)	결 산 (C)	집행률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 보건·복지·고용	239.9	251.7	255.5	101.5	15.6	6.5
○ 교육	85.3	96.2	96.8	100.6	11.5	13.5
○ 문화·체육·관광	8.5	8.9	8.8	98.9	0.3	3.5
○ 환경	11.2	12.9	12.1	93.8	0.9	8.0
○ R&D	26	29.7	29.4	99.0	3.4	13.1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7.9	35.3	35.0	99.2	7.1	25.4
○ SOC	25.3	26.0	25.3	97.3	0.0	0.0
○ 농림·수산·식품	24.5	28.2	27.2	96.5	2.7	11.0
○ 국방	58.6	61.3	59.4	96.9	0.8	1.4
○ 외교·통일	6.4	7.3	6.5	89.0	0.1	1.6
○ 공공질서·안전	24.3	25.8	26.0	100.8	1.7	7.0
○ 일반·지방행정	108.3	127.2	127.8	100.5	19.5	18.0

주) 세입세출예산외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26.0조원(7.6%) 증가한 368.5조원으로, 전체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53.9%이며,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20.1조원(6.8%) 증가한 315.6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한 46.1%로 나타남.

[2025회계연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			2025			전년 대비	
	예산	결산 (A)	(C/B)	예산 (B)	결산 (C)	(C/B)	증감 (D=C-A)	비율 (D/A)
□ 총지출	656.6	638.0	97.2	703.3	684.1	97.3	46.1	7.2
○ 의무지출	347.4	342.5	98.6	364.8	368.5	101.0	26.0	7.6
(비 중)	(52.9)	(53.7)	101.5	(51.9)	(53.9)	103.8	0.2	0.4
○ 재량지출	309.2	295.5	95.6	338.4	315.6	93.3	20.1	6.8
(비 중)	(47.1)	(46.3)	98.3	(48.1)	(46.1)	95.9	△0.2	△0.4

주) 결산치 세출외 항목으로 의무·재량 총합과 총지출 간 차이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2)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597조 9,199억원, 총세출은 591조 422억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 8,777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조 7,223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 1,554억원 규모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억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합 계	5,979,199	5,910,422	68,777	37,223	31,554
일반회계	4,931,791	4,910,097	21,694	20,865	828
특별회계	1,047,408	1,000,325	47,083	16,357	30,726

자료: 재정경제부

총세입은 597조 9,199억원으로 예산 대비 2조 96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총세출은 591조 4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가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총세출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예산액 (A)	수입실적 (B)	예산대비 (B-A)	예산현액 (C)	지출실적 (D)	집행률 (D/C)
합 계	5,359,243	5,294,630	6,000,162	5,979,199	△20,962	6,047,366	5,910,422	97.7
일반회계	4,373,178	4,354,305	4,969,658	4,931,791	△37,868	4,984,420	4,910,097	98.5
특별회계	986,065	940,325	1,030,503	1,047,408	16,905	1,062,947	1,000,325	94.1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3조 7,223억원으로 예산현액 604조 7,366억원 대비 0.6% 수준이며, 일반회계에서 2조 865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 6,357억원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 대비 6,449억원(44.7%)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조 3,768억원(△45.7%) 감소하여 전체 이월액은 전년 대비 7,317억원(△16.4%)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이월액 (A)	2025년			전년 대비	
		예산현액 (B)	이월액 (C)	이월액 비율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합 계	44,540	6,047,366	37,223	0.6	△7,317	△16.4
일반회계	14,416	4,984,420	20,865	0.4	6,449	44.7
특별회계	30,125	1,062,947	16,357	1.5	△13,768	△45.7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은 9조 9,721억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은 5조 3,457억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4조 6,264억원임.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용액은 없고, 정부 내부거래 4조 4,986억원 및 사실상 불용액 5조 4,735억원이 발생하였음.

[2025회계연도 불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 불용액	200,807	146,885	53,922	99,721	53,457	46,264
세입여건변화	64,888	64,888	-	-	-	-
내부거래	42,588	20,810	21,778	44,986	19,750	25,236
사실상 불용	93,332	61,187	32,144	54,735	33,707	21,028
- 예비비 미집행	25,455	25,455	-	5,425	5,425	-
- 사업비 불용	67,876	35,732	32,144	49,310	28,282	21,028

주) 세입여건변화는 국세수입과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 규모이고, 내부거래는 회계간, 회계-기금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를 의미하며, 사실상 불용은 사업비 불용 및 예비비 미집행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3)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총 68개 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7개), 기획재정부(7개), 금융위원회(6개), 문화체육관광부(6개) 등 22개 소관부처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음.

68개 기금 전체의 수입·지출액은 971.3조원으로 수정계획 대비 22.0조원이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로는 37.2조원이 감소하였음.

기금의 수입액은 자체수입 245.2조원, 정부내부수입 223.1조원, 차입금 266.3조원, 여유자금회수 236.7조원으로,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는 각각 전년대비 67.4조원과 56.9조원이 감소하였고, 차입금은 84.3조원이 증가하였음.

기금의 지출액은 사업비 198.8조원, 기금운영비 3.0조원, 정부내부지출 267.0조원, 차입금원금상환 151.4조원, 차입금이자상환 33.9조원, 여유자금운용 317.2조원으로, 정부내부지출은 전년대비 70.4조원 감소하였고 여유자금운용은 17.6조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4 결산 (A)	2025			수정계획 대비 (D-C)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당초(B)	수정(C)			
수입	자체수입	242.5	247.0	247.1	245.2	△1.9	2.7
	정부내부수입	290.5	227.2	232.6	223.1	△9.5	△67.4
	차입금	182.1	237.7	269.0	266.3	△2.7	84.3
	여유자금회수	293.5	243.0	244.6	236.7	△7.9	△56.9
합 계		1008.5	955.0	993.3	971.3	△22.0	△37.2
지출	사업비	193.5	205.1	218.0	198.8	△19.2	5.2
	기금운영비	2.9	3.0	3.1	3.0	△0.1	0.1
	정부내부지출	337.4	237.8	271.8	267.0	△4.8	△70.4
	차입금원금상환	143.6	177.7	177.8	151.4	△26.4	7.9
	차입금이자상환	31.5	33.5	34.4	33.9	△0.5	2.4
	여유자금운용	299.6	298.0	288.3	317.2	28.9	17.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바탕으로 재작성

2025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 계정성기금(5개)은 전년 대비 58조 2,919억원 감소한 461조 5,247억원이고,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전년 대비 31조 4,173억원 증가한 329조 5,198억원이며, 사업성기금(49개)은 전년 대비 8조 6,472억원 감소한 150조 7,717억원이며, 금융성기금은 전년 대비 1조 6,945억원 감소한 29조 4,990억원임.

[2025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 실적 (A)	2025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수정계획 대비 (D-C)	
		당초(B)	수정(C)			
합 계	10,085,316	9,550,172	9,933,403	9,713,152	△220,250	△372,164
■ 사회보험성기금(6개)	2,981,025	2,807,752	2,807,752	3,295,198	487,446	314,173
■ 계정성기금(5개)	5,198,166	4,609,772	4,929,836	4,615,247	△314,590	△582,919
■ 금융성기금(8개)	311,935	332,782	337,482	294,990	△42,492	△16,945
■ 사업성기금(49개)	1,594,189	1,799,866	1,858,333	1,507,717	△350,615	△86,472

자료: 재정경제부

(4) 재정수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6.7조원 적자(GDP 대비 △1.7%)로 예산 대비 14.2조원 개선되고 전년 대비 3.2조원 악화되었음.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7.5조원 흑자(GDP 대비 2.2%)로 예산 대비 6.8조원 개선되었으나, 전년 대비 3.7조원 악화되었음.[1)]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GDP 대비 △3.9%)로 나타났으며, 적자규모는 예산 대비 7.4조원 개선되었고, 전년 대비 0.5조원 개선되었음.

1) [2025회계연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현황]

[2025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 결 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Ⅰ. 총수입	594.5	642.4	637.4	△5.0	43.0
Ⅱ. 총지출	638.0	703.3	684.1	△19.1	46.1
Ⅲ. 통합재정수지	△43.5	△60.8	△46.7	14.2	△3.2
(GDP 대비)	(△1.7)	(△2.3)	(△1.8)	(0.5)	(△0.1)
Ⅳ.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1.2	50.8	57.5	6.8	△3.7
(GDP 대비)	(2.4)	(1.9)	(2.2)	(0.2)	(△0.2)
Ⅴ. 관리재정수지	△104.8	△111.6	△104.2	7.4	0.5
(GDP 대비)	(△4.1)	(△4.2)	(△3.9)	(0.3)	(0.2)

자료: 기획예산처

(5)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및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의미함.[2] 다만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단위: 억원)

구 분	2024 결산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 합 계	612,405	507,733	575,341	67,608	△37,064
○ 고용보험기금	15,379	465,018	562,471	97,454	△27,552
○ 국민연금기금	590,024	21,819	3,797	△18,022	△11,583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618	11,466	10,432	△1,035	△2,188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2,620	9,430	△1,359	△10,789	4,259

자료: 기획예산처

2)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시차입금, 발행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기준)는 1,268.1조원(GDP대비 47.4%)으로, 국채가 1,266.5조원으로 국가채무의 99.9%를 차지하고, 그 외에도 차입금이 1.5조원(0.1%), 국고채무부담행위가 0.1조원(0.01%)을 차지함. 2025년 말 국가채무는 2024년 말에 비해 126.9조원(11.1%)이 증가하였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24년 44.5%에 비해 2.9%p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국가채무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국가채무	939.1	1,033.4	1,092.5	1,141.2	1,268.1
(GDP 대비, %)	(42.2)	(44.4)	(45.4)	(44.5)	(47.4)
ㅇ 국 채	937.0	1,031.5	1,091.1	1,139.8	1,266.5
- 국고채권	843.7	937.5	998.0	1,047.9	1,161.3[1)]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1.2	11.8	11.5	12.8	29.5
- 국민주택채권	82.2	82.2	81.6	79.1	75.6
ㅇ 차입금[2)]	2.0	1.9	1.2	1.2	1.5
- 국내 차입금	2.0	1.9	1.2	1.2	1.5
ㅇ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2	0.2	0.1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1.9조원 포함
2) 해외차입금은 2016년 전액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없음
3)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4) 중앙정부 채무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방정부순채무는 제외하고 작성함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중앙정부 채무 중 국채는 전년 대비 126.7조원 증가한 1,266.5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권은 전년 대비 113.5조원 증가한 1,161.3조원으로 전체 국채의 91.7%를 차지함.

1.「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025년 국채 종류별 세부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B-A)
	규모(A)	구성비	규모(B)	구성비	
▣ 국 채	1,139.8	100.0	1,266.5	100.0	126.7
ㅇ 국고채권	1,047.9	91.9	1,161.3	91.7	113.5
일반회계(적자보전)	756.7	66.4	870.4	68.7	113.7
외국환평형기금(예탁)	197.5	17.3	202.2	16.0	4.7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93.6	8.2	88.7	7.0	△4.9
ㅇ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2.8	1.1	29.5	2.3	16.7
외화표시	12.8	1.1	15.8	1.3	3.0
원화표시	-	-	13.7	1.0	13.7
ㅇ 국민주택채권	79.1	6.9	75.6	6.0	△3.5
제1종 국민주택채권	79.1	6.9	75.6	6.0	△3.5
제2종 국민주택채권	0.0	0.0	0.0	0.0	△0.0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말 현재 차입금은 1조 5,393억원으로 전액 국내차입금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전년대비 3,243억원 증가하였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100억원 증가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은 전년과 동일함.

[2025년 차입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차입금	12,050	100.0	15,393	100.0	3,343
ㅇ 국내차입금	12,050	100.0	15,393	100.0	3,343
국민체육진흥기금	9,600	79.7	12,843	83.4	3,243
근로복지진흥기금	500	4.1	600	3.9	100
기술보증기금	1,950	16.2	1,950	12.7	-

주) 해외차입금은 2016년 전액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전년 대비 353억원 감소한 1,250억원임. 일반회계는 기획재정부가 녹색기후기금 공여협정을 이행함에 따라 353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함.

[2025년 국고채무부담행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B-A)
	규모(A)	구성비	규모(B)	구성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1,603	100.0	1,250	100.0	△353
ㅇ 일반회계	1,059	66.0	706	56.4	△353
기획재정부	1,059	66.0	706	56.4	△353
ㅇ 특별회계	545	34.0	545	43.6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45	34.0	545	43.6	-

자료: 재정경제부

(6)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

「국가재정법」 제92조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3] 매년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4]

2003년 이후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상환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이던 보증채무 규모는 2009년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2010년 학자금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신규보증 등으로 2011년까지 소폭 상승하다가 각 보증채무의 상환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한동안 감소추세를 지속하여 2023년 10.5조원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2024년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신규보증이 시작됨에 따라 2025년 15.6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3)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채무	33.0	29.2	26.4	24.2	21.1	17.0	14.8	12.5	10.9	10.6	10.5	11.0	15.6
(GDP 대비)	(2.3)	(1.9)	(1.7)	(1.5)	(1.2)	(1.0)	(0.8)	(0.6)	(0.5)	(0.5)	(0.4)	(0.4)	(0.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6.5.

2025년 말 현재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15조 6,200억원으로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채무 잔액이 10조 7,5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나머지 4조 8,700억원을 차지함.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잔여 보증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음.

[최근 5년간 국가보증채무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보증채무	109,300	106,200	104,600	109,600	156,200
(GDP대비)	(0.5)	(0.5)	(0.4)	(0.4)	(0.6)
ㅇ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	-	-	-
ㅇ 한국장학재단채권	101,800	99,200	99,800	103,500	107,500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7,500	7,000	4,800	2,100	-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	-	-	4,000	48,700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1) 연말 국고금 관리 미흡 및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재정운용 문제

2025년 연말 정부는 국고금 통합계정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 집행하여야 할 일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예산을 불용한 후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사실상의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통상적이지 않은 재정운용 행위가 다수 발생하였음.

대표적으로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급식·피복비, 군수유지비 및 전력운영비 등 1조 3,038억원이 회계연도 내에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사고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5] 정부는 당해연도 내 출납을 완결하지 못하고 해당 미지급 금액을 사고이월 등의 방식으로 2026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차년도인 2026년 1월 9일에 이르러서야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이월 자금을 집행하여 대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등을 수습하였음.[6]

국고금 통합계정의 연말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사업예산의 미집행 및 이월·불용 사태는 ① 국세물납주식의 매각 부진, ② 연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보수적 산정,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재원의 미확보, ④ 세수 재추계 환류 체계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①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에 따른 국세외수입 부족

2025년 3.7조원의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인해 세외수입의 결손이 발생하고 연말 국고금 관리의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물납주식매각대 계상 시 매각차질로 인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시부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5) 총 1조 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전말은 이렇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5년도 예산안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지급 받지 못 했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운영비는 부대 운영비이고, 무기 체계 관련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무 부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조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12월 5주차에 쓸 예산 1조 1,200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그런데 재경부는 마지막 주 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방사청도 비슷한 시기 1조원 넘는 자금을 요청했으나 국고 계좌가 텅 빈 관계로 이를 받지 못 했다. 그 결과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국방부·방사청이 1조 3,038억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중앙일보, "초유의 1.3조 국방비 펑크 사태…"통상 있는 일" 이라는 정부", 2026.1.13.)

6) 관계부처 합동, "2025년 말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1.9.

정부는 2022년 2월 넥슨 故김정주 회장의 별세에 따라 2023년 2월 ㈜NXC 주식 851,968주(지분율 약 29.3%, 물납주식 가치 4조 7,149억원)를 상속세로 물납받고, 2025년과 2026년 연내 매각을 목표로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 예산을 2025년 3조 7,441억원, 2026년 1조 63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3년 12월 2회의 온비드 공개경쟁입찰 유찰에 이어, 2025년 매각자문사단 선정 및 법률·회계실사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예비입찰마저 모두 유찰되었음. 결과적으로 ㈜NXC 주식 매각 실패로 인해 2025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 3조 7,441억 4,000만원 중 수납액은 3.5%에 불과한 1,307억 4,300만원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3조 6,134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물납주식 매각 실패는 경영권 거래가 아닌 비상장기업의 2대 주주 지분이라는 특성상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제약 요인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대규모 비상장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2대 주주 지분이라는 특성상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므로, 비상장 물납주식의 시장 소화 능력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특정 자산의 매각 지연이나 세입결손 발생 시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금 관리와 연계한 매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② 연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보수적 산정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말 한국은행 일시차입 한도를 전년과 같이 5조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연말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 산정 시 13월 세입 예상 규모와 연말 집행소요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도록 함.

정부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출납정리기한(1월 20일)까지 이른바 “13월의 세입”으로서 전년도 귀속 수입을 추가적으로 수납하고 있고,[7] 기획재정부(2026년부

7)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터 재정경제부)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연말에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원을 일시 차입한 후 다음연도 1월에 수납된 13월의 세입으로 상환하였음.[8)]

[최근 10년간 12월 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잔액 추이]

(단위: 조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잔액	-	-	-	-	-	-	-	4.0	5.0	5.0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2025년 연말 일시차입 규모는 차년도 13월 세입의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불확실한 13월의 세입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세입으로 일시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연말 일시차입 규모를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재정경제부는 과거 10년간 13월 세입실적은 7.5조원에서 13.0조원이 수납되었고, 연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최대 잔액이 5.0조원인 점을 고려하여 2025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를 5조원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국고금 통합계좌의 일시차입은 해당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정경제부가 보수적으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를 산정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2025년 연말까지의 실제 사업소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재원 규모만큼 차입규모를 유연하게 설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음.

2026년 1월 20일까지 수납된 일반회계 세입(13월의 세입)이 7.3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만일 재정경제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를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였을 경우 1.5조 원 규모의 국방비 역시 당해연도에 이월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미지급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정부는 상환불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나, 결과적으로 13월의 세입 예측치와 연말의 시급한 집행 소요 간에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

제5조 (수입금의 수납기한)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수 있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③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재원 축소에 따른 단기 유동성 부족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 재원의 운용 과정에서 연말 여유재원이 소진되는 등 단기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최소 유지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원만한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부문 자금 수급을 조절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일반회계 자금 부족분에 대해 일반회계 예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는 공공부문 일반회계의 자금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로 작용함.

그러나 2025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한국은행 예치금 잔액은 43억원으로, 2022년 5조 2,121억원, 2023년 7,857억원, 2024년 1조 5,094억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말잔 규모도 2023년 3조 2,715억원, 2024년 1조 6,616억원, 2025년 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96.3% 급감하였음.

[2023~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및 한국은행 예치금 잔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여유자금 말잔	58,639	15,461	32,715	16,616	604
한국은행 예치	44,433	52,121	7,857	15,094	43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 연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소진은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완충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회계연도를 마감했음을 뜻함.[9] 회계연도 말에는 각 부처의 마감 지출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국고금 수급 변동성이 극대화되는데 이 시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바닥나고 한국은행 차입 한도마저 소진될 경우, 재정당국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단기 유동성 공백이 발생하게 됨.

만일 국고채권 발행 확대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내역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예년 수준으로 운용되었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집행소요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사업은 114조

9) 재정경제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예치금 잔액 급감 사유에 대해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간에 발생하는 잔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말 공자기금 자금을 운용한 결과 연말 기준 발생한 집행잔액 43억원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였다” 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결과값을 그대로 사유로 제시한 동어반복에 가까움.

9,48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여유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계획액보다 1조 2,918억원 적은 금액만 예탁되었으며, 만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이 계획대로 1.3조원 더 집행되었다면 연말 국방비 등의 자금소요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을 것임.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집행률 (B/A)
	계획		결산(B)	B-A	
	당초	수정(A)			
일반회계 예탁(8520-851)	82,765,297	114,948,803	113,657,000	△1,291,803	98.9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국고채권의 발행한도액 230조 8,360억원의 98.0%인 226조 2,220억원만 발행되어 4조 6,140억원의 발행가능여력이 있었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발행한도 1조 3,000억원의 92.7%인 1조 2,056억원만 발행되어 944억원의 발행 가능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10)]

④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른 세출 계획 조정 부족

2025년 9월 세수재추계 결과 세입감소가 예상됨에도 지출계획을 변경 없이 유지하여 세입 대비 과다한 세출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연말에 국고금 부족으로 이어진바, 지출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을 372조 849억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보다 2조 1,557억원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였음. 다만 정부는 2025년 9월 세수재추계 결과는 발표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출·지출 계획은 별도로 변경되지 않았음.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른 세출·지출 계획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출·지출계획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12월 국방비 미지급(1조 5,000억원)이 발생하였음.[11)] 참고로 9월 세수재추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재원 부족 이유로는 국고채 발행 부족 이외에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이 계획대비 각각 7,302억원, 4,689억원 및 5,208억원 부족하게 수납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특별회계 예수금이 계획액 4조 1,893억원보다 1조 7,225억원 부족한 2조 4,668억원만 수납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조 1,557억원 감액 전망되었는데, 이에 상응하여 세출·지출계획을 조정하였다면 연말 예산 집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임.

세입 감소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내부적으로 세출 예산의 집행 속도를 제어하거나 지출 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유지함에 따라, 연말 사업 집행소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세입 대비 과다한 세출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국고금의 부족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세수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 연말까지의 집행 및 불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함께 보고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9월 재추계 결과는 당해 연도 연말까지의 국세수입의 수납액 전망을 바탕으로, 집행소요의 충당 가능성 및 기금 여유재원 투입 규모나 불용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함.

이에 장기적으로는 9월 세수재추계 결과에서 유의미한 추가 세입 감소가 확인될 경우, 세출예산을 유연하게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함. 세수재추계 발표와 동시에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분류하여 배정을 유보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일정 수준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세출을 줄이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 지출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는 2025년 연말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지 못하고 배정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재정운용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연말 국고금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이월 이외에도, 정부는 2025년 말 신규 체결한 사업 계약에 대해 2025년도 예산을 불용한 후 20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12)]

---

11) 총 1조 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전말은 이렇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5년도 예산안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지급 받지 못 했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운영비는 부대 운영비이고, 무기 체계 관련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무 부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조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12월 5주차에 쓸 예산 1조 1200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그런데 재경부는 마지막 주 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방사청도 비슷한 시기 1조원 넘는 자금을 요청했으나 국고 계좌가 텅 빈 관계로 이를 받지 못 했다. 그 결과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국방부·방사청이 1조 3,038억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중앙일보, "초유의 1.3조 국방비 펑크 사태…"통상 있는 일" 이라는 정부", 2026.1.13.)

12) 방위사업청의 일부 R&D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5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연말 해당 업체에 착수

[국방비 세출예산 이월 및 미집행 관련 국방부·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

○ 보도내용 - 2026.1.11. 국민일보는 “국방부 ” 이월 예산 60% 제한 “… 올 軍사업 비상” 보도에서, 국방부가 각 군 본부와 책임 부서에 이월액을 60%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올해 국방부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방부·재정경제부 입장 - 국방부는 2025년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연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1.9일)부터 정상 집행중입니다. - 반면 2025년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2026년에 실제 납품 등이 발생하므로 2025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은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실제로 1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품이 다음 연도에 이뤄지는 선금 지급의 경우 최근 과다지급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2025년 미지금액(5,002억원)의 60% 선에서만 이월하여 집행하라는 지침을 제공한 바 없으며, 2025년말 미지급건을 최우선 지급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5년 국방비 세출예산 이월은 재정집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2026.1.11.

국방부 및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2025년 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2026년에 실제 납품 등이 발생하므로 2025년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20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은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한다’ 고 설명하였으나,[13] 이는 「국가재정법」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임.

먼저 2025년 체결한 계약에 배정된 사업예산을 차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불용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이월’ 제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 말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에 대한 법적 행위(지출원인행위)는 2025년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 계약의 대금은 반드시 국회가 승인한 2025년도 예산 내에서 배정·집행되어 있어야 함.

또한 「국가재정법」은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내에 납품이나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현장 실무의 어려움을 이미 예견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세출예산의 이월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 결의를 하였으나, 재정당국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예산을 미집행하고 동 사업의 미집행된 일반연구비를 2026년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13) 국방부는 2025년 연말 이월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 체결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채무가 신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세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면서, 재정당국과 협의 하, 「국고금관리법」 제28조(지난 연도 지출)를 근거로 미지급된 2025년 채무확정액을 2026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연도 내에 마쳤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사고이월(事故移越) 제도를 통해 2025년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14]

즉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부의 판단은 「국가재정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사고이월이 아닌 다음 연도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재정집행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국회가 본예산을 심의한 결과와 달리 집행하는 것임.

2026년도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내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그 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금지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15] 또한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대금 집행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2026년 신규 사업의 가용 재원이 잠식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사업성과가 제한되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음.

즉 2025년 연말 재원 부족으로 인해 배정된 예산을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후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재정운용 행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이후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연내 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등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16]

---

14)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6)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이 이례적으로 적은 규모인 828억원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결산상 잉여금을 초과하여 이월을 승인할 경우 음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강제불용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2) 상반기 조기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비용 문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주로 재정의 신속집행에서 발생하는데, 2025년의 경우 상반기 신속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의 조기집행을 이유로 자금 차입규모가 확대되어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정부는 향후 신속집행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재정의 신속집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재원의 부족분은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2025년 중앙정부 기준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주요사업비 내 관리 실익이 있는 주요 비목을 대상으로 연간계획(241.1조원) 대비 66.8%인 161.1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였고, 연간계획 대비 69.5%인 167.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음.

[공공부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 %p)

구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연간 계획 (a)	상반기 집행액 (b)	집행률 (c=b/a)	연간 계획 (d)	상반기 목표 (e)	상반기 집행액 (f)	집행률 (g=f/d)	상반기 목표대비 (f-e)	집행액 (f-b)	집행률 (g-c)
합 계	618.7	389.1	62.9	622.3	390.3	406.1	65.3	15.8	17.0	2.4
❶ 재 정	549.5	349.4	63.6	551.1	349.9	363.8	66.0	13.9	14.5	2.4
중 앙	240.6	159.4	66.3	241.1	161.1	167.5	69.5	6.4	8.1	3.2
지 방	282.5	170.2	60.2	283.5	171.5	177.3	62.6	5.8	7.1	2.3
지방교육	26.4	19.8	74.9	26.6	17.3	19.0	71.4	1.7	△0.8	△3.4
❷ 공공기관 투자	63.5	37.0	58.2	66.0	37.6	39.9	60.4	2.3	2.9	2.2
❸ 민간투자	5.7	2.8	48.6	5.2	2.8	2.4	46.1	△0.4	△0.4	△2.6

자료: 기획재정부,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5.7.10.

또한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였음. 2025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의결 이후 정부는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을 신속집행(제1회 70%, 제2회 85%)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기획재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5.1. 의결) 후 추경예산 총 13.8조원 중 예비비(1.4조원) 등을 제외한 12.0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회 통과 후 3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 70% 수준인 8.4조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참고로 2025년 8월 재정집행점검회의 결과, 제1회 추경예산 중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25년 7월말까지 8.8조원(74%) 집행되어 목표대비 4.0%p 초과집행되었음.[17]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집행계획]

분야	규모 (조원)	D+3개월 (7월말)	(%)	비고(주요사업)
집행관리대상 합계	12.0	8.4	70.5	-
1 재해·재난	1.7	0.9	54.1	재해·재난대책비, 산림헬기 도입 등
▪ (재해·재난 대책비)	0.8	0.6*	72.8	-
2 통상 및 AI 지원	4.3	3.8	88.0	고성능 GPU 도입 등
3 민생 지원	5.1	3.3	65.2	부담경감 크레딧 등
4 기타(건설경기 보강 등)	0.9	0.4	46.7	철도·도로 유지보수 등

주) (행안부) 재난지원금, 시설복구 등 4,500억원 (기후부)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등 1,120억원, 태풍 등 여름철 재난 복구비 등 2,100억원 제외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 2025.5.8.

기획재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7.4.) 후 추경예산 총 31.8조원 중 세입경정(10.3조원) 등을 제외한 20.7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3개월이 지난 9월 말까지 8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참고로 2025년 10월 재정집행점검회의 결과, 제2회 추경예산 중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25년 9월말까지 19.1조원(92.4%) 집행되어 목표대비 5%p 초과집행되었음.[18]

17)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제2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5.8.7.

18)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제2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5.10.16.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집행계획]

구분	규모 (조원)	D+3개월 (9월말)	(%)	주요사업
합계	20.7	18.1	87.5	
1 경기진작	16.7	15.1	90.7	
■ 소비활력	13.1	12.9	98.2	민생회복 소비쿠폰(12.2조원)
■ 건설경기활성화	2.5	1.3	52.5	PF 개발앵커리츠 출자(0.2조원)
■ 투자촉진	1.1	0.9	86.2	AI 혁신펀드(0.05조원)
2 민생 안정	4.0	3.0	74.4	
■ 소상공인	1.4	1.4	99.6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0.4조원)
■ 고용안정	1.6	1.0	62.2	국민취업지원제도(0.2조원)
■ 취약계층 지원 등	1.0	0.6	57.8	전세임대융자(0.3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차 추경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 2025.7.5.

이와 같은 정부의 본예산의 상반기 신속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의 3개월 내 조기집행 기조로 인해 상반기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음.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평균적으로 1,716억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연이은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이자비용은 2023년 4,244억원, 2024년 4,865억원, 2025년 3,567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1,716억원)을 지속적으로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실집행 단계에서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실집행 실적 부진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으며,[19] 이는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조달과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출되었으나 실제 사업현장에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역시 상

1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법무부 등 9개 부처에서 총 21개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인데, ① 산불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협의・설계・인허가 및 장비 도입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났고, ② 수출지원 바우처・이차보전・융자 사업은 실제 수요와 지원방식 간 차이, 서비스 사용 및 정산 시차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③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주민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④ 공항시설・도시재생・하수관로 정비 등 시설사업은 설계,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로 인해 연내 실집행이 제한된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법무부 등 13개 부처에서 총 31개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인데, ① 문화・체육 분야의 소비쿠폰・이용권 사업은 시스템 구축, 사용기간, 지방비 확보, 실제 사용률 등에 따라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② 농림・산림・해양수산 분야의 산불피해 복구 및 설비지원 사업은 공사 착수, 인허가, 대상자 선정, 추가 자부담 등으로 실집행이 지연되었으며, ③ 국토교통부의 출자사업은 국고 출자 이후 리츠 설립, 민간투자 유치 및 투자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당수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의마함.

2025년에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과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정부의 차입 규모가 커지면서 막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정당국은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신속집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차입 현황]

(단위: 조원,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 일시차입 한도		30.0	30.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40.0
■ 차입실적(누계)		29.9	9.9	2	84.7	142.5	36.4	50.5	162.1	214.8	203.5	37
- 한은차입		9.0	2.0	-	36.0	97.2	7.5	34.2	117.6	165.0	155.5	17.0
- 재정증권 발행		20.9	7.9	2.0	48.7	45.3	28.9	16.3	44.5	49.8	48.0	20.0
■ 차입실적(평잔)		3.7	1.22	0.1	10.1	12.5	5	4.6	12	14.1	13.4	8.6
- 한은차입		0.2	0.02	-	2.3	4.8	0.1	1.8	4.4	5.9	5.8	2.0
- 재정증권		3.5	1.2	0.1	7.8	7.7	4.9	2.8	7.6	8.2	7.6	6.6
■ 조달금리(평균)		1.49	1.39	1.62	1.71	0.87	0.63	1.61	3.58	3.51	2.68	2.57
- 한은차입		1.53	1.43	1.66	1.70	0.99	0.71	1.78	3.60	3.51	2.73	2.46
- 재정증권		1.45	1.34	1.57	1.71	0.74	0.55	1.43	3.56	3.51	2.62	2.67
■ 이자비용		555	160	24	1,648	1,133	293	667	4,244	4,865	3,567	166
- 한은차입		26	2	-	280	523	18	273	1,497	1,901	1,541	166
- 재정증권		529	158	24	1,368	610	275	394	2,747	2,964	2,026	-
이자상환	운용수익금	555	160	24	1,648	951	212	668	4,244	2,758	1,504	-
	예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	-	-	-	182	81	-	-	2,107	2,063	166
	〈합계〉	555	160	24	1,648	1,133	293	668	4,244	4,865	3,567	166

주) '운용수익'은 국고금 운용수익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3) 「국고금 관리법」의 국고금 운용수익 비용 상계 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 부족분을 타 사업 예산 이용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통합계정 운용수익으로 이자비용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운용수익과 이자비용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집행이 없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더 많은 재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용(移用)하여 집행하였음.

이는 일차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으로 인해 본예산 편성 시보다 한국은행 일시차입 수요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과소추계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이자비용 충당규정으로 인해 국고금 통합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예산 편성 시에 계상하기 어려워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임.

[2021~2026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60,800	60,800	-	-	60,800	8,096	-	52,704
2022	25,000	25,000	-	△5,916	19,084	-	-	19,084
2023	-	-	-	-	-	-	-	-
2024	99,209	99,209	-	111,500	210,709	210,709	-	-
2025	99,209	99,209	-	109,835	209,044	206,307	-	2,737
2026	110,000	110,000	-	-	-	-	-	-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월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차입 이자비용 현황]

(단위: 조원, %,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합계
■ 이자비용		-	-	157	402	377	778	466	338	320	38	-	691	157	3,567
- 한은차입		-	-	157	-	-	410	-	-	283	-	-	691	157	1,541
- 재정증권		-	-	-	402	377	368	466	338	37	38	-	-	-	2,026
이자상환	통합계정 운용수익금	-	-	157	203	-	410	320	-	-	-	-	414	-	1,504
	예산(일시차입금 이자상환)	-	-	-	199	377	368	145	338	320	38		277	157	2,062
	〈합계〉	-	-	157	402	377	778	466	338	320	38	-	691	-	3,567

주) '운용수익'은 국고금 운용수익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재정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총액에 온전히 계상되어야 하나, 현행 「국고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고금 통합계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조달 및 지출 방식은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을 장부상에서 상계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가재정 상태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예산운용의 기본원칙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이처럼 국고금 운용수익과 이자비용이 예산 체계 밖에서 상계처리됨에 따라, 정부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 지출의 총액과 국고금 운용을 통해 확보한 총수익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함.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의 일시차입금 조달 규모 및 운용 내역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거나, 사후 결산 과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특히 국고금 운용수익과 이자비용 상계를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4항은 2005년 1월 도입된 이후 큰 내용변경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의 총계주의 근거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고금 관리법」을 개정하여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과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각각 세입과 세출예산에 투명하게 반영하고, 국고금 이자수익과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명확히 산출하여 이를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2025년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검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실시된 지출구조조정은 사업축소 없는 단순 지출시기 연기, 자연 종료 사업 포함, 사업 단순 이관 및 명칭변경 등이 포함되어 지출구조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기획예산처는 지출구조조정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기획예산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025년도 예산 중 지출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경재원을 마련한 바 있음.[20] 그러나 단순히 지출시기를 차년도로 이연한 경우가 많고, 감액된 사업의 경우 실제 집행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감액규모가 과소추계된 경우도 발견됨.[21]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사업 중 시설 구축사업과 ODA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감축하지 않고 예산 지출시기만 연기하여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감축 없이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	규모	
				지출구조조정 총규모 대비 비중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국립묘지조성	△9,724	△0.18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중남미차관(융자)(ODA)	△8,000	△0.15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32,000	△0.61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60,000	△1.14
외교부	일반회계	베트남(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000	△0.09

20)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재원]

(단위: 백만원, %)

항 목	재원 규모	비 중
국채 발행	19,823,774	64.9
지출구조조정	5,272,166	17.3
외평채 축소	3,000,000	9.8
기금 여유자금 등	2,449,157	8.0
합계	30,545,097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5.6.

(단위: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	규모	지출구조조정 총규모 대비 비중
외교부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탄자니아(ODA)	△8,000	△0.15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16,092	△0.3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신기술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5,000	△0.09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2,669	△0.24
기후부	환경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000	△0.13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숙련기술장려사업	△9,189	△0.17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5,100	△0.48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남부내륙철도	△50,000	△0.95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월곶-판교 복선전철	△20,000	△0.38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충북선 고속화	△9,957	△0.19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가덕도신공항건설	△522,364	△9.91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5.6.

또한 지출구조조정에 포함되었거나 유사·연관 사업 중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 해당 사업의 2025년 결산 실적을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22] 및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출자’[23] 사업은 실제로도 불용액이 각각 42억원과 92억원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당시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22) 기후부의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내내역사업인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의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가 감액조정 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본예산 171억 2,000만원 중 1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이월액 및 기 투입금액을 고려하면, 추경안 감액을 반영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총사업비의 국비 지원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가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융자)’** 사업은 통합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의 신규 사업승인 물량이 없어 불용예상액이 감액(△1,244억원)된 것인데, ‘행복주택 출자’ 사업의 경우에도 행복주택 물량 감소 및 LH의 미집행(상계대상) 출자금을 고려하여 신규 출자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출구조조정 사업 및 유사·연관사업 중 추가 검토 필요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	추경안 조정규모	추가 검토 필요성	예산(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기후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10,000	이미 확정된 총사업비의 국비 지원액 보다 과다 금액이 편성되어 추가 감액 검토 필요	42,367	38,143	4,22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행복주택 출자	-	행복주택 물량 감소 및 LH의 미집행 출자금을 고려한 신규 출자 지원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134,594	125,375	9,219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5.6.

다음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였음. 2026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예산 절감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이를 지적한 바 있음.[24]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2025년 종료 사업 예산 감액을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시킨 경우,[25] ② 총사업비의 감액 변경 없이 2026년 예산만 감액한 경우,[26] ③ 사업의 이관·조정으로 인해 실제 지출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경우,[27] ④ 의무지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성과로 보기에 미흡한 경우,[28] ⑤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음.[29]

---

2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괄)」, 2025.11.

25)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에는 2025년에 종료 예정인 사업 예산 감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2026년도에 편성되지 않을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6)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중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총사업비의 감액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정부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출 총액의 변화 없이 단순히 지출 시기만 이연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 성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7) 사업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어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해당 예산이 실제로는 타 사업으로 이관·조정되어 결과적으로 지출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 과다 집계되는 문제가 있음.

28)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 지출 구조조정 실적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제도개선으로 인한 지출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의무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 개선 없이 사실상 재량지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 운영비만 감액한 사례 등이 있음.

29)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서 실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감액 편성이 되었

이처럼 2025년도 지출구조조정은 사업축소 없는 단순 지출시기 연기, 자연 종료 사업 포함, 사업 단순 이관 및 명칭변경 등 지출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시설물 구축, 장비도입 완료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거나 예산이 자연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였음. 또한 2027년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로, 규모 측면에서는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5%와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사업 수 측면에서는 지출구조조정 대상 내역사업 수의 10% 수준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특정 내역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내역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우회수단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국정과제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 필요

정부는 2025년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따른 재정운용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운용 관련 제도개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였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음. 그러나 국가재정전략회의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제도 전반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현재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국정과제 17번)]

□ 과제목표
○ Top-Down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
○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국회 심의권 강화
○ 성과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및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으나 실제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용 자율성·책임성 확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Top-Down 예산제도 실질화 -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방향을 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여 국회 보고 - 계획과 실적 차이, 재정의 경기대응 및 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 평가·분석보고서 내실화 ○ (예산안 국회심의 강화) 정부 증액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 보고 강화 -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 ○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매각·교환 시 정부 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 (성과평가 강화·재정이해도 증진) 다수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체계를 정비하여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강화 - 재정교육 강화,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 이해도 증진 ○ (지방행정·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기대효과 o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o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알권리 보장

자료: 대한민국 정부,「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p.37.

첫째,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국가재정배분회의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최초 개최 이후 매년 개최되었고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이 모여 재정운용 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한 회의로 구체적인 시기 및 논의과제 등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국가재정배분회의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구체화 및 국회 보고와 평가·분석보고서의 내실화와 관련하여서는「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기획예산처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이행방안과 이행실적 평가 분석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30]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의 수립방향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30)「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예비비 사용내역의 국회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개정되었고 2026년 1/4분기부터 제출 중에 있음.

넷째,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보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예산배정의 변경·유보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나,[31]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는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출입 요건 구체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수·예탁 등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예산안을 보다 세분화하여 편성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결산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재정사업 평가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2026년부터 종전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신에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신규로 실시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근거법령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6년 5월에서야 개정하는 등 면밀한 사전준비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음.

끝으로 지방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 12월 국무총리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이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논의체인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한 상황임.

그러나 아직 장기과제로 남아 있는 추진과제가 있는 상황이고, 근거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32] 따라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단계별 마스터플랜

---

31)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참고로 「국가재정법」 개정(2026.2.)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었으나, 기획예산처는 2026년 3월까지 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았음.

을 수립하고 제도개편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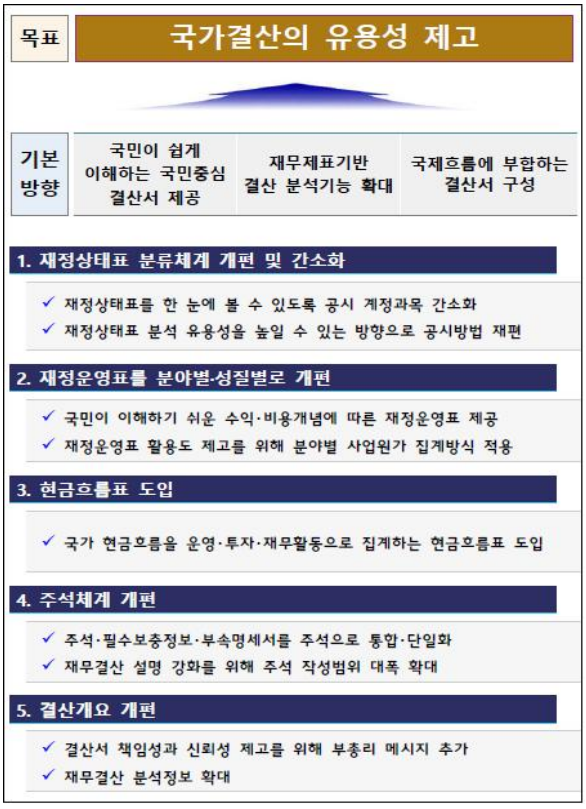
3. 국가결산체계 개편

가. 개 요

(1) 국가결산체계 개편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부는 종전의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 개편 중심으로 국가결산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2022년 12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1)]

[국가결산체계 개편 개요도]



문의: 02-6788-5679

1) 기획재정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 마련”, 2022.12.16.

구체적으로는 ①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국민 중심 결산서 제공, ② 재무제표기반 결산 분석기능 확대, ③ 국제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 구성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주석체계 개편 및 현금흐름표를 도입하는 것임.

정부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새롭게 개편된 국가결산체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신설하는 등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였음.

[결산체계 개편 관련 법령 개정사항]

○ 「국가회계법」 개정 (법률 제20402호, 2024. 3. 26. 일부개정, 2025.1.1. 시행)

-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2022.12.에 따라 현금흐름표 도입,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추가>), 성과보고서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7.31. 일부개정, 2025.1.1. 시행)

- (재무제표 간소화) 계정과목 유동성 구분 삭제 등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정의 등 변경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배열 기준(유동성順) 삭제[제8조] • 자산의 정의와 구분 변경[제9조] - (현행)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 (개정) 금융자산[제11조], 유 · 무형자산[제12조], 기타 자산[제13조] • 부채의 정의와 구분 변경[제17조] - (현행)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 - (개정) 차입부채[제20조], 충당부채[제21조], 기타 부채[제22조]

- (현금흐름표등) 재정운영표 변경*(프로그램별, 분야별, 성질별) 및 현금흐름표 신설에 따른 서식·작성기준 등 규정

• 중앙관서·기금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작성방법 신설[제25조] • 국가의 분야별·성질별 재정운영표 작성방법 신설[제26조] • 성질별 수익 및 비용의 정의·구분 신설[제28조, 제30조] • 현금흐름표 도입에 따라 정의·작성기준 신설[제5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 (평가기준) 중요성·규모 등을 고려, 예규에 위임 중인 일부 계정과목의 평가기준을 규칙에 규정

※ 공채[제42조],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제44조] 등

- (주석체계 통합)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

- (기타) 재무제표 표시항목 변경, 조문체계 정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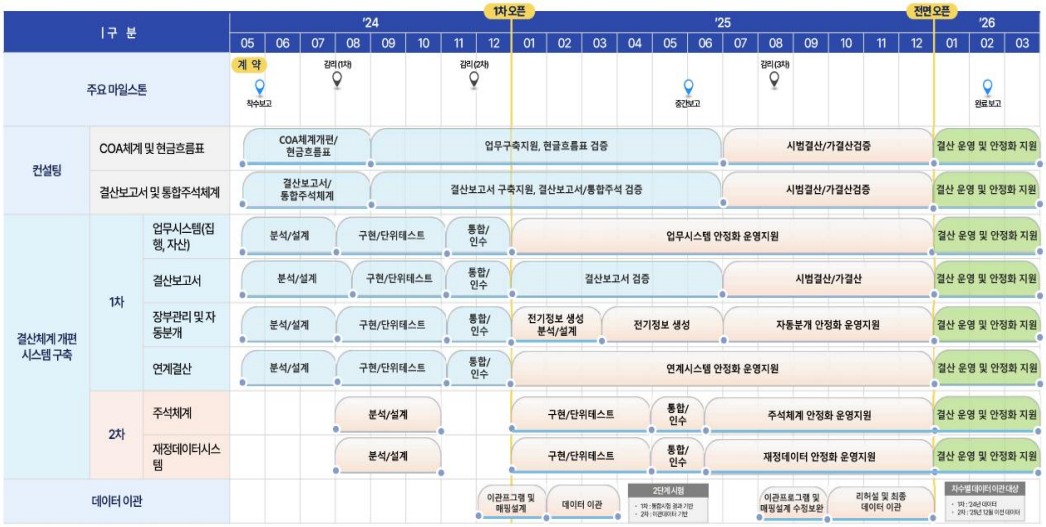
•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변경[제53조] - (현행)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 - (개정)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 보험수리적손익,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 비용의 정의와 구분[제30조], 비용의 인식기준[제30조의2] * '수익' 관련 조문체계와 동일하게 규정(수익의 정의와 구분[제28조], 수익의 인식기준[제29조])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 「2025회계연도 알기쉬운 결산 FAQ」, 2025.12.

또한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93억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말까지 추진하였음. 이는 현금흐름표를 도입하고, 자산·부채 등 계정과목 체계 개편 및 재무제표 간소화를 반영하는 한편, 개편사항이 적용된 dBrain+ 시스템을 통해 자체 시범결산 및 가결산 등을 검증하는 내용임.

재정경제부는 자체 시범결산으로 해양수산부의 2024년 결산자료를 통해 결산보고서를 생성 및 검증하고, 62개 전 부처의 2025년 실적자료를 가결산하여 결산보고서를 검증하였다고 설명함.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의 월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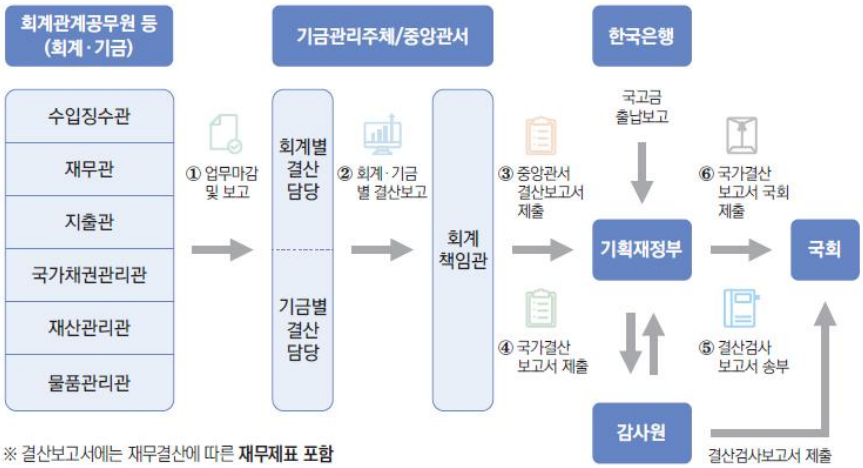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정부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개정된 「국가회계법」 등의 관련 규정과 개편된 dBrain+ 시스템을 바탕으로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후 2026년 5월 29일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감사원은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검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2)]

2)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결산 과정]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 「2025회계연도 알기쉬운 결산 FAQ」, 2025.12.

(2) 국가결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2026년 5월 국회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① 현금흐름표 신설, ② 재정상태표 개편, ③ 재정운영표 개편, ④ 주석체계 개편 등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다수 개편사항이 반영되었음.[3)]

① 현금흐름표 신설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임. 발생주의 회계 도입 당시에는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현금흐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금흐름표 도입을 보류하였으나,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 조정표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 내역만으로는 실질적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현금흐름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를 신설하였음.

현금흐름표는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각 활동별 현금 조달의 원천 및 사용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운영활동 각각에 대한 현금흐름을 기재하는 직접법 방식을 채택하였음.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동향-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를 참고하여 작성함.

[현금흐름의 활동별 분류]

분류	설명
운영 활동	-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수행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 - 재정활동별 현금의 증감 파악 가능 예) 국세수익(현금유입), 인건비(현금유출) 등
투자 활동	- 국가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예) 국세수익(현금유입), 인건비(현금유출) 등
재무 활동	- 국가지출재원 마련을 위한 부채 발행 및 상환 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 제공 - 정부 지출 중 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국채 발행 등의 규모를 파악 가능 예) 국채발행(현금유입), 국채상환(현금유출) 등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동향-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2」, 2025 여름호

② 재정상태표 개편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재정상태표는 공시 계정과목을 10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하였고, 자산 및 부채의 개별항목을 장기 및 단기 구분 없이 항목별로 통합하였으며, 종전 8페이지에 걸쳐 작성된 재정상태표가 1페이지 내에 작성되도록 개편되었음.

기존의 재정상태표는 공시항목이 많아 8페이지에 걸쳐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체계 개편을 통해 재정상태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공시 계정과목을 단순화 하였으며, 주석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부분을 보완하였음.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을 그룹별로 분류하는 중간 단계의 구분 기준과 관련하여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4]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 및 기타부채로 분류함.[5] 간소화된 재무제표를 통해 큰 분류의 계정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재정상태표에 공시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개별 항목들을 장기 및 단기의 구분 없이 항목별로 통합하였음. 이는 1년을 기준으로 현금화 가능 여부 및 상환 의무를 구분하는 장·단기 분류 방식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을 운용하는 정부 차원에서

4) 세부 분류를 포함하여 73개의 자산 공시 항목을 15개 항목으로 크게 간소화하였음. 자산 과목을 금융상품, 일반유형자산 등 보다 넓은 분류의 계정과목 중심으로 표기하였으며, 장·단기 분류 폐지, 계정 항목의 총액법 대신 순액법으로의 개편 등이 반영되었음.

5) 세부 분류 포함 24개의 부채 공시 항목이 15개 항목으로 간소화되었음. 자산과 마찬가지로 장·단기 분류 폐지, 계정 항목의 총액법 대신 순액법으로의 개편 등이 반영되었음.

는 구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다만 상기 개정에 따라 재정상태표의 공시과목에서 장·단기의 분류 방식은 사라지지만, 실무적 분류 목적 등을 위해 하위 레벨에서의 구분은 유지함.

③ 재정운영표 개편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국가(대한민국)의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분야별 재정운영표(과거에는 부처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함.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부처별 재정운영표에서 15대 분야별 재정운영표로 개편되었고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신설되었음.

먼저,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당초 부처별로 재정운영순원가를 작성하였으나 분야별 사업원가 집계방식으로 개편되었음. 분야별 순원가는 부처별 원가에서 간접비 성격의 항목들을 제외하고,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가를 예산 15대 분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음.

재정경제부는 중앙관서와 기금은 기존과 같이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므로 중앙관서와 기금의 재정운영표와 국가 재정운영표의 연계성이 강화되었으며 기존 부처별 재정 운영표는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연속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설명함.

다음, 성질별 구분에 기반한 수익 비용의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기 위하여 보충정보로 공시되었던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 수익은 성질에 따라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분류하고,[6] 비용은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분류하였음.[7] 또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여러 비용 항목은 운영비로 통합하는 등 유사한 성격의 여러 비용 항목을 통합하여 공시과목을 단순화하였음.

---

6) 수익의 성질별 분류로는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인 ‘국세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을 제외한 ‘이전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국가운영수익’이 있음.

7) 비용의 성질별 분류로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인 ‘이전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인 ‘국가운영비용’이 있음.

[재정운영표 개편]

기존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대한민국 (단위:)

	주석	20XY
Ⅰ. 재정운영순원가	X	**XXX**
1. 중앙관서(A)		XXX
2. 중앙관서(B)		XXX
3. 중앙관서(C)		XXX
4. 중앙관서(D)		XXX
5. 중앙관서(E)		XXX
6. 중앙관서(F)		XXX
7. 중앙관서(G)		XXX
…		XXX
Ⅱ. 비교환수익 등		**XXX**
1. 국세수익	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3. 제재금수익	X	XXX
4. 사회보험수익	X	XXX
5. 채무면제이익	X	XXX
6. 기타비교환수익	X	XXX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X	XXX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XXX**

개편 재정운영표

분야별 재정운영표

대한민국 (단위:)

	주석	20XY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사업순원가	X	**XXX**	**(XXX)**	**XXX**
1. 분야(A)		XXX	(XXX)	XXX
2. 분야(B)		XXX	(XXX)	XXX
3. 분야(C)		XXX	(XXX)	XXX
4. 분야(D)		XXX	(XXX)	XXX
5. …		XXX	(XXX)	XXX
Ⅱ. 관리운영비	X			**XXX**
Ⅲ. 비배분비용	X			**XXX**
Ⅳ. 비배분수익	X			**XXX**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XXX**
Ⅵ. 비교환수익 등				**XXX**
1. 국세수익	X			XXX
2. 사회보험수익	X			XXX
3. 부담금수익	X			XXX
4. 제재금수익	X			XXX
5. 기타 이전수익 등	X			XXX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XXX**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동향-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2」, 2025 여름호

④ 주석체계 개편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에는 주석(8종),[8] 필수보충정보(13종)[9] 및 부속명세서(8종)[10]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정보가 주석(24종)으로 통합 및 단일화되고,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정보를 주석에 포함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였음. 이는 그동안 재무제표의 설명자료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이

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024.7.31. 개정 이전)
제55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이하 각 호 생략)

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024.7.31. 개정 이전)
제54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이하 각 호 생략)

1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024.7.31. 개정 이전)
제56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성되었으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전체 계정에 대한 설명 또한 불충분했기 때문에,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단일한 주석체계로 통합한 것임.

또한 종전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항목을 나열식으로 제시하였던 것과 달리, 통합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을 포괄식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주석 공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11)]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주석, 부속명세서 및 필수보충정보의 통합 현황]

개편 전	개편 후 항목	개편 후	세부 항목
[주석 8종]		[주석 24종]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1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1-1. 국가회계실체
			1-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1-3. 재무제표 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5	2. 금융자산	2-1. 현금및현금성자산
			2-2. 금융상품
			2-3. 투자증권
			2-4. 정부출자금
			2-5. 대여금
			2-6. 미수채권
			2-7. 기타금융자산
3. 장기충당부채	6	3. 유·무형자산	3-1. 일반유형자산
			3-2. 사회기반시설
			3-3. 자산재평가
			3-4. 무형자산
			3-5. 유산자산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10	4. 기타자산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21	5. 차입부채	5-1. 국채
			5-2. 차입금
			5-3. 국고채무부담행위액
			5-4. 기타차입부채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19	6. 충당부채	6-1. 연금충당부채
			6-2. 퇴직수당충당부채
			6-3. 보증충당부채
			6-4. 보험충당부채
			6-5. 기타충당부채
7. 순자산조정명세	18	7. 기타부채	7-1. 사회보험부채

개편 전	개편 후 항목	개편 후	세부 항목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3, 4, 5, 6, 7, 23	8. 사회보장성기금	
[부속명세서 13종]		9. 연금사업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	2	10.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2. 금융상품명세	2	11. 국세수익	
3. 단기투자증권명세	2	12. 이전수익	12-1. 사회보험수익
			12-2. 부담금수익
			12-3. 제재금수익
			12-4. 기타이전수익
4. 장기투자증권명세	2	13. 국가운영수익	13-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3-2. 연금수익
			13-3. 이자수익
			13-4. 배당수익
			13-5. 자산처분이익
			13-6. 자산평가이익
			13-7. 기타국가운영수익
5. 미수채권명세	2	14. 이전비용	14-1. 국고보조사업비
			14-2. 출연사업비
			14-3. 사회보험비용
			14-4. 지방교부금
			14-5. 기타이전비용
6. 대여금명세	2	15. 국가운영비용	15-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15-2. 연금비용
			15-3. 인건비
			15-4. 이자비용
			15-5. 운영비
			15-6. 감가상각비
			15-7. 자산평가손실
			15-8. 기타국가운영비용
7. 일반유형자산명세	3	16. 프로그램별 재정운영명세	16-1. 프로그램순원가
			16-2. 관리운영비
			16-3.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8. 사회기반시설명세	3	17.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	

개편 전	개편 후 항목	개편 후	세부 항목
9. 무형자산명세	3	18. 순자산조정명세	
10. 국채및공채명세	5	19.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	
11. 차입금명세	5	20. 현금흐름	20-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 출연비명세	14	21.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21-1. 지급보증
			21-2. 중요한 계약사항
			21-3.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21-4.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21-5.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21-6.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21-7. 담보제공자산
			21-8. 계류 중인 소송사건
[필수보충정보 8종]		22. 회계별 재무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3	23.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2. 연금보고서	24	24. 연금·보험·사회보험 보고서	
3. 보험보고서	24		
4. 사회보험보고서	24		
5. 국세징수활동표	11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삭제[1)]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삭제[2)]		
8.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23		

주 1)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발생주의 도입 당시 현금흐름표의 보완적 정보로 작성되었으나, 개편 후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같이 작성하는 경우 정보이용자 혼란 및 결산담당자 작성 부담 예상되어 삭제됨

2)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재무제표 구성 서류 중 한 종류(성질별 재정운영표)로 변경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동향-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4」, 2025 겨울호

1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024.7.31. 개정 이후)
제55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⑤ 계정과목 및 정보관리항목의 변경

재무제표 분류체계 간소화로 인해 계정과목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모든 계정과목코드 신규로 생성하였음. 국가회계 계정과목코드는 1~5레벨까지 레벨별 코드를 부여하여 8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따라 중분류(Lv2)와 회계과목(Lv3)이 크게 변경되었음.[12)]

[계정과목코드 레벨 변동 예시]

개편 전			개편 후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유동자산 (11000000)	유동부채 (21000000)		금융자산 (11000000)	차입부채 (21000000)
투자자산 (12000000)	장기차입부채 (22000000)		유무형자산 (12000000)	충당부채 (22000000)
일반유형자산 (13000000)	장기충당부채 (23000000)		기타자산 (13000000)	기타부채 (23000000)
사회기반시설 (14000000)	기타비유동부채 (24000000)			
무형자산 (15000000)				
기타비유동자산 (16000000)				
	기본순자산 (31000000)			기본순자산 (31000000)
	적립금및잉여금 (32000000)			적립금및잉여금 (32000000)
	순자산조정 (33000000)			순자산조정 (33000000)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 「2025회계연도 알기쉬운 결산 FAQ」, 2025.12.

국가회계 계정과목은 종전의 계정과목과 개정 후 계정과목의 관계에 따라, 1:N 유형으로 세분화되는 경우가 30개, N:1 유형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77개, N:N 유형으로 개편되는 경우가 77개, 삭제되는 경우가 13개, 신설되는 경우가 7개임.

---

② 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이 규칙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③ 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12) 국가회계의 계정과목코드는 8자리(00000000)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분류(Lv1) 1자리 + 중분류(Lv2) 1자리 + 회계과목(Lv3) 2자리 + 관리과목(Lv4) 2자리 + 세부관리과목(Lv5) 2자리임.

나. 검토의견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국가결산체계 개편 관련사항 오류 발생 등

재정경제부는 2025회계연도 결산 제출 시부터 재무제표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된 국가결산체계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정확성·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를 국회에 제출하였음.[13]

2025회계연도부터 새롭게 개편된 국가결산체계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 결과,[14] ① 신설된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의 오류가 일부 발견되어 감사원이 결산검사에서 직접적인 수정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충분한 수준의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명시하여 정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② 보충정보에서 주요서식으로 격상된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잘못된 회계인식으로 인해 재정운영결과의 오류를 초래하였으며, ③ 재정상태표를 보다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자산과 부채 항목의 오류가 다수 발생하였음.

① 현금흐름표 신설 관련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신설된 현금흐름표에 대해 감사원은 한정된 기간내 현금 유출·입과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고, 재계산을 통해 산출하기 어려워 충분한 수준의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현금흐름표 오류도 일부 발견된 점을 감

---

13) 「대한민국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이하 각 호 생략)

14)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재무제표 검사, 성과보고서 검사 등으로 이루어짐.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해 계정과목의 적용 오류, 자산·부채 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를 점검하여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음. 참고로, 2011회계연도부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사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부터는 재무제표 개편으로 신설된 현금흐름표 검사가 추가되었음.

안하여, 재정경제부는 향후 현금흐름표의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회계기준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을 상계 없이 총액으로 표시하고,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기재하는 '직접법'을 원칙으로 채택하였음. 이는 정보이용자가 정부의 활동 영역별 현금 조달 원천과 사용 결과를 가장 명시적이고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15)]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보훈부의 경우 현금흐름표의 세부계정 금액이 타 계정과 상계되어 (-)로 표시되어 있어,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

또한 선급금 등과 같은 계정(미결계정)의 경우 구체적인 지출 성격에 따라 현금흐름표에서 운영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선급금 등의 미결계정에 대해 수기로 현금흐름 활동을 분류하는 과정 중 운영활동과 투자활동 간 분류 오류가 발견되었음.

감사원은 발생주의 회계에서 현금유입 및 유출 관련 정보를 직접적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1개 계정과 관련된 기중 거래가 많게는 수천 개 이상인 상황에서, 한정된 검사기간 내 기중 거래를 분석 및 재계산하여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에 대한 올바른 값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결산검사 시 위와 같은 오류를 정정하지 못하였고, 결산검사 시 식별된 현금흐름표 오류에 대해 직접적인 수정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음.[16)]

결산검사에서 감사원이 직접적인 수정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충분한 수준의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명시한 점은, 분석해야 할 회계정보의 광범위함과 물리적 시간 한계로 인해 감사 범위가 제한되었음을 의미함.

국가결산보고서에 현금흐름표를 신설한 취지는 정부 활동별 현금 조달 원천과 사용 결과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나, 도입 첫해 부처 사용자가 변경된 프로세스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과 시스템 운영상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표 작성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음. 감사원이 한정된 기간 내에 이를 재계산하여 올

15)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재정경제부예규 제23호)에서는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을 총액으로 표시)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16)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의 현금흐름표를 개괄적으로 검사한 결과, 일부 부처의 현금흐름활동 분류 오류 등을 확인하였으나, 새로운 국가결산보고서 체계가 도입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었고, 불확실한 검사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개편된 체계가 정착된 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결산검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바른 값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의미하는바, 이는 부처별 회계 역량과 재정경제부·감사원의 검증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반증함.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93억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차례 시험검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은 국가결산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 준비와 보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감사원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을 이유로 현금흐름표의 오류정정을 포기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결산검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17]

따라서 향후 차기 연도 결산에서도 동일한 검사 불능 상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현금흐름 정보의 자동식별 시스템 구축 및 수기 분류 최소화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18]

② 재정상태표 관련 사항

국가결산체계 개편 전 국가 재정상태표는 공시 계정과목이 무려 102개(자산 73개, 부채 24개 등)에 달하여 표의 분량만 8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여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기존의 8페이지 분량의 재정상태표를 1페이지로 압축·간소화하였음.

1년 기준의 장기·단기(유동·비유동) 분류 방식을 전면 폐지하여 재정상태표 본문의 자산 중간 단계는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의 3개 중분류(15개 항목)로 간소화되었고,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의 3개 중분류(12개 항목)로 대폭 축소 재편되었음.

그러나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 결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9조 4,112억원이 과소계상되고, 부채는 3,592억원이 과소계상되었으며, 순자산은 9조 520억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었음.

---

17) 참고로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1131-303) 세부사업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사업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은 두 회계법인이 수행하여 총 10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25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 역시 2024년과 마찬가지로 두 회계법인이 수행하여 총 9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음.

18) 재정경제부는 개편된 시스템과 변경된 프로세스를 부처 사용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과 제한된 법정 결산작업 기한으로 인해 시행착오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등을 오류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dBrain 시스템을 통한 현금흐름표 검증 기능 강화, 선급금 등 미결계정 수기 연결로 인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자 지원 기능 개선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오류사례 분석 및 결산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함.

[재정상태표 검사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수정 전 금액	오류수정금액	수정 후 금액
자 산 (Ⅰ)	35,840,322	94,112	35,934,434
부 채 (Ⅱ)	27,716,011	3,591	27,719,603
순자산 (Ⅰ-Ⅱ)	8,124,311	90,520	8,214,831

자료: 감사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2026.5.

재정상태표의 오류를 살펴보면 ① 국세청의 미수국세 회계처리 누락, 해양경찰청의 건설 중인 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방위사업청의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등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가 있었고, ② 산림청의 입목 재평가 오류,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오류, 농림축산식품부의 저리융자금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오류 등 자산 재평가 및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가 있었으며, ③ 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자산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본계정 대체를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음.

또한 ④ 행정안전부의 국가보조사업비 미지급비용 인식 누락, 국방부 및 병무청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기타충당부채 추정오류 등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가 발생하였음.

[주요 유형별 오류 금액]

(단위: 억원)

유 형		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과소(+)	146,003	-	36,107	4,402
	과대(-)	119,068	21	9,151	35,990
자산 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과소(+)	1,297	-	1,297	4,402
	과대(-)	3,471	-	3,471	1,297
건설중인 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계상 관련 오류	과소(+)	10,026	-	133	9,843
	과대(-)	19,736	-	9,843	133
부채누락 및 중복계상 등 오류	과소(+)	-	10,044	786	10,000
	과대(-)	-	786	10,044	786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과소(+)	5,706	-	362	7,115
	과대(-)	12,668	209	7,115	362
수익, 비용 인식 등 오류	과소(+)	5,330	1,260	9,480	9,094
	과대(-)	8,627	6,696	7,341	9,486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	과소(+)	90,359	-	98,945	4,252
	과대(-)	1,039	-	9,625	93,433
합 계	과소(+)	258,721	11,304	147,110	49,108
	과대(-)	164,609	7,712	56,590	141,487
	순효과	94,112	3,592	90,520	△92,379

자료: 감사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2026.5.

③ 재정운영표 관련 사항

기존의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을 원천별로 분류하는 부처별 재정운영표 형식을 채택하였으나,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개편되었음.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예산의 15대 분야별로 사업원가를 집계하는 방식이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유사한 성격의 비용 항목을 대폭 단순화하고, 수익은 성질에 따라 국세수익·이전수익·국가운영수익으로, 비용은 이전비용·국가운영비용으로 분류하여 직관적인 수익·비용 틀에 기반한 재정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임.

그러나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 결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가 3,149억원이 과다계상되고, 비교환수익 등이 8조 9,230억원이 과소계상되어 총 9조 2,379억원이 과다계상되어 있었음.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검사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수정 전 금액	오류수정금액	수정 후 금액
재정운영순원가 (Ⅰ)	6,033,598	△3,149	6,030,449
비교환수익 등 (Ⅱ)	5,301,048	89,231	5,390,278
재정운영결과 (Ⅰ-Ⅱ)	732,550	△92,379	640,171

자료: 감사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2026.5.

그리고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은 10조 2,941억원이 과소계상되고, 비용은 1조 562억원이 과소계상되어 총 9조 2,379억원 과다계상되어 있었음.

[성질별 재정운영표 검사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수정 전 금액	오류수정금액	수정 후 금액
수 익 (Ⅰ)	6,703,508	102,941	6,806,449
비 용 (Ⅱ)	7,436,058	10,562	7,446,620
재정운영결과 (Ⅱ-Ⅰ)	732,550	△92,379	640,171

자료: 감사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2026.5.

구체적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에서 댐 운영 및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된 사업비에 대하여 자산 취득이 진행 중이므로 선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고, 관세청 일반회계에서 부산세관 본관에 대해 자본적 지출(리모델링 공사비)을 잘못 등재하여 전액 감가상각 처리된 경우 등 수익·비용 인식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음.

또한 순자산변동표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순자산변동표 상 기말순자산은 재정운영결과가 9조 2,379억원 과다계상되고, 조정항목은 1,859억원이 과다계상되어 총 9조 520억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었음.

[순자산변동표 검사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수정 전 금액	오류수정금액	수정 후 금액
기초순자산 (Ⅰ)	6,327,102	-	6,327,102
재정운영결과 (Ⅱ)	732,550	△92,379	640,171
조정항목 (Ⅲ)	2,529,759	△1,859	2,527,900
기말순자산(Ⅰ-Ⅱ+Ⅲ)	8,124,311	90,520	8,214,831

자료: 감사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2026.5.

2025회계연도부터 수익과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종전의 필수보충정보 공시항목으로만 제공되었다가 주 재무제표 서식으로 격상되는 등 한층 더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비용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재정운영결과의 오류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재정경제부는 자본적 지출 등에 대한 수익과 비용 처리 등 잦은 회계오류 유형에 대한 부처별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재무제표에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현금흐름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표는 감사원도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는 각 항목의 오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당초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국가결산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이해가능성을 제고하였는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외부연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부진

대다수의 부처 및 공공기관은 예산 및 결산 집행을 위해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하 “외부연계기관”)은 예산 및 결산 집행 시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고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19)]

19)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정에 관

기획재정부(2026년부터 재정경제부)는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여 현금흐름표 신설 및 계정과목 및 정보관리항목의 변경 등을 반영하고 개편사항을 검증하였음.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사업명	총사업비		계약방법	계약기간	계약금액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사업	59억 2,700만원	23억 9,100만원	수의계약 (2차 재공고 및 단독 응찰)	2024.5.13. ~2025.12.31	58억 3,800만원	23억 5,500만원
	(소계) 83억 1,800만원				(소계) 81억 9,300만원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사업 PMO	2억 9,200만원	1억 700만원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024.4.26. ~2025.12.31	2억 3,400만원	8,600만원
	(소계) 3억 9,900만원				(소계) 3억 1,900만원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3억 5,800만원	1억 3,200만원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024.9.20. ~2025.12.31	2억 8,600만원	1억 600만원
	(소계) 4억 9,000만원				(소계) 3억 9,200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사업)	9,000만원	-	소액수의 (견적입찰)	2024.6.7 ~2024.12.31	7,900만원	-
합계	93억 3,400만원				89억 8,350만원	

자료: 재정경제부

이와 달리 보안 및 금융기능 등을 이유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44개 회계·기금의 경우, 개편된 국가결산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이후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시 이를 연계하여야 함.

이 중 25개 회계·기금의 경우 개별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국가결산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 연계 작성이 가능하였으나, 11개 회계·기금의 경우 차세대 시스템 구축시 국가결산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할 예정이고, 8개 기금은 폐지 예정이거나 민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등 개편하지 않겠다는 계획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외부연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개편 추진 상황]

유형		부처	회계·기금	기금관리주체	시스템 수정	
					착수	완료
Ⅰ	2025년 추진완료 (23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5.01	2025.06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국토부 장관	2025.04	2025.09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2024.12	2025.0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2024.12	2025.0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25.09.	2025.12.
		기획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2024.12	2025.06
		재경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재경부 장관	2025.03	2025.06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장관	2025.03	2025.06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 공단 사행: 위원회	2024.12	2025.06
		산업부	무역보험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2024.10	2025.06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2024.10	2025.07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기부 장관	2024.12	2025.06
		농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식품부 장관	2024.12	2025.06
			농지관리기금	농식품부 장관	2024.08	2025.01
		문체부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11	2025.06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2024.11	2025.06
		복지부	국민연금기금	복지부 장관	2024.11	2025.04
		인사처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2024.11	2025.06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9	2024.12
		기후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2025.01	2025.06
Ⅱ	2026년 추진완료 (3개)	교육부	사립학교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2024.11	2026.02
		고용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2025.05	2026.02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024.09	2026.02
Ⅲ	차세대 시스템 구축시 반영 (11개)	국방부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X	2028년 완료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장관		
		방사청	일반회계	-		

유형		부처	회계·기금	기금관리주체	시스템 수정	
					착수	완료
		과기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X	2027년 완료
		농식품부	축산발전기금	농식품부 장관	X	2027년 완료
Ⅳ	미개편 (7개)	재경부	외국환평형기금	재경부 장관	폐쇄망	
		기획처	복권기금	복권위원회	민간사업자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부 장관	한전 시스템 활용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부 장관	시스템無	
		국토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국토부 장관	거래 단순	
		금융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폐지 예정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장관	폐지 예정	

자료: 재정경제부

첫째,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해 정식으로 예산안에 포함하여 편성·집행한 것과 달리, 외부연계기관의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지 않고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2024년 기획재정부는 44개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한 국가결산체계 개편 협의체에서 국가결산체계 개편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에 관련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는 국가결산체계 개편사항을 일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국가결산체계 개편 협의체 개요]

◦ 개요
- 2024년「국가회계법」및「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외부연계기관 대상인 44개 회계·기금(17개 부처,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결산체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단장으로 하여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함

◦ 협의체 회의 내용
- (1차, 2024.7.2.) 국가결산체계 개편 관련 기재부 추진상황 공유(재무제표 신설·변경) 및 예산 확보 가능 여부 점검
- (2차, 2024.8.7.) dBrain+-외부연계기관 송수신 자료 설명 및 배포 및 예산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도록 요청
- (3차, 2024.9.25.) dBrain+ 고도화 사업 진행상황 공유 및 외부연계기관 시스템 개편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요청
- (4차, 2024.12.12.) 2025년 dBrain+ 테스트 및 시범결산·가결산 운영방안 안내

국가결산체계 개편사항은「국가재정법」및「국가회계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등은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개편사항이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제도개편사항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할 사안임.

정부안 편성 없이 외부 연계기관에 대해서 자체전용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결산체계 개편 및 예산안 편성을 동시에 수행하던 기획재정부로서는 책임감 없는 행태라고 볼 수 있고, 이·전용 등으로는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조달하기 어려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국가결산체계 개편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음.

또한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사업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기금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계획안 편성을 승인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금운용계획의 연도 중 변경을 통해 사업수행 재원을 마련하였으며,[20]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당

2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개정 국가회계 기준을 반영하여 기금회계 재무제표를 개편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통해 1차 사업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차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하였음.
본 구축 사업의 경우, 1차 사업은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까지의 사업으로 6억 3,500만원이 계약되었고, 2차

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수행하는 등 국회 심사를 우회하여 신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연이은 자체변경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고 지적된 바 있음.[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가회계 결산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개편된 국가결산체계를 적용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의 연계시스템을 재구축 ◦ (주요 내용) - 개편된 국가결산체계에 맞추어 분류체계 개편, 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주석체계 변경 - 전기 데이터 이행 및 외부연계 결산 업무 수행 등 ◦ (예산 및 사업기간) - 총사업비: 11억 8,000만원 (장기계속계약 방식) (구축사업: 10억 8,800만원 *1차(2024.12.~2025.7.) 6억 3,500만원, 2차(2025.8.~2026.2.) 4억 5,300만원, 감리 9,200만원) - 사업기간: 2024.12. ~ 2026.2.(장기계속계약 방식)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국방부·방사청의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외부연계기관의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반영할 계획이나,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가결산체계의 통일적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직접 활용하지 않는 44개 회계·기금 중 11개 회계·기금은 외부연계기관이 개별 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면서 반영할 계획으로 2026년 현재 해당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결산체계 개편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25년 결산 기준 총지출 44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국방부는 소관 회계·기금에 대해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별도로 활용하고 있으나,[22)] 국방부는 국가결산체계 개편이 2022년 말 결정되었음에도 '국방재정정보체계 국가결산 개편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을 2025년에서야 추진하였으며 2026년 6월 현재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상황임.

사업은 신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5년 중 자체변경을 통해 4억 5,300만원을 조달하여 추진할 예정임.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 1차 사업에 대해서만 감리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9,200만원에 계약되었음.

2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5.8., p.418.

22) 일반회계·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군인연금기금 및 군인복지기금

이와 같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반영하는 경우 대규모 정보시스템 개편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연차별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경제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정보시스템 개편이 늦어져 국가결산체계의 통일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셋째, 외부연계기관이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연계하는 방식이 단순 엑셀파일 업로드에 그쳐 데이터 무결성이 저해되고 데이터 오류 점검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낮아지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시간 재정분석이 어려워 집행관리 차원의 문제도 대두됨.

외부연계기관이 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결산보고서를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은 시스템 간 자동 연계(system to system)가 아니라 예산실무자가 단순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와 같은 단순 엑셀 업로드 방식은 국가 결산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시스템 간 자동 연계와 달리, 엑셀파일을 매개로 한 수동 업로드는 데이터의 추출, 수정, 입력 과정에서 담당자의 오기나 누락 등 인적 오류가 개입할 여지가 매우 높음. 이에 개별 회계·기금의 예산 실무자가 결산 시마다 수작업으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반복 업무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 전반의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수동 연계방식은 파일의 변조·유출 위험은 물론, 데이터 변경 이력의 추적이 어려워 보안 통제가 취약하므로 재정 통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필연적으로 주기적인 취합과 마감 과정이 필요하여 재정정보의 시차가 발생하고 실시간 재정 모니터링을 불가능하게 하여 정책결정의 시의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결산 외부연계기관 목록 및 연계방식]

	소관명	회계/기금명	연계 방식
1	국방부	일반회계	엑셀 업로드
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엑셀 업로드
3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엑셀 업로드
4	국방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엑셀 업로드
5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엑셀 업로드
6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엑셀 업로드
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	System to system
8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System to system

	소관명	회계/기금명	연계 방식
9	기후부	한강수계관리기금	엑셀 업로드
10	기후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엑셀 업로드
11	기후부	금강수계관리기금	엑셀 업로드
12	기후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엑셀 업로드
13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엑셀 업로드
14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System to system
15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	엑셀 업로드
16	기획재정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엑셀 업로드
17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엑셀 업로드
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System to system
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엑셀 업로드
2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발전기금	엑셀 업로드
2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엑셀 업로드
22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엑셀 업로드
23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엑셀 업로드
24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엑셀 업로드
25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엑셀 업로드
26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System to system
27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System to system
28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엑셀 업로드
29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System to system
3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엑셀 업로드
3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	System to system
3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엑셀 업로드
3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엑셀 업로드
3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기금	System to system
35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엑셀 업로드
36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엑셀 업로드
37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System to system
3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엑셀 업로드
39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엑셀 업로드
4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ystem to system
41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System to system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System to system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System to system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System to system

주) 회색 음영은 개별 정보시스템의 산출물을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연계하는 경우를 표시한 것임

자료: 재정경제부

4. 예비비 결산

가. 개 요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산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을 의미함.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되며, 일반예비비는 주로 새로운 정책 수요와 예기치 못한 사건 등에, 목적예비비는 미리 사용 목적을 정하여 대비할 수 있는 재해대책·환차손 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음.[1)]

예비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고, 목적예비비는 이와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2)]

특별회계는 근거 법률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회계로부터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음.[3)]

예비비의 총액은 국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이후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① 예비비 사용 신청(각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 ②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작성(기획재정부장관), ③ 국무회의 심의, ④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됨.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결산서와 함께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4)]

문의 : 02-6788-5683

---

1) 다만,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요구 시 기존의 3가지 편성요건인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외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

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1) 일반현황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 이내인 3조 8,000억원(일반예비비 1조 2,000억원, 목적예비비 2조 6,000억원)으로, 이 중 3조 1,550억원이 지출되었고 37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075억원이 불용되었음.[6)]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비비 1억원은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38,000	33,286	31,550	376	6,075
특별회계	1	-	-	-	1
합 계	38,001	33,286	31,550	376	6,076

주) 특별회계 예산액 및 불용액은 등기특별회계에 계상된 1억원임
자료: 2025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4)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시 집행가능성 및 과거 예비비 집행사례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6)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도가 설정된 일반예비비는 2025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1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 사용명세별 현황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사용명세별로 살펴보면, ① 목적예비비는 2조 6,000억원 중 2조 2,707억원이 지출 결정되어 2조 2,011억원이 지출되었고, 12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572억원이 잔액 처리되었음. 용도별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4,677억원), 대통령 선거 관련 경비(4,894억원), 부모급여·아동수당 지원(3,080억원)에 지출되었음.

② 일반예비비는 1조 2,000억원 중 1조 578억원이 지출 결정되어 9,538억원이 지출되었고, 25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769억원이 잔액 처리되었음. 일반예비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1,035억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경비(688억원) 등에 사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별 집행현황]

(단위: 억원)

사용 명세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일반회계	○ 목적예비비	22,707	22,011	124	572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4,677	4,677	-	-
	- 대통령 선거 관련 경비	4,894	4,612	-	282
	- 부모급여·아동수당 지원	3,080	3,080	-	-
	○ 일반예비비	10,578	9,538	252	789
특별회계		-	-	-	-
(일반회계 전입금)		(2,228)	(2,174)	(42)	(125)
합 계		33,286	31,550	376	1,360

자료: 2025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3) 중앙관서별 현황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3조 3,286억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개 기관에서 지출되었음.

예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7,714억원)이며, 이어서 교육부(7,000억원), 보건복지부(5,142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4,804억원), 법무부(3,813억원), 행정안전부(2,31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중앙관서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억원)

소 관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주요내역
기획재정부	7,714	6,978	16	721	국가안전보장 활동 지원, 우주항공 분야 첨단기술 확보 등
교육부	7,000	7,000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건복지부	5,142	4,981	109	52	출생아 실적 증가에 따른 지원비,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804	4,537	-	268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비용
법무부	3,813	3,736	-	77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등
행정안전부	2,318	2,062	110	14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호우 피해 복구(8월,9월)
해양수산부	897	718	138	42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소요, 수산물상생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834	834	-	-	식용견 농장주 폐업 지원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62	160	-	1	청와대 이전
국토교통부	156	156	-	-	주거급여 지원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9	124	-	5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홍보 지원, 국가안전공지능위원회 운영 지원 등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24	87	1	36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지원
대통령경호처	98	87	2	8	청와대 통합 경호 및 경비 인프라 구축
경찰청	45	45	-	0	경찰경호부대 청와대 복귀 관련 경비
산업통상부	20*	-	-	-	
기후에너지환경부	15	32	-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공정거래위원회	7	7	-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지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7	5	1	1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2	-	-	정보화시스템 복구 예산
고용노동부	1	1	-	-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노사누리 시스템 복구 예산
총 합 계	33,286	31,550	376	1,360	

(4) 최근 5개년 예비비 편성·지출 추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규모는 2021년 9조 7,00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해대책비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2023년·2024년 각각 5조 5,000억원, 4조 6,000억원, 4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000억원(△9.5%)이 감소한 3조 8,000억원이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규모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대통령 선거 관련 경비, 부모급여·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조 5,170억원(92.7%)이 증가한 3조 1,550억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연례적으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최근 5개년 예비비 편성액 및 지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회계	편성액	97,000	55,000	46,000	42,000	38,000
	지출액	92,721	47,049	13,091	16,380	31,550
특별회계	편성액	3	2	3	2	1
	지출액	-	-	-	-	-
합계	편성액	97,003	55,002	46,003	42,002	38,001
	지출액	92,721	47,049	13,091	16,380	31,550

자료: 2025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예비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목적예비비 지출액은 2조 2,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427억(294.2.2%) 증가하였음.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4,677억원, 대통령 선거 관련 경비로 4,894억원을 지출한 것 등에 기인함.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9,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8억원(△11.7%) 감소하였음.

[최근 5개년 예비비 지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목적예비비	78,714	33,473	2,121	5,584	22,011
일반예비비	14,008	13,575	10,970	10,796	9,538

자료: 2025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검토 의견

「국가재정법」 제51조에서는 예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②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③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④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7)]

다만 2025년도에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배정되어 집행된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집행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임.

(1) 예산 편성 시 예측가능했던 사안에 대한 예비비 사용 부적정

202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사전에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예비비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① 교육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 예비비 사용액은 1,034억 6,000만원에 달함.

교육부는 2023년 이후 연도별 출생아 수와 영유아(0-2세) 어린이집 취원율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예산 편성 시 예측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나,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인원을 2024년도 예산 기준인원과 동일한 40,500명으로 예측한 것은 최근 증가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8)]

---

7)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8) 결과적으로 2025년 영아반 교사 지원인원은 46,646명으로 나타나 해당 항목에서 1,250억 9,000만원의 초과지급액이 발생하였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집행실적과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후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매년 부족하여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1,018,934	1,018,934	-	23,086	17,556	1,059,558	1,059,558	104.0	-	-
2024	1,123,712	1,123,712	-	933	33,254	1,157,898	1,157,898	103.0	-	-
2025	1,169,743	1,169,743	-	2,310	103,460	1,275,512	1,275,512	109.0	-	-

자료: 교육부

[2023~2025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예산 산출근거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산출 근거(A)	집행 내역(B)	차이 (B-A)	산출 근거(C)	집행 내역(D)	차이 (C-D)	산출 근거(E)	집행 내역(F)	차이 (F-E)
영아반 교사	인원	36,846	39,653	2,807	40,805	43,136	2,331	40,805	46,646	5,841
	금액	483,532	548,572	65,040	559,674	619,760	60,086	587,594	712,684	125,090

자료: 교육부

② 법무부의 **‘형사보상’** 사업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는 등의 경우 보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액 420억원보다 많은 429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음.

이는 최근 재심 무죄사건 증가 등으로 보상금 지급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예산액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00억원, 2025년 420억원으로 편성된 결과, 매년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여 이·전용 또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예비비와 이·전용 등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지급 추세 및 사건 유형별 발생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본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022~2025년도 형사보상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40,000	40,000	2,323	-	42,323	42,323	105.8	100.0	-
2023	40,000	40,000	16,852	-	56,852	56,851	142.1	100.0	-
2024	40,000	40,000	37,225	-	77,225	77,219	193.0	100.0	6
2025	42,000	42,000	42,554	42,900	127,454	127,454	303.5	100.0	-

자료: 법무부

③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의 국산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200억원, 2023년 942억 7,900만원, 2025년 30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음.

해양수산부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동 사업규모를 매년 확대해오고 있으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반복적·상시적인 사업 수요에 충당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과 할인행사 수요 등을 바탕으로 사업 소요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수요는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2~2025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B)	예비비(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20,000	41,000	-	20,000	61,000	61,000	-
2023	64,000	64,000	△163	94,279	158,114	158,094	20
2024	133,773	133,773	-	-	133,773	133,735	38
2025	100,000	150,000	-	3,000	153,000	152,993	7

자료: 해양수산부

(2)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비비 사용 부적정

2025년도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가 있으나, 향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은 2024년 연말 계엄사태 대응 등을 위해 임명된 국제금융협력대사 등을 지원하는 임시조직인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 8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2025년 예비비 3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음.[9)]

그러나 2025년 6월 새정부 출범으로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고 외교부 등 공식적인 대외 협력 채널이 가동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및 해외투자자 소통 등은 기획재정부 내 정규 부서인 국제금융국의 고유 업무로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동 지원단을 6개월 연장 운영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임.

재정경제부는 향후 유사한 자율기구를 설치할 경우, 비상상황 종료 및 새 정부 출범 등 행정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월별 국제금융협력대사 사업추진 내역]

연번	협의 유형	일자	회의내용
1	설명회 참석	2025.2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 참석(2.13일, 싱가포르) 및 글로벌 3대 신평사(무디스, S&P, 피치) 한국 담당 면담
2	인터뷰	2025.2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중앙일보 인터뷰
3	금융기관 협의	2025.3	국내소재 글로벌 IB, 증권사 논의
4	설명회 참석	2025.3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 경제설명회 참석(3.11일), WGBI 편입관련 FTSE CEO 면담, MSCI 고위급 면담, 라자드 등 주요 투자자 면담
5	글로벌 투자자 면담	2025.3	일본 공적연금 GPIF CIO 면담, 레조나자산운용CEO면담, 미쓰비시UFJ자산운용CIO면담
6	인터뷰	2025.3	국제금융협력대사의 법률신문 인터뷰
7	인터뷰	2025.4	국제금융협력대사의 매일경제 인터뷰
8	인터뷰	2025.5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이데일리 인터뷰
9	금융기관 협의	2025.6	국내소재 글로벌 IB, 증권사 논의

9)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2025년 상반기에는 국제금융협력대사와 총 3회(2월 홍콩·싱가폴, 3월 미국, 4월 일본) 국외출장 및 한국경제설명회, 글로벌 금융인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국제투자협력대사의 2회(2월 카타르·사우디·UAE, 3월 미국) 국외출장 관련 활동비를 지원하였음.

연번	협의 유형	일자	회의내용
10	행사 준비 및 지원	2025.9	뉴욕 VIP 주재 대한한국 투자서밋 활동 지원
11	금융기관 협의	2025.10	국내소재 글로벌 IB, 증권사 논의
12	설명회 참석	2025.11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 경제설명회 참석(11.6일) 새정부 주요정책방향 설명 및 주요기관 1:1면담 진행
13	금융기관 협의	2025.12	국내소재 글로벌 IB, 증권사 논의

자료: 재정경제부

(3)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대한 예비비 배정 후 과다 이월 부적절

2025년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과다 배정한 후 상당 부분을 이월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예비비 과다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①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근무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비비 866억 8,1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중 관리용역비 36억 2,400만원은 연내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음.

해양수산부는 2025년 11월 주차장관리 용역 등 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사 개청이 2025년 12월 23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금액 31억 800만원은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낙찰차액 등 5억 1,600만원은 불용된 것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사업 일정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요를 산정해야 하나, 해양수산부는 청사 이전 및 개청 일정에 비추어 필요한 금액 이상의 관리용역비를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그 결과 계약금액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10]

해양수산부는 향후 예비비를 요구할 경우 사업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를 산정함으로써 예산 과다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0) 또한 동일한 목적의 관리용역비가 2026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2025년 연말에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매년 예산 이월이 반복될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저해할 수도 있음.

[2025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 관리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기간	발주금액	낙찰액
해양수산부 청사 주차장관리 용역	2025.11.21.~2026.11.30.	275	244
해양수산부 청사 미화(청소) 용역	2025.11.24.~2026.11.30.	1,167	1,030
해양수산부 청사 방호 및 보안 용역	2025.11.26.~2026.12.31.	2,072	1,834
합계		3,514	3,108

자료: 해양수산부

②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은 3,592억 9,600만원이었으나, 추가로 422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그 중 313억 3,700만원을 집행(집행률 74.2%)하고 108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음.

보건복지부는 2025년 출생아 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상회함에 따라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고 자치단체별 정확한 출생아 통계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108억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의무지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잔액을 모두 이월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예비비 집행 시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신청 시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실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비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1]

---

11) 한편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액 이월하였는바, 향후 법률규정에 반하는 이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배정일	배정 사유
일반 예비비	42,220	31,337	10,883	-	9월 19일	2025년 출생아 실적이 당초 전망치(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상회함에 따라 대상자 추가 지원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은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비비 51억 2,000만원을 승인받아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하였으나, 12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5년 10~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4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우주항공청)와 대학·출연연·기업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여 한인 및 외국인 연구자 총 1,627명을 대상으로 인재유치, 채용상담 부스 운영, 정책 브리핑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정산결과 교부된 51억 2,000만원의 75.3%인 38억 5,700만원만 활용되고 12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국가재정법」 제51조에제2항제4호에서는 예비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12)]

12)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2025년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과제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기관명	국비지원	집행액	집행잔액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주관)한국과학창의재단	3,200	1,981	1,219
	(공동)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20	1,876	44
합계		5,120	3,857	1,26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스마트폰 공공어플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자 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13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예비비 42억 6,5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2025년 연중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예비비가 전액 이월되었고, 2026년 2월 공공어플 복구 및 클라우드 전환 계약이 체결되어 집행되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자 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13일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사업’**에 예비비 27억 8,5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2025년 연중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예비비 27억 8,500만원 중 300만원만이 집행되고 27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6년 2월 데이터 분석시스템 복구계약이 체결되어 집행되었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두 사업에서 예비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2025년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차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나, 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을 최소하여야 하는 예비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2025년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예비비를 배정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시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및 금액을 면밀하게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 및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사업 예비비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비비 (A)	집행액 (교부액)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액 (B)	보조사업자의 차년도 이월액	보조사업자의 불용액	실집행률 (B/A)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4,265	4,265	-	4,265	-	-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2,785	2,785	3	2,782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4) 법령이나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사용 부적정

예비비를 사용명세서와 달리 과도하게 항목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재원마련의 최후 수단인 예비비를 1월부터 사용하는 등 「국가재정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거나, 법률 개정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 법률에 따른 조직 운영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가) 과도한 항목 간 변경

법무부의 **'조은석 특별검사'**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된 사업으로 2025년 연중 특별감사 활동이 개시됨에 따라 예비비 총 104억 7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65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36.8%인 38억 3,400만원은 불용되었음.[13)]

「국가재정법」 제51조는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다음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여야 하며, 다른 사업이나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14)]

---

13) 법무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수사기간과 특별수사관 규모 등과 과거 특별검사 조직 운영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배정·집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나, 면밀한 비용 추계 없이 예비비를 신청함으로써 과도한 예산 불용을 초래하였음.

14) 이·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효율적인 재해복구 지원, 국제관계 등 대외여건 변경 등에 한하여 항목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러나 법무부는 2025년 11월 24일 인건비(110)에서 운영비(210) 및 특수활동비(230) 등으로 5억 6,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그 밖에도 관리용역비(210-15)를 일반수용비(210-01)로, 배상금(310-02)을 기타보전금(310-04)으로 조정하는 등 세목 간 조정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비비 신청 단계에서 세목 분류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향후 긴급한 소요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 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비비 편성 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예비비의 과도한 불용 또는 항목 간 과도한 예산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조은석 특별검사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7.22.)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210-15	17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210-01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용역비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세목조정 (2025.11.19.)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310-02	3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310-04	310-04를 310-02로 잘못 편성하여 적합한 비목 집행을 위한 세목조정
승인전용 (2025.11.24.)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110-01	560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210-06	3차 연장 수사기간 (2025.11.15.~2025.12.14.)에 해당하는 예비비 편성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실질 집행을 위한 승인전용
					210-07	
					210-16	
					230-00	
					240-01	
세목조정 (2025.12.18.)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210-01	56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210-07	임차료 집행 부족분을 일반수용비에서 세목조정

자료: 법무부

(1) 예비비 집행원칙

○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사업이나 타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다.

- 다만, 효율적인 재해복구 지원, 국제관계 등 대외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재원 마련의 최후수단인 예비비를 1월부터 사용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4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4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신설하며 예비비 배정과 이용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였는데, 2025년에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배정과 이용을 통해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 1월 24일 예비비 97억 6,800만원을 배정받고, 3월 21일과 12월 19일 다른 사업에서 총 1,067억 1,300만원을 이용(증)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의정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의정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예비비와 이용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였다고 하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비를 신청한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려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연초에 예비비를 신청하여 사업비를 조달한 것은 엄격한 요건(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 하에 재원 마련의 최후 수단으로 기능하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예산 운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과 2025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4년	-	-	-	226,590 △27,894	189,066	387,762	381,332 (380,516)	38	6,392
2025년	-	-	38	106,713	9,768	116,519	116,158 (33,557)	-	361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예비비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배정일	배정 사유
목적 예비비 (사회재난)	9,768	9,737	-	31	1월 2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등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다)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 미편성 후 법률 미개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5년 1월 예비비 13억 78,200만원이 배정되고, 3월 다른 사업에서 1억 2,500만원 이용(증)되었으며, 한편, 2025년 4월 제출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억 8,00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음.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15]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서 동 위원회 사무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 9일 예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았다고 설명함.[16]

그러나 법률안 심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는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 이체[17]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을 전제로 현행 법률에 따른 조직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와 이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한 것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라고 보이므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6년도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	4,980	-	125	1,372	6,477	5,787	67	623	9.05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5)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24년 7월 11일 발의)이 2024년 9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9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한 차례 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 중임.

16)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의 예비비 배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배정일	배정 사유
일반 예비비	1,372	1,307	-	65	1월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의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예산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17)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5.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

가. 개 요

「대한민국헌법」 제54조[1]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84조[2]는 예산안 및 결산의 회부와 심사를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명문화하고 있음.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심사라는 헌법적 기능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책 집행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승인 절차를 넘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 자원의 배분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과 정책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보면,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하거나 통폐합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물가상승·인건비 증가 및 복지 수요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목별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정의 실질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도·예산집행 적정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산

문의: 02-6788-5698

---

1)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2)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편성과 정책 설계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국회는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송부하고, 정부는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

(1)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법」 제84조제2항[3]은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법률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1월 27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 1,987건(중복 91건 포함)을 채택하였고, 이를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제도개선 1,493건, 주의 437건, 시정 148건, 징계 및 변상은 없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및 조치현황]

(단위: 건, %)

구분	유형별 시정요구사항						합계 (A)	조치결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조치 완료(B)	조치중	조치율 (B/A)
결산	-	-	147	432	1,479	91	1,967	1,583	384	80.5
예비비	-	-	1	5	14	-	20	20	-	100.0
합계	-	-	148	437	1,493	91	1,987	1,603	384	80.7

주 1) 정보위원회 소관 제외
2) (중복)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중복 적용한 경우를 말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3)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과(2026년 5월 말)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총 1,987건 중 1,603건(80.7%)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384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 부대의견 조치결과

예산안 및 결산의 부대의견은 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 없이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행정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기 위하여 의안에 첨부하여 의결하는 국회의 의견을 말함.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총 36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현황]

구 분	부대의견 수	해당 중앙관서·기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6건	정부 공통 5건, 경찰청 4건, 고용노동부 4건, 교육부 2건, 국방부 3건, 국세청 1건, 국토교통부 4건, 금융위원회 1건, 기획재정부 2건, 농림축산식품부 1건, 문화체육관광부 1건, 방위사업청 1건, 보건복지부 3건, 통일부 1건, 행정안전부 1건, 환경부 2건

자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또한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7건을 조치 완료하고, 9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현황]

구 분	부대의견 수	해당 중앙관서·기관
조치완료	7	기획예산처 1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건, 문화체육관광부 1건, 보건복지부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1건, 고용노동부 1건, 국토교통부 1건
조치중	9	정부공통 2건, 국방부 1건, 행정안전부 2건, 국토교통부 4건
총 계	16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검토의견

(1) 연례적으로 미조치 건수가 많은 부처의 개선 노력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해양경찰청 등 일부 부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율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연례적으로 미조치 건수가 많으므로, 해당 중앙관서들은 시정요구사항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우선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전부처 평균 조치율은 80.7%로 2023회계연도 전부처 평균 조치율 80.0%보다 증가하였으나, 2021회계연도나 2022회계연도에 비하여는 낮으므로, 각 부처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책임성과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전부처 평균 조치율(결산의결 다음연도 4월 말 기준)]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결산	
전부처 평균 조치율	83.0%	전부처 평균 조치율	82.6%	전부처 평균 조치율	80.0%	전부처 평균 조치율	80.7%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율 하위 10개 중앙관서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57.1%)가 가장 낮은 조치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해양경찰청(64.3%), 국세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70.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4개년 중 세 번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국무조정실및총리비서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해양경찰청 및 성평등가족부 등 4개 기관은 4개년 중 두 번씩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정요구사항 조치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조치율 하위 10개 중앙관서(결산의결 다음연도 4월 말 기준)]

(단위: %)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결산	
중앙관서명	조치율	중앙관서명	조치율	중앙관서명	조치율	중앙관서명	조치율
전부처 평균	83.0	전부처 평균	82.6	전부처 평균	80.0	전부처 평균	80.7
행복청	33.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0.0	통계청	45.5	원자력안전위원회	57.1
국가보훈부	50.0	기상청	58.8	우주항공청	50.0	해양경찰청	64.3
진실화해위	50.0	국가보훈부	59.1	여성가족부	58.3	국세청	70.0
질병청	53.8	여성가족부	6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4.5	대법원	6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0	고용노동부	70.8
금융위	58.8	국가인권위	6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5	기후에너지환경부	70.9
기상청	58.8	해양경찰청	66.7	해양수산부	65.2	행정안전부	71
병무청	62.5	국조실및총리비서실	68.0	방송통신위원회	66.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1.4
국조실및총리비서실	63.6	농림축산식품부	7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6.7	재외동포청	7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6.7	소방청	72.7	소방청	66.7	농촌진흥청	71.4

주) 결산 의결일: 2021회계연도 2022.11.10./ 2022회계연도 2023.12.20./ 2023회계연도 2024.12.02./ 2024회계연도 2025.11.27.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정부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중(미조치) 하위 10개 중앙관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34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토교통부(2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건), 교육부(22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국방부는 4년 동안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 및 교육부 등 4개 기관은 4개년 중 3번씩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기관은 4개년 중 2번씩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연도별 시정요구사항 미조치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

[연도별 시정요구사항 미조치 하위 10개 중앙관서(결산의결 다음연도 4월 말 기준)]

(단위: 건)

순위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결산	
	중앙관서명	조치중	중앙관서명	조치중	중앙관서명	조치중	중앙관서명	조치중
1	**법무부**	16	**국토교통부**	29	**국토교통부**	38	**기후에너지환경부**	34
2	**고용노동부**	13	농림축산식품부	22	**문화체육관광부**	33	**국토교통부**	29
3	**국방부**	11	**보건복지부**	20	**보건복지부**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4	**행정안전부**	11	**환경부**	19	**법무부**	24	**교육부**	22
5	금융위원회	7	**국방부**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고용노동부**	19
6	국가보훈처	6	**문화체육관광부**	14	해양수산부	23	성평등가족부	15
7	농림축산식품부	6	대법원	12	**기획재정부**	20	문화체육관광부	15
8	질병관리청	6	**기획재정부**	12	**여성가족부**	20	**법무부**	13
9	국회	5	**교육부**	12	**교육부**	17	중소벤처기업부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	방위사업청	12				
10	통일부	5	**산업통상자원부**	12	**국방부**	16	**행정안전부**	9
	문화재청	5	고용노동부	12	**행정안전부**	16	산림청	9
	산업통상자원부	5			**환경부**	16	**국방부**	9

주) 결산 의결일: 2021회계연도 2022.11.10./ 2022회계연도 2023.12.20./ 2023회계연도 2024.12.02./ 2024회계연도 2025.11.27.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정부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많은 미조치 건수를 보이는 기관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행 로드맵 마련, 정기적 점검·평가 체계를 연계한 피드백 구조를 도입하는 등 책임 행정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4)]

또한 재정경제부와 감사원은 시정요구사항 이행 제고를 위한 협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미이행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에 대한 실질적 환류 효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따라 미조치 건수 및 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

(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및 점검 필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가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계속해서 조치중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완료 여부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국회의 실질적인 확인·점검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국회법」에 근거하여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송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정부는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결산 의결일 다음 해 5월 말에 제출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율을 보면, 2021회계연도는 83.0%, 2022회계연도는 82.6%, 2023회계연도는 80.0%이고 2024회계연도는 80.7%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1회계연도나 2022회계연도에 비하여는 감소한 상황임.

[최근 4년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단위: 건, %)

회계연도	합계				결산				예비비			
	계(1+2)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소계(1)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소계(2)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2021	1,416	1,175	241	83.0	1,394	1,159	235	83.1	22	16	6	72.7
2022	1,916	1,582	334	82.6	1,889	1,559	330	82.5	27	23	4	85.2
2023	2,319	1,855	464	80.0	2,293	1,831	462	79.9	26	24	2	92.3
2024	1,987	1,603	384	80.7	1,967	1,583	384	80.5	20	20	-	100.0

주) 각 연도 4월 30일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다음으로 결산에 첨부되어 의결되는 부대의견의 연도별 후속조치 조치율을 보면, 2021회계연도는 66.7%, 2022회계연도는 65.4%, 2023회계연도 61.8%이고 2024회계연도는 43.8%로 전년대비 18%p 하락하였으며 연도가 경과할수록 조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4년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단위: 건, %)

회계연도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조치율
2021	21	14	7	66.7
2022	26	17	9	65.4
2023	34	21	13	61.8
2024	16	7	9	43.8

주) 각 연도 4월 30일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그런데 정부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각 연도 5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는 조치 중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결과 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2021회계연도 241건, 2022회계연도 334건, 2023회계연도 464건, 2024회계연도 384건이 조치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었으며, 부대의견의 경우 2021회계연도 7건, 2022회계연도 9건, 2023회계연도 13건, 2024회계연도 9건이 조치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었음.

지금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으면 국회가 제기한 지적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정책 반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 제도의 핵심 기능인 사후 환류(feedback)와 재정통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될 수 있음.

따라서 각 시정요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이 점검·보고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조치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국회의 실질적인 확인·점검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5)]

5) 제21대 국회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음.(의안번호 제2109327호,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3) 예산안 심의 결과에 배치되는 집행 사례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거나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이 과도하게 변경되고, 관련성이 적은 다른 사업 추진에 집행잔액이 부적정하게 활용되며,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을 이·전용으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저촉되는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예산 집행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대한민국헌법」및「국회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국가재정법」제45조[6]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7]는 예산의 전용을 규정하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민주적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①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②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을 과도하게 변경하고, 관

6)「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7)「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련성이 적은 다른 사업 추진에 집행잔액을 부적정하게 활용하였으며, ③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을 이·전용으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①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경우

우선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현황은 총 4개 중앙관서에 8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없는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 사업을 별도 예산 확보 없이 기존 출연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추진하였음.

국세청은 **‘엔티스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의 자체 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신규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및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였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예산으로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안에 편성되어 국회 심의 중이었던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기획을 지원하였음.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직장인 정신건강사업 운영’** 및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사업을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수입대체경비로 수행하고 있음.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1)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표 1] 18,763	[표 2] 18,763	[표 3] 18,763	당초 계획에 없는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사업을 별도 예산 확보 없이 기존 출연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추진하였음
(2) 국세청	엔티스 고도화	-	520	439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의 자체 전용을 통해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재원을 조달하여 신규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30,000	30,000	30,000	당초 예산안 편성시 계획되어 있지 않던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두 개 사업의 예산을 혼용함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25,360	25,360	25,360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9,000	9,000	9,000	동 사업 예산으로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안에 편성되어 국회 심의 중이었던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기획을 지원함
(4) 보건복지부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	31	30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사업,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사업 등을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수입대체경비로 수행함
	직장인 정신건강사업 운영	-	28	13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	127	110	

주)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은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등 모든 사업을 포함
자료: 각 부처 검토보고서 자료 취합

②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경우

다음으로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을 과도하게 변경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다른 사업 추진에 집행잔액을 부적정하게 활용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경우는 총 8개 부처에 9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찰청은 **'지역경찰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디캠 장비 구매를 위해 2년간 총 154억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된 이후 국회 심의내역과 달리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기간 5년(2025년~2029년)의 총사업비 194억 8,600만원 규모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낙찰차액으로 신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역상생상품 출시 등 일회성 홍보 사업에 예산 일부를 지출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스튜디오 구축 완료 이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야외촬영 연구용역 등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한국 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를 추진하지 않고, 해당 예산 일부를 내부 조직인 시각예술디자인과와 보조사업 기관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국회의 당초 심사내용과 달리 집행하였음.

교육부는 **‘사회정책협력관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서 폐지로 인한 기본경비 집행잔액 일부를 다른 부서 기본경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조정된 기존 업무 지속 수행을 위한 예산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내역과 달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부적절함.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제도의 시행이 2026년 1월로 2년간 유예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과도하게 이용 집행하였음.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중 179억 9,900만원을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사업의 국가배상금으로 이용하여 집행하였음.

병무청은 **‘사회복귀준비금’** 사업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활용하거나 사업 목적이 상이한 다른 사업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데 활용하였음.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사업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초과지출승인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예산액 2억 2,600만원의 1,497%인 33억 8,300만원의 초과지출을 승인하였음.

[국회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변경 내역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1) 경찰청	사업계획 변경	지역경찰운영	17,870	18,394	17,870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디캠 장비 구매를 위해 2년간 총 154억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된 이후 국회 심의내역과 달리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기간 5년(2025년~2029년)의 총사업비 194억 8,600만원 규모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음
(2)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활성화 지원	250	250	247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낙찰차액으로 신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역상생상품 출시 등 일회성 홍보 사업에 예산 일부를 지출하였음
(3)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12,500	12,500	12,500	스튜디오 구축 완료 이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야외촬영 연구용역 등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음
	사업계획 변경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1,500	1,500	1,500	당초 계획하였던 '한국 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를 추진하지 않고, 해당 예산 일부를 내부 조직인 시각예술디자인과와 보조사업기관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국회의 당초 심사 내용과 달리 집행하였음
(4) 교육부	집행잔액 부적정 활용	사회정책협력관기본경비 (총액비대상)	415	273	160	부서 폐지로 인한 기본경비 집행잔액 일부를 다른 부서 기본경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조정된 기존 업무 지속수행을 위한 예산 필요성을

(단위: 백만원)

부처	변경 내역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감안하더라도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내역과 달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부적절함
(5) 국세청	집행잔액 부적정 활용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2,560	1,060	1,047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제도의 시행이 2026년 1월로 2년간 유예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과도하게 이용 집행하였음
(6) 국방부	집행잔액 부적정 활용	단기복무 장려금	48,792	29,499	29,484	집행잔액 중 179억 9,900만원을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사업의 국가배상금으로 이용하여 집행하였음
(7) 병무청	집행잔액 부적정 활용	사회복귀 준비금	206,465	202,923	196,963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을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활용하거나 사업 목적이 상이한 다른 사업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데 활용하였음
(8) 보건복지부	사업비 변경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226	3,631	3,439	연례적으로 초과지출승인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예산액 2억 2,600만원의 1,497%인 33억 8,300만원의 초과지출을 승인하였음

자료: 각 부처 검토보고서 자료 취합

③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을 이·전용을 통해 증액한 경우

방위사업청은 **‘이동형장거리레이더’**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건설보상비 예산이 당초 12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억 7,8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경정(2025년 7월)되었음에도, 연도 말에 이르러 또 다른 세부사업인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사업의 미집행 잔액 중 26억 2,800만원을 전용하여 동 사업의 건설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도 건설보상비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전용 (2025.12.2.)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2131-323)	건설 보상비 (410-00)	2,628	이동형장거리레이더 (2132-333)	건설 보상비 (410-00)	이동형장거리레이더 보전부담금 부족분 보전

자료: 방위사업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부처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집행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예산 집행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향후 해당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취지에 반하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정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 중 실제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례,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치가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미조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조치결과 보고 시 구체적인 이행 목표 및 성과지표 등 실제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이행 담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1,987건의 19.3%인 384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고, 80.7%인 1,603건은 ‘조치완료’하였다고 2026년 5월 국회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중’으로 보고 되었으나 실제 조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2건이 있고, ‘조치완료’로 보고된 내용 중 아직 개선이 미흡하거나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조치완료’로 보고된 사례가 총 12건이 있음. 이 중 5건은 매년 반복적으로 미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① ‘조치중’으로 보고 되었으나 실제 조치 노력이 미흡한 사례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제도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동 기금에 대한 기금폐지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실질적인 협의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고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치중’으로 보고하였으나 2025년 결산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공정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② ‘조치완료’로 보고 되었으나 아직 개선이 미흡한 사례

국방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미수납 징계부과금을 철저히 추징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5년도 징계부과금 수납률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징수결정액 대비 0.7%에 불과하고 미수납액 증가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또한 국방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배상금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전용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1,718억 7,4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이용(증)하였음.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가재무제표 오류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국가재무제표의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가 여전히 작지 않은 상황으로, 재정경제부는 지속적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인력충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결원율이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지식재산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지연 방지 및 계획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해양경찰청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항공보험 실집행실적과 낙찰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도 낙찰차액을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 및 기금의 재원과 용도 구분이 필요하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지원함에 있어 회계와 기금을 혼용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됨.

③ 매년 반복적으로 개선이 미흡한 사례

관세청은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과태료·가산금의 연례적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개선되지 않았고 부처와의 협의가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의 연례적인 수납률 저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보조사업자 수시점검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의 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이 지속되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2025년에도 이·전용과 내역변경을 통해 예산을 충당함.

산림청은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녹색자금 결산서 보고만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국회의 결산심사 및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는 국가재정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정통제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임.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중 또는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미흡한 사례]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 보고	검토의견
조치노력미흡(1)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 등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제도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하고 202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동 기금에 대한 기금폐지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협의 성과를 도출하는 등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조치노력미흡(2)	새만금개발청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주의·제도개선	조치중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회는 2024년 결산 당시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고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2025년 결산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공정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보고	검토의견
조치미흡(1)	국방부	미수납 징계부과금 철저 추징 필요	주의	조치완료	2025년도 징계부과금 수납률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징수결정액 대비 0.7%에 불과하고 미수납액 증가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조치미흡(2)	국방부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예산 편성 적절성 제고 필요	시정	조치완료	국방부는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배상금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전용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1,718억 7,4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이용(증)하였음
조치미흡(3)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	국가재무제표 오류 해소 대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가 여전히 작지 않은 상황으로, 재정경제부는 지속적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조치미흡(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인력충원 노력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등 본연의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조치완료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결원율이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조치미흡(5)	지식재산처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지연 방지 및 계획적 예산 집행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지식재산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지연 방지 및 계획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조치미흡(6)	해양경찰청	반복적인 예산 과다편성 지양	주의	조치완료	해양경찰청은 ‘항공보험 실집행실적과 낙찰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도 낙찰차액을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보고	검토의견
조치미흡(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기금의 재원과 용도 구분 필요	주의	조치완료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를 지원함에 있어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혼용한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지원함에 있어 회계와 기금을 혼용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됨
연례적 미조치(1)	관세청	과태료·가산금의 연례적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관세청은 국회의 반복된 시정요구로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등 제도개선을 수차례 시행하고, 법령 개정 관련 타 부처와의 협의 및 개정안 건의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수납률이 개선되지 않았고 부처와의 협의가 법령 개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연례적 미조치(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의 연례적인 수납률 저조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받고 있으나, 수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연례적 미조치(3)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수시점검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	주의	조치완료	집행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임
연례적 미조치(4)	국가보훈부	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주의	조치완료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여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과 내역변경을 통해 충당하거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해결했으며, 이에 대하여 예산 과소계상, 부족분의 연례적 이·전용 충당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2025년에도 이·전용과 내역변경을 통해 예산을 충당함
연례적 미조치(5)	산림청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산림청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녹색자금 결산서 보고만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국회의 결산심사 및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는 국가재정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정통제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임

자료: 각 부처별 검토보고서 자료 취합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조치 노력이 미흡하거나,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시정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시정요구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미조치되는 것은, 정부의 조치완료 여부의 판단이 실질적인 개선 여부보다는 관련 계획 수립이나 지침 하달 등 형식적인 절차 이행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이행 목표와 함께 이를 점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후 조치결과 보고 시 해당 성과지표의 설정 이유 및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8)]

8)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음.(의안번호 제2114726호,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6. 추가경정예산 집행 점검

가. 개 요

(1) 현황

추가경정예산이란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한민국헌법」 제56조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1)]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총 2회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5.5.1. 국회 확정)은 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불확실성 대응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5.7.4. 국회 확정)은 소비·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기 진작,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민생 안정, 세입경정을 통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문의 : 02-6788-5692

---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020~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연도	회차	목적	규모	정부 제출일	국회 의결일
2020	제1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11.7조원	2020.3.5.	2020.3.17.
	제2회	긴급재난지원금	12.2조원	2020.4.16.	2020.4.30.
	제3회	위기기업·일자리 금융지원, 경기보강,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35.1조원	2020.6.4.	2020.7.3.
	제4회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7.8조원	2020.9.11.	2020.9.22.
2021	제1회	방역조치 피해계층 지원, 고용충격 대응, 코로나19 방역 대책	14.9조원	2021.3.4.	2021.3.25.
	제2회	코로나 피해·방역 지원, 고용·민생·지역경제 활성화	34.9조원	2021.7.2.	2021.7.24.
2022	제1회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방역 보강	16.9조원	2022.1.24.	2022.2.21.
	제2회	소상공인 지원, 방역소요 보강, 민생안정 뒷받침	62.0조원	2022.5.13.	2022.5.29.
2025	제1회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안정	13.8조원	2025.4.21.	2025.5.1.
	제2회	경기 진작, 민생 안정, 세입경정	31.8조원	2025.6.23.	2025.7.4.

주) 2023·2024년도는 추가경정예산 없음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① 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 ② 통상 불확실성 대응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③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부는 2025년 4월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2.2조원으로,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4.1조원과 추가 국채 발행 8.1조원임.

국회는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산불 피해복구 예산 확대, 농수산물 할인 지원, 임대주택 및 도로·철도 SOC 사업 확대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정부안(12.2조원) 대비 1.6조원 증액한 13.8조원을 5월 1일 확정하였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조원)

중점 투자분야	추경안 (A)	국회확정 (B)	국회증감 (B-A)
1 재해·재난 대응	**3.2**	**3.3**	**0.1**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	1.4	0.03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9	1.9	0.09
2 통상 및 AI 지원	**4.4**	**4.5**	**0.1**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	2.1	0.01
■ AI 생태계 혁신	1.8	1.9	0.1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	0.5	0.02

(단위: 조원)

중점 투자분야	추경안 (A)	국회확정 (B)	국회증감 (B-A)
3 민생 지원	**4.3**	**5.1**	**0.8**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	2.6	-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	2.0	0.4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	0.6	0.4
4 기타(건설경기 보강 등)	**0.2**	**1.0**	**0.9**
■ 건설경기 보강	-	0.8	0.8
■ APEC 정상회의 등	0.2	0.2	0.04
5 국회 감액 (국고채 이자 등)	**-**	**△0.2**	**△0.2**
합계	**12.2**	**13.8**	**1.6**

자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① 소비·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기 진작, ②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민생 안정, ③ 세입경정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부는 2025년 6월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5조원으로,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국고채 추가발행 22.7조원(외평채 발행규모 3조원 감축 별도)임.

국회는 제2회 추경안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정부안(30.5조원)에 비해 1.3조원 증액한 31.8조원을 7월 4일 확정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조원)

중점 투자분야	추경안 (A)	국회확정 (B)	국회증감 (B-A)
1 경기 진작	**15.2**	**17.3**	**2.1**
■ 소비여력 보강	11.3	13.3	2.0
■ 건설경기 활성화	2.7	2.7	0.02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	1.3	0.1
2 민생 안정	**5.0**	**5.3**	**0.3**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	1.4	-
■ 고용안전망 강화	1.6	1.6	-
■ 취약계층 지원(발달장애인, 농어민 등)	0.7	1.0	0.3
3 세입경정	**10.3**	**10.3**	**-**
4 국회 감액 (국고채 이자 등)	**-**	**△1.1**	**△1.1**
합계	30.5	31.8	1.3

자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

2025년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637.4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조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조원 감소하였음. 총지출은 684.1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0.8조원 많았으나,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감소하였음.

관리재정수지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기준 △73.9조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 기준 △86.4조원, 제2회 추경예산 기준 △111.6조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산 결과 △104.2조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결과 및 결산]

(단위: 조원, %, %p)

구분		총수입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GDP 대비)		(GDP 대비)
본예산	정부안	651.8	677.4	△77.7	(△2.9)	1,277.0	(48.3)
	국회확정(A)	651.6	673.3	△73.9	(△2.8)	1,273.3	(48.1)
	국회증감	△0.3	△4.1	3.8	(0.1)	△3.7	(△0.2)
제1회 추경	정부안	652.8	685.5	△84.7	(△3.2)	1,279.4	(48.4)
	국회확정	652.8	687.1	△86.4	(△3.3)	1,280.8	(48.4)
	국회증감	-	1.6	△1.6	(△0.1)	1.4	(0.1)
제2회 추경	정부안	642.4	702.0	△110.4	(△4.2)	1,300.6	(49.0)
	국회확정(B)	642.4	703.3	△111.6	(△4.2)	1,301.9	(49.1)
	국회증감	-	1.3	△1.3	(0.0)	1.3	0.1
결산	결산(C)	637.4	684.1	△104.2	(△3.9)	1,304.5	(49.0)
	본예산 대비(C-A)	△14.2	10.8	△30.3	(△1.1)	31.2	(0.9)
	추경예산 대비(C-B)	△5.0	△19.1	7.4	(0.3)	2.6	(△0.1)

자료: 2025년도 본예산, 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비교

① 규모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감 기준으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0조원으로 2016~2025년(총 14회)에 걸친 추경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임. 참고로 추경예산 총지출 증감 규모가 가장 큰 회계연도는 2022회계연도(71.8조원)였음.

[2016~2025년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비교]

(단위: 억원, %)

연도	추경안 총지출 증감 (A)	국회 조정 (B)	추경예산 총지출 증감 (C=A+B)	국회 조정비율 (B/A)
2016	89,361	△1,054	88,307	△1.2
2017	105,566	△10,015	95,551	△9.5
2018	38,397	△218	38,179	△0.6
2019	66,837	△8,568	58,269	△12.8
2020	363,033	61,269	424,302	16.9
제1회	85,099	23,851	108,949	28.0
제2회	39,748	39,757	79,505	100.0
제3회	159,743	△2,042	157,700	△1.3
제4회	78,444	△296	78,147	△0.4
2021	467,576	1,541	469,117	0.3
제1회	149,829	△438	149,391	△0.3
제2회	317,747	1,979	319,726	0.6
2022	664,720	53,671	718,391	8.1
제1회	140,369	26,036	166,405	18.5
제2회	524,351	27,635	551,986	5.3
2025	**270,848**	**28,668**	**299,516**	**10.6**
제1회	**121,565**	**16,205**	**137,770**	**13.3**
제2회	**149,283**	**12,463**	**161,746**	**8.3**

주 1) 2020년 제2회 추경 국회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은 정부예산 감액 제외
2) 2021년의 경우 정부 기준 규모는 제1회 추경 집행잔액 소상공인진흥기금 집행 잔액 1.1조원을 포함한 것이나, 총지출에는 미포함되어 상이함
3) 총지출 증감은 총지출 변동규모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대한민국 정부, 각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② 심사기간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출에서 국회 의결까지 11~12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최근 20년 내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 소요일수가 가장 짧았음. 이는 산불 피해, 예상하지 못한 통상환경 변화 및 민생 안정 등 현안 과제에 대해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성 때문으로 보임.

[2006~2025년 추가경정예산 심사일정 비교]

연도		정부 제출일	국회 의결일	심사 소요일수
2006		8월 18일	8월 29일	12일
2008		6월 20일	9월 18일	91일
2009		3월 30일	4월 29일	31일
2013		4월 18일	5월 7일	20일
2015		7월 6일	7월 24일	19일
2016		7월 26일	9월 2일	39일
2017		6월 7일	7월 22일	46일
2018		4월 6일	5월 21일	46일
2019		4월 25일	8월 2일	100일
2020	제1회	3월 5일	3월 17일	13일
	제2회	4월 16일	4월 30일	15일
	제3회	6월 4일	7월 3일	30일
	제4회	9월 11일	9월 22일	12일
2021	제1회	3월 4일	3월 25일	22일
	제2회	7월 2일	7월 24일	23일
2022	제1회	1월 24일	2월 21일	29일
	제2회	5월 13일	5월 29일	17일
2025	제1회	4월 21일	5월 1일	11일
	제2회	6월 23일	7월 4일	12일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③ 재원

2025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에서는 국채 발행,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서는 지출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활용 및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였음.

[2020~2025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조달 비교]

(단위: 조원)

연도	재원
2020년 제1회	한국은행 잉여금(0.7), 기금 여유자금 등(0.7), 국채 발행(10.3)
2020년 제2회	지출 구조조정(4.3), 기금 여유재원(1.7), 공자기금 지출 축소(2.8), 국채 발행(3.4)
2020년 제3회	지출 구조조정(10.1), 기금 자체재원 활용(1.4), 국채 발행(23.8)
2020년 제4회	중소기업진흥채권(0.3), 국채 발행(7.5)
2021년 제1회	세계잉여금(2.6), 한은잉여금(0.8), 기금재원활용(1.7), 국채 발행(9.9)
2021년 제2회	국세수입초과분(31.5), 세계잉여금(1.7), 기금재원활용(1.8)
2022년 제1회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3), 기금재원활용(3.3), 국채 발행(11.3)
2022년 제2회	국세수입초과분(45.8), 지출 구조조정(6.8), 세계잉여금(4.6), 한은잉여금(1.4), 기금재원활용(2.6), 정부출자수입 초과수납분(0.8)
2025년 제1회	세계잉여금(4.1), 기금재원활용(0.1), 국채 발행(9.5)
2025년 제2회	지출구조조정(5.3), 기금재원활용(2.5), 국채 발행(24.0)

자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백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나.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

2025년도 추경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의 집행현황(2025년 12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추경 증액사업 366개의 추경증액분 37조 2,903억원[2] 중 34조 9,670억원이 집행(집행률 93.8%)되었으며, 실집행액은 33조 2,585억원(실집행률 89.2%)으로 나타남.

특히 제1회 추경은 집행기간이 제2회 추경보다 상대적으로 길었음에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25회계연도 추경 증액 사업 집행현황(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 억원, %)

회차	세부사업	추경증액분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제1회	153	166,135	147,036	88.5	139,007	83.7
제2회	213	206,769	202,633	98.0	193,578	93.6
합계	366	372,903	349,670	93.8	332,585	89.2

주 1) 사업시행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을 실집행액으로 인정
2) 증액내역이 있는 사업만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업 수는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합임
3) 각 부처가 제출한 총계 기준이며 부처 작성단계 등에서 일부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단순 취합

(2) 제1회 추경 집행 점검

(가) 사업별 집행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제1회 추경으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153개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액분 16조 6,135억원 중 14조 7,036억원(집행률 88.5%) 집행되었고, 실집행액은 13조 9,007억원(실집행률 83.7%)임.[3]

다만 일부 보조사업·시설사업 등은 국고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단계의 집행이 지연되어 집행률과 실집행률 간 차이가 나타남.

---

2) 각 부처가 제출한 추경 증액·신규 사업의 증액분을 총계 기준으로 단순 합산한 것으로, 감액사업을 차감하고 내부거래·보전거래 등을 제외하여 산출하는 총지출 기준 추경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3) 사업시행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을 실집행액으로 하여 계산함.

각 사업의 집행 및 실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집행실적(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법무부	일반회계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53	100	65.4	해당 없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4,539	4,183	92.2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 (정보화)	88	88	100.0			
		형사부 등 수사지원	35,543	33,912	95.4			
		공공수사	1,740	966	55.5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3,726	3,406	91.4			
		마약수사	1,387	1,265	91.2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942	661	70.2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187	994	83.7			
		공판활동지원	772	343	44.4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614	514	83.7			
감사원	일반회계	감사활동경비	4,519	3,168	70.1	해당 없음		
금융 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한시 특례보증)	36,500	36,500	100.0	해당 없음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 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200,000	200,000	100.0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100,000	100,000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50,000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00	400,000	100.0			
	신용보증 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606,872	1,958,000	54.3	해당 없음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일반회계	개인정보 침해방지	1,296	1,296	100.0	1,296	1,278	98.6
기획 재정부	일반회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금융시장안정화)	200,000	200,000	100.0	해당 없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571,328	509,108	89.1	해당 없음		
	복권기금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15,000	15,000	100.0	15,000	15,000	100.0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115,700	115,700	100.0	115,700	115,700	100.0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00	15,000	100.0	15,000	11,776	78.5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7,500	7,500	100.0	7,500	5,568	74.2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3,750	3,750	100.0	3,750	2,916	77.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3,750	3,750	100.0	3,750	2,741	73.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9,166	9,166	100.0	9,166	8,905	97.2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1,619,438	1,619,438	100.0	1,619,438	1,618,346	99.9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30,000	30,000	100.0	30,000	29,343	97.8
		생성AI선도인재양성	3,500	3,500	100.0	3,500	3,500	100.0
		AI스타펠로우십지원	3,000	3,000	100.0	3,000	3,000	100.0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5,000	5,000	100.0	5,000	5,000	100.0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10,000	10,000	100.0	10,000	10,000	100.0
		융합서비스글로벌시장진출지원	5,400	5,400	100.0	5,400	5,368	99.4
		국산AI반도체기반 마이크로데이터센터확산(R&D)	3,500	3,500	100.0	3,500	3,500	100.0
		AI반도체실증지원	44,000	44,000	100.0	44,000	43,763	99.5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정보화,출연) (사이버공격탐지대응체계운영)	4,000	4,000	100.0	4,000	3,813	95.3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정보화,출연) (사이버공격예방체계운영)	700	700	100.0	700	695	99.3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정보화,출연) (보안취약점클리닝서비스운영)	2,000	2,000	100.0	2,000	1,984	99.2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	1,000	1,000	100.0	1,000	948	94.8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8,000	8,000	100.0	8,000	7,865	98.3
	지특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	10,000	10,000	100.0	10,000	9,704	97.0
	방발기금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10,000	10,000	100.0	10,000	10,000	100.0
	정진기금	AI산업육성	23,493	23,493	100.0	23,493	23,379	99.5
		AI혁신펀드	55,000	55,000	100.0	55,000	55,000	100.0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4,800	4,800	100.0	4,800	4,800	100.0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5,000	5,000	100.0	5,000	5,000	100.0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지원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20,000	20,000	100.0	20,000	19,205	96.0
	일반회계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1,000	1,000	100.0	1,000	947	94.7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융합인재 양성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경상비)	590	590	100.0	590	484	82.0
외교부	일반회계	2025 APEC 의장국 (정상회의주간 회의 개최)	365	306	83.8	해당 없음		
		2025 APEC 의장국 (대국민 행사 등 홍보)	2,400	2,177	90.7			
		2025 APEC 의장국 (APEC 지자체 지원)	13,510	13,510	100.0	13,510	11,865	87.8
행정 안전부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660,000	660,000	100.0	660,000	594,527	90.1
		국경일등 정부행사	930	775	83.3	해당 없음		
	지특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	17,678	17,678	100.0	17,678	15,328	86.7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00	10,000	100.0	10,000	1,490	14.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00,000	399,969	99.9	399,600	340,616	85.3
경찰청	일반회계	사이버수사역량강화	703	602	85.6	해당 없음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550	544	98.9			
소방청	일반회계	현장대응역량강화 (중앙단위 자원집결지 운영)	479	469	97.9	해당 없음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2,200	0	0.0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산림인접지역 바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5,163	5,163	100.0	5,163	2,016	39.1
문화 체육 관광부	일반회계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4,634	4,572	98.7	4,572	4,037	88.3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육성	16,500	16,500	100.0	16,500	15,667	95.0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2,500	2,500	100.0	2,500	1,960	78.4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20,443	20,443	100.0	20,443	20,443	100.0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500	2,450	98.0	해당 없음		
		국제문화정책 지원	2,000	2,000	100.0	2,000	1,886	94.3
농림 축산 식품부	농특회계	농기계임대	2,397	2,397	100.0	2,397	2,397	100.0
		푸드서비스선진화	65,000	65,000	100.0	65,000	64,869	99.8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0,000	120,000	100.0	120,000	117,875	98.2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5,500	21,042	82.5	21,042	18,242	86.7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재해대책비	174,000	167,779	96.4	146,925	81,923	55.8
		산림헬기 도입・운영	103,675	42,917	41.4	해당 없음		
		산불방지대책	43,630	29,448	67.5	2,205	1,356	61.5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	11,657	11,657	100.0	11,657	11,657	100.0
	농특회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40	5,940	100.0	5,940	3,929	66.1
		숲가꾸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지특회계	임도시설	100,825	71,251	70.7	해당 없음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50,000	50,000	100.0	50,000	50,000	100.0
	농특회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구명조끼보급한시지원)	6,180	6,180	100.0	6,180	2,299	37.2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범죄수사활동	315	315	100.0	해당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300,000	300,000	100.0	해당 없음		
		수출지원기반활용	88,807	88,807	100.0	88,807	50,746	57.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7,400	7,400	100.0	7,400	7,400	100.0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2,019	2,019	100.0	2,019	232	11.5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1,900	1,890	99.5	해당 없음		
		반도체아카데미구축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기술국제협력(R&D)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117,008	106,410	90.9	106,410	106,410	90.9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2,300	2,300	100.0	2,300	2,300	100.0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사업	62,580	62,580	100.0	62,580	62,580	100.0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85,998	83,724	97.4	83,724	83,714	100.0
	에특회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214,720	214,720	100.0	해당 없음		
		해외자원개발조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특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56,100	56,100	100.0	56,100	56,100	100.0
		투자유치기반조성	39,550	39,408	99.6	39,000	39,000	100.0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100,000	100,000	100.0	해당 없음		
		기술보증기금출연	70,000	70,000	10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6,847	26,847	100.0	26,847	26,463	98.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10,000	10,000	100.0	10,000	10,000	100.0
		수출지원기반활용	89,800	89,800	100.0	89,800	88,641	98.7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10,000	10,000	100.0	10,000	9,982	99.8
	중진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00,000	300,000	100.0	300,000	300,000	1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00,000	100,000	100.0	100,000	100,000	100.0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한시, 융자)	100,000	100,000	100.0	100,000	100,000	100.0
	소진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500,000	500,000	100.0	500,000	500,000	100.0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333,437	333,437	100.0	333,437	333,437	100.0
		소상공인성장지원	1,697,336	1,697,336	100.0	1,697,336	1,674,855	98.7
		소상공인재기지원	49,388	49,388	100.0	49,388	49,388	100.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439,925	1,439,925	100.0	1,439,909	1,211,600	84.1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제약산업 육성 지원	1,000	1,000	100.0	1,000	995	99.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4,980	4,266	85.7	4,980	4,266	85.7
		글로벌 K-cell뱅크 · 라이브러리 구축 (세포특화연구소)(R&D)	8,140	8,140	100.0	8,140	8,140	100.0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국가하천정비 (국가하천정비(일반))	22,500	22,500	100.0	해당 없음		
	환특회계	환경교육강화 (기후재난 대응)	2,550	2,186	85.7	2,186	2,142	98.0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출연비)	20,100	20,100	100.0	20,100	19,000	94.5
		재해대책비 (폐기물처리비용)	112,000	95,700	85.4	95,700	74,415	77.8
	지특회계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84,294	84,294	100.0	84,294	45,245	54.0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5,416	25,416	100.0	해당 없음		
		중장년인턴제	4,290	4,273	99.6			
	지특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30,000	30,000	100.0	30,000	28,663	95.5
	고보기금	고용유지지원금	11,113	11,113	100.0	해당 없음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4,272	4,272	100.0	4,272	4,069	95.2
	산재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6,560	6,560	100.0	6,560	6,560	100.0
	임채기금	대지급금지급	150,834	150,834	100.0	150,834	150,834	100.0
	근복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14,880	14,880	100.0	14,880	14,880	100.0
		신용보증대위변제	32,952	32,952	100.0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913	913	100.0	해당 없음		
		건설및지하 안전관리	4,360	4,360	100.0	4,360	2,250	51.6
		건축안전	1,200	1,160	96.7	1,160	1,085	93.5
		12 · 29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1,428	1,013	70.9	해당 없음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71,780	71,780	100.0	71,780	52,448	73.1
		건설기계사고조사및예방지원	1,286	1,286	100.0	1,286	1,276	99.2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 정보화)	1,200	1,181	98.4	1,181	1,181	100.0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40,675	40,675	100.0	40,675	40,675	100.0
	교특회계	도로유지보수	129,900	122,574	94.4	1,000	1,000	100.0
		드론안전 및 활성화지원	10,000	9,685	96.9	9,685	9,685	100.0
		도로안전및환경개선(비총액)	38,200	37,978	99.4	해당 없음		
		도로안전및환경개선(총액)	18,000	17,949	99.7	해당 없음		
		평택-오송2복선화	100,000	100,000	100.0	100,000	100,000	100.0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17,815	17,815	100.0	17,815	16,715	93.8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2,150	2,150	100.0	2,150	1,176	54.7
		일반공항시설관리	22,390	17,921	80.0	17,921	1,728	9.6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	700	700	100.0	700	700	100.0
	지특회계	도시재생사업	8,000	8,000	100.0	8,000	42	0.5
	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24,400	4,434	18.2	해당 없음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75,500	271,368	98.5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15,310	207,632	96.4			
		임대주택리츠 출자	150,000	150,000	100.0			
성평등 가족부	일반회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출연금)	1,090	1,090	100.0	1,090	922	84.6

자료: 각 부처 12월말 기준 제출자료를 단순 취합한 것으로서, 일부 오차 발생 가능

(나) 주요 집행 저조 사업

제1회 추경은 대규모 산불발생에 따른 긴급한 피해복구 및 공항·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상당수의 사업이 실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사업별 준비상황과 집행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회 추경의 주요 집행저조 사업을 살펴보면, 산불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협의·설계·인허가 및 장비 도입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났고, 수출지원 바우처·이차보전·융자 사업은 실제 수요와 지원방식 간 차이, 서비스 사용 및 정산 시차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주민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공항시설·도시재생·하수관로 정비 등 시설사업은 설계,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로 인해 연내 실집행이 제한된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살펴보면, 법무부 등 8개 부처에서 총 20개 세부사업이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실집행률 70% 미만 사업(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법무부	일반회계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과학수사활동 지원)	153	100	65.4	해당 없음		
		공공수사 (공공수사 활동 경비)	1,740	966	55.5	해당 없음		
		공판활동 지원 (공소유지 지원)	772	343	44.4	해당 없음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00	10,000	100.0	10,000	1,490	14.9
소방청	일반회계	화재안전시설기준개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원)	5,163	5,163	100.0	5,163	2,016	39.1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2,200	0	0.0	해당 없음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재해대책비	174,000	167,779	96.4	146,925	81,923	55.8
		산림헬기 도입·운영	103,675	42,917	41.4	해당 없음		
		산불방지대책 (산불대응센터)	800	800	100.0	800	211	26.4
		산불방지대책	375	189	50.4	해당 없음		

		(과학기반 산불감시)						
		산불방지대책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8,000	0	0.0			
		산불방지대책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3,600	873	24.3			
	농특회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40	5,940	100.0	5,940	3,929	66.1
해양 수산부	일반회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6,180	6,180	100.0	6,180	2,299	37.2
산업 통상부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통합지원사업)	88,807	88,807	100.0	88,807	50,746	57.1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 시설구축지원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4,800	0	0.0	0	0	0.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 시설구축지원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6,510	712	10.9	712	712	10.9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 이차보전사업	2,019	2,019	100.0	2,019	232	11.5
기후에너지 환경부	균특회계	하수관로 정비	84,294	84,294	100.0	84,294	45,245	54.0
국토 교통부	일반회계	건설및지하안전관리	4,360	4,360	100.0	4,360	2,250	51.6
	교특회계	일반공항시설관리	22,390	17,921	80.0	17,921	1,728	9.6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2,150	2,150	100.0	2,150	1,176	54.7
	지특회계	도시재생사업	8,000	8,000	100.0	8,000	42	0.5
	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24,400	4,434	18.2	4,434	4,434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 재구성

① 법무부 :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공공수사, 공판활동 지원

법무부는 과학수사활동, 공공수사활동 및 공소유지 활동에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에 1억 5,300만원, 공공수사 세부사업에 17억 4,000만원, 공판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7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과학수사인프라 구축은 1억원을 집행(집행률 65.4%)하였고, 공공수사는 9억 6,600만원을 집행(집행률 55.5%)하였으며, 공판활동 지원은 3억 4,300만원을 집행(집행률 44.4%)한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는 2025년 해당 사업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후 추경 편성을 통해 1년분 전액이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이후 소요만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② 행정안전부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의 마을단위 복구와 이재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세부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18억 6,800만원(지방비 포함)을 실집행(실집행률 14.9%)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시군	지구명	사업비 총액	2025년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안동	중마	8,786	2,625	266	10.1
	추곡	8,956	2,750	284	10.3
영덕	대곡리	8,337	2,500	465	18.6
	수암리	8,520	2,500	466	18.6
의성	구계1	6,916	2,125	387	18.2
합계		41,515	12,500	1,868	14.9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안동·영덕·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의 마을단위 복구사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중앙관서의 국고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구상, 실시설계, 주민협의 및 공사 착수 등을 거쳐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행정안전부는 마을주민 요구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도로기준 충족을 위한 용지 확보, 공동체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 등으로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 착수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지구별 사업일정]

(단위: %)

시군	지구명	집행률	사업일정
안동	중마	10.1	· '25.6 기본구상용역 (완료) / '25.12.11~'26.9 실시설계용역 · '26.11 착공 / '27.12 준공
	추곡	10.3	
영덕	대곡리	18.6	· '25.7 기본구상용역 (완료) / '25.11.17~'26.6 실시설계용역 · '26.11 착공 / '27.12 준공
	수암리	18.6	
의성	구계1	18.2	· '25.7 기본구상용역 (완료) / '25.10.27~'26.6 실시설계용역 · '26.2~'26.8 군관리계획 정비 · '26.9 착공 / '27.12 준공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2026년 3월 기준으로도 3개 지역 5개 지구의 실집행률이 14.9%에 그치고, 2026년 하반기에야 착공이 가능한 일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③ 소방청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해 제1회 추경에서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세부사업에 5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를 위해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세부사업에 22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은 20억 1,6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39.1%)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은 증액규모 22억원 전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이후 실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소방청은 10개 시·도에 2025년 7월 22일 교부하였으나, 강원·경북·충남 3개 시·도가 지방비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를 위한 외자구매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 사업임. 소방청은 외자구매 과정에서 1차 유찰, 2차 입찰금액의 사업예산 초과 투찰로 협상적격자가 없어 미집행되었고, 2026년 1월 조달청에 계약을 재의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④ 산림청 : 산림재해대책비, 산불방지대책, 산림헬기 도입·운영 등

산림청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제1회 추경에서 산림재해대책비 세부사업에 1,740억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12월 말 기준 819억 2,3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55.8%)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이후 피해조사, 설계, 공사 착수 및 현장 시공을 거쳐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사업임.

산림청은 산림재난 발생 이후 복구공사 착수까지 통상 3~5개월이 소요되고, 산지공사의 특성상 우기·강설·결빙 등 기상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아 당해연도 내 복구공사기간 확보가 곤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산림청은 산불진화 헬기 도입 등을 위해 제1회 추경에서 산림헬기 도입·운영 세부사업에 1,036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12월 말 기준 429억 1,700만원을 집행(집행률 41.4%)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헬기 도입을 위한 계약, 기술협상 및 선금 지급 등을 거쳐 집행되는 사업임.

산림청은 중형헬기 3대 계약 체결 후 선금을 집행하였으나, 대형헬기 3대 계약은 기술협상 및 국내 에이전시 선정 협의 등으로 지연되어 일부 예산이 이월되었다고 설

명하고 있음.

산림청은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12월 말 기준 산불대응센터는 2억 1,1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26.4%)하였고, 과학기반 산불감시는 증액규모 3억 7,500만원 중 1억 8,900만원을 집행(집행률 50.4%)하였으며,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은 집행실적이 없고,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은 증액규모 36억원 중 8억 7,3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3%)한 것으로 나타남.

산불대응센터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공기 부족으로 실집행이 저조하였고, 과학기반 산불감시는 기존 구축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통해 일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또한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은 제작사가 장착 불가를 통보하여 전액 불용되었음.

[2025년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추경예산 불용경과]

구분	예산(추경) 전액 불용경과
2025년	- '25년 추경으로 다시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구입예산 80억원이 반영되어 '27.2월까지 공군에서 운용 중인 수송기(C-130J)에 장착할 계획이었음 -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송기(C-130J)에 전력패널을 장착해야 하나 물탱크 제작사로부터 전력패널 장착은 수송기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社에서 장착해야 된다고 통보받음 - C-130J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社에 전력패널의 설치 가능 여부 및 소요 비용, 소요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불용

자료: 산림청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은 두 차례 기술평가에도 적합 업체가 없어 드론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남.

⑤ 해양수산부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제1회 추경에서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세부사업 중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에 6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22억 9,9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37.2%)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해 연근해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고 교부 이후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수협중앙회의 단가계약, 생산업체의 제작 및 납품 절차를 거쳐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 지연, 팽창식 구명조끼 핵심

부품인 인플레이터의 해외 수급 차질, 국내 생산업체의 공급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응하여 전 어선원에 대한 연내 보급을 전제로 추경이 편성된 사업임에도,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납품률은 74.5%에 그쳤고 2026년 4월에야 최종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⑥ 산업통상부 : 수출지원기반활용,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친환경차보급촉진 이차보전

산업통상부는 제1회 추경에서 수출지원기반활용 세부사업 중 통합지원사업에 888억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12월 말 기준 507억 4,6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57.1%)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세부사업 중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에 48억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에 6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은 실집행액이 없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은 7억 1,2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10.9%)한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은 20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2억 3,2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11.5%)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바우처 발급 이후 기업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서비스 종료 후 정산·검수 절차를 거쳐 실집행이 확정되는 구조임. 산업통상부는 바우처 발급 기업이 차년도 1월까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 종료 후 정산·검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2025년 관세대응 바우처는 관세협상 결과 발표 이후 피해기업 모집공고가 진행되었고,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전력, 도로,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준상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산업통상부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의 경우 염처리수 지하관로 착공에 필요한 관할기관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은 지원기업 4개사 중 3개사의 공장 신규투자가 대외환경 변화로 지연되어 전기 공급시설을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은 지원대상 기업의 대출 실행 및 이차보전

지원 실적에 따라 실집행이 발생하는 구조임. 산업통상부는 추경을 통해 500개사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국 5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라디오 홍보, 유관기관 수요 발굴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으로 실지원은 78개사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있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수관로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회 추경에서 하수관로 정비 세부사업에 842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452억 4,5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54.0%)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교부한 후 하수관로 정비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집행을 거쳐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⑧ 국토교통부 : 건설및지하안전관리, 일반공항시설관리,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도시재생사업, 주택구입·전세자금

국토교통부는 제1회 추경에서 건설및지하안전관리 세부사업에 4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12월 말 기준 22억 5,041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51.6%)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공항시설관리 세부사업은 22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7억 2,8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9.6%)한 것으로 나타남.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세부사업은 2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1억 7,6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54.7%)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은 80억원을 증액하였고, 4,2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0.5%)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244억원을 증액하였고, 44억 3,400만원을 집행(집행률 18.2%)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및지하안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 단계의 후속절차를 거쳐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국토교통부는 건설및지하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추경을 통한 매칭 금액 확보에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재생계획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계획수립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일반공항시설관리와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은 설계,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비행점검 등 시설·안전 관련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 사업임. 국토교통부는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의 경우 조류충돌예방 강화사업의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의 기본계획 수립, 공항시설 개선 관련 사고조사·유가족 협의 및 법령 개정 반영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사업은 개선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비행점검 등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집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실제 대출 수요에 따라 집행액이 결정되는 구조임. 국토교통부는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실수요가 예측치를 하회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종합하면 정부는 제1회 추경 사업 중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자·최종 사업시행자 단계의 실제 집행 여부를 함께 관리하고,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 정도 및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사업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부 사업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편성 당시 목적·계획과 집행 내용 간 차이가 나타났음. 추경은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예산이므로, 향후에는 사업 목적과 국회 의결 취지를 존중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 단계의 사업계획과 집행 단계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 당시 사업 목적·계획 또는 국회 의결 취지와 실제 집행 내용 간 차이가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있는 사업]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기후에너지환경부	환특회계	국립공원공단출연(사업출연비)	20,100	20,100	100.0	20,100	19,000	9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회계	개인정보 침해방지	1,296	1,296	100.0	1,296	1,278	98.6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913	913	100.0	해당 없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출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회 추경에서 국립공원의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 중 대형헬기 도입 예산 110억원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2025년 계약 체결 후 2027년까지 연부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음.

[2025년도 국립공원공단 출연 헬기 도입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국립공원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본예산	추경(A)						예산현액	집행액(C)			
중형헬기 도입	국립공원공단	500	7,400	7,400	7,400	2,500	19,800	19,800	17,300	17,300	-	-	100.0
대형헬기 도입	국립공원공단	-	11,000	11,000	11,000	-	1,100	-	1,100	-	1,100	-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이 도입하려는 대형헬기는 계약 체결 전 형식증명이 필요하였으나, 2025년 중 형식증명이 확보되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대형헬기 도입 예산 110억원 중 99억원이 중형헬기 도입사업으로 조정되면서, 조정 후 남은 대형헬기 도입 예산 11억원은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국립공원공단 출연 헬기 도입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추경)	전년도 이월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중형헬기	7,400	2,500	9,900	19,800	19,800
대형헬기	11,000	-	△9,900	1,100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형헬기 도입 예산은 대형헬기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므로, 이를 중형헬기 도입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비 도입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할 경우 선행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 국회가 의결한 사업목적과 내역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방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회 추경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방지 세부사업 중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내역사업에 12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12억 7,800만원을 실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월별 실집행액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707	564	-	-	-	141	705
노출대응 시스템 장비 확충	200	154	-	-	-	38	192
사업 운영비	47					39	39
털린내정보 찾기 서비스 고도화	342	-	-	-	-	342	342
계	1,296	1,060	-	-	-	218	1,278

주) 미집행액 1,800만원 중 1,000만원은 낙찰차액이며, 800만원은 사업 운영비 불용액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불법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져 긴급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장비 확충,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고도화 등 기존 시스템의 탐지유형 확대, 조회정보 개선, 도메인 관리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사유로 제시된 긴급 대응 필요성과 집행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음.

[「2025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등 고도화 추진계획(안)」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액	계약 방식	일정(안)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탐지유형 확대) AI기반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 (탐지 도메인 관리) 크롤링 대상 국내 도메인 및 탐지데이터 조회 등 연계 기능 개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조회 정보 확대) 이메일 주소 및 PW 조회를 위한 웹 UI/UX 및 DB 등 개선	762 (추경 707, 기존 55)	용역 (조달발주)	발주(6월) ↓ 계약(8월) ↓ 사업수행 (8~12월)
	(신규 도입 내용) AI기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비정형 데이터 수집, 분석(머신러닝용 GPU 포함) 서버 등 장비 도입	200 (추경)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텔리전스 정보서비스 구매	(다크웹 데이터)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 DB 확보 및 분석 기반 마련	342 (추경)	구매 (특정수의)	계약심의, 구매요청 (6월) ↓ 계약(7월)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추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정보화 사업을 증액·배정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추경 편성 사유가 된 긴급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실제 집행시점이 긴급 대응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국토교통부 :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국토교통부는 제1회 추경에서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세부사업에 총 9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음. 구체적으로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 1대 구매비 8억 5,800만원, 탐사구간 연장에 따른 출장비 3,500만원,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 추경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5년 추경안
산출내역	산출내역
○ 지반침하 안전점검 1,462백만원 가. 차도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매 **1대** 850백만원 나.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입비 165백만원 다. 장비 유지보수 및 지반탐사 운영 447백만원 * 안전점검 수행출장비 268백만원, 소모품 구입 89백만원 안전점검 지자체 교육 운영 90백만원	○ 지반침하 안전점검 2,375백만원**(+913백만원)** 가. 차도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2대** 구매 1,708백만원 **(+858백만원)** 나.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입비 165백만원 다. 장비 유지보수 및 지반탐사 운영 502백만원 * 안전점검 수행출장비 303백만원**(+35백만원)** 소모품 구입 109백만원**(+20백만원)** 안전점검 지자체 교육 운영 90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추경예산으로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를 구매하였으나, 해당 장비는 2025년 11월 28일 납품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연말 납품 시점과 동절기 지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비는 2025년 중 지반탐사 확대에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도로지반조사장비 구매 계약 내용]

(단위: 백만원)

연도	용역명	입찰 공고	계약상대방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 금액	집행금액		납품일
							날짜	금액	
2025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 구매 및 제작	25.6.10.	케이테크 글로벌	25.8.8.	25.8.8.~ 25.12.6.	865	25.12.15.	865	**25.11.28.**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동 사업은 지반침하 안전점검 확대라는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비 구매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연도 내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었고, 내용연수 도과에 따른 장비 교체 필요성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장비 교체 또는 장비 확충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경우 장비의 내용연수, 조달·납품 소요기간, 연내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본예산 편성과 추경 편성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3) 제2회 추경 집행 점검

(가) 사업별 집행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제2회 추경으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213개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액분 20조 6,769억원[4] 중 20조 2,633억원이 집행(집행률 98.0%)되었고, 실집행액은 19조 3,578억원(실집행률 93.6%)임.[5]

일부 보조사업·시설사업 등은 국고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단계의 집행이 지연되어 집행률과 실집행률 간 차이가 나타남.

각 사업의 집행 및 실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집행실적(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일반회계	업무지원비	4,125	3,381	82.0	해당 없음		
법무부	일반회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41	0	0.0	해당 없음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55	0	0.0			
		형사부 등 수사지원	2,283	0	0.0			
		공공수사	160	0	0.0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812	0	0.0			
		마약수사	374	0	0.0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79	0	0.0			
감사원	일반회계	감사활동경비	759	650	85.6	해당 없음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보훈단체운영 및선양활동등	800	800	100.0	800	787	98.4
		보훈병원진료	49,842	49,842	100.0	49,842	49,842	100.0
		위탁병원진료	34,573	34,573	100.0	34,573	34,573	100.0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208	208	100.0	208	208	100.0
		국립서울현충원	1,248	1,105	88.5	해당 없음		
		국립대전현충원	1,782	1,538	86.3			
		국립4·19묘지	239	224	93.7			

4) 각 부처가 제출한 추경 증액·신규 사업의 증액분을 총계 기준으로 단순 합산한 것으로, 감액사업을 차감하고 내부거래·보전거래 등을 제외하여 산출하는 총지출 기준 추경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5) 사업시행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을 실집행액으로 하여 계산함.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국립3·15묘지	87	87	100.0			
		국립5·18묘지	263	249	94.7			
		국립영천호국원	713	693	97.2			
		국립임실호국원	675	596	88.3			
		국립이천호국원	2,081	2,000	96.1			
		국립산청호국원	73	73	100.0			
		국립신암선열공원	100	99.9	99.9			
		국립괴산호국원	127	127	100.0			
		국립제주호국원	550	550	100.0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354	354	100.0	354	354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00	700,000	100.0	해당 없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666,552	425,096	63.8	해당 없음		
	복권기금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2,570	2,570	100.0	2,570	2,570	100.0
	국유재산관리기금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9,853	9,104	92.4	해당 없음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9,932	9,921	99.9	해당 없음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완도서, 군산서, 동해서 승조원시설 신축)	19,644	18,331	93.3	해당 없음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5,000	5,000	100.0	해당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30,000	30,000	100.0	해당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체계강화)	2,500	2,500	100.0	2,500	2,216	88.6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 운영)	1,000	1,000	100.0	1,000	995	99.5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ICT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	3,240	3,240	100.0	3,240	3,008	92.8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정보화)	3,011	3,011	100.0	3,011	2,873	95.4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정보화,출연)(사이버공격탐지대응체계운영)	9,000	9,000	100.0	9,000	8,815	97.9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AI기반침해대응체계구축)	5,000	5,000	100.0	5,000	4,871	97.4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 (닥터앤서3.0)	4,000	4,000	100.0	4,000	3,980	99.5
		AI혁신펀드	50,000	50,000	100.0	해당 없음		
		공공AX프로젝트	15,000	15,000	100.0	15,000	14,886	99.2
		AI 반도체 실증 지원 (AI반도체최적화설계지원)	30,000	30,000	100.0	30,000	29,898	99.6
		피지컬 AI 핵심기술 PoC	42,600	42,600	100.0	42,600	42,532	99.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디지털역량강화교육 (디지털역량함양지원)	6,580	6,580	100.0	6,580	5,935	90.2
		지역디지털인재양성	3,380	3,380	100.0	3,380	3,380	100.0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4,000	4,000	100.0	4,000	3,991	99.8
국방부	일반회계	병영생활관(육군병영생활관)	7,850	5,934	75.6	해당사항 없음		
		병영생활관 (해공군/국직병영생활관)	1,498	1	0.1			
		병영생활관(교육생생활관)	1,968	1,967	99.9			
		병영기본지원시설(급수시설)	19,459	19,083	98.1			
		병영기본지원시설(전투체육시설)	33,196	22,916	69.0			
		관사및간부숙소(간부숙소)	8,094	5,304	65.5			
		관사및간부숙소 (부대개편간부주거시설)	2,025	2,015	99.5			
		정비및보급시설(정비고)	5,727	5,185	90.5			
		정비및보급시설(창고)	1,064	948	89.1			
		정비및보급시설(탄약고)	3,527	3,525	99.9			
		정비및보급시설(기타정비보급시설)	1,856	959	51.7			
		정비및보급시설(급유시설)	4,700	2,488	52.9			
		정비및보급시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3,000	3,802	126.7			
		일반지원시설(행정시설)	2,949	2,846	96.5			
		일반지원시설(토목시설)	744	33	4.4			
		일반지원시설(전기시설)	45,526	45,388	99.7			
		일반지원시설(기타일반지원시설)	13,002	9,157	70.4			
		경계및작전시설(작전시설)	4,762	3,995	83.9			
		경계및작전시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20,133	20,117	99.9			
		시설유지관리(시설물검사)	4,303	3,891	90.4			
		시설유지관리(소규모보수)	6,553	4,890	74.6			
		시설유지관리(대보수)	30,374	21,442	70.6			
외교부	일반회계	2025 APEC 의장국 (대국민 행사 등 홍보)	100	100	100.0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1,000	852	85.2	해당 없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840	3,840	100.0	해당 없음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1,244	1,221	98.2	해당 없음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추모사업)	300	300	100.0	300	295	98.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600	600	100.0	600	568	94.7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220	219	99.5	해당 없음		
		민생회복소비쿠폰	12,170,867	12,126,645	99.6	12,121,549	11,841,121	97.7
	균특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52,500	52,500	100.0	52,500	50,254	95.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0,000	600,000	100.0	600,000	453,086	75.5
경찰청	일반회계	수사지원(현장수사활동경비)	1,461	1,424	97.5	해당 없음		
		치안활동지원(특수활동비)	123	123	100.0	해당 없음		
소방청	일반회계	국립소방병원 건립	6,649	4,771	71.7	해당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930	4,930	100.0	4,930	1,730	35.1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984	984	100.0	984	983.8	99.9
		K-콘텐츠 정책펀드 출자	75,000	75,000	100.0	해당 없음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21,000	21,000	100.0	21,000	4,076	19.4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2,000	2,000	100.0	2,000	2,000	100.0
	아특회계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1,000	1,000	100.0	1,000	0	0.0
		문화예술향유지원	10,000	10,000	100.0	10,000	2,631.5	26.3
	영화발전기금	영화정책지원	27,100	27,068	99.9	해당 없음		
		영화유통지원	400	400	100.0	400	400	100.0
	관광기금	국내관광 역량강화	23,579	23,579	100.0	23,579	20,967	88.9
	체육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6,000	25,395	97.7	25,395	7,590	29.2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디지털행정지원(국가유산 AI 디지털기술 활용연구)	1,200	1,194	99.5	해당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농특회계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15,000	15,000	100.0	15,000	15,000	100.0
		수리시설개보수	81,555	81,555	100.0	81,555	81,555	100.0
		농촌용수개발	22,200	22,200	100.0	22,200	22,200	100.0
		농산업수출활성화	462	462	100.0	462	462	100.0
		농업자금이차보전	622	622	100.0	622	622	100.0
	지특회계	배수개선	25,000	25,000	100.0	25,000	25,000	100.0
	농안기금	비축지원	102,120	102,120	100.0	102,120	102,120	100.0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014	4,014	100.0	4,014	4,014	100.0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0,000	14,593	73.0	20,000	14,593	73.0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융자)	22,400	22,400	100.0	22,400	13,606	60.7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헬기도입·운영 (산림진화헬기 임차)	15,915	15,915	100.0	해당 없음		
	농특회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0,379	10,379	100.0	10,379	6,865	66.1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해양관광육성	2,000	2,000	100.0	2,000	0	0.0
	교특회계	일반항	14,054	14,054	100.0	해당 없음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7,942	7,932	99.9	해당 없음		
		재해안전항만구축	20,587	20,513	99.6	해당 없음		
	농특회계	수산식품산업육성	6,000	6,000	100.0	6,000	840	14.0
		국가어항	27,064	26,918	99.5	해당 없음		
		가거도항복구	8,000	8,000	100.0	해당 없음		
		양식등재해대책비	2,000	2,000	100.0	2,000	1,607	80.4
해양경찰청	국유기금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5,000	5,000	100.0	5,000	5,000	100.0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19,644	18,331	93.3	19,644	18,331	93.3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4,300	4,300	100.0	4,300	4,300	100.0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3,590	3,590	100.0	3,590	3,590	1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16	5,316	100.0	5,316	5,316	100.0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12,800	12,800	100.0	12,800	12,800	100.0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사업(R&D)	2,200	2,200	100.0	2,200	2,200	100.0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295	295	100.0	295	295	100.0
	지특회계	지역산업위기대응	5,165	5,165	100.0	5,165	4,344	84.1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	54,000	54,000	100.0	54,000	53,803	99.6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제조혁신구축)	24,000	24,000	100.0	24,000	24,000	100.0
	중진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300,000	300,000	100.0	해당 없음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	200,000	200,000	100.0			
		재도약촉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35,000	35,000	100.0	34,800	34,800	100.0
	소진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281,269	281,269	100.0	281,269	194,729	69.2
		소상공인재기지원	26,261	26,261	100.0	26,261	22,128	84.2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스마트상점기술보급)	5,000	5,000	100.0	5,000	5,000	100.0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소상공인주간활성화)	300	300	100.0	300	300	100.0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급여	134,127	134,127	100.0	134,127	134,127	100.0
		긴급복지(긴급복지)	22,898	22,898	100.0	22,898	22,898	100.0
		발달장애인 지원	24,891	24,891	100.0	24,891	24,891	100.0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WBUAP 마사지세미나)	300	300	100.0	300	300	100.0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2,184	2,184	100.0	2,184	2,184	100.0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	3,300	3,300	100.0	3,300	3,300	100.0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보건산업 전문인력양성 관리 운영)	2,400	2,400	100.0	2,400	2,270	94.6
		제약산업 육성 지원	2,710	2,710	100.0	2,710	2,710	100.0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2,434	2,434	100.0	2,434	2,417	99.3
		소록도병원관리	933	816	87.5	해당 없음		
		보험정책사업관리	4,914	4,914	100.0	4,914	4,176	85.0
	균특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349	10,144	98.0	10,144	10,144	100.0
	국민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성·생식건강증진)	5,409	5,409	100.0	5,409	5,409	100.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2,546	2,546	100.0	2,546	2,546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95	95	100.0	95	95	100.0
	응급의료기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구축)	1,012	1,012	100.0	1,012	252	24.9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750	750	100.0	750	724	96.5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정보화) (디지털의료제품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1,308	767	58.6	해당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AI홍수예보 시설구축)	15,000	13,335	88.9	해당 없음		
		공업용수도 안정화	7,100	7,100	100.0	7,100	7,100	100.0
		국가하천정비	15,000	15,000	100.0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환경개선특별회계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898	1,898	100.0	1,898	986	51.9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60,994	60,994	100.0	60,994	37,558	61.6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4,651	4,651	100.0	4,651	455	9.8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국립공원사업)	30,440	30,440	100.0	30,440	22,188	72.9
		비점오염저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9,312	9,312	100.0	9,312	7,391	79.4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5,785	5,785	100.0	5,785	5,785	100.0
		하수처리장 설치	57,566	57,566	100.0	57,566	57,566	100.0
	균특회계	하수관로 정비 (도시침수대응)	7,000	7,000	100.0	7,000	3,862	55.2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효율향상 (고효율가전제품환급)	267,103	267,103	100.0	267,103	232,131	86.9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1,839	11,839	100.0	11,839	5,155	43.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생산및시설자금)	100,000	100,000	100.0	100,000	100,000	100.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10,000	10,000	100.0	10,000	9,983	99.8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2,000	2,000	100.0	2,000	2,000	100.0
		500kV전압형 HVDC변환용 변압기기술개발(R&D)	6,000	6,000	100.0	6,000	6,000	100.0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전력기자재금융지원)	15,000	15,000	100.0	15,000	14,991	99.9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취약계층취업촉진	2,000	2,000	100.0	해당 없음		
		내일배움카드(일반)	16,000	16,000	100.0	16,000	16,000	100.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5,750	25,750	100.0	25,750	25,750	100.0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65,156	154,121	93.3	해당 없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772	11,651	91.2	해당 없음		
	에특회계	진폐위로금	45,049	45,049	100.0	45,049	45,049	100.0
	고용보험기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10,100	10,100	100.0	10,100	8,924	88.4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구직급여	1,292,900	1,292,900	100.0	해당 없음		
	임금채권 보장기금	체불청산지원융자(융자)	8,129	8,129	100.0	8,129	8,129	100.0
	산재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5,000	15,000	100.0	15,000	15,000	100.0
국토 교통부	일반회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7,172	56,682	99.1	56,682	36,056	63.6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52,813	52,813	100.0	52,813	52,813	100.0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20,000	20,000	100.0	20,000	20,000	100.0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16,325	16,325	100.0	16,325	16,325	100.0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개량	60,000	60,000	100.0	60,000	60,000	100.0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200,000	200,000	100.0	200,000	0	0.0
	교특회계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8,000	8,000	100.0	8,000	8,000	100.0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36,000	36,000	100.0	해당 없음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50,000	50,000	100.0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100,000	100,000	100.0	100,000	100,000	100.0
		평택-오송 2복선화	100,000	100,000	100.0	100,000	99,988	100.0
		보성-임성리철도건설	10,000	10,000	100.0	10,000	10,000	100.0
		도담-영천 복선전철	30,000	30,000	100.0	30,000	30,000	10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30,000	30,000	100.0	해당 없음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10,000	10,000	100.0	10,000	10,000	100.0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71,460	71,460	100.0	71,460	71,460	100.0
		양산도시철도 건설	12,000	12,000	100.0	12,000	12,000	100.0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125,914	125,914	100.0	125,914	125,914	100.0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20,055	20,055	100.0	20,055	18,870	94.1
		제주공항 시설개선	2,120	2,100	99.1	해당 없음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2,935	2,371	80.8			
		드론 종합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000	3,000	100.0	3,000	3,000	100.0
		장현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1,393	1,393	100.0	해당 없음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진입도로	4,811	4,811	100.0			
		남청주현도산단진입도로	1,035	1,035	100.0			
		음성맹동인곡산단진입도로	1,311	1,311	100.0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3,000	3,000	100.0			
		사천서부산단진입도로	450	441	97.9			
		음성용산산단진입도로	1,600	1,600	100.0			
		함안군북산단진입도로	1,400	1,400	100.0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주택기금	미분양안심환매(융자)	50,000	50,000	100.0	50,000	50,000	100.0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400,000	400,000	100.0	해당 없음		
		전세임대(융자)	320,750	262,300	81.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9,895	59,895	100.0	59,895	59,895	100.0

자료: 각 부처 12월말 기준 제출자료를 단순 취합한 것으로서, 일부 오차 발생 가능

(나) 주요 집행 저조 사업

제2회 추경은 경기 진작, 민생 안정, 산불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하반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제약과 선행절차 등으로 인해 실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연내 실제 집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2회 추경의 주요 집행저조 사업을 살펴보면,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고, 문화·체육 분야의 소비쿠폰·이용권 사업은 시스템 구축, 사용기간, 지방비 확보, 실제 사용률 등에 따라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남.

또한 농림·산림·해양수산 분야의 산불피해 복구 및 설비지원 사업은 공사 착수, 인허가, 대상자 선정, 추가 자부담 등으로 실집행이 지연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출자사업은 국고 출자 이후 리츠 설립, 민간투자 유치 및 투자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살펴보면, 법무부 등 12개 부처에서 총 31개 세부사업이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실집행률 70% 미만 사업(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법무부	일반회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41	0	0.0	해당 없음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55	0	0.0	해당 없음		
		형사부 등 수사지원	2,283	0	0.0	해당 없음		
		공공수사	160	0	0.0	해당 없음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812	0	0.0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마약수사	374	0	0.0	해당 없음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79	0	0.0	해당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4,930	4,930	100.0	4,930	1,730	35.1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인공지능 콘텐츠제작지원)	21,000	21,000	100.0	21,000	4,076	19.4
	아특회계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AI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1,000	1,000	100.0	1,000	0	0.0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향유지원 (공연예술관람료 지원)	5,100	5,100	100.0	5,100	2,451	48.1
		문화예술향유지원 (미술관전시관람료)	4,900	4,900	100.0	4,900	180.5	3.7
	체육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	26,000	25,395	97.7	25,395	7,590	29.2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축사시설개선)	22,400	22,400	100.0	22,400	13,606	60.7
산림청	농특회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0,379	10,379	100.0	10,379	6,865	66.1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인프라조성 -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여수))	1,000	1,000	100.0	1,000	0	0.0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인프라조성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울산))	1,000	1,000	100.0	1,000	0	0.0
	농특회계	수산식품산업육성 (가공설비지원사업_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개선_김건조기)	6,000	6,000	100.0	6,000	840	14.0
산업통상부	지특회계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1,340	1,340	100.0	1,340	519	38.7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281,269	281,269	100.0	281,269	194,729	69.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구축)	1,012	1,012	100.0	1,012	252	24.9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정보화) (디지털의료제품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1,308	767	58.6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898	1,898	100.0	1,898	986	51.9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폐기물처리시설)	60,994	60,994	100.0	60,994	37,558	61.6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4,651	4,651	100.0	4,651	455	9.8
	균특회계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대응)	7,000	7,000	100.0	7,000	3,862	55.2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7,172	56,682	99.1	56,682	36,056	63.6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200,000	200,000	100.0	200,000	0	0.0
국방부	일반회계	병영생활관(해공군/국직병영생활관)	1,498	1	0.1	해당 없음		
		병영기본지원시설(전투체육시설)	33,196	22,916	69.0	해당 없음		
		관사및간부숙소(간부숙소)	8,094	5,304	65.5	해당 없음		
		정비및보급시설(기타정비보급시설)	1,856	959	51.7	해당 없음		
		정비및보급시설(급유시설)	4,700	2,488	52.9	해당 없음		
		일반지원시설(토목시설)	744	33	4.4	해당 없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 재구성

① 법무부 : 검찰청 특수활동비

법무부는 제2회 추경에서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등 검찰청 특수활동비 관련 사업에 총 40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해당 증액분은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는 추경 편성 당시 본회의 수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반영된 “검찰청 특수활동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취지에 따라 추경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②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중심도시육성, 문화예술향유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회 추경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AI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공연·미술전시 관람료 지원 및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증액하였음. 그러나 2025년 12월 말 기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실집행률 35.1%,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은 19.4%, 문화중심도시육성은 0%, 문화예술향유지원 중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은 48.1%, 미술전시관람료 지원은 3.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중 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은 29.2%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사수당 지급방안 협의 및 출강개시 지연, 협약기간의 2026년 연장,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지자체 예산 반영 지연, 전시부문 시스템 신규 구축과 초기 운영 안정화, 상품권 발급 지연 및 지방비 미확보 등을 주요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이들 사업은 문화·체육 분야의 소비 촉진과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나, 상당수 사업에서 공모·협약, 시스템 구축, 지방비 확보, 사용기간 설정 등 집행 전 단계의 준비가 지연되어 연내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③ 농림축산식품부 : 축사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2회 추경에서 축사시설현대화 세부사업 중 축사시설개선에 224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136억 6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60.7%)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축사 신축·개보수, 축산시설 및 방역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공사를 추진한 후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사추진 차질과 산불 피해농가의 공사 착수 지연으로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축사시설개선 사업은 공사 완료 이후 대출이 실행되는 사업구조로 인해 매년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임. 실제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연도 예산, 추경예산이 함께 운영되었음에도 전체 축사시설개선 사업의 이월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④ 산림청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청은 경북·경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채취 임가에 대체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2회 추경에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세부사업에 103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68억 6,5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66.1%)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산불피해 임가에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지역 기반정리, 인허가 등 행정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대체작물 식재 과정에 따라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역 기반정리가 필요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대체작물의 식재 적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부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⑤ 해양수산부 : 해양관광육성, 수산식품산업육성

해양수산부는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및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제2회 추경에서 해양관광육성 세부사업에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2025년 12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개선을 위한 김건조기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산업육성 세부사업에 60억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12월 말 기준 8억 4,0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14.0%)한 것으로 나타남.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수산식품산업육성 사업은 보조금 교부 이후 지자체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설비를 도입하는 구조임.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교부 이후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히트펌프·해수탱크 등 추가 자부담으로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김 생산 성수기에 따른 서류제출 지연 등으로 김건조기 제작 입찰공고가 지연되어 실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⑥ 산업통상부 : 지역산업위기대응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2회 추경에서 지역산업위기대응 세부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5억 1,9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38.7%)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수요기업 신청, 금융기관 대출 실행 및 이차보전금 지급 절차를 거쳐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산업통상부는 추경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금융기관 협의 등 선행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차보전금 지원 시점이 지연되고 보전일수가 축소되었으며, 사업 초기 기업의 인지도가 낮아 신청 및 절차 진행에도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⑦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세부사업에 2,812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1,947억 2,9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69.2%)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 및 이자절감 혜택을 부여하는 보증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 실행 및 이차보전금 지급 실적에 따라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특례보증 수요가 하반기에 쏠릴 경우를 대비하여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특례보증의 실제 집행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⑧ 보건복지부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제2회 추경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세부사업에 10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2억 5,2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24.9%)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절차를 거쳐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보건복지부

는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⑨ 기후에너지환경부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하수관로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사이클센터 설치를 위해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세부사업에 18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12월 말 기준 9억 8,6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51.9%)한 것으로 나타남.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는 609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375억 5,8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61.6%)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46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4억 5,5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9.8%)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침수대응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에는 70억원을 증액하였고, 38억 6,2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55.2%)한 것으로 나타남.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사업은 업사이클센터 설치를 위한 인증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실집행되는 구조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보완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하수관로 정비는 인허가, 보상 등 행정절차와 공사 집행을 거쳐 실집행되는 구조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하수관로 정비는 보상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지방비 확보와 사업자 선정 후 방지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비 미편성으로 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어 실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⑩ 국토교통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2회 추경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세부사업에 571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12월 말 기준 360억 5,6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63.6%)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를 위해 2,00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2025년 12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월세 지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매월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국토교통부는 모든 지원대상자가 중단 없이 월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부모와의 합가 등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음.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은 국고 출자 이후 민간투자 유치, 리츠 설립, 투자대상 사업장 공모 및 투자심의 등을 거쳐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국토교통부는 추경 반영 당시부터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내 출자 완료, 2026년 내 실집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투자대상 사업장 공모 및 투자심의 등을 거쳐 실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⑪ 국방부 : 병영생활관, 병영기본지원시설, 관사및간부숙소, 정비및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국방부는 제2회 추경에서 병영생활관 중 해공군·국직 병영생활관에 14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12월 말 기준 100만원을 집행(집행률 0.1%)한 것으로 나타남. 병영기본지원시설 중 전투체육시설에는 331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229억 1,600만원을 집행(집행률 69.0%)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관사 및 간부숙소 중 간부숙소에는 80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53억 400만원을 집행(집행률 65.5%)한 것으로 나타남. 정비 및 보급시설 중 기타정비보급시설에는 18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5,900만원을 집행(집행률 51.7%)하였고, 급유시설에는 47억원을 증액하여 24억 8,800만원을 집행(집행률 52.9%)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지원시설 중 토목시설에는 7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3,300만원을 집행(집행률 4.4%)한 것으로 나타남.

국방부는 해공군·국직 병영생활관의 경우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었고,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리비 감액 및 건설사업관리 수행방안 검토로 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병영기본지원시설은 직접설계·감리에 따른 반납액 발생 및 연말 지급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고, 관사 및 간부숙소는 연말 자금 부족으로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정비 및 보급시설은 현장여건 악화에 따른 착공 지연, 계약 및 준공정산 잔액 발생

등으로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일반지원시설 중 토목시설은 타 사업의 건설장비 진입 구간 활용으로 본공사 추진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⑫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2회 추경에서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세부사업에 13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12월 말 기준 해당 증액분 중 7억 6,700만원을 집행(집행률 58.6%)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은 디지털의료제품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시스템 본구축 및 PMO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 구조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3억 8,100만원, 본구축 선금 3억 7,300만원, PMO 선금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확보가 필요한 정보화 용역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 이어져 잔여 예산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종합하면 정부는 제2회 추경 사업 중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국고 교부·출자 이후 집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사업기간 제약, 선행절차 이행 가능성 및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일부 사업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편성 당시 목적·계획과 집행 내용 간 차이가 나타났음. 추경은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예산이므로, 향후에는 사업 목적과 국회 의결 취지를 존중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 단계의 사업계획과 집행 단계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편성 당시 사업 목적 또는 편성 범위와 실제 집행 내용 간 차이가 있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부처의 2개 사업이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있는 사업]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집행			실집행		
			증액규모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	26,000	25,395	97.7	25,395	7,590	29.2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354	354	100.0	354	354	100.0

①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회 추경에서 저소득 노인의 스포츠 참여 촉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 중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2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당초 사업예산은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금 245억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운영비 15억원으로 구성되었음.

그런데 사업기간을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에서 2026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용료 지원금은 245억원에서 241억 5,0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 감액되고, 운영비는 15억원에서 18억 5,0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운영비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변경액	증감액	주요내역
일용임금	23	68	45	○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가맹점 승인·관리 등 지원 인력 - 2,500천원 x 2명 x 4.5개월 **+ 2,500천원 x 3명 x 6개월**
일반수용비	361	357	△4	○ 대국민 사업 홍보비
	468	712	244	○ 결제운영사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1%)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변경액	증감액	주요내역
				ㅇ 결제운영사 운영비 - 상품권 핀번호 발송 및 사용안내 등(87,500천원) - 결제관련 콜센터 등 운영(185,200천원) (2명 x 290만원 x 4개월 **+ 9명 x 300만원 x 6개월**) - 사용 가맹점 대상 사업 안내 등(7,500천원) **ㅇ 결제운영사 재발행 수수료(82,000천원)**
	4	4	-	ㅇ 회계검사 수수료
일반용역비	560	560	-	ㅇ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서류검토 등 지원 용역
	55	55	-	ㅇ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25년)
	22	22	-	ㅇ 고객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사업개선 등) 용역
	-	32	32	**ㅇ 서면신청 및 부정사용 현장점검 용역('26년)**
	-	20	20	**ㅇ 기존 접수·접수페이지 운영비** **- 클라우드 16,500천원, Web hosting 3,300천원**
복리후생비	-	3	3	**ㅇ 복리후생비(850천원 x 3명)**
국내여비	4	4	-	ㅇ 지자체 협의 및 현장점검
사업추진비	5	5	-	ㅇ 대내외 업무협의
고용부담금	2	9	7	ㅇ 일용직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등
합 계	**1,500**	**1,850**	**35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해당 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에게 5만원 상당의 스포츠상품권을 지급하여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편성된 사업임. 따라서 연내 미사용된 이용료 예산 일부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인력 운영, 재발행 수수료, 현장점검 용역 및 페이지 운영비 등 운영경비로 전환된 것은 당초 수혜자 지원을 위한 편성 목적과 차이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할 경우 실제 수요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수혜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원이 운영비로 전환되는 등 당초 편성 취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금융위원회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는 제2회 추경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구

제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세부사업에 3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도 추경예산액은 15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사업은 이·전용 등 2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8억 4,900만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즉, 추경 편성 이후 실제 집행액은 추경예산액을 초과하였음.

[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5	1,205	1,559	1,849	1,849	118.6	100.0	-	-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내역별로 살펴보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과 부수사건 소송대리는 계획 대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채무자관계인 선임 지원은 2025년에도 실제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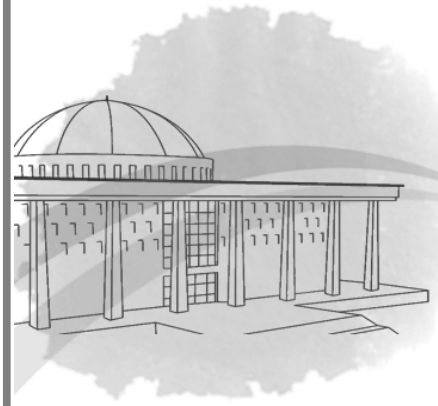
구분		당초 계획	실제 집행 내역	집행률
202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당초) 7억 7,200만원 = 3,711건 × 20.8만원 ○(추경) 11억 2,600만원 = 5,411건 × 20.8만원	○17억 3,046만원 = 8,683건 × 19.9만원	154.2%
	부수사건 소송대리	○ 1,400만원 = 28건 × 49.7만원	○1,861만원 = 134건 × 13.9만원	132.9%
	채무자관계인 선임 지원	○ 3억 1,900만원 = 4,560건 × 7만원	○81만원 = 11건 × 7.4만원	0.3%

주) 홍보비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동 사업은 추경 편성 목적과 다른 별도 사업으로 집행되었다기보다는, 전체 집행수요 증가에 따라 추경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역별 수요 불균형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추경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내역 간 조정, 이·전용 등이 필요한 경우 당초 편성 목적과 수혜대상자 지원 효과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추경 편성 당시의 수요추계와 실제 집행수요 간 차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Ⅳ. 유형별 검토



1. 공공기관 결산

가. 개 요

공공기관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출연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2026년 기준 총 342개가 지정되어 있음.[2)]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산규모,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 직원 정원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고,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됨.

342개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30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58개,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기타공공기관이 254개임.

문의: 02-6788-5683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 유형별 구분 기준]

<table>
<tr><th colspan="2">분류</th><th colspan="3">구분 기준</th><th>예시</th></tr>
<tr><td rowspan="4">공기업
준정부기관</td><td>시장형 공기업</td><td rowspan="4">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비율 50% 이상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비율 85% 이상</td><td>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td></tr>
<tr><td>준시장형 공기업</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d>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td></tr>
<tr><td>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td><td colspan="2">「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td><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td></tr>
<tr><td>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td><td colspan="2">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td><td>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td></tr>
<tr><td colspan="2">기타 공공기관</td><td colspan="3">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td><td>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수출입은행</td></tr>
</table>

자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개 기관이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4개 기관, 2026년에는 11개 기관의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수가 다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내역]

(단위: 개)

연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합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2022	15	21	13	81	220	350
2023	13	19	11	44	260	347
2024	14	18	12	43	240	327
2025	14	17	12	45	243	331
2026	14	16	12	46	254	342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도에 유형 변경된 기관을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 1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고, 기타공공기관 1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었음.

[2025년~2026년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변동 현황]

(단위: 개)

구분		2025년	2026년	변동 현황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1	30	△1	-	-	△1
	시장형	14	14	-	-	-	-
	준시장형	17	16	△1	-	-	△1
② 준정부기관		57	58	+1	-	-	+1
	기금관리형	12	12	-	-	-	-
	위탁집행형	45	46	+1	-	-	+1
③ 기타공공기관		243	254	+11	+11	-	-
계		331	342	+11	+11	-	-

자료: 재정경제부

구체적으로, 신규지정된 11개 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신규지정되었음.

소관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이 34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기후에너지환경부 33개・국토교통부 31개・ 보건복지부 29개 순임.

[소관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부처명	공공기관수	부처명	공공기관수
문화체육관광부	34	국방부	3
기후에너지환경부	33	법무부	3
국토교통부	31	기상청	3
보건복지부	29	원자력안전위원회	3
국무조정실	25	재정경제부	3
교육부	23	공정거래위원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관세청	2
산업통상부	20	국가데이터처	2

(단위: 개)

부처명	공공기관수	부처명	공공기관수
해양수산부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농림축산식품부	13	방위사업청	2
고용노동부	12	외교부	2
중소벤처기업부	11	통일부	2
금융위원회	7	경찰청	1
성평등가족부	6	국가유산청	1
지식재산처	6	기획예산처	1
산림청	5	농촌진흥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5	소방청	1
행정안전부	4	인사혁신처	1
국가보훈부	3	재외동포청	1

자료: 재정경제부

나. 현 황

(1)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2025회계연도 342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 규모는 964.9조원으로 전년(948.0조원) 대비 16.9조원(1.8%) 증가하였음.

유형별 비중을 보면 시장형 공기업이 27.6%로 가장 높았으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나타났음.

전년 대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8.0조원 증가하였으며,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지출이 6.0조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차입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7.7조원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2021년-2025년 공공기관 유형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비중)	증감 (B-A)
공기업	시장형	182.8	272.9	260.0	261.4	266.1 (27.6)	4.7 (1.8)
	준시장형	73.8	74.1	76.9	82.0	88.1 (9.1)	6.1 (7.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91.4	213.1	222.3	216.0	224.0 (23.2)	8.0 (3.7)
	위탁집행형	157.9	172.9	182.9	191.1	196.9 (20.4)	5.8 (3.0)
기타공공기관		142.7	210.3	172.4	197.5	189.8 (19.7)	△7.7 (△3.9)
합계		748.6	943.3	914.5	948.0	964.9 (100.0)	16.9 (1.8)

주) 기타공공기관에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포함됨
자료: 재정경제부

(2)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2025회계연도 기준 339개 공공기관(은행형 금융공공기관 3개 제외)의 자산은 1,210.3조원으로 전년(1,152.2조원) 대비 58.1조원(5.0%) 증가하였고, 부채는 768.6조원으로 전년(741.5조원) 대비 27.1조원(3.7%)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부채비율은 174.1%로 전년(180.5%) 대비 6.4%p 하락하였음.

한편, 재정경제부는 매년 공공기관 재무현황을 발표할 때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해당 기관들이 예금 및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일반 공공기관과 재무구조가 상이하며, 재무건전성 역시 부채비율이 아닌 BIS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임.[3)]

[2021년~2025년 339개 공공기관 재무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B-A)
공공기관 자산	962.0	1,048.2	1,097.7	1,152.2	1,210.3	58.1
공공기관 부채	584.4	671.0	709.7	741.5	768.6	27.1
부채비율	154.7	177.8	182.9	180.5	174.1	△6.4%p

주)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3개(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가 제외됨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주요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 요인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3기 신도시 건설 추진(+15.2조원), 한국전력공사의 국가 전력망 인프라 및 발전설비 투자 확대(+8.1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5.4조원) 등에 따른 것임.

3) [3개 은행형 공공기관 부채·당기순이익·BIS 비율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부채			당기순이익			BIS비율	
	2024(A)	2025(B)	증감(B-A)	2024(C)	2025(D)	증감(D-C)	2024	2025
한국산업은행	3,285,714	3,350,305	64,591	21,467	52,296	30,828	15.35	17.71
한국수출입은행	1,116,689	1,082,686	△34,003	10,406	17,542	7,137	13.90	14.24
중소기업은행	4,379,887	4,638,366	258,479	26,543	27,189	645	14.69	14.78
합계	8,782,290	9,071,357	289,066	58,416	97,026	38,610	-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공공기관별 자산증가 사유]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가	자산 증가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233.7	248.9	15.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3기 신도시 건설
한국전력공사	246.8	254.9	8.1	국가 전력망 인프라 및 발전설비 투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55.2	60.6	5.4	보금자리론 대출채권 증가

자료: 재정경제부

부채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 및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확대(+13.6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 공급을 위한 채권 발행 증가(+3.7조원),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건설 및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차입 확대(+3.0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및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확대(+2.7조원) 등의 영향에 따른 것임.

[주요 공공기관별 부채증가 사유]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가	부채 증가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160.1	173.7	13.6	주택공급 및 신도시개발 자금조달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38.3	42.0	3.7	정책금융(보금자리론 등) 공급용 채권 발행 등
한국도로공사	41.5	44.5	3.0	도로건설 및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위한 차입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10.0	12.7	2.7	PF정상화 및 부실채권 매입용 운영자금 조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17.9	19.5	1.6	의료기관 급여비 지출 확대 등

자료: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부채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의 부채는 219.3조원으로 전년보다 14.0조원 증가하여 유형별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7.2조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1조원), 기타공공기관(2.7조원)이 그 뒤를 이었음. 반면 시장형 공기업은 전년보다 1.0조원 감소하였음.

[2021년~2025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전년비증감 (B-A)	증감율
공기업	시장형	245.4	315.3	323.5	332.0	331.0	△1.0	△0.3
	준시장형	181.5	189.8	197.4	205.3	219.3	14.0	6.8
	소계	426.9	505.2	520.8	537.3	550.4	13.1	2.4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65.9	74.2	87.7	97.3	104.5	7.2	7.4
	위탁집행형	62.0	61.5	68.2	72.7	76.8	4.1	5.7
	소계	127.9	135.6	155.9	170.0	181.3	11.3	6.7
기타공공기관		29.6	30.2	32.9	34.2	37.0	2.8	8.2
합 계		584.4	671.0	709.7	741.5	768.6	27.1	3.7

주)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3개(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가 제외됨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은 13.3조원으로 전년(8.1조원) 대비 5.2조원 개선되었음.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21년 10.8조원에서 2022년 △14.0조원, 2023년 △3.2조원까지 손실로 전환되었다가, 2024년부터 이익으로 전환되었음.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8.9조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3.7조원, 준시장형 공기업은 1.1조원, 기타공공기관은 0.3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0.7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2021년~2025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B-A)
공기업	시장형	△5.2	△23.3	△4.3	6.1	8.9	2.8
	준시장형	3.5	1.4	△3.5	△2.9	1.1	4.0
	소계	△1.8	△22.0	△7.8	3.2	10.0	6.8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2.8	2.6	1.9	3.3	3.7	0.4
	위탁집행형	3.9	6.9	3.5	2.8	△0.7	△3.5
	소계	6.7	9.5	5.4	6.2	3.0	△3.2
기타공공기관		5.8	△1.5	△0.9	△1.3	0.3	1.6
합 계		10.8	△14.0	△3.2	8.1	13.3	5.2

주)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외됨
자료: 재정경제부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가격 안정과 부채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 등에 힘입어 8.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전년(3.6조원) 대비 5.1조원 증가하였음.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료 수익 증가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2.4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사고 감소 및 채권회수 실적 증가에 따라 1.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전년 적자(△2.5조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음.

(3)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및 1인당 평균 보수 현황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2025년 428,550명으로 전년대비 4,602명 증가하였음.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3년에 전체 공공기관 수 감소 및 공공기관별 정원 감축에 따라 감소하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21년~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B-A)
공기업	시장형	75,530	76,169	75,027	75,438	75,896	458
	준시장형	73,337	73,815	72,568	73,004	73,437	433
	소계	148,867	149,984	147,595	148,442	149,333	891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1,063	31,660	30,890	31,124	31,496	372
	위탁집행형	86,515	87,820	85,972	86,694	87,477	783
	소계	117,578	119,480	116,862	117,818	118,973	1,155
기타 공공기관		156,626	160,822	157,054	157,687	160,243	2,556
합 계		423,071	430,286	421,512	423,948	428,550	4,602

자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는 2021년 6,756만원에서 2025년 7,376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가 2025년 9,589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8,586만원, 준시장형 공기업 8,306만원 순임.

[2021년~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B-A)
공기업	시장형	86,829	88,894	89,206	91,814	95,895	4,081
	준시장형	77,230	78,267	79,980	80,828	83,065	2,237
	소계	81,710	83,226	84,286	85,955	89,052	3,097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79,551	80,480	81,691	83,382	85,863	2,481
	위탁집행형	67,765	68,578	70,005	71,588	73,715	2,127
	소계	70,083	70,920	72,304	73,909	76,105	2,196
기타 공공기관		65,300	66,191	67,584	69,478	71,493	2,015
합 계		67,566	68,482	69,838	71,638	73,769	2,131

자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수지차 보전기관 현황[4)]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함)은 기관의 지출예산 전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

다만,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기관은 출연 또는 보조기관 중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받는 기관이고, 출연·보조기관이라도 사업비만 지원받는 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매년 기획예산처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수지차 보전기관의 목록 및 예산편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2025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62개 기관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이 중 58개 기관은 공공기관이고 4개 기관[5)]은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임.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58개 기관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40개 기관임.

4) 수지차 보전기관 중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도 현황에 포함하여 작성함.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기관 유형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소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기관	37	37	-	-	15	22	-
보조기관	25	21	-	1	2	18	4
합계	62	58	-	1	17	40	4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을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 각 8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 각 5개임.

[소관 부처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부처명	수지차 보전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8)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전당
기후에너지환경부(8)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고용노동부(5)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교육부(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보건복지부(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토교통부(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산업통상부(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해양수산부(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정거래위원회(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법무부(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
국가보훈부(1)	독립기념관
국가유산청(1)	국가유산진흥원
국방부(1)	전쟁기념사업회
농촌진흥청(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단위: 개)

부처명	수지차 보전기관명
산림청(1)	한국임업진흥원
성평등가족부(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교부(1)	한국국제협력단
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료: 기획예산처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62개 기관의 2025년도 수지차 보전 결산을 보면, 4조 3,255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4조 3,105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었음. 이 중 출연기관은 37개로 3조 4,636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3조 4,350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었고, 보조기관은 25개로 8,75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8,754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음.

[62개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사업별 2025년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기관수	2025년		집행률 (B/A)	2026예산
		예산(A)	결산(B)		
출연	37	3,463,680	3,435,096	99.2	3,431,550
보조	25	875,580[1)]	875,484	99.9	889,479
합계	62	4,325,518	4,310,580	99.3	4,321,029

주) 추경, 이·전용에 따른 보조금 교부액 증가('25당초 861,838 → '25변경 875,580)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 중 수지차 지원액이 가장 많이 집행된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1조 2,577억 7,000만원의 출연금이 집행되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428억 7,600만원(보조금),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978억 2,800만원(출연금), 국립공원공단 2,428억 2,800만원(출연금) 순임.

[2025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지원액 상위 10개 기관]

(단위: 백만원)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5년	
				예산	결산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1,295,540	1,257,7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부	준정부기관(위탁)	보조	342,972	342,876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출연	307,605	297,828

(단위: 백만원)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5년	
				예산	결산
국립공원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222,728	242,828
한국환경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190,652	190,652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182,333	180,333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139,709	139,709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87,136	87,136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85,950	86,863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85,218	85,218

자료: 기획예산처

다. 검토의견

(1)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요건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으로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기준이 사실상 공공기관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하면서 기관의 기능과 재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6)]

2023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직원 정원 기준이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총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규모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상향]

구 분	종전	변경(2023.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30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 지정에서는 직원 정원 기준이 사실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기관의 기능과 재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45개 기관이 직원 정원 300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음.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현황]

연도	변경 유형	변경된 기관 현황	변경 기관수
2023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4개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9개 기관	39개
2025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1개
2026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개
계			45개

자료: 재정경제부

예를 들어 2023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총수입액과 자산 규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만 직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음.

2025년에는 대한석탄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35개 기관)에서 제외되었음.

[정원기준 상향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주요 기관들 정원 및 재무현황]

(단위: 명, 억원)

기관명	정원	현원	총수입액		자산	
	2026. 1월기준		2024년	2025년	2024년말	2025년말
대한석탄공사	183	0	827	699	4,220	4,86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44	216.02	115,650	118,384	287,473	324,280
서민금융진흥원	296	272.08	29,794	28,532	52,953	58,957
부산항만공사	273	247.38	3,952	4,141	80,502	84,598
인천항만공사	265	228	3,733	3,328	36,920	36,90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 ('25: 296)	261.88	1,237	1,072	4,360	3,930
공운법상 기준	**300**	**-**	**200**		**30**	

자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제는 이러한 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정경제부 경영평가, 임원 임면 절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관리체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출자·출연 협의 등 재정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기관의 규모와 재무 위험에 비해 관리 수준이 완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근거)	기타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공운법 제39조의2)	수립의무 없음
평가	재정경제부 경영평가 대상 (공운법 제48조~제50조)	주무부처 주관 평가
임원	임면절차 적용 (공운법 제25조~제30조)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재정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대한석탄공사[7]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8]은 장기적으로 기금 적립금 소진을 전망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임.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재무상태를 보면, 2025년말 부채는 4.5조원으로 전년말(4.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한 반면, 자산은 5.9조원으로 전년 말(5.3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379.6%에서 338.0%로 41.6%p 하락하였으나, 이러한 부채비율 하락은 정부출자금 집행잔액 등이 유보되면서 자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기관들이 직원 정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이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공기관 관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6년 공공기관 지정 시 정원이 296명(2025년 기준)으로 공기업 지정기준인 300명에 미달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2026

7) 자산은 2021년말 9,705억원에서 2025년말 4,862억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2조 2,628억원에서 2조 5,93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자본은 △1조 2,923억원에서 △2조 1,076억원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2026년 1월 교육부 보고에서, “2025년 제6차 재정재계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고 보고함. 특히 최근 4년 연속 10%대 수익 창출했지만, 최근 5년연평균 연금 급여지출액은 11.0%, 수급자수는 7.9% 각각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 진단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함.

년 1월 정원이 30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2027년에는 다시 공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정원의 소폭 변동만으로 기관 유형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공공기관 관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행 지정기준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9)]

따라서 공공기관 유형은 직원 정원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행 기능, 재무 규모,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과 같이 직원 정원 기준이 사실상 기관 유형을 좌우하는 지정체계를 개선하여 기관의 실질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기관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무건전성 및 재무관리 개선 필요

(가)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① 중장기 부채 증가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2025년 9월 정부가 제출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관리대상 35개 기관[10)]의 부채가 2025년 720.2조원에서 2029년 847.8조원으로 127.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정부는 핵심 정책사업 투자 확대와 병행하여 기관별 부채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계획에 따르면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025년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 등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서 주로 기인함.

---

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원 변경 추이: 2022년 304명 → 2023년 및 2024년 301명 → 2025년 296명→ 2026년 1월 300명

10) 2025년에 대한석탄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가되었음.
- SOC(7개):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에너지(11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별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 금융(11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 기타(6개):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35개 기관의 자산은 같은 기간 1,076.4조원에서 1,293.8조원으로 217.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에너지고속도로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 고속도로·철도 등 SOC 투자, 공공택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핵심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것임.

[2025~2029년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자산·부채 등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24 (실적)	2025		2026	2027	2028	2029(B)	증감 (B-A)
			전망(A)	실적					
전체(35개)	자산	1,033.4	1,076.4	1,082.1	1,153.4	1,211.1	1,257.3	1,293.8	217.4
	부채	692.9	720.2	715.9	761.2	792.8	828.3	847.8	127.6
	부채비율	203.5	202.2	195.5	194.1	189.5	193.1	190.1	△12.1%p
SOC(7개)	자산	414.6	433.3	436.3	468.6	510.4	549.0	574.2	140.9
	부채	264.7	280.3	282.7	308.1	339.4	368.2	383.3	103.0
	부채비율	176.7	183.2	184.0	191.9	198.4	203.7	200.8	17.6%p
에너지(11개)	자산	338.2	345.0	341.1	370.0	381.6	393.5	401.6	56.6
	부채	288.8	288.6	284.4	293.4	297.3	302.9	307.8	19.2
	부채비율	584.9	511.9	501.3	382.7	352.4	334.6	327.8	△184.1%p
금융(11개)	자산	246.2	261.2	268.0	275.4	277.5	271.0	272.0	10.8
	부채	121.4	131.7	129.7	138.6	133.6	133.0	131.0	△0.7
	부채비율	97.3	101.8	93.8	101.3	92.8	96.3	92.9	△8.9%p
기타(6개)	자산	34.5	36.9	36.6	39.4	41.6	43.8	46.0	9.1
	부채	18.0	19.5	19.1	21.2	22.6	24.2	25.7	6.2
	부채비율	109.8	112.5	109.4	116.5	119.3	122.9	127.2	14.7%p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2025년 결산 결과를 보면 부채는 715.9조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4.3조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도 195.5%로 전망치보다 6.7%p 낮게 나타났음. 이는 SOC 분야의 부채는 전망보다 증가하였으나 에너지·금융·기타 분야의 부채가 전망을 하회한 데 따른 것임. 반면 자산은 1,082.1조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5.7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금융 분야 자산이 전망보다 증가한 데 기인함.

이와 같이 2025년 결산은 당초 전망보다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단기적인 결산 결과일 뿐 향후 핵심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관별로 보면 부채 증가 규모와 재무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SOC 분야는 부채가 2025년 280.3조원에서 2029년 383.3조원으로 103.0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183.2%에서 20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부채 증가 규모가 크거나 재무구조상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부채가 91.7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비율은 2029년 89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부채비율도 2029년에도 1,0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국가철도공단은 부채규모가 상당함에도 무자본 특수법인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부채비율 지표만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같이 기관별 재무구조와 부채의 성격이 크게 상이하고, 전체 평균 부채비율 하락만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기관별 재무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공공기관 부채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투자 규모의 적정성, 재원조달 방식, 자체수입 확충 가능성 및 부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전체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기관별 부채 증가 규모, 부채비율 상승 기관, 자본잠식 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의 특성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채 증가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의 타당성, 자구노력 이행실적 및 재무개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중 주요기관별 자산·부채 등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24 (실적)	2025		2026	2027	2028	2029(B)	증감 (B-A)
			전망(A)	실적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233.7	245.5	248.9	273	307.2	340.1	362.5	117.0
	부채	160.1	170.2	173.7	192.5	219.5	246.2	261.9	91.7
	부채비율	217.7	226.1	230.8	239.0	250.5	262.1	260.3	34.2%p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6.8	18.1	17.8	19.4	20.6	21.9	23.2	5.1
	부채	14.6	15.9	15.5	17.2	18.3	19.5	20.9	5.0
	부채비율	648.2	700.3	670.8	754.4	796.9	845.2	896.0	195.7%p
한국장학재단	자산	11.5	12.3	12.0	12.9	13.6	14.1	14.7	2.4
	부채	10.5	11.2	10.9	11.8	12.4	12.9	13.4	2.2

(단위: 조원)

구분		2024 (실적)	2025		2026	2027	2028	2029(B)	증감 (B-A)
			전망(A)	실적					
	부채비율	1,010.5	1,053.7	1,028.8	1,053.6	1,043.8	1,035.9	1,028.4	△25.3%p
한국석유공사	자산	20.5	20.4	19.4	20.9	21.0	21.1	21.1	0.7
	부채	21.8	21.5	22.0	21.6	21.3	21.0	20.5	△1.0
	부채비율	자본잠식					26,257.6	3,529.4	-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산	4.8	4.9	4.9	4.9	5.2	5.5	5.7	0.8
	부채	8.6	8.4	8.1	8.0	8.3	8.5	8.6	0.2
	부채비율	자본잠식							
국가철도공단	자산	19.5	20.4	20.3	22.1	23.8	24.6	24.7	4.3
	부채	20.5	21.1	21.1	22.7	24.0	24.7	24.5	3.4
	부채비율	무자본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취합하여 재작성

② 재무위험기관 관리체계의 지속성 및 운영방향 명확화 필요

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여 14개 재무위험기관[11]을 지정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총 57.3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제시한바 있음.

그러나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는 전년과 달리 재무위험기관 지정 현황, 집중관리제도 운영성과 및 재정건전화계획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제외되었으며, 기관별 일반적인 재무전망만 제시하고 있음.

[2024년 및 2025년에 제출된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비교]

구분	2024~2028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무위험기관 지정 현황 및 운영성과 평가	14개 기관 명시	없음
집중관리제도 설명	있음	없음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총 57.3조원 제시	없음
기관별 자구노력 총괄	분야별(자산매각・사업조정・경영효율화 등) 제시	기관별 계획만 제시
향후 관리방안	재무위험기관 중심 관리	일반적인 재무전망 중심

11) [14개 재무위험기관]
- 9개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 한국전력공사(연결),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5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 관리방향을 일률적 부채 감축에서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무구조 구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임.

그런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는 중장기 재무전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관리체계가 함께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기타공공기관 중 재무건전성 제고가 필요한 기관

① 부채 처리방안 조속한 확정 필요(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는 폐업 이후에도 부채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청산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이자비용과 국가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부채 처리 및 청산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6월 정부의 석탄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공식 폐업하였으며, 기존 직원은 모두 면직되고 청산절차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계약직 인력만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은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청산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대한석탄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은 2021년말 9,705억원에서 2025년말 4,862억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2조 2,628억원에서 2조 5,93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자본은 △1조 2,923억원에서 △2조 1,077억원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석탄 생산 중단에 따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이 누적되는 가운데 영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2021~2025년 대한석탄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2025년 말
자 산	9,705	9,659	8,592	4,220	4,862
부 채	22,628	23,917	25,019	24,642	25,939
자 본	△12,923	△14,258	△16,427	△20.422	△21,077

자료: 대한석탄공사

한편, 산업통상부는 대한석탄공사의 약 2.6조원 규모 부채 처리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중임.

현재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하루 약 2억 4천만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이미 영업을 종료하여 자체적인 수익 창출이나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능한 기관으로, 자본잠식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행 운영체계가 유지될 경우 국가의 재정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 및 청산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청산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자비용과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② 자체수입 확대 등 재무구조 개선 필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운영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자체수입 확대와 비용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진료와 보훈요양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자체수입 기반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최근 5년간 자체수입 비중은 2021년 8%에서 2025년 3%로 감소한 반면 부채비율은 33%에서 391%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요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체수입	88,717	98,620	51,907	63,202	47,057
자체수입비중	8%	9%	4%	5%	3%
부채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	33%	32%	67%	183%	391%
차입금	-	-	-	87,405	65,000
진료비 미지급금	33,809	35,086	67,461	63,246	89,527

주) 진료비 미지급금은 외상매입금, 재료비, 위탁진료비 등 공단 발생 미지급금을 포함함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진료비 미지급금은 2025년 말 895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운영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금융기관 차입을 실시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영업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 재료비, 위탁진료비 등 주요 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영업수익과 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업수익 계		997,855	977,714	1,080,895	1,150,366	1,293,379
	국비환자진료수익	703,948	695,900	781,054	822,099	887,833
	일반환자진료수익	291,755	279,662	297,458	325,884	403,163
	위탁병원관리수익	2,152	2,152	2,383	2,383	2,383
영업비용 계		1,052,031	1,063,041	1,132,292	1,213,188	1,315,267
	재료비	165,839	163,912	187,620	201,883	224,020
	인건비	402,986	409,773	427,460	471,017	516,030
	위탁진료비	339,425	339,041	365,185	381,114	411,473
	기타경비	143,781	150,315	152,027	159,174	163,744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별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및 진료권역 등을 고려한 운영 효율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병원 기능 조정, 자체수입 확대, 비용구조 개선, 차입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산재병원 경영성과 개선 노력 필요(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환자 비중이 높아 병원 운영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기간 관리기준과 병상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산재병원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5년 적자 규모는 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 이상 증가하였고, 인건비・운영비・재료비 등 주요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병원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2021~2025년 산재병원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손 익(A-B)			△53	112	282	△121	△307
수익(A)	합 계		3,395	3,665	3,802	3,596	3,840
	의료수익	소 계	3,048	3,194	3,048	3,356	3,551
		입 원	2,035	1,965	1,744	2,019	2,056
		외 래	796	992	1,062	1,086	1,240
		산업보건	217	237	242	251	255
	의료외 수익		347	471	754	240	289
비용(B)	합 계		3,448	3,553	3,520	3,717	4,147
	의료비용	소 계	3,268	3,509	3,499	3,693	4,135
		인건비	2,410	2,575	2,610	2,803	3,192
		운영비	538	627	612	574	943
		재료비	320	307	277	316	343
	의료외 비용		180	44	21	24	12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적자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는 장기요양환자의 비중이 높은 데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진료수가가 낮아지고 병상 회전율이 저하되어 신규 환자 수용이 제한되기 때문임.

실제로 2025년 기준 산재병원 환자의 약 31%가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이며, 이 중 10년 이상 요양환자도 23.0%를 차지하는 등 장기요양환자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장기요양 연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제출받아 자문의사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고 있으나, 요양기간 관리원칙이나 장기요양환자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산재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폐환자, 사지마비환자 등 중증 장기요양환자를 치료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획일적인 요양기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기간 관리 원칙과 예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관리 실적을 병원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병상 운영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보증채무 증가 전망에 따른 국회의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설정되나 이후 채권 발행 규모와 운용 현황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제한적이고, 최근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도입 등에 따라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보증채무의 발행·운용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의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증채무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D1)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말 기준 국가보증채무는 총 15.6조원으로, 한국장학재단채권 10.8조원과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9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보증채무는 2020년~2023년 동안 매년 감소하였으나, 2024년 신규로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2] 발행 보증에 따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6조원 증가하였음.

[최근 국가보증채무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보증채무	12.5	10.9	10.6	10.5	11.0	15.6
(GDP 대비, %)	(0.7)	(0.5)	(0.5)	(0.5)	(0.4)	(0.6)
- 한국장학재단채권	10.5	10.2	9.9	10.0	10.4	10.8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5	0.8	0.7	0.5	0.2	-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5	-	-	-	-	-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	-	-	-	0.4	4.9

주) 보증잔액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1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보증잔액 기준)는 2025년 15.6조원에서 2029년 80.5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향후 4년 내에 약 5.2배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2025~2029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 보증채무	15.6	37.5	54.5	68.6	80.5
(GDP 대비, %)	(0.6)	(1.4)	(1.9)	(2.3)	(2.6)
- 한국장학재단채권	10.8	12.2	13.4	14.5	15.6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9	10.3	14.9	18.7	21.4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	15.0	26.2	35.4	43.5

자료: 대한민국정부(2025.9.),「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이는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증가와 함께 2024년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2025년 출범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채권이 국가보증채무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 핵심 분야를,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로봇・방산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보증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또한「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이 향후 국가보증채무에 포함될 경우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향후 한미전략투자기금 등의 도입으로 국가보증채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국가보증채무의 설정뿐만 아니라 채권 발행 규모와 운용 현황, 재무위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집행관리강화가 필요한 사업

(가) 집행잔액·이월 또는 결산잉여금 등 처리 부적정

① 출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분을 연례적으로 사내 적립하고 있는 문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출연금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집행잔액은 모두 이월되어 사내 적립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재단은 적정 소요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재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 집행잔액과 그 이자는 모두 국고로 반납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결산결과를 보면 최근 출연금 집행잔액이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출연금이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3~2025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수입	2024년 수입	2025년 수입
정부지원	출연금[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	12,263	12,170	12,018
		개도국개발협력(ODA) 사업(사업출연금)	37,954	52,217	60,803
	보조금		140	-	-
	합 계		50,357	64,387	72,821
자체수입	**이월금[2]**		**26,255**	**15,163**	**11,475**
	후원금[3]		1,710	1,334	939
	이자수익 등[4]		826	538	1,107
	합 계		28,791	17,035	13,522

주 1) 출연금: 정부예산 확정액
2) 이월금: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3) 후원금: 당해연도 발생액
4) 이자수익 등: 당해연도 발생액
자료: 보건복지부

출연금 집행잔액은 해당 회계연도 사업 수행을 위해 교부된 재원의 미집행분으로서 결산잉여금이 아니라 정산 및 국고 반납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간 이월·적립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적정 예산 규모의 판단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교부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집행잔액과 그 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고에 반납하는 등 출연금 관리 및 반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기구협력(ODA) 사업의 예산 집행 시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고, 국제기구에 유보된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제기구협력(ODA) 사업에서 국제기구에 지급된 누적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80.7%에 그쳤으며 42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60% 미만으로 나타났음.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국제기구 누적지급액·누적집행액 및 실집행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총사업수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A)	누적집행액 (B)	실집행률(B/A)		
					60% 이상 사업	60% 미만 사업
국제기구협력(ODA)	42	281,157	226,768	80.7%	36 (85.7%)	6 (14.3%)

주 1) 2025년 기준환율 1,380원 적용
2) 누적지급액(A): 2025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금액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일부 사업은 기존 지급액만으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국제기구의 실집행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가 약정액을 지급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이 국제기구에 유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사한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국제기구에 유보된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집행잔액의 국고반납 필요(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집행잔액과 환수액이 과도하게 유보되지 않도록 정부기여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적고 중도해지에 따른 정부기여금 환수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대규모의 정부기여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는 당해연도 교부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연도별 청년도약계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정부예산	교부액(A)	서민금융진흥원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집행잔액 (E=C-D)
2023	정부기여금	344,037	344,037	-	344,037	43,222	300,815
	인프라 구축	23,610	23,610	-	23,610	21,059	2,551
	합 계	344,037	344,037	-	344,037	43,222	300,815
2024	정부기여금	359,043	302,993	300,815	603,808	284,329	319,479
	인프라 구축	8,664	8,664	1,260	9,924	9,181	743
	합 계	367,707	311,657	302,075	613,732	293,510	320,222
2025	정부기여금	336,804	336,804	319,479	656,283	401,911	254,372
	인프라 구축	9,707	9,707	-	9,707	9,205	502
	합 계	346,511	346,511	319,479	665,990	411,116	254,874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은 집행잔액과 환수액 및 이자수익을 당해연도에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 시까지 보유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편성 시 추계정확성을 제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실적과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정부기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제 사용되지 못한 정부기여금이 과도하게 유보되지 않도록 집행 및 정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④ 일정규모 이상의 낙찰차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운용할 필요(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낙찰차액은 반납하도록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목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2023년 7억 3,200만원, 2024년 5억 2,800만원, 2025년 6억 1,100만원 등 매년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음.

해당 금액은 녹색자금 관리규정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승인을 거쳐 국산 목재 맞춤형 수납장·책상 제작, 편백나무 교구 구입 등 사업 관련 용도로 재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녹색자금 관리규정」은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예외적 사용이 반복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발생한 예산 절감 효과가 실제 재원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복지진흥원은 낙찰차액 승인 기준과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⑤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정부대행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추진한 사례로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정부대행사업 집행잔액 29억 3,600만원 중 2억 3,100만원을 활용하여 ‘AI 기반 수능 자동문항 생성기능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초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정부대행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추진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정보화전략계획(ISP)은 단순한 용역비 집행이 아니라 향후 대규모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 사전기획 단계라는 점에서, 사업 착수 단계부터 별도의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추진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ISP 사업 추진에 앞서 교육부 사전검토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적정성 문제와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별도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⑥ 결산잉여금 등 내부유보금 규모 축소 필요(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업무집행조합으로서 관리보수 수익과 내부유보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관리보수 체계 개편 및 배당 확대 등을 통한 내부유보금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벤처투자는 업무집행조합으로서 출자금 규모에 비례하여 관리보수를 수령하고 있는데, 매년 출자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보수 수익 및 내부유보금도 2023년 379억원에서 2025년 46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다만 한국벤처투자는 인력 활용이 중심이 되는 기관이므로 이익의 내부 유보를 통한 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낮은바, 관리보수 체계 개편 및 배당 성향 확대 등을 통해 내부유보금 규모를 축소하여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5월 관리보수 개편 및 배당성향 확대 조치를 통해 ① 2조원의 0.55%에 더하여 2조원 초과분의 0.4%를 관리보수로 지급하던 기존 체계를 10조원의 0.4%에 더하여 10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4%보다 낮은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② 2025년 배당성향을 전년 대비 1.0%p 확대한 29.0%로 설정함으로써 배당금의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억원 확대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개편 내용에 따른 배당금 확대분 및 관리보수 감액분의 합(약 46억원)은 과거 연도별 관리보수의 전년 대비 증액분(2024년 38억원, 2025년 45억원)과 유사한 수준인바, 이와 같은 개편에도 불구하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국벤처투자 내부유보금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⑦ 결산잉여금 및 차기이월금 관리 개선 필요(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금액을 기금운용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도하게 누적된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이 계획적으로 반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반환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실제 기금운용계획에는 산식에 따른 반환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2025년 결산 기준 8,851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 대여학자금수탁금 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여학자금 수탁금	누적 수탁금(A)	37,466	35,126	32,758	31,342	30,127
	부담금 수입액(B)	1	1	6	5	8
	반환금(C)	2,341	2,369	1,422	1,220	1,062
	수탁금 잔액 (D=A+B-C)	35,126	32,758	31,342	30,127	29,073
	대부잔액(E)	26,638	24,517	22,980	21,506	20,222
	잉여금(D-E)	8,488	8,241	8,362	8,621	8,851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따라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을 기금운용계획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누적된 잉여금을 단계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수탁금이 적정 규모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⑧ 사업비 이월액 표시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사업의 협약 변경 시 이월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고 결과보고서에 이월 내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사업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사업비 14억 6,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나, 협약 변경 시 이월 예정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결과보고서에도 이월 집행 경위와 내역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음.[13)]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약 변경 시 이월 승인과 사업수행계획 변경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리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월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보고하도록 검수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예산집행 방법·시기 등 부적정

① 충분한 용역기간 확보를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는 수탁사업 수행 과정에서 외부용역에 대한 사업관리와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정한 계약절차와 충분한 품질검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육아정책연구소는 수탁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부용역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AI 구축사업은 사전기획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후속 구축사업까지 수행하여 경쟁입찰의 공정성과 경쟁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총사업비 4억 3,900만원 규모의 AI 구축사업이 약 50일의 계약기간 내에 추진되는 등 요구사항 분석, 기능 구현, 시험 및 검증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일정으

---

13) 「2025년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협약서」
제5조(사업비의 관리) ④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사업기간내·종료후 발생한 이자수입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서와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갑”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을”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사업비, 출연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협약사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로 진행되었음에도 의무감리를 실시하지 않아 사업관리와 품질관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였음.[14]

따라서 육아정책연구소는 외부용역 수행 과정에서 사업관리와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용역 계약의 회계연도 일치 필요(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은 해외우수연구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용역계약의 계약 주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평가관리비 일부를 해외우수연구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용역 계약 체결에 활용하고 있음.

2022년 최초 계약 이후 과업의 연속성 유지와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 등의 영향으로 계약 시작 시점이 점차 연말로 늦춰지면서 회계연도와 계약기간 간 불일치가 지속·심화되고 있음.

[해외우수연구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용역 계약기간 현황]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2022	2022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업무 지원	2022.06.21.~2023.06.20.
2023	2023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운영 지원	2023.11.16.~2024.11.14.
2024	2024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운영 지원	2024.11.15.~2025.11.14.
2025	2025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운영 지원	2025.12.23.~2026.12.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계약 구조는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향후 용역계약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체결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4) 행정안전부의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에서는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의무감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요구사항 분석·기능 구현·시험 및 품질검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③ 산업 R&D 자금의 집행시기 개선 및 장기 유보 방지 필요(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통상부로부터 교부받은 R&D 자금을 기관 단계에서 장기간 유보하여 연구개발 현장 투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자금의 적기 집행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금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업분야 R&D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자금을 교부하면, 전문기관이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절차를 거쳐 최종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그러나 2025년 일부 사업에서는 산업통상부의 전문기관 교부 시점과 최종 연구수행기관 지급 시점 사이에 3~9개월의 시차가 발생하여 연구개발자금이 전문기관 단계에 장기간 유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예를 들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R&D)'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2025년 3월 전문기관에 자금을 교부하였으나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최초 지급은 같은 해 12월에 이루어져 9개월의 지연이 발생하였음.

특히 연구개발자금은 최종 연구수행기관에 지급되어 연구인력 인건비, 장비 구입 및 기술개발 등에 활용될 때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 단계에서 장기간 유보될 경우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사업별 집행 일정을 면밀히 반영한 자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자금이 적기에 연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사업계획 또는 목적과 다른 예산집행

① 대형헬기 도입 예산액을 중형헬기 도입으로 조정·집행한 문제(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은 대형헬기 도입 계약이 연내에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헬기 도입 예산액을 중형헬기 도입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립공원공단은 대형헬기가 연내 형식증명을 받지 못해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25년 12월 대형헬기 도입사업 예산 110억원 중 99억원을 중형헬기 도입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그러나 해당 예산은 2025년 대형헬기 도입 계약 체결 후 연부율 20%에 해당하는 선금 지급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를 중형헬기 도입사업에 집행한 것은 국회가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국립공원공단은 중형헬기 부품 조기 확보 및 도입 시기 단축을 위해 대형헬기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여건과 계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장비 도입 사업 추진 시 형식증명 등 선행 요건과 계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당초 계획에 없는 교육사업 추진 문제(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 취업활성화 교육사업’을 별도 예산 확보 없이 추진하여 기존 목적사업인 ‘청년 고용노동교육’을 축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및 「정관」에 따라 국민의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고용노동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사업은 법령 및 정관상 사업 범위와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 취업활성화 교육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기존 출연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취업 지원 성격으로 운영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 ‘청년 고용노동교육’ 예산은 415백만원에서 354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교육인원도 81,000명에서 71,000명으로 10,000명 축소되었음.

따라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설립 목적과의 부합성 및 예산 편성 절차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존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수입 및 자산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업

(가) 수입실적의 적절성 제고

① 반복적인 자체수입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일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초과수입과 결산잉여금의 원인을 점검하고, 최근 결산실적을 반영하여 수탁수입예산이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되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과 2025년 결산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는 2년 연속 30억원 이상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음.

이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66억 2,2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51억 3,4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45억 3,600만원), 한국개발연구원(39억 800만원) 등 4개 기관은 2025년 결산결과 30억원 이상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들 기관은 정부 정책수요에 기반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수탁수입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탁 가능 규모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자체수입이 과소 계상되고 기관의 경영성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반복적으로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의 예산편성 적정성을 점검하고, 최근 수탁실적과 결산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수탁수입예산의 추계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초과수입과 간접비, 성과급 재원 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재원 확충 노력 필요(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수입 기반 강화를 위해 뉴서울CC의 국가 소유 전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관리하는 뉴서울CC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년 약 60억원

의 제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동일한 정책기금 조성 목적의 국가 소유 시설인 88CC에 비해 기금의 자체수입 확보에 불리한 구조임.

국가 소유로 전환될 경우 현재 제세금으로 지출되는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금의 재원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회원권 반환채무 등 국유화에 따른 재무적 부담도 함께 고려하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정책기금 조성 목적과 기금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가 소유 전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기금 수입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고정자산매각익 등 주요 수입과목의 추계정확성을 제고하여 기금 수입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정부출자수입 중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배당금과 대물주식배당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채권·주식 회수, 고정자산매각익 중 투자주식 처분익 등은 매년 상당한 수입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게 편성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2021~2025년 주요 수입과목 계획 대비 징수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정부출자수입	431	1,530	375	15,815	510	44,974	542	30,262	478	9,456
기타경상이전수입	572,366	486,553	628,643	581,442	637,151	669,170	761,325	899,259	873,983	1,124,811
고정자산매각익	4,327	11,592	2,055	6,742	1,718	27,758	2,062	20,123	2,160	36,038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구상채권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일부 수입과목은 계획 대비 실적이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등 계획과 실적 간 괴리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기금 수입의 예측 가능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주요 수입과목별 특성을 반영한 추계기법을 고도화하고, 반복적으로 과소 계상되는 수입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금 수입계획의 현실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④ 기술료 수입금의 활용 및 관리 개선(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 배분 과정에서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료가 연구개발 재투자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K2전차 기술료의 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한 배분 비율과 기여도 산정 등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술료와 이자 상당액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외 기술료 역시 기여도 산정과 연말 대규모 기술료 징수 등의 사유로 차년도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 기술료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기술료 사용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재투자 비율도 2023년 50.1%에서 2024년 22.6%, 2025년 18.7%로 감소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연구개발 재투자 기준(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2021~2025년도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료 수입·사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료 수입		780	3,448	13,943	6,876	53,466
기술료 사용		5,193	3,640	10,221	8,210	8,797
	연구개발 재투자 (기술료 사용 중 비율)	4,256 (82.0%)	2,949 (81.0%)	5,122 (50.1%)	1,854 (22.6%)	1,646 (18.7%)
	참여연구원 보상	768	665	2,339	3,416	4,721
	기술확산기여자 등 보상금	-	-	981	1,472	1,879
	기관운영경비	169	24	1,749	1,468	525
	지식재산권 관리	-	2	30	-	26

주) 기술료 사용은 집행(사용)연도 기준으로 작성(튀르키예 K2 기술료 분 제외)
자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제출자료를 재구성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기술료 배분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참여연구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재투자 과제의 선정과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술료 제도가 연구개발 선순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미수납 수입금에 대한 징수·수납 실적 제고

① 보조금 환수금 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보조금 환수금 채권의 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부정수급 예방과 채권 회수 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중소기업의 사업 실패 및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보조금 환수금 채권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자체 독촉 후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채권 추심 현황을 보면, 추심위임액 73억 4,100만원 중 회수액은 2억 2,700만원(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미회수액 71억 1,400만원 중 폐업·파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불가한 채권이 35억 2,300만원에 육박한 점, 2024년 하반기 이전에 발생하여 1년 이상 회수 진행 중 상태에 있는 채권의 규모 또한 47억 9,100만원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사업비의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추심 단계 이전 부정수급 등의 발생률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심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회수관리 강화 필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액이 133억 5,09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협약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및 연구비 정산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말 기준 두 기관의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액은 총 133억 5,090만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8억 2,550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억 2,540만원임.

[2025년말 기준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재부가금 미수납	1,023.7	폐업, 경영 악화 등
	정산금 미수납	501.7	연구기관 미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재부가금 미수납	9,793.5	납부 대상자 미납 중
	정산금 미수납	2,032.0	납부 대상자 미납 중
계		13,350.9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미수납액은 연구기관의 미납, 폐업 및 경영 악화 등을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금액은 부과 이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납부 독촉 등 제한적인 조치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수납 사유별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제재부가금 부과 단계부터 납부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한 미수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연구개발 정산금 회수 노력 강화 필요(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후 장기간 미수납된 회수금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절차를 통해 회수금을 적기에 국고로 반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까지 정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회수 결정액 중 6억 7,800만원이 미수납된 상태로 누적되어 있으나, 2022년 ~ 2024년 종료과제 중 회수금 미납을 이유로 제재처분은 2026년 7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수납 기관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독촉만으로는 실효적인 회수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이후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촉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하여 정산금이 국고에 반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5) 경영 및 조직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업

(가)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필요

① 수탁사업 확대에 따른 기관 운영방식 점검 필요(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는 대규모 수탁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관리 기능이 연구기관 본연의 조사·연구 기능을 과도하게 대체하지 않도록 수탁사업의 수행방식과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자체수입은 유보통합[15] 관련 수탁사업 확대에 따라 당초 예산 29억 1,000만원의 약 6.7배인 193억 8,200만원에 달하였고, 초과수입의 대부분은 수입대응지출로 집행되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외부용역과 전문가활용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음.[16]

또한 육아정책연구소는 한정된 연구인력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국 단위 사업을 다수 수행하면서 직접 연구보다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 기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연구기관 본연의 정책연구 기능과의 균형이 미비한 실정임.[17]

따라서 육아정책연구소는 수입대응지출 사업의 필요성과 수행방식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정책개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탁사업의 범위와 사업관리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 특성을 고려한 현행 관리·감독 체제 개선논의 필요(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핵심 기능이 국가시험·평가·검정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연구기관 소속 체계가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15)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정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2024년 6월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

16) 2025년 초과수입 가운데 157억 2,300만원은 수입대응지출로 집행되었으며, 이 중 전문가활용비로만 94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음.

17) 현원(연구직/비연구직) 비교: 육아정책연구소 60명(44/16), 한국법제연구원 128명(90/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6명(156/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9명(89/30)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출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용도서 검정 등 국가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시험·평가·검정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약 1,720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수탁받아 자체수입이 정부출연금의 약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인 정책연구보다 국가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집행 기능의 성격이 강한 반면, 현행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과 소속 체계 간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기능과 국가시험·평가·검정 기능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시험·평가 업무가 기관의 주된 기능이라면 현행 연구회 소속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③ 결원율 증가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결원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조사·연구 등 기관 역할 수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재 유치 방안을 비롯한 결원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도 말 기준 결원율은 2022년 말 6.6%에서 점차 상승하여 2026년 1/4분기 말 기준 18.6%에 이르렀는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공공기관 중 2025년에 10명 이상의 현원 감소가 발생한 창업진흥원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임.

[2026년 1/4분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기타공공기관의 결원 현황]

(단위: 명, %)

기관명	정원(A)	현원(B)	결원(C=A-B)	결원율(=C/A)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18	96	22	18.6
창업진흥원	186	147	39	21.0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90	243.13	46.87	16.2
한국벤처투자	152	138	14	9.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45	41	4	8.9

주) 일반 정규직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높은 결원율의 원인으로 신규채용 등 결원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및 인건비 배정의 한계와[18] 여성 직원 비중이 높아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이 빈번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5년말 기준 결원 18명 중 6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은 6명에 불과하며, 2025년 4차례 정규직 채용에서도 모집인원 12명 중 8명만 선발되는 등 지원 인력 부족 및 채용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인 원인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단순한 휴직 대체를 넘어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경쟁력 제고,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사·연구·교육·평가 등 기관 본연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결원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④ 사업 추진단계를 고려한 적정 조직 규모 관리 필요(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단계에 비해 조직 및 인력 규모가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사업 진행 상황과 단계별 소요 인력을 고려하여 조직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현재 3본부 9처 3실 체계와 정원 176명, 현원 137명의 조직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조직을 다른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공항 건설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단의 조직 규모는 과도한 상황임.

다른 지역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 및 지방항공청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도 별도 추진단(6명)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가덕도신공항은 국토교통부 추진단(14명)과 별도로 137명 규모의 공단이 운영되고 있음.

특히 2025년 기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접근철도 분야만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공항 부지조성공사 및 접근도로 분야는 기본설계도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당초 계획 대비 준공 시점이 3년 이상 지연된 상황을 고려

18) 연도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총인건비 중 정부지원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90억 6,700만원 중 79억 4,600만원(87.6%)을, 2024년에는 88억 800만원 중 73억 5,900만원(83.5%)을, 2025년에는 93억 8,400만원 중 84억 2,600만원(89.8%)을, 2026년에는 101억 6,900만원 중 92억 9,600만원(91.4%)을 지원받았음.

하면, 현 단계에서 시설·설비 등 건설 전 분야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낮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현재 사업 진행 단계에서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일정과 실제 업무량을 반영하여 조직 확대 및 신규 채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등 공단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⑤ 자격검정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검정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정사고와 출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 부적절한 대응으로 자격검정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검정업무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일학습병행자격 등 국가자격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자격검정은 국민의 직업능력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공적 업무로서 출제, 검수·검토, 시험 시행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됨.

그러나 2025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2024년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합격자 정정공고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전산상 합격자 통계만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음.

또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매년 24~37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자격검정 과정 전반의 관리체계 미흡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 오류 원인으로 시험위원 및 검수·검토위원 수당의 현실화 부족에 따른 전문가 참여 저하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수당 문제뿐만 아니라 출제 품질 관리, 시험 시행 관리, 사고 발생 이후 대응체계 등 검정업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개선이 요청됨.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과 함께 검정 단계별 관리체계 및 사고 대응 절차를 재정비하여 국가자격검정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나) 복리후생제도 개선 필요

① 정직자 또는 음주운전자 등 징계대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문제 개선필요(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등 금융위원회 소관 5개 공공기관은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정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재산・성・음주운전 등 비위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인사관리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여 징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소관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재산・성・음주운전 등 비위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재산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연체관리, 한국은행 차입업무 등 실제 직무를 계속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등 관련 지침의 취지와 다르게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의 징계 및 보수체계가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들은 정직자 또는 음주운전자 등 징계대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성과급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 규정 미비 문제 개선 필요(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출연연구기관 공통)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및 부당수령 성과급 환수 규정이 미비한 일부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여 퇴직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26개 출연연 가운데 4개 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19]은 관련 규정 미비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20]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성과급의 환수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기관도 3개 기관(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에 불과함.

이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및 부당수령액 환수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할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21] 그러나 대부분의 출연연은 퇴직자의 부정수급액을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출연연은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및 부당수령액 환수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조치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③ 자회사 성과보상금 지급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자회사인 (주)상록골프앤리조트에 위탁계약에 따른 이윤과 별도로 성과보상금을 매년 추가 지급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자회사의 성과급을 이중 지원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계약상 이윤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은 ㈜상록골프앤리조트와의 2025년 계약에서 약 5억 2,800만원의 계약상 이윤을 보장하였음에도 운영성과 평가를 근거로 별도의 성과보상금 6억 4,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회사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별도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상 이윤과 성과보상금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성과보상금은 사실상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계약금 잔액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한 추가 지

---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2025년에 7개기관이 규정개정을 완료하여 총 22개 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20) ①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정직)을 받은 자, ② 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③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

21)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이 자회사 잉여금 누적과 재정운용의 비효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자회사 성과보상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성과보상금 대신 계약상 이윤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필요

(가) 공공기관의 사업출연금 사후정산에 관한 통일된 규정 마련 필요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통일된 관리기준이 없어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일관된 사후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정부 R&D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출연금(360목)과 정부 R&D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되는 일반출연금(350목)으로 구분되며, 일반출연금은 다시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으로 구분됨.

연구개발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은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일반출연금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필요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기관운영출연금은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기관의 세입에 계상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기관운영출연금·사업출연금의 사후정산 관련 지침]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207)」 일반출연금(350목)
o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러나 사업출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기준을 주무부처 또는 개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부처별·기관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공공기관은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등을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여 기관운영비에 사용하거나 기관 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 공공기관의 사업출연금 실집행 내역 예시]

(단위: 백만원)

공공기관명 (소관부처)	비목	부처			공공기관 기준 (2025년 실집행)					
		2025년 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6년 반납액
		본예산	추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사업출연금 (350-02) * 기관운영 포함	72,821	72,821	72,821	9,286	82,107	70,632	11,475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	사업출연금 (350-02)	114,416	114,416	114,416	205	114,621	112,191	334	2,096	2,092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미통위)	사업출연금 (350-02)	10,508	10,508	10,508	-	10,508	9,882	-	626	626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청)	사업출연금 (350-02)	22,767	22,767	22,767	2,057	24,824	17,175	7,327	322	3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후부)	사업출연금 (350-02)	95,813	95,813	95,813	-	95,813	88,466	-	7,347	7,347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22]를 근거로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을 결산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23년 262억 5,500만원, 2024년 151억 6,300만원, 2025년 114억 7,500만원을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음.

사업출연금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교부되는 재원으로 기관운영출연금과 성격이 다르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해서만 기관 세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출연금의 목적과 예산 통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별로 집행잔액의 처리방식이 부처별·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 기관에 따라 국고에 반납하거나 자체수입으로 관리하는 등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됨.

이는 출연금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기관의 자체재원으로 축적되는 경우 국회가 승인한 출연사업의 실제 소요 규모와 집행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통제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산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이 기관별 재량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나) 관련 법령 또는 지침 준수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HACCP 인증 수수료 국고 납입 필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가사무인 HACCP 인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 수수료를 법령에 근거 없이 자체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인증 수수료를 전액 국고에 납입할 필요가 있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민간위탁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인증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및 수탁사업 수행 등에 자체 사용한 후 잔액만 반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을 자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2025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수수료 자체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인증 건수	수수료 수입액	수수료 자체 집행액
2023년	20,860	4,876	**4,298**
2024년	18,892	5,033	**4,482**
2025년	19,757	5,080	**4,664**

주) HACCP 연장심사 수수료 포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HACCP 인증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국가사무로서, 인증 수수료는 국가 수입에 해당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내부규정이나 위·수탁 계약을 근거로 자체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국고금 관리법」의 수입 직접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 수수료를 전액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사업비 지원과 인증수수료의 귀속·집행 체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료 수입 회계처리 방식 개선 필요(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23]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 징수 권한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 유입된 시점에 징수된 금액만을 예수금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기술료 확정 시점과 징수 시점의 차이가 크지 않고 현금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은 수익 인식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실제 현금 유입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현금주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아 발생주의 회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에 대한 징수 권한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자산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부합하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첫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하는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처리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분쟁조정 신청일부터 60일(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2025년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7일에서 57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의 비율도 6.6%에서 11.8%로 상승하는 등 사건 처리가 점차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유통, 대리점 분야에서 장기 처리 사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25년 유통 분야는 전체 사건 수는 적었음에도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음. 이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사건 처리의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긴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소비자원이 담당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처리기간 연장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처리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기본법」은 피해구제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피해 원인 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사건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2025년 피해구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7.2일에서 21.9일로 증가하였고, 30일 이내 처리율은 91.3%에서 78.8%로 감소하였음. 또한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85일에서 132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사건 처리가 점차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처리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개발적립금 부적정 집행 문제 개선 필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경상적 경비에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 용도와 집행기준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25년 연구개발적립금 7억 8,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이 중 3억 9,800만원을 옥외 방송통신 설비 보수, 화재감지 소방시설 보수 등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였음.

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경우에도 2025년에 연구개발적립금 일부를 안내 전광판 구입 및 설치, 화분 및 수목식재 구입,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철거 등 경상적 경비에 활용하였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구개발적립금을 기관고유연구, 연구인프라 확충, 기관발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경상적 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시 허용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 해당 여부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⑤ 「보조금법」 및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교의 강좌 개설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일반용역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외교 관련 강의 개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외교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일반용역비의 성격보다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유사 사업인 해외대학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은 해외경상이전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도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유사 사례와도 차이가 있음.

따라서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편성·집행지침의 취지에 맞도록 동 사업을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다) 계약 이행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① 수의 계약 중심의 R&D 기획평가비 집행방식 개선 필요(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은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용역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일부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경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성과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획평가관리비 15억 6,9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용역 34건 중 33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 3년간에도 2023년 31건 중 26건, 2024년 35건 중 3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외부용역 대부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업무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일부 용역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3년간 외부용역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일부 업체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용역을 수행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용역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경쟁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유사 목적의 용역은 사전에 통합 발주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 연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용역에 대해서

는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등 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② 철도차량 납품 관리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의 장기간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및 계약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미정산금 발생 및 심각한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철도차량 계약·납품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신규 철도 노선 개통 및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철도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수송차량구입 사업 예산현액 778억 7,200만원 전액을 출자금으로 집행하였음.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다원시스와 2019년 11월 철도차량 208량(계약금액 3,821억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기간인 2023년 11월까지 차량을 한 량도 납품받지 못하는 등 납품 지연이 지속되었음.

특히 납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이 지속되었고, 이후 제작업체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미정산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발주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계약 관리가 부실하였음.

또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다원시스가 일부 계약에서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선급금 지급 이후 사용 실태를 적기에 점검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향후 대규모 철도차량 구매계약 체결 시 제작사의 재무건전성 및 납품 이행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선급금 지급·관리 및 공정 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철도차량 계약 및 납품 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업

① 출연연구기관 평가 관리체계 강화 필요(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PBS 폐지 이후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안정성 제고와 함께 정책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의 변별력과 사후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PBS 제도는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나, 연구자들이 단기 수탁과제 확보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른 PBS 폐지는 연구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연구과제 수주 실적을 통한 외부 평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요 대응성과 연구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기관의 약 70%가 B등급에 집중되는 등 평가결과가 특정 등급에 편중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낮을 경우 기관 간 성과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 유인도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PBS 폐지 이후에는 기관평가가 출연연의 정책 대응성과 연구성과를 관리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책현안 대응성, 연구성과 활용도, 수요부처 만족도, 기관 간 협업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기관 운영과 연구성과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변별력과 환류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지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관리가 미흡하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마련·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부담경감크레딧 등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25년 한시사업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비용 지원 성격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2025년말 기준 '정책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에 한정되어 있으며, 매출 증가, 고용 창출, 경영 개선 등 소상공인의 질적 성장과 관련된 지표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

또한 부담경감크레딧의 경우 사업자 명의 카드로 지급되더라도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가 반드시 소상공인 본인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라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질적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지원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8)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①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적정성 제고 필요(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출자사업인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집행 부진에 따라 사업 내용을 대폭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였고, 일부 기업이 타 사업의 정책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중복수혜 방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은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25년 8월까지 집행 실적은 150억원으로 계획액(3조원)의 0.5%에 불과하였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2025년 9월 지원대상을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한편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사업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으나, 연내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여 지원기간을 2026년 3월까지 연장하였음.

또한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일부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유사 사업인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도 함께 지원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책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내용의 빈번한 변경을 최소화하는 한편, 타 정책금융사업과의 중복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및 햇살론15 상품에 대한 금융기관 참여 확대 필요(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6년부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과 햇살론15가 통합되면서 한시적·부분적으로 투입되던 정부재정이 영구적·전면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해당 상

품들은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보다 높은 순대위변제율을 보여 향후 정부재정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과 햇살론15의 취급 실적이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집중되는 등 다수 금융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24)]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기관별 출연요율과 부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확대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일수 증가 문제 개선 필요(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해근로자가 적기에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산재 승인 결정을 위한 절차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 여부는 재해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및 질병판정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됨.

그러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175.8일에서 2025년 244.7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산재 처리기간(81.1일) 및 업무상 사고(18.5일)에 비해 현저히 긴 수준임.

특히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 지연은 재해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을 적기에 받지 못하게 하여 의료비와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전문조사・특별진찰 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산화, 전문조사 및 특별진찰 위탁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4)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취급 실적이 존재하는 은행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3개에 불과하고, 햇살론15의 2025년 취급 실적(1조 3,571억원) 또한 상당 부분이 전북은행(5,604억원), 카카오뱅크(2,754억원), 광주은행(2,506억원) 등 소수 은행에 집중되고 있음.

④ 융자예산의 기존업체 지원 비율 과다 및 반복지원 문제 개선 필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글로벌육성지원 융자 사업에서 기존 수혜업체에 대한 반복 지원 비중이 높고 장기 연속 지원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규 수출업체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자금(13개 사업) 중 글로벌육성지원 융자 집행내역을 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 총 220개 업체에 4,57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업체 중 기존 지원업체 비중은 98.4%에 달한 반면 신규 지원업체 비중은 1.6%에 불과하여, 신규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5년 이상 연속하여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는 145개로 전체 지원업체의 6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융자액은 3,830억 3,200만원으로 전체 융자액의 8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부 수출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운영자금 융자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수출업체의 자금 접근 기회를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순환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 연속 수혜업체의 지원 효과와 정책자금 의존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 지원 한도, 지원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⑤ 점포철거비 지원에 있어 중복수혜 방지대책 마련 필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수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소상공인 자부담 반영 및 기관 간 지원정보 공유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원스톱폐업지원 중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지원단가가 평당 20만원, 최대 지원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연도별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연도	1평당 지원단가	최대 지원 한도	계획액	실집행액	목표 건수	실제 건수	사업 마감일
2021	8만원	200만원	19,500	23,508	9,750	15,679	-
2022	8만원	250만원	33,200	30,487	13,280	16,323	-
2023	13만원	250만원	49,800	48,852	20,000	22,404	-
2024	13만원	250만원	54,700	62,439	22,000	29,533	2024-11-07
2025	**20만원**	**400→600만원**	**179,545**	**179,545**	**50,613**	**50,952**	**2025-11-21**

주 1) 계획액 및 목표 건수의 경우 각 연도 추경 기준으로 작성
2) 2025년 목표 건수의 경우 제2회 변경안에 따른 지원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지원은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폐업 증가와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철거비용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부정수급 관리 실태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은 2건에 불과하였으며, 2025년 10월 설치한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11건에 그치는 등 사업 규모에 비해 관리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원요건상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실적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중복수혜 여부 확인에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및 이상징후 탐지체계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실제 비용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자부담 제도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등 중복수혜 방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⑥ 특례지원 확대에 따른 특례심사 강화 필요(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이 낮아 일반적인 지원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지원 규모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역선택 방지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례지원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례지원은 대외환경 변화나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에 대해 미래 성장성, 기술력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최근 특례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면서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무역보험 특례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52.8억원, 10.6건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지원 대상·금액·종목 확대 등의 영향으로 41건, 2,143억원으로 급증하였음.

[2020~2025년 무역보험 특례지원(공급) 실적]

(단위: 억원,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연평균	2025년
공급실적	139	183	254	115	73	152.8	2,143
공급건수	5	15	15	10	8	10.6	41

주) 2026년 공급건수(안)은 실제 개별 기업의 보증한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에 따라 특례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특례인수위원회의 부담도 증가하여 2025년 개최 횟수는 24회, 심사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배, 약 4.6배 증가하는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

특히 특례지원은 일반적인 보험 인수가 어려운 고위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 과정에서 역선택이 발생할 경우 무역보험기금의 손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특례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사체계 개선, 사후관리 강화 및 지원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특례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가. 개 요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지능정보화 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 사업임.

다만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및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된 국방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및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1)]

문의: 02-6788-5677

---

1) 「국가재정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1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 중등 교육시설의 신 · 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2026년 1월 국회는「국가재정법」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속 제도를「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하였음.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함.[2)]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 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 ·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31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 ·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우주개발 진흥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 · 시험 · 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 관제 · 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함.[3)]

(2)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절차[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함. 다만, 사업 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신규 예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에서 수행함.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는 ① 우선 대상 사업의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 ② 대상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정책 효과 등을 검토하는 정책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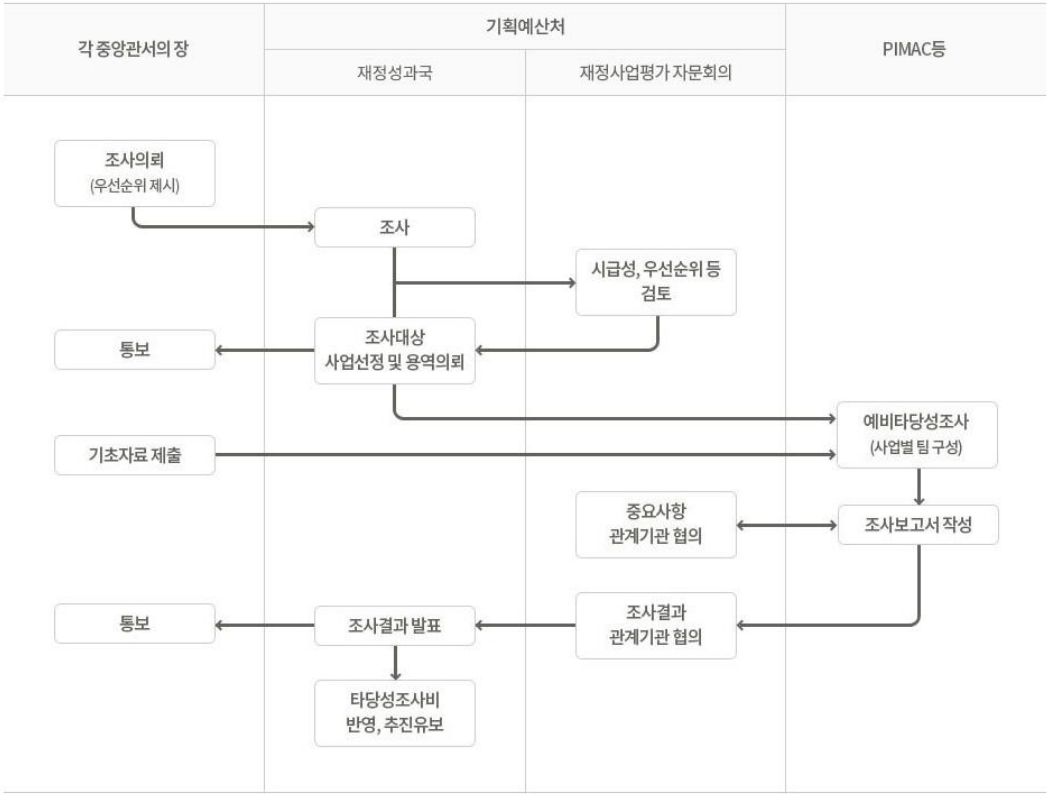
---

3) 「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31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이하의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예산처훈령 제63호, 2026. 5. 29.)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예산처훈령 제62호, 2026. 5. 29.)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③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및 균형발전 효과(지역낙후도 개선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수행됨. 그리고 ④ 앞서 실시한 경제성 분석·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에 대하여 다기준 분석(계층화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수행체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pimac.kdi.re.kr/about/validity.jsp)에서 발췌

(3)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장에서는 타당성재조사의 대상 사업, 요건 및 조사 내용 등을 정하고 있음.[5)]

동 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타당성재조사는 ①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②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함.

그 외에도 ③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④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최초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⑤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등이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6]

---

5)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4조(타당성재조사의 목적)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동조에 따른 대상규모로 증가하지 아니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총사업비 증가율은 제107조에 의거 최초 등록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다. 물가변동분 계산시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
   라. 지가변동분 계산시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와 대비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가지수 등을 이용
   마.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제31조 및 제32조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전체 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다만, 설계를 공종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잔여 설계분의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할 수 있다.
4.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다만 동 지침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②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③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④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7)]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또는 지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8)9)10)]

---

5.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다. 제5조제2항 〈별표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 표기된 바와 같이 공사비를 공종별로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종별로 시차를 두고 설계하는 경우 특정 공종에 대한 설계 결과의 공사비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종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사업비의 공종별 누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며, 비교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에는 예비비를 포함한다.)

7)「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나.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
4. 재해예방 · 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7. 사업비가 표준사업비 미만인 사업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8)「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 단

(4) 202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11)]

202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53개의 부처별 결산 현황을 보면, 사업 수는 국토교통부(83개), 국방부(74개), 기후에너지환경부(5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38개), 산업통상부(38개), 해양수산부(34개) 순으로 많음.

2025년도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95.3%이며, 집행률 90% 미만인 부처는 통일부(1.6%), 경찰청(78.6%), 해양수산부(85.1%), 대법원(85.3%), 농촌진흥청(86.3%), 행정안전부(86.9%) 등 6개 부처임.

[2025년도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산[1)2)]]

(단위: 개, 백만원, %)

부 처	사업 수	2025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경찰청	4	3,207	2,533	1,991	508	34	7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	947,873	948,885	899,598	3,712	45,575	94.8
교육부	4	339,671	336,971	308,194	25,430	3,347	91.5
국방부	74	562,266	562,587	560,141	-	2,446	99.6
국토교통부	83	4,645,585	3,994,516	3,609,457	160,809	218,750	90.4
기상청	4	40,673	40,671	40,297	372	2	99.1

서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포함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2025년에 예산이 편성된 일체의 사업을 범위로 함.

(단위: 개, 백만원, %)

부 처	사업 수	2025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기후에너지환경부	51	920,625	925,646	900,712	68	26,606	97.3
농림축산식품부	15	535,603	619,801	608,561	2,866	8,374	98.2
농촌진흥청	5	92,119	95,119	82,047	1,831	11,241	86.3
대법원	7	97,232	101,561	86,595	11,554	3,412	85.3
문화체육관광부	9	142,715	155,927	145,827	6,733	3,367	93.5
방위사업청	2	85,739	85,949	85,384	416	149	99.3
법무부	13	104,469	138,782	126,656	11,901	225	91.3
보건복지부	28	3,509,704	5,793,799	5,758,472	13,321	4,251	99.4
산림청	2	28,117	28,445	28,369	35	49	99.7
산업통상부	38	1,028,988	1,028,988	1,022,313	-	4,900	99.4
새만금개발청	1	40,165	40,739	40,570	-	169	99.6
소방청	1	69,067	80,521	77,626	543	2,352	96.4
우주항공청	13	590,375	590,375	590,166	-	209	99.9
원자력안전위원회	2	29,793	29,793	29,793	-	-	100.0
인사혁신처	1	23,261	22,328	22,148	-	180	99.2
재정경제부	4	38,925	37,833	37,798	-	35	99.9
중소벤처기업부	10	157,959	157,959	157,929	-	30	100.0
질병관리청	4	25,952	27,050	26,196	192	661	96.8
통일부	2	31,475	16,836	261	-	16,575	1.6
해양수산부	34	1,158,545	1,219,171	1,037,116	113,716	48,338	85.1
행정안전부	4	37,712	44,186	38,402	4,691	1,093	86.9
합계	453	15,287,815	17,126,971	16,322,619	358,698	402,370	95.3

주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포함하며, 신규 및 계속사업을 포함
2)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 집행부처의 소관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5) 2025년도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 현황

기획예산처는 2025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①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 규모로 증가한 12개 사업(제1호), ②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1개 사업(제2호), ③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 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9개 사업(제3호)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였음.

[2025년 타당성재조사 시행 사업 목록[1)2)]]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타당성재조사 요건 (「총사업비 관리지침」)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 (제6공학관 개축)	314	제49조제1항제1호
국토부	국지도 광주건업-여주상품 도로건설공사	497	제49조제1항제1호
	광주 남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450	제49조제1항제1호
	세종스마트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사업	493	제49조제1항제1호
	구미3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184	제49조제1항제1호
기후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493	제49조제1항제1호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99	제49조제1항제1호 등
	국가하천정비 (금호강 동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593	제49조제1항제1호
문체부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605	제49조제1항제1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대전)	453	제49조제1항제1호
질병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450	제49조제1항제1호
해수부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구축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	1,589	제49조제1항제1호
행안부	접경권 발전지원 (지방도372호선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1,325	제49조제1항제2호
국토부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공사	2,548	제49조제1항제3호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1,730	제49조제1항제3호
	고속국도 수도권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공사	14,875	제49조제1항제3호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2,018	제49조제1항제3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433	제49조제1항제3호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안산 확장공사	10,002	제49조제1항제3호
	황령3터널 혼잡도로 개설공사	3,696	제49조제1항제3호
해수부	부산항 신항만(1단계) (송도 개발사업)	1,639	제49조제1항제3호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사업)	225	제49조제1항제3호

주 1) 2024년에 재조사가 시작되었거나, 2024년에 재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2)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 집행부처의 소관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한편 기획예산처는 2025년에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에 따라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였음.

[2025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 사업 목록[1)2)]]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요구기준, 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 * R&D 사업	4,2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 R&D 사업	2,451
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신축	917
국토교통부	석문산단 인입철도	17,692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11,828
국토교통부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5,891
국토교통부	전라선 전주역 시설개량	901
국토교통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 3건	41,527
국회, 행복청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47,753
기후환경에너지부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75
기후환경에너지부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하천환경정비사업	2,863
기후환경에너지부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76
기후환경에너지부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	356
기후환경에너지부	평동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70
기후환경에너지부	소양강댐 안정성강화 사업	2,385
기후환경에너지부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정비사업	818
기후환경에너지부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659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767
법무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사업	1,790
보건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보건분야)	496
우주항공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 R&D 사업	23,112
해양수산부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2단계)	911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6,614

주 1)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 집행부처의 소관으로 함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선정 시점 기준, R&D 사업 포함
자료: 기획예산처

나. 검토의견

(1)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대규모 예산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이 부진할 경우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2025년도 집행률이 50.0% 이하인 집행 부진 사업은 총 40개로, 소관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교육부 1개, 국토교통부 14개, 기후에너지환경부 5개, 농림축산식품부 1개, 대법원 2개, 법무부 2개, 산업부 1개, 재정경제부 2개, 통일부 2개, 해양수산부 9개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2025년도 집행 부진 사업(집행률 50% 이하)]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계획		2025년도 결산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과기정통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2023~2029	61,245	4,000	5,012	1,149	3,712	151	22.9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2022~2029	443,575	25,430	25,430	-	25,430	-	-
국토부	새만금신항인입철도	2023~2033	1,585,941	5,400	5,400	-	-	5,400	-
	수색~광명 고속철도	2023~2034	3,233,020	2,500	2,500	-	-	2,500	-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2009~2027	1,401,460	5,500	5,500	-	-	-	-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2024~2034	918,947	1,000	1,000	-	-	1,000	-
	백령도 소형공항	2023~2029	201,800	3,095	3,095	-	-	3,095	-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2025~2035	3,787,939	2,774	2,774	184	2,108	482	6.6
	완도-강진 고속도로건설공사	2025~2034	1,584,859	3,663	3,663	1,779	1,718	166	48.6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계획		2025년도 결산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2024~2030	2,699,585	66,653	66,653	-	200	66,453	-
	신도시 리츠(기금 출자)	2025~2035	계속사업	2,500	2,500	-	-	2,500	-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이설확장	2025~2033	884,300	500	500	-	500	-	-
	석문산단인입철도	2022~2026	1,071,918	1,000	1,000	-	-	1,000	-
	남부내륙철도	2020~2031	6,818,859	68,863	68,863	-	-	68,863	-
	충북선 고속화	2020~2031	2,129,123	9,900	9,900	-	-	9,900	-
	새만금신공항건설	2020~2028	826,782	63,186	94,204	41,987	7,200	45,017	44.6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2012~2027	183,311	2,955	10	1	-	9	10.0
기후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2022~2028	76,697	2,000	2,000	-	-	2,000	-
	하수처리장 설치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2020~2027	84,900	1,592	-	-	-	-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인천))	2021~2027	54,574	2,167	4,154	1,987	-	2,167	47.8
	하수처리장 설치 (광주 제1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023~2028	133,368	4,950	-	-	-	-	-
	하수처리장 설치 (울산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2023~2027	61,400	1,813	100	-	-	100	-
농림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	2023~2029	59,267	1,000	1,788	380	1,000	408	21.3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2020~2029	190,919	1,000	840	402	423	15	47.9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2023~2028	127,827	1	-	-	-	-	-
법무부	서울검찰청사 신축	2021~2027	85,239	1	48	15	17	16	31.3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2020~2027	114,329	953	196	77	8	111	39.3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계획		2025년도 결산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산업부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2025~2035	302,600	5,000	5,000	800	-	4,200	16.0
재경부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2025~2030	92,312	714	-	-	-	-	-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2025~2030	48,019	512	-	-	-	-	-
통일부	DMZ 평화적 이용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2026~2028	249,700	3,437	3,437	-	-	3,437	-
	경협기반(무상)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2015~2028	179,111	28,038	13,399	261	-	13,138	1.9
해수부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2018~2030	195,345	42,931	38,888	16,341	7,556	14,991	42.0
	인천신항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2025~2029	294,948	500	500	-	500	-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	1992~2025	1,219,640	9,180	11,841	3,998	25	7,818	33.8
	새만금 신항 (방파제(연장))	2021~2028	77,536	37,041	813	42	731	40	5.2
	동해신항 (석탄부두)	2023~2031	138,660	2,410	2,410	1	2,409	-	0.1
	군장항(2단계)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2023~2028	547,670	104,898	74,451	7,871	47,930	18,650	10.6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2023~2032	218,406	14,103	203	19	184	-	9.4
	국가어항 (국동항 건설)	2024~2030	155,214	2,396	2,625	1,164	-	1,461	44.3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2021~2027	210,972	812	1,020	328	38	654	32.2

주)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 집행부처의 소관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주로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나타났음. 특히 총사업비 조정 절차 지연·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 수립 지연 문제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았음.

[집행 부진 사유]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집행 부진 사유
과기정통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총사업비 조정 및 계약체결 지연
국토부	새만금신항인입철도	기본설계 발주를 위한 행정기간 소요
	수색~광명 고속철도	관계기관 추가협의 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순연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기본설계 발주를 위한 행정기간 소요 등
	백령도 소형공항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2024.11.~)
국토부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 진행 중(2025.11.~)
	완도-강진 고속도로건설공사	타당성 용역 진행 중(2025.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협의 및 민항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예산집행 부진
	신도시 리츠(기금 출자)	사업추진방향 재검토에 따른 집행부진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이설확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총사업비 협의
	석문산단인입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중(2025.7.~)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에 따른 사업추진 순연
	충북선 고속화	노선변경 민원에 따른 기본설계 지연으로 집행 한계
	새만금신공항건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후속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 순연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2025.2~)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집행 부진 사유
기후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행정절차 지연
	하수처리장 설치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추진 지연으로 미집행 예상되어 예산 감액 조정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인천))	행정절차 지연 및 실집행 부진
	하수처리장 설치 (광주 제1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설계 지연으로 미집행 예상되어 예산 감액 조정
	하수처리장 설치 (울산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
농림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	설계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오염토 발견으로 정화비용 반영을 위한 사업 중단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부지 교환 계약 지연으로 인한 사업 중단
법무부	서울검찰청사 신축	토양 조사 진행 중(정화 범위 확정 후 사업 추진)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산업부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예산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집행 예산 조정(42억원 불용)
통일부	DMZ 평화적 이용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북한의 미호응으로 인하여 사업 미착수
	경협기반(무상)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북한 핵실험(2016.1.)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장공사 중단
해수부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로 공사 발주 및 착공 순연
	인천신항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건설지원협약(인천지방해양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미체결에 따른 사업 순연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집행 부진 사유
해수부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	일괄입찰 계약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이월 및 불용 발생
	새만금 신항 (방파제(연장))	총사업비 협의기간 장기 소요 및 입찰·계약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 발생
	동해신항 (석탄부두)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로 공사 발주가 순연
	군장항(2단계)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일괄입찰 계약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이월 및 불용 발생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일괄입찰 계약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이월 발생
	국가어항 (국동항 건설)	일괄입찰 절차 이행, 총사업비 협의 등 기간 소요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용역사 채무불이행에 따른 준공금 법원 공탁 기간소요로 이월

주)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 집행부처의 소관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해당 사업들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될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취지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개별법률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대규모 공공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을 보면 면제 비율은 2021년 40.3%에서 2022년 43.3%, 2023년 50.9%, 2024년 68.4%으로 상승하였다가 2025년의 경우에는 54.3%로 하락하였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단위: 건, %)

연도	조사대상	예타면제 요구 사업 수(A)	예타면제 선정 사업 수(B)	면제 비율(B/A)
2021	57	77	31	40.3
2022	49	60	26	43.3
2023	39	55	28	50.9
2024	28	57	39	68.4
2025	50	70	38	54.3

주) “조사대상”은 해당 연도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종료된 사업의 수를, “예타면제 요구 사업 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 연도별 면제신청 사업의 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최근 5년간 면제사업 수를 면제 사유별로 보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를 사유로 면제한 사업 수가 총 51건(31.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10호를 사유로 면제한 사업 수가 각각 36건(22.2%)으로 나타남.

[2021~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합계
2021	건수	7	-	2	-	1	3	-	11	3	4	31
	(비중)	(22.6)	-	(6.5)	-	(3.2)	(9.7)	-	(35.5)	(9.7)	(12.9)	(100.0)
2022	건수	6	-	6	-	-	1	4	7	1	1	26
	(비중)	(23.1)	-	(23.1)	-	-	(3.8)	(15.4)	(26.9)	(3.8)	(3.8)	(100.0)
2023	건수	8	-	2	-	1	-	-	7	4	6	28
	(비중)	(28.6)	-	(7.1)	-	(3.6)	-	-	(25.0)	(14.3)	(21.4)	(100.0)
2024	건수	10	-	-	-	-	-	3	14	4	8	39
	(비중)	(25.6)	-	-	-	-	-	(7.7)	(35.9)	(10.3)	(20.5)	(100.0)
2025	건수	5	-	1	-	-	-	-	12	3	17	38
	(비중)	(13.2)	-	(2.6)	-	-	-	-	(31.6)	(7.9)	(44.7)	(100.0)
합계	건수	36	-	11	-	2	4	7	51	15	36	162
	(비중)	(22.2)	-	(6.8)	-	(1.2)	(2.5)	(4.3)	(31.5)	(9.3)	(22.2)	(100.0)

주) 예타면제 신청 시점 기준, 과기부 이관 사업 포함
자료: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임. 연도별 면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1건(35.5%), 2022년 7건(26.9%), 2023년 7건(25.0%), 2024년 14건(35.9%), 2025년 12건(31.6%)으로 2023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임. 연도별 면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건(22.6%), 2022년 6건(23.1%), 2023년 8건(28.6%), 2024년 10건(25.6%)에서 2025년 5건(13.2%)으로 감소하였음.

한편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1년 4건(12.9%)에서 2022년 1건(3.8%)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6건(21.4%), 2024년 8건(20.5%), 2025년 17건(44.7%)로 최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목록]

(단위: 억원)

부처명	사업명	총사업비	면제사유
경찰청	경기남부 성남중원경찰서 신축	942	제1호
경찰청	서울 노원경찰서 재건축	765	제1호
과기부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10,000	제10호
과기부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10,000	제10호
과기부, 산업부	AX 실증 밸리 조성(R&D)	6,000	제10호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R&D)	5,510	제10호
과기부, 복지부, 농식품부, 기후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5,475	제10호
교육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32,547	제10호
국토부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기금융자)	1,000	제9호
기후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사업	6,475	제8호
기후부	용인 그린 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3,867	제8호
기후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	3,622	제8호
기후부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3,428	제8호
기후부	화성오산물재이용 민간투자사업	3,185	제8호
기후부	포천시 에코 콤플렉스 조성사업	2,600	제8호
기후부	천안시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781	제8호
기후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1,535	제8호
기후부	이천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83	제8호
기후부	시흥스마트 허브 하수관로 정비(2권역) 임대형민간 투자사업(BTL)	729	제8호
기후부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	10,515	제9호
농식품부	국가 농업 AX 플랫폼	1,490	제9호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8,516	제10호
문체부	청년 문화예술 패스	2,494	제10호
법무부	의정부지검 이전 신축사업	1,156	제1호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7,818	제10호
산업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9,973	제10호
산업부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15,363	제10호
산업부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10,029	제10호
산업부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2,695	제10호
산업부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2,053	제10호
산업부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1,400	제10호
우주항공청	다목적 실용위성8호 개발(R&D)	7,581	제3호
재경부	경주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1,615	제8호
재경부	공주시 환경시설 통합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1,614	제8호
재경부	부천통합청사 신축	780	제1호
재경부	주멕시코(대) 통합청사 신축	848	제1호
해수부, 산업부	AI 완전자율 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6,035	제10호
해수부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1,920	제10호

주) 과기부 이관 사업 포함

자료: 기획예산처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를 근거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례 중에는 법령상 사업 추진 근거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의무 규정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사례가 발견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법적 근거로 제시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4조는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내용인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두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12)]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근거로 제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책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내용인 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규정을 두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13)]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근거로 제시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내용인 종교

---

1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규정을 두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14]

이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7조[15],「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9조[16] 등에서「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직접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음.

[법률상 사업 수행을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가재정법」에 따른 면제사유	2025년도 결산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기후부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제38조제2항제8호(「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추진)	748	748	748	-	-	100.0

14)「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6)「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가재정법」에 따른 면제사유	2025년도 결산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기후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제38조제2항제8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제30조에 따라 추진)	24,051	24,051	20,569	-	3,482	85.5
기후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처분검사건물 신축)	제38조제2항제8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제30조에 따라 추진)	2,066	302	302	-	-	100.0
기후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3단계 처분시설 건설)	제38조제2항제8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제30조에 따라 추진)	3,480	2,414	2,409	-	5	99.8
문체부	종교문화시설 건립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제38조제2항제8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추진)	3,000	3,000	3,000	-	-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한정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제가 남용됨으로써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등 정비 지연

정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등의 정비를 지체하였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국회는 2026년 1월 29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은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관련 하위법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일례로 정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른 법령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개정법률 시행일이 3개월이 지난 2026년 5월 14일에야 공고한 것으로 파악됨.[17][18][19]

---

17)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02호, 입법예고기간: 2026. 5. 14. ~ 2026. 6. 23.

18) 해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함. 2026년 6월말 현재까지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는 삭제되지 않음.

19) 「국가재정법 시행령」[시행 2026.5.6.] [대통령령 제36312호, 2026.5.6., 일부개정]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3.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8.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국가재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등의 정비를 지체하는 정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임.

첫째, 상위법률인 「국가재정법」에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명시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하위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관련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어 법령간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부처와 연구 현장에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둘째, 국회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한 취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그럼에도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지연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셋째,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및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법률을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때 정비할 헌법적·법률적 의무가 있음.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입법예고를 하고 2026년 6월말 현재까지도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작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음.[20][21]

따라서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라는 헌법적·법률적 작위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에 부합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및 하위규정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임.[22][23]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21)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 · 개정 ·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 또한 정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는 법률에 대비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 단계부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동시에 착수하도록 정부 내부의 행법입법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23)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부작용 완화방안의 경우 총괄보고서 중 “국가 R&D 사업”

(4) 법률의 위임 없이 훈령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단위를 규정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타 대상사업의 단위를 세부사업과 일부 내역사업으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향후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등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사업 단위에 관해서는 정한 바 없음.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예산처훈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24)]

이 지침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나 내역사업의 하위인 내내역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예산안이 편성될 우려가 있음.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단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획예산처훈령에서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사업단위를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부분을 참조할 것

2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 부적절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한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25)26)]

이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경우에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지향적인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전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규정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예산편성 사례들이 발견됨.[27)]

따라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한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임.

---

2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7)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 페이지 이하에서 각각의 사업별로 분석하였음.

(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산업통상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은 향후 10~20년 내 도래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28]을 확보하기 위해 10대 판기술 연구테마의 도전·혁신형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원 중 8억원을 집행(집행률 16.0%)하고 42억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5,000	5,000	-	-	5,000	800	-	4,200	4,03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동 사업과 같이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통상부와 재정당국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5년 11월 적정성 검토 결과 1차년도 총사업비가 8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42억원이 불용되었음.[29]

산업통상부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고 재정당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편성된 예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간의 괴리로 인해 관련 예산이 불용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음.[30]

---

28)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판기술’은 신시장 창출 또는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으로 우리 산업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기술·제품·서비스를 의미함.

29)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은 당초 2025~2034년(10년)에서 2025~2035년(11년)으로 조정되고 총사업비도 원안 대비 축소된 3,026억원(국고 2,726억원, 민간 300억원) 규모의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1차년도는 테마 발굴 및 기획 중심으로 추진하고 2차년도부터 테마별 연구를 착수하는 방식으로 조정됨.

30)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당해연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질병관리청)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비임상 및 임상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mRNA 백신[31]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53억 8,700만원 중 169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9%)되고 84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25,387	25,387	-	-	25,387	16,986	-	8,401	26,44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동 사업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수행되었고, 과제 단가 감액 및 기획평가 관리비 감액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액 중 일부를 불용 처리한 것에 기인함.

[2025년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R&D)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실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비임상 연구개발활동비등	23,333	15,709	7,624	32.7
임상1상 연구개발활동비등	1,313	876	437	33.3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741	384	357	48.2
합 계	25,387	16,969	8,418	33.1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관련 사업비를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사업비 상당 부분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1) mRNA(mRNA: messenger ribonucleic acid, 메신저 리보핵산)는 우리 몸의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지시하는 유전 물질(설계도)이고,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담은 설계도를 인체에 주입하여 세포 스스로 항원(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게 하고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임.

(6)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집행 문제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후 다른 사업으로 해당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거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정성 재검토 결과와는 다른 집행을 유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총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중장기 재정소요 및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후 다른 사업으로 해당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거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정성 재검토 결과와는 다른 집행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됨.[32] 이러한 집행은 한정된 국가 재정의 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가) 세종-청주고속도로 및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교통부)

2025년 결산 기준,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성된 당초 예산 전액을 합한 총 1,713억 4,500만원[33]이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으로 조정(감)되었으며, 이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체 예산(8,378억 8,600만원)의 20.4%에 해당하는 금액임.

[2025년도 고속도로건설 단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속도로건설	1,030,308	837,886	-	-	837,886	827,854	10,032	-	982,247
세종-청주 고속도로건설	119,867	119,867	-	△119,867	-	-	-	-	102,314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	51,478	51,478	-	△51,478	-	-	-	-	28,22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2) 구체적인 사례들은 이하에서 각각의 사업별로 분석하였음.

33)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사업 1,198억 6,700만원(전액),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514억 7,800만원(전액)

해당 고속도로 건설사업들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사업 추진이 원활한 다른 사업으로 조정한 것으로, 예산 불용 최소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위 사례와 같이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별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 규모 간 상당한 간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예산 통제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임.[34]

(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2년 K-Medi 융합인재 양성(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 후 2024년 사업명과 내역사업 등을 재편하여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8,066억 5,000만원) 대비 36.1% 감액된 5,153억 5,000만원으로,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의 리더 단계,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사업,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운영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약 40~70% 감액되었음.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 조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당초 계획(A)	재검토 결과(B)	증감 (B-A)	증감률 ((B-A)/A)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	신진 단계	1,116	1,116	-	-
	심화 단계	924	1,284	360	39.0
	리더 단계	1,665	990	△675	△40.5
	소 계	3,705	3,390	△315	△8.5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534	249	△285	△53.4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사업		3,415.5	1,387.5	△2,025	△59.3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운영 사업		415	127	△288	△69.4
합 계		8,066.5	5,153.5	△2,913	△36.1

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기간은 2024~2032년으로 당초 계획과 동일함
자료: 보건복지부

34) 특히 해당 건설사업 조정(감) 시기가 2025년 2월 17일로 연초부터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는 2025년 사업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2024년 하반기 또는 연말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 적정 규모만큼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됨.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이미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 명시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개발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부적정 사업의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72억원, 2025년 412억원이 집행되었고 2026년 532억 3,400만원, 2027년 544억원, 2028년 520억원, 2029년 260억원 등 총 2,440억 3,4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임.

이러한 집행은 한정된 국가 재정의 낭비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이러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도출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는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성과관리제도

가. 개 요

(1) 의의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크게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분됨.

먼저 성과목표관리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기금관리주체를 포함함. 이하 같음) 별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2]

성과계획서는 각 중앙관서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각 중앙관서는 예산안 편성 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게 됨. 성과보고서는 각 중앙관서가 성과계획서에서 미리 설정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점검·분석한 보고서로, 사업의 주요내용·성과지표별 달성현황·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함.

문의: 02-6788-5685

---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목표관리 구조]

성과계획 수립(y-1년)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 환류

자료: 기획예산처,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2026.1.

다음으로 성과평가는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를 의미하며, 특정 사업군에 대해 연관성이 큰 부처가 주관하여 평가하는 방식과 정부 내에서 예산안 편성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주관하여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됨.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2026년 기준)]

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 성과평가
❶ 성과계획서 - 차년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목표 설정 ※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❷ 성과보고서 - 전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흡원인 등 보고 ※ 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회 제출	❶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성과 등을 중립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 ❷ 개별부처 주관 평가 - 복권기금평가(기획처), R&D평가(과기부), 재난안전사업평가(행안부), 균형발전사업평가(지방위), 일자리사업평가(노동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❸ 보조사업 연장평가 - 보조사업 실효성 등 평가(2016~) ※ 평가결과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❹ 재정사업 심층평가 - 객관적 성과검증 필요 사업군 심층분석(2005~) ❺ 기금평가 - 기금 운용 및 존치 타당성 평가(2000~) ※ 평가결과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 제출

자료: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6.5.

(2) 2025년 성과목표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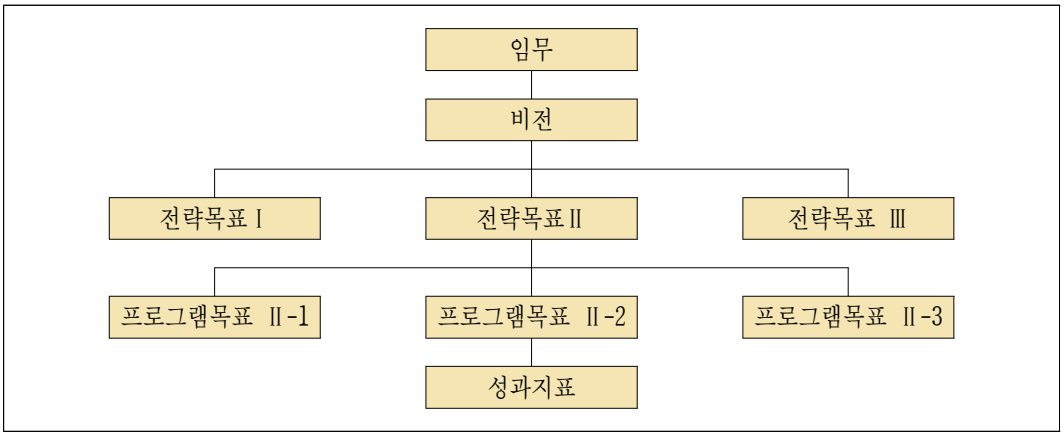
(가)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는 각 중앙관서가 다음 회계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및 목표치 등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85조의7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와 함께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임[3)]

성과목표는 임무 – 비전 – 전략목표 – 프로그램목표 – 성과지표의 단계로 이루어짐.

임무는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함.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목표는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고,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가 됨.

[성과목표 체계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4.9.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2021년까지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2022년부터

3)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는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

202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60개 중앙관서이며 전략목표 192개, 프로그램목표 488개가 설정되었음.

[2025년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현황]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5(a)	60	192	488
2024(b)	60	187	476
증감(a-b)	-	5	12

주) 예산 기준(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4.9.

프로그램목표 488개의 성과지표는 총 529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으며 우주항공청 개청 등으로 2024년도에 비해 지표 수가 20개 증가하였음.

성과지표의 성격별로 구분하면 투입지표 15개(2.8%), 과정지표 17개(3.2%), 산출지표 137개(25.9%), 결과지표 360개(68.1%)로 구성되었고,[4] 측정방법으로 구분하면 정량지표 412개(77.9%), 정성지표 117개(22.1%)로 구성되었음.[5]

4)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으로 구분됨.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 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4.9.

5) 성과지표는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라 정량·정성지표로 구분됨.

[2025년도 유형별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회계연도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량	정성
2025	488	529	15	17	137	360	412	117
		(100.0)	(2.8)	(3.2)	(25.9)	(68.1)	(77.9)	(22.1)
2024	476	509	18	12	119	360	386	123
		(100.0)	(3.5)	(2.4)	(23.4)	(70.7)	(75.8)	(24.2)

주) 예산 기준(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4.9.

2025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76조 4,797억원 중 성과관리대상은 389조 5,914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6%이었음.

[2025년도 성과관리대상 사업 현황]

(단위: 억원)

회계연도	총지출(A)	성과관리대상 사업 금액(B)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비율(B/A)
2025(a)	6,764,797	3,895,914	57.6%
2024(b)	6,557,261	3,762,267	57.4%
증감(a-b)	207,536	133,612	0.2%p

주) 예산 기준(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4.9.

(나)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는 각 중앙관서가 회계연도 종료 후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분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결산보고서의 구성서류임.[6)]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반영
사례	우량농지조성면적, 해외건설 수주액, 관광수입액 증가율, 인구 10만명 당 5대 범죄 발생률	민원인 만족도,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정도,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4.9.

각 중앙관서는 성과보고서에 사업의 주요내용, 성과지표별 목표치와 실적치, 목표 달성 여부, 미달성 원인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을 기재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종합하여 정부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분석, 차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있음.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함께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한 핵심적인 환류수단으로 기능하며,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재정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

2025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기관은 총 61개 중앙관서로 전략목표 195개, 프로그램목표 499개, 성과지표 539개(중장기 지표 2개 제외)로 구성됨.[7)]

기관별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 총 539개 중 442개(82.0%)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97개(18.0%)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지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헌법재판소 등 24개 기관이며, 미달성 기관은 총 37개 기관임. 미달성 기관의 목표달성률은 64.8%로 전체 목표달성률 82.0%에 비해 17.2%p 낮은 수준이며, 목표 미달기관 중 달성률이 50% 이하인 기관은 감사원, 법제처 등 8개 기관임.

[2025회계연도 중앙관서별 프로그램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 목표	프로그램목표					
		목표수	성과 지표수 (A)	달성 (B)	초과 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 총 계 〉	195	499	539	391	51	82.0%	97.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1	2	2	0	100%	100%
대통령경호처	1	1	1	1	0	100%	100%

6)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 3. (생 략)
4. 성과보고서

7) 2025년도 성과계획서는 작성대상 60개 중앙관서, 전략목표 192개, 프로그램목표 488개, 성과지표 529개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별 업무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일부 부처의 전략목표 등이 변동됨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작성대상 61개 중앙관서, 전략목표 195개, 프로그램목표 499개, 성과지표 539개로 구성됨.
구체적인 변동내용은 기획재정부(성과지표 1개 증가), 교육부(프로그램목표 1개, 성과지표 1개 증가), 산업통상부(프로그램목표 3개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전략목표 1개, 프로그램목표 8개, 성과지표 8개 증가), [신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략목표 2개, 프로그램목표 5개, 성과지표 5개) 등임.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 목표	프로그램목표					
		목표수	성과 지표수 (A)	달성 (B)	초과 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국회	2	6	7	6	1	100%	100%
대법원	2	2	2	2	0	100%	100%
헌법재판소	1	1	1	1	0	100%	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	**2**	**1**	**0**	**50%**	**97.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2	3	2	0	66.7%	94.5%
감사원	**1**	**1**	**2**	**0**	**0**	**0%**	**62.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1	2	2	0	100%	100%
기획재정부	4	16	18	9	4	72.2%	90.8%
교육부	4	21	22	18	0	81.8%	9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34	34	23	7	88.2%	98.3%
외교부	6	12	16	16	0	100%	100%
통일부	2	8	8	3	4	87.5%	99.7%
법무부	5	9	9	7	1	88.9%	99.8%
국방부	5	10	13	11	0	84.6%	99.9%
행정안전부	6	16	17	14	0	82.4%	99.7%
국가보훈부	5	9	12	10	0	83.3%	97.4%
문화체육관광부	6	33	34	19	6	73.5%	98.6%
농림축산식품부	5	16	17	15	1	94.1%	99.9%
산업통상부	6	21	23	20	2	95.7%	100.0%
보건복지부	4	25	25	16	2	72%	99.4%
기후에너지환경부	7	24	24	23	0	95.8%	99.7%
고용노동부	4	9	9	6	0	66.7%	99%
성평등가족부	4	5	5	4	1	100%	100%
국토교통부	6	32	32	17	3	62.5%	86.6%
해양수산부	3	13	14	12	2	100%	100%
중소벤처기업부	5	11	13	8	5	100%	100%
인사혁신처	5	7	8	6	0	75%	99.1%
법제처	**1**	**1**	**1**	**0**	**0**	**0%**	**99.8%**
식품의약품안전처	5	10	10	10	0	100%	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1	1	0	100%	100%
국가인권위원회	**1**	**1**	**2**	**1**	**0**	**50%**	**73.3%**
국가교육위원회	1	1	1	0	1	100%	100%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 목표	프로그램목표					
		목표수	성과 지표수 (A)	달성 (B)	초과 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방송통신위원회	2	4	4	4	0	100%	100%
공정거래위원회	3	4	5	3	0	60%	98.0%
금융위원회	4	11	15	7	3	66.7%	97.6%
국민권익위원회	**1**	**1**	**1**	**0**	**0**	**0%**	**96.9%**
원자력안전위원회	2	3	3	2	0	66.7%	98.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3	3	3	0	100%	100%
국세청	5	6	8	7	0	87.5%	98.5%
관세청	4	6	6	6	0	100%	100%
조달청	**1**	**2**	**3**	**1**	**0**	**33.3%**	**96.3%**
국가데이터처	3	5	5	5	0	100%	100%
우주항공청	6	10	10	8	1	90%	99.6%
재외동포청	1	2	3	1	2	100%	100%
병무청	4	4	5	5	0	100%	100%
방위사업청	3	7	7	4	0	57.1%	98.8%
경찰청	4	10	12	7	0	58.3%	99.1%
소방청	1	1	1	1	0	100%	100%
국가유산청	3	7	7	4	1	71.4%	99.4%
농촌진흥청	2	7	7	6	1	100%	100%
산림청	5	7	7	6	0	85.7%	85.7%
지식재산처	2	5	5	5	0	100%	100%
질병관리청	4	9	9	7	0	77.8%	99.1%
기상청	4	7	7	3	1	57.1%	9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	2	2	0	100%	100%
새만금개발청	**3**	**3**	**3**	**1**	**0**	**33.3%**	**70.5%**
해양경찰청	5	5	5	3	1	80%	99.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0**	**0**	**0%**	**89.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5	5	4	1	100%	1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3) 202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가) 주요 개편내용

기획예산처는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8]에서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와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하였음.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가 직접 총괄·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한 것임. 종전에는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또한 평가결과를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등으로 유형화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2026년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구분	(~2025년) 부처별 자체평가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방식	▪ 각 부처가 소관사업 자체평가	▪ 재정당국이 전부처 사업 직접평가
평가단	▪ 각 부처 주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부처별 5인 이상, 1/2이상 민간위원 ▪ 소관부처 공무원 및 해당분야 연구원·교수 중심	▪ 기획처가 통합평가단* 일괄 구성 * 15개 분야, 총 153명 (보조사업평가 통합 실시를 위한 평가위원 약 30명 포함) ▪ 민간전문가 중심, 시민사회 포함 (기획처+개별평가 주관부처 참여)
평가대상	▪ 총 1,855개 사업 ▪ 타부처 개별평가 대상* 제외 * 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532개)	▪ 총 2,487개 사업 ▪ 부처별 자체평가 + 타부처 개별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 + 복권기금평가(공익지원) 포함
평가 통합·연계	▪ 평가 주관부처(행안부·고용부·중기부·지방위)에서 평가별 각각 실시	▪ 보조평가·복권기금(공익지원)·균형발전(부처직접편성) 통합 실시 ▪ 재난안전·일자리·중소기업평가는 평가연계, 정책성 평가로 차별화

8) 「국가재정법」 제85조의4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구분	(~2025년) 부처별 자체평가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항목	▪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위주	▪ 재정지원 타당성·계획·집행·성과 등 실질적 내용 평가
평가등급	▪ 보통 / 우수 / 미흡	▪ 정상추진(우수포함) / 사업개선 / 감액 / 폐지·통합
환류 (지출구조조정)	▪ 부처별 자체 지출구조조정 계획 반영 ▪ 우수사업 별도 인센티브 없음	▪ 평가결과 부처 통보(감액등급 개별사업 △15%이상) → 부처별 예산요구안 반영 ▪ 우수사업은 증액권고, 담당자 포상, 차년도 평가유예
평가결과 공개	▪ 열린재정에 일부 공개(5월) - 사업별 평가등급 -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계획 (부처별 예산요구안 반영계획) ※ 평가보고서(원문) 미공개	▪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6월) -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조조정 실적(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 평가보고서(원문) 공개(6월), 미반영 사유서 공개(9월)

자료: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6.5.

이와 함께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3년 주기로 실시하던 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심층평가의 경우 다부처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신규·시범사업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편하였음. 기금평가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함께 기금의 공공성과 정책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음.

(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기획예산처는 2026년 5월 2025회계연도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확정·발표하였음.

평가는 기존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 외에 보조사업 연장평가, 복권기금 공익사업 평가 및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을 통합하여 총 2,487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평가 항목은 재정사업 필요성·사업계획·집행 적정성 및 재정지원 성과 등 4개 항목이며, 평가 등급은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 등 5개임.[9)]

9)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정상추진 89개(3.6%), 사업개선 1,497개(60.2%)로 평가되었고, 36.2%에 해당하는 901개 사업이 감액 또는 폐지·통합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고려사항
1. 재정사업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 여부
	재정지원 필요성	■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예산 외의 정책수단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민간·지자체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유사중복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내용이 정책목표·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국가정책과제 등 핵심정책 및 부문별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되었는지 고려
	지원규모 적정성	■ 직·간접 수혜자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집행 적정성	■ 실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3. 집행 효율성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부정수급 등 관리	■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후속조치 등 부정수급 관리 여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수행, 실적보고, 공시, 감사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환류 및 개선노력	■ 외부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성과 달성도·우수성	■ 당초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 그 외 사회경제적 정책 및 가치에 대한 기여, 국민 체감도·만족도 높은 사업 등 성과의 우수성이 관련 통계를 포함해 근거자료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 ■ 정보화·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지원사업은 특성화항목 함께 고려

자료: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6.5.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등급]

평가결과	내용
① 정상추진	■ 사업 효과성·정책적 중요성 인정 등으로 지속 지원 필요
② 사업개선	■ 내역사업별 통합, 성과지표·추진체계 조정, 비목전환 등
③ 감액	■ 성과저조·집행부진 등으로 예산 규모 감액 필요
④ 폐지	■ 차년도 예산 반영 불가, 유사·중복 등으로 사업 폐지
⑤ 통합	■ 유사·중복 등으로 관련 사업과 통합

자료: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6.5.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구분	2026년 평가대상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	구조조정 대상
사업수	2,487	89	1,497	858	3	40	901
예산액	1,854,354	57,763	1,245,192	509,567	145	41,688	551,400

자료: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6.5.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 감액 대상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7년도 예산요구 시 2026년도 예산 대비 원칙적으로 15% 이상 감액하여 요구하도록 하였고, 사업개선으로 평가된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6월 중 성과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음.

또한 감액·폐지사업은 각 부처 세부사업 단위에서 지출구조조정(감액사업 15%, 폐지사업 100%)을 실시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직접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개·소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부처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구분		2026년 평가대상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	구조조정 대상
국회	사업수	14	-	10	4	-	-	4
	예산액	2,135	-	1,825	309	-	-	309
대법원	사업수	14	-	13	1	-	-	1
	예산액	2,842	-	2,763	79	-	-	79
헌법 재판소	사업수	1	1	-	-	-	-	-
	예산액	84	84	-	-	-	-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사업수	3	-	3	-	-	-	-
	예산액	178	-	178	-	-	-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수	3	-	3	-	-	-	-
	예산액	135	-	135	-	-	-	-
감사원	사업수	1	-	1	-	-	-	-
	예산액	151	-	151	-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업수	5	-	3	2	-	-	2
	예산액	195	-	28	166	-	-	166
재정경제부	사업수	15	-	11	4	-	-	4

(단위: 개, 억원)

구분		2026년 평가대상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	구조조정 대상
	예산액	23,096	-	22,677	419	-	-	4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사업수	139	5	68	59	1	6	66
	예산액	52,887	321	18,108	12,097	46	22,316	34,458
교육부	사업수	86	-	61	23	-	2	25
	예산액	143,874	-	138,432	5,396	-	46	5,441
외교부	사업수	32	-	24	8	-	-	8
	예산액	15,897	-	9,449	6,448	-	-	6,448
통일부	사업수	23	1	17	5	-	-	5
	예산액	11,141	118	1,629	9,394	-	-	9,394
법무부	사업수	45	1	40	4	-	-	4
	예산액	11,810	51	11,182	577	-	-	577
국방부	사업수	109	1	78	30	-	-	30
	예산액	173,865	704	147,942	25,219	-	-	25,219
행정안전부	사업수	98	4	55	39	-	-	39
	예산액	37,606	11,648	22,277	3,682	-	-	3,682
국가보훈부	사업수	43	2	27	13	-	1	14
	예산액	5,135	1,012	2,272	1,809	-	42	1,851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수	175	3	103	69	-	-	69
	예산액	65,427	5,184	36,157	24,086	-	-	24,086
농림축산 식품부	사업수	159	3	108	47	-	1	48
	예산액	137,280	5,295	115,830	16,152	-	3	16,155
산업통상부	사업수	125	4	73	40	-	8	48
	예산액	36,658	733	23,282	12,195	-	448	12,643
보건복지부	사업수	168	7	92	68	-	1	69
	예산액	90,711	1,844	62,171	26,696	-	0	26,696
기후에너지 환경부	사업수	222	6	125	88	-	3	91
	예산액	131,682	1,240	97,874	31,413	-	1,155	32,567
고용노동부	사업수	93	2	60	31	-	-	31
	예산액	103,915	3,282	64,123	36,510	-	-	36,510
성평등가족부	사업수	31	-	25	6	-	-	6
	예산액	13,575	-	13,170	406	-	-	406
국토교통부	사업수	156	9	67	71	1	8	80
	예산액	493,122	9,191	264,194	204,644	64	15,030	219,737
해양수산부	사업수	153	8	93	49	1	2	52

(단위: 개, 억원)

구분		2026년 평가대상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	구조조정 대상
	예산액	49,338	1,146	31,474	16,561	35	122	16,718
중소벤처 기업부	사업수	78	2	41	34	-	1	35
	예산액	132,397	885	96,162	33,848	-	1,502	35,350
인사혁신처	사업수	19	1	13	5	-	-	5
	예산액	10,377	58	4,136	6,183	-	-	6,183
법제처	사업수	1	-	1	-	-	-	-
	예산액	208	-	208	-	-	-	-
식품의약품 안전처	사업수	32	3	25	4	-	-	4
	예산액	3,083	106	2,711	266	-	-	266
국가데이터처	사업수	17	1	10	5	-	1	6
	예산액	2,466	47	1,553	829	-	37	866
지식재산처	사업수	22	-	15	6	-	1	7
	예산액	3,142	-	2,454	517	-	171	688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업수	2	-	1	1	-	-	1
	예산액	147	-	134	13	-	-	13
국가인권 위원회	사업수	1	-	1	-	-	-	-
	예산액	2	-	2	-	-	-	-
국가교육 위원회	사업수	1	-	-	1	-	-	1
	예산액	46	-	-	46	-	-	4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사업수	39	3	17	17	-	2	19
	예산액	2,030	68	1,026	522	-	414	936
공정거래 위원회	사업수	10	-	6	4	-	-	4
	예산액	903	-	808	95	-	-	95
금융위원회	사업수	27	2	15	10	-	-	10
	예산액	12,906	4,797	6,439	1,670	-	-	1,670
국민권익 위원회	사업수	8	-	6	2	-	-	2
	예산액	386	-	341	45	-	-	45
원자력안전 위원회	사업수	6	1	4	1	-	-	1
	예산액	1,411	630	482	299	-	-	299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사업수	6	-	5	-	-	1	1
	예산액	315	-	254	-	-	62	62
국세청	사업수	14	1	10	3	-	-	3
	예산액	2,288	379	1,711	198	-	-	198
관세청	사업수	9	-	6	3	-	-	3

(단위: 개, 억원)

구분		2026년 평가대상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	구조조정 대상
	예산액	1,475	-	460	1,015	-	-	1,015
조달청	사업수	8	-	5	3	-	-	3
	예산액	1,558	-	1,293	265	-	-	265
우주항공청	사업수	4	-	3	1	-	-	1
	예산액	146	-	83	63	-	-	63
재외동포청	사업수	8	1	4	2	-	1	3
	예산액	799	78	595	15	-	111	126
병무청	사업수	4	-	4	-	-	-	-
	예산액	420	-	420	-	-	-	-
방위사업청	사업수	9	1	4	3	-	1	4
	예산액	3,746	53	2,430	1,033	-	230	1,263
경찰청	사업수	34	2	23	9	-	-	9
	예산액	14,028	318	11,681	2,028	-	-	2,028
소방청	사업수	16	-	6	10	-	-	10
	예산액	2,160	-	988	1,171	-	-	1,171
국가유산청	사업수	40	1	23	16	-	-	16
	예산액	10,799	100	4,108	6,591	-	-	6,591
농촌진흥청	사업수	21	-	12	9	-	-	9
	예산액	2,335	-	1,317	1,018	-	-	1,018
산림청	사업수	47	-	22	25	-	-	25
	예산액	19,185	-	6,915	12,270	-	-	12,270
질병관리청	사업수	29	6	18	5	-	-	5
	예산액	9,114	6,772	1,527	816	-	-	816
기상청	사업수	16	1	9	6	-	-	6
	예산액	1,495	204	720	571	-	-	571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사업수	8	5	3	-	-	-	-
	예산액	2,146	1,359	786	-	-	-	-
새만금개발청	사업수	6	-	4	2	-	-	2
	예산액	1,893	-	1,728	164	-	-	164
해양경찰청	사업수	27	1	17	9	-	-	9
	예산액	7,664	55	3,887	3,721	-	-	3,721
기획예산처	사업수	5	-	4	1	-	-	1
	예산액	546	-	510	36	-	-	36

자료: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6.5.

나. 검토의견

(1) 프로그램목표 미달성 기관, 달성률 제고 노력 필요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프로그램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8개 기관은 프로그램목표 달성률이 50% 이하에 그치는 등 일부 기관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감사원은 모든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주요 성과지표의 달성률도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바,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61개 기관 중 프로그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37개 기관이며,[10] 달성률이 50% 이하인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새만금개발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8개 기관임.

[2025회계연도 프로그램목표 달성률 50% 이하인 기관]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목표수	성과지표수 (A)	달성 (B)	초과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	2	1	0	50%	97.9%
감사원	**1**	**1**	**2**	**0**	**0**	**0%**	**62.3%**
법제처	**1**	**1**	**1**	**0**	**0**	**0%**	**99.8%**
국가인권위원회	1	1	2	1	0	50%	73.3%
국민권익위원회	**1**	**1**	**1**	**0**	**0**	**0%**	**96.9%**
조달청	1	2	3	1	0	33.3%	96.3%
새만금개발청	3	3	3	1	0	33.3%	70.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0**	**0**	**0%**	**89.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이 중 감사원,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4개 기관은 프로그램목표 달성률이 0%로 나타났음.

각 기관별 프로그램목표 미달성 원인으로는 [감사원] 경제적 성과 산출이 어려운 감사 다수 실시 및 감사 운영 개선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실적 감소로 목표치 미달, [법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9.26.)로 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중단으

10) 기관별 프로그램목표 달성 현황은 앞의 가. 개요 (2) 2025년 성과목표관리 현황 (나) 성과보고서 참조

로 이용자 만족도 하락,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말 정치 상황 및 2025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이 국가청렴도에 부정적 영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위원회 조사기간 만료(2025.5.26.)로 2,111건의 사건 조사 중지 등으로 파악되었음.

[프로그램목표 달성률 0%인 기관의 성과지표 미달성 원인]

중앙관서명	성과지표			미달성 원인
	지표	달성률		
감사원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억원)	목표	30,000	ㅇ 2025년에는 국민안전 확보, 국민 불편사항 해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안전, 국민불편요인 관련 감사 다수 실시 ㅇ 감사 착수부터 감사결과 시행까지 시차 발생으로 2025년에 실시하였으나 경제적 성과금액에 미산입한 감사 사례 존재
		실적	12,082	
		달성률	40.3	
	공직비리 적발 실적(점)	목표	1,000	ㅇ 사익추구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2025.8.) 등 감사운영 개선에 따른 결과로 추정 - 2024년 대비 2025년 징계·문책 건수(125명 → 150명) 및 통보(비위·인사) 건수(36명 → 89명)는 증가, 고발·수사요청 실적은 감소(154명 → 23명)
		실적	843	
		달성률	8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89.0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 26.)로 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26일간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 만족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 - 화재 전(1.1.~9.26.) 만족도: 89.2점, 화재 이후(10.23.~12.31.) 만족도: 83.1점
		실적	88.8	
		달성률	99.8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도(CPI)(점)	목표	65.0	ㅇ 2024년 말 국내 정치상황의 변동성이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들의 평가에 반영되었고, 2025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실적	63.0	
		달성률	9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사건 종결률(%)	목표	100	ㅇ 2기 위원회 조사기간 만료(2025.5.26.)에 따라 2,111건의 조사 중지사건 발생
		실적	89.9	
		달성률	89.9	

주)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국제평가 기관의 평가자료 중 공공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개별지수를 집계·산출하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S&P 등 공신력 있는 총 9개 기관의 9개 지표 활용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감사원)」·「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법제처)」·「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국민권익위원회)」·「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6.5.

한편 감사원은 프로그램목표 달성률 0%,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62.3%로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61개 기관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

감사원 성과관리체계를 보면, '건전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

강 확립에 기여한다.’ 는 전략목표 아래 ‘체계적인 감사활동 및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한다.’ 는 프로그램목표를 수립・운영하고 있음.

[감사원 성과관리체계]

전략목표 Ⅰ.		건전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명 및 프로그램목표	Ⅰ-1.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체계적인 감사활동 및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한다.
	성과지표	■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단위: 억원)
		■ 공직비리 적발 실적 (단위: 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감사원)」, 2026.5.

성과지표로는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공직비리 적발 실적 2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각의 달성 현황을 보면 ‘공직비리 적발 실적’ 지표의 경우 목표치인 1,000점 대비 843점을 달성(달성률 84.3%)하는 데 그쳤으며,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의 경우에도 목표치인 3조원 대비 1조 2,082억원을 달성(달성률 40.3%)하여 성과지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였음.

[2023~2025 감사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23	2024	2025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억원)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목표	32,000	32,500	30,000
		실적	23,401	19,556	12,082
		달성률	73.1	60.2	40.3
공직비리 적발 실적 (점)	Σ(신분상조치 인원수×가중치)	목표	750	850	1,000
		실적	1,473	1,105	843
		달성률	196.4	130.0	84.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감사원)」, 2026.5.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의 경우 경제적 성과로 산출하기 어려운 안전 및 국민 불편 요인 관련 감사를 다수 실시하여 목표에 미달하였고, ‘공직비리 적발 실적’ 지표는 사익 추구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 시행(2025.8.) 등 감사 운영 개선에 따라 고발・수사요청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감사원이 제시한 감사 환경의 변화와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두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

는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 운영 및 성과를 감시하는 최고 감사기관이 자체 성과 지표를 모두 미달성한 것은 성과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원은 향후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일부 기관은 법정 의무사항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거나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지표, 단순 투입·산출 중심의 지표,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목적과 직접 연계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측정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법정 의무사항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법정기준보다 낮은 목표를 달성한 것을 정책성과로 평가한 문제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청년위원 위촉비율'을 설정하였고, 2025년 목표치 5.0% 대비 실적 5.9%를 달성하여 목표 대비 118%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하였음.

[청년위원 위촉비율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구분	2022	2023	2024	2025
청년위원 위촉비율(%)	청년위원 위촉 수/청년참여 관리대상 정부위 위촉위원 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0
		실적	신규	신규	신규	5.9
		달성률	-	-	-	118.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6.5.

그러나 청년위원 위촉비율 준수는 「청년기본법」 제15조[11]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

11)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법정 의무사항임. 특히 2026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비율 기준은 당초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의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 의무사항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은 성과관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무조정실은 법령상 의무기준율을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위원 위촉비율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여주는 투입지표로서 청년의 참여가 정책 개선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 제안의 정책 반영률, 참여 청년 만족도 등 청년의 정책 참여의 실질적 성과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문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토양개량제) 지원(자율)'** 사업은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램에 속한 보조사업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025년에는 논을 대상으로 규산질 비료 21만 2천톤, 밭·과수원 등을 대상으로 석회질 비료 11만 9천톤을 공급하는 등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논에 투입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밭토양 산도(pH)' 만 설정되어 있음.

[친환경농자재(토양개량제) 지원(자율)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밭토양 산도 (pH)	목표	6.4	6.4	6.4	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 산도 목표 pH 6.5에 근접하도록 설정	전국 농경지 중 토양산도(pH)를 검정한 밭토양의 토양산도 평균
	실적	6.4	6.4	6.4		
	달성도	100.0	100.0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규산질 비료는 토양 산도 조절보다는 유효규산 공급을 통한 벼의 생육 촉진과 병해충 저항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자재임에도,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는 논 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산질 비료 공급 효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논 토양의 유효규산 함량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농촌진흥청의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속한 보조사업으로,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업인 대상 교육·연수 사업임.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의 핵심 역량 향상, 농업 경영 실무 적용도, 또는 교육 수료 후의 생산성 변화 등 실제 농업 현장의 인적 자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현재 성과지표인 '자격증 취득비율'은 일선 농촌지도공무원의 국가자격증 취득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사업의 목적 및 실제 수혜대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격증 취득비율 (%)	목표	89.2	90.25	93.03	96.9	일반 외삽모형 적용	(국가자격취득자/지도공무원수)×100
	실적	96.5	96.5	96.7	97.2		
	달성도	108.2	106.9	103.9	100.3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농업인 교육의 품질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격증 취득비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지표는 사업 수혜자인 농업인의 역량 향상 정도가 아니라 교육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현행 자격증 취득비율 지표를 재검토하고, 교육 이수 농업인의 전문역량 향상도, 교육내용 현장 활용도, 전문자격 취득률 등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단순 투입·산출실적만 측정하여 실제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① 성평등가족부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속한 세부사업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임.

성과지표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률’은 91.0%로, 2025년 목표치 88.0%를 초과달성하였음.

[생리용품 지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률(%)	목표	77	80	88	최근 3년간 평균치(79.6) 등을 감안, 2024년 실적치 반영	(신청인원/지원대상인원)×100
	실적	80.1	87.4	91.0		
	달성도	104.0	109.3	103.4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러나 지원대상 23만 4,015명 중 실제 바우처 이용인원은 17만 6,905명으로, 지원대상 대비 실제 이용률은 75.6% 수준임. 신청률은 2022년 71.2%에서 2025년 91.0%로 상승하였으나, 지원대상 대비 이용률은 2025년 75.6%로 신청률보다 15.4%p 낮게 나타났음.

[2022~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및 이용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원대상 (A)	신청자 수 (B)	신청률 (B/A)	이용인원 (C)	지원대상 대비 이용률(C/A)	미신청자 (A-B)	신청 후 미사용자(B-C)
2022	243,006	173,027	71.2	143,032	58.9	69,979	29,995
2023	237,818	190,603	80.1	162,811	68.5	47,215	27,792
2024	233,358	204,002	87.4	170,767	73.2	29,356	33,235
2025	234,015	212,979	91.0	176,905	75.6	21,036	36,074

주) 지원대상 대비 이용률, 미신청자, 신청 후 미사용자는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자료: 성평등가족부

바우처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성된 바우처가 실제 결제로 이어지지 않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미사용 인원은 2021년 1만 2,269명에서 2025년 3만 6,074명으로 증가하였고, 미사용 인원비율도 2021년 11.0%에서 2025년 16.9%로 상승하였음. 또한 잔액 소멸규모는 같은 기간 10억 2,100만원에서 35억 7,1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2021~2025년 생리용품 바우처 생성액 대비 실제 결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신청인원 (A)	바우처 생성액 (B)	실제 결제액 (=실집행액) (C)	이용인원 (D)	미사용 인원 (E=A-D)	미사용 인원비율 (F=E/A)	잔액 소멸규모 (G=B-C)
2021	111,624	6,736	5,715	99,355	12,269	11.0	1,021
2022	173,027	9,770	7,848	143,032	29,995	17.3	1,922
2023	190,603	13,256	10,514	162,811	27,792	14.6	2,742
2024	204,002	14,040	11,247	170,767	33,235	16.3	2,793
2025	212,979	15,838	12,267	176,905	36,074	16.9	3,571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로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바우처를 신청하였는지 여부만으로는 사업의 실제 수혜성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신청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이용률 및 실집행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12] 성과지표를 이용성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산업 육성'** 사업은 '콘텐츠사업 육성' 프로그램에 속한 보조사업으로, 만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만화 및 웹툰 창작 지원·관련 기업 육성 지원·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임.

[만화산업 육성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만화산업 콘텐츠 지원 작품 수(개)	목표	250	263	250	과거 3개년 실적의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	만화·웹툰 콘텐츠 지원 작품수 합산
	실적	259	286	306		
	달성도	103.6	108.7	12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만화산업 콘텐츠 지원 작품 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원 작품 수'는 지원금이 투입된 작품 수를 집계한 수치에 해당할 뿐, 지원 작품의 사업화 성과·매출 발생·해외 진출 등 만화산업 육성 효과는 반영되지 않으며, 특히 예산의 투입 규모나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면 증가할 수 있는 지

12)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연말까지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신청시기에 따라 연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측면이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구매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과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표로서 실제 성과 개선 없이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작품 수와 같은 단순 투입지표가 아닌 지원 작품의 사업화 실적·지원 기업의 매출 증가율 등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라)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아 사업 자체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

조달청은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로 '혁신제품 매출액'을 설정하고 있음. 혁신제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기술혁신성을 인정한 우수연구개발제품과 조달청 혁신시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말함.

조달청은 전년 실적 수준으로 해당연도 목표치를 설정(2025년은 전년 실적이 아닌 목표치수준으로 설정)하고, 혁신제품의 연간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으로 실적을 측정하고 있는데 매년 성과달성도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혁신제품 매출액 달성 현황]

(단위: 억원, %)

성과지표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구분	2022	2023	2024	2025
혁신제품 매출액	당해연도 혁신제품 매출액 (공공조달시장 판매액)	목표	2,452	4,285	7,394	10,000
		실적	4,157	7,394	9,755	10,447
		달성률	169.5	172.6	131.9	104.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조달청)」, 2026.5.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증가는 조달사업의 수행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혁신제품 품목수가 2020년 345개 대비 2025년 2,774개로 약 8배 증가하였음을 볼 때 혁신제품 수 증가 자체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13)]

13) 특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2022년 및 2023년은 2021년 및 2022년에 걸쳐 혁신제품 지정건수가 크게 증가(2021년 623건, 2022년 606건 지정)함에 따른 후속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및 지정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조달시장 매출액	-	1,800	2,452	4,157	7,394	9,755	10,447
누적 지정건수 (해당연도 신규 지정건수)	66	345 (279)	968 (623)	1,574 (606)	1,858 (284)	2,280 (422)	2,774 (494)

주) 2019년 10월에 혁신제품 지정이 시작됨에 따라 2019년 공공조달시장 매출액은 미집계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조달청은 혁신제품 매출액 실적 산정 시 혁신제품 지정 규모 확대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매출액 증가 외에 조달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운영방식 보완 필요

현행 '1프로그램 1성과지표' 방식은 다양한 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하나의 지표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전체의 정책목적과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는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하나의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세부사업들을 묶은 예산 편성단위로,[14] 하나의 성과지표만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사업들이 다양한 정책목적을 지니고 있거나, 정책목적은 동일하지만 정책대상과 수단이 서로 다른 경우 1개의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면밀하게 측정하기 어려움.

①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활성화' 프로그램은 '돌아오는 어촌어항을 조성하기 위한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한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어항관리 사업,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어촌소멸대응지원 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등 6개 단위사업·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4) 세출예산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됨.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프로그램 성과지표를 ‘관광소득 5억원 이상 어촌체험휴양마을 수’로 설정하고 있어 어촌 정주여건 개선, 어항 기능 확충, 생활서비스 개선 등 프로그램의 다양한 정책목적은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어촌관광 분야의 일부 성과만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활성화 프로그램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성과지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년 결산
어촌어항 활성화	관광소득 5억원 이상 어촌체험 휴양마을 수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385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국가어항관리	25,935
			국가어항	359,739
			가거도항복구	24,050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38
		어항기반시설조성(제주)	국가어항(제주)	11,744
		어항기반시설조성	어촌신활력증진	220,822
		제주해양치유센터(제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00
		귀어귀촌지원	어촌소멸대응지원	6,216
			청년어촌정착지원	5,074
			양식장임대	5,832
			합계	661,03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해양수산부)」, 2026.5.

②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프로그램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등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이 서로 다른 6개 단위사업·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럼에도 프로그램 전체의 성과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하나의 성과지표로 관리되고 있어, 프로그램 예산의 약 45%를 차지하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5,528억원)을 비롯한 다른 주요 사업의 성과는 프로그램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프로그램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성과지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년 결산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한부모가족지원(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2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1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802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지원	474,975
		다양한 가족 및 양육비 이행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13,026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가족정책 기반구축	가족역량강화 지원	1,754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436
		가족서비스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5,394
		가족친화환경조성	가족센터 건립(자율)	3,950
			합계	1,231,603

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가족센터 건립(자율) 사업은 성과관리 비대상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성평등가족부)」, 2026.5.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성과지표를 유연하게 설정하거나 프로그램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세부사업의 성과가 프로그램 성과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15)]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정합성 제고 필요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등이 성과계획서와 상이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정합성 점검을 강화하여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① 국방부는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서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

15) 기획예산처는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026.1.)에서 세부사업의 규모, 사업 간 이질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등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라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로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을 설정하였음.

[국방부 성과관리체계]

전략목표 Ⅴ.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를 구현한다.
	프로그램명 및 프로그램목표	Ⅴ-2. 군사시설건설및운영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
	성과지표	■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국방부)」, 2026.5.

국방부는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의 세부지표로 병영생활관 개선율,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개선율, 군 주거시설 개선율, 환경보전시설 개선율, 주요 일반지원시설[16] 개선율을 제시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서 주요 일반지원시설 개선율을 작전지휘시설 개선율로 변경하였음.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측정산식 변경 내역]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병영생활관 개선율 × 0.25 +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개선율 × 0.15 + · 군 주거시설 개선율 × 0.25 + ·환경보전시설 개선율 × 0.15 + ·**주요 일반지원시설 개선율** × 0.2	·병영생활관 개선율 × 0.25 + ·병영기본지원시설 개선율 × 0.15 + ·군 주거시설 개선율 × 0.25 + ·환경보전시설 개선율 × 0.15 + ·**작전지휘시설 개선율** × 0.2

주) 동 성과지표에서 병영생활관 부속시설은 취사식당을 의미하며, 병영기본지원시설로 명칭 변경
자료: 「2025년도 성과계획서(국방부)」 및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국방부)」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는 「202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4년 5월 31일까지 성과계획서를 당시 기획재정부에 작성·제출하였는데,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2024.8.)에서 단위사업을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과 예산 비중이 변경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2025.2.)하였으며, 수정된 성과계획서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2026.5.)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예산안 편성 과정의 변경사항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국회는 실제 예산안과 일치하지 않는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16) 군 일반지원시설이란 장병의 생활·행정·교육·복지·의무·정비 등 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②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경비체계 구축,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해양치안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경비체계강화’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로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을 채택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목표위반율 8.6% 대비 4.9%의 실적을 거둬 143.0%를 달성하였다고 기재하였음.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23	2024	2025
외국어선 조업 질서 위반율(%, 하향지표)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목표	10.0	9.9	8.6
		실적	9.9	5.4	4.9
		달성률	101.0	145.5	143.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해양경찰청)」, 2026.5.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성과계획서에서 최근 3년(2021~2023) 평균 위반율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9.2%로 설정하고 3년 평균값을 검문검색 977척, 나포 102척, 위반율 9.8%로 제시한 반면, 성과보고서는 최근 4년(2021~2024) 평균 기준으로 목표치를 8.6%로 설정하고,[17] 과거 연도별 실적도 변경하여 제출하였음.

해양경찰청은 2023년도까지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통합 통계를 사용하다가 2024년부터는 해양경찰청 단독 통계를 사용하고 있어[18] 현재의 통계작성 기준에 맞춰 과거 실적을 재산정하였다는 설명이나, 통계자료와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목표치 및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문제가 있음.

17)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최근 3년(2022~2024) 평균 위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 위반율은 7.1%임.

18) 해양경찰청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해양경찰청 단독 통계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함.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목표치 및 실적 변경]

<성과계획서>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23	2024	2025
외국어선 조업 질서 위반율(%, 하향지표)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목표	10.0	9.9	9.2
		실적	9.9	-	-

○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3년 평균 위반율

구 분	3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검문검색(건)	977	981	819	1,131
나포척수(척)	102	108	87	112
위반율(%)	9.8	11.0	10.6	9.9

주) 해양경찰청은 성과계획서에서 3년 평균 위반율을 9.8%로 기재하였으나, 2021~2023년 3개년 평균 위반율은 10.5%임

<성과보고서>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23	2024	2025
외국어선 조업 질서 위반율(%, 하향지표)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목표	10.0	9.9	8.6
		실적	9.9	5.4	4.9
		달성률	101.0	145.5	143.0

주) 하향지표 달성률 = [1-{(실적치-목표치)/목표치}]×100

○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4년 평균 위반율

구 분	4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검문검색(건)	641.5	498	520	690	858
나포척수(척)	52	66	42	54	46
위반율(%)	8.65	13.3	8.1	7.8	5.4

자료: 「2025년도 성과계획서(해양경찰청)」 및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해양경찰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측정기준이나 입력자료 등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2026년부터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본격 도입되어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및 지출구조조정에 직접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입력자료와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가피하게 측정기준이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뿐만 아니라,[19] 국회가 성과계획 변경이 성과달성도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당초 성과계획서와의 차이, 당초 성과계획서 기준에 따른 성과와 변경 기준에 따른 성과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5)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 미흡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인 재정사업자율평가가 2026년부터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개편되었는데, 평가의 근거법령이 뒤늦게 개정되는 등 체계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로의 전환을 2026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20] 약 5개월 간의 평가를 거쳐 2026년 5월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2026년 상반기에 진행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의 추진 과정을 살펴볼 때,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또는 법령 준비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의 전환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임.

재정사업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기금 및 부담금 평가관리,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을 수행하는 **'재정사업평가'** 사업에서 2025년 실시된 재정사업성과관리 연구용역은 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금 자산운용, 연기금 투자풀 운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것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수행된 바 없음.

---

19) 현재 각 부처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예산 및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는 수정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부처에 통보하며, 부처는 기획예산처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재수정한 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있음. 성과보고서에는 성과계획서 변경사항이 별첨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음.

20) 기획예산처, "20여 년 만에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외부전문가·시민사회가 원점에서 사업성과 점검, 통합평가를 지출효율화·국민감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2026.1.

[2025년 재정사업성과관리 연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연구용역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방식
1	성과목표관리제 개선방안 연구	45	45	한국재정정보원	2025.9. ~2025.12.	수의
2	재정사업 심층평가 20년 운용성과 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45	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9. ~2026.2.	수의
3	기금 자산 운용 기본방향 연구	60	6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12. ~2026.2	수의
4	연기금투자풀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50	50	한국재무학회	2025.3. ~2025.9.	수의

자료: 재정경제부

또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나, 해당 제도의 근거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은 평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인 2026년 5월 6일에서야 비로소 개정·공포되었으며, 기획예산처는 시행령 입법예고는 거치지 않았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개정 전후 비교]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2026.1.2., 시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2호, 2026.5.6., 일부개정, 2026.5.6., 시행]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2026.1.2., 시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2호, 2026.5.6., 일부개정, 2026.5.6., 시행]
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무회의 보고(2026.1.27.)를 마쳐 행정절차를 거친 바 있고,[21]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5월 31일) 전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 절차와 실무 평가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평가대상 사업이 상당수 증가하고 평가에 따른 환류가 강화되는 등 재정사업평가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제도의 개편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용역, 전문가 및 피평가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한편, 근거법령 역시 평가 이전에 정비하고 개정 이전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향후 재정제도의 개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1) 기획예산처는 통합평가로의 개편 과정에서 피평가 기관의 예측 가능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부처간 의견수렴은 평가 중의 피드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4. 국가 R&D 사업

가. 개 요

2025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은 29조 6,95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703조 3,129억원)의 4.2%에 해당함. 2019년 이후 국가 R&D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024년에 전년 대비 4조 5,409억원(△14.6%)감소하였다가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조 1,581억원(11.9%) 증가함.

[정부 총지출 대비 R&D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정부총지출	5,547,188	6,048,989	6,795,024	6,387,277	6,566,182	7,033,129	6.7
R&D 분야	242,558	275,072	295,138	310,778	265,369	296,950	6.1
비율	4.4	4.5	4.3	4.9	4.0	4.2	-

주) 추경이 편성된 해의 경우 추경예산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국가 R&D 사업 결산 결과 예산현액 29조 7,005억원 중 29조 4,395억원이 집행(집행률 99.1%)되었음.

[2025년도 국가 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2024		2025				집행률 (C/B)	증감	
예산	결산(A)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B)	집행액(C)		C-A	(C-A)/A
265,369	260,457	295,968	296,950	297,005	294,395	99.1	33,938	13.0

자료: 재정경제부

문의: 02-6788-5698

(1) 집행 현황

(가) 부처별 집행 현황

2025년 국가 R&D 사업이 편성된 총 34개의 부·처·청·위원회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액 규모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9조 5,651억 7,3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5조 2,594억 5,800만원), 방위사업청(4조 8,342억 4,2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2025년 국가 R&D 사업 부처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6년 예산
과기부	일반회계	7,351,010	7,402,014	7,367,580	99.5	9,016,645
	균특회계	444,198	454,198	411,931	90.7	843,811
	에특회계	420,694	420,694	409,051	97.2	470,832
	소특회계	415,764	415,764	414,438	99.7	463,852
	고특회계	109,206	109,206	109,206	100.0	142,572
	우특회계	435	435	435	100.0	825
	과진기금	54,944	54,944	54,944	100.0	58,963
	원자력기금	192,198	192,198	192,198	100.0	280,466
	방발기금	305,320	315,320	315,320	100.0	277,755
	정진기금	290,070	290,070	290,069	100.0	263,194
	소계	9,583,839	9,654,843	9,565,173	99.1	11,818,915
산업부	일반회계	2,417,446	2,420,646	2,416,446	99.8	3,106,959
	소특회계	1,815,779	1,815,779	1,815,779	100.0	1,948,497
	에특회계	303,551	279,583	279,583	100.0	32,753
	균특회계	140,271	140,271	140,271	100.0	152,125
	전력기금	543,858	551,858	551,858	100.0	-
	방폐기금	40,031	40,031	40,031	100.0	-
	산촉기금	15,490	15,490	15,490	100.0	23,185
	소계	5,276,426	5,263,658	5,259,458	99.9	5,263,519
방사청	일반회계	4,889,359	4,891,971	4,834,242	98.8	5,839,562
	소계	4,889,359	4,891,971	4,834,242	98.8	5,839,562
교육부	고특회계	1,379,561	1,373,701	1,364,486	99.3	1,432,283
	소계	1,379,561	1,373,701	1,364,486	99.3	1,432,283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6년 예산
중기부	일반회계	1,344,215	1,354,215	1,354,215	100.0	1,999,856
	소특회계	137,025	137,025	137,025	100.0	10,593
	균특회계	35,711	35,711	35,711	100.0	185,472
	소계	1,516,951	1,526,951	1,526,951	100.0	2,195,921
농진청	일반회계	705,852	709,758	680,453	95.9	757,514
	농특회계	600	600	600	100.0	-
	균특회계	8,248	8,248	8,248	100.0	15,942
	소계	714,700	718,606	689,301	95.9	773,456
해수부	일반회계	623,488	626,378	617,090	98.5	750,358
	교특회계	89,531	89,531	89,531	100.0	57,822
	농특회계	35,591	35,591	35,354	99.3	41,516
	균특회계	200	200	200	100.0	2,000
	소계	748,810	751,700	742,175	98.7	851,696
복지부	일반회계	967,181	980,805	979,209	99.8	1,095,493
	책특회계	11,223	11,400	8,927	78.3	11,328
	건강기금	7,410	7,410	7,410	100.0	7,410
	균특회계	-	-	-	-	5,120
	소계	985,814	999,615	995,547	99.6	1,971,047
우주청	일반회계	908,506	908,506	898,106	98.9	949,478
	소계	908,506	908,506	898,106	98.9	949,478
국토부	일반회계	302,200	302,420	299,664	99.1	335,054
	교특회계	180,675	180,675	180,675	100.0	193,550
	균특회계	5,000	5,000	5,000	100.0	5,000
	소계	487,875	488,095	485,339	99.4	533,604
국조실	일반회계	533,018	533,018	521,821	97.9	692,103
	에특회계	12,374	12,374	11,910	96.2	25,486
	소계	545,392	545,392	533,731	97.9	717,589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6년 예산
기후부	일반회계	16,720	16,720	16,720	100.0	42,652
	환특회계	302,574	305,325	301,838	98.9	372,168
	전력기금	-	-	-	-	635,520
	기후기금	-	-	-	-	840,642
	에특회계	-	-	-	-	278,420
	방폐기금	-	-	-	-	40,259
	균특회계	-	-	-	-	4,923
	소계	319,294	322,045	318,558	98.9	2,214,584
농림부	일반회계	49,976	50,053	48,164	96.2	53,329
	농특회계	176,693	176,693	176,693	100.0	206,805
	균특회계	-	-	-	-	1,575
	소계	226,669	226,746	224,857	99.2	261,709
산림청	일반회계	127,549	140,206	138,297	98.6	138,500
	농특회계	4,353	4,353	4,353	100.0	14,058
	소계	131,902	144,559	142,650	98.7	152,558
식약처	일반회계	161,950	164,505	159,544	97.0	171,937
	소계	161,950	164,505	159,544	97.0	171,937
기상청	일반회계	144,803	143,632	142,857	99.5	239,728
	소계	144,803	143,632	142,857	99.5	239,728
원안위	일반회계	101,670	101,670	100,728	99.1	70,240
	소계	101,670	101,670	100,728	99.1	70,240
문체부	일반회계	104,224	104,224	104,208	100.0	141,266
	체육기금	800	800	800	100.0	6,525
	관광기금	1,160	1,160	1,160	100.0	3,750
	소계	106,184	106,184	106,168	100.0	151,541
행안부	일반회계	104,696	104,669	103,505	98.9	105,760
	균특회계	5,600	5,600	5,600	100.0	8,400
	소계	110,296	110,269	109,105	98.9	114,160
질병청	일반회계	251,257	252,401	237,674	94.2	264,057
	책특회계	152	152	140	92.3	152
	소계	251,409	252,553	237,814	94.2	264,209
국방부	일반회계	71,617	71,617	71,353	99.6	74,860
	소계	71,617	71,617	71,353	99.6	74,860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6년 예산
자산재산처	책특회계	64,769	64,769	64,182	99.1	-
	일반회계	-	-	-	-	58,180
	소계	64,769	64,769	64,182	99.1	58,180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32,489	32,489	32,297	99.4	34,545
	국보기금	29,951	29,951	29,005	96.8	34,926
	소계	62,440	62,440	61,302	98.2	69,471
경찰청	일반회계	64,027	64,027	64,027	100.0	68,212
	소계	64,027	64,027	64,027	100.0	68,212
해경청	일반회계	48,945	48,945	48,939	100.0	76,163
	소계	48,945	48,945	48,939	100.0	76,163
소방청	일반회계	30,531	30,409	30,102	99.0	50,326
	소계	30,531	30,409	30,102	99.0	50,326
관세청	일반회계	3,811	3,811	3,804	99.8	4,943
	소계	3,811	3,811	3,804	99.8	4,943
기재부	일반회계	970	989	989	100.0	818
	기후기금	639,237	639,237	639,030	100.0	-
	소계	640,207	640,226	640,019	100.0	818
법무부	일반회계	4,400	4,400	4,361	99.1	5,200
	소계	4,400	4,400	4,361	99.1	5,200
개보위	일반회계	8,688	8,688	8,688	100.0	13,280
	소계	8,688	8,688	8,688	100.0	13,280
조달청	조특회계	2,968	2,968	2,968	100.0	8,000
	소계	2,968	2,968	2,968	100.0	8,000
대통령경호처	일반회계	3,000	3,000	3,000	100.0	3,300
	소계	3,000	3,000	3,000	100.0	3,300
방미통위	일반회계	-	-	-	-	13,767
	소계	-	-	-	-	13,767
고용부	산재기금	-	-	-	-	1,554
	소계	-	-	-	-	1,554
총계		29,596,813	29,700,499	29,439,534	99.1	35,594,114

주)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임
자료: 재정경제부

(나) 회계·기금별 집행 현황

2025년 국가 R&D 사업이 편성된 총 24개의 회계・기금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액 규모로는 일반회계(21조 2,880억 8,300만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2조 3,672억 4,2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조 4,736억 9,2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2025년 국가 R&D 사업 회계·기금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6년 예산
일반회계	21,373,598	21,476,186	21,288,083	99.1	26,174,085
소특회계	2,368,568	2,368,568	2,367,242	99.9	2,422,942
고특회계	1,488,767	1,482,907	1,473,692	99.4	1,574,855
에특회계	736,619	712,651	700,544	98.3	807,491
기후기금	639,237	639,237	639,030	100.0	840,642
균특회계	639,228	649,228	606,961	100.0	1,224,368
전력기금	543,858	551,858	551,858	100.0	635,520
방발기금	305,320	315,320	315,320	100.0	277,755
환특회계	302,574	305,325	301,838	100.0	372,168
정진기금	290,070	290,070	290,069	100.0	263,194
교특회계	270,206	270,206	270,206	100.0	251,372
농특회계	217,237	217,237	217,000	100.0	262,379
원자력기금	192,198	192,198	192,198	100.0	280,466
책특회계	76,144	76,321	73,249	100.0	11,480
과진기금	54,944	54,944	54,944	100.0	58,963
방폐기금	40,031	40,031	40,031	100.0	40,259
국보기금	29,951	29,951	29,005	100.0	34,926
산촉기금	15,490	15,490	15,490	100.0	23,185
건강기금	7,410	7,410	7,410	100.0	7,410
조특회계	2,968	2,968	2,968	100.0	8,000
관광기금	1,160	1,160	1,160	100.0	3,750
체육기금	800	800	800	100.0	6,525
우특회계	435	435	435	100.0	825
산재기금	-	-	-	-	1,554
합 계	**29,596,813**	**29,700,499**	**29,439,534**	**99.1**	**35,594,114**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다) 연구 단계별 집행 현황

연구개발단계는 OECD 기준에 따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됨.

[연구개발단계 구분]

구분	분류기준
기초연구	· 어떤 특수한 응용이나 사용 계획 없이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실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
응용연구	·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된 독창적 탐구이지만, 주로 특정 목표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
개발연구	· 새로운 제품/공정 생산 또는 기존 제품/공정 개선을 위해 실제적 경험과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추가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연구
기타	· 위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26.2월

국가 R&D 사업의 단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집행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개발 단계가 5.8%로 가장 높고, 연도별 집행 규모도 개발 단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단계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기초	58,024	57,714	56,015	52,673	△3.2
응용	52,338	58,953	50,595	55,385	1.9
개발	97,032	100,389	92,841	114,822	5.8
소계	**207,394**	**217,056**	**199,451**	**222,880**	**2.4**
기타	79,388	88,675	62,724	67,739	△5.2
합계	**286,782**	**305,731**	**262,175**	**290,619**	**0.4**

주 1) 기타는 연구장비, 시설 등 연구개발단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2) 2018년부터 출연연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출연연 '연구운영비지원' 사업을 운영경비(인건비+경상경비)와 주요사업비(직접비)로 분리함에 따라 기존 과제 내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 경상경비가 '기타'로 분류되어 이전 연구개발단계 비중과 단순 비교 불가
3) 2025년 집행액은 2026년 5월 30일 기준 집계치로 산출하여 확정금액과는 차이 발생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과제 수행 기관 유형별 집행 현황

국가 R&D 사업의 과제 수행 기관 유형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집행 규모는 출연연구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대기업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기관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국공립연	13,024	14,404	12,021	11,786	△3.3
출연연	103,737	110,861	103,196	104,091	0.1
대학	69,738	74,033	59,370	67,074	△1.3
대기업	5,889	8,121	8,204	11,433	24.7
중견기업	18,716	18,545	15,777	13,507	△10.3
중소기업	54,924	58,379	45,578	47,885	△4.5
정부부처	626	755	1,140	3,141	71.2
기타	20,128	20,635	16,887	31,702	16.3
합계	**286,782**	**305,731**	**262,175**	**290,619**	**0.4**

주 1) 출연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부처 직할 연구기관 등의 R&D 관련 출연연구기관을 포함
2) 국공립연구소는 국립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3)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4) 2025년 집행액은 2026년 5월 30일 기준 집계치로 산출하여 확정금액과는 차이 발생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주요/일반 R&D 현황

R&D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및「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R&D 사업과 일반 R&D 사업으로 구분됨. 주요 R&D 사업은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R&D, ② 미래 성장동력 창출 R&D, ③ 기초과학 분야 R&D, ④ 연구시설·장비구축 사업, ⑤ 다부처 R&D 등으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됨.[1)]

주요 R&D에 속하는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일반 R&D 사업은 주요 R&D 사업이 아닌 R&D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예산안을 편성함.

2025년 주요 R&D 예산은 24조 7,944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83.8%이며 이는 전년 대비 13.2% 증액된 규모임. 일반 R&D 예산은 4조 8,024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16.2%이며, 이는 전년 대비 3.7% 증액된 규모임.

[2022 ~ 2025년 주요 R&D 및 일반 R&D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A)	2025년(B)	증감(B-A)	증감률 ((B-A)/A)
예산 (비중)	주요 R&D	242,363 (81.4)	249,392 (80.2)	219,079 (82.6)	247,944 (83.8)	28,865	13.2
	일반 R&D	55,407 (18.6)	61,386 (19.8)	46,289 (17.4)	48,024 (16.2)	1,734	3.7
	합계	297,770	310,778	265,369	295,968	30,599	11.6

주 1) 본예산 기준
2) 2022년도부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비목신설하여 기관·회계별로 통합편성 함에 따라 일반 R&D로 재원 이관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2025년 국가 R&D 예산을 9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비중이 높은 분야는 기계소재(21.5%), 기초기반(19.9%), 국방(12.4%), 생명의료(9.9%)의 순으로 나타났음.

전년 대비 증가율은 기초기반(57.0%), 우주항공국토(54.0%), 에너지원자력자원(49.4%), 공공해양환경(39.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2024~2025년 기술분야별 주요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4		2025		증감 (C=B-A)	증감률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공공해양환경	7,737	3.5	10,790	4.4	3,053	39.5
기계소재	44,773	20.4	53,388	21.5	8,615	19.2
기초기반	31,384	14.3	49,278	19.9	17,894	57.0
바이오제조농림수산	10,237	4.7	12,037	4.9	1,800	17.6
생명의료	18,212	8.3	24,484	9.9	6,272	34.4
양자반도체	8,918	4.1	11,478	4.6	2,560	28.7
에너지원자력자원	15,659	7.2	23,391	9.4	7,732	49.4
우주항공국토	10,329	4.7	15,904	6.4	5,575	54.0
인공지능ICT	12,052	5.5	16,358	6.6	4,306	35.7
국방[2)]	59,778	27.3	30,834	12.4	△28,944	△48.4
합계	219,079	100%	247,944	100.0	28,865	13.2

주 1) 본예산(주요R&D) 기준
2) 국방 분야는 2024년도에는 기타 분야로 구분되었으며, 고급인력양성, 정보시험서비스, 연구장비 구축 등이 포함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신규사업 및 신규과제 현황

2025년 국가 R&D 신규사업은 25개 부·처·청의 225개 세부사업에 9,062억 2,400만원으로, 2024년에 비해 세부사업 수는 20개, 총액은 2,133억 2,700만원 증가하였음.

[신규 주요 R&D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소관부처	세부사업	총액	비고 (주요 R&D)
2018년	16	73	221,958	과기정통부 415억원, 산업부 396억원
2019년	18	187	772,061	산업부 2,345억원, 과기정통부 1,630억원
2020년	19	211	1,510,247	산업부 4,179억원, 과기정통부 3,724억원
2021년	22	253	1,689,624	과기정통부 4,138억원, 산업부 3,570억원
2022년	22	291	1,884,197	과기정통부 6,078억원, 산업부 3,313억원
2023년	23	209	775,583	과기정통부 2,407억원, 산업부 1,954억원
2024년	26	205	692,897	과기정통부 2,250억원, 산업부 1,128억원
2025년	25	225	906,224	과기정통부 2,623억원, 산업부 1,671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신규과제 수는 21,525건으로 전년 대비 89건(0.4%) 증가하였고, 신규과제의 연구비는 7조 3,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39억원(8.1%) 증가하였음.[2)]

[신규 R&D 과제 및 연구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증감	
							B-A	(B-A)/A
과제 수	신규	30,900	30,577	26,050	21,436	21,525	89	0.4
	계속	43,845	45,475	45,754	39,131	39,171	40	0.1
연구비	신규	70,637	88,385	67,414	68,370	73,909	5,539	8.1
	계속	195,153	198,396	238,317	187,380	188,266	886	0.5

자료: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2)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단위는 크게 사업·과제로 나눌 수 있음. 과제는 실제 연구 수행의 단위이며, 사업은 목적이 유사한 과제들의 모임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2024년)[3)]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양적 성과를 살펴보면, 총 41,335건의 SCIE급 논문,[4)] 19,220건의 국내 특허 등록, 2,354건의 해외 특허 등록, 10,037건의 기술료, 26,951건의 사업화 성과가 창출되었음.

[2019~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

(단위: 건, %)

연도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2019년		41,919	20,210	2,347	8,858	28,800
2020년		44,563	21,330	2,612	9,974	32,910
2021년		48,381	21,566	1,990	8,482	25,403
2022년		47,101	18,126	1,938	7,876	32,068
2023년		45,658	18,955	2,834	11,768	31,598
2024년		41,335	19,220	2,354	10,037	26,951
증가율	전년대비	△9.5	1.4	△16.9	△14.7	△14.7
	연평균	△1.9	△2.6	△2.6	0.2	△4.9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연구개발 소관부처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SCIE 논문은 기초연구 비중이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63.0%), 교육부(12.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업화 건수는 산업통상부(37.0%), 중소벤처기업부(35.2%)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부처별 성과 현황]

(단위: 건, %)

부처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과기부	26,052	63.0	6,371	33.1	1,091	46.4	3,083	30.7	1,553	5.8
교육부	4,978	12.0	674	3.5	46	2.0	66	0.7	3	0.0
산업부	3,131	7.6	3,559	18.5	418	17.7	1,547	15.4	9,961	37.0
복지부	1,473	3.6	185	1.0	44	1.9	48	0.5	91	0.3
농진청	645	1.6	235	1.2	1	0.0	993	9.9	1,387	5.1
중기부	303	0.7	1,893	9.8	110	4.7	2,307	23.0	9,497	35.2
기타	4,752	11.5	6,303	32.8	644	27.4	1,993	19.9	4,459	16.5
합계	41,335	100.0	19,220	100.0	2,354	100.0	10,037	100.0	26,951	100.0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3)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확정은 2027년에 이루어질 예정임.

4)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란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 중 질적인 수준과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한 저널을 의미함.

연구개발 단계별로 성과 창출 내역을 살펴보면, SCIE논문의 70.5%는 기초연구에서 창출되었고, 국내 특허 등록건수의 48.5%, 해외 특허 등록건수의 41.7%, 기술료 건수의 67.5%와 사업화 건수의 83.0%는 개발연구에서 발생하였음.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단계별 성과 현황]

(단위: 건, %, 억원)

단계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2023 집행액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기초	28,207	70.5	4,855	27.6	751	34.8	1,223	14.0	903	3.8	56,015
응용	5,363	13.4	4,210	23.9	508	23.5	1,621	18.5	3,143	13.2	50,595
개발	6,464	16.1	8,548	48.5	902	41.7	5,920	67.5	19,812	83.0	92,841
소계	40,034	100.0	17,614	100.0	2,160	100.0	8,764	100.0	23,858	100.0	199,451
기타	1,301	-	1,606	-	194	-	1,271	-	3,093	-	62,724
합계	41,335	-	19,220	-	2,354	-	10,035	-	26,951	-	262,175

주) 연구개발단계가 기타인 과제에서 발생한 건수는 제외하고 비중을 산정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연구수행 기관 유형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대학은 SCIE논문의 72.4%, 국내 특허 등록의 36.5%, 해외 특허 등록의 31.6%를 창출하였음. 출연연구기관은 SCIE논문의 15.3%, 국내 특허 등록의 18.8%, 해외 특허 등록의 30.5%를 차지하였음.

또한 기술료 건수와 사업화 건수는 중소기업에서 각각 47.1%, 67.8%가 발생하여 가장 많았음.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기관별 성과 현황]

(단위: 건, %, 억원)

유형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2024 집행액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국공립연	996	2.4	446	2.3	30	1.3	1,040	10.4	1,438	5.3	12,021
출연연	6,308	15.3	3,619	18.8	718	30.5	1,305	13.0	1,444	5.4	103,196
대학	29,931	72.4	7,018	36.5	744	31.6	2,299	22.9	1,661	6.2	59,370
대기업	305	0.7	352	1.8	37	1.6	74	0.7	288	1.1	8,204
중견기업	422	1.0	850	4.4	158	6.7	264	2.6	1,461	5.4	15,777
중소기업	2,069	5.0	5,874	30.6	607	25.8	4,730	47.1	18,278	67.8	45,578
기타	1,304	3.1	1,061	5.5	61	2.6	323	3.2	2,381	8.8	18,027
합계	41,335	100.0	19,220	100.0	2,354	100.0	10,035	100.0	26,918	100.0	262,175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나. 검토의견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체제도 관련 검토

(가) 개요

1) R&D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및 폐지 연혁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5] 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음.

이후 2008년 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 연구개발사업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국가재정법」 개정 시 시행령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음.

또한 2018년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었음.[6]

정부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음.[7][8]

---

5) 「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2006.10.4. 제정)

6) 「국가재정법」(법률 제21065호)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후 2024년 12월 12일에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대체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으며, 이를 통합 조정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417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4178호)이 2026년 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이를 2026년 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함에 따라 R&D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었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혁]

구분	2007년 1월 1일 ~ 2008년 2월 28일	2008년 2월 29일 ~ 2018년 4월 16일 (2014년 법률로 상향 규정)	2018년 4월 17일 ~ 2026년 2월 10일(폐지)
예타 조사 대상	**(공통기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개별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	**(개별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별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수행 주체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체제도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는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우선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하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라 함)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다음 연도 추진 예정인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전면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6.19.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하여 통과에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기술 진부화 등 신속한 기술 경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변경의 경직성으로 인해 유연한 R&D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하여야함.[9)]

다음으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①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우주개발진흥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함)를 실시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계획변경심사"라 함)하는 제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추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

---

9)「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같은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음.[10)]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체제도]

구분	대체 제도	
사업 유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제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규모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비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비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
심사 제도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검토의견

첫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에서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의 단위를 세부사업과 일부 내역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기본법」은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향후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등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사업 단위에 관해서는 정한 바 없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사업추진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11]

이 지침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나 내역사업의 하위인 내내역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예산안이 편성될 우려가 있음.

즉,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단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서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사업단위를 규

11)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4조(심사 대상사업 단위 등) ① 심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심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구축형 사업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③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심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이 사업추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 사업의 단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의 대상을 특정 사업단위로 한정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12)]

둘째,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중 사업규모가 변동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조정 등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로 증가한 사업이나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은 이후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이 명시적으로 신규사업을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위임 근거 없어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언상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므로, 관련 근거를 의무 규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2)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 ① 사업계획검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사업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인 사업
2.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가 된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조정 등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로 증가한 사업. 단, 과목구조 개편 성격으로 사업간 통합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검토를 받은 대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포함)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또는 사업 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

참고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이에 준하는 절차로 「국가재정법」 제50조에 타당성재조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고, 현재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4에 근거한 계획변경심사가 이에 준하는 대체제도로 도입되었으며 두 절차 모두 의무 규정임.[13)]

[제도별 비교]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추진심사·계획변경심사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재검토 대상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추진 과정에서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심사를 거친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결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추진 과정에서 대상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진 과정에서 예산 조정 등으로 검토 규모로 증가한 사업 ·검토를 받은 후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등 변경이 있는 사업 ·예타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또는 사업기간 등 변경이 있는 사업(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제외)
재검토 근거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규정 성격	강행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셋째, 현행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제도는 예산 배분·조정 이후 규모가 증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관문으로 기능하였음.

반면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을 차단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처럼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현행 구조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전 검토는 유지하여 대규모 R&D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대체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충실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예를 들어 산업통산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1차년도 총사업비가 50억원에서 8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42억원(84%)이 불용되었음.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1차년도 총사업비가 253억 8,700만원에서 169억 8,6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84억 100만원(33.1%)이 불용되었음.

이에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가 된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도 사업계획검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14]

14)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 ① 사업계획검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설계한 현행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후적 검토를 포함하여 검토 절차 자체는 반드시 거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사업추진심사 제도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사업이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됨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심사를 거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은 사업추진심사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사업이 사업추진심사 대상으로 증액되는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2조의2제9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해당 규정들은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업추진심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반영을 차단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예산요구서 제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이후 기획예산처의 심사 단계에서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반영되거나 예산요구서 대비 규모가 증가되어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음.[15]

---

2.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가 된 사업

15) 예를 들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R&D)’ 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기도 하였음.

이와 달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반영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추진심사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전에 사업추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이후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됨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심사 제도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전 검토·심사 절차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다음 연도 추진 예정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3제3항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제도 모두 본예산 편성 절차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본예산과 달리 편성 절차가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국비지원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나 사업추진심사를 거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 예산 편성을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도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거나 면제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그 대체제도인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심사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규모 R&D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공백 사

항이 지속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대규모 R&D 사업 추진이 사전 검토·심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대체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적용 방안 또는 대체 절차를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국회가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사업추진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로 인하여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전 사전점검 기능이 일부 축소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보다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제도적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후적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사업추진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문제가 있음. 참고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16]

또한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중간점검이 가능하였으며, 국회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대체제도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검토 절차와 그 근거가 부재한 문제가 있음.[17]

---

1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 검토나 사업추진심사와 같은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이 아무런 보완 없이 그대로 추진되거나, 사업 수행 중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국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갖추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가 의결로써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사업추진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관련 검토

(가)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선정·관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8)]

2025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부처의 연구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총 40개이며, 이 중 주요 부·처·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17개의 전문기관[19)]이 매년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

각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 부처로부터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기획평가관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에 대한 선정·단계·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등에 활용되고 있음.

---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관리 · 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 · 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12개) 및 부설기관(1개), 과학기술자문회의(제34회 운영위, '21.10.28.)가 추가확정한 기관(1개), 주요 부처·청의 사업단위 연구관리 업무 대행기관 중 관리사업 3개 이상이면서 관리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기관(3개)

[17개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기평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전문기관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한국연구재단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5,294,625	5,168,797	5,060,127	6,222,329
		기평비 예산	51,115	51,378	54,265	56,838
		기평비 비율	0.97	0.99	1.07	0.91
	원자력기금	관리대상사업 예산	264,652	252,087	403,923	392,729
		기평비 예산	4,479	4,496	4,547	4,416
		기평비 비율	1.69	1.78	1.13	1.12
	관리대상사업 예산 합계		5,559,277	5,420,884	5,464,050	6,615,058
	기평비 예산 합계		55,594	55,874	58,812	61,254
	기평비 비율(합계 기준)		1.00	1.03	1.08	0.93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646,453	512,574	620,736	833,316
		기평비 예산	7,496	6,977	8,930	10,356
		기평비 비율	1.16	1.36	1.44	1.24
	정보통신 진흥기금	관리대상사업 예산	367,367	304,026	269,094	243,707
		기평비 예산	15,265	14,147	14,607	15,122
		기평비 비율	4.16	4.65	5.43	6.20
	방송통신 발전기금	관리대상사업 예산	401,247	308,411	304,598	266,743
		기평비 예산	10,523	10,373	10,722	11,012
		기평비 비율	2.62	3.36	3.52	4.13
	관리대상사업 예산 합계		1,415,067	1,125,011	1,194,428	1,343,766
	기평비 예산 합계		33,284	31,497	34,259	36,490
	기평비 비율(합계 기준)		2.35	2.80	2.87	2.72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633,543	1,431,360	1,672,248	2,195,379
		기평비 예산	41,565	41,827	44,445	45,625
		기평비 비율	2.54	2.92	2.66	2.08
	소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456,652	1,500,190	1,562,807	1,709,647
		기평비 예산	37,771	38,003	39,396	40,644
		기평비 비율	2.59	2.53	2.52	2.38
	관리대상사업 예산 합계		3,090,195	2,931,550	3,235,055	3,905,026
	기평비 예산 합계		79,336	79,830	83,841	86,269
	기평비 비율(합계 기준)		2.57	2.72	2.59	2.21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328,185	1,175,066	1,309,242	1,944,305
		기평비 예산	39,872	38,644	39,817	39,803
		기평비 비율	3.00	3.29	3.04	2.05
	소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83,957	65,795	32,370	7,275
		기평비 예산	4,341	3,282	3,341	3,318
		기평비 비율	2.36	4.99	10.32	45.61
	지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93,731	86,534	88,289	136,359
		기평비 예산	7,955	7,514	7,618	7,586
		기평비 비율	4.11	8.68	8.63	5.56

(단위: 백만원, %)

전문기관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관리대상사업 예산 합계		1,705,873	1,327,395	1,429,901	2,087,939
	기평비 예산 합계		52,168	49,440	50,776	50,707
	기평비 비율(합계 기준)		3.06	3.72	3.55	2.43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386,848	258,814	336,561	386,407
		기평비 예산	13,144	13,200	13,625	13,636
		기평비 비율	3.40	5.10	4.05	3.53
	교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93,945	170,184	174,000	186,579
		기평비 예산	6,672	6,403	6,675	6,971
		기평비 비율	3.44	3.76	3.84	3.74
	관리대상사업 예산 합계		580,793	428,998	510,561	572,986
	기평비 예산 합계		19,816	19,603	20,300	20,607
	기평비 비율(합계 기준)		3.41	4.57	3.98	3.60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624,025	716,728	863,622	977,194
		기평비 예산	13,210	13,547	14,847	16,073
		기평비 비율	2.12	1.89	1.72	1.64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548,683	400,856	467,941	578,839
		기평비 예산	16,822	16,739	17,221	17,515
		기평비 비율	3.07	4.18	3.68	3.03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210,675	150,193	158,975	190,027
		기평비 예산	6,363	6,028	6,187	5,892
		기평비 비율	3.02	4.01	3.89	3.10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환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339,874	222,032	281,414	347,769
		기평비 예산	8,881	8,868	9,231	9,331
		기평비 비율	2.61	3.99	3.28	2.68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26,778	19,202	55,767	146,196
		기평비 예산	795	799	945	833
		기평비 비율	2.61	3.99	3.28	2.68
한국콘텐츠 진흥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23,859	93,481	99,358	145,922
		기평비 예산	5,133	4,950	5,056	3,941
		기평비 비율	4.14	5.30	5.09	2.70
한국원자력안전 재단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49,716	33,485	40,408	40,482
		기평비 예산	777	776	860	943
		기평비 비율	1.56	2.32	2.13	2.33
한국임업진흥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50,986	31,261	51,079	61,402
		기평비 예산	1,858	1,806	1,762	1,930
		기평비 비율	3.64	5.78	3.45	3.14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에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523,165	472,815	438,735	455,105
		기평비 예산	11,656	10,898	11,121	10,473
		기평비 비율	2.23	2.30	2.53	2.30
	전력기금	관리대상사업 예산	541,215	474,784	490,523	529,239
		기평비 예산	18,597	17,430	17,766	15,938

(단위: 백만원, %)

전문기관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기평비 비율	3.44	3.67	3.62	3.01
	관리대상사업 예산 합계		1,064,380	947,599	929,258	984,344
	기평비 예산 합계		30,253	28,328	28,887	26,411
	기평비 비율(합계 기준)		2.84	2.99	3.11	2.68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6,391	1,253	9,953	11,396
		기평비 예산	1,100	300	596	1,000
		기평비 비율	6.71	23.94	5.99	8.78
	지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51,309	120,219	144,686	269,496
		기평비 예산	3,348	2,976	3,316	6,540
		기평비 비율	2.21	2.48	2.29	2.43
	관리대상사업 예산 합계		167,700	121,472	154,639	280,892
	기평비 예산 합계		4,448	3,276	3,912	7,540
	기평비 비율(합계 기준)		2.65	2.70	2.53	2.68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55,669	84,839	123,110	210,715
		기평비 예산	5,083	5,029	5,281	6,229
		기평비 비율	3.27	5.93	4.29	2.96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일반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747,731	665,396	769,131	992,856
		기평비 예산	19,646	18,893	19,550	20,249
		기평비 비율	2.63	2.84	2.54	2.04
	지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488,539	143,554	152,088	146,300
		기평비 예산	11,533	10,896	11,171	11,482
		기평비 비율	2.36	7.59	7.35	7.85
	소특회계	관리대상사업 예산	189,965	189,236	208,762	193,458
		기평비 예산	5,026	4,569	4,814	4,748
		기평비 비율	2.65	2.41	2.31	2.45
	관리대상사업 예산 합계		1,426,235	998,186	1,129,981	1,332,614
	기평비 예산 합계		36,205	34,358	35,535	36,479
	기평비 비율(합계 기준)		2.54	3.44	3.14	2.7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는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에 있어 공식적인 예산 산출 기준이 부재하여 관리대상사업 예산 규모 변동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변동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기획평가관리비 중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 성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사업 규모 및 연구개발과제 수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 부처로부터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현재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에 관한 공식적인 산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전년도 대비 일부 조정되는 수준으로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규모는 연도 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반면, 관리대상사업 예산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상당 폭으로 변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특회계)의 경우 관리대상사업 예산이 2023년 1,840억원에서 2026년 73억원으로 대폭 감소됨에 따라 관리대상사업예산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2.36%에서 45.61%로 19배 이상 상승하였으며,[20]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경우 관리대상사업 예산이 2024년 848억원에서 2026년 2,107억원으로 증가되면서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5.93%에서 2.96%로 절반 넘게 하락하는 등 기관·회계별로 기획평가관리비 비율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4년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관리대상사업 예산이 축소되었으나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대부분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이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이 매년 전년 예산 대비 일부 조정되는 수준에 그쳐 관리대상사업 규모의 변동이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획평가관리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에 활용되는 비용으로서 그 성격상 관리대상사업 및 과제의 수와 규모에 따라 실제 집행 소요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

20)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지원과제에 대한 성과조사, 사업화 연계, 사후점검 등 관리비용이 종료 후 몇년간 지속적 투입되며, 극단적으로는 사업비가 0원이라도 후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할 수 있어 당해연도 사업비와 기평비를 직접 비교할 경우 통계적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정부는 기획평가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 성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제 기획·선정·평가 등 업무 유형별 공통 소요와 특정 과제의 특이 소요를 기준으로 단위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관리대상사업 규모 및 과제 수와 연동되는 합리적인 기획평가관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전문기관의 회계·기금별 관리대상사업 예산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재원별 기획평가관리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부 전문기관은 관리대상사업이 여러 회계·기금에 존재함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도 각 회계·기금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느 회계·기금사업인지에 따라 관리대상사업 예산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음.

① 먼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획평가관리비는 일반회계·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구분되는데 최근 4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4.16%→6.20%)하면서 일반회계(1.16%→1.24%) 및 방송통신발전기금(2.62%→4.13%)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② 다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획평가관리비는 일반회계·소특회계 및 지특회계로 각각 구분되는데, 최근 4년간 일반회계의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은 감소(3.00%→2.05%)하였으나 소특회계(2.36%→45.61%) 및 지특회계(4.11%→5.56%)의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은 증가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③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획평가관리비는 최근 일반회계(2.63%→2.04%) 및 소특회계(2.65%→2.45%)의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회계의 기획평가관리비는 상승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부는 예산안 편성이 기획평가관리비와 회계·기금별 관리대상사업에 대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재원별 비율을 일정하게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관리대상사업 예산의 증감 추이가 재원별로 다르게 나타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획평가관리비 예산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기관이 각 회계·기금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 소요를 파악하여 재원별 기획평가관리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17개 주요 전문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만 기획평가관리비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기획평가관리비가 여러 세부사업에 분절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재단 지원 예산에 대한 총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2년부터 기관·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별로 통합하여 일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개별 R&D 사업에 편성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17개 전문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만 기획평가관리비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21)]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평가관리비 통합은 사업비 변동으로 인한 기획평가관리비 재원의 불안정성 및 기획평가관리비의 인건비·경상비 활용으로 인한 인력 불안정성 해소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별도 사업으로 인건비·경상비를 확보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현재 관리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어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신설 시 일부 애로사항이 예상된다는 입장임.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나 정보통신기획평가원도 각각 별도 사업을 통하여 인건비·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각 연구개발사업에 분절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 편성하였고, 다른 전문기관도 여러 회계·기금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통합 기획평가관리비를 각 회계·기금에 편성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획평가관리비도 다른 주요 전문기관들과 같이 통합 관리하여 기획평가관리비가 여러 세부사업에 분절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총괄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1) 2022년에는 법령상 전문기관 및 기획평가관리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전문기관 15개에 출연되는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하였고, 2023년 이후 나머지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통합을 추진함.

넷째, 일부 전문기관의 관리대상사업 예산과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이 서로 다른 회계·기금에서 지원됨에 따라 회계와 기금의 혼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부 전문기관에서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를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①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일반회계 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기금 내에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음.

[기금 R&D 사업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인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세부사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액
국민건강증진기금	한국형수술질향상프로젝트(K-NSQIP)	6,667	6,667
국민건강증진기금	5G기반이동형 유연의료플랫폼 기술개발사업	743	743
합계		**7,410**	**7,410**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도 지원되고 있다는 입장인바, 기금 R&D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지원됨에도 기획평가관리비는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음.

②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반회계 외에 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기금 내에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음.

[기금 R&D 사업 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세부사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액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1,160	-
국민체육진흥기금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R&D)	800	800
국민체육진흥기금	개인운동기록활용기술개발(R&D)	-	5,725
합계		**1,960**	**6,525**

자료: 문화체육광광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회계 내 '기획평가관리' 사업을 통하여 기금사

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도 지원되고 있다는 입장인바, 기금 R&D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금으로 지원되나 기획평가관리비는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혼용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므로, 기금 R&D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는 해당 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른 전문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전문기관은 회계와 기금을 구분하여 R&D 예산이 편성된 해당 회계 및 기금에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예산안 편성 시 회계·기금 혼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22)]

다섯째,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에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통상 사업비 대비 사업단운영비의 비율이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편성되며, 사업단운영비는 다른 기획평가관리비와 통합 관리되지 않아 기획평가관리비의 총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도한 사업단 운영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것과 별도로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사업단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중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는 총괄 과제를 별도로 공모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별도 사업단이 구성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업무인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사업단이 대신 수행하게 되며, 전문기관은 사업단장 공모·사업단 구성 및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됨.

다부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별도 사업단 운영이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 사업단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음.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부분을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21개 세부사업은 별도의 사업단을

22) 참고로 기후대응기금의 경우에도 관리대상사업의 사업비는 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기획평가관리비는 각 전문기관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회계와 기금의 혼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 기후대응가금사업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기금 내 기획평가관리비 통합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관리대상사업 예산 8,636억 2,200만원의 35.96%인 3,105억 9,500만원에 달함.

그 중 사업단 운영비는 총 170억 8,600만원으로 사업비 중 5.50%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인 1.72%의 3.2배 수준임. 이러한 차이는 행정인력 운용이나 사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이 통합관리되는 전문기관과 달리 각 사업단별로 해당 비용이 지원되어야 하는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보건복지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운영 중인 별도 사업단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유형	2025 예산액	사업단명	2025 운영비 예산액	인원 수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R&D)	단독	21,605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1,564	24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다부처	29,144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1,800	3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R&D)	다부처	20,549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587	12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R&D)	단독	18,540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1,235	10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R&D)	단독	21,879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893	10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사업(R&D)	다부처	32,328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2,030	29
국가신약개발사업(R&D)	다부처	54,283	국가신약개발사업단	2,424	50
수요자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R&D)	단독	6,200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실증 연구 사업단	100	7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R&D)	단독	15,010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 기술개발 사업단	1,010	16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R&D)	단독	7,612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 사업단	492	5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R&D)	다부처	2,545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 사업단	231	9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R&D)	다부처	2,517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 사업단	200	4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유형	2025 예산액	사업단명	2025 운영비 예산액	인원 수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R&D)	단독	4,400	환자-의사 공유 의사결정 연구사업단	550	9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R&D	다부처	12,233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	900	16
마약·자살등정신건강관련사회문제대응기술연구(R&D	단독	4,000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	300	7
장애인노인자립생활을위한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R&D)	단독	8,725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단	100	15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R&D)	다부처	33,397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	1,681	43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R&D	다부처	2,281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 사업단	252	5
연합학습기반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K-MELLODDY)(R&D)	다부처	4,400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300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R&D)	단독	7,947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	297	7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R&D)	다부처	1,000	의료현장 감염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R&D) 사업단	140	2
합계		310,595	-	17,086	316

자료: 보건복지부

이를 고려할 때, 과도한 사업단 설치·운영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단 운영비가 다른 기획평가관리비와 통합 관리되지 않아 기획평가관리비의 총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가 제한되는 문제도 있음.[23)]

따라서 정부는 전문기관 외에 별도 사업단을 운영하여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기획평가관리비의 총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단 신설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공공·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밀착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사업단 설치·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및 평가

(가) 개요

①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24]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25]에 따라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실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26]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27]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28]

---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는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분함.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따르면 최종평가의 평가 시기는 연구개발 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30]

---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 ·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43쪽

·(평가 시기) 연구개발 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수행을 권고 ※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제출(시행령제18조제4항제3호)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연구개발비 정산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의 완료 기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의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완료 시점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 완료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에 따라 각 부처에서 고시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전문기관의 사용실적보고서의 정산 검토 완료를 협약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최종적으로 연구개발비 정산이 완료되고 국고에 납입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31]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정산금의 국고납입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문기관 단계에서의 정산 검토 완료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32]

그 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3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 검토해야만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3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⑥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은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연구개발비 정산 완료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을 진행하고 있거나, 규정하더라도 부처 간 그 시점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구비 정산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종료된 이후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반하여 정산금이 반납 기한(1개월)내에 국고로 반납되지 않았으므로, 연구개발과제 정산 이후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처분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정산금이 국고로 반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정산이 완료된 과제의 정산금이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6호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가 제한됨에도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회수 노력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됨.[33]

3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정산금 반납 기한 위반 사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정산이 완료된 과제 중 2021년도 종료과제의 정산금 6억 400만원, 2022년도 종료과제의 정산금 5억 7,000만원, 2023년 종료과제의 정산금 18억 8,300만원, 2024년 종료과제의 정산금 22억 2,800만원, 2025년도 종료과제의 정산금 58억 7,300만원 등 총 111억 5,800만원이 아직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이 완료된 이후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과제 중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26.5.31. 기준)

과제 종료연도	종료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국고반납 대상액	국고 반납액	국고 미반납액
2021	7,892	6	7,925	69,488	68,884	604
2022	9,566	16	9,589	68,057	67,487	570
2023	9,649	176	9,513	50,411	48,527	1,883
2024	10,390	431	9,957	18,706	16,477	2,228
2025	12,535	1,514	11,021	34,469	28,528	5,873
합계	**50,032**	**2,143**	**48,005**	**241,131**	**229,903**	**11,15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정산금 반납 기한 위반 사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2025년 말 기준 정산이 완료되어 회수가 필요한 연구개발비 약 25억원이 수납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2024년 10월 이후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이 완료된 이후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R&D 사업 정산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25.12.31. 기준)

기관명	부과년도	세부사업명	미수납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24.1
	2024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39.2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139.5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30.4
	2025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사업	0.8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3.0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45.3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119.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3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1.5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전력)	70.4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635.5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14.0
		원자력핵심기술개발	3.8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84.0
	2024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10.1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	0.1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	7.1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41.5
		에너지국제공동연구	33.5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57.2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122.6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1.4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 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8.0
	2025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혁신기술개발	19.6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1.6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30.7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창출 지원 사업	0.3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24.9
		선박용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	5.5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	25.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49.1
		에너지국제공동연구	33.4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195.6
		에너지인력양성	20.0
		원자력핵심기술개발	113.5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사업	2.2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 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0.3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탐사·활용 기술개발사업	6.9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	9.2

(단위: 백만원, 2025.12.31. 기준)

기관명	부과년도	세부사업명	미수납액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0.6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202.0
합계			2,315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정산금 반납 기한 위반 사례(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이 완료된 2021 ~ 2025년도 종료과제에 대하여 총 431억 6,900만원의 정산금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26.7. 기준)

과제 종료연도	종료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국고반납 대상액	국고 반납액	국고 미반납액
2021	4,225	0	4,225	11,000	8,682	2,307
2022	5,597	0	5,597	16,304	9,344	6,960
2023	5,608	1	5,607	16,206	7,987	8,219
2024	5,102	1	5,101	23,927	8,685	15,242
2025	4,701	80	4,621	14,044	3,603	10,441
합계	**25,233**	**82**	**25,151**	**81,481**	**38,301**	**43,16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정산금 반납 기한 위반 사례(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하 2개 전문기관의 2021~2025년 종료과제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71개 과제에서 34억 3,800만원의 정산금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음.

[2021~2025년 산업 분야 R&D 과제 정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26.6. 기준)

연구관리전문기관	과제 종료연도	정산완료 되었으나 미반납 금액이 있는과제	
		과제수	미반납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11	239
	2022	2	49
	2023	8	521
	2024	3	419
	2025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1	1	8
	2022	1	3
	2023	5	320
	2024	35	1,651
	2025	5	228
합계		71	3,438

자료: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셋째, 일부 연구개발과제는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제가 종료된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 이후에 최종평가가 완료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정부는 종료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이전에 최종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법정 의무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종보고서가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최종평가가 권고기한인 9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특히 2025년도 R&D 예산 집행액이 7,000억원 이상인 9개 중앙행정기관의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77,661개의 종료과제 중 67,869개의 과제만 법정기한인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으며, 최종평가대상 종료과제 45,147개 중 16,613개의 과제만 90일 이내에 최종평가가 완료되었음.

[2025년 R&D 예산 집행액 7,000억원 이상 부처의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현황]

(단위: 개)

부처명	연도	종료 과제[1]	종료 후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90일 이내 최종평가 완료 과제[2]	종료연도의 다음연도 6월 이후 최종평가 완료(예정)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6,276	6,165	1,617(2,072)	388
	2022	6,611	6,359	1,376(2,165)	337
	2023	6,329	6,042	1,232(2,138)	202
	2024	5,327	5,102	1,272(1,848)	91
	2025	4,392	4,168	971(1,349)	55
산업통상부	2021	897	592	145	337
	2022	1,458	1,167	460	533
	2023	1,434	1,270	184	610
	2024	1,761	1,234	165	954
	2025	1,617	1,173	139	695
방위사업청	2021	28	28	28	-
	2022	25	24	24	-
	2023	41	40	39	-
	2024	46	42	44	-
	2025	36	26	36	-
중소벤처기업부	2021	4,196	2,851	671	1,340
	2022	5,357	3,624	1,043	1,087
	2023	5,488	4,202	821	238
	2024	4,810	4,301	2,432	18
	2025	4,446	3,915	2,482	-

(단위: 개)

부처명	연도	종료 과제[1]	종료 후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90일 이내 최종평가 완료 과제[2]	종료연도의 다음연도 6월 이후 최종평가 완료(예정) 과제
교육부	2021	3,097	2,973	-(2)	-
	2022	2,385	2,192	1(1)	-
	2023	2,530	2,279	17(22)	-
	2024	2,021	1,665	52(78)	14
	2025	3,223	3,046	-(52)	8
보건복지부	2021	297	236	15(289)	111
	2022	545	506	198(544)	58
	2023	639	557	79(638)	214
	2024	392	373	72(383)	60
	2025	309	275	97(291)	47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257	248	127	5
	2022	173	155	35	18
	2023	167	149	22	12
	2024	165	137	28	5
	2025	180	148	56(178)	11
해양수산부	2021	76	75	76	-
	2022	104	98	104	-
	2023	95	94	95	-
	2024	115	114	115	-
	2025	45	45	45	-
우주항공청	2021	72	44	72	5
	2022	31	3	26	2
	2023	37	37	33	2
	2024	59	47	38(50)	-
	2025	72	48	29(70)	27
합계		77,661	67,869	16,613(45,147)	7,484

주 1) 종료과제는 해당연도 중에 협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과제를 의미
2) 종료과제 중 최종평가 대상이 아닌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최종평가 대상 과제 수를 별도로 표기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7,484개의 과제는 연도 중에 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최종평가 완료가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한(다음연도 5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최종평가 결과가 결산심사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평가가 완료되는 경우 결산 심사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34]

34) 「국가재정법」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가 의무·권고 기한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가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지급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현황 점검 필요

(가)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35]

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그에 수반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와 국가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 외에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함)가 존재함.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③ 전문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37]

---

35)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6.9. 제정)의 제정이유를 참고하여 작성함.

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3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별표1]에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은 연구개발기관의 형태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의 상한을 50 ~ 75%로 규정하면서도 '비고 1'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아닌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시에 근거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정부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의 상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하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은 연구개발기관의 형태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의 상한을 50 ~ 75%로 규정하면서도 비고 1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①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및 [별표 4] 제1호에서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상향 지원하고 있음.[39][40]

>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39)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 중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장치·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장치·서비스의 성능평가·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7조(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영 제19조제3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별표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② 다음 산업통상부의 경우 산업통상부고시인「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4조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상향 지원하고 있음.[41]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 · 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협의 절차는 실무상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협의를 의미하며, 문제가 된「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소관의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추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2차관 산하 사업부서 사이의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41)「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②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고시 정한「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제6호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고, 제7호에서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3.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4.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개정 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1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1에 따른 협의를 통한 정부지원비율 조정이 곧 하위법령인 행정규칙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결과적으로 각 행정규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계 법령의 위임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높이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므로, 정부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의 상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하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에 근거하여 정부 지원비율을 100%로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면제 요건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사실상 우회한 것이므로, 면제와 조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각 호에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지원비율을 100%로 조정하는 것은 그 실질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면제와 동일하며, 이를 비고 1의 조정 권한으로 허용한다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정 권한을 활용하여 면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면제 요건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제19조제2항이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됨.

실제로 산업통상부는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 내 일부 과제에 대하여 정부 지원비율을 100%로 조정하기도 하였으며,[42] 과학기술정

5.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6.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7.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산업연관효과 또는 도전성이 큰 연구개발과제(초고난도 과제, 챌린지 트랙 및 혁신도전형 과제)
8. 대형통합형 과제
9. 서비스형 과제(별표 4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연구개발과제)
10.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11. 기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보통신부는 ‘AI챔피언프로젝트지원사업(R&D)’ 사업 추진 시 정부지원비율을 100%로 조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면제와 조정을 구분하여 규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43]

따라서 비고 1에 근거한 정부 지원비율 100%로의 조정은 제19조제2항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면제와 조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2)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해당 사업의 결과물 ‘표준’은 참여기관의 소유가 아닌 공공재로 국가소유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43) 관련 내용: 부처별 검토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2) AI챔피언프로젝트지원사업(R&D) 사업(신규, 종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 부적정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가) 개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임.[44]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관련 기술료 사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과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4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정부지분기술료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100분의 10 이상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6]

---

4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기업 관련 기술료 징수 규정

또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은「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7)]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48)]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의 일부분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함.[49)]

---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7)「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8)「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9)「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①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

(나) 검토의견

첫째, 여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술료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각 부처의 직할 연구기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은 기술료 사용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사용 규정 미준수 사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5년도 기술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 외에는 모두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실적이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②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은 참여연구원 보상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③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철도기술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한국화학연구원・국가독성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에 대한 활용 실적이 1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 비율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5년 기술료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5년 기술료 사용								
	전문기관 납부	참여연구원 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 경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기타	소계
합계	**85**	**68,608**	**2,462**	**28,322**	**12,564**	**12,124**	**15,884**	**237**	**140,28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5,066	-	2,436	4,000	2	1,321	3	12,828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	-	-	-	-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412	1	57	-	29	60	-	55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518	33	119	-	845	147	-	1,66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630	111	113	10	17	73	-	954
한국한의학연구원	-	117	33	6	-	1	11	-	16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4,975	833	363	742	698	1,399	-	9,0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33,045	684	16,927	1,455	6,207	6,472	-	64,79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1,373	50	198	-	10	221	63	1,9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543	74	192	-	255	368	37	2,46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649	-	871	64	135	214	-	2,93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086	30	589	135	5	330	-	2,175
한국식품연구원	-	499	6	68	93	149	319	3	1,137
세계김치연구소	-	403	68	68	53	7	11	-	6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204	-	-	174	163	208	-	1,749
한국기계연구원	27	3,539	45	450	700	604	600	17	5,98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907	-	1,542	-	410	2,235	-	6,094
한국전기연구원	-	3,028	-	1,447	37	1,048	341	-	5,901
한국화학연구원	54	3,839	10	2,001	-	593	335	99	6,931
국가독성과학연구소	-	61	43	-	-	4	-	1	109
한국원자력연구원	-	954	367	444	4,902	377	509	13	7,566
한국재료연구원	4	2,364	-	230	199	532	669	1	3,99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396	74	201	-	33	41	-	745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료 사용 규정 미준수 사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한 사례가 없고, 2023 ~ 2025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50% 미만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료 사용 현황(2022 ~ 2025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025이전: 50%.이상, 2025 이후: 60%이상)	8.5	50	2.0	21.5	10.0	47.1	7.9	47.2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15%이상)	8.5	50	7.3	78.5	11.2	52.9	8.8	52.8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10%이상)	-	-	-	-	-	-	-	-
그 외	-	-	-	-	-	-	-	-
합 계	17	100	9.3	100	21.2	100	16.8	10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③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료 사용 규정 미준수 사례(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한 사례가 없고, 2025년에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를 위한 집행이 15% 미만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 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5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료 사용 현황(2022 ~ 2025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025이전: 50%.이상, 2025 이후: 60%이상)	365.6	41.7	1,306.4	73.9	1,810.1	67.0	8,720.3	90.3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15%이상)	241.7	27.5	393.6	22.3	544.0	20.1	905.8	9.4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10%이상)	-	-	-	-	-	-	-	
그 외	270.3	30.8	68.2	3.9	346.6	12.8	31.5	0.3
합 계	877.6	100.0	1,768.2	100.0	2,700.7	100.0	9,657.6	100.0

자료: 우주항공청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마다 재정상황, 기술료 수입 규모 및 사업화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임.[51]

50)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항목별 재원은 법령 기준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적립・관리하고 있으나 집행 사유 발생 시 집행하고 있어 집행 시점의 차이로 사용 비율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특히 2025년은 누리호 기술이전에 따른 연구자 보상금 급증으로 집행 비율의 착시가 크게 발생했다는 입장임.

각 기관별로 기술료 사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각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의무 강화를 위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상기술료는 기업들의 '과제 관련 사업화매출액'과 '기술기여도'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차년도 6월 30일까지 기업들이 제출한 과제 관련 사업화 매출액 등이 기재된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기술료를 부과함.[52]

그러나 산업통상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1~2025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전체 기업 중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산업통상부의 경상기술료 관련 매출실적보고서 제출/미제출 현황]

(단위: 개사)

연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수(A=B+C)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기업수(B=a+b)			미제출 기업수(C)
		계(B)	기한 내 제출(a)	기한 경과 제출(b)	
2021	1,109	1,015	435	580	94
2022	1,401	1,261	380	881	140
2023	1,512	1,327	598	729	185
2024	1,269	1,131	642	489	138
2025	1,193	1,116	1,064	52	77

자료: 산업통상부

51) 구체적으로 각 기관들은 ①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부재하거나 연구자 주도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기여자 선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이 있어 해당 목적으로 기술료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 ②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사유로는 집행 시점이 여러 해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연도별 집행 내역을 보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보상금 산정 시 기관매출액을 제외한 사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있었음.

5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법정기한 내에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기업의 법령상 의무 위반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 강화를 위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술료 산정기준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술가치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여 기술료가 과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5년 7월에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발사체 기술의 일부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기술이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 협상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규는 기술이전 기술료 산정 시 대상기술의 개발에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참고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R&D 특성상 기술의 가치가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가치가 정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입비용에 근거하여 기술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이러한 내규와 그간 이루어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비교해 보면, 그 기술료가 직접비의 특정 비율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기술이전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다면 협상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예상하는 특정 수준의 기술료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②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그간 기술이전 시 기술가치평가를 단일 기관으로부터 받아 왔으나,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이전 건과 같이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복수의 기술가치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기술가치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향후 특정 규모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③ 지원된 국비 규모(약 2조원)를 고려하면 기술료 규모(240억원)가 과소해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종 기술료 규모가 연구개발직접비의 2% 수준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규모인 직접비 대비 1~2% 수준과 유사하여

적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기술은 그 전략적 가치·희소성 및 향후 성장가능성 등에 비추어 통상의 연구개발사업과는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성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향후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기술이전 과정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금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료 협상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향후 기술이전 시 국가기관의 협상력 제고 및 적정 국고수익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R&D 자금에 기반한 재정 외 펀드 관리 강화 필요 등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가 각각 전담은행과 협약을 통해 재정 외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펀드 및 산업기술혁신펀드는 공적 역할 등을 감안하여 국회에 운영 실적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의 R&D 전담기관은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R&D자금 전담은행을 각각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전담은행이 저리로 R&D자금을 예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전담은행들이 각각 과학기술혁신펀드 및 산업기술혁신펀드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53]

① 과학기술혁신펀드의 경우 협약은행들은 4년간(2025~2028년) 총 4,940억원 규모의 모(母)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자펀드를 결성·운용할 예정으로, 2025년 1,235억원이 출자되어 2026년 5월말 7,652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되었으며, 펀드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사전 검토기구인 전문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② 산업기술혁신펀드의 경우 협약은행들은 2021년 900억원, 2022년 1,000억원, 2023년 1,600억원, 2024년 1,600억원, 2025년 890억원을 출자하였고 출자된 자금들은 다시 민간투자자들의 자금과 매칭되어 자펀드를 결성해 투자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점검·관리함.

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 국회는 정책펀드사업의 관리를 위해 투자완료금액 및 미투자금액들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이후 관련 부처는 펀드 실적 등을 보고하고 있으나 재정 외로 운용되는 과학기술혁신펀드 및 산업기술혁신펀드는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54]

또한 2026년 3월 11일 「국가재정법」 제53조의2가 신설되어 정책펀드(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53) 과학기술 자금의 경우 전담은행의 MMDA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자금의 경우 전담은행의 MMDA 금리 평균을 적용하고 있음.

54) 정부는 각종 펀드출자 사업의 연말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출자 사업의 미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의 운용실적과 성과를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의 재투자 계획·해당연도의 회수재원 현황·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의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과학기술혁신펀드 및 산업기술혁신펀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55]

그러나 은행의 출자금은 정부 R&D자금의 예치 및 운용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각 부처가 각 혁신펀드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적인 책임하에 펀드를 점검·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전담은행의 약정이행 여부·펀드의 목적 달성 여부·펀드 운용 및 투자 실적 등에 대한 국회 보고를 통해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는 재정으로 출자되는 정책펀드와 동일하게 과학기술혁신펀드 및 산업기술혁신펀드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음.[56]

둘째,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추진 시 양국 공동평가체계 마련에 따른 과제 선정지연,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지연 및 국내외공동연구기관의 과제 포기 등으로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각 중앙행정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지연, 국내연구기관과 해외연구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지연, 국내외공동연구기관의 과제 포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일부 확인됨.

① 과제 선정 지연 및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지연 사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3개의 일반형 과제와 11개의 별도과제형 과제의 연내 집행률이 60%이하로 저조하였음.

이 중 3개의 일반형 과제의 경우 국내연구기관과 해외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55) 「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산업통상부는 국회 요청 시 펀드 운영 현황 및 관련 실적 등을 성실히 보고하겠다는 입장임.

지연으로 인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제공동연구비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음.

또한 11개의 별도과제형 과제는 각 국이 자국의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과제인데 양국간 공동 평가 운영체계를 통한 과제 선정 절차를 거치면서 지연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② 과제 선정이 지연된 사례(산업통상부)

2025년 산업통상부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국제협력 R&D 과제 중 14개 과제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약체결 등이 지연되었으며, 연도 말에서야 관련 자금이 배정되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상대국의 예산 환경 변화,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2025년은 특히 독일·프랑스·체코 및 싱가포르와의 과제 확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③ 국내외공동연구기관의 중도 포기로 과제가 중단된 사례(산업통상부)

2025년 산업통상부가 추진한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사업 내 5개 과제가 연도 중 중단되었는데, 이 중 2개 과제가 국외공동연구기관의 과제 포기 및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으며, 2개 과제는 국내공동연구기관의 경영악화 및 수행지연으로 중단되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국내연구기관 선정 시 정해진 재무건전성 요건과 전문가 검토(회계사)를 통해 경영 부실기업은 사전에 제외하고 있으며, 국외연구기관 선정은 해당국 정부가 검토하여 결과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와 같이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정부는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함에 있어 상대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공동평가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충분한 수준의 연구역량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외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국제개발협력(ODA) 사업[1)]

가. 개 요

(1) ODA 개념 및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라 함)란 한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수원국)의 경제개발·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증여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임. 다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ODA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수원국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는 다자원조로 나뉘고, 양자원조는 다시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유상 ODA와 무상 ODA로 구분됨.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1)]가 ODA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유상 ODA를, 외교부는 무상 ODA를 주관함.

ODA 시행기관은 주관기관 감독하에 ODA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기관들인데, 유상 ODA는 재정경제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가 시행하고, 무상 ODA는 외교부 감독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 41개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

[ODA 형태별 담당기관 현황]

ODA 형태		법적 근거	주관기관(시행기관)	총괄기관
양자원조	유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재정경제부(EDCF)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KOICA) 등 41개 개별기관 (7개 지방자치단체 포함)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개별 법률 등	외교부 등 18개 개별기관	

자료: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문의: 02-6788-5696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함.

(2)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현행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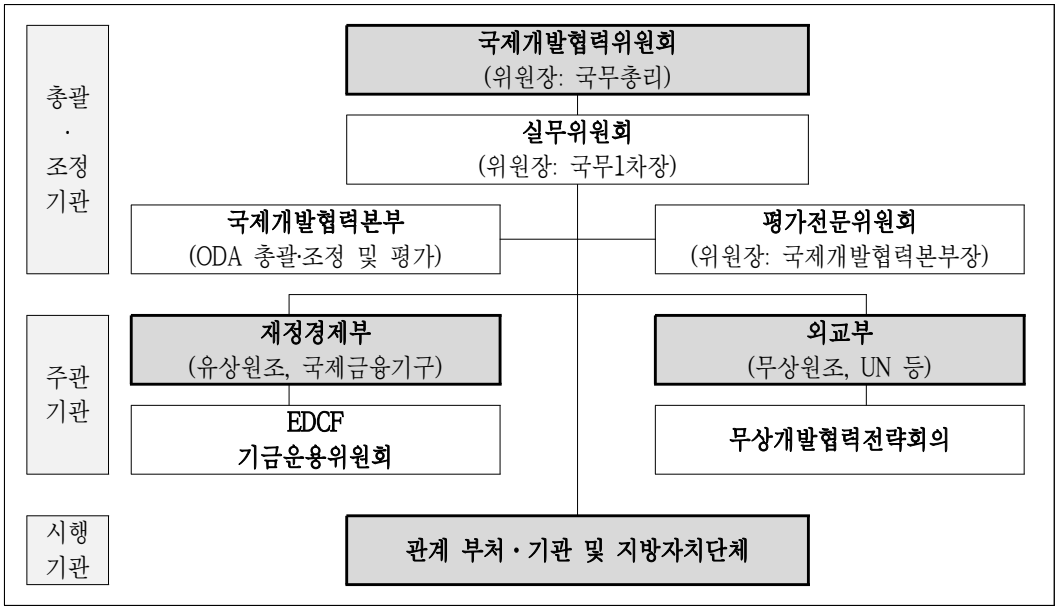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ODA 총괄·조정기관으로서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 ODA와 무상 ODA의 주관기관으로서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을 점검함.

재정경제부는 유상 ODA 주관기관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무상 ODA 주관기관으로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무상개발협력실무회의,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통해 사업을 심사·조정하고 있음.

시행기관으로는 해당 사업의 관계부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데, 기관별로 사업 추진 과정 및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준비, 심사, 승인, 시행,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쳐 추진됨.

[ODA 정책 추진 체계]



자료: 「2024년 대한민국 ODA 백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사업계획 및 조정절차

우리나라 ODA 관련 주요 정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년 3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26년 5월까지 총 5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등 ODA 주요 정책을 의결하였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시행기관은 이에 따라 개별 사업을 발굴함. 시행기관이 발굴한 ODA 사업은 주관기관의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연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에 반영되고,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사업내용·예산이 다시 연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포함되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최종 확정되어 추진됨.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 심의 절차]

①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2월, 주관기관 → 각 부처
↓	
② 시행계획안 수립 및 제출	3월, 각 부처 → 주관기관
↓	
③ 시행계획안 협의·조정	4월, 주관기관
↓	
④ 분야별(유·무상)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4월 말,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	
⑤ 분야별 시행계획안 조정·심사	5월, 국무조정실
↓	
⑥ 연간 종합시행계획안 심의·의결(요구액 기준)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⑦ 조정결과를 반영한 예산요구서 제출	7월, 각 부처 → 기획예산처
↓	
⑧ 예산안 편성 및 심의	7~12월, 국회·기획예산처
↓	
⑨ 확정예산을 반영한 연간 종합시행계획안 수립·제출(확정액 기준)	12월,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자료: 「2024년 대한민국 ODA 백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ODA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사업은 다음 연도 ODA 시행계획에서 제외하고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미리 조정하며, 유무상 사업 간 또는 무상사업 간 연계를 검토하고 있음.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서는 총 164건 309개 사업의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이 이루어졌음.

[연도별 사업 간 연계 및 중복방지 실적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단위: 건,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유무상 연계	건 수	10	15	12	12	24	29	36	33	39	**48**
	사업 수	21	45	33	28	67	79	88	62	80	**81**
무상간 연계	건 수	16	7	12	38	88	108	59	89	91	**107**
	사업 수	38	17	27	77	193	259	154	215	200	**219**
중복 방지	건 수	14	16	10	11	11	3	3	6	14	**9**
	사업 수	30	56	21	23	23	3	4	17	14	**9**
합계	건 수	40	38	34	61	123	140	98	128	144	**164**
	사업 수	89	118	81	128	293	341	246	294	294	**309**

자료: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4) 2025년도 ODA 현황

(가) ODA 규모

2025년 ODA 총 예산액은 6조 5,010억원으로, 전년도 6조 2,629억원 대비 2,381억원(3.8%) 증가하였음. 이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6조 4,000억원 공여 달성' 이라는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임.

ODA 규모 증가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5~10%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21.3%, 2024년에는 31.1%로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3.8% 수준으로 둔화되었음.

유형별로 보면 양자협력이 5조 4,451억원, 다자협력이 1조 559억원으로 84:16의 비율로 추진되었고, 양자협력 중 유상협력이 2조 1,500억원, 무상협력이 3조 2,951억원으로 40:60의 비율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양자협력 비율은 1.9%p, 무상협력 비율은 0.1%p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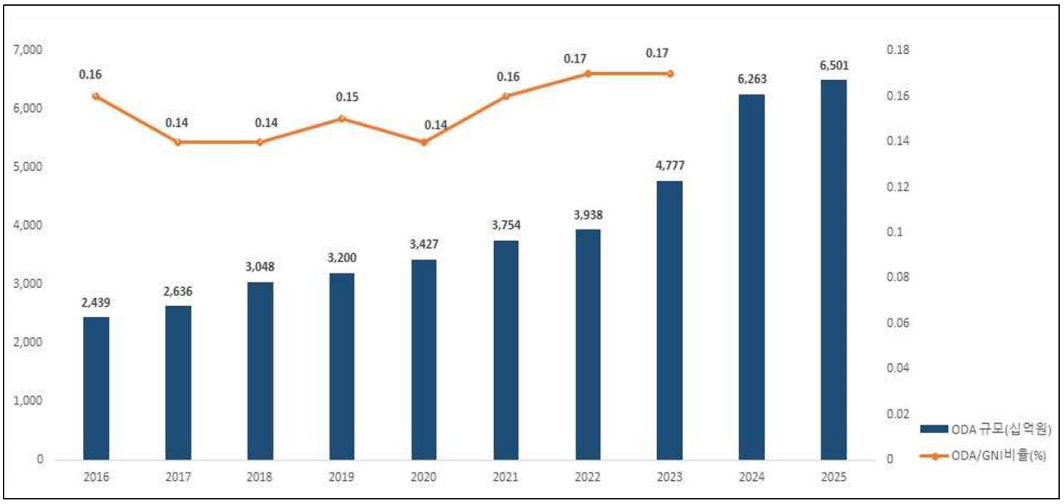
[2020~2025년 ODA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양자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1,282 (81.9)	54,451 (83.8)
유상	11,84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20,320 (39.6)	21,500 (39.5)
무상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0,962 (60.4)	32,951 (60.5)
다자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347 (18.1)	10,559 (16.2)
합계 (총 ODA)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65,010**
전년도 대비 증감액(증감률)	2,267 (7.1)	3,273 (9.6)	1,840 (4.9)	8,388 (21.3)	14,858 (31.1)	2,381 (3.8)

자료: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16~2025년 ODA 규모 변화]



자료: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OECD 잠정통계 기준 우리나라 ODA 총지출 규모는 38억 7,000만달러로, 이는 OECD DAC[2] 33개 회원국 중 13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OECD DAC 33개 회원국의 ODA/GNI 비율 평균은 0.26%였으며,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20%로 OECD DAC 회원국 중 22위에 해당하는 비율임.

[ODA 지출 추이 및 ODA/GNI 비율 변동]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대한민국 ODA 지출	총지출	3,157	3,060	3,493	4,030	3,870
	전년대비 증가율	30.2	△3.1	14.2	15.3	△3.9
	OECD DAC 순위	14위	15위	13위	13위	13위
ODA/GNI 비율	대한민국	0.16	0.17	0.17	0.21	0.20
	OECD DAC 평균	0.33	0.37	0.37	0.33	0.26
	OECD DAC 순위	26위	29위	29위	25위	22위

주 1) 2025년은 OECD 잠정통계 기준
2) 2025년 확정 통계는 2027년 1월(확정) 발표 예정
3) ODA/GNI 비율 산정시 분자인 ODA 실적은 OECD 통계지침에 따라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산출
자료: 국무조정실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주요 분야별 37개 위원회의 하나로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의 대표적인 협의체

(나) 양자협력 분야

① 지역별 실적

양자협력 분야를 지역별로 보면, 2025년도 우리나라 ODA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각각 1.6%p, 0.2%p 증가한 33.4%, 18.5%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중동·CIS 지역 및 중남미의 지역별 비중은 각각 8.1%, 7.1%로 전년 대비 1.1%p, 0.8%p 감소하였음.

[2020~2025년 지역별 ODA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오세아니아	기타	합계
2020년	10,928	4,970	1,362	1,748	155	8,586	27,749
	(39.4)	(17.9)	(4.9)	(6.3)	(0.6)	(30.9)	(100.0)
2021년	11,661	5,403	1,601	2,091	129	7,933	28,818
	(40.5)	(18.7)	(5.6)	(7.3)	(0.4)	(27.5)	(100.0)
2022년	11,899	6,047	1,648	2,478	220	9,907	32,199
	(37.0)	(18.8)	(5.1)	(7.7)	(0.7)	(30.8)	(100.0)
2023년	14,128	7,126	1,502	2,770	248	10,965	36,739
	(38.5)	(19.4)	(4.1)	(7.5)	(0.7)	(29.8)	(100.0)
2024년	16,321	9,396	4,719	3,936	400	16,510	51,282
	(31.8)	(18.3)	(9.2)	(7.7)	(0.8)	(32.2)	(100.0)
2025년	18,194	10,059	4,417	3,870	567	17,344	54,451
	(33.4)	(18.5)	(8.1)	(7.1)	(1.0)	(31.9)	(100.0)

주) 국제기구 기여금 별도(2025년도 총 64개 기구, 1조 559억원)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② 분야별 실적

2025년 ODA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 분야가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교통, 공공행정, 보건, 에너지, 교육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인도적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전 세계의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호·복구 및 추가 재난예방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대비 지원규모가 7,342억원(437.8%) 증가하였고, 전체 대비 비중도 10.6%p 증가하여 전체 규모 확대 추세 대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2020~2025년 분야별 ODA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인도적 지원	교통	공공 행정	보건	에너지	교육	농림 수산	수자원 및 위생	환경 보호	산업	통신	기타	합계
2020년	1,677 (6.0)	3,764 (13.6)	2,328 (8.4)	2,773 (10.0)	2,445 (8.8)	2,886 (10.4)	2,734 (9.9)	- (-)	2,194 (7.9)	- (-)	- (-)	6,949 (25.0)	27,750
2021년	1,930 (6.7)	4,413 (15.3)	2,187 (7.6)	3,358 (11.7)	1,851 (6.4)	2,847 (9.9)	2,497 (8.7)	2,318 (8.0)	985 (3.4)	645 (2.2)	158 (0.5)	5,628 (19.5)	28,817
2022년	3,163 (9.8)	4,224 (13.1)	2,472 (7.7)	4,250 (13.2)	1,894 (5.9)	2,933 (9.1)	2,398 (7.4)	2,486 (7.7)	836 (2.6)	820 (2.5)	234 (0.7)	6,489 (20.2)	32,199
2023년	4,036 (11.0)	4,816 (13.1)	2,974 (8.1)	4,733 (12.9)	1,482 (4.0)	3,233 (8.8)	2,550 (6.9)	2,047 (5.6)	1,453 (4.0)	1,020 (2.8)	703 (1.9)	7,691 (20.9)	36,738
2024년	8,965 (17.5)	7,706 (15.1)	4,434 (8.6)	4,592 (9.0)	3,044 (5.9)	3,556 (6.9)	2,928 (5.7)	2,407 (4.7)	1,648 (3.2)	1,127 (2.2)	647 (1.3)	10,174 (19.8)	51,282
2025년	9,019 (16.6)	7,735 (14.2)	4,166 (7.7)	3,957 (7.3)	3,859 (7.1)	3,783 (6.9)	3,396 (6.2)	2,983 (5.5)	1,572 (2.9)	1,016 (1.9)	1,003 (1.8)	11,963 (22.0)	54,451

주 1) 2020년: 에너지 = 에너지 + 산업
2) 국제기구 기여금 별도(2025년도 총 64개 기구, 1조 559억원)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③ 형태별 실적[3)]

2025년에는 프로젝트 사업(4조 431억원, 74.3%)을 중심으로 프로그램(5,070억원, 9.3%), 연수사업(2,012억원, 3.7%), 봉사단 파견(1,474억원, 2.7%)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순서는 전년과 동일하였음.

한편 프로젝트 사업은 2020년 대비 지원 규모가 2조 2,601억원(증가율 126.8%), 전체 대비 비중이 10.1%p 증가하여 전체 규모 확대 추세 대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2020~2025년 형태별 ODA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수사업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	개발 컨설팅	행정비용	기타 기술협력	기타	합계
2020년	17,830 (64.2)	1,253 (4.5)	1,521 (5.5)	1,570 (5.7)	759 (2.7)	1,075 (3.9)	323 (1.2)	416 (1.5)	3,003 (10.8)	27,750
2021년	20,174 (70.0)	732 (2.5)	1,385 (4.8)	921 (3.2)	794 (2.8)	986 (3.4)	392 (1.4)	505 (1.8)	2,931 (10.2)	28,820
2022년	21,387 (66.4)	1,190 (3.7)	1,572 (4.9)	1,184 (3.7)	811 (2.5)	934 (2.9)	420 (1.3)	215 (0.7)	4,486 (13.9)	32,199
2023년	24,704 (67.2)	5,274 (14.4)	1,589 (4.3)	1,059 (2.9)	873 (2.4)	854 (2.3)	452 (1.2)	72 (0.2)	1,862 (5.1)	36,739
2024년	32,559 (63.5)	10,576 (20.6)	1,917 (3.7)	1,343 (2.6)	1,115 (2.2)	1,022 (2.0)	495 (1.0)	105 (0.2)	2,150 (4.2)	51,282
2025년	40,431 (74.3)	5,070 (9.3)	2,012 (3.7)	1,474 (2.7)	1,312 (2.4)	1,034 (1.9)	551 (1.0)	65 (0.1)	2,502 (4.6)	54,451

주 1) 연수사업: 장학 지원 포함
2) 국제기구 기여금 별도(2025년도 총 64개 기구, 1조 559억원)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3) ODA 사업 유형
- 프로젝트: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 등
- 프로그램: 수원국의 개발계획 일반 또는 특정 분야 개발계획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
- 연수사업: 수원국 국민을 국내에 초청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식·기술 전수
- 봉사단 파견: 파견기간, 사업명칭, 파견대상자와 무관하게 소정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유형의 사업
- 민관협력: 국내·외 NGO에 대한 지원
- 개발컨설팅: 수원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정책자문 등 기술용역 제공
- 행정비용: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으로 사업별로 포함되지 않는 순수 행정비용에 해당
- 기타 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이외의 기술협력(국내외 교육성 워크샵 개최, 사전타당성조사, 평가 등)

(다) 다자협력 분야

2025년 다자협력 분야는 총 64개 기구 대상 1조 559억원 규모였고, 이 중 6,605억원은 세계은행 등 8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었으며, 3,953억원은 UN 등 56개 기구에 대한 기여였음.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여 6,605억원 중 세계은행에 대한 기여는 3,863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다자협력 분야 전체 ODA 실적은 감소(△6.9%)한 것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UN 및 기타기구에 대한 기여 3,953억원 중 UN 5대 중점협력기구[UNDP(유엔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UNHCR(유엔난민기구), WHO(세계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는 1,068억원으로,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음.

[2020~2025년 다자협력 분야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제금융기구	4,723	6,050	5,798	7,488	7,220	6,605
세계은행(WB)	2,690	3,512	3,170	5,168	3,855	3,863
UN 및 기타기구	1,796	2,233	2,428	3,544	4,127	3,953
UN 5대 중점협력기구	311	348	316	426	1,068	1,068
합계	**6,519**	**8,283**	**8,226**	**11,032**	**11,347**	**10,559**

주) UN 5대 중점 협력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UNHCR(유엔난민기구), WHO(세계보건기구)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5) 2025회계연도 회계·기금별 ODA 사업 결산

2025회계연도 정부 ODA 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7개), 기금(4개)에 총 17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현액 6조 4,548억 3,200만원[4] 중 6조 1,856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106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85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2%보다 0.6%p 높은 것임.

[2020~2025회계연도 ODA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2020년	34,285	30,857	29,334	215	1,308	95.1
2021년	36,751	37,384	35,852	209	1323	95.9
2022년	39,367	38,509	37,759	253	496	98.1
2023년	45,242	45,496	43,279	246	1,971	95.1
2024년	63,130	63,390	60,329	168	2,893	95.2
2025년	65,795	64,548	61,857	106	2,585	95.8

주 1) 세부사업명 뒤에 '(ODA)'가 부기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 미포함
3) '(ODA)'가 부기된 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이 ODA 사업인 경우, 사업예산이 ODA 계상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액수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총 ODA 규모와 ODA 사업 결산 현황에 차이 발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회계·기금별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액 기준으로 일반회계 4조 408억 7,500만원(65.3%), 특별회계 639억 1,600만원(1.0%), 기금 2조 808억 9,300만원(33.7%)이었음.

지출액 규모 기준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순으로 나타났고, 기금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으로 나타났음.

4) 이는 세부사업명에 '(ODA)'가 부기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된 예산현액으로서, 편성된 예산이 ODA 계상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인정되거나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ODA 예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의 총 ODA 규모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예산액 및 예산현액에 차이가 발생함.

[2025년 회계·기금별 ODA 사업수 및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일반회계	143	4,133,073	4,074,513	4,040,875	1,064	32,574
특별회계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44,958	47,715	41,288	5,606	821
	환경개선특별회계	4	10,775	10,775	10,642	-	13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3,866	3,866	3,612	-	254
	조달특별회계	1	2,644	2,644	2,398	214	3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2,395	2,395	2,395	-	-
	우편사업특별회계	1	2,017	2,017	2,017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	2,360	2,360	1,564	645	151
기금 (4)	대외경제협력기금	12	2,236,561	2,167,689	1,940,035	3,110	224,544
	전력산업기반기금	1	86,163	86,163	86,163	-	-
	기후대응기금	1	47,145	47,145	47,145	-	-
	방송통신발전기금	1	7,550	7,550	7,550	-	-
합계		**171**	**6,579,507**	**6,454,832**	**6,185,684**	**10,639**	**258,510**

주 1) 세부사업명 뒤에 '(ODA)'가 부기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 미포함
3) '(ODA)'가 부기된 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이 ODA 사업인 경우, 사업예산이 ODA 계상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액수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총 ODA 규모와 ODA 사업 결산 현황에 차이 발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2025회계연도 부처별 ODA 사업 결산

2025년 ODA 사업이 편성된 총 34개 기관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액 규모로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나타났음.

[2025년 부처별 ODA 사업수 및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외교부	일반회계	45	2,809,310	2,748,051	2,727,795	-	20,256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10	404,090	404,351	401,423	-	2,928
	기후대응기금	1	47,145	47,145	47,145	-	-
	대외경제협력기금	12	2,236,561	2,167,689	1,940,035	3,110	224,544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3	272,317	274,417	274,414	-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	-	-	-	-
교육부	일반회계	3	166,774	166,774	163,115	-	3,659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0	105,480	105,480	105,293	-	187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1	4,356	4,356	4,356	-	-
	환경개선특별회계	4	10,775	10,775	10,642	-	133
	전력산업기반기금	1	86,163	86,163	86,163	-	-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5	50,729	50,729	50,726	-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2,395	2,395	2,395	-	-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1	43,843	43,843	43,683	-	160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44,958	47,715	41,288	5,606	82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4	35,665	35,646	34,945	-	701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1	33,345	33,345	33,343	-	2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2	26,251	26,267	26,256	-	11
산림청	일반회계	2	26,497	26,497	26,148	-	3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7	15,291	15,291	15,291	-	-
	우편사업특별회계	1	2,017	2,017	2,017	-	-
	방송통신발전기금	1	7,550	7,550	7,550	-	-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1	19,792	19,792	19,792	-	-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3	18,510	18,510	18,462	-	48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7	17,578	17,578	17,354	-	22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일반회계	8	12,532	12,532	12,105	-	427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1	13,113	13,112	10,712	-	2,400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10	8,844	8,936	8,864	-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	2,360	2,360	1,564	645	151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2	10,023	10,013	9,975	-	39
관세청	일반회계	2	11,026	10,827	9,214	1,064	550
기상청	일반회계	2	7,580	7,577	7,575	-	1
국가데이터처	일반회계	2	7,578	7,578	7,332	-	246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3	5,768	6,305	6,214	-	91
지식재산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3,866	3,866	3,612	-	254
경찰청	일반회계	1	3,015	3,015	2,844	-	171
법무부	일반회계	2	2,659	2,683	2,650	-	33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1	2,644	2,644	2,399	214	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1	408	321	318	-	4
감사원	일반회계	1	270	270	269	-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1	250	250	248	-	2
국세청	일반회계	1	100	89	86	-	3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1	79	78	77	-	1
합계		**171**	**6,579,507**	**6,454,832**	**6,185,684**	**10,639**	**258,510**

주 1) 세부사업명 뒤에 '(ODA)'가 부기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 미포함
3) '(ODA)'가 부기된 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이 ODA 사업인 경우, 사업예산이 ODA 계상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액수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총 ODA 규모와 ODA 사업 결산 현황에 차이 발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정부는 2021년 1월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음.[5)]

이후 2022년 6월에는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을 통해 5년 안에 총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고, 2022년 9월에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ODA 예산을 포함한 외교·통상부문 예산을 연평균 6.3% 증가시켜 2026년에는 5조 6,404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음.[6)]

[2022~2026년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분야	59,543	63,880	67,299	69,632	71,604	4.7
○ 외교·통상부문	**44,180**	**49,020**	**52,133**	**54,446**	**56,404**	**6.3**
○ 통일부문	15,363	14,860	15,166	15,186	15,200	△0.3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2022년 3조 9,383억원이었던 ODA 규모는 2025년에 6조 5,010억원까지 증가하여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6조 4,000억원 공여 달성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하였음.

---

5)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여건이 양호하지는 않으나, 중견 공여국으로서 책무 및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등 감안 ODA 규모 확대 기조 유지
* '19년 대비 '30년까지 ODA 규모 2배 이상 확대(오사카 G20 정상회의, '19.6.)
○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가 종료되는 '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 추진

6)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
□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
○ (규모 확대) G10 위상에 걸맞게 공적 재원의 양적 확충* 및 민·관 재원 융합 등 재원 다양화**를 통해 총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
* ('21년) 우리 ODA 총규모는 28.6억불(29개 회원국 중 15위), ODA/GNI는 0.16%(25위)
** (공공재원 ODA) 저소득국·최빈국 위주/ (민·관 융합) 대규모 인프라 수요 많은 중소득국 이상

[2020~2025년 ODA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ODA 규모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65,010**
전년도 대비 증감액(증감률)	2,267 (7.1)	3,273 (9.6)	1,840 (4.9)	8,388 (21.3)	14,858 (31.1)	2,381 (3.8)

자료: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그러나 2025년 ODA 총규모는 정부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5년 외교·통상부문 전체 투자계획인 5조 4,446억원의 119.4%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실제 ODA 사업 확대 규모가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초과하였음을 보여줌.

또한 2025년 ODA 총규모는 2022년 이후 매년 약 18%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외교·통상부문 투자계획의 연평균 증가율(6.3%) 및 2022~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2.5~8.9%)을 상회하였음.

이에 따라 예산 편성에서는 실수요·집행가능성 및 사업관리비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사업간 과다한 예산 전용·조정이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편성측면: 실수요·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출연금 집행잔액의 연례적 과다 발생(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출연금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집행잔액은 모두 이월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향후 여건변화 및 실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 소요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3~2025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출연금(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개도국개발협력(ODA) 사업)이 주된 수입원으로 2023년 502억 1,700만원, 2024년 643억 8,700만원, 2025년 728억 2,100만원의 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전년도 사업비(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매년 전액 이월되어 2023년 262억 5,500만원, 2024년 151억 6,300만원, 2025년 114억 7,500만원의 이월금이 자체수입으로 처리되었음.

[2023~2025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수입	2024년 수입	2025년 수입
정부지원	출연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	12,263	12,170	12,018
		개도국개발협력(ODA) 사업(사업출연금)	37,954	52,217	60,803
	보조금		140	-	-
	합 계		50,357	64,387	72,821
자체수입	**이월금**		**26,255**	**15,163**	**11,475**
	후원금		1,710	1,334	939
	이자수익 등		826	538	1,107
	합 계		28,791	17,035	13,522

주 1) 출연금: 정부예산 확정액
2) 이월금: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3) 후원금: 당해연도 발생액
4) 이자수익 등: 당해연도 발생액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교부된 출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보건의료지원사업 등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집행잔액과 그 이자는 결산 잉여금[7]이 아닌 정산과 반납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출연금 교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임.[8]

약 100억원의 출연금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출연금 예산안 심의 시 사업비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출원인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잔액과 그 이자는 모두 국고에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9][10]

7) 결산 잉여금은 정산 결과가 아닌 기관 전체의 결산 결과 발생한 총수익이 총지출을 초과하여 남은 금액임.

8) 후원금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하고 있음.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이자수익 등을 활용하여 퇴직급여적립 부족분을 적립하고 있음.

10)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경우 매년 출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는데, 2025년 예산액 91억 6,900만원 중 89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2,500만원은 반납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여건변화 및 실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6조[11]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과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집행관리 측면: 사업간 과다한 예산 전용·조정 축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과다한 사업간 예산 전용·조정 축소 필요(외교부)

외교부과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하는 국별협력사업의 연도별 전용조정규모가 2022년 1,225억 3,700만원에서 2025년 2,549억 7,800만원으로 108.1% 증가하여 같은 기간 국별협력사업 전체 예산 증가율(45.7%)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연도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의적 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국별협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별협력사업 예산은 2022년 4,282억 8,400만원에서 2025년 6,238억 9,600만원으로 45.7%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전용조정규모는 2022년 1,225억 3,700만원에서 2025년 2,549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전용조정액은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따라 국별협력사업간 또는 국별협력사업과 다른 사업간 조정한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국별협력사업 본예산 규모가 45.7% 증가(2022년 4,282억 8,400만원 → 2025년 6,238억 9,600만원)하는 동안 전용조정규모는 108.1% 증가(2022년 1,225억 3,700만원 → 2025년 2,549억 7,800만원)한 것임.

---

1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6조(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그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도별 국별협력사업 전용조정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수)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전용조정액 증액(B)	전용조정액 감액(C)	전용조정규모(B-A)	추경 및 미교부액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본예산 대비(D/A)	실집행률 예산현액 대비(D/C)
2022년 (377건)	428,284	4,668	+61,875	△60,662	1,213 122,537	△41,860	392,305	371,534	1,369	19,403	86.7	94.7
2023년 (394건)	518,988	1,369	+82,315	△92,856	△10,541 175,171	△32,922	476,896	455,485	2,586	18,820	87.8	95.5
2024년 (423건)	602,050	2,586	+98,955	△99,663	△708 198,618	△50,820	553,109	537,214	2,865	13,030	89.2	97.1
2025년 (445건)	623,896	2,865	+121,251	△133,727	△12,476 254,978	△21,870	592,414	563,603	4,632	24,180	90.3	95.1

주 1)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사업시행계획 기준에 명시된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기준
2) 소규모・분쟁취약・사업효과성・사업행정비 제외,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및 실집행액 기준
3) 2025년 사업 445건 중 취소사업 20건 포함
4) 전용조정규모: 전용조정증액과 감액의 절댓값의 합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협력단에 따르면 국별협력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전용조정규모 또한 증가하였고, 수원국의 정세 등에 따라 집행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간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집행가능성에 따라 사업간 예산을 전용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전용조정규모 증가율이 국별협력사업의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과 실제 집행내역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의 및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와 협력단은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과다한 사업간 예산 전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나) 수행기관 선정 관리 강화 및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차질없는 마무리 필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의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수행기관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2025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2026년 종료 예정이므로, 국가유산청은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에는 동 사업의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위탁 사업자(ODA 사업 시행자)의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내부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2025년도 예산현액 24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12][13]

현재 국가유산청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유산진흥원(기타공공기관)'을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집행부진을 사유로 2027년 사업에 대한 외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초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은 2026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음.[14]

---

12)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해충돌관련 지적사항은 ① 2022년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추후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이었다는 점과 ② 국가유산청 사업 실무자가 해당 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이직하여 산학협력단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진행 중인 감사 종료 후 판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임.

13) 국가유산청은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한 익명 제보에 따라 2025년 8월 자체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2026년 6월 말 현재 사업의 선정 및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임.

[2025년 사업 중단 경위]

일자	내용
2025.3.~4.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및 접수(1, 2차) *단독응찰에 따른 재공모
2025.4.30.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심사
2025.5.~7.	공모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자료 요구
2025.8.~9.	내부 감사 등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 지연
2025.10.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절차 중단

자료: 국가유산청

14)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외교부의 2027년도 사업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이 집행부진 사업으로 평가됨에 따라 사업 종료가 통보되었다는 설명임.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계획]

연도 (예산액)	사업 내용
2023 (2억 2,000만원)	• 기록유산 아카이브 현황 점검 •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보존환경 설계 • 유형별 작업 프로세스 정립 등
2024 (24억원)	• 디지털화 작업 수행 (9.0%) • DB시스템 설계 등
2025 (24억원)	**• 디지털화 작업 수행 (39.9%) • 디지털 플랫폼 개발방향 연구 • 디지털 헤리티지 취득 기술 공동연구 등**
2026 (7억원)	• 디지털화 작업 수행 (70.8%) • 디지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교육 등
2027 (26억 9,800만원)	• 디지털화 작업 수행 (100%) • DB 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 자료연계 검색 프로토타입 개발 • UI/UX 기능 고도화 등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5개년 사업이 3개년으로 종료되어 기존 계획과 성과가 상이할 수 있으나, 성과가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집트 현지 장비 등 시설 운영 교육 및 디지털 기록유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완료 등 내용을 압축·재구성하여 운영·관리할 예정이라는 설명임.[15)]

이와 같이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부실로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가 축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사업이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사업 관리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5) 국가유산청은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수원국인 이집트 측에 사업 중단 사유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현재까지 수원국으로부터 사업 중단에 따른 별도의 애로사항이나 이의 제기는 없었다는 설명임.

(다) 실제 집행여건을 고려한 예산교부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농림축산식품부)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토고) ODA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교부되어 이월재원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토고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GGGI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 정부 개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예산 8억 5,000만원 중 집행액은 3,500만원(실집행률 4.1%)에 그쳐 8억 1,5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고, 2025년에도 사업대상지 관련 행정절차, 현지 정부 개편 및 선거 일정, 일부 현장활동 추진방식 조정 등의 사유로 이월예산 6억원 이상이 다시 2026년으로 재이월되었음.[16)]

또한 2025년 예산 대부분도 이월됨에 따라, 2026년 기준 이월재원은 총 21억 8,300만원으로 본예산 18억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음.

[농촌지역 사회· 경제적 인프라 개발(토고)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GGGI) 기준					
	예산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4년	850	850	-	850	35	815	-	4.1
2025년	1,800	1,800	815	2,615	432	2,183	-	16.5
2026년	1,850	-	2,183	2,1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전년도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해 이월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자성 양자 ODA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 진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재원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16) - 2024년 예산 이월사유: 사업 추진체계 구축, 관계기관 협의, 사업팀 구성 등 지연
- 2025년 예산 이월사유: 사업대상지 관련 행정절차, 현지 정부 개편 및 선거 일정, 일부 현장 활동의 추진방식 조정에 따라 전액이월

둘째, GGGI의 2025년 집행내역을 보면, 태양광 공급·구축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문업체 활용 여부와 역할 분담 구조 등을 확인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GGGI는 2025년 수확후처리 기기 및 태양광 시스템의 설계·공급·구축 사업을 위하여 약 13억 6,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임. 해당 계약의 수행기관은 국제개발 NGO인 '더멋진세상'이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됨.[17)]

농림축산식품부는 '더멋진세상'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여러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술 전문기업이 아닌 국제개발 NGO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할 때, 계약상대방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의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업 수행체계와 기술 전문성 확보 방식 또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더욱이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만큼, 해당 기관이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인지,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사업 수행 역량과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도 명확하지 않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자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임.

17) 더멋진세상(www.betterworld.or.kr)은 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NGO 기구임.

[GGGI의 태양광 시스템 공급·구축 계약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용	예산	집행	이월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수의 등)
수확후처리 기기 및 태양광 시스템 설계, 공급 및 구축	1,362	276	1,086	더멋진세상	2025.4.14. ~ 2027.4.14	수의계약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 사업은 ODA 사업의 특성상 수행기관인 GGGI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으나, 대한민국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부처로서 GGGI의 사업 추진 전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라)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한 예산 집행 필요(외교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중 일부는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국제기구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유보된 사례가 있으므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유보금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국제기구협력(ODA)' 세부사업에서 총 42건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본예산 및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각각 98.6%, 99.5%를 기록하여 예산집행이 원활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누적지급액 2,811억 5,700만원 중 집행액은 2,267억 6,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0.7%이고, 총 42건의 사업 중 6건(14.3%)은 국제기구의 실집행률(누적지급액 대비 누적집행액)이 60% 미만으로 나타남.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국제기구 누적지급액·누적집행액 및 실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총사업수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A)	누적집행액 (B)	실집행률(B/A)		
					60% 이상 사업	60% 미만 사업
국제기구협력(ODA)	42	281,157	226,768	80.7%	36 (85.7%)	6 (14.3%)

주 1) 2025년 기준환율 1,380원 적용
2) 누적지급액(A): 2025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금액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6건의 사업 중 2건은 2024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금액의 60%도 집행되지 않았으나 한국국제협력단이 2025년에 추가로 약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국제기구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A)	2025			국제기구		국제기구 실집행률 (G=F/E)	2026 예산	비고
		본예산 (B)	KOICA 예산현액 (C)	국제기구 지급액(D)	누적지급액 (E=A+D)	누적집행액 (F)			
UNDP 모잠비크 중북부 지역 재해 복원 및 사회통합 증진 사업 ('22-'26/600만불)	**2,641**	2,485	2,756	2,381	5,022	**1,573 (59.5%)**	**31%**	1,242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4월, 6월** ㅇ누적집행액 작성시점: **'26.2월**
WHO 팔레스타인 재난피해 취약계층 정신건강 관리역량개선을 통한 회복력 강화사업 ('23-'26/600만불)	2,973	1,565	2,789	2,789	5,762	3,345	**58%**	1,281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3월, 6월 ㅇ누적 집행액 작성시점: '26.2월
UNWOMEN 모잠비크 북부 재해 여성 및 소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회복력 제고 지원사업 ('23-'27/600만불)	**5,244**	2,622	2,037	2,070	7,314	**3,074 (58.6%)**	**42%**	966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6월** ㅇ누적집행액 작성시점: **'25.12월**
UN Women 파키스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사업 ('24-'28/800만불)	885	3,727	3,827	3,787	4,672	1,777	**38%**	1,394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4월, 9월 ㅇ누적 집행액 작성시점: '25.12월
WFP 가나 식량안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24-'28/930만불)	1,380	3,685	3,655	3,646	5,026	955	**19%**	2,140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2월 ㅇ누적 집행액 작성시점: '25.12월
WFP 타지키스탄 식량안보 및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 기반 청년소농 지원 사업('24-'27/1,000만불)	1,667	6,963	5,940	5,938	7,605	3,055	**40%**	2,213	ㅇ'25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5.6월 ㅇ누적 집행액 작성시점: '25.12월

주 1) 국제기구 누적집행액(F) 하단 집행률 = 국제기구 누적집행액(F) / 2024년까지 국제기구 누적지급액(A)
2) 누적집행액(F): 미화 기준, 2025년 기준환율 1,380원 적용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21년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기구와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례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약정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적한 사례가 있었음.[18)]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기구에 약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국제기구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유보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협력단은 향후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국제기구에 유보되어 있는 예산 규모 및 실제 예산 집행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8)「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감사보고서(2021.3.)」(15) 국제기구와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체결 부적정(주의)
■ 조치할 사항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제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때는 산출물의 품질 등과 상관없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정보화 사업

가. 개 요

(1) 개념 및 유형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의미함.[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정보화사업을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②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③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2)]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정보화사업 적용대상 분류]

구 분	내 용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 등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용 재구성

또한 동 세부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을 재정유형별로 구분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외에 일반재정사업 및 R&D사업(非정보화 유형) 내에 포함된 정보화 성격의 사업도 모두 정보화사업에 포함하여 동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의: 02-6788-5680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정부는 1978년부터 지능정보화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28)’에 근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 중에 있음.

역대 지능정보화 관련 기본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 1978년 2월에 처음 수립되고 당시에는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목표였음.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을 완성하고 2000년대까지 선진국 정보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였고,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은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리고 2010년대 중반까지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를 위한 기반마련, 분야별 고도화, 연계·통합, 융합·확산 등의 단계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1994년 정보화 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였으며, 1996년 범정부 차원 최초로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2018년에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정부는 5개년 간의 지능정보사회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초 10기가 인터넷 상용화(2018), 세계 최초의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2019)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망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을 실현하였음.

이후 정부는 2022년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11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제7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3~2025)을 의결하였음. 이 계획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2023년 9월 12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기존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기반으로 환경 변화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과제를 조정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음.

이후 2026년 3월 27일, 정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하여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28)을 의결하였음. 이 계획은 정보통신기술 강국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하기 위해 국가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 디지털 역량 강화, 국가지능 정보화 고도화 및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역대 지능정보화 관련 기본계획 현황]

단계		구분	수립 연도	계획명	기간	비전 또는 목표
행정전산화		1차	1978.2.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78 ~1982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차	1982.12.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83 ~1986	
국가기간전산망		1차	1988.12.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1987 ~1991	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 완성 2000년대까지 선진국 정보사회 실현
		2차	1992.2.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1992 ~1996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기반 마련	1차	1996.6.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6 ~2000	2010년까지 세계 최고 정보화 실현
		2차	1999.3.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Cyber Korea 21	1999 ~2002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
	분야별 고도화	3차	2002.4.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e-Korea Vison 2006	2002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3차 (수정)	2003.12.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2003 ~2007	Broadband IT Korea 건설
		3차 (연동)	2006.5.	u-Korea 기본계획	2008 ~2010	세계 최고의 u-인프라 위 세계 최초 u-사회 실현
	연계·통합	4차	2008.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8 ~2012	창의와 신뢰의 선진지식정보사회 구현
		4차 (수정)	2012.3.			
	융합·확산	5차	2013.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3 ~2017	국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
지능정보화 발전	초연결 지능화	6차	2018.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 ~2022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전면화	7차	2022.11.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2023 ~2025	국민과 함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7차 (수정)	2023.9.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2023 ~2025	국민과 함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AI 디지털 토대	8차	2026. 3.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2026 ~2028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튼튼한 디지털 토대 마련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5 지능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2) 각 부처 정보화사업 예·결산 현황

2025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은 총 61개의 부처, 840개 세부사업에서 예산현액 5조 6,771억 700만원 중 5조 4,578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1,040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16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예산현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현액 1조 1,395억 9,500만원 중 1조 863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3%)되어 가장 많은 정보화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630억 2,200만원 중 9,554억 3,3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2%)하고, 국방부가 8,729억 5,000만원 중 8,209억 2,5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0%)하여 그 뒤를 잇고 있음.

[2025년도 각 부처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행정안전부	70	1,139,595	1,086,384	28,247	24,963	9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	963,022	955,433	2,533	5,056	99.2
국방부	9	872,950	820,925	26,137	25,888	94.0
기후에너지환경부	99	206,422	193,859	6,521	6,037	93.9
대법원	10	198,043	166,610	22,796	8,636	84.1
보건복지부	85	187,749	181,044	418	4,039	96.4
교육부	39	142,931	139,156	1,866	711	97.4
고용노동부	14	142,370	139,558	2,665	147	98.1
법무부	6	138,792	137,624	-	1,167	99.2
경찰청	8	133,495	130,785	311	2,398	98.0
국토교통부	26	125,188	119,373	2,899	2,916	95.4
국세청	7	112,386	111,117	-	1,269	98.9
문화체육관광부	36	91,884	89,275	338	2,272	97.2
국회	4	90,624	82,713	5,335	2,587	91.3
기상청	19	84,362	77,082	964	6,317	91.0
외교부	15	73,589	70,335	830	2,424	95.6
농림축산식품부	16	69,727	69,342	-	385	99.5
관세청	2	64,379	63,653	-	726	98.9
해양수산부	29	64,277	62,101	237	1,939	96.6
중소벤처기업부	10	62,365	61,669	-	696	98.9
재정경제부	10	62,360	59,593	1,967	800	95.6
지식재산처	3	49,885	49,256	-	629	98.7
국가데이터처	11	47,714	46,985	-	729	98.5
산림청	26	45,523	44,694	675	163	98.2
금융위원회	15	40,316	39,620	226	470	98.3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질병관리청	50	37,623	33,580	3,482	561	89.3
조달청	3	34,441	33,200	-	1,241	96.4
인사혁신처	15	34,069	33,663	-	406	9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33,328	33,030	-	298	99.1
기획예산처	3	30,731	28,505	1,557	670	92.8
산업통상부	8	27,532	27,207	103	222	98.8
식품의약품안전처	15	26,928	25,978	843	107	96.5
해양경찰청	3	25,350	24,050	801	499	94.8
방위사업청	1	23,420	22,908	216	296	97.8
국가유산청	3	23,266	23,113	-	153	99.3
농촌진흥청	7	21,145	21,052	-	93	99.6
국민권익위원회	3	21,105	20,417	-	688	96.7
감사원	1	18,535	13,597	3,593	1,345	73.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9	17,304	17,215	-	89	99.5
소방청	3	16,456	13,422	1,706	1,328	8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15,831	15,744	-	-	99.5
공정거래위원회	7	15,150	14,998	7	144	99.0
병무청	1	12,918	12,799	-	119	99.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7	12,350	11,400	649	301	92.3
성평등가족부	10	11,771	11,711	-	60	99.0
통일부	9	11,258	10,883	59	316	9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10,643	10,223	276	144	96.1
우주항공청	2	10,107	9,134	-	973	90.4
재외동포청	2	8,153	8,086	-	67	99.2
법제처	1	8,046	7,799	-	247	96.9
헌법재판소	2	7,806	7,651	-	155	98.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7,285	7,117	-	168	97.7
국가보훈부	11	7,009	6,512	468	29	92.9
대통령경호처	1	3,989	3,723	119	148	93.3
국가인권위원회	2	1,511	1,499	-	12	99.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333	1,302	-	31	97.7
새만금개발청	1	1,171	1,156	-	15	98.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	451	405	-	46	89.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64	264	-	-	100.0
진실화해위원회	2	209	182	-	-	87.0
국가교육위원회	1	119	73	-	46	61.1
합계	840	5,677,107	5,457,827	104,094	111,640	96.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과

(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4항[4)]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 본원과 광주센터, 대구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대전 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공주센터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통합관리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대전, 광주, 대구센터의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도를 참고하여 재구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정보시스템을 개별 기관별로 분산 구축·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 구축과 공동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보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구축 및 관리,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 · 구축관리와 보호 · 보안,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5) 대전 본원, 광주센터 및 대구선터는 범정부 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공주센터는 재해복구(백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동 지침은 통합사업의 범위와 추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장비 교체,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증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수행 업무]

근거	수행 업무
「전자정부법」제56조의5제2항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조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관리
	정보시스템 및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정보보호 및 보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복구 경과

2025년 9월 26일(금) 오후 8시 1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 당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전원장치)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이 전소되었음.

당시 화재 확산 방지와 전산설비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 중이던 다수의 정부 정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었고,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총 709개의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음.

정부는 화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복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5년 9월 27일 오후 6시경 화재를 진압하였음.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의 물리적 피해가 커 일부 정보시스템은 장비 교체와 시스템 이전이 필요하여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이후 화재 발생 후 약 4일이 경과한 2025년 9월 30일 기준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총 709개 가운데 87개 시스템(약 12.3%)이 복구되었고, 화재 발생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25년 12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하던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었음.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시스템 중 G-드라이브 시스템[6]의 약 8년치 데이터 868TB는 영구 손실되어 복구되지 못하였고, 공공데이터포털 등 14개 시스템의 데이터는 일부 데이터가 소실되어 각 기관들의 자체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하여 2025년 12월말에서 2026년 1분기 사이에 복구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과]

내용	화재 발생 (709개 시스템 장애 발생)	→	화재 완진	→	1차 복구 (87개 시스템 복구)	→	복구 완료 (709개 시스템 복구)
일시	25. 9. 26.		25. 9. 27.		25. 9. 30.		25. 12. 2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정부는 화재 이후 ① 대전에 입주한 주요 시스템에 대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② 재해 및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하며, ③「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추진하고, ④ 외부 전문가를 통한 배터리 사전검증 강화 및 전문업체를 통한 소방시설 점검을 추진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

6)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 저장 시스템

나. 검토의견

(1) 전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분석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로부터 전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실행계획을 제출받고 있음에도, 실제 점검·분석은 다음 해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분석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동법 제7조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 및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토록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점검·분석 결과의 제출 기한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서는 매년 6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종합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함.[7][8]

---

7)「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8)「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분석 의견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정보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정보화 예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9)]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제출기한을 2025년의 사례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2025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작성 및 제출 관련 업무절차]

제출하는 기관	제출받는 기관	제출 내용	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6년 실행계획(요구안)	'25.5.20.
⇓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분석한 결과	'25.6.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점검·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점검·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의견	'25.6.30.
		기획예산처는 정보화 예산안 편성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 참작	-
⇓			
정부	국회	2026년도 정보화 예산안	'25.9.3.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에서 확정된 정보화 예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한 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6.1.31.

주) 2025년 당시에는 기획예산처가 아닌 기획재정부였으나,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처로 기재

자료:「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 · 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6월 30일

9)「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조(실행계획의 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년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예산안의 지능정보화 사업 현황 및 총괄적인 조정 권고와 관련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시하였음.

그런데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정보화 사업(2025년)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점검·분석하지 않고 차년도 사업(2027년) 위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부처로부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고 점검·분석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비검토 의견 반영 여부의 철저한 관리 필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비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는 예비검토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차년도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 연계·통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음.

실제 2024년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2025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있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등 4개 분야를 검토하였고, 216개 사업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2025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비검토 결과]

(단위: 개)

검토분야	사업 수	주요 검토내용
유사·중복	36	타 사업, 기존 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 검토 필요
연계·통합	109	공동활용,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계·통합 등 검토 필요
공통기반	65	범정부 공통기반(행정정보공동이용, 국민비서, 범정부빅데이터플랫폼 등) 활용 검토 요청
공공앱	6	반응형 웹이 원칙이므로 앱 개발 필요성 여부 등 검토 필요
합계	216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예비검토를 통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내용의 이행 여부 및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예비검토 결과를 받은 기관은 권고사항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고 있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10]에 따른 사전협의를 진행할 때 권고사항들이 점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 및 반영 결과를 살펴보면,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체계 개선’ 사업은 전년도 사업과 중복되는 과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유사·중복의견이 있었으나 기상청에서는 기 구축사업과 유사·중복 기능 및 서비스가 없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비검토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또한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① 범정부 AI 공통기반 이용, ② 기관내 유관 시스템과 통폐합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지식재산처는 별도 AI모델 구축 필요 및 기관내 통폐합할 유관시스템이 없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음.

그 외에도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지리정보 시스템(SGIS) 개선’ 사업은 ① 유사·중복, ② 연계·통합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중복성이 없다고 회신되었고,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사업은 공통기반 플랫폼 활용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수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

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사전협의 신청)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 총괄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정보화사업을 출연, 위임 또는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총괄 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4. 자체검토결과서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반영결과]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의견	반영계획 회신 및 반영결과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체계 개선	① 유사·중복: 기능개선 및 고도화 시 전년도 사업과 중복되는 과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① 유사·중복: 기 구축사업과 유사·중복 기능 및 서비스가 없음을 검토함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사업	① 유사·중복: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이용 바람 ② 연계·통합: 기관내 유관시스템과 통폐합바람	① 특허·산업·기업에 특화된 모델 및 미공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므로 본 사업에 맞는 AI모델 별도 구축필요 ② 기관내 통폐합할 유관시스템이 없음
국가데이터처	통계지리정보 시스템(SGIS) 개선 사업	① 유사·중복: 선행 사업과 과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연계·통합: 선행 사업과 과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①, ② 사업명은 동일하나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개선과 통계조사를 위한 공간DB구축으로 중복성 없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③ 공통기반 플랫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34265B0000) 공동활용 검토 필요	내부업무용 시스템으로 대민 기능이 없어 국민비서 적용 수요 無(향후 대민기능 생성 시 연계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행정안전부의 예비검토 의견이 개별 부처에서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11]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분석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예비검토 의견의 이행 여부 및 미반영 사유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서 다음 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예비검토) ① 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예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전년도 정보화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포함한 의견서 작성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제시하는 의견서에 전년도 정보화 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크게 ① 2025년도 국가 지능정보화 분야별[12] 규모, ②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반영도, ③ 지능화 확산 기여도, ④ 정보보호/보안 현황으로 구분되어 있음.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25년도 국가 지능정보화 규모에는 2025년 예산안에 담긴 정보화 사업의 각 분야별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②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반영도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5대 전략별[13] 예산 비중을, ③ 지능화 확산 기여도에는 지능정보기술 활용·확산 관련 사업의 규모가 분석되어 있으며, ④ 정보보호/보안 현황은 정보보호/보안 관련 사업의 전년 대비 예산 규모의 변화를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한 종합의견에서도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만 상세히 분석하고 있을 뿐, 전년도 정보화사업을 통해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권고만을 포함하고 있음.

12) ① 보건·복지·고용, ② 교육, ③ 문화·체육·관광 등 총 12개 분야

13) 5대 전략: 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②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 ③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④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⑤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2025년도 지능정보화사업 조정 권고]

구분	SW영향평가 (민간침해 최소화)	민간 클라우드 도입·활용 권고	중복·연계 조정 권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활용 권고	행정전산망 개선 조사 결과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12조 및 제20조	전자정부법 제67조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사업수	24개	444개	224개	630개	161개
관련 사업 총예산	901억	1조 2,770억	7,297억	2조 471억	2,479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분석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해당 점검·분석 결과에는 전년도 추진 실적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의견서에 전년도 정보화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정보화사업 검토

2025년도 각 부처 정보화사업 결산 검토 결과, 예산 조정 등을 통한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의 수행, 사업 추진의 지연, ISP 등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각 부처는 개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예산 조정(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 추진

① 엔티스 고도화 사업(국세청)

국세청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타 사업 및 비목 예산의 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신규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우회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세행정 AI 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는 '엔티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 및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전용을 통해 5억 2,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음.

[2025년도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45,412	45,412	-	200	45,612	45,316	-	296	37,914
엔티스 고도화	-	-	-	520	520	439	-	81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재정법」 제46조[14]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목적 외 사용을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의 이와 같은 집행행태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정보화전략계획을 기초로 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ISP 수립 등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② 국가결산체계 구축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정보화) 사업(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결산체계 개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는데, 202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 예산을 미편성한 후 계획변경을 통해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에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국가결산체계 개편 및 보증료 수납방법 다변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12억 3,100만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4억 5,500만원을 각각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14)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국가결산체계 개편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명	사업명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기금운용계획 변경 증감분 (D)	예산현액 (F=A+B+C+D)	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신보 IT유지비 (정보화)	-	-	-	1,231	1,231	1,228	-	3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주신보IT 운영	-	429	-	332	761	594	165	2
	주연보IT 운영	-	298	-	123	421	359	61	1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금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15]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액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은 계획액 편성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위원회는 국가결산체계 개편 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하여 2025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집행하였음에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계획액을 편성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③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조달청)

조달청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에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수용비를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기존 예산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확산을 목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

15) 「국가재정법」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비목인 일반수용비(210-01목)로 2억 2,500만원을 조정한 후, 온누리상품권 구입 비용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지출하였음.

[2025년도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중 일반수용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수용비 (210-01목)	-	-	-	△41 225	184	152	-	32	-

자료: 조달청

이는 당초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예산 과목인 일반수용비(210-01목)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한 것이고, 또한 집행 시에는 업무추진비(240목) 또는 기타운영비(210-16목)로 집행하여야 할 온누리상품권 구입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의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임.[16)]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전용 및 내역변경을 최소화하고,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내역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④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AI 기반 수능 자동문항 생성기능 ISP 수립(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대행사업 집행잔액으로 신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것은 ISP 예산 편성·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ISP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정부대행사업의 집행잔액 29억 3,600만원 중 2억 3,100만원을 임의로 활용하여 ‘AI 기반 수능 자동문항 생성기능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1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49
- 일반수용비(210-01목) 지침: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사무용품,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수수료 및 사용료)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홍보물제작비 등)

[2025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부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수입	지출	집행률(%)	잔액
사업인건비	540	464	86.0	76
공공요금	138	73	53.0	64
수용비	4,092	3,430	83.8	662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8,069	7,943	98.4	126
여비	174	82	46.8	93
연구정보활동비	245	230	93.5	16
전문가활용비	11,001	10,673	97.0	328
회의비	518	473	91.3	45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29,859	28,334	94.9	1,525
인건비(수탁)	2,628	2,626	100.0	1
간접비(수탁)	303	303	100.0	0
계 (교부금+응시수수료)	57,264	54,328	94.9	2,936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ISP·ISMP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평가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ISP를 정부대행사업 집행잔액으로 추진하여 ISP 예산 편성·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예산심의를 거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추진 지연 및 집행 부진

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예산이 이월 후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월예산의 불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2024회계연도 일반연구비 20억 2,600만원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나, 2025년 이월된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었음.

[2024년 및 2025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비 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본예산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 연구비	2,026	-	2,026	-	2,026	-	-	2,026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해당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이 이루어진 데에 기인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7]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18]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19]은 이월을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시공 단계)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19)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그런데 대법원은 2024년 조달청에 총사업비 변경을 3차례 신청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관련 예산 20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25년에도 총사업비 변경 신청이 반려되어 이월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월예산의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②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정보화) 사업(기상청)

기상청은 2025년 연내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4차례의 무응찰 유찰로 현재(2026년 6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슈퍼컴퓨터 5호기의 운영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므로, 원활한 기상 예보를 위하여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2025회계연도에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위한 임차료 예산 4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700만원은 슈퍼컴퓨터 5호기 임차료로 조정하여 집행하였고, 나머지 45억 4,2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25년도 슈퍼컴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임차료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임차료	7,860	7,860	-	-	7,860	3,318	-	4,542	1,977
슈퍼컴퓨터 5호기	3,271	3,271	-	47	3,318	3,318	-	-	-
슈퍼컴퓨터 6호기	4,589	4,589	-	△47	4,542	-	-	4,542	1,97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는 기상청이 2025년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총 4차례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메모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모두 무응찰로 유찰된것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2026년 6월)까지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이 슈퍼컴퓨터 6호기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슈퍼컴퓨터 5호기의 운영기간도 2029년 6월까지 연장되는 등 기존 장비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향후 원활한 기상예보를 위해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정보화) 사업(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위성센터 건립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선행 추진하여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청사 신축사업과 연계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선행공정의 진행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은 해양경찰위성센터에 내·외부 행정망 네트워크와 전산·보안 등 업무 통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9,300만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5년도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양경찰청정보화 관리(정보화)	23,966	23,966	364	-	24,330	23,282	679	369	29,921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93	93	-	-	93	-	93	-	37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은 신축 중인 해양경찰위성센터 청사에 정보통신·보안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물 내부 공간 확보와 전기·통신 기반시설 구축 등 선행공정이 완료되어야 설치가 가능함.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위성센터 건립사업이 총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로 2025년 11월에야 착공되고 준공도 2027년 상반기로 연기되는 등 사업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건축공사 착공 이전인 2025년 8월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의 계약을 의뢰하여 같은 해 12월 계약을 체결하였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향후 청사 신축사업과 연계된 정보화사업은 선행공정의 진행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선행사업의 추진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후속 정보화사업을 선행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간 연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ISP 수립 등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미준수

경찰청은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지침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ISP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경찰운영’ 사업에서 바디캠 도입을 위해 편성된 자산취득비 77억 1,4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로 전용하여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94억 8,600만원 규모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지역경찰운영 사업 이·전용 내역(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날짜)	~에서	~으로	금액	이·전용 등 사유
전용(25.3.19.)	430-01	210-02	7,714	바디캠 관련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한 전용
전용(25.11.17.)	210-02	260-01	50	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전용
	210-01		300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구축방안,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이행과제별·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소요 등이 포함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20][21]

---

2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5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BPR은 ISP·ISMP수립 전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판단하에 자체예산으로 수립 가능)
* ISP·ISMP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 수행된 경우에 한함
** 시범·실증사업 후, 본 사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ISP 또는 ISMP 수립 및 검토 신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ISM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 기획재정부는 ISP 또는 ISMP 산출물 검토 등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 단,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ISP·ISMP 수립절차를 제외하거나, ISP·ISMP 수립 완료 이전 정보시스템구축 예산 요구 가능
- ISP·ISMP 수립 제외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등 별도의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 ISP·ISMP 수립 완료 이전 추진 가능 : ISP 또는 ISMP를 수립 중이나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단,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의 ‘ISP 또는 ISMP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ISP 또는 ISMP 중간산출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2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7
나.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수립시 모니터링 강화
○ ISP·ISMP 수립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찰청은 비통신형 바디캠에서 통신형 바디캠 도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ISP를 수립하거나 ISP 중간·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22]를 구축하면서 바디캠 영상 송신·저장·관리시스템 구축, 저장서버 구축 및 영상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도 ISP를 수립하거나 ISP 중간·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장비구매 예산 편성 후 전용 집행이라는 방식을 통해 수행하였음.[23]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관계 지침에 따른 ISP 수립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구축방안 및 투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명분으로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일반적인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므로,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었고,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예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체계 운영을 목적으로

ㅇ 중앙관서의 장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이하 ISP·ISMP 가이드)를 참조하여 ISP 또는 ISMP를 수립하여야 한다.

* ISP·ISMP 가이드는 ISP 또는 ISMP 기본 구성 내용, 이행과제별·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 소요, 타당한 기대효과 분석 등 ISP 또는 ISMP 수립시 필수 항목 및 절차를 규정

- ISP 최종산출물은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목표시스템 구축 방안,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이행과제별·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다.

* 정보화 투자소요(총구축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을 포함

- ISMP 최종산출물은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수립, 업무 및 정보기술분석,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구축 이행방안 및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다.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3) 경찰청은 동 사업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해 수행하였고, 사업 전반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하였음. 한편, 동 사업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8판) p.18에 따른 수립제외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임.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업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음.

그런데 「2025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등 고도화 추진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을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탐지 유형 및 조회 정보 확대, 도메인 관리 개선, 데이터 관리 강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고도화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최종 보고」(2025. 12. 26.)에 따르면 ‘공공 웹사이트 실태조사 결과 관리 기능’, ‘민간·공공 도메인 관리 기능 개선’ 등도 용역 과업에 포함되었음.

[「2025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등 고도화 추진계획(안)」 내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2025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등 고도화 추진계획(안)」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최종 보고」
내용	불법유통 개인정보 대응 체계 운영	기존 시스템 탐지 유형 및 조회 정보 확대, 도메인 관리 개선 등	민간·공공 도메인 관리 기능 개선 등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재구성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일반적인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검토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025년도 결산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주센터 준공 지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구축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효과가 적

시에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국가 전산자원의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백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건립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음.

공주센터는 대전, 광주 및 대구센터의 데이터를 백업하다가 각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백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구를 시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당초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 선정 유찰,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업 수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2019년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야 준공되었음.[24)]

이후 2024년 11월 센터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당초 계획에 따른 수동적인 데이터 백업(Passive)을 통한 복구센터가 아닌 기존 센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이중화 체계(Active-Active)로 구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25)]하였음.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대전센터 화재 발생 당시 실시간 동기화(Active-Active) 체계가 구축·운영되지 않았고, 공주센터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이미 구축된 전산체계를 활용하여 수동 데이터 백업(Passive)을 통한 복구방식으로 별도 전담 인력 없이 시스템[26)]을 운영하였고, 2026년 2월에야 담당 조직이 정식 직제화[27)] 되었음.

---

24) 구체적으로, 2010년, 2012년 타당성 재조사, 2013년 총사업비 조정, 2014년~2016년 총 7회 유찰,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등

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2025년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체계 운영을 시범운영하고, 이후 점점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고 함.

26) 화재로 인한 대전센터의 데이터 복구는 공주센터의 백업 데이터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공주센터가 2025년 7월 미리 대전센터의 데이터를 백업하여 복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백업 절차가 2개월만 더 지연되었어도 데이터 복구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27) 2026년 2월 재해복구시스템과(백업센터) 정식 직제화. 2025년 10월 ~ 2026년 2월에는 공주센터에 별도 인력이 없이 대전 본원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였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구축 추진 경과]

연도	당초 계획	실제 집행
2008년	공주센터 구축 계획 수립	
2012년	공주센터 준공 및 운영 개시	유찰, 총사업비 조정 등
2019년	-	공주센터 착공
2023년 5월		공주센터 준공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발생
2024년 1월		이중화 체계 구축으로 사업계획 변경
2025년 9월 26일		대전센터 화재 발생
2025년 9월 30일		전산환경 구축 완료
2026년 2월		공주센터 조직 직제화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공주센터는 당초 계획(2012년)보다 약 11년 늦게(2023년 준공)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당초 사업목적인 국가 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 효과가 상당 기간 실현되지 못하였음.

또한, 2023년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공주센터의 백업 시스템을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축된 시스템은 데이터 백업을 통한 복구방식으로 운영되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백업 데이터를 수동으로 복구하여 복구에 약 3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음.[28)]

이 과정에서 G-드라이브 시스템의 데이터 868TB는 영구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하였고, 그 외 14개 시스템의 일부 데이터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복구한 점을 고려할 때, 백업체계가 적시에 구축되었더라면 데이터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대규모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사업비, 입찰 방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정보화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8)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방식으로 데이터가 백업된 경우 한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중단 없이 이용이 가능함.

(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계획 및 이행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마련한 시스템 개선대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① 대전센터에 입주한 A1·A2등급 주요 시스템에 대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진, ② 재해·장애 시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추진, ③「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사업 추진 등을 시스템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① A1·A2등급 주요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A1·A2등급 주요 시스템의 백업 방식을 실시간 동기화 방식으로[29]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또한, ② 백업 절차 개선 추진의 경우 기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각 부처의 백업 요청을 받을 때 별도 양식 없이 구두로 받았던 것을 공문 등을 통해 받는 것으로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하고 백업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며, ③「국가정보자원관리원혁신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의 경우 대전센터의 시스템 재배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2026년 6월 기준 ① 대전센터 A1·A2등급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동기화 방식 도입을 위한 ISP 수립에 착수하였고, ② 2026년 2월부터 각 부처의 백업 요청을 받을 때 공문으로 받고 있으며, VTL(Virtual Tape Library,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 PTL(Physical Tape Library, 물리 테이프 라이브러리) 등 백업 장비를 증설하고 있고,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 6월 4일 ISP 수립 용역 발주 및 6월 30일 제안서 평가 등이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① 실시간 동기화 방식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대전센터가 2030년에 폐쇄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백업 시스템 전환이 완료되기도 전에 대전센터 폐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또한, ② 백업 요청을 구두 방식에서 공문 방식으로 받는 것은 단순히 사업수행형식을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근본적인 백업 체계 강화 대책으로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30]

---

29)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상으로 A3등급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A4등급 시스템의 경우 수동적인 데이터 백업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는 입장임.

30) 이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기존 구두 방식으로 요청을 받아 백업을 수행하는 경우 백업 범위에 대한

마지막으로, ③「국가정보자원관리원혁신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은 대전센터의 693개 시스템 재배치를 포함한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전략과 공공 데이터센터 대안 마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역할 모델 수립, 조직·인력 개편 로드맵 및 소요예산 산정 등 광범위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2026년 6월 30일에야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행정안전부는 ISP 수립 과정에서 2026년 연말까지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 지연 시 대전센터 폐쇄 이후 재배치 등 후속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ISP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책 및 문제점]

	대책	문제점
①	대전센터에 입주한 1·2등급 주요 시스템에 대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진	대전센터는 2030년에 폐쇄할 예정임에도 본격적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2027년에 추진되어 사업 지연 시 폐쇄 절차와 중복될 수 있음
②	재해·장애 시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추진	단순히 형식을 보완하는 것은 실효성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추진	ISP 수립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2026년 연말에 사업 추진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에야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화재 이후 마련한 개선대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백업 체계 개선도 절차 보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를 위한 예비비의 집행부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를 위한 예비비가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

누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공문 방식으로 사업수행 방식을 전환하여 이러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입주 기관과 함께 백업정책 전수 점검을 하여 오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임.

으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예비비를 통한 긴급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산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을 의미함.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요구 시 기존의 3가지 편성요건인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외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1)]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여[32)], 예비비 편성의 시급성에 비추어 연내 집행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각 부처의 국정자원 화재의 신속 복구, 클라우드 백업 등을 위하여 2025년 10월 21일 및 11월 11일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되었음.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총 6개 부처에 예비비 총 1,801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고, 그 중 1,529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9%)되었으며 138억 1,200만원이 이월되고 133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3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시 집행가능성 및 과거 예비비 집행사례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32)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관련 예비비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예비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행정안전부	172,312	149,427	10,761	12,124	8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77	433	2,507	1,237	10.4
보건복지부	1,908	1,908	-	-	100.0
기후에너지환경부	1,482	938	544	-	6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6	186	-	-	100.0
고용노동부	55	55	-	-	100.0
합계	180,120	152,947	13,812	13,361	84.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①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스마트폰 공공어플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자 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13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예비비 42억 6,500만원을 배정받았고, 이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은 2025년 연중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예비비 42억 6,5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6년 2월 5일에야 2026년 2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복구 및 클라우드 전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예비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2025년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차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 12월 24일 계약 추진을 위한 예정원가조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원인행위로 하여 예비비를 이월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예비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을 원인행위를 보는 점에 비추어 예정원가조사를 수행한 것을 원인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비비를 통한 긴급 복구사업의 경우 계약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예비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 예비비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비비	집행액 (교부액) (A)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액 (B)	보조사업자의 차년도 이월액	보조사업자의 불용액	실집행률 (B/A)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4,265	4,265	-	4,265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②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사업(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에 AI기반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자 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13일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사업에 예비비 27억 8,500만원을 배정받았고, 이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은 2025년 연중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예비비 27억 8,500만원 중 300만원만이 집행되고 27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6년 2월 13일에야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데이터 분석시스템 복구를 수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예비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2025년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차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긴급한 사업으로 수의계약 대상이므로 사업수행자의 업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행하도록 하되 이후 2026년 2월 10일에 계약을 공고하고 2월 13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예비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한 계약 체결 전 미리 사업수행자가 복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계약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33)]

33)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를 이유로 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 체결 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 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비비를 통한 긴급 복구사업의 경우 계약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예비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사업 예비비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비비	집행액 (교부액) (A)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액 (B)	보조사업자의 차년도 이월액	보조사업자의 불용액	실집행률 (B/A)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2,785	2,785	3	2,782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7. 국고보조사업

가. 개 요

(1) 개념 및 현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의 급부금을 말함.[1)]

국고보조금은 교부대상에 따라 자치단체보조금과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원내용에 따라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할 수 있음. 교부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자치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임.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경상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행하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조이고, 자본보조금은 토지매입, 시설건축, 자산취득 등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에 관련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를 의미함.

예산과목상 자치단체보조금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가 있고, 민간보조금에는 민간경상보조(320-01목)·민간자본보조(320-07목)가 있음.

문의 : 02-6788-5696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액 130조 9,340억원, 예산현액 132조 2,123억원 중 129조 8,422억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2,83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조 867억원이 불용되었음.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22조 3,734억원에서 2022년 146조 6,286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102조 2,775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109조 1,766억원, 2025년 130조 9,34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액은 전년 대비 21조 7,574억원 증가한 규모임.

[최근 5년간(2021~2025)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1,223,734	1,466,286	1,022,775	1,091,766	1,309,340
자치단체 보조사업	863,564	837,194	829,424	893,295	1,082,617
민간 보조사업	360,170	629,092	193,351	198,471	226,723

주 1) 연도별 본예산 및 계획액 기준 (2021년, 2022년, 2025년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기준)
2) 2022년 민간보조사업 예산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재정사업이 대규모로 집행되었기 때문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사업 등에서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2023년 관련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거나 대폭 축소되면서 민간보조사업 결산액도 크게 감소함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28조 240억원에서 2022년 145조 8,44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99조 884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105조 2,795억원, 2025년 129조 8,422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2025년 국고보조사업 결산액은 전년 대비 24조 5,627억원 증가한 규모임.

[최근 5년간(2021~2025) 국고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1,280,024	1,458,440	990,884	1,052,795	1,298,422
자치단체 보조사업	857,359	829,902	806,616	861,959	1,076,911
민간 보조사업	422,665	628,538	184,268	190,836	221,511

자료: 재정경제부

(2) 자치단체 보조사업

(가) 총괄

2025회계연도 자치단체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108조 2,61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09조 1,933억원 중 107조 6,911억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1,206억원이 이월되었으며 1조 3,816억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결산	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자치단체 보조사업	893,295	861,959	1,082,617	1,091,933	1,076,911	1,206	13,816	98.6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결산 기준 자치단체보조사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1조 4,952억원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규모는 15.7%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하였고, 전체 보조사업 대비 비중은 82.9%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85조 7,359억원에서 2023년 80조 6,616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2024년 86조 1,959억원, 2025년 107조 6,91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9%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3.4%보다 높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가율
자치단체보조사업(A)	857,000	830,000	807,000	862,000	1,077,000	5.9
정부 총지출(B)	5,984,677	6,707,504	6,096,634	6,375,678	6,839,649	3.4
전체 보조사업(C)	1,280,000	1,458,000	991,000	1,053,000	1,298,000	0.4
총지출 대비(A/B)	14.3	12.2	13.2	13.5	15.7	2.4
전체 보조사업 대비(A/C)	67.0	56.9	81.4	81.9	82.9	5.5

자료: 재정경제부

(나) 과목별·성질별 현황

국고보조사업을 예산과목별로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예산현액 89조 7,205억원 중 89조 1,502억원이 집행(집행률 99.4%)되었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예산현액 19조 4,728억원 중 18조 5,409억원이 집행(집행률 95.2%)되었음. 집행률은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전년 대비 6.0%p 증가하였음.

성질별로 보면 의무지출 보조[2]에서 예산현액 57조 2,491억원 중 56조 8,839억원이 집행(집행률 99.4%)되었고, 재량지출 보조에서 예산현액 51조 9,441억원 중 50조 8,073억원이 집행(집행률 97.8%)되었음.

[2025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과목·성질별 결산]

(단위: 억원, %, %p)

구 분		2024년			2025년			집행률 증감 (F-C)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집행률 (F=E/D)	
자치단체 보조사업		897,297	861,959	96.1	1,091,933	1,076,911	98.6	2.6
과목	경상보조	710,458	695,223	97.9	897,205	891,502	99.4	1.5
	자본보조	186,839	166,735	89.2	194,728	185,409	95.2	6.0
성질	의무지출 보조	544,343	530,651	97.5	572,491	568,839	99.4	1.9
	재량지출 보조	352,954	331,307	93.9	519,441	508,073	97.8	3.9

자료: 재정경제부

2) 의무지출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함.

(다) 분야별 현황

국고보조사업을 16대 분야별로 살펴보면[3], 2025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은 예비비 분야를 제외한 15개 분야에 편성되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55.6%)이며, 이어 일반·지방행정(12.9%), 농림수산(7.6%), 교육(7.0%), 환경(6.7%) 순임.

전년 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분야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12조 7,687억원 증가하여 증가액이 가장 컸고, 교육 분야 7조 1,610억원, 환경 분야 8,316억원, 농림수산 분야 7,738억원 등이 있음.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조 4,815억원 감소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도 242억원 감소하였음.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평균 집행률 98.6%보다 낮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92.0%), 환경(94.3%), 농림수산(95.1%), 문화및관광(96.9%) 등으로 나타났음.

[2025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분야별 결산]

(단위: 억원, %)

분 야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일반·지방행정	11,377	139,489	139,455	139,064	12.9	99.7	127,687
공공질서및안전	17,188	21,429	22,302	22,222	2.1	99.6	5,034
통일·외교	186	757	757	744	0.1	98.3	558
국방	24	31	72	72	0.0	100.0	49
교육	3,388	74,165	75,189	74,998	7.0	99.7	71,610
문화및관광	17,986	20,239	20,309	19,686	1.8	96.9	1,700
환경	64,006	77,571	76,698	72,322	6.7	94.3	8,316
사회복지	613,571	598,952	602,330	598,756	55.6	99.4	△14,815
보건	15,810	18,620	18,639	18,409	1.7	98.8	2,599
농림수산	73,816	80,753	85,738	81,554	7.6	95.1	7,73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063	9,034	8,870	8,160	0.8	92.0	97
교통및물류	20,180	24,946	24,939	24,491	2.3	98.2	4,311
통신	1,039	1,210	1,210	1,204	0.1	99.5	164
국토및지역개발	15,237	15,185	15,188	14,994	1.4	98.7	△242
과학기술	89	237	237	235	0.0	99.2	146
총계	861,959	1,082,617	1,091,933	1,076,911	100.0	98.6	214,952

주) 16대 분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없어 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분류체계 기준

(라) 회계별·기금별 현황

2025년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29개 기금 등 총 40개의 회계·기금에 편성되었고, 비중별로는 일반회계(72.3%), 특별회계(19.7%), 기금(7.9%) 순이었음.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일반회계는 집행액이 16조 9,331억원 증가(27.8%)하였고, 특별회계도 4조 3,303억원 증가(25.6%)하였으며, 기금은 2,318억원 증가(2.8%)하였음.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99.7%이며, 특별회계 전체 집행률은 96.3%, 기금 전체 집행률은 95.0%로 나타났음. 다만 특별회계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49.5%),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75.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82.9%)의 집행률이 낮고, 기금 중 주택도시기금(79.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82.0%), 농산물가격안정기금(85.8%) 등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2025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회계·기금별 결산]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일반회계	609,772	775,039	781,432	779,104	72.3	99.7	169,331
특별회계 (10개)	169,127	217,688	220,606	212,431	19.7	96.3	43,3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524	19,731	21,961	21,336	10.0	97.2	△1,189
교통시설특별회계	11,174	16,749	16,749	16,411	7.7	98.0	5,23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539	19,395	18,345	15,206	7.2	82.9	667
환경개선특별회계	22,680	22,756	22,894	22,305	10.5	97.4	△37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	2	2	1	0.0	49.5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4	77	82	81	0.0	99.4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184	183	183	139	0.1	75.9	△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7,317	122,316	123,922	120,559	56.8	97.3	23,24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2	16,469	16,457	16,382	7.7	99.5	16,310
양곡관리특별회계	559	11	11	11	0.0	100.0	△547
기금 (29개)	83,059	89,890	89,895	85,377	7.9	95.0	2,318
남북협력기금	-	9	9	-	-	-	-
군인복지기금	1	1	1	1	0.0	100.0	1
청소년육성기금	1,346	1,351	1,351	1,341	1.6	99.2	△6
농지관리기금	152	136	136	136	0.2	100.0	△16
국민건강증진기금	10,476	11,877	11,877	11,846	13.9	99.7	1,369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고용보험기금	1	1	1	1	0.0	100.0	-
양성평등기금	7,240	7,666	7,666	7,658	9.0	99.9	418
한강수계관리기금	4,254	3,771	3,771	3,771	4.4	100.0	△483
수산발전기금	222	171	171	169	0.2	99.0	△5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	348	348	348	0.4	100.0	345
응급의료기금	1,769	2,253	2,253	2,132	2.5	94.7	363
축산발전기금	2,324	2,294	2,300	2,206	2.6	95.9	△117
전력산업기반기금	2,445	1,938	1,938	1,931	2.3	99.6	△514
국민체육진흥기금	4,224	4,809	4,809	4,748	5.6	98.7	524
문화예술진흥기금	2,357	2,588	2,588	2,588	3.0	100.0	231
금강수계관리기금	958	921	921	921	1.1	100.0	△3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787	1,741	1,741	1,736	2.0	99.7	△5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26	429	429	426	0.5	99.3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843	1,493	1,493	1,225	1.4	82.0	△618
복권기금	3,751	4,124	4,124	4,121	4.8	99.9	37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5,870	29,602	29,602	27,520	32.2	93.0	1,649
관광진흥개발기금	304	335	335	329	0.4	98.3	2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63	416	416	357	0.4	85.8	△106
주택도시기금	7,701	8,453	8,453	6,728	7.9	79.6	△974
기후대응기금	2,249	2,273	2,273	2,250	2.6	99.0	1
영화발전기금	9	6	6	6	0.0	100.0	△3
국가유산보호기금	493	476	476	476	0.6	100.0	△1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72	386	386	386	0.5	100.0	1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	20	20	20	0.0	100.0	-
합 계	861,959	1,082,617	1,091,933	1,076,911	100.0	98.6	214,952

자료: 재정경제부

(마) 부처별·사업별 현황

2025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주요 부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55조 8,533억원으로 전체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액의 5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행정안전부 15조 6,673억원(14.5%), 교육부 7조 6,626억원(7.1%), 기후에너지환경부 7조 5,953억원(7.1%), 국토교통부 7조 2,497억원(6.7%), 농림축산식품부 5조 7,539억원(5.3%) 순으로 나타났음.

주요 부처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보건복지부 99.6%, 행정안전부 99.7%, 교육부 99.8%, 성평등가족부 99.9% 등은 평균 집행률 98.6%를 상회하였으나, 기후에

너지환경부 94.6%, 농림축산식품부 94.1%, 국토교통부 96.8% 등은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임.

전년 대비 집행액 증감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전년 대비 13조 1,630억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교육부 5조 9,155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조 361억원, 국토교통부 6,80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6,047억원 등이 증가하였음. 반면,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1,968억원 감소하였음.

[2025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부처별 결산]

(단위: 억원, %)

부 처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보건복지부	560,502	557,260	560,514	558,533	51.9	99.6	△1,968
행정안전부	25,044	156,333	157,172	156,673	14.5	99.7	131,630
기후에너지환경부	65,592	81,196	80,312	75,953	7.1	94.6	10,361
교육부	17,471	75,793	76,817	76,626	7.1	99.8	59,155
국토교통부	65,694	74,728	74,858	72,497	6.7	96.8	6,804
농림축산식품부	51,492	57,451	61,140	57,539	5.3	94.1	6,047
성평등가족부	14,257	14,849	14,846	14,824	1.4	99.9	567
문화체육관광부	11,454	13,544	13,614	12,999	1.2	95.5	1,545
산림청	10,879	11,683	12,916	12,703	1.2	98.4	1,824
해양수산부	10,440	11,103	11,198	10,849	1.0	96.9	410
산업통상부	7,031	4,962	5,002	4,307	0.4	86.1	△2,724
국가유산청	6,532	6,695	6,695	6,686	0.6	99.9	154
기획재정부	5,999	6,397	6,397	6,371	0.6	99.6	372
농촌진흥청	2,239	2,065	2,065	2,017	0.2	97.7	△223
고용노동부	2,398	2,274	2,274	2,251	0.2	99.0	△147
중소벤처기업부	1,461	2,026	1,822	1,814	0.2	99.6	3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95	1,506	1,506	1,504	0.1	99.8	309
식품의약품안전처	745	771	771	770	0.1	99.9	26
외교부	70	636	636	636	0.1	100.0	565
법무부	372	387	387	387	0.0	100.0	15
소방청	237	338	338	338	0.0	100.0	101
통일부	116	115	115	104	0.0	90.1	△12
대법원	142	112	112	112	0.0	100.0	△30
질병관리청	390	108	108	108	0.0	100.0	△282
새만금개발청	20	93	93	93	0.0	100.0	73
경찰청	67	77	77	77	0.0	100.0	10
국가보훈부	94	67	58	58	0.0	100.0	△36
방위사업청	23	30	30	30	0.0	100.0	7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	8	8	8	0.0	100.0	8
재외동포청	-	7	7	5	0.0	77.1	5

(단위: 억원, %)

부 처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2	2	1	0.0	49.5	△3
국방부	1	1	43	43	0.0	100.0	4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	-	-	-	-	△4
총계	861,959	1,082,617	1,091,933	1,076,911	100.0	98.6	214,952

주 1) 비목(330-01·330-03) 기준으로 작성
2) 2025년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부처명 변동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반영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중앙관서 집행률(교부율)은 예산현액 109조 1,933억원 중 107조 6,911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98.6%로 나타났음.

부처별 교부율을 살펴보면, 2025년 자치단체보조사업 전체 교부율(98.6%)보다 낮은 교부율을 기록한 부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9.5%), 재외동포청(77.1%), 산업통상부(86.1%), 통일부(90.1%), 농림축산식품부(94.1%), 기후에너지환경부(94.6%), 문화체육관광부(95.5%), 국토교통부(96.8%), 해양수산부(96.9%), 농촌진흥청(97.7%), 산림청(98.4%) 등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이 90% 미만인 부처는 총 18개임. 이 중 해양수산부의 실집행률이 56.6%로 가장 낮고, 이어 중소벤처기업부(64.0%), 문화체육관광부(67.6%), 국방부(6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71.2%), 기획재정부(74.0%), 기후에너지환경부(78.3%), 농촌진흥청(78.3%), 질병관리청(79.5%), 국가유산청(79.6%), 교육부(83.2%), 산림청(84.0%), 국토교통부(84.1%), 소방청 및 국가보훈부(각 84.3%), 외교부(88.2%), 농림축산식품부(88.1%), 산업통상부(89.3%) 순으로 낮게 나타났음.

부처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56조 514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행정안전부 15조 7,172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8조 312억원, 교육부 7조 6,817억원, 국토교통부 7조 4,858억원, 농림축산식품부 6조 1,140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2025년 부처별 자치단체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보건복지부	135	557,260	4,128	560,514	558,533	99.6	558,533	548,800	98.3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기후에너지환경부	123	81,196	660	80,312	75,953	94.6	88,935	69,658	78.3
교육부	16	75,793	4,737	76,817	76,626	99.8	77,184	64,196	83.2
국토교통부	90	74,728	830	74,858	72,497	96.8	82,964	69,791	84.1
농림축산식품부	97	57,451	592	61,140	57,539	94.1	61,869	54,518	88.1
행정안전부	43	156,333	3,636	157,172	156,673	99.7	156,658	142,308	90.8
성평등가족부	22	14,849	675	14,846	14,824	99.9	14824	14151	95.5
문화체육관광부	79	13,544	171	13,614	12,999	95.5	16,918	11,432	67.6
산림청	39	11,683	300	12,916	12,703	98.4	13,853	11,634	84.0
해양수산부	65	11,103	171	11,198	10,849	96.9	14,020	7,937	56.6
산업통상부	19	4,962	261	5,002	4,307	86.1	4,901	4,376	89.3
국가유산청	19	6,695	352	6,695	6,686	99.9	7,037	5,599	79.6
기획재정부	16	6,397	400	6,397	6,371	99.6	2,990	2,214	74.0
농촌진흥청	18	2,065	115	2,065	2,017	97.7	2,678	2,097	78.3
고용노동부	18	2,274	126	2,274	2,251	99.0	2,251	2,055	91.3
중소벤처기업부	11	2,026	184	1,822	1,814	99.6	2,948	1,886	6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1,506	108	1,506	1,504	99.9	1,883	1,341	71.2
식품의약품안전처	11	771	70	771	770	99.9	787	773	98.2
외교부	4	636	159	636	636	100.0	636	561	88.2
법무부	2	387	193	387	387	100.0	387	377	97.4
소방청	6	338	56	338	338	100.0	338	285	84.3
통일부	3	115	38	115	104	90.1	129	126	97.8
대법원	1	112	112	112	112	100.0	112	111	99.1
질병관리청	4	108	27	108	108	100.0	297	236	79.5
새만금개발청	2	93	46	93	93	100.0	93	88	94.6
경찰청	2	77	39	77	77	100.0	77	77	99.9
국가보훈부	3	67	22	58	58	100.0	70	59	84.3
방위사업청	1	30	30	30	30	100.0	18.3	18.3	100.0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1	8	8	8	8	100.0	8	7	96.0
재외동포청	1	7	7	7	5	77.1	5	5	9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2	1	2	1	49.5	1	1	95.9
국방부	2	1	1	43	43	100.0	43	30	69.8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	-	-	-	-	-	-	-
총계	**869**	**1,082,617**	**1,246**	**1,091,933**	**1,076,911**	**98.6**	**1,113,445.3**	**1,016,745.3**	**91.3**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주 1) 비목(330-01・330-03) 기준으로 작성
2)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포함
3)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포함하여 작성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별로 보면 자치단체보조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지원 등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상위 10개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예산현액 합계는 67조 574억원으로, 전체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현액 109조 1,933억원의 61.4%를 차지함. 상위 10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5개가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 사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부처별 실집행 현황을 보면 중앙관서 단계의 교부율이 높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단계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확인되므로, 최종 사업수행 주체의 실집행 현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5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현액 상위 10개 세부사업]

(단위: 억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기초연금지급	213,280	211,794	99.3	208,495	97.8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민생회복 소비쿠폰	121,605	121,215	99.7	118,411	97.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급여	88,202	88,202	100.0	88,001	99.8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생계급여	84,425	84,422	100.0	83,581	99.0
교육부	일반회계	영유아보육료 지원	33,530	33,530	100.0	33,414	99.7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주거급여지원	30,092	30,083	100.0	29,455	97.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공익기능증진직불	29,479	27,397	92.9	26,771	90.8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25,074	25,074	100.0	24,224	96.6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4,166	24,166	100.0	24,039	99.5
교육부	일반회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0,721	20,721	100.0	20,521	99.0

자료: 각 부처 제출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사업은 대부분 중앙관서 집행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모두 90% 후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다만 공익기능증진직불은 중앙관서 집행률이 92.9%로 다른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장애인활동지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실집행률도 각각 96.6%와 97.4%로 중앙관서 집행률보다 낮게 나타난 만큼,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원인과 사업별 집행관리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민간보조사업

(가) 총괄

2025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22조 6,723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3조 190억원 중 22조 1,511억원이 집행(집행률 96.2%)되고, 1,62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7,051억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 민간 보조사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결산	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민간 보조사업	198,471	190,836	226,723	230,190	221,511	1,628	7,051	96.2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결산 기준 민간보조사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조 675억원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규모는 3.2%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고, 전체 보조사업 대비 비중은 17.1%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민간보조사업 결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42조 2,665억원에서 2022년 62조 8,53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18조 4,268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 2024년 19조 836억원, 2025년 22조 1,51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9%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3.4%보다 낮은 수준임.

[최근 5년간 민간 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가율
민간 보조사업(A)	422,665	628,538	184,268	190,836	221,511	△14.9
정부 총지출(B)	5,984,677	6,707,504	6,096,634	6,375,678	6,839,649	3.4
총지출 대비 비중(A/B)	7.1	9.4	3.0	3.0	3.2	△18.1
전체 보조사업(C)	1,280,024	1,458,440	990,884	1,052,795	1,298,422	0.4
전체 보조사업 대비(A/C)	33.0	43.1	18.6	18.1	17.1	△15.2

주) 2022년 민간보조사업 결산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재정사업이 대규모로 집행되었기 때문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사업 등에서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2023년 관련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거나 대폭 축소되면서 민간보조사업 결산액도 크게 감소함.

자료: 재정경제부

(나) 과목별·성질별 현황

민간보조사업을 예산과목별로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현액 19조 2,828억원 중 18조 9,870억원이 집행(집행률 98.5%)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예산현액 3조 7,362억원 중 3조 1,641억원이 집행(집행률 84.7%)되었음. 집행률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 대비 3.5%p 증가하였으나, 민간자본보조에서 전년 대비 3.7%p 감소하였음.

성질별로 보면 의무지출 보조에서 예산현액 6,640억원 중 6,417억원이 집행(집행률 96.6%)되었고, 재량지출 보조에서 예산현액 22조 3,550억원 중 21조 5,094억원이 집행(집행률 96.2%)되었음.

[2025년 민간 보조사업 과목·성질별 결산]

(단위: 억원, %, %p)

구 분		2024년			2025년			집행률 증감 (F-C)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집행률 (F=E/D)	
민간 보조사업		203,475	190,836	93.8	230,190	221,511	96.2	2.4
과목	경상보조 (320-01)	166,684	158,306	95.0	192,828	189,870	98.5	3.5
	자본보조 (320-07)	36,790	32,530	88.4	37,362	31,641	84.7	△3.7
성질	의무지출 보조	7,379	7,293	98.8	6,640	6,417	96.6	△2.2
	재량지출 보조	196,096	183,544	93.6	223,550	215,094	96.2	2.6

(다) 분야별 현황

민간보조사업을 16대 분야별로 살펴보면[4], 2025년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예비비 분야를 제외한 15개 분야에 편성되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36.8%)이며, 이어 농림수산(20.6%), 문화및관광(14.8%), 사회복지(8.1%), 교통및물류(5.5%) 순임.

전년 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분야로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가 3조 358억원 증가하여 가장 컸고, 농림수산 분야 6,521억원, 사회복지 분야 900억원 등이 있음. 반면, 교통및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3,485억원 감소하였고, 교육 분야 2,068억원, 통일·외교 분야 682억원, 환경 분야 578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평균 집행률 96.2%보다 낮은 분야는 환경(72.0%), 통일·외교(74.7%), 교통및물류(91.6%) 등으로 나타났음.

[2025년 민간 보조사업 분야별 결산]

(단위: 억원, %)

분 야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일반·지방행정	1,645	1,205	1,731	1,725	0.8	99.7	80
공공질서및안전	1,904	2,078	2,078	2,075	0.9	99.9	171
통일·외교	7,327	8,901	8,901	6,645	3	74.7	△682
국방	447	483	463	463	0.2	100.0	15
교육	4,827	2,749	2,761	2,759	1.2	99.9	△2,068
문화및관광	32,774	32,847	32,849	32,752	14.8	99.7	△21
환경	9,415	11,227	12,277	8,838	4.0	72.0	△578
사회복지	17,005	18,102	18,064	17,905	8.1	99.1	900
보건	6,464	7,105	6,250	6,179	2.8	98.9	△285
농림수산	39,016	42,984	45,659	45,537	20.6	99.7	6,5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1,067	82,759	82,836	81,424	36.8	98.3	30,358
교통및물류	15,589	13,178	13,216	12,104	5.5	91.6	△3,485
통신	903	940	940	939	0.4	99.9	36
국토및지역개발	1,855	1,343	1,343	1,343	0.6	100.0	△512
과학기술	600	823	823	823	0.4	100.0	223
총계	**190,836**	**226,723**	**230,190**	**221,511**	**100.0**	**96.2**	**30,675**

주) 16대 분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민간보조사업이 없어 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분류체계 기준

(라) 회계별·기금별 현황

2025년 민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36개 기금에 편성되었고, 비중별로는 기금(40.5%), 일반회계(31.1%), 특별회계(28.4%) 순이었음.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일반회계는 집행액이 1,892억원 증가(2.8%)하였고, 특별회계는 1,824억원 감소(△3.0%)하였으며, 기금은 3조 607억원 증가하였음.

회계·기금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집행률은 99.6%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집행률은 각각 91.5%, 97.2%로 나타났음. 특별회계 중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률이 77.0%로 가장 낮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9.7%, 교통시설특별회계 85.6%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기금 중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2.0%로 가장 낮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2.9%, 영화발전기금 87.3% 등도 다른 기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2025년 민간 보조사업 회계·기금별 결산]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일반회계	67,046	69,461	69,188	68,938	31.1	99.6	1,892
특별회계 (10개)	64,716	64,986	68,717	62,892	28.4	91.5	△1,8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9,023	32,816	35,395	35,308	56.1	99.8	6,285
교통시설특별회계	9,726	7,423	7,451	6,378	10.1	85.6	△3,34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855	16,124	17,168	13,681	21.8	79.7	△2,175
환경개선특별회계	1,374	1,396	1,396	1,396	2.2	100.0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79	166	166	166	0.3	100.0	△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523	5,052	5,048	3,887	6.2	77.0	△63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088	1,133	1,145	1,140	1.8	99.6	△1,948
양곡관리특별회계	165	137	210	210	0.3	100.0	45
특허청	776	717	717	707	1.1	98.6	△69
조달특별회계	9	21	21	19	0.0	93.7	11
기금 (36개)	59,074	92,276	92,285	89,681	40.5	97.2	30,607
남북협력기금	89	2,297	2,297	45	0.1	2.0	△44
군인복지기금	145	144	144	144	0.2	100.0	-
청소년육성기금	55	57	57	57	0.1	100.0	2
농지관리기금	1,432	1,299	1,299	1,299	1.4	100.0	△133
정보통신진흥기금	74	63	63	63	0.1	100.0	△11
국민건강증진기금	1,110	1,096	1,096	1,096	1.2	100.0	△14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고용보험기금	2,397	2,306	2,306	2,282	2.5	99.0	△115
양성평등기금	71	73	73	73	0.1	100.0	1
보훈기금	67	9	9	8	0.0	98.9	△58
방송통신발전기금	2,715	2,376	2,376	2,367	2.6	99.6	△348
한강수계관리기금	2	3	3	3	0.0	100.0	1
수산발전기금	36	39	39	39	0.0	100.0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6	174	174	144	0.2	82.9	△1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209	39	39	39	0.0	100.0	△2,170
응급의료기금	232	178	178	172	0.2	96.7	△60
축산발전기금	2,329	1,997	1,997	1,984	2.2	99.3	△345
전력산업기반기금	6,608	8,594	8,594	8,580	9.6	99.8	1,971
국민체육진흥기금	9,279	8,905	8,905	8,896	9.9	99.9	△383
문화예술진흥기금	1,038	1,044	1,044	1,040	1.2	99.6	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66	150	150	147	0.2	98.5	△19
복권기금	2,726	3,268	3,268	3,268	3.6	100.0	54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35	75	75	58	0.1	76.9	23
지역신문발전기금	51	56	56	56	0.1	99.5	5
언론진흥기금	49	60	60	59	0.1	99.5	10
관광진흥개발기금	4,902	4,476	4,476	4,473	5.0	99.9	△42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293	1,761	1,761	1,759	2.0	99.9	466
주택도시기금	1,236	1,847	1,847	1,847	2.1	100.0	611
과학기술진흥기금	224	210	210	210	0.2	100.0	△14
기후대응기금	5,444	4,633	4,633	4,458	5.0	96.2	△986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52	54	54	54	0.1	100.0	2
영화발전기금	216	338	347	303	0.3	87.3	8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43	43	43	43	0.0	100.0	-
국가유산보호기금	223	158	158	158	0.2	100.0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5	214	214	214	0.2	100.0	19
석면피해구제기금	4	4	4	4	0.0	100.0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2,171	44,238	44,238	44,238	49.3	100.0	32,067
합 계	**190,836**	**226,723**	**230,190**	**221,511**	**100.0**	**96.2**	**30,675**

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마) 부처별 사업별 현황

2025년도 민간보조사업의 부처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5조

3,361억원으로 전체 민간보조사업 결산액의 24.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3조 9,719억원(17.9%), 문화체육관광부 2조 9,627억원(13.4%), 기후에너지환경부 2조 392억원(9.2%) 순으로 나타났음.

주요 부처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100.0%), 농림축산식품부(99.7%), 문화체육관광부(99.7%), 외교부(100.0%) 등은 평균 집행률 96.2%를 상회하였음. 반면, 통일부(6.9%), 기후에너지환경부(86.1%), 국토교통부(92.3%) 등은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임.

전년 대비 집행액 증감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년 대비 3조 282억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1조 2,79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6,154억원 등이 증가하였음. 반면, 산업통상부는 전년 대비 1조 2,954억원 감소하였고, 국토교통부 1,826억원, 보건복지부 803억원, 외교부 663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2025년 민간 보조사업 부처별 결산]

(단위: 억원, %)

부 처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중소벤처기업부	23,079	53,361	53,361	53,361	24.1	100.0	30,282
농림축산식품부	33,565	37,192	39,830	39,719	17.9	99.7	6,154
문화체육관광부	29,580	29,713	29,715	29,627	13.4	99.7	47
기후에너지환경부	7,601	22,645	23,695	20,392	9.2	86.1	12,790
산업통상부	25,371	13,724	13,803	12,417	5.6	90.0	△12,954
국토교통부	13,933	13,112	13,117	12,107	5.5	92.3	△1,826
보건복지부	11,636	11,784	10,929	10,834	4.9	99.1	△803
기획재정부	8,217	7,949	7,949	7,775	3.5	97.8	△442
고용노동부	5,902	6,710	6,707	6,583	3.0	98.2	681
외교부	7,050	6,387	6,387	6,387	2.9	100.0	△663
해양수산부	6,242	5,655	5,716	5,638	2.5	98.6	△604
교육부	4,883	2,749	2,761	2,759	1.2	99.9	△2,124
통일부	195	2,423	2,423	167	0.1	6.9	△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958	2,346	2,351	2,341	1.1	99.6	380
산림청	1,833	1,771	1,780	1,768	0.8	99.3	△65
법무부	1,422	1,489	1,489	1,487	0.7	99.8	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47	1,397	1,397	1,397	0.6	100.0	50
국가유산청	1,096	1,145	1,145	1,145	0.5	100.0	49
국가보훈부	1,186	1,086	1,048	1,042	0.5	99.4	△145
행정안전부	727	846	846	845	0.4	99.9	118
지식재산처	776	789	789	779	0.4	98.7	3

(단위: 억원, %)

부 처	2024년 결산 (A)	2025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19	531	1,055	1,055	0.5	100.0	36
성평등가족부	525	524	527	524	0.2	99.5	△1
국방부	420	471	450	450	0.2	100.0	30
식품의약품안전처	365	224	224	223	0.1	99.4	△143
금융위원회	130	145	147	147	0.1	100.0	17
질병관리청	132	134	134	134	0.1	100.0	2
국회	93	102	102	98	0.0	96.5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90	90	89	0.0	100.0	11
새만금개발청	-	65	65	65	0.0	100.0	65
대법원	43	43	43	43	0.0	100.0	-
조달청	9	21	21	19	0.0	93.7	11
경찰청	19	20	20	20	0.0	100.0	-
농촌진흥청	37	20	20	20	0.0	100.0	△17
해양경찰청	17	17	17	17	0.0	99.7	-
국세청	14	14	13	13	0.0	100.0	△1
방위사업청	27	12	12	12	0.0	99.7	△15
우주항공청	2	3	3	3	0.0	100.0	1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3	2	2	2	0.0	100.0	△1
국가인권위원회	2	2	2	2	0.0	95.9	-
공정거래위원회	2	2	2	2	0.0	100.0	-
재외동포청	3	2	2	2	0.0	100.0	△1
국민권익위원회	1	1	1	1	0.0	100.0	-
소방청	1	-	-	-	0.0	0.0	△1
총계	190,836	226,723	230,190	221,511	100.0	96.2	30,675

주 1) 비목(320-01・320-07) 기준으로 작성
2)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포함
3)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포함하여 작성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민간보조사업의 중앙관서 교부율은 예산현액 23조 190억원 중 22조 1,511억원이 민간에 교부되어 96.2%로 나타났으며, 민간의 실집행률은 교부현액 22조 7,368억원 중 20조 9,464억원이 실집행되어 92.1%로 나타났음.

부처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5년 전 부처 평균 실집행률(92.1%)보다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한 부처는 총 7개임. 이 중 새만금개발청의 실집행률이 26.2%로 가장 낮고, 이어 교육부(63.9%), 기후에너지환경부(80.9%), 해양수산부(82.8%), 문화체육관광부

(88.9%), 기획재정부(91.3%), 국방부(91.9%) 순으로 낮게 나타났음.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앙관서 단계의 교부율도 86.1%로 낮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도 80.9%에 그쳐 중앙관서 집행과 보조사업자 단계 실집행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중앙관서 교부율은 각각 99.7%, 98.6%로 높은 수준이나, 민간 단계의 실집행률은 각각 88.9%, 8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의 집행관리는 중앙관서의 교부율뿐만 아니라 민간 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5년 부처별 민간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민간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중소벤처기업부	43	53,361	1,241	53,361	53,361	100.0	53,437	50,429	94.4
농림축산식품부	118	37,192	315	39,830	39,719	99.7	40,147	39,316	97.9
문화체육관광부	136	29,713	218	29,715	29,627	99.7	31,132	27,690	88.9
기후에너지환경부	47	22,645	482	23,695	20,392	86.1	23,198	18,773	80.9
산업통상부	55	13,724	250	13,803	12,417	90.0	12,318	11,780	95.6
국토교통부	29	13,112	452	13,117	12,107	92.3	12,288	11,496	93.6
보건복지부	115	11,784	102	10,929	10,834	99.1	10,834	10,300	95.1
기획재정부	25	7,949	318	7,949	7,775	97.8	6,038	5,514	91.3
고용노동부	22	6,710	305	6,707	6,583	98.2	6,583	6,106	92.7
외교부	5	6,387	1,277	6,387	6,387	100.0	6,411	6,120	95.5
해양수산부	62	5,655	91	5,716	5,638	98.6	7,205	5,968	82.8
교육부	32	2,749	86	2,761	2,759	99.9	3,761	2,402	63.9
통일부	13	2,423	186	2,423	167	6.9	168	162	9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3	2,351	55	2,351	2,341	99.6	2,331	2,289	98.2
산림청	17	1,771	104	1,780	1,768	99.3	1,788	1,672	93.5
법무부	13	1,489	115	1,489	1,487	99.8	1,487	1,449	9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1,397	82	1,397	1,397	100.0	1,397	1,375	98.5
국가유산청	25	1,145	46	1,145	1,145	100.0	1,170	1,109	94.8
국가보훈부	18	1,086	60	1,048	1,042	99.4	1,071	1,040	97.1
행정안전부	19	846	45	846	845	99.9	845	832	98.4
지식재산처	7	789	113	789	779	98.7	779	775	9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531	266	1,055	1,055	100.0	1,055	1,055	100.0
성평등가족부	12	524	44	527	524	99.5	524	522	99.6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민간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국방부	5	471	94	450	450	100.0	471	433	91.9
식품의약품안전처	7	224	32	224	223	99.4	223	214	96.0
금융위원회	3	145	48	147	147	100.0	147	144	98.0
질병관리청	9	134	15	134	134	100.0	157	156	99.4
국회	4	102	25	102	98	96.5	99	94	95.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90	30	90	89	100.0	90	89	99.6
새만금개발청	1	65	65	65	65	100.0	65	17	26.2
대법원	2	43	22	43	43	100.0	43	43	100.0
조달청	1	21	21	21	19	93.8	21	19	93.7
경찰청	1	20	20	20	20	100.0	20	18	92.7
농촌진흥청	1	20	20	20	20	100.0	20	19	95.0
해양경찰청	2	17	8	17	17	99.7	17	16.8	100.0
국세청	1	14	14	13	13	100.0	14	13	100.0
방위사업청	2	12	6	12	12	99.7	3.38	3.29	97.3
우주항공청	1	3	3	3	3	100.0	3	3	100.0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1	2	2	2	2	100.0	-	-	-
국가인권위원회	1	2	2	2	2	95.9	2	2	100.0
공정거래위원회	1	2	2	2	2	100.0	2	2	100.0
재외동포청	2	2	1	2	2	100.0	2	2	96.5
국민권익위원회	1	1	1	1	1	100.0	1	1	99.6
소방청	-	-	-	-	-	-	-	-	-
총계	**924**	**226,723**	**245**	**230,190**	**221,511**	**96.2**	**227,368**	**209,464**	**92.1**

주 1) 비목(320-01・320-07) 기준으로 작성
2)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포함
3)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별로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이 1조 9,31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어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1조 7,849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1조 173억원, ‘농업재해보험’ 사업 8,239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6,49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상위 10개 민간보조사업의 예산현액 합계는 8조 2,734억원으로, 전체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 23조 190억원의 35.9%를 차지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및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현액이 총 4조 765억원으로, 상위 10개 사업 예산현액의 4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대규모 민간보조사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및 재해보험, 환경·에너지 인프라, 공적개발원조 및 공공기관 지원 사업 등도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중앙관서 단계의 집행실적을 보면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수리시설개보수, 인도적지원(ODA), 전력효율향상, PSO보상 및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100.0%로 나타났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도 100.0% 집행되었음.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집행률도 99.2%로 비교적 높았음.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6,495억원 중 중앙관서 집행액이 3,206억원으로 집행률이 49.4%에 그쳤으며,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액은 2,287억원으로 실집행률이 35.2%에 불과하여 상위 10개 사업 중 집행 및 실집행 실적이 가장 낮았음.

또한 보조사업자 단계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중앙관서 기준 집행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됨.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88.3%였으며, 전력효율향상 사업도 실집행률이 90.1%로 나타났음. 인도적지원(ODA) 사업의 실집행률은 95.8%,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은 97.9%,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은 98.8%로 나타났음.

[2025년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 상위 10개 세부사업]

(단위: 억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9,312	19,312	100.0	17,051	88.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성장지원	17,849	17,849	100.0	17,469	97.9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리시설개보수	10,173	10,173	100.0	10,173	1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업재해보험	8,239	8,176	99.2	8,121	98.6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6,495	3,206	49.4	2,287	35.2
외교부	일반회계	인도적지원(ODA)	6,369	6,369	100.0	6,102	95.8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효율향상	3,641	3,641	100.0	3,280	90.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PSO보상	3,623	3,623	100.0	3,623	100.0

(단위: 억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재기지원	3,605	3,605	100.0	3,562	98.8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430	3,429	100.0	3,429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 재구성

2025년 민간보조사업 중 예산현액 상위 10개 사업은 대부분 중앙관서 집행률과 최종 사업수행주체의 실집행률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다만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중앙관서 집행률이 49.4%,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률이 35.2%로 모두 낮았으므로 교부 이후 최종 사업수행주체 단계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사업 추진상 한계를 점검하고 실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1) 보조사업 편성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및 수요검토 강화 필요

(가)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수행방식 및 비목 검토 필요

보조사업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비목과 수행방식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은 사업의 실질과 예산 비목 또는 수행방식 간 정합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므로, 각 부처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조사업 해당 여부와 적정 비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유사·중복지원 여부,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5] 이는 보조금이 국가사무의 단순 대행이나 일반용역계약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자의 독자적 사업수행에 대한 재정상 원조라는 보

5)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신규 보조사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 중점 검토 사항
- 유사·중복지원 여부
- 사업의 성격상 기금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자체수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 기타 국가정책상 지원 필요성 등
○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

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①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및 지정구역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가유산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그런데 자치단체별 사업내용에는 쓰레기 수거장, 주민 운동시설, 주차장, 관광안내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분담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주민편의 및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졸업생의 이력관리 및 취업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각각 18억원과 24억 5,000만원이며 모두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졸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역시 법률상 국가가 제공할 사무에 해당함.

이처럼 사업의 주체가 국가이고 전문기관은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함.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국가사무 해당 여부와 사업수행 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여 두 사업의 예산비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 필요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가 전제되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함. 그러나 일부 사업은 지방비 확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각 부처는 편성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여건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이 중요한데, 특히 시설 건립, 장비 구축, 지역 기반시설 조성 등 자본보조사업은 부지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 인허가, 계약 등 사전절차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고 보조금 이월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응되는 지방비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줌.[6)]

①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밀집지역에 공공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계비 및 공사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2025년도 설계비 3억원이 경상남도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전무하였음.

동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70%의 매칭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5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부지 및 건립규모에 따른 인·허가 등 사전절차와 설계 준비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3억원을 모두 교부하였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방비 확보 여부, 부지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현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시설건립 사업의 설계·인허가·공사 진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도별 공정률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025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예산		이용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5	38,914	38,914	△5,471	32,744	32,744	16,804	49,548	24,755	24,148	645	5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사업여건 및 실제 수요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보조사업 예산은 정책목표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 기존 공급 수준, 지역별 여건, 사업추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은 수요 감소나 지역별 수요 편차, 기존 교부액의 집행 부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실제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① 교육부의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임차·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66억 8,400만원 중 185억 8,3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124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6.8%에 그쳤음. 특히 신축 지원비는 교부액 23억 6,400만원 중 5억 4,100만원만 실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22.9%로 저조하였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 교부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가 보조금이 교부된 사례가 확인되었음. 따라서 교육부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부지확보·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을 점검한 후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등 교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국가보훈부의 **‘보훈복지시설건립’** 사업은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을 통해 고령 보훈대상자의 요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역별 대기수요와 고령 보훈대상자 분포에 차이가 있고 일부 건립·증축 사업의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향후 지역별 대기자 수, 고령 보훈대상자 분포, 기존 시설 입소율 및 공정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요양원 확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조사업의 집행여건 검토 강화 필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는 보조사업은 긴급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추가경정예산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 현장협의, 조달·공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이월 또는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긴급성과 함께 실제 집행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행정안전부의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 마을의 이재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율은 80%임.

사업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설명회 및 설계 조정 등으로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국비 100억원 중 14억 9,0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14.9%)되었음. 당초 2025년 연내 공사 착공이 목표였으나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과 달리 마을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즉시 연내 집행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음.

② 해양수산부의 **'구명조끼보급 한시지원'** 사업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전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연내 보급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내 생산업체의 공급능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였음.

2025년 10월 기준 누적 발주량은 6만 303개인 반면 누적 납품량은 1만 2,122개로 납품률이 20.1%에 그쳤고, 2025년 12월 말에도 누적 납품률은 74.5%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25.5%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공급되었으며, 최종 보급은 2026년 4월에 완료되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대규모 물품보급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대상 규모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능력, 지방비 확보 및 조달기간 등 실제 집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와 추진일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사업의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행정안전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	10,000	10,000	10,000	-	10,000	1,490	10,000	1,490	-	-	14.9
해양수산부	구명조끼보급 한시지원	-	6,180	6,180	6,180	-	6,180	2,299	6,180	2,299	-	-	37.2

자료: 각 부처 제출

(마) 민간 자부담 설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의 공익성, 수혜자의 부담능력, 민간의 수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과 민간 자부담 간 분담구조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은 특정 민간 수혜자가 직접적·반복적으로 편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자부담 부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액 국고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자부담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7] 민간보조사업은 국가가 민간의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공익성, 수혜자의 부담능력, 민간의 수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과 민간 자부담 간 분담구조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은 예술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트코리아랩의 공유오피스, 회의실, 제작스튜디오, 편집실 등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컨설팅 등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민간 건물을 장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건물 운영비용으로 40억 2,100만원이 지출되어 전체 집행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

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민간보조 사업
○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

음. 그런데 현재 상시 입주 중인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공유오피스, 회의실, 스튜디오 등 주요 시설과 장비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국고가 부담하는 구조임.

예술인 및 예술기업의 초기 창·제작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주기업과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공간 및 장비까지 일률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민간보조사업의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아트코리아랩의 이용대상, 시설 유형, 입주기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 관리비 부과, 장비·공간별 차등 이용료 등 일정 수준의 자부담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우주항공청의 **'민간우주산업생태계지원'** 사업 중 '우주환경시험지원'은 민간 우주기업 및 대학 등이 개발한 우주기기의 성능 검증에 필요한 우주환경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우주환경시험지원기관을 선정하면서 공고서에 국비지원액만 명시하고, 피시험기관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결과 선정된 시험지원기관은 국비 외에 피시험기관 자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공모 단계에서 실제 사업비 규모와 국비·민간부담 간 분담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우주환경시험지원은 민간 우주기업의 기술검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으나, 특정 피시험기관이 직접적인 시험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이므로 국비지원과 민간 자부담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우주환경시험지원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발생 여부, 자부담 산정방식 및 국비지원액과의 관계를 공고서와 사업계획에 명확히 반영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그만큼 국비 지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유산청의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 인근에 도서관·세미나실 등 문화시설과 사찰음식점·불교용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316억 300만원 규모의 사업임.

동 사업은 형식상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통도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조성된 시설의 이용·운영에 따른 편익도 상당 부분 통도사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민간보조사업과 유사한 성격이 있음.

그런데 사업계획상 통도사의 자부담은 사업부지 제공분의 공시지가 상당액인 10억원

만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을 뿐, 통도사가 현금 등으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동 사업은 국가유산의 직접적인 보존·관리보다는 방문객 편의 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의 성격이 크고, 사찰음식점과 불교용품 판매점 등 향후 운영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전반을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도사의 자부담 수준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고, 관련 내부지침에도 자부담 비율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임. 반면 유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율 30% 이하, 자부담률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특정 민간주체가 시설을 운영하거나 직접적인 편익을 얻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의 집행가능성 점검 강화 필요

(가) 사전절차 미이행 또는 사업추진 불확실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 필요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사업은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추진의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어 실집행 부진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교부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엄격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8)]

질병관리청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경남권 사업수행기관인 양산부산대병원이 감염병동 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2025년 경남권 구축 사업비가 전액 교부되었고, 실집행률은 1.9%에 그쳤음.

---

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양산부산대병원은 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곤란하고 타 권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 수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2026년 양산부산대병원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해당 권역 병원에 대해 사업 지속 추진 여부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사업비가 전액 편성 및 교부되었고 대부분 이월되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향후 사업수행기관의 추진의사, 사업계획 확정 여부 및 인허가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질병관리청 사업의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질병관리청	권역감염병원 전문병원구축	53	53	53	53	-	53	1	53	1	52	-	1.9

자료: 질병관리청

(나) 기존 교부액의 실집행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잔여 보조금 교부 필요

보조금을 분할교부하는 취지는 기존 교부액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와 규모를 조정하는 데 있음에도 일부 사업은 집행이 저조함에도 추가 보조금이 교부되어 이월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잔여 보조금 교부 시 기존 교부액의 실집행 현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9)]

① 보건복지부의 **‘혈액원 현대화 지원’** 사업은 한마음혈액원 중부혈액원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교부된 설계비 4억원이 이월된 상태에서 2025년 용지구입비 및 건축공사비 13억 5,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음.

2025년에는 기존 이월된 설계비 4억원이 집행되었으나, 설계용역이 2025년 10월에 착수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추가 교부된 용지구입비 및 건축공사비 13억 5,800만원은 연내 실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설건립 보조금을 교부할 때 기존 교부액 및 이월액의 집행상황과 설계·부지확보 등 선행절차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잔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소공인육성’** 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기존 이월액과 최소 집행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비가 교부되어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음. 특히 일부 지자체는 구축기간 연장,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교부액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기존 이월액과 실제 연내 집행소요를 고려하여 교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보조사업 집행 단계에서의 변경관리 및 실집행 관리 강화 필요

(가) 최종 사업수행기관 단계의 실집행 관리 필요

각 부처는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교부된 이후에도 최종 사업수행기관 단계에서 실제 계약·착공·지출이 이루어졌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일부 재교부 사업은 최종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과 이월 현황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부처는 최종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실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9)「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2025년 지방자치단체 단계의 교부현액은 7,981억 4,300만원이며, 이 중 5,472억 1,7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한 이후 실제 공사·용역 등에 집행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단계의 실집행 실적만으로는 최종 사업수행기관 단계의 실제 집행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 현황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등 최종 사업수행기관 단계의 실제 집행액과 이월액을 함께 파악·관리하여, 보조금이 최종 사업수행기관에 장기간 잔류하지 않도록 실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해양수산부의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은 총사업비 35억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33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전액 이월되었음.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25년에 공사 착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공사비를 전액 편성 및 교부하여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한 바 있음.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일정 및 실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잔여 공사비 등을 편성하여야 함.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사업의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일반농산어촌개발	512,509	512,509	575,718	575,718	222,426	798,143	547,217	427,736	302,070	235,621	15,274	58.9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3,350	3,350	3,350	3,350	150	3,500	150	3,350	-	3,350	-	-

자료: 각 부처 제출

(나) 보조사업 계획 및 예산배분 변경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 필요

일부 사업의 사업 내용이나 예산배분이 당초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보조사업 변경승인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10] 이는 보조사업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목적과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고, 사업내용 및 경비배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중앙관서가 사전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일부 부처는 사업 종료 이후 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 이전에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음.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진흥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 미술기관의 한국미술 프로젝트 운영 지원, 해외 방문연구 지원 및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그런데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 사업이 동일 내역사업 내 '한국미술 패키지 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개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해외 미술기관 프로젝트 지원 예산은 축소된 반면 연구사업 및 운영비 예산은 확대되었음.

특히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운영비 항목에는 '20주년 백서 제작' 등 기관 운영 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어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의 성과를 포함한 백서 제작을 통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미술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환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보조사업 승인 및 집행 단계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시 변경 사유, 변경 전후 예산배분, 당초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및 기관 운영경비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이 당초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전환·집행되지 않도록 사전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IP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권역별 IP 중점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임. 이 가운데,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중점 대학이 장학금을 계획보다 적게 지급하고 잔여금액을 운영비로 사용함에 따라 당초 배분계획과 실제 자금 배분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보조사업의 세부 예산배분 변경은 사업목적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대학의 예산 변경집행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변경 과정 전반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보조금 이월 승인요건 및 지출원인행위 관리 강화 필요

일부 보조 사업은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년도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이월 승인요건과 재이월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월 및 재이월을 허용하고 있음.[11] 재이월은 이월된 경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이월 또는 재이월된 보조금이 장기간 다시 이월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보조금 이월 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보조금 이월 및 재이월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이월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되어야 함. 그러나 일부 사업은 지출원인행위가

1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없거나 선행절차가 지연된 상태에서 이월이 이루어져 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음.

① 국가유산청의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팔만대장경 및 인경본의 디지털 기록화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25년도 교부현액 100억원 중 67억 7,800만원이 실집행되고 29억 9,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동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추가 용역 수행과 용역기간 연장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추가 용역 중 ‘전산 인프라 및 보관·관리 용역’은 2026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이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 예산의 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규제와 연구범위, 데이터 관리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과업과 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이월 승인 시에는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이월 요건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② 보건복지부의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2022년에 충청남도에 교부된 보조금 48억 9,400만원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이월되며 집행잔액이 2026년까지 이월되었음. 건립사업 추진 지연으로 과거에 교부된 보조금이 매년 이월되어 다음 연도 이후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음.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년	500	500	500	500	-	500	25	475	-
2022년	4,894	4,894	4,894	4,894	475	5,369	481	4,888	-
2023년	-	-	-	-	4,888	4,888	400	4,488	-
2024년	-	-	-	-	4,488	4,488	173	4,315	-
2025년	4,681	4,681	4,681	4,681	4,315	8,996	1,611	7,385	-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 재이월이 허용되므로 보건복지부는 이월과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편성목적에 부합한 예산 집행 필요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예상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반납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당초 편성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각 부처는 집행잔액 등을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 또는 불용예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목적,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당초 편성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사후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특히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나 운영비 등 본연의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순보험료 중 약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비로 지원하여 농가의 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업임.

2025년 동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2024년 81억원에서 2025년 2,078억 1,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791억 8,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38.1%에 그쳤음. 특히 보험료 지원예산과 사업운영비가 구분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험료 지원에 사용되는 금액과 사업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임.

실제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의 보험료 지원액은 집행이 저조한 반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운영비 지원 규모는 당초 4억 3,500만원에서 15억 7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이는 현장 설명회 운영, 가격 기준 재정립, 수확량 신고제 성과분석, 표준수확량 실측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험료 지원예산과 사업운영비의 소요를 구분하여 산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결산액(B)	A-B
보험료 지원(국비 50%)	175,739	57,712	118,027
농협손해보험 운영비지원	31,643	19,906	11,73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운영비 지원	**435**	**1,570**	**△1,135**
합계	207,817	79,188	128,6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이므로, 보험료 지원예산과 운영비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과정 중 운영비가 확대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편성명목별 관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편성할 때 보험료 지원예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운영비, 농협손해보험 운영비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보험료 지원예산의 불용예상액이 운영비 등으로 전환·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은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민간보조사업이나, 일부 대학에서 당초 계획보다 장학금을 적게 지급하고 잔여액을 운영비 등 다른 항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장학금은 학생 지원과 교육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핵심 항목이므로, 학생 모집 부진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여액을 운영비로 전환하기보다 지원대상 확대, 차년도 배분계획 조정 또는 집행잔액 반납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처는 중점대학별 정부지원금 배분계획과 실제 집행내역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의 잔여액이 다른 항목으로 전환되는 경우 변경사유와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보조사업 정산·회수 단계에서의 반납 및 보고 관리 강화 필요

(가)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의 지연 방지 필요

보조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액 및 환수금이 적기에 확정·고지되어 세입으로 수납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정산 지연 또는 납부 지연으로 장기간 미수납액이 있으므로, 각 부처는 정산 완료 이후 반납·환수 절차와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등을 반납받아야 함. 집행잔액은 통상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발생이자 및 수익금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되어야 하므로, 정산 및 반납이 지연될 경우 국가 세입의 확보가 저해될 수 있음.

① 기타경상이전수입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는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또는 환수액이 장기간 미수납된 사례가 확인되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에는 보조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액 및 환수금 등이 포함되므로, 해당 세입의 미수납은 보조사업 정산 및 반납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2025년 국고보조금 관련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3,709억 9,900만원이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21억 8,900만원, 성평등가족부가 759억 7,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음.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관련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2023년 5,560억 5,100만원에서 2024년 3,303억 9,5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3,709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6억 400만원 증가하였음. 수납률도 2024년 77.2%에서 2025년 72.5%로 4.7%p 하락하였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관련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2023년 761억 3,300만원, 2024년 790억 6,400만원, 2025년 1,221억 8,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2025년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431억 2,500만원, 54.5%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4년 90.4%에서 2025년 85.0%로 5.4%p 하락하였음.

성평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관련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도 2023년 392억 2,000

만원에서 2024년 473억 1,500만원, 2025년 759억 7,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2025년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286억 6,400만원, 60.6%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4년 67.6%에서 2025년 65.1%로 2.5%p 하락하였음.

2025년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성평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관련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합계는 5,691억 6,700만원에 해당됨. 국고보조금 관련 미수납액이 일부 부처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미수납 발생 원인과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관련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상위 3개 부처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보건복지부	2023	788,948	1,722,629	1,166,579	556,051	67.7
	2024	1,288,546	1,450,923	1,120,528	330,395	77.2
	2025	1,667,400	1,351,480	980,480	370,999	72.5
기후에너지 환경부	2023	507,027	552,484	476,350	76,133	86.2
	2024	612,654	823,759	744,695	79,064	90.4
	2025	653,435	815,683	693,494	122,189	85.0
성평등가족부	2023	45,681	81,844	42,625	39,220	52.1
	2024	56,293	146,207	98,891	47,315	67.6
	2025	54,424	218,563	142,368	75,979	65.1

주) 미수납액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수납되지 않은 잔액임
자료: 각 부처 제출

② 기타재산이자수입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자체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 사업 정산을 통해 반납·수납되어야 할 국고 세입에 해당하나, 보조금 관련 이자수입을 징수결정하고도 실제로 수납하지 못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매년 각 부처의 세입으로 계상되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계좌에 보관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의미함. 2025회계연도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상위 3개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교육부의 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보건복지부의 미수납액은 2023년 127억 4,100만원, 2024년 161억 2,300만원, 2025년 210억 3,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2025년 미수납액은 2023년보다 82억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4년 72.9%에서 2025년 72.6%로 비슷한 수준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은 2023년 56억 3,300만원에서 2024년 67억 7,700만원, 2025년 7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25년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7억 2,300만원, 10.7% 증가하였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18억 6,700만원, 33.1% 증가한 수준임.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에는 징수결정한 기타재산이자수입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5년에는 36억 6,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수납률도 2023년과 2024년 각각 100.0%에서 2025년 79.5%로 하락하였음.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관련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상위 3개 부처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보건복지부	2023	218,207	36,761	24,017	12,741	65.3
	2024	229,724	59,484	43,362	16,123	72.9
	2025	275,111	76,826	55,791	21,034	72.6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	42,465	35,932	30,298	5,633	84.3
	2024	57,578	55,131	48,355	6,777	87.7
	2025	64,178	69,038	61,538	7,500	89.1
교육부	2023	16,888	3,005	3,005	-	100.0
	2024	23,935	4,891	4,891	-	100.0
	2025	30,819	17,829	14,168	3,660	79.5

주) 미수납액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수납되지 않은 잔액임
자료: 각 부처 제출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관련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합계는 321억 9,400만원에 해당됨.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육부는 2025년에 36억 6,000만원의 미수납액이 새로 발생하였으므로, 각 부처는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징수 및 수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준수 필요

일부 부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내 제출률이 낮고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관리와 기한 미준수 사업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집행잔액·발생이자 반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2] 그러나 일부 부처의 경우 법정 제출기한 내 제출률이 낮고,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5년 제출자료 기준 국토교통부의 경우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정산대상 284개 중 121개만 기한 내 제출되어 제출률이 42.6%에 그쳤고, 민간보조사업도 정산대상 59개 중 36개만 기한 내 제출되어 제출률이 61.0%로 낮게 나타났음.

[2025년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개, %)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제출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제출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국토교통부	284	121	42.6	-	59	36	61.0	-

특히 **‘주거급여지원’** 사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에서는 정산보고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대조·검증 과정이 지연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서울특별시는 주거급여지원 사업 중 주거상향지원 및 이사비지원 관련 정산액을 2025년에 반납하지 못해 2025년 결산상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정산액을 정산시점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음.

따라서 각 부처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가 법정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점검을 강화하고, 제출 지연이 반복되거나 정산·반납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추가 교부 제한 등 법령상 제재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사업성과 및 부처 이관사업 관리체계 정비 필요

(가) 정부조직개편 또는 사업이관에 따른 관리책임 명확화 필요

정부조직개편이나 사업이관으로 소관부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교부·집행·정산 및 성과관리 책임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부 이관사업의 경우 선행절차 이행, 잔여 보조금 교부, 성과관리 주체 등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보조사업 이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개편이나 사업이관으로 소관부처가 변경되는 경우, 보조사업의 교부·집행·정산 및 성과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음. 따라서 이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간 역할분담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풍력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2025년 계획액 30억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9,0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3.0%에 그쳤음.

동 사업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장비 도입에 필요한 중앙장비심의 관련 규정의 정비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장비심의가 2026년 2월에야 완료되는 등 핵심 사업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음. 특히 사업 이관 이전에는 관련 장비심의 규정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규정을 준용하거나 후속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수행의 제도적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사업 이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적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규정을 적시에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은 영상 등을 자동 생성하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방송영상 자료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고 그 활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음.

다만 사업 이관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WBL 참가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축하는 데이터가 실제 AI 모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가팀의 데이터 수요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양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축된 데이터가 특정 사업 참여자에게만 활용되는데 그치지 않도록 기존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체계와의 연계 등 데이터의 공개·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구축 단계부터 실제 수요와 활용방안을 반영함으로써 사업 이관 이후에도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조사업 성과지표의 사업목적 부합성 제고 필요

보조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단순한 지원 건수나 집행 여부가 아니라 보조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부 사업은 산출 지표에 치중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각 부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성과관리는 단순히 예산 집행 여부나 지원 건수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13)]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단순히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또는 지원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효과가 실제로 나타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났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일부 사업은 지원 건수, 참가자 수, 만족도 등 투입·산출 중심의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육성'** 사업 중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여성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성과관리 항목이 참가자 수, 교육·컨설팅 실시, 사업화 지원, 만족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산출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사업 지원을 받은 여성창업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가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수혜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 실질적인 경영성과 개선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보조사업 성과목표 달성 여부 점검 강화 필요

각 부처는 보조사업 종료 후 단순히 보조금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조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일부 사업은 성과지표가 사업의 핵심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지원방식 개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 지원대상 선정, 예산배분 및 사업내용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과관리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각 부처는 보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성과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지원방식, 성과지표, 사업대상 및 예산배분을 조정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임.

2025년 동 사업은 예산현액 2,374억 6,000만원 중 2,374억 3,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99.9%에 이르렀고, 성과지표인 '전체 가입자 수'도 목표 361만명 대비 427만명을 기록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그러나 K-패스의 사업목적은 가입자 확대 자체가 아니라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가입자 수 증가만으로 사업의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가입자 수 등 산출실적뿐만 아니라 K-패스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횟수 및 이용행태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핵심 정책목표인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 및 지원방식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Ⅴ. 정책별 검토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가. 개 요

(1) 정 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개념은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개념 간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통상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1]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소기업(小企業)[2]을 의미함. 다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함.

한편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통상적으로 소상공인과 같은 정책대상 범주에 포함되는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3]에 따라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히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를 의미하며, 자영업자는 법률상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 사업체를 소유 및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함.[4]

문의: 02-6788-5689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 10억원 등)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통계청, 「통계용어사전」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념도]

<table>
<tr><th>법인</th><th colspan="3">개인</th><th>무등록사업자</th></tr>
<tr><td colspan="4">소상공인: 791만개(2023)
(간판 없는 소상공인, 복수사업자 포함)</td><td rowspan="3"></td></tr>
<tr><td>법인: 81만개</td><td colspan="3">개인: 710만개</td></tr>
<tr><td rowspan="3"></td><td colspan="3">개인사업자: 865만명(2023)
(사업자등록기준, 복수사업자 포함)</td></tr>
<tr><td>일반과세자:
522만명</td><td>간이과세자:
211만명</td><td>면세사업자:
132만명</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3">자영업자: 568만명(2025.8.)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포함)</td></tr>
</table>

주 1) 소상공인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기본통계」참고
2) 개인사업자 통계는 국세청의「국세통계연보」참고
3) 자영업자 통계는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참고
자료: 관계부처 합동,「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024. 7. 3.)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근거 법령과 개념 등이 다소 상이하나 사회 통념상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의미로 혼용되고, 통상적으로 같은 정책대상 범주에 포함되는바 이하에서는 ‘소상공인’으로 통칭하여 서술함.

(2) 현 황

2023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 수는 791만 개, 종사자 수는 1,090만 명, 매출액은 1,278조 원으로 전체 기업의 95.2%, 전체 고용의 45.9%, 전체 매출의 17.4%를 차지하고 있음. 전년 대비 소상공인 기업 수는 25만 개(3.5%), 종사자 수는 16만 명(1.5%), 매출액은 4.7조원(0.4%)이 증가하였음.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업	전체	6,898,958	7,295,393	7,723,867	8,053,163	8,309,696
	소상공인	6,445,316	6,842,959	7,335,397	7,656,718	7,906,861
	(비중)	93.4	93.8	95.0	95.1	95.2
종사자	전체	21,254,650	21,580,496	22,865,491	23,410,899	23,767,377
	소상공인	9,223,529	9,461,073	10,461,890	10,740,812	10,899,947
	(비중)	43.4	43.8	45.8	45.9	45.9
매출액	전체	56,295,399	56,599,655	64,500,838	74,944,317	73,591,237
	소상공인	9,548,951	9,688,748	11,658,742	12,729,183	12,776,045
	(비중)	17.0	17.1	18.1	17.0	17.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업종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210.7만 개, 26.7%), 부동산업 소상공인 사업체(122.1만 개, 15.4%), 숙박 및 음식점업 소상공인 사업체(84.7만 개, 10.7%), 운수 및 창고업 소상공인 사업체(67.4만 개, 8.5%) 등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1년~2023년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21	2022	2023
A. 농업, 임업 및 어업	98,374	106,449	112,291
B. 광업	2,259	2,228	2,152
C. 제조업	551,049	562,672	545,96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5,386	143,387	167,80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8,736	9,506	9,687
F. 건설업	520,239	551,148	568,013
G. 도매 및 소매업	1,845,255	2,007,388	2,107,254
H. 운수 및 창고업	635,262	658,227	674,147
I. 숙박 및 음식점업	829,603	841,639	846,531

(단위 : 개)

구분	2021	2022	2023
J. 정보통신업	151,100	174,324	198,332
K. 금융 및 보험업	56,845	58,979	58,982
L. 부동산업	1,258,699	1,210,551	1,220,79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1,912	278,417	301,072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8,172	167,357	175,694
P. 교육 서비스업	247,134	264,952	278,64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2,482	53,520	53,87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1,531	157,436	161,040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91,359	408,538	424,589
합 계	7,335,397	7,656,718	7,906,86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이후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를 살펴보면 평균 경기체감지수는 2025년 10월 79.1포인트로 1월(47.6포인트)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6년 3월 미국-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크게 하락(57.0포인트)하였음. 또한 체감지수와 전망지수 모두 매월 100포인트를 하회하였는바, 소상공인은 매월 경기 악화를 체감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경기전반) 현황]

(단위: 포인트)

20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체감	47.6	51.3	66.5	63.6	70.0	67.6	61.5	72.3	76.6	79.1	75.0	70.3	66.8
전망	75.5	69.3	86.6	86.9	79.8	79.1	76.2	76.7	88.3	86.8	90.7	83.2	81.6
202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체감	66.9	68.1	57.0	63.7	67.9	63.6	-	-	-	-	-	-	64.5
전망	76.1	80.1	87.2	82.7	84.8	82.8	77.3	-	-	-	-	-	81.6

주 1) 경기동향지수는 100포인트 이상인 경우 경기 호전을, 100포인트 미만인 경우 경기 악화를 의미함
2) 2026년 평균 경기체감지수는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경기전망지수는 1월부터 7월까지 값의 산술평균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지원·경영안정·구조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5]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음.[6]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7의4.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2025. 12. 2. 신설>
17의5.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지원 <2025. 12. 30. 신설>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융자사업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으로 구성된 경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억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액		결산 (B)	수납률 (B/A)	구 분	계획액		결산 (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총 계	70,860	113,858	115,829	101.7	총 계	70,860	113,858	115,829	101.7
기타이자 수입 및 재산수입	4,200	4,200	3,425	81.5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2,109	8,256	8,256	100.0
기타경상 이전수입	527	527	295	56.0	소상공인지원	8,678	26,211	26,206	100.0
융자원금 회수	32,620	31,906	35,484	111.2	소상공인지원(융자)	37,700	42,200	41,842	99.2
전입금	15,269	38,256	38,256	100.0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4,652	19,402	19,402	100.0
예수금	18,244	22,744	22,144	97.4	기금운영비	685	685	685	100.0
정부예금 회수	-	16,225	16,225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11,204	11,204	11,204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5,831	5,900	5,300	89.8
					통화금융기관예치	-	-	2,93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2025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지식재산처 등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금을 증액하였고(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며(일반회계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지식재산처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종합 인프라·서비스를 지원하였음(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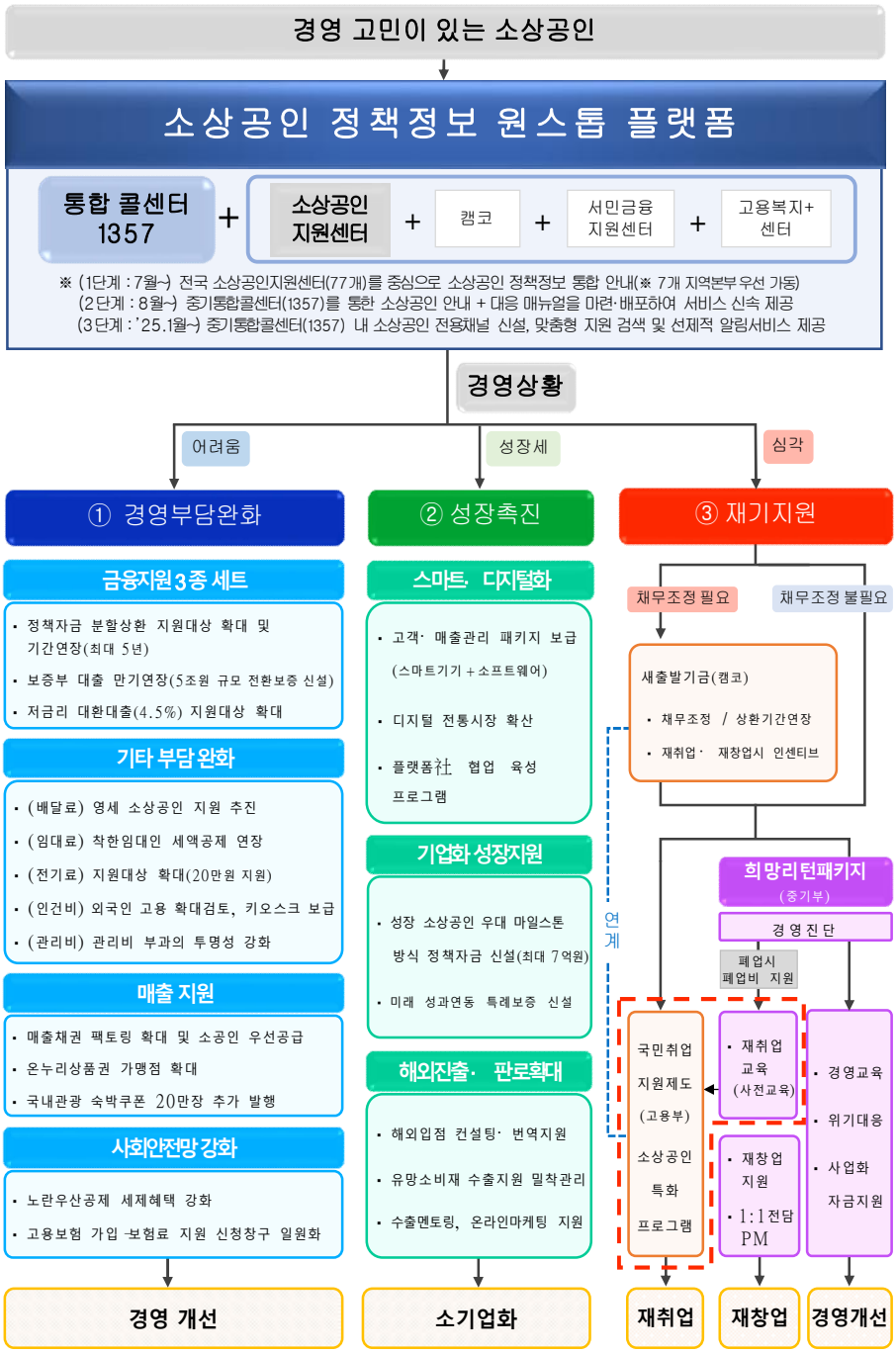
추가로 2024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아래에 ① 경영부담 완화, ② 성장촉진 지원, ③ 재기 지원 분야의 추진과제들을 계획하였음.

첫째, **'경영부담 완화'**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여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전환보증 및 대환대출의 상환연장 대상과 연장 기간을 확대하고,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구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급하는 것임.

둘째, **'성장촉진 지원'**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것임.

셋째, **'재기 지원'**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한편, 폐업에 소요되는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임.

[2024. 7. 3.「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주요 내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024. 7. 3.)

이후 정부는 상기한 종합대책 보완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가속화하고, 피해구제·규제개선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후 ①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② 피해구제·규제개선, ③ 매출기반·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음.

[2024. 12.「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 (목적) 소상공인 종합대책(7. 3.) 보완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가속화하고, 피해구제·규제개선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매출기반 강화 등 지원 필요
○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금융지원 3종세트 개선, 새출발기금 확대, 플랫폼 상생협력 등
- (피해구제·규제개선) 불법 광고대행, 노쇼 등 피해 지원방안 마련,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추진
- (매출기반·경쟁력 강화 지원) 온누리상품권 활용 제고, 지역상권 활성화,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3월에는 기존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① 매출기반 확대, ② 경영부담 완화, ③ 재기지원 및 생업규제 개선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었음.

[2025. 3.「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주요 내용]

○ (매출기반 확대)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및 구내식당 휴무 추진
-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기반 지원
- 소상공인 판촉행사 연 4회 추진, 지역 축제 및 전통시장과 연계한 판촉전 실시 등
○ (경영부담 완화)
-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배달·택배비 지원 등
-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재기지원 및 생업규제 개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컨설팅 강화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지원서비스 연계 및 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 무인정보단말기, 재창업자에 대해 창업 인정, 소상공인 지위 유예 선택권 부여 등 규제 개선
- 노쇼, 악성댓글, 온라인불법광고, 일회용품 등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지출구조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2024년 이후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후속대책 중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및 재기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 ① 계획 대비 실적 부진 또는 잦은 계획 변경 문제, ② 보증·융자를 제공하는 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도덕적 해이 문제, ③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 등을 검토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속가능한 수입·지출구조 마련 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경상사업비 증가로 인해 매년 순자산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을 통해 기금의 경상사업비 지출액을 충당하는 현행 수입·지출구조는 지속가능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가능한 수입·지출 구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융자 원리금의 회수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주된 기금수입으로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보조사업·공단 인건비 등의 기금 운영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을 주된 기금지출로 하고 있음.

2025년 주요 수입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조 8,256억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 회수금 3조 5,48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조 2,144억원 등이며,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여유자금 1조 6,225억원을 회수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였음.

[2023~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융자원금 회수	재산 수입	기타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자 기금	소계		
2023년	2,674,181	305,418	345,326	3,324,925	569,974	-	3,000,000	3,569,974	-	-
2024년	3,736,466	339,715	525,133	4,601,314	1,635,049	-	2,167,138	3,802,187	-	-
2025년	3,548,447	342,516	29,507	3,920,470	3,825,610	-	2,214,371	6,039,981	-	1,622,53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주요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관련 각종 보조금 등 경상사업비로 5조 3,938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목적으로 4조 1,84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목적으로 1조 6,504억원 등이 지출되었음.

[2023~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기금 운영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여유 자금 운용 (순증)
	경상	융자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자 기금	소계			
2023년	1,036,532	2,945,876	3,982,408	-	-	2,338,794	2,338,794	62,330	-	511,367
2024년	1,333,405	3,559,150	4,892,555	-	-	2,370,447	2,370,447	66,041	-	1,074,458
2025년	5,393,794	4,184,200	9,577,994	-	-	1,650,391	1,650,391	61,201	-	293,4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연도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부채가 자산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2.47조원에서 △8.93조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현행 기금 수입·지출구조의 낮은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연도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산(A)	13.31	14.38	14.70	14.59	13.18
부채(B)	15.79	19.59	20.71	21.01	22.11
순자산(A-B)	△2.47	△5.2	△6.01	△6.41	△8.9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기금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주요 수입 항목 중 ① 융자원금 회수금은 기존의 융자 지출을 전제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회수금 규모의 확충은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성이 낮은 점,[7] 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미래 시점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거나 차환을 통해 상환하여야 하는 항목이므로 예수금의 확충 역시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는 관련성이 낮은 점,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법정 출연금 등 자체 재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금의 경상사업비 지출액 대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7) 심지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정책지원에 따른 순이자 역마진 및 대손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상사업비 지출, 운영비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등을 목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폭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결과 기금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연도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경상성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상 사업비(A)	5,222	5,097	4,765	5,032	6,758	50,707	174,465	443,367	10,365	13,334	53,938
기금 운영비(B)	261	286	326	341	399	466	511	630	623	660	612
소계 (C=A+B)	5,483	5,383	5,091	5,373	7,157	51,173	174,976	443,997	10,988	13,994	54,550
일반회계 전입금(D)	5,639	6,373	5,937	5,937	8,249	50,997	155,177	411,597	5,670	16,350	38,256
차이 (=D-A-B)	156	990	846	564	1,092	△176	**△19,799**	**△32,400**	**△5,318**	2,356	**△16,294**
충당률 (=D/C)	102.8%	118.4%	116.6%	110.5%	115.3%	99.7%	**88.7%**	**92.7%**	**51.6%**	116.8%	**64.6%**

주 1) 2015~2024년은 결산 기준으로, 2025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작성함
2) 차이가 (+)인 경우 기금 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인 경우 기금 수지 적자에 기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었는바,[8][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사업 수지구조〉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자수익(a)	1,120	984	1,225	2,101	2,543	2,727	2,744
이자비용(b)	1,424	1,542	2,102	3,384	2,958	2,984	3,186
순이자역마진(c=b-a)	304	558	877	1,283	415	257	442
대손비용(d)	975	672	2,326	2,262	1,603	158	3,175
재정부담추계액(c+d)	1,279	1,230	3,203	3,545	2,018	415	3,617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9) 이는 해당 법률의 전신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012년 개정하면서, FTA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안정적인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3%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규모를 정하게 된 것임.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을 통해 기금의 경상사업비 지출액을 충당하는 현행 수입·지출 구조는 지속가능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실제로 2015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법정 편성기준(관세액의 3%)을 크게 초과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관세 수납액의 3% 대비 18.30배 수준에 이르렀음.

[연도별 전년도 관세액 및 일반회계전입금 배율]

(단위: 억원, 배)

연도	전년도 관세액(A)	전년도 관세액의 3%(B)	일반회계전입금		배율 (C/B)
			당초	수정(C)	
2015년	87,210	2,616	5,639	5,639	2.16
2016년	84,954	2,549	5,945	6,373	2.50
2017년	80,454	2,414	5,457	5,937	2.46
2018년	85,292	2,559	5,649	5,937	2.32
2019년	88,152	2,645	7,602	8,249	3.12
2020년	78,221	2,347	8,263	50,997	21.73
2021년	70,585	2,118	13,633	155,177	73.27
2022년	82,227	2,467	38,548	411,597	166.84
2023년	103,241	3,097	5,670	5,670	1.83
2024년	72,883	2,186	16,350	16,350	7.48
2025년	69,723	2,091	15,269	38,256	18.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대내·외 위기 발생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경상적 지출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사실상 유일한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조차 이미 현행 법령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어 수입·지출구조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 및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상적 지출의 적정 총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입·지출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금 집행잔액의 국고반납 지연 부적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보조사업 종료 이후 집행잔액이 곧바로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뒤늦게 반납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10]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종료 이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곧바로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수년간 보조사업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뒤늦게 반납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2022년 이전 보조사업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교부받은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의 국고반납액은 162억 3,900만원임.

---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이전 보조사업의 2025년 집행잔액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교부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전체교부액	509,130	537,282	715,715	5,117,245	17,497,615	44,399,834	68,776,821
반납액	1	36	337	1,619	9,929	4,317	16,239
반납건수	2	6	5	20	22	30	8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지연 사유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의 과정에서 업무가 가중된 측면이 있고, 2017년 이전의 경우 보조금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상기한 업무 과중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 잔액 반납이 5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을 제외한 자체재원이 존재하지 않는바, 기 교부된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납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기금 수입을 최대한 확충하는 것은 기금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의 정산·국고반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속히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경영부담 완화 관련 지출사업 검토

(가)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 및 융자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첫째, 부정확한 수요 예측 및 면밀하지 못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내역사업 중 ‘상생성장지원자금’과 내내역사업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 ‘재도전특별자금’ 등의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였음.

[2025년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건수		금액		
	계획(최종)	실적	계획(당초)	계획(수정)	실적
일반경영안정자금	27,400	48,543	12,200	17,970	17,718
특별경영안정자금	41,000	55,724	16,000	16,555	16,450
긴급경영안정자금(재난)			1,000	1,000	1,704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			3,500	**3,500**	**796**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5,000	7,400	8,405
대환대출			2,000	2,000	1,705
재도전특별자금			2,500	**2,000**	**1,325**
장애인기업지원자금			500	500	627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	1,500	1,988
성장기반자금	19,000	13,759	8,500	7,531	7,531
상생성장지원자금	2,000	83	1,000	**1,000**	**4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상생성장지원자금’**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과다 산정된 결과 연말 기준 실적이 44억원(83개사 × 5,300만원)으로 당초 계획(1,000억원) 대비 4.4% 수준에 불과하였음.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원되었고, 대출 금리 또한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2%p 수준으로 타 지원사업 대비 메리트가 크지 않았던 결과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한편 **‘재도전특별자금’** 사업은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히 산정하지 못한 결과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동 사업의 규모를 2,500억원으로 설

정하였으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3차례에 걸쳐 968억원으로 계획액을 감액하였는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다시 사업규모를 2,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제1회 변경안에서도 이를 유지하였다가, 5월 기준 실집행액이 408억원(16.3%)에 불과함에 따라 비로소 제2회 변경안에서 500억원을 감액하였음. 그러나 제2회 변경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 집행액은 1,325억원(53.0%)에 불과하여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를 해소하지 못하였음.

[2021~2025년 재도전특별자금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당초 계획액(A)	수정액	집행액(B)	집행률(=B/A)
2021	900	297	297	33.0
2022	1,400	243	243	17.4
2023	2,000	608	529	26.4
2024	2,500	968	902	36.1
2025	2,500	2,000	1,325	5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히 설정하지 못하여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상당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계획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융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부실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유행 및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임차료융자, 코로나19 피해자금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책자금을 제공한 바 있음.

이들 융자사업의 부실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2025년 말 기준 대체로 완화되었으나, 2023년부터 신규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16.6%), 2022년 일시적으로 신규대출을 취급한 희망대출(15.0%), 2021년을 끝으로 신규대출 취급을 종료한 저신용소상공인융자(10.9%) 등은 여전히 두 자릿수의 부실률을 유지하고 있음.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중 2025년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사업의 연도별 부실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임차료융자	신규대출액	8,638	-	-	-	-
	대출잔액	8,589	8,471	7,051	3,949	1,573
	부실금액	19	129	562	509	121
	부실률	0.23	1.52	7.97	12.88	7.66
코로나19 피해자금	신규대출액	-	-	-	-	-
	대출잔액	7,657	6,507	4,542	2,249	1,124
	부실금액	293	473	659	354	43
	부실률	3.82	7.26	14.51	15.74	3.86
재도전특별자금	신규대출액	297	243	529	902	1,325
	대출잔액	816	1,045	1,469	2,154	2,891
	부실금액	47	89	152	206	244
	부실률	5.80	8.50	10.37	9.58	8.45
소상공인 고용연계융자	신규대출액	5,751	-	-	-	-
	대출잔액	5,741	5,699	5,157	2,984	1,381
	부실금액	10	109	463	468	115
	부실률	0.17	1.91	8.98	15.69	8.34
저신용소상공인융자	신규대출액	9,104	-	-	-	-
	대출잔액	9,101	9,086	8,468	5,020	2,742
	부실금액	5	447	1,673	1,695	299
	부실률	**0.05**	**4.91**	**19.76**	**33.76**	**10.89**
일상회복특별융자	신규대출액	2,709	3,528	-	-	-
	대출잔액	2,708	6,212	6,107	3,779	1,897
	부실금액	-	52	303	474	143
	부실률	-	0.83	4.96	12.55	7.53
희망대출	신규대출액	-	10,555	-	-	-
	대출잔액	-	10,544	10,183	7,188	4,178
	부실금액	-	348	1,696	1,823	626
	부실률	**-**	**3.29**	**16.66**	**25.36**	**14.99**
소공인특화자금	신규대출액	2,626	3,109	4,360	12	-
	대출잔액	13,222	13,198	13,663	9,766	5,657
	부실금액	359	245	619	795	547
	부실률	2.71	1.85	4.53	8.14	9.68
혁신성장촉진자금	신규대출액	-	-	-	4,804	4,852
	대출잔액	-	-	-	4,696	8,595
	부실금액	-	-	-	49	538
	부실률	-	-	-	1.04	6.26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규대출액	-	-	8,149	7,369	8,405
	대출잔액	-	-	8,115	13,724	17,869
	부실금액	-	-	1,007	2,580	2,961
	부실률	**-**	**-**	**12.41**	**18.80**	**16.57**
기타자금	신규대출액	-	-	-	-	-
	대출잔액	-	11,549	10,533	12,241	14,229
	부실금액	-	85	421	618	1,056
	부실률	-	0.01	4.00	5.04	7.4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연장 조치가 2025년 9월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만기 재연장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그간 잠복・이연되었던 부실이 대규모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임.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조치 현황]

구분	기간	대책	관련 지침
최초	20.4.1.~ 20.9.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2020.3.19.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2020.3. 중기부)
1차 연장	20.10.1.~ 21.3.31.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2020.8.27.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2020.9. 중기부)
2차 연장	21.4.1.~ 21.9.3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2021.3.2.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2021.3. 중기부)
3차 연장	21.10.1.~ 22.3.3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2021.9.16.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2021.9. 중기부)
4차 연장	22.4.1.~ 22.9.3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 (2022.3.23.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2022.3. 중기부)
5차 연장	22.10.1.~ 25.9.3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2022.9.27. 금융위)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운용 지침(2022.9. 중기부)
2026. 5. 현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2025.9.25. 금융위)	전액 만기연장조치 종료에 따른 후속업무 지침(2025.9. 중기부)

자료: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단기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책자금의 부실이 미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리스크 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나)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보증공급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보증공급기관은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공급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음.

특히 2024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이른바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여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전환보증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전환보증 규모를 확대한 바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보증공급 확대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 기술보증기금 전환보증 2조원 신규 공급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 7.,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2024. 12.

그런데 보증공급기관별 보증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부실률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회수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경우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실이 악화됨에 따라 기본재산 적립액이 감소하는 등 보증공급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부실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이후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보증부실률이 2023년부터 3%대에 진입한 이후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에 대한 회수율은 2021년 3.6%에서 2025년 2.7%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부실 관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증잔액(A)	591,461	613,961	618,214	624,973	624,030
부실금액(B)	11,604	12,556	20,468	22,750	22,966
부실률(=B/A)	**2.0**	**2.0**	**3.3**	**3.6**	**3.7**
대위변제발생액(C)	12,111	11,509	17,205	22,283	24,362
대위변제회수액(D)	3,280	2,697	2,293	2,446	2,212
대위변제액(E=C-D)	8,831	8,812	14,912	19,837	22,150
대위변제율(=E/A)	1.5	1.4	2.4	3.2	3.5
구상권 잔액(F)	94,237	82,962	76,344	80,447	84,902
구상권 회수율	**3.6**	**3.4**	**3.2**	**3.1**	**2.7**
기본재산(G)	63,004	71,351	75,533	75,451	76,008
운용배수(=A/G)	9.4	8.6	8.2	8.3	8.2

주) 2025년 신설된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제외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도 비슷하게 보증부실률이 2023년부터 4%대에 진입한 이후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에 대한 회수율은 2022년 3.5%에서 2025년 2.7%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기술보증기금 보증 및 부실 관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증잔액(A)	262,684	265,029	279,176	284,713	299,242
부실금액(B)	6,693	7,197	11,832	13,473	15,563
부실률(=B/A)	**2.5**	**2.7**	**4.2**	**4.7**	**5.2**
대위변제발생액(C)	6,734	6,701	11,105	13,358	15,677
대위변제회수액(D)	1,945	1,892	1,853	2,040	1,919
대위변제액(E=C-D)	4,903	4,958	9,567	11,568	14,258
대위변제율(=E/A)	1.9	1.9	3.4	4.1	4.8
구상권 잔액(F)	57,090	55,773	58,881	62,526	64,082
구상권 회수율	**3.4**	**3.5**	**3.2**	**3.1**	**2.7**
기본재산(G)	29,176	33,670	34,424	33,174	31,375
운용배수(=A/G)	9.0	7.9	8.1	8.6	9.9

자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실이 악화되어 재보증액에 대한 대위변제인 손실보전금이 계획 대비 증가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결산잉여금 등으로 적립하였던 기본재산을 사실상 2024년에 소진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출연금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2021~2025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		425,123	461,547	442,658	427,917	440,513
재보증잔액(A)		228,560	248,649	238,068	227,885	230,468
손실보전금 순지급률(B)		1.02%	1.07%	3.36%	5.34%	5.45%
지출	소계(C)	2,405.14	2,752.48	8,100.25	12,290.82	12,714
	손실보전금(=A×B)	2,325.13	2,665.50	8,002.62	12,175	12,569
	관리비용 등	80.01	86.98	97.63	115.82	145
수입	소계(D)	2,515.07	2,872.70	6,691.41	11,037.28	7,219
	재보증료	1,730.94	1,872.29	1,762.77	1,675.34	1,864
	금융기관출연금	543.88	598.92	645.25	1,183.67	2,306
	운용수익	119.50	274.74	514.04	305.83	214
	기타수익	120.75	126.75	1,171.63	2,406.16	2,835
	기본재산(조달)	-	-	2,597.72	5,466.28	
수입 대비 지출 차액(=D-C)		109.93	120.22	△1,408.84	△1,253.54	△5,496
정부출연금		2,368.86	1,643.80	1,408.84	1,253.54	5,370
기본재산 등 적립		2,478.79	1,764.02	-	-	△12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7~2025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현황]

(단위: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잔액	183,884	196,454	221,865	387,238	425,123	461,547	442,658	427,917	440,51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잔액(A)	93,663	100,697	113,684	211,802	228,560	248,649	238,068	227,885	230,468
손실보전금(B)	1,574	1,730	2,232	2,461	2,325	2,666	8,003	12,175	12,569
손실보전금 순지급률(=B/A)	1.68%	1.72%	1.96%	1.16%	1.02%	1.07%	3.36%	5.34%	5.4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보증공급기관은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의 수요 과다예측 문제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연내 신속 집행의 필요성에 의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코로나 피해기업 또는 폐업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것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코로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보증지원

○ 사업내용
- (사업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서민경제 유지 발전에 기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지원대상) 2020. 4.~ 2025. 6.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
  ① (코로나 피해기업) 2020. 4.~2025. 6. 보증부 대출 이용 기업
  ② (폐업기업) 정상 상환 중이며,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폐업개인사업자
  (단, 해당 보증 이용시 사업자보증 제한)
- (지원내용)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지원
  ① (코로나 피해기업) 코로나 기간(2020.4~2025.6월) 중 지원받은 보증부 대출을 장기(7년)·저리(1%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
  ② (폐업기업) 기존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7년 → 15년까지로 연장(거치기간 2년)하여 폐업 후 상환부담 완화
- (우대사항) 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권 별도 협약 및 이차보전 지원
  ① (코로나 피해기업) 보증기간(7년, 거치1년 + 분할상환6년), 금리(3.4%* 수준)
  * 은행권 우대금리(CD금리+1.8%p, 4.4%)-이차보전 1%p
  → 2025년 5월 10개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금리 평균 5.94% 대비 △2.5%p 혜택

① 장기분할 상환: 7년 분할상환을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② 이차보전 지원: 1%p의 이자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
③ 보증료 지원 : 보증기간 확대(5년→7년)에 따른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 납부보증료의 50%(0.4%)는 정부 재원으로 지원

② (폐업기업) 보증기간(現 7년 → 15년, 거치 2년), 금리(2.7% 수준)

① 장기분할상환: 15년 분할상환을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② 보증료 지원: 보증기간 확대(7년→15년)에 따른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 납부보증료(0.9%)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

○ (수행주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원절차) 사업출연금은 신보중앙회에 교부한 후 용도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에 재교부한 후 정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폐업 분할상환 보증의 계획 대비 수요 저조로 인해 계획액 2,812억 6,900만원 중 연내 실집행액은 1,947억 2,900만원(69.2%)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폐업 분할상환 보증' 내역사업은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도 공급실적(1,129억원)이 목표금액(3,750억원) 대비 30.1% 수준에 불과하였음.

[2025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281,269	281,269	281,269	-	281,269	194,729	281,269	194,729	-	-	69.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의 공급목표 대비 실적]

(단위: 억원)

내역사업명	공급목표금액	실적(실행기준)	
		금액	달성률
코로나피해 분할상환	10,500	9,571	91.2%
폐업 분할상환 보증	3,750	1,129	30.1%

주) 2026년 2월 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코로나피해 분할상환 보증의 경우 7월 말부터 폐업 분할상환 보증의 경우 9월부터 공급을 개시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최초 계획 당시부터 동 사업의 집행 완료 시점을 2026년 말로 설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긴급한 필요에 따라 편성되어 연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집행관리가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음.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부진하였던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11]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따라 편성된 사업이 부진한 실집행 실적을 보이는 등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 예컨대 2024년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추진 당시 제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혜택이 지원되어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4년 실제 지원실적은 26만 4,242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113억 5,000만원(2024년 4/4분기 신청분 포함)이 지원된 것에 그쳤음.

(라) 온누리상품권의 잦은 발행 계획 변경 및 기금 조성 취지와 무관한 방향으로의 사업 추진 부적정

첫째,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연도 중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할인율과 규모를 국회 심의 시의 계획과 달리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이와 같은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시중 금융기관(지류) 및 전용 모바일앱(모바일·카드형) 등을 통해 판매되고 개별가맹점에서 사용되며, 개별가맹점의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등)을 통해 환전을 대리요청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음.

2024년까지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한국조폐공사), 카드형(KT), 모바일형(비즈플레이) 등 발행 및 운영 대행기관이 각기 상이하였으나, 2025년 3월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출시 이후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지류형·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에는 5.5조원의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지류형 상품권은 비할인 또는 5%만큼,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5% 또는 10%만큼 할인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를 통해 여러 차례 특별할인판매가 이루어졌음.

[2025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판매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획액	판매실적		
			전체 판매 실적	특별판매 기간 (1.10.~2.10.)	특별판매 기간 제외
지류	비할인	8,000	3,821	739	3,082
	5% 할인	9,000	7,590	1,135	6,455
	10% 할인	-	-	-	-
	15% 할인	-	-	-	-
	소계	17,000	11,411	1,874	9,537
디지털	비할인	-	1,338	70	1,268
	5% 할인	23,000	-	-	-
	10% 할인	15,000	17,116	△10	17,126
	15% 할인	-	8,236	8,393	△157
	소계	38,000	26,691	8,453	18,248
계		55,000	38,102	10,327	27,775

주 1) 특별판매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지류 5%, 디지털 15%

2) 일부 판매실적이 음수인 이유: 해당 할인율로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판매분에 대한 환불 발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특별할인판매 및 환급행사 현황]

구분	2024	2025			2026
할인 기간	(1차) 9.2.~9.5. (2차) 9.9.~9.30.	설 명절	동행축제	그랜드 페스티벌	1.1.~2.28.
		1.10.~2.10.	3.17.~3.28.	10.29.~11.9.	
할인율	지류 5%→10%, 모바일・카드형 10%→15%	디지털 10%→15%	디지털 10%		디지털 7%→10%
디지털 환급률	-	15%	20%	5~15% (기금 변경)	-
1인당 구매 한도	월 200만원	월 200만원		월 100만원 (11.1.~)	월 100만원
할인・환급 규모	(1차) 지류 500억원, 디지털 2,500억원 (2차)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친 할인행사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2025년 그랜드 페스티벌 환급행사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2026년 할인행사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진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당초 계획에 없던 특별할인판매 행사 등으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실적은 관련 예산 소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매년 계획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 특히 2023년의 경우 실적치(2.0조원)가 계획치(4.0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2024년 이후에도 실적치가 계획치에 크게 미달하였음.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발행 계획 및 발행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지류	20,000	30,000	17,000	12,890	14,000	19,611	17,000	13,000
모바일	5,000	4,831	4,000	3,389	10,000	7,947	38,000	26,691
카드	10,000	560	19,000	3,963	26,000	8,413		
계	35,000	35,391	40,000	20,242	50,000	35,970	55,000	39,691

주 1) 2022년 발행계획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발행개시 이후 수립한 계획임
2) 2025년부터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렇듯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 상향 조정은 발행 가능 규모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국회가 당초 심사한 사업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할인율이 빈번히 조정되면 소비자가 추가적인 할인행사를 기대하여 상품권 구매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상품권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9월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완화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매장에도 상품권이 사용되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이와 같이 기금이 본 목적과 무관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업 등 13개 업종을 영위하는 매장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2024년 9월 10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 및 별표 1 등을 개정하였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 이후 가맹제한이 완화된 13개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전통시장과 관련성이 낮은 대형 병원 및 치과병원을 비롯한 보건업 관련 매장에 사용 실적이 집중되었음.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가맹제한이 완화된 13개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적]

(단위: 백만원)

완화 업종명	2024		2025				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담배 중개업	-	-	-	-	-	-	-
잎담배 도매업	-	-	-	-	-	-	-
담배 도매업	-	-	-	-	-	-	-
모피 제품 도매업	-	-	-	-	-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	-	0.3	0.1	0.4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	-	2	3	1	6
수의업	0.3	67	78	149	517	558	1,369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	-	-	-	-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 한정)	39	793	1,599	3,294	7,994	6,317	20,036
보건업	95	2,885	4,912	11,559	28,030	28,154	75,635
골프장 운영업	-	-	-	-	-	-	-
노래연습장 운영업	1	19	16	53	78	117	284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	-	3	3	6
계	135	3,764	6,605	15,057	36,625	35,150	97,3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16일에 동법 시행령 제9조의16 및 별표 1 등을 재개정하여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등의 업종을 재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으로 설정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제한하였음.

즉,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약 1년 9개월 동안 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조성된 기금이 이들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업종을 영위하는 매장 및 대형 매장에 활용되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이와 같이 기금이 본 목적과 무관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마)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첫째, 소상공인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이 빈번히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설정된 성과지표는 체계적 성과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적극 발굴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고정비용 완화 지원의 범위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①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한시), ② 2025년 소상공인역량강화-배달·택배비 지원, ③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 및 2026년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등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편성한 바 있음.

특히 부담경감크레딧은 당초 지원 대상이 되는 비용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만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8월 4일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상의 고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도 지원 대상 비용의 범위에 추가되면서 현금성 지원 성격이 강화된 측면이 있음.[12)]

그런데 이와 같이 전기요금, 배달·택배비,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2025년 기준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정책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로, 소액의 현금성 지원이 소상공인의 생존율 제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체계적 성과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13)] 해당 사업이 소상공인의 생존에 기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생력이 아닌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생존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적극 발굴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2)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담경감크레딧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소상공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될 뿐, 반드시 소상공인 본인이 신청한 통신 회선 사용 또는 본인 명의의 차량 운전 건에 대해서만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통신비용 및 차량 연료비용에 대해서도 부담경감크레딧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13)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으로, 2025년 배달·택배비 및 부담경감크레딧 등의 지원액 규모를 고려하면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본질적인 경영애로를 해소할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의 지원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배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라는 단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배달수수료의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배달비 경감 효과가 장기적 차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배달플랫폼 시장은 상위 3개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9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의 가격설정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14] 이러한 상황에서 동 사업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에게 배달비를 지원하는 경우 배달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지원 혜택의 상당 부분은 소상공인이 아닌 배달플랫폼에 귀속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경우 점주와 플랫폼 사업자, 배달라이더 단체 등의 견해차로 인해 단기간 내 결론이 도출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공배달앱은 10% 이하의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법률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관련 입법과정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2026년 3월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점유율 54%), 쿠팡이츠(29%), 요기요(10%) 등의 3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https://www.mk.co.kr/news/business/12002584).

[배달료 상한제 도입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의안번호	주요 내용	심사 상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69	·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 도입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소관위심사
	2212603	·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료 정의, 이용료의 상한 및 위반제재조치 등 규정	소관위심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92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소관위심사
	2209688	·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	소관위접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4777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와의 중개수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로 규정	소관위접수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재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4)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성장촉진 지원 관련 유사 사업의 재편 검토 필요

소상공인 성장촉진 지원 관련 사업은 목적 및 지원 내용 등의 유사성이 높은 다수의 사업이 병존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지원 규모 확대 기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지원사업이 신설·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목적 및 지원 내용 등의 유사성이 높은 다수의 사업이 병존하게 되었음.

예컨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라이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주관기관 및 커리큘럼 주요 내용 등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라이콘 창업지원 사업과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간 비교]

구분	라이콘 창업지원	예비창업패키지
목적	혁신 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습·자금 등 단계별 창업 지원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수행주체 (세부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
사업비(2025)	151.8억원	490억원
주관기관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전남, 충남) 등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민간협·단체, 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커리큘럼 주요 내용	·선정자 대상 기초역량 교육 및 주관기관별 자율 창업역량 기초교육 ·주관기관 창업기획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멘토링 ·최초 선정 시 사업화자금 지급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차등 추가 지급(최대 4,000만원) ·그 외 우수 소상공인 발굴, 네트워킹 및 연계사업 지원, 선배 창업가 특강 등 자율 프로그램, 창업전문인력 인프라 제공	·선정자 대상 사업모델 구체화교육을 통한 역량 검증 및 주관기관별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최초 선정 시 사업화자금 지급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차등 추가 지급(최대 8,000만원) ·그 외 네트워킹 및 연계사업 지원 제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심지어 이들 사업이 속한 ‘창업사업화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세부사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기술트랙’,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사업 관련 예산이 신설된 바 있는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각 트랙 또한 아이디어 심사, 권역·전국 단위 오디션, 사업화자금 지원 및 책임 멘토링 등 주요 커리큘럼이 사실상 동일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양 사업 간 유사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기술트랙의 단계별 진행 내용(1차 기준)]

○ 아이디어 심사: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제출한 지원서 평가 - 선발 인원: 4,000명 - 지원 내용: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책임 멘토링, 범용 AI솔루션(총 2개월, 최대 100만원) ○ 1라운드(지역 예선): 멘토의 관찰 및 서면 평가 - 선발 인원: 500명 - 지원 내용: 초기 시제품 제작 비용 최대 1,000만원, 책임 멘토링 및 기술 멘토링 ○ 2라운드(지역 오디션): 지역별 멘토 기관 대상 공개 오디션 - 선발 인원: 200명 - 지원 내용: 초기 시제품 제작 비용 최대 1,000만원, 책임 멘토링 및 선배 멘토링 ○ 3라운드(권역 오디션): 기술분야별 전문 투자사 대상 권역별 비공개 오디션 - 선발 인원: 100명 - 지원 내용: 차년도 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책임 멘토링 ○ 4라운드(전국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 - 선발 인원: 1명 - 지원 내용: 최종우승자 상금 및 투자금 최대 1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modoo.or.kr)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의 단계별 진행 내용(1차 기준)]

○ 아이디어 심사: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제출한 지원서 평가 - 선발 인원: 1,000명 - 지원 내용: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책임 멘토링, 창업 기초교육, 오디션 준비과정 도움 ○ 1라운드(권역 오디션): 권역별 창업 아이디어 공개 피칭 - 선발 인원: 600명 -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 창업교육, 맞춤 멘토링, 육성공간(사무실) 지원 ○ 2라운드(전국 예선): 멘토의 관찰 및 서면 평가 - 선발 인원: 100명 - 지원 내용: 분야별 책임 멘토링 및 선배 멘토링, 투자연계 지원, 육성공간(사무실) 지원 ○ 3라운드(전국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 - 선발 인원: 1명 - 지원 내용: 최종우승자 상금 및 최대 1억원, 투자연계 지원,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modoo.or.kr)

또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익모델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과제 공고 후 400개 과제에 대해 과제마다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는데,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기존 ‘강한소상공인 지원 사업’, ‘로컬기업 육성 사업’ 등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며, 목적 및 지원 내용도 유사한 측면이 있음.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신규): 400억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유사사업의 지원 현황과 경쟁률을 고려하여 400개 × 1억원 지원 * 신청규모: 강한소상공인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백년소공인 등에서 지원한 과제 수 1,610여 개를 반영 * 경쟁률: 2026년 시범운영 결과 50개 모집에 196개 신청(3.92:1)한 것을 고려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과 유사 사업 간 비교]

구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강한 소상공인 지원	로컬기업 육성
목적	생활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기반 성장 촉진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생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앵커스토어·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지역 유망 소상공인 및 로컬창업가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지원내용	생활문화 혁신 서비스 개발, 사업화 및 생산 지원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이 로컬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BM고도화, 사업화 지원 (최대 1억원)	로컬기업 발굴,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및 사업화 지원 (최대 5,000만원)
수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유사성이 높은 다수의 사업이 병존하는 경우 수혜자인 소상공인의 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복수혜 여부 점검,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목적 및 지원 내용 등의 유사성이 높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5]

15)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①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내용상 유사하여 중복 지원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점, ② 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집단과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정보가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점, ③ 코로나19 이후 관련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내 세부프로그램의 유사성이 심화된 점 등을 지적한 바 있음.(기획재정

(5)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재기 지원 관련 지출사업 검토

(가) 새출발기금의 계획 대비 채권매입실적 부진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첫째, 새출발기금은 2026년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획 대비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실적 및 신청 추이 등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이라 함)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16] 또는 부실우려차주[17]를 대상으로 원금 조정, 장기・분할 상환 전환, 금리 감면, 거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조정 방식은 '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이 있음.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다만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참여할 수 있음.

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2023. 10.)

16)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를 의미함.

17)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의미함.

[새출발기금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 이후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내용) ① 원금 조정(순부채 60~80%), ② 금리 감면, ③ 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 부동산담보・취약차주 최대 20년), ④ 거치 기간 부여(최대 1년, 부동산담보・취약차주 최대 3년), ⑤ 추심중단 등

◦ (지원대상) 2020.4. ~ 2025.6.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 차주

◦ (지원방식)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 및 중개형으로 구분
-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입형(캠코)으로 지원
- 부실 담보 및 부실우려차주는 중개형(신복위)으로 지원

	매입형 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중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권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 *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무	부실우려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지원내용	원금 조정: 순부채의 60~80% 감면 (취약계층・저소득층 90%) 금리 조정: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조정: 없음 금리 조정: 연체 기간 및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연체이자 감면) * (연체 30일 이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적용
만기연장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취약차주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취약차주는 20년)	

(매입형)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지원
(중개형) 신복위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비동의 시 기금 매입하여 지원)

◦ (사업기간 / 수행주체) 2022. 10. 4. ~ 2026. 12. 까지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2025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및 재원 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채무조정규모는 2022년 10월 계획된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매입가율은 60%에서 40.7%로, 예상부도율은 20%에서 33%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예상 정부 출자금 규모는 3.6조원에서 4.4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9.12조원은 캠코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임.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및 재원 조성 계획 변경 내역]

구 분	최초 계획 (2022.10.)	제1차 변경계획 2025년 예산안(2024.9.)	제2차 변경계획 2025년 제2회 추경(2025.6.)
채무조정 전체 규모	30조원	40조원 이상	40조원 이상
채권 매입 규모	30조원	33.4조원 = 40조원 × 83.5% (채권 매입 비율: 83.5%)	33.4조원 = 40조원 × 83.5% (채권 매입 비율: 83.5%)
채권매입 소요재원	18조원 = 30조원 × 60% (예상매입가율: 60%)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매입가율: 40.7%)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매입가율: 40.7%)
국가재정 부담분 (출자)	3.6조원 = 18조원 × 20.0% (예상부도율: 20.0%)	4.01조원 = 13.6조원 × 29.5% (예상부도율: 29.5%)	4.48조원 = 13.6조원 × 33.0% (예상부도율: 33.0%)
공사 부담분 (캠코채)	14.4조원 = 18조원 - 정부출자금	9.59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9.12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40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33.4조원의 채권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2025년 말 기준 매입 실적은 약 13.4조원으로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예상)	합 계
채무 조정 계획	당초	60,000	90,000	90,000	60,000	-	300,000
	변경	217	20,696	94,200	144,300	141,300	400,713
	매입규모	2,952	26,145	75,603	115,850	113,450	334,000
채무조정 신청		20,935	53,182	93,188	110,022	-	277,327
채권 매입 실적		2,952	26,145	42,302	62,540	-	133,939
채무조정 약정		217	20,696	28,340	48,836	-	98,089

자료: 금융위원회

채권 매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새출발기금 재원 조달 또한 2025년 말 기준 계획 대비 43.2% 수준에 그쳤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인 2.75조원의 재원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에 따르면 2026년 이후 7조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 조달하여야 함.

[새출발기금 재원 조달 계획 대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획		현 황					
	최 초 (2022.10.)	제1차변경(A) (2024.9.)	2022	2023	2024	2025	누적(B)	계획 대비 투입비율 (=B/A)
정부출자금(예산)	36,000	44,800	6,000	2,800	3,300	12,000	24,100	53.8%
캠코채 발행액	144,000	91,200	-	3,600	15,600	15,500	34,700	38.0%
합 계	180,000	136,000	6,000	6,400	18,900	27,500	58,800	43.2%

주) 2022년 현물출자 5,000억원 미포함, 2025년 추경 증액분 7,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상기한 연도별 채무조정 실적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누적 신청액은 27.7조원인데, 채무조정 신청이 2026년에 마감된다면 2026년 내 채무조정 신청액이 12.3조원 이상이어야 누적 신청액이 채무조정 목표(40조원)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신청이 곧바로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약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수준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어야 채무조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즉 채무조정 신청 마감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18] 채무조정 목표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실적 및 신청 추이 등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새출발기금은 반복적인 계획변경 및 추가경정예산 증액 등의 과정에서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꾸준히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변경 발표 시점 이후의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추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요건을 살펴보면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영위기간이 꾸준히 연장(2023. 11. → 2024. 6. → 2024. 11. → 2025. 6.)되어 왔으며, 계획변경 발표 시점 이후의 채무도 신청일 기준 대출 발생일 6개월 이후라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환대출이나 총 채무액의 30% 이내인 경우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18)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을 2027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요건]

구 분	종전	2024. 9. 계획변경	2025. 3. 계획변경	2025 제2회 추경
지원 대상	2020. 4. ~ 2023. 11.	2020. 4. ~ 2024. 6.	2020. 4. ~ 2024. 11.	2020. 4. ~ 2025. 6.
	위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신청 기간	~ 2025. 10.	~ 2026. 12.		
제외 채무	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환대출 (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 이하 신규대출은 가능)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단, 모든 차주의 총채무 30% 이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예컨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인데, 2025년 6월 사업을 시작한 자가 2026년 6월에 신규 대출을 받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총 채무액 30% 이내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내에 발생한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계획변경이 반복되는 경우 정책 대상자들이 추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바탕으로 재정적 능력 대비 과도한 수준의 투자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위험은 국가 재정으로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채무조정 약정자 중 매입형 625명(587억원), 중개형 591명(83억원)이 2025년 7월 이후의 채무를 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6년 채무조정 약정자 중 2025년 7월 이후 발생한 채무의 조정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채무조정 약정자	채무액
매입형	3,309	3,395
2025. 7. 이후 발생 채무	625	587
중개형	1,805	2,211
2025. 7. 이후 발생 채무	591	83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 등과 별개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정부 시책 준수 과정에서 손실을 감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낮은 2025년 7월 이후의 채무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새출발기금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19]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영위기간의 반복적인 연장 및 조정 대상 채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금리 인상,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비용 누적 등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 출범 시부터 제한적으로 일부 신규대출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되 총 대출의 30% 이내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가급적 일괄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부실화 가능성을 낮추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나, 채무조정 인정 대상이 되는 신규대출의 규모를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여도 여전히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상환 의사 없는 신규대출을 총 대출의 30% 이내로 발생시킬 유인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규대출 한도 제한을 상기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나)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예방책 마련 필요

첫째,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사업액의 조기 소진 또는 미집행,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 수요량을 면밀히 추계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은 신속한 폐업지원과 준비된 재기를 통해 자생력·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604억 5,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0]

[2025년도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06	360,455	-	360,455	360,455	-	-	376,249
희망리턴패키지	245,010	311,492	-	311,492	311,492	-	-	330,15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4,827	14,827	-	14,827	14,827	-	-	15,312
손실보상 한시지원	10,400	20,400	-	20,400	20,400	-	-	8,800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 운영	4,569	6,613	-	6,613	6,613	-	-	4,569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	7,123	-	7,123	7,123	-	-	12,418
소상공인원스톱지원	-	-	-	-	-	-	-	5,000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는 원스톱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및 재기사업화지원 등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음. 이 중 ①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폐업지원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것이고, ②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은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경영진단, 사업화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기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임.

특히, 원스톱폐업지원 중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임대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2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소상공인정책실)

폐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평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하는 것임.

[2025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임대차 점포에 한정)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평(3.3m^2) 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
- 지원 제외: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② 점포철거비 지원 기수혜자, ③ 유사사업 수혜자,
  ④ 주거용도 건축물, ⑤ 사업장 이전, ⑥ 지원 제외업종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① 신청서류 제출(1차)	② 신청서류 검토	③ 점포철거	④ 정산서류 제출(2차)	⑤ 정산서류 검토	⑥ 비용지급	⑦ 현장점검
소상공인 (온라인)	소진공 (재기플래너)	소상공인	소상공인 (온라인)	소진공 (재기플래너)	소진공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중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평당 지원 단가 및 최대 지원 한도의 지속적 상향에 따라 실제 집행 건수가 2021년 15,679건에서 2025년 50,95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

계획액 또한 2021년 195억원에서 2025년 1,795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사업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2021년과 2024년에는 실집행액이 계획액을 초과하여 타 사업에서의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었음.

[연도별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연도	1평당 지원단가	최대 지원 한도	계획액	실집행액	목표 건수	실제 건수	사업 마감일
2021	8만원	200만원	19,500	23,508	9,750	15,679	-
2022	8만원	250만원	33,200	30,487	13,280	16,323	-
2023	13만원	250만원	49,800	48,852	20,000	22,404	-
2024	13만원	250만원	54,700	62,439	22,000	29,533	2024-11-07
2025	20만원	400→600만원	179,545	179,545	50,613	50,952	2025-11-21

주 1) 계획액 및 목표 건수의 경우 각 연도 추경 기준으로 작성
2) 2025년 목표 건수의 경우 제2회 변경안에 따른 지원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지원은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와 같이 실집행액이 계획액을 초과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연도까지 기다리거나, 기금운용계획을 추가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잦은 변경은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심의한 계획안 및 변경안의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 간 과도한 괴리를 유발할 수 있음.

한편 또 다른 내역사업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 확정 직후 비교적 빠른 시기(7월 30일)에 사업 공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낮은 인지도,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총 이자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을 우려한 소상공인의 신청 유인 부족 등으로 수요가 저조하여 계획현액 71.2억원 중 실집행액이 29.9억원(42.0%)에 불과하였음.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히 설정하지 않으면 계획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예상 수요량을 면밀히 추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점포철거비 사업의 1평당 지원단가와 최대 지원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점포철거 소상공인 및 철거업체가 철거비용을 실제 소요된 금액 대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또한 증가할 수 있으나, 2021~2024년간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이 2건에 불과하는 등 사업 규모에 비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정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부터 점포철거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신고센터의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11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음.

또한 지원요건에 따르면 유사 사업의 수혜자는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관련 사업의 지원 실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점포철거비를 중복으로 수령한 소상공인들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수령일자와 중복 수령 적발일자의 간격을 살펴보면 11건 중 3건은 중복 수령 시점 이후 6개월 이상 적발되지 않았는바, 여전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 간 지원 실적 정보 공유가 미흡한 상황임.

[2026년 6월 기준 점포철거비 중복 수령 적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지원금액	지원금 수령일자		중복 수령 적발일자	조치 결과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1	2.2	2024-10-24	2025-04-29	2026-02-20	환수
2	2.2	2024-08-27	2025-07-24	2026-02-20	
3	2.3	2025-06-30	2025-07-30	2026-02-12	
4	2.0	2025-07-08	2025-08-18	2026-02-10	
5	1.0	2025-07-03	2025-07-30	2026-02-20	
6	0.5	2025-08-14	2025-08-26	2026-02-12	
7	3.0	2024-08-27	2025-04-28	2026-02-20	
8	4.0	2025-07-18	2025-07-24	2026-04-16	
9	0.7	2024-07-14	2025-09-04	2026-04-16	
10	4.0	2025-04-23	2025-08-22	2026-04-16	
11	4.0	2025-09-04	2025-10-28	2026-04-1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기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점포철거비 이상징후 탐지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유사 사업 지원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가. 개 요

(1) 개 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이는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중 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사업(이하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함)은 청년의 고용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임.[1)]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9년도까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일부 항목으로 관리되었으나, 이후「청년기본법」제정에 따라 청년정책(① 일자리, ② 주거, ③ 교육, ④ 생활·복지·문화, ⑤ 참여·권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2020년도부터는 청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이「청년기본법」체계에 맞춰 제시되고 있음.

한편 OECD는 노동시장 관련 공공지출을 9가지 유형[2)]으로 분류·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기초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하에서는「청년기본법」에 따른「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 일자리 분야 과제 관련 사업(113개 과제)의 결산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되,「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중 청년층 관련 사업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함.

문의: 02-6788-5688

---

1)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노동시장 기능 수행과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동시장내 공적 개입으로 노동시장에서 특정 그룹(실업자, 비자발적 해고위기에 있는 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에게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프로그램

2) ①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②노동시장 훈련, ③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④고용인센티브, ⑤장애인 통합, ⑥직접일자리 창출, ⑦창업 인센티브, ⑧실직자 소득 보장 및 지원, ⑨조기은퇴 등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

유형	내용
직접일자리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직업훈련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제공을 통해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
고용서비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여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
고용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실업소득 유지·지원	근로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고용·재활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2) 청년일자리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에서 청년층[3]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17.4%로 202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음. 또한 1990년대(1990~1999년) 합계출산율이 1.6, 2000년대(2000년~2009년) 합계출산율이 1.2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서 포함되는 연령대의 인구가 청년층에서 제외되는 연령대의 인구보다 적으므로 향후 청년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4]

2025년 청년층의 실업률은 6.1%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45.0%로 전년 대비 1.1%p 하락하여, 일자리 지표는 전년 대비 총량 측면에서 악화되었음. 또한 청년층의 실업률과 15세 이상 전체인구 실업률의 차이는 2021년 이후 3~4%p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3.3%p 더 높았고, 같은 기간 고용률의 차이도 20%p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2025년에는 청년층의 고용률이 △24.8%p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3) 고용통계의 청년 기준은 15~29세(ILO기준)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 19~34세와 차이가 있음.

4) 청년인구(15~29세, 만명) : ('20)891 → ('21)877 → ('22)857 → ('23)839→ ('24)815 → ('25)795

[2021~2025년 청년일자리 관련 지표]

(단위: 천명, %, %p)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전체(A)	45,080	45,260	45,407	45,570	45,762
	청년(B)	8,770	8,567	8,390	8,152	7,953
	비율(B/A)	19.5	18.9	18.5	17.9	17.4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A)	62.8	63.9	64.3	64.5	64.7
	청년(B)	47.9	49.8	49.4	48.9	47.9
	차이(B-A)	△14.9	△14.1	△14.9	△15.6	△16.8
실업률	전체(A)	3.7	2.9	2.7	2.8	2.8
	청년(B)	7.8	6.4	5.9	5.9	6.1
	차이(B-A)	4.1	3.5	3.2	3.1	3.3
고용률	전체(A)	66.5	68.5	69.2	69.5	69.8
	청년(B)	44.2	46.6	46.5	46.1	45.0
	차이(B-A)	△22.3	△21.9	△22.7	△23.4	△24.8

주 1) 전체는 15세 이상 인구 집단임
2)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취업자)의 비율임
3)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임
4)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체감실업률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보조지표[5]상 2025년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조지표 1의 경우 9.2%, 고용보조지표 2의 경우 13.1%, 고용보조지표 3의 경우 16%로 나타남.

[표 1] [2021~2025년 청년층 체감실업률 관련 고용보조지표]

(단위: %, %p)

항목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고용보조 지표1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포함	전체(A)	7.4	5.8	5.2	5.4	5.4
		청년(B)	11.2	9.1	8.8	8.8	9.2
		차이(B-A)	3.8	3.3	3.6	3.4	3.8
고용보조 지표2	실업자에 잠재경제활동인구 포함	전체(A)	9.7	7.9	6.6	6.3	6.2
		청년(B)	20.1	16.5	13.9	12.9	13.1
		차이(B-A)	10.4	8.6	7.3	6.6	6.9
고용보조 지표3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 포함	전체(A)	13.3	10.6	9.0	8.8	8.7
		청년(B)	23.1	19.0	16.6	15.6	16.0
		차이(B-A)	9.8	8.4	7.6	6.8	7.3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5) 고용보조지표: 노동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청년일자리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층 실업률과 고용률의 악화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2026년 1~5월 청년일자리 관련 지표]

(단위: %, %p)

구분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3.6	64.0	64.6	64.9	65.2
	전년동월대비	0.2	0.3	0.0	△0.2	△0.4
	실업률	4.1	3.4	3.0	2.9	2.9
	전년동월대비	0.4	0.2	△0.1	0.0	0.1
	고용률	69.2	69.2	69.7	70.0	70.2
	전년동월대비	0.4	0.3	0.4	0.1	△0.3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46.7	46.9	47.1	47.0	47.2
	전년동월대비	△1.0	△0.7	△1.0	△1.8	△2.3
	실업률	6.8	7.7	7.6	7.1	7.2
	전년동월대비	0.8	0.7	0.1	△0.2	0.6
	고용률	43.6	43.3	43.6	43.7	43.8
	전년동월대비	△1.2	△1.0	△0.9	△1.6	△2.4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2025년 청년층의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율은 54.4%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61.8%)보다 △7.4%p 낮았음.

[표 3] [2021~2025년도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p)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차이 (B-A)
청년	정규직	57.9	58.6	57.4	54.8	54.4	△0.4
	비정규직	42.1	41.4	42.6	45.2	45.6	0.4
	한시적	26.2	26.1	25.1	28.0	29.2	1.2
	기간제	22.3	22.2	22.8	23.7	26.1	2.4
	시간제	22.1	22.5	23.8	26.6	25.3	△1.3
	비전형	5.7	4.1	4.3	4.7	4.0	△0.7
전체	정규직	61.6	62.5	63.0	61.8	61.8	0
	비정규직	38.4	37.5	37.0	38.2	38.2	0
	한시적	24.6	24.6	24.0	25.4	26.1	0.7
	기간제	21.6	21.6	21.9	22.6	23.8	1.2
	시간제	16.7	17.0	17.6	19.2	18.9	△0.3
	비전형	10.9	9.8	8.9	8.6	8.2	△0.4

주 1) 근로형태별 취업자는 매년도 8월 기준으로 조사함
2) 비율은 해당 근로형태의 취업자 수가 조사 시점 해당 계층의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5년도 청년층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광·제조업에서는 △1.0%p 감소하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5%p 상승하였음.

[표 4] [2021~2025년도 임금근로자 산업별 비율]

(단위: %, %p)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차이 (B-A)
청년	농림어업	0.6	0.7	0.4	0.8	0.9	0.1
	광·제조업	16.9	15.9	14.2	13.6	12.6	△1.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82.5	83.5	85.4	85.6	86.5	0.9
	건설업	4.2	4.2	4.2	3.7	3.2	△0.5
	도소매·음식숙박업	25.7	24.4	11.4	11.2	12.1	0.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2.6	44.3	42.4	41.8	43.3	1.5
전체	농림어업	0.6	0.5	0.5	0.5	0.5	0.0
	광·제조업	18.5	19.0	17.1	17.0	16.6	△0.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72.3	72.2	72.7	72.8	73.5	0.7
	건설업	8.1	7.9	7.8	7.6	7.1	△0.5
	도소매·음식숙박업	20.0	19.6	19.6	19.4	19.2	△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4.2	44.7	45.3	45.8	47.2	1.4

주 1) 청년 관련 통계는 청년층 부가조사(매년 5월 기준)에서 첫일자리의 산업별 분류에 따른 것임
2) 전체 관련 통계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기준)에서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분류에 따른 것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특히 2025년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청년은 42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7,000명 증가하여 청년인구대비 '쉬었음' 청년층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6)]

[표 5] [2021~2025년도 쉬었음 청년]

(단위: 천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청년	쉬었음 청년 인구	418	390	401	421	428
	증감	△30	△28	11	20	7
	청년인구대비 쉬었음 비중	4.8	4.6	4.8	5.2	5.4

자료: 고용노동부

(3) 청년일자리 사업 결산

2025년도 청년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등 29개 부처에서 총 113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현액 9조 2,354억 8,700만원 중 9조 925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었음.[7)]

6) '쉬었음' 이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아나 가사를 맡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함. 취업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쉬었음'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 개인의 고용가능성이나 고용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도 우려됨.

[부처별 2025년 청년일자리 사업 결산]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일자리 과제수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D)	예산액
		본예산	추경(A)							
노동부	21	6,411,224	6,460,098	1,498	△11,671 302,957	6,752,882	6,624,637	1,110	127,135	6,643,245
문체부	10	31,608	31,608	-	-	31,608	28,061	3,199	348	32,312
국토부	3	11,370	11,370	618	-	11,988	10,875	817	296	19,371
교육부	1	7,500	7,500	-	-	7,500	7,500	-	-	7,500
과기부	5	15,430	15,430	-	-	15,430	15,430	-	-	37,545
중기부	17	1,149,014	1,154,368	-	-	1,154,368	1,154,301	-	67	1,219,166
농림부	7	1,137,819	1,137,819	-	-	1,137,819	1,132,458	-	5,361	1,738,674
성평등부	2	4,730	4,730	-	-	4,730	4,730	-	-	5,230
산업부	3	6,338	6,338	-	-	6,338	6,338	-	-	6,547
기후부	3	23,756	23,756	-	-	23,756	22,935	-	821	22,630
해수부	2	4,408	4,408	-	-	4,408	4,408	-	-	5,308
행안부	1	19,545	19,545	-	-	19,545	16,750	-	2,795	-
보훈부	2	24,692	24,692	88	5,650	30,430	29,494	-	936	24,816
국방부	1	6,228	6,228	-	-	6,228	6,228	-	-	2,425
법무부	1	181	181	-	-	181	181	-	-	181
통일부	1	203	203	-	-	203	203	-	-	225
인사혁신처	1	2,609	2,609	-	-	2,609	2,597	-	12	2,601
산림청	3	7,365	7,365	-	-	7,365	7,348	-	17	7,365
방위사업청	1	1,621	1,621	-	-	1,621	1,615	-	6	2,456
병무청	2	2,618	2,618	-	85	2,703	2,691	-	12	2,276
권익위	1	56	56	-	△20	37	30	-	7	46
지식재산처	1	2,775	2,775	-	-	2,775	2,775	-	-	2,055
국가유산청	2	3,939	3,939	-	-	3,939	3,939	-	-	3,711
조달청	1	217	217	-	-	217	211	-	6	217
방통위	2	6,807	6,807	-	-	6,807	6,807	-	-	6,777
합 계	94	8,882,053	8,936,281	2,204	△11,691 308,692	9,235,487	9,092,542	5,126	137,819	9,792,679

주 1) 「청년기본법」에 따른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각 부처가 제출한 일자리분야 과제 113개를 기준으로 하되, 비예산 일자리 과제 17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과제 2개는 결산에서 제외하여 총 94개 일자리분야 과제의 결산 현황임

2) 당초 과기부는 7개 과제였으나, 2025.10.1.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통위로 2개 과제를 이관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7) 「청년기본법」에 따른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29개부처의 일자리분야 과제 113개를 기준으로 함. 다만, 노동부(4개과제), 국토부(4개과제), 중기부(1개과제), 국무조정실(1개과제), 성평등부(1개과제), 금융위(1개과제), 재경부(1개과제), 교육부(1개과제), 인사혁신처(3개과제), 농진청(2개과제)의 총 10개부처, 19개과제는 비예산사업(17개과제) 및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2개과제)으로 결산에서 제외함.

청년일자리 사업의 결산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고용장려금 유형과 창업지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5.9%, 25.8%로 전체 청년일자리 사업 결산액에서 두가지 유형이 8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고용장려금 유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장려금 지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8)]

[202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청년일자리 사업 유형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025년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비율	결산	비율	예산	비율	결산	비율
일자리 유형	직접일자리	3,682,412	11.1	3,677,095	11.3	45,904	0.5	39,061	0.4
	직업훈련	2,314,709	7.0	2,240,965	6,9	780,212	8.4	774,125	8.5
	고용서비스	1,876,945	5.6	1,779,373	5.5	862,723	9.3	841,711	9.3
	고용장려금	6,066,807	18.3	5,916,359	18.2	5,184,737	56.1	5,082,699	55.9
	창업지원	3,145,160	9.5	3,145,265	9.6	2,348,272	25.5	2,342,058	25.8
	실업소득 유지및지원	14,973,152	45.2	14,701,822	45.2	13,639	0.2	12,888	0.1
	지원고용 및재활	1,084,086	3.3	1,084,086	3.3	-	-	-	-
합계		33,143,271	100	32,544,965	100	9,235,487	100	9,092,542	100

주) 청년일자리 예산은 추경 및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8) 청년일자리 고용장려금 유형 예산에 모성보호육아지원 경비 4조 3,195억원(고용장려금의 83%)이 포함됨.

나.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첫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일자리 사업의 범위와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청년 대상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계획·평가 간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청년일자리 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상 5개 분야[9]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 분야의 관련 사업으로 113개 사업이 제시되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일자리 사업 중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을 대상에 일부 포함하는 사업이 있음.

이처럼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계획·평가범위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분류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함.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6031-315)'** 사업은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는 분류되지 않았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4602-307)'** 도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는 분류되지 않았음.

또한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 과 같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제시되었으나,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일자리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사업(교육 분야 및 생활·복지·문화 분야)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음.

9) ① 일자리, ② 주거, ③ 교육, ④ 생활·복지·문화, ⑤ 참여·권리 분야가 제시됨.

[청년일자리 관련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주요 사례]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상 일자리 분야	「고용정책 기본법」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국토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
과기부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	×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교육분야)	○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지원	△ (교육분야)	○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 (생활・복지・문화 분야)	○
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교육분야)	○

주 1) 일부 사례만 제시
2) '△' 표시는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상 일자리 분야가 아닌 교육, 생활・복지・문화 등의 분야로 분류된 것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청년기본법」상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과 기본계획 간 연계가 필요하고, 매년 이루어지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등 제도 간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임.

또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제시된 사업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누락되어 있어 성과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청년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 외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수혜 대상별로 사업을 분류・관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청년일자리 사업들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10]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일자리 사업으로 평가・관리하겠다고 설명함.

10) 사전협의 제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6항 내지 제8항) 중앙부처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사업 간 중복방지・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제시나 권고를 관계부처에 통보

종합하면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계획·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하여 매년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요성과·우수사례 등을 공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추후 개선 여부 확인 등이 곤란하므로 타 정부업무평가 수준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11]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이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또한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분석·평가하고, 이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음.[12]

이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및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관련 과제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2026년 4월에는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음. 이에 따를 때 일자리 분야의 경우 총괄적인 주요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과 우수사례로 4개 주요과제를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되고, 개별 부처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받아 점검·관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분야 우수 사례 등 전체적인 사항만 공개하고, 일자리분야 과제별(113개 과제) 평가 결과와 같이 개별적인 사항은 공개하고 있지 않음.

---

11)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점이 미흡 또는 개선권고의 요인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다음 해에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025년 청년정책 평가는 부처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평가 지침에 따라 우수과제만 공개하였고, 2027년부터는 청년정책 평가 공개범위를 미흡과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2025년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우수사례(2026년 4월 발표)]

❖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취업역량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 청년의 생애단계(재학-졸업-구직)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6천여개 기업에서 다양한 일경험(인턴형·프로젝트형·ESG형)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선택폭을 확대

❖ 재직청년 근속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 중소·중견 기업 및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격차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
  * 일하는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1년간 최대 720만원),
    '25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 신설(2년간 최대 480만원)

❖ 청년창업 재도전 지원 및 창업안전망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청년지원 목표(40%)를 설정하고, 재도전 청년창업 전용트랙을 운영하여 2025년 청년지원 비율 44.3% 달성

❖ 청년농업인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분야로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금(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 지원 및 맞춤형 농지공급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영농정착률 84.9% 달성

자료: 국무조정실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은 사업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있어, 사업·과제별 등급을 확인하여 차년도 개선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에도 과제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는 등 타 정부업무평가 수준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 정부업무평가 개별평가의 공개 체계]

평가명	주관 부처	개요	공개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해 국민체감도 제고	기초평가 결과 (사업별 등급 포함) 공개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획처, 재경부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공개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보완 · 반영	공개

주) 개별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를 의미함
자료: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 홈페이지

셋째, 일부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도권에 참여기업이나 훈련기관이 집중되어 지역 청년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이하 "KDT사업"이라 함)' 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781억 1,600만원 중 99.8%에 이르는 4,769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음.

KDT 사업의 경우 2025년 기준 전체 훈련 기관 중 75.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5년 수도권의 훈련기관은 130개소에서 256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의 훈련기관은 52개소에서 85개소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시도별 2022~2025년 KDT 훈련기관 및 참여인원 수(주소지 기준)]

(단위: 개, 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훈련기관 수	훈련 참여인원	훈련기관 수	훈련 참여인원	훈련기관 수	훈련 참여인원	훈련기관 수	훈련 참여인원
강원	2	404	3	337	4	404	3	529
경기	25	12,088	35	9,949	50	12,088	54	15,830
경남	1	918	2	834	3	918	1	1,077
경북	1	691	1	673	2	691	2	876
광주	9	813	9	940	8	813	8	1,031
대구	6	1,294	9	1,167	14	1,294	20	1,473
대전	8	1,067	8	1,153	6	1,067	8	1,154
부산	11	1,953	14	1,663	17	1,953	16	2,301
서울	99	13,140	153	10,392	200	13,140	191	16,651
세종	3	166	3	166	3	166	1	182
울산	2	383	3	334	3	383	2	410
인천	6	2,318	8	2,117	9	2,318	11	3,065
전남	-	457	1	388	2	457	2	529
전북	3	540	5	525	4	540	4	621
제주	4	155	5	128	7	155	8	227
충남	1	735	3	680	4	735	5	1,058
충북	1	506	3	469	3	506	5	678
합계(a+b)	182	37,628	265	31,915	339	37,628	341	47,692
수도권(a)	130	27,546	196	22,458	259	27,546	256	35,546
비수도권(b)	52	10,082	69	9,457	80	10,082	85	12,146

자료: 고용노동부

② 고용노동부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은 직업계고와 민간 전문훈련기관이 협업하여 신산업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개별 학교에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학생 훈련프로그램과 교원 신기술 연수 등을 지원하고 2025년에는 129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0년부터 학과를 선정하고 신입생 모집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점차 지원 대상 학과가 확대되었으나, 2025년 기준 여전히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참여 학

교가 없는 지역(울산・세종・제주)이 있음.

수도권 지역은 2020년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훈련인원은 1,631명으로 전체 참여자 3,511명의 약 46.5%를 차지하였음.

[2021~2025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 참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 지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참여 학과수	훈련 인원	참여 학과수	훈련 인원	참여 학과수	훈련 인원	참여 학과수	훈련 인원	참여 학과수	훈련 인원
서울특별시	5	74	7	158	8	206	14	491	15	693
부산광역시	-	-	-	-	3	64	4	144	4	227
대구광역시	-	-	2	40	3	104	5	196	6	219
인천광역시	-	-	1	22	1	44	1	66	2	66
광주광역시	-	-	3	76	3	132	4	208	5	173
대전광역시	-	-	3	57	3	110	5	190	6	184
울산광역시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경기도	3	103	15	292	16	531	21	905	21	872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	1	18
충청북도	-	-	3	63	5	167	6	278	6	278
충청남도	-	-	3	73	5	161	5	255	6	242
전북특별자치도	-	-	-	-	-	-	1	22	2	61
전라남도	-	-	1	20	5	122	5	209	5	267
경상북도	-	-	1	18	2	57	3	114	5	171
경상남도	-	-	1	20	1	40	1	60	1	40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합계	8	177	40	839	55	1,738	75	3,138	85	3,511

자료: 고용노동부

(2) 주요 사업별 검토

(가) 집행실적 부진 등 사업관리 필요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초 예산 편성시 고려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연내 미집행액이 발생한 사업이 있으므로, 각 부처는 추후 예산안 편성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①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사업주 720만원, 청년근로자 480만원)의 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914억 2,600만원 중 7,188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726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경기 불확실성 등에 의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반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 254억 1,600만원을 증액함.

그러나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당시의 금액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2~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년	542,820	542,769	-	-	-	542,769	233,321	43.0	43.0	-	309,448
2023년	889,078	889,078	-	-	-	889,078	719,429	80.9	80.9	-	169,649
2024년	607,780	607,780	-	△1,500	-	606,280	487,003	80.1	80.3	-	119,277
2025년	777,181	802,597	-	△11,171	-	791,426	718,819	89.6	90.8	-	72,607

자료: 고용노동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15억 4,500만원 중 961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8%)되고 53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 사업을 통한 청년농 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청년농을 선정한 후 총괄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영농정착지원금[13]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분담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30%임.

이 사업은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272억원이 불용된 데 이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352억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실제 소요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101,545	101,545	96,184	96,184	-	96,184	68,944	-	27,240	6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액 (지자체로부터)	지출액	이월액	반납액
2024	117,984	80,648	9,600	27,737 (국고 19,416 + 지방비 8,321)
2025	133,717	87,057	11,433	35,226 (국고 24,658 + 지방비 10,568)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 교육부의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청년의 초기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포함)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임.

동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보조사업으로서 2022년과 2023년에는 사업예산 1,020억원이 전액 실집행되었으나, 2024년부터 실적이 하락하여 2025년에는 예산액 836억 1,600만원 중 62.4%인 522억 5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13) 2025년 예산 산출근거: (신규 5,000명×9개월×1.1백만원) + (2년차 5,000명×12개월×1.0백만원) + (3년차 4,000명×12개월×0.9백만원)}×70%×95%= 101,545백만원

[2022~2025년 취업연계 장려금 집행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지원인원
2022	102,000	102,000	100.0%	20,400명
2023	102,000	102,000	100.0%	20,400명
2024	102,000	79,425	77.9%	15,885명
2025	83,616	**52,205**	**62.4%**	(1차) 13,759명 / (2차) 8,229명

주) 2025년도 예산의 실집행액(실집행률)은 2026년 5월 31일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동 사업 2025년도 예산액을 전년에 비해 18.0% 감액된 83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집행액은 62.4%인 522억 500만원에 불과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감소 추세와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향후에는 제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생산기반정비 후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이 사업 예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조·융자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2025년 실집행률을 보면 2025년 기반조성을 위한 보조액 18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계획현액 199억 4,100만원 중 8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4.0%)되고 180억원이 이월되었음.

또한 2024년에 이월되었던 토지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예산 280억원 중 40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4.3%)되고 239억 8,800만원이 재이월되었음.

[2025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주체(한국농어촌공사)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민간자본보조 (320-07)	18,000	18,000	18,000	18,000	1,941	19,941	801	18,000	1,140	4.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	-	-	28,000	28,000	4,012	23,988	-	14.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를 확보한 후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업법인에 공급하는 구조로, 토지매입이 기반조성의 선행 절차에 해당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에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예산 180억원을 신규 교부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8억 10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에 교부된 기반조성 보조예산의 실집행률은 4.0%에 그쳤고, 2024년에 교부된 토지매입 융자예산의 실집행률은 전액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4.3%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지 확보 등 선행 절차의 추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단계에 맞는 예산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목표 미도달에 따른 개선 필요

사업 참여인원이 예산 편성시 목표에 미달한 사업이 있으므로, 각 부처는 사업수요에 기초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9,209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1%)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025년 제2회 추경 시 국민취업제도 2유형 중 청년 추가지원을 위해 1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내 7만 8,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2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5만 6,831명에 불과하여 성과가 저조함.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수급자격 인정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	1,650	6,407	4,342	3,342	3,163	3,493	3,289	2,803	2,583	2,457	2,312	2,044	37,885
2022	2,884	2,928	3,540	2,647	4,032	3,844	3,231	2,996	1,216	4,461	3,390	2,632	37,801
2023	2,666	2,866	3,403	3,082	4,526	4,086	3,571	3,197	2,917	3,294	3,512	2,589	39,709
2024	3,149	2,664	3,012	3,244	4,262	3,772	4,266	3,268	3,112	4,130	2,746	2,634	40,259
2025	2,875	3,119	3,286	4,486	3,937	3,621	9,897	7,702	5,782	4,204	3,843	4,079	56,831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증가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보임.

(다) 제도개선 및 성과관리 필요

당초 의도한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정투입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이 있으므로, 각 부처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성평등가족부의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취·창업 연계 및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852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됨.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반과정·전문기술과정·기업맞춤형과정 및 고부가가치직종 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과정 수는 2023년 715개, 2024년 733개, 2025년 724개이고, 고부가가치직종 과정은 2023년 74개, 2024년 79개, 2025년 93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2023년과 2024년의 직업교육훈련 취업률은 각각 73.0%, 72.7%였으나, 유관취업률은 각각 49.1%, 50.0%에 그쳤음. 특히 고부가가치직종 과정은 취업률은 2023년 77.6%에서 2024년 70.0%로, 유관취업률은 2023년 61.7%에서 2024년 53.2%로 낮아졌음.

[2023~2025년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및 취업성과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3			2024			2025		
	과정수	취업률	유관 취업률	과정수	취업률	유관 취업률	과정수	취업률	유관 취업률
일반과정	419	71.3	45.7	431	68.0	44.3	409	-	-
전문기술과정	71	70.1	44.7	83	71.7	50.9	83	-	-
기업맞춤형과정	151	77.0	55.3	140	79.7	59.5	139	-	-
고부가가치직종	74	77.6	61.7	79	70.0	53.2	93	-	-
합 계	715	73.0	49.1	733	72.7	50.0	724	-	-

주) 2025년 취업률 및 유관취업률은 2026년 7월 이후 산출 예정
자료: 성평등가족부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고부가가치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가 해당 분야 취업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훈련 이후 타 직종으로 취업한 경우 그 사유와 경력개발상담 연계 결과를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설계와 사후관리 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직업 교육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166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됨.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은 2025년 33억 9,500만원이 집행되어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전체 집행액의 20.4%를 차지하였으나, 사업비의 대부분은 제복근무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익광고, 캠페인, 초청행사 및 포상 등에 사용되었음.

특히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과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홍보 대행 용역비로 32억 8,900만원이 집행되어 동 사업 집행액의 9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로 방송 콘텐츠 제작과 각종 매체 광고 등에 사용되었음.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의 정책목적과 수혜대상, 국가보훈부의 수행 필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복근무자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관계기관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행사명	집행액
감사행사	제복근무자 초청 토크콘서트 ‘리스펙트 유’	272
체육행사	제복근무자 감사마라톤 ‘리스펙트 런’	360
초청행사	LCK 결승전 제복근무자 초청행사	150
출판·콘텐츠	제복근무자 50인을 대상으로 한 ‘마이 히어로북’ 제작·배포	633
포상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	525
홍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방송·옥외·온라인 광고	1,090
기타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행사추진	365
합계		3,395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999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됨.

이 사업에서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전국 19개 캠퍼스에서 창업공간 및 교육·코칭 등 초기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과 글로벌 진출 유망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전국 각지에 소재한 19개 청년창업사관학교 건물의 연간 가동률을 살펴보면, 2021년 54.2%에서 2022년 45.8%, 2023년 36.0%, 2024년 26.8%, 2025년 18.5%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 캠퍼스의 경우 36개 기업을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입주 기업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 가동 실적이 없음.

코로나19 이후 비입주 방식에 대한 입교생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년창업사관학교 건물의 전반적인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 재정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사관학교 건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관학교 건물별 연간 가동률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용 인원	입주 기업	가동률	수용 가능	입주 기업	가동률	수용 가능	입주 기업	가동률	수용 가능	입주 기업	가동률	수용 가능	입주 기업	가동률
안산	125	66	52.8	125	51	40.8	125	31	24.8	125	37	29.6	125	11	8.8
구리	16	11	68.8	16	8	50.0	16	5	31.3	16	5	31.3	16	4	25.0
서울	92	50	54.3	92	45	48.9	92	35	38.0	92	16	17.4	92	24	26.1
인천	28	13	46.4	28	11	39.3	28	15	53.6	28	12	42.9	28	5	17.9
파주	28	9	32.1	28	12	42.9	28	4	14.3	28	2	7.1	28	6	21.4
강원	36	10	27.8	36	9	25.0	36	11	30.6	36	2	5.6	36	0	0.0
천안	32	25	78.1	32	20	62.5	32	20	62.5	32	12	37.5	32	5	15.6
대전	20	16	80.0	20	6	30.0	20	12	60.0	20	3	15.0	20	8	40.0
세종	30	9	30.0	30	12	40.0	30	12	40.0	30	10	33.3	30	4	13.3
청주	30	10	33.3	30	10	33.3	30	4	13.3	30	0	0.0	30	2	6.7
광주	25	23	92.0	25	24	96.0	25	17	68.0	25	17	68.0	25	6	24.0
전주	31	23	74.2	31	13	41.9	31	8	25.8	31	8	25.8	31	1	3.2
나주	34	17	50.0	34	15	44.1	34	11	32.4	34	6	17.6	34	3	8.8
제주	18	9	50.0	18	9	50.0	18	7	38.9	18	5	27.8	18	7	38.9
경산	25	23	92.0	25	20	80.0	20	18	90.0	20	15	75.0	20	10	55.0
대구	40	18	45.0	40	16	40.0	40	11	27.5	40	10	25.0	40	10	25.0
창원	44	24	54.5	44	18	40.9	10	8	80.0	10	4	40.0	10	2	20.0
부산	30	19	63.3	30	16	53.3	30	5	16.7	30	6	20.0	30	10	33.3
울산	30	12	40.0	30	12	40.0	30	9	30.0	30	11	36.7	30	7	23.3
합계	714	387	**54.2**	714	327	**45.8**	675	243	**36.0**	675	181	**26.8**	675	125	**18.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지방공동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 분석

가. 개 요

(1) 지방공동화 현황

지방공동화란 인구・산업・교육 등 지역의 인적·물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지역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14]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공동화 현상을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불균형 성장과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는데, 지방공동화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다시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전체 인구, 경제활동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주택인허가실적 등의 수도권 비중이 지속 상승하여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등 생산과 인구 지표 전반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가 확인되고 있음.

[전체 대비 수도권·비수도권의 인구·경제활동인구·GRDP 비중 등]

(단위: %)

지표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인구 비중	수도권	46.3	48.1	49.2	49.4	50.2	51.0
	비수도권	53.7	51.9	50.8	50.6	49.8	49.0
지표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경제활동인구 비중	수도권	46.6	49.0	50.1	50.1	50.4	51.2
	비수도권	53.4	51.0	49.9	49.9	49.6	48.8
지표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GRDP 비중	수도권	48.5	49.0	49.5	50.1	52.9	52.8
	비수도권	51.5	51.0	50.5	49.9	47.1	47.2

문의: 02-6788-5675, 02-6788-5682, 02-6788-5697

14) 유사 용어로 “지방소멸”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영향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도시의 인구가 감소하여 교육・의료・경제 등 지역 기능과 인프라가 작동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임(마스다 히로야(2014), 「지방소멸」).

지표	구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2025년
창업 기업수 비중	수도권	53.0	55.6	56.5	55.6	55.4	57.0
	비수도권	47.0	44.4	43.5	44.4	44.6	43.0

지표	구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주택수 비중	수도권	45.6	45.7	46.1	46.6	46.7
	비수도권	54.4	54.3	53.9	53.4	53.3

지표	구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주택 인허가 실적비중	수도권	48.1	50.8	57.7	36.6	53.8
	비수도권	51.9	49.2	42.3	63.4	46.2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프라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는 다시 지방공동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예를 들면, 수도권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비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고 비수도권 폐교 수가 수도권 폐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수도권·비수도권 대중교통분담률(2022년 기준) 현황]

(단위: %)

지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북	전남
대중교통분담률	54.0	24.0	32.0	17.0	10.0	9.0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2025.9.30.

[수도권·비수도권 폐교 수 현황]

(단위: 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수도권	비수도권
학교수	7	50	50	60	869	8	27	13	193	489	262	280	346	732	587	35	**260**	**3,748**
비중	0.2	1.2	1.2	1.5	21.7	0.2	0.7	0.3	4.8	12.2	6.5	7.0	8.6	18.3	14.6	0.9	**6.5**	**93.5**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 폐교 정보

실제 2021~2025년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입 인구보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 인구가 많아 비수도권 지역 인구의 순유출이 매해 발생하였는데,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에 따른 격차 심화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구조적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도권·비수도권 전입 및 전출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도권→비수도권 (A)	414,934	386,077	368,076	372,850	380,036
비수도권→수도권 (B)	470,631	422,720	414,945	418,019	418,501
A-B	△55,697	△36,643	△46,869	△45,169	△38,465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와 같은 인프라 격차로 인한 인구 이동 등의 영향은 자산과 부동산 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가구당 평균자산이 비수도권 대비 약 1.6배 높고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도 2015년 대비 2025년 확대되었음.

[수도권·비수도권 자산 및 부동산 격차]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배율
가구당 평균자산 (2024년 기준)	6.7억원	4.2억원	1.6배
2015년 아파트 중위가격	3억 3,200만원	1억 6,100만원	2.0배
2025년 아파트 중위가격	5억 3,500만원	2억 400만원	2.6배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2025.9.30.

이러한 지방공동화 현상은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20여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위험지수[15]는 56.6(관리)으로 2000년의 258.6(양호)과 비교할 때 크게 악화된 수준임.[16]

특히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경계(3등급)으로 2000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

15) 지방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수'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여파와 청년인구 유출 현상을 보여주는 직관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통계지표로 활용되고 있음(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2025: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참조)

16) 지방소멸위험지수가 20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음.

[지방소멸위험지수 구분]

며, 일부 시군구에서는 심각(5등급)이 발생하는 등 지방공동화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2000~2025년)]

시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25년 인구비중(%)		
	지수	등급	지수	등급	지수	등급	지수	등급	지수	등급	지수	등급	65세 이상	14세 이하	20~39세 여성
전국	258.6	0	191.7	0	138.7	0	105.5	0	80.9	1	56.6	2	20.6	10.5	11.7
서울	360.6	0	262.2	0	180.6	0	129.5	0	100.9	0	75.8	1	19.9	8.8	15.1
부산	301.3	0	203.0	0	131.5	0	92.5	1	65.9	1	44.8	2	24.6	9.6	11.0
대구	319.5	0	222.4	0	147.1	0	103.9	0	76.0	1	50.6	2	21.5	10.4	10.9
인천	350.3	0	252.7	0	180.5	0	136.8	0	99.6	1	66.9	1	18.2	10.9	12.2
광주	334.2	0	251.3	0	176.2	0	127.5	0	96.7	1	65.9	1	18.1	11.5	12.0
대전	348.0	0	260.7	0	182.5	0	133.3	0	96.0	1	67.7	1	18.6	10.8	12.6
울산	474.8	0	330.1	0	219.2	0	156.5	0	100.4	0	55.9	2	17.9	11.6	10.0
세종	-	-	-	-	-	-	129.1	0	149.7	0	101.8	0	11.9	17.6	12.1
경기	338.3	0	252.9	0	182.6	0	137.6	0	104.8	0	71.1	1	17.2	11.6	12.2
강원	176.3	0	122.4	0	86.5	1	67.1	1	51.6	2	35.4	3	26.1	9.6	9.2
충북	186.9	0	137.9	0	103.5	0	83.8	1	65.0	1	45.1	2	22.5	10.5	10.1
충남	139.9	0	110.1	0	89.5	1	75.3	1	60.1	1	43.1	2	22.9	10.9	9.8
전북	156.4	0	113.7	0	84.6	1	65.7	1	50.9	2	36.2	3	25.9	9.8	9.4
전남	122.2	0	85.3	1	63.1	1	51.9	2	42.2	2	30.6	3	27.8	9.9	8.5
경북	151.2	0	110.4	0	82.2	1	64.8	1	47.5	2	31.4	3	26.7	9.6	8.4
경남	204.9	0	155.6	0	117.1	0	89.9	1	65.3	1	39.9	3	22.5	10.8	9.0
제주	221.8	0	162.1	0	113.0	0	91.0	1	78.5	1	53.4	2	19.5	12.3	10.4

주)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양호(0등급, 100 이상), 보통(1등급, 60~100), 관리(2등급, 40~60), 경계(3등급, 20~40), 위험(4등급, 10~20), 심각(5등급, 10 미만)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간행물「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 관련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2025년)를 이용하여 재작성

기존	
단계	지수값
1.소멸위험 낮음	1.5 이상
2.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3. 주의단계	0.5~1.0 미만
4. 소멸위험 진입	0.2~0.5 미만
5. 고위험지역	0.2 미만

⇨

개편	
단계	지수값
0. 양호	100 이상
1. 보통	60~100 미만
2. 관리	40~60 미만
3. 경계	20~40 미만
4. 위험	10~20 미만
5. 심각	10 미만

주)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25년에 개편되어 현재는 양호(0등급), 보통(1등급), 관리(2등급), 경계(3등급), 위험(4등급), 심각(5등급)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지방소멸 2025: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p. 109.

[2025년 지방소멸위험지수가 4등급(위험), 5등급(심각)인 시·군·구 현황]

시도	시군구	2000년		2025년		2025년 인구비중(%)		
		지수	등급	지수	등급	65세 이상	14세 이하	20~39세 여성
전남	고흥군	57.2	2	9.9	5	46.3	5.6	4.6
경북	군위군	59.8	2	7.8	5	48.3	3.7	3.8
경북	의성군	57.2	2	8.6	5	48.4	4.7	4.1
경북	청도군	67.4	1	9.6	5	45.2	4.9	4.4
경북	봉화군	67.7	1	8.6	5	44.5	5.5	3.8
경남	남해군	55.8	2	9.9	5	43.7	5.8	4.3
경남	합천군	59.6	2	9.0	5	46.3	4.9	4.2
인천	강화군	79.6	1	14.7	4	39.9	6.7	5.9
인천	옹진군	61.8	1	17.3	4	35.1	5.0	6.1
강원	태백시	216.3	0	19.5	4	31.8	8.2	6.2
강원	홍천군	124.5	0	19.2	4	34.6	7.6	6.6
강원	횡성군	98.7	1	14.7	4	37.9	6.4	5.6
강원	영월군	107.6	0	15.4	4	37.0	6.3	5.7
강원	평창군	125.6	0	15.0	4	36.4	6.0	5.5
강원	정선군	127.6	0	15.0	4	36.0	6.3	5.4
강원	양양군	115.1	0	16.7	4	36.2	6.9	6.1
충북	보은군	70.0	1	11.8	4	41.8	6.1	4.9
충북	옥천군	97.5	1	16.9	4	36.4	7.0	6.1
충북	영동군	86.8	1	14.3	4	39.2	6.2	5.6
충북	괴산군	67.9	1	10.5	4	42.5	5.1	4.5
충북	단양군	110.8	0	12.8	4	39.5	5.8	5.0
충남	금산군	89.9	1	15.1	4	37.2	7.0	5.6
충남	부여군	76.6	1	12.8	4	42.1	6.2	5.4
충남	서천군	72.8	1	12.0	4	43.1	6.1	5.2
충남	청양군	65.5	1	13.5	4	41.7	5.7	5.6
충남	예산군	97.8	1	19.3	4	35.7	7.5	6.9
충남	태안군	103.4	0	14.6	4	38.4	6.4	5.6
전북	진안군	66.2	1	13.5	4	40.9	6.3	5.5
전북	무주군	75.0	1	14.5	4	38.8	6.7	5.6
전북	장수군	73.5	1	13.1	4	40.9	6.8	5.3
전북	임실군	63.3	1	12.5	4	42.5	6.5	5.3
전북	순창군	58.8	2	16.0	4	38.5	7.3	6.2
전북	고창군	69.1	1	13.6	4	40.3	7.0	5.5
전북	부안군	80.8	1	14.3	4	39.3	6.8	5.6
전남	담양군	83.1	1	18.3	4	36.5	6.9	6.7
전남	곡성군	68.8	1	14.5	4	41.0	5.5	5.9
전남	구례군	75.7	1	13.4	4	40.4	6.2	5.4
전남	보성군	60.2	1	11.1	4	44.3	6.0	4.9
전남	장흥군	63.7	1	15.0	4	39.7	7.1	6.0
전남	강진군	70.2	1	15.0	4	40.1	7.5	6.0

시도	시군구	2000년		2025년		2025년 인구비중(%)		
		지수	등급	지수	등급	65세 이상	14세 이하	20~39세 여성
전남	해남군	81.7	1	14.9	4	38.4	7.4	5.7
전남	함평군	59.9	2	12.6	4	42.1	6.0	5.3
전남	완도군	79.0	1	14.5	4	38.1	8.3	5.5
전남	진도군	66.9	1	16.0	4	38.7	7.4	6.2
전남	신안군	55.7	2	12.2	4	39.8	6.1	4.9
경북	영천시	117.3	0	19.1	4	34.6	7.5	6.6
경북	상주시	79.9	1	15.6	4	37.4	7.5	5.9
경북	문경시	97.4	1	16.9	4	36.9	7.6	6.2
경북	청송군	74.6	1	10.4	4	44.5	5.3	4.6
경북	영양군	64.2	1	11.0	4	43.5	5.5	4.8
경북	영덕군	69.3	1	10.4	4	44.2	5.8	4.6
경북	고령군	88.2	1	13.8	4	38.9	5.7	5.4
경북	성주군	77.6	1	12.4	4	40.0	5.6	5.0
경북	울릉군	96.7	1	18.7	4	30.7	5.3	5.7
경남	밀양시	114.4	0	17.4	4	35.6	7.2	6.2
경남	의령군	57.0	2	10.8	4	43.5	5.6	4.7
경남	함안군	103.4	0	17.2	4	32.5	8.1	5.6
경남	창녕군	82.5	1	12.4	4	39.1	6.6	4.9
경남	고성군	82.6	1	12.3	4	38.2	6.6	4.7
경남	하동군	77.2	1	10.5	4	42.4	5.5	4.4
경남	산청군	65.9	1	10.3	4	43.6	4.9	4.5
경남	함양군	66.9	1	12.2	4	40.4	6.5	4.9

주)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양호(0등급, 100 이상), 보통(1등급, 60~100), 관리(2등급, 40~60), 경계(3등급, 20~40), 위험(4등급, 10~20), 심각(5등급, 10 미만)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간행물「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 관련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2025년)를 이용하여 재작성

(2)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현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추진체계

2023년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통합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과제·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제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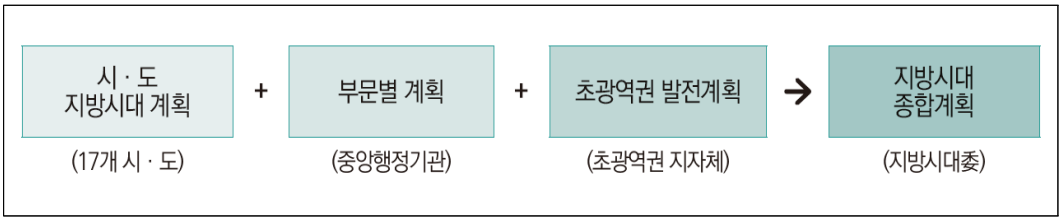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시대
근거법	「지방분권법」	+	「국가균형발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023.10.30.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17] 등에 따른 5년 단위의 중기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임.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되고 있음.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성]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023.10.30.

1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또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18]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 중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거나, 현장 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선택·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자율계정[19]과 권역 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조정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지원계정[20]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운영 현황]

<table>
<tr><th colspan="2">계정
편성방식</th><th>지역자율계정</th><th>지역지원계정</th><th>세종특별자치시
계정</th><th>제주특별자치도
계정</th></tr>
<tr><td rowspan="2">지자체
자율
편성</td><td>시·도</td><td>①시·도
자율편성사업</td><td>-</td><td rowspan="2">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td><td rowspan="2">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td></tr>
<tr><td>시·군·구</td><td>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td><td>-</td></tr>
<tr><td colspan="2">부처직접편성</td><td>-</td><td>⑥부처직접
편성사업</td><td>⑦부처직접
편성사업</td><td>⑧부처직접
편성사업</td></tr>
</table>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023.10.30.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정부는 2004년 이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지방분권(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합하여 2023년 10월 30일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확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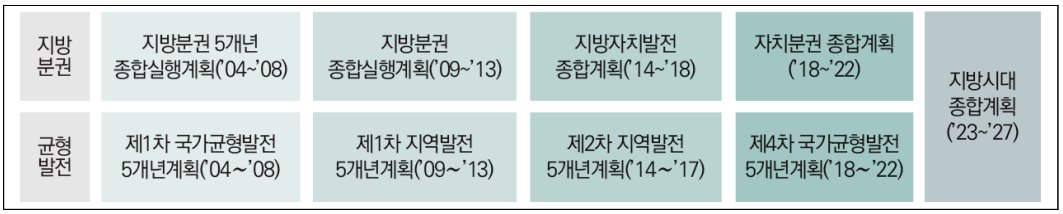
---

1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9) 재정당국이 지자체별로 지출한도를 부여하면 지자체는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함.

20) 각 부처가 중장기투자계획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 편성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연혁]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023.10.30.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①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2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핵심 내용]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주관 부처
Ⅰ.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Ⅱ.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중기부
	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행안부
Ⅲ.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업부
	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고용부
	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산업부・행안부
	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
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중기부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체부・해수부
	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해수부
	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해수부
Ⅴ.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
	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
	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행안부
	4.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산림청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023.10.30.

② 5극3특[21]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새 정부 출범('25.6.4.) 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되고 국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이 3대 분야・11개 전략과제・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Action Plan]

세부 추진과제	주관 부처
1. 5극3특 경제권 : 성장과 집중	
1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❶ '5극3특' 초광역 단위 앵커기업 기반 성장엔진 발굴 및 육성	
성장엔진 선정 가이드라인 수립	산업부
민관합동 성장엔진 투자계획 마련 및 투자협의체계 마련	범부처(주산업부), 지방위
'26년 초광역권 성장엔진 시범 프로젝트 발굴・체결	범부처 (주산업부), 지방위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범부처 (주산업부), 지방위
❷ 5극3특 성장 5종세트 패키지 지원	
메가특구 등 광범위한 규제특례 제도기반(법령포함) 정비	범부처(주국조실)
지역 자율 R&D 관련 예산구조 및 사업추진체계 개편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기재부, 지방위
초광역권별 지・산・학・연 협의체 구성으로 과제발굴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선도R&D과제 재원마련,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지방위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성장엔진 R&D・인프라 사업 검토 추진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❸ 지방투자유인 기반제도 개선	
5극3특 지방거점 유도 보조금 개편안 마련	산업부
지역별 전기요금・망요금제 시행	산업부
지투 보조금 확대	산업부
2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❶ 초광역권별 지역주력산업 공정혁신 지원	
4대권역 AX 연구·실증 거점 우선 조성 및 타권역 확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21) 5극3특은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경제권・생활권・행재정권을 개편하여 균형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5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호남권(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으로 구성되어있고,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 추진과제		주관 부처
	권역별 TechHub 조성	산업부
❷ 지역산업 AX전환 생태계 구축		
	지역 AX선도기업 협업 AX 상생모델 발굴·시범사업 추진	중기부
	초광역권별 제조AI혁신센터 설립 가이드라인 마련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제조AI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제조AI혁신센터 설립 및 중소기업 AI 등 연구개발·인력양성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❸ 중소·중견기업 산업전환 지원 및 특화단지 연계 강화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컨설팅	산업부, 중기부
	사업전환 권역-기업 인센티브 확대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권역별 소부장·국가첨단전략산업·뿌리산업 특화단지 연계방안 마련	산업부
	특구 및 산단 종합적·단계적 정비 방안 마련	산업부
	성장엔진 연계 글로벌 전시회 육성	산업부
❹ 권역별 관광 인프라·콘텐츠 구축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신설	문체부
	교통거점-관광지 연계	문체부, 국토부
	광역관광개발 2.0 및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문체부
3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 구축		
❶ 정부주도 펀드의 지역투자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금융위
	지역성장펀드 조성	중기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프로젝트 발굴	금융위, 산업부
	지역엔젤투자허브 확대(기존 4개소→4극3특 초광역권별) 및 초광역 추진체 거버넌스 내 편입	중기부
	한국벤처투자 사무소 확대(기존 1개소→4극3특 초광역권별)	중기부
	지역투자 인센티브 마련	중기부
	R&D지원 지역펀드 조성	과기정통부
❷ 초광역권별 가칭지역투자공사 설립		
	일부권역 지역투자공사 설립 검토	금융위, 산업부
	지역투자공사 타 권역 확대 검토	금융위, 산업부
4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		
❶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및 라이즈 체계 재구조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로드맵 마련 및 RISE체계 발전방안 수립	교육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본격 추진	교육부

세부 추진과제		주관 부처
	산학연(출연연, 과기원, 산업계 등) 연구 협력 생태계 구축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혁신 선도 지방대 투자 확대로 지역 거점국립대 동반 성장 지원	교육부
	초광역 RISE위원회 구성·운영	교육부
	RISE 체계 연계 초광역권 인재양성 사업 발굴 및 추진 (메가공유대학, 산학연 클러스터 연계, 취·창업 등)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초광역 RISE센터 독립법인 신설 및 초광역권 인재양성 사업 운영 본격화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❷ 지역산업과 연계한 투트랙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대학-기업 연계 탄력적 학사제도 추진 (대학-기업 공동운영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또는 가칭산업학위제,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교육부, 산업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운영('30년까지 50개교 지정)	교육부
	직업계고-전문대-대학 학제 연계 강화 및 학사 자격 다변화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교원 국내·외대학 겸직근거 마련, AI 해외 Top-tier급 인재유치 등)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❸ 지역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취·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라이즈 기본계획과 지산학연 연계 강화 및 지역 수요 반영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 개정	교육부, 산업부
	대학 내 학교 기업 지원 강화 및 대학 창업펀드 지원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수요 반영 등	교육부
5 5극3특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 조성		
❶ 권역별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職·住·樂 일체) 조성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 통합 조성·운영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 선도사업 1~2개 선정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혁신성장거점으로 연계·지원할 초광역 특별협약 마련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투자, 인프라, 인재 등이 결합된 창업 거점 활성화	중기부, 산업부
❷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와 연계된 복수의 거점도시 조성		
	지역거점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개편안 마련 및 추가 지정	산업부, 교육부
❸ 부처별 거점조성사업 평가 및 재설계		
	부처별 혁신거점사업 평가 및 재설계 방향 제안	범부처
2. 5극3특 생활권 : 연결과 확산		
1 국토공간 재설계		
❶ 5극3특 권역별 체계로 국토 공간전략 및 지원체계 마련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6~'40) 마련	국토부

세부 추진과제		주관 부처
	CTX-경부선 연결 사업	국토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국토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및 추진	국토부
2 권역별 60분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망 강화		
❶ 계획-투자-운영 일원화를 위한 권역별 교통계획체계 정비		
	권역별 대중교통망계획 제도 도입방안 마련	국토부, 지방위
	대광위 조정기능 강화	국토부
❷ 생활권 연결 제고 위한 대중교통 확충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BRT 도입 확대	국토부
	대중교통 정액 패스 전국 확대	국토부, 기재부
	농어촌 맞춤형 DRT 사업 확대	국토부, 농식품부
	공공형 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특구 지정	교육부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체제 조성	교육부
4 K-농산어촌 조성		
❶ 농어촌주민 기본소득 보장		
	햇빛연금 조성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실시	농식품부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해수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추진	농식품부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농식품부
❷ 머물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재생프로젝트 추진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식품부
	농촌특화지구 조성	농식품부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개정	해수부
	농어촌빈집관리특별법 제정	농식품부
	빈집철거 및 마을단위 빈집재생	농식품부
	재생거점마을 조성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식품부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산림청
	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해수부
	농어촌 관광벨트 조성	농식품부
❸ 청년 농어업인재 육성 및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		
	예비농업인 컨설팅·교육 도입	농식품부
	청년농 공공비축농지 공급 확대	농식품부

세부 추진과제		주관 부처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 R&D	농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식품부
	청년바다마을 조성	해수부
❹ K-푸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등 新 산업 육성		
	K-푸드파크 및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농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확대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구축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확대	농식품부
	국가 농어업 AX플랫폼 조성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농식품부
3. 5극3특 추진기반 : 행·재정 기반 구축		
1 5극3특 행정기반 구축		
❶ 5극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개편	지방위, 행안부
	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 구성 및 전담조직 신설	지방위
	지방위 기능 및 권한 강화 등을 위한「지방분권균형발전법」개정	지방위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추진체 구성	지방위, 지자체
❷ 권역별 초광역정책 추진체계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특별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행안부
	특별지자체 실질화를 위한 규약 표준안 마련	행안부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지역 주도 특자체 출범 지원	행안부, 지방위
❸ 권역별 패키지 정책 지원: 초광역특별협약 활성화		
	초광역특별협약 구조설계	국토부, 산업부, 지방위
	부처-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각 부처, 지자체
❹ 파편화된 지방사업 추진방식 개선 : 통합공모 등 공모제도 개선		
	다부처협력사업 통합공모 방안 마련 및 통합공모 실시	지방위
	통합공모 실시를 위한「지방분권균형발전법」개정	지방위
❺ 권역단위 분권화 강화: 초광역권 중심 맞춤형 권한이양		
	이양사무 발굴 및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도입방안 마련	행안부, 지방위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및「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제정안 마련	행안부
2 5극3특 재정기반 구축		
❶ 지방우대 및 지방재정 확대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지방위
	포괄보조 확대	기재부, 지방위

세부 추진과제	주관 부처
❷ 5극3특 지원 재정체계 구축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기재부, 지방위
5극3특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지원	지방위
❸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성과 연동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	기재부, 산업부, 행안부, 지방위
❹ 지방우대 재정지원	
아동수당	복지부
노인일자리	복지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비수도권유형)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특별훈련수당)	고용부
지역사랑상품권	행안부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중기부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2025.9.30.

(다) 2025회계연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 관련 사업 결산

① 회계·기금별 결산

2025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과 관련된 사업을 회계별·기금별로 살펴보면, 전체 집행액 27조 4,929억 2,800만원 중 6조 7,074억 5,300만원(24.4%)이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었고 19조 7,766억 3,800만원(71.9%)이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었으며, 1조 88억 3,700만원(3.7%)이 기금에서 집행되었음.

특별회계 중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9조 7,374억 4,900만원(35.4%)이 집행되어 전체 집행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교통시설특별회계 4조 2,472억 5,300만원(15.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조 9,962억 9,300만원(10.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조 940억 6,400만원(7.6%) 순으로 나타났음.

기금의 경우 양성평등기금에서 6,912억 3,800만원(2.5%)이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서 기후대응기금 1,414억 7,200만원(0.5%), 응급의료기금 436억 3,300만원(0.2%) 순으로 나타났음.

[2025년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회계·기금별 결산]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2025년						2026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계획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일반회계	6,674,302	6,749,018	6,796,811	6,707,453	15,116	74,241	8,036,183
특별회계	20,580,144	21,087,277	21,369,377	19,776,638	659,146	1,100,871	21,975,69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860,659	10,023,289	10,097,580	9,737,449	295,153	232,256	9,819,517
교통시설특별회계	4,768,931	4,598,684	4,683,548	4,247,253	218,756	217,539	5,540,36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96,159	596,159	620,614	597,036	23,296	282	610,66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162,111	2,736,861	2,736,861	2,094,064	-	642,797	2,996,401
환경개선특별회계	82,340	82,340	97,554	97,176	-	378	133,6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063,744	3,003,744	3,003,824	2,996,293	-	7,531	2,748,88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680	6,680	6,680	6,680	-	-	6,6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9,520	39,520	122,716	687	121,941	88	119,640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2025년						2026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기금	1,017,037	1,017,037	1,019,059	1,008,837	276	9,947	1,102,427
과학기술진흥기금	2,832	2,832	2,832	2,832	-	-	3,304
축산발전기금	19,416	19,416	19,988	15,911	-	4,077	19,327
양성평등기금	691,650	691,650	691,650	691,238	-	412	716,712
기후대응기금	140,539	140,539	141,874	141,472	44	359	145,418
전력산업기반기금	35,149	35,149	35,149	35,149	-	-	41,450
응급의료기금	48,531	48,531	48,531	43,633	-	4,898	60,888
주택도시기금	40,000	40,000	40,000	40,000	-	-	72,000
관광진흥개발기금	31,753	31,753	31,868	31,435	232	201	34,69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167	7,167	7,167	7,167	-	-	8,629
합계	28,271,483	28,853,332	29,185,247	27,492,928	674,538	1,185,059	31,114,306

주)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합산한 것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부처별 결산

2025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과 관련된 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96개 세부사업에 대해 5조 6,623억 7,300만원(20.6%)을 집행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보건복지부 18개 세부사업·5조 3,175억 9,200만원(19.3%), 기후에너지환경부 28개 세부사업·3조 1,176억 9,100만원(11.3%) 순으로 나타났음.

[2025년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부처별 결산]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 사업수	2025년						2026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국토교통부	96	6,171,769	6,031,522	6,000,234	5,662,373	235,361	266,942	6,629,069
보건복지부	18	5,286,475	5,286,475	5,336,651	5,317,592	6,156	12,902	6,176,924
기후에너지 환경부	28	4,171,286	3,746,036	3,762,684	3,117,691	1,345	643,649	4,085,458
교육부	9	3,122,941	3,062,941	3,063,021	3,047,389	-	15,632	2,809,892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 사업수	2025년						2026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행정안전부	12	1,323,513	2,323,113	2,323,093	2,322,840	-	253	2,499,352
농림축산식품부	29	1,338,345	1,338,345	1,526,097	1,409,102	106,815	10,180	1,331,133
산업통상부	45	1,449,816	1,549,766	1,550,313	1,369,754	121,762	58,797	1,584,146
고용노동부	3	1,363,161	1,418,577	1,406,906	1,332,207	-	74,699	1,591,380
성평등가족부	6	1,254,522	1,254,522	1,254,522	1,253,778	21	723	1,414,825
중소벤처기업부	33	862,627	906,627	906,627	905,504	272	850	1,019,756
해양수산부	17	880,015	881,015	905,289	830,861	64,918	9,510	893,972
문화체육관광부	25	483,339	483,339	484,418	438,324	1,118	47,813	462,07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4	378,815	386,195	391,315	348,864	-	42,451	311,895
농촌진흥청	9	72,320	72,320	72,320	72,307	-	13	81,571
산림청	8	64,069	64,069	70,091	54,705	14,829	557	49,358
방위사업청	1	8,250	8,250	8,250	8,250	-	-	51,470
국가유산청	2	700	700	700	700	-	-	2,387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2	39,520	39,520	122,716	687	121,941	88	119,640
계	357	28,271,483	28,853,332	29,185,247	27,492,928	674,538	1,185,059	31,114,306

주)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합산한 것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2023~2025년 연도별 및 시·도별 결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마련된 2023년부터 2025년간까지 해당 사업군에서는 총 약 58조 9,800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음.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7조 9,369억 3,000만원, 2024년 18조 5,464억 1,000만원, 2025년 22조 4,966억 7,500만원이 각각 집행되어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집행 금액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8조 4,933억 4,500만원(14.4%)이 집행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경북 5조 3,251억 6,700만원(9.0%), 전남 5조 2,033억 9,000만원(8.8%), 경남 5조 597억 3,200만원(8.6%) 순으로 나타났음.

[2023~2025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 관련 사업 시·도별 결산]

(단위: 백만원, %)

시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합계	
				금액	비중
서울	1,277,460	1,339,943	1,472,997	4,090,400	6.9
부산	835,349	1,131,669	1,589,286	3,556,304	6.0
대구	800,432	776,781	998,169	2,575,382	4.4
인천	840,411	898,095	896,970	2,635,476	4.5
광주	491,003	627,960	838,360	1,957,323	3.3
대전	373,473	396,641	688,211	1,458,325	2.5
울산	315,338	298,498	398,085	1,011,921	1.7
세종	198,935	182,225	280,659	661,819	1.1
경기	2,763,358	2,635,501	3,094,486	8,493,345	14.4
강원	1,390,007	1,342,916	1,556,542	4,289,465	7.3
충북	955,997	978,260	1,051,879	2,986,136	5.1
충남	1,373,958	1,379,733	1,748,111	4,501,802	7.6
전북	1,184,919	1,173,193	1,491,303	3,849,415	6.5
전남	1,547,056	1,634,943	2,021,391	5,203,390	8.8
경북	1,652,885	1,734,207	1,938,075	5,325,167	9.0
경남	1,586,045	1,638,105	1,835,582	5,059,732	8.6
제주	350,306	377,742	596,572	1,324,620	2.2
계	17,936,930	18,546,410	22,496,675	58,980,015	100.0

주)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합산한 것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시·도간 집행액을 분류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 보완 검토 필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를 국가적 구조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5극3특 추진전략」은 권역 내 중심지-배후지의 격차 확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를 국가적 구조 문제로 인식하고, 산업·일자리, 교육·인재, 정주여건, 교통·생활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중앙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 또는 권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2025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 비교]

구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법적지위	법정 5년 중기계획	국정과제 추진 관련 전략 문서
정책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잠재성장률 3% + 비수도권 GRDP 50%+
정책단위	17개 시·도	5극3특 권역
정책기조	균형발전 및 분권	권역거점 중심의 성장과 집중
산업정책	시·도별 특화산업	권역별 앵커기업 기반 성장
재정기반	지특회계 자율계정 확대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포괄보조 확대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사전조정권 강화

자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두 계획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17개 시·도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교육·문화·복지·의료·농산어촌·자치분권 등 지역 전반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정 중기계획인 반면, 「5극3특 추진전략」은 시·도 단위를 넘어 권역 단위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형성하고 권역거점을 중심으로 산업·인재·교통·재정지원을 패키지화하려는 실행전략의 성격이 강함.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17개 시·도를 단위로 시·도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방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의가 있으나, 다수 시·도가 AI·반도체·바이오·의료·헬스케어·미래차·모빌리티·수소 등 유사한 첨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제시하여 지역별로 전략산업의 차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11개 시·도가 해당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 지역이 신약개발·백신 생산·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산업 가치사슬의 어느 단계에 특화할 것인지가 충분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 인프라의 중복 구축과 지역 간 과도한 투자유치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025년「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중 산업분야별 시·도 전략산업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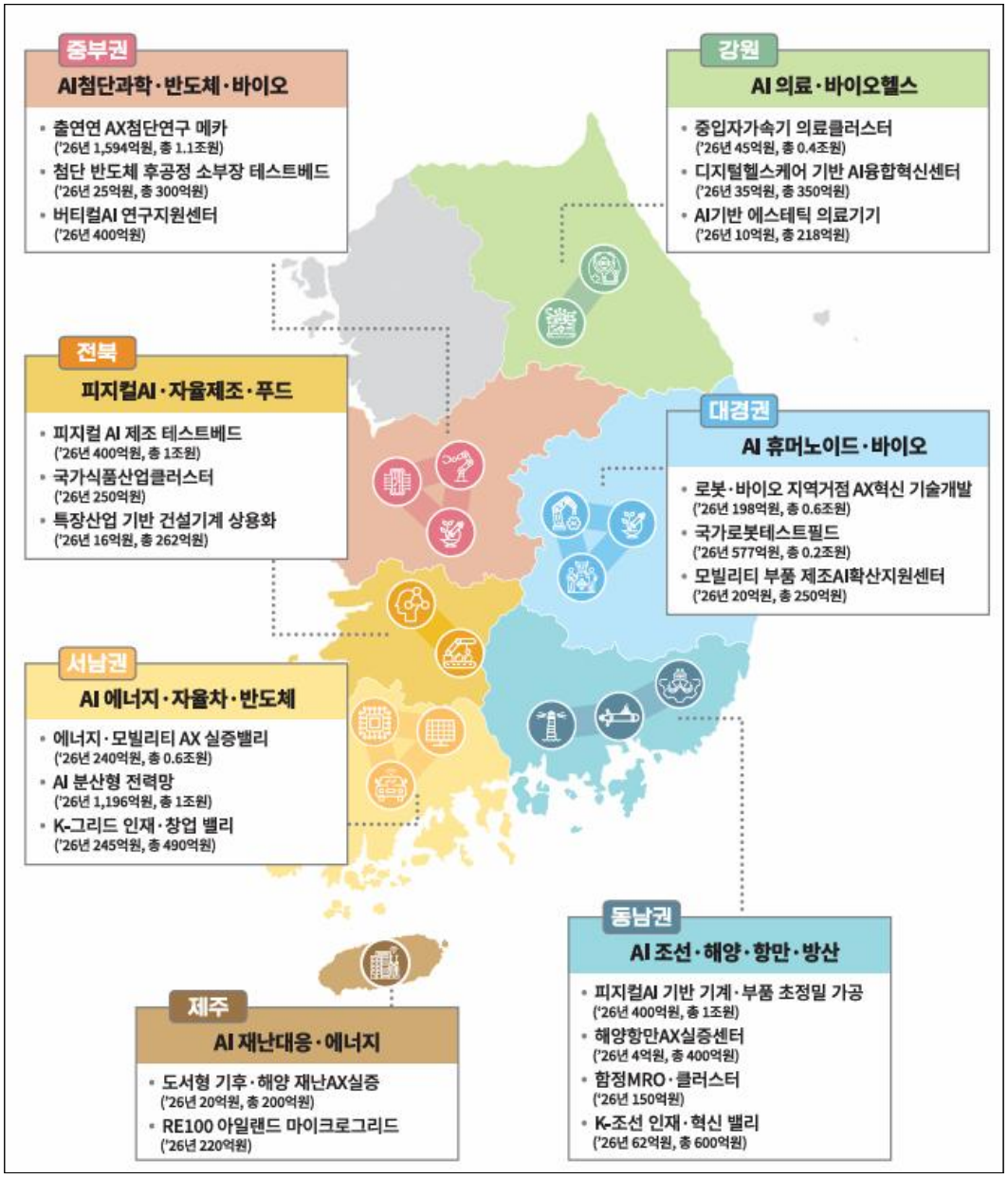
산업 분야	시·도	개수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	11
반도체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구미)	9
미래차·모빌리티(UAM)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제주	10
수소·에너지	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8
AI·데이터	대구·인천·광주·강원·충남(AI 미래차)·전남(AI 농산업)	6
이차전지	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포항)	5
로봇	대구·인천·광주	3
우주·항공	대전·전남·경북·경남·제주	5
양자	대전·세종·충북	3
금융	서울·부산·전북	3

자료:「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비해 새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수립된「5극3특 추진전략」은 기존의 시·도 단위, 부처별, 균등분산형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권역거점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권역 단위로 경계를 확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구상으로,「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였음.

실제 2026년 예산안(2025.9.3.)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권역 및 특별시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편성·지원하였는데, AI산업 내에서도 AI첨단과학·AI의료·피지컬AI·AI휴머노이드·AI에너지·AI조선·AI재난대응 등 권역별로 역할과 중점투자 분야를 구분한 것으로 보임.

[2026년 예산안 4극3특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지도]



자료: 2026년도 예산안 홍보자료

다만 「5극3특 추진전략」에서는 권역 내 균형성장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더라도 권역 내부에서는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투자가 광역시·혁신도시·연구개발 거점 등에 집중될 경우 권역 내 중소도시·농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상대적으로 수혜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역 전체의 GRDP나 산업기반은 확대되더라도 지방공동화가 심각한 배후지역의 인구유출·생활서비스 부족 및 일자리 등은 개선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2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별 전략산업의 차별성과 가치사슬상 역할분담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5극3특 추진전략」은 권역거점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권역 내부의 중심-주변 격차를 새롭게 유발할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23)]

따라서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각 시·도 및 권역별 전략산업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동일 산업군 내에서 가치사슬 단계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며, 권역거점의 성장효과가 인구감소지역과 배후 중소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2)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에서 농어촌주민 기본소득 보장, 재생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권역내부에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23)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단위 계획으로 2023년에 발표되었으며, 종합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므로 「5극3특 추진전략」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2)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체계화 필요

법정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정부 추진전략인 「5극3특 추진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의 범위가 상이하고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추후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또는 「5극3특 추진전략」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총 357개로, 예산현액 29조 1,852억 4,700만원 중 27조 4,929억 2,800만원(94.2%)이 집행되었음.

이 중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259개로 총 13조 7,833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5극3특 추진전략」에만 관련된 사업은 23개로 총 6조 8,558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에 모두 관련된 사업은 75개로 총 6조 8,537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 관련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수	2025년						2026년 예산액(계획현액)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만 관련된 사업	259	15,164,606	14,890,029	14,948,442	13,783,337	452,015	880,368	15,930,249
5극3특 추진전략에만 관련된 사업	23	5,871,228	6,900,544	6,941,836	6,855,883	6,156	79,796	8,120,665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5극3특 추진전략에 모두 관련된 사업	75	7,235,649	7,062,759	7,294,969	6,853,708	216,366	224,895	7,063,392
계	357	28,271,483	28,853,332	29,185,247	27,492,928	674,538	1,185,059	31,114,306

주)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합산한 것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만 관련되어 있고, 「5극3특 추진전략」에는 제외되어 있음.

[2025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만 관련된 사업 중 집행액 상위 10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5년 집행실적						2026년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기후부	에특	무공해차 보급사업	2,263,104	1,900,854	1,900,903	1,594,659	98	306,146	2,284,513
행안부	지특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	1,000,000
성평등부	양평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790	552,790	552,790	552,790	-	-	572,203
복지부	지특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539,422	539,422	539,422	538,999	-	423	589,381
기후부	에특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928,423	865,423	865,489	528,759	-	336,730	930,938
성평등부	일반	아이돌봄 지원	475,028	475,028	475,028	474,975	-	53	597,779
국토부	교특	평택~오송 2복선화	250,000	450,000	450,000	450,000	-	-	80,000
해수부	교특	진해신항	434,650	434,650	477,444	431,133	43,809	2,502	462,181
국토부	지특	성장촉진지역개발	407,914	407,914	407,914	403,914	-	4,000	389,554
국토부	지특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373,568	403,568	468,066	390,388	68,670	9,008	364,06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5극3특 추진전략」에만 관련되어 있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제외되어 있음.

[2025년 「5극3특 추진전략」에만 관련된 사업 중 집행액 상위 10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집행실적						2026년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복지부	일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84,689	2,184,689	2,184,713	2,184,682	-	31	2,385,067
복지부	일반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급여)	1,958,738	1,958,738	2,006,557	2,006,557	-	-	2,480,627
행안부	지특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999,600	999,600	999,600	-	-	1,149,400
노동부	일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77,181	802,597	791,426	718,819	-	72,607	907,959
노동부	일반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8,116	478,116	477,616	476,994	-	622	521,313
복지부	지특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308,581	308,581	308,581	297,571	6,141	4,869	341,291
중기부	일반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지원사업	61,386	61,386	61,386	61,377	-	9	65,234
과기부	일반	인재활용확산지원 (글로벌인재 교류활용)	38,817	38,817	43,937	43,937	-	-	54,634
중기부	일반	산학협력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27,675	27,675	27,675	27,657	-	17	27,637
산업부	일반	전시산업경쟁력 강화지원 (국내전시회개최지원)	4,816	9,116	9,116	9,116	-	-	5,33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5극3특 추진전략」간의 주요한 차이 중 하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련되어 있던 SOC사업과 R&D사업들이 「5극3특 추진전략」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

실제로 69개의 SOC사업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만 관련되어있고 「5극3특 추진전략」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20개의 R&D사업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만 관련되어 있고 「5극3특 추진전략」에는 제외되어있음.

[2025년「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및「5극3특 추진전략」포함 사업 유형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의무지출		SOC		R&D		재난안전		재정지원 일자리		기타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만 포함된 사업	3	684,265	69	4,906,558	20	356,665	2	48,963	6	242,121	159	7,544,765
5극3특 추진전략에만 포함된 사업	1	2,006,557	-	-	2	43,937	-	-	5	3,415,652	15	1,389,737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5극3특 추진전략에 모두 포함된 사업	-	-	29	1,488,958	12	119,938	1	43,633	3	528,569	30	4,672,610

주)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합산한 것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추진전략」의 세부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의 선정 기준이 공개·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명확한 근거 없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만 관련되거나 「5극3특 추진전략」에만 관련되는 사업들이 존재하는 등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현재와 같이 법정 최고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정부 추진전략인 「5극3특 추진전략」 사업군이 상이한 상태로 병존하고 있을 경우, 사업의 성과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불확실해지고 책임의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정부는 향후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하에 세부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관련 사업들의 성과 관리 강화 필요

첫째, 2025년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서 2025년 성과지표가 미흡하거나 성과지표 달성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각 세부사업에 따라 부처가 설정·관리하는 성과지표를 보면,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총 384개 지표 중 336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87.5%로 전년도(88.3%) 대비 0.8%p 감소하였음.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성과지표 총괄]

(단위: 개, %, %p)

부처명	세부 사업수	2023년			2024년			2025년			B-A
		지표수	달성	달성률	지표수	달성	달성률 (A)	지표수	달성	달성률 (B)	
고용노동부	3	8	5	62.5	5	3	60.0	5	5	100.0	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17	15	88.2	25	24	96.0	25	24	96.0	-
교육부	9	8	8	100.0	8	8	100.0	9	6	66.7	△33.3
국토교통부	96	32	27	84.4	40	31	77.5	38	25	65.8	△11.7
기후에너지환경부	28	27	26	96.3	33	30	90.9	37	33	89.2	△1.7
농림축산식품부	29	15	14	93.3	18	16	88.9	22	21	95.5	6.6
문화체육관광부	25	23	18	78.3	26	20	76.9	31	26	83.9	6.9
보건복지부	18	11	10	90.9	13	11	84.6	13	9	69.2	△15.4
산업통상부	45	67	60	89.6	89	80	89.9	122	111	91.0	1.1
성평등가족부	6	3	3	100.0	6	6	100.0	6	6	100.0	0.0
중소벤처기업부	33	28	22	78.6	33	32	97.0	29	26	89.7	△7.3
해양수산부	17	13	11	84.6	14	12	85.7	17	15	88.2	2.5
행정안전부	12	6	5	83.3	8	6	75.0	10	9	90.0	15.0
국가유산청	2	-	-	-	-	-	-	-	-	-	-
농촌진흥청	9	10	9	90.0	8	8	100.0	9	9	100.0	-
방위산업청	1	-	-	-	-	-	-	-	-	-	-
산림청	8	5	5	100.0	7	7	100.0	10	10	100.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1	1	100.0	1	1	100.0	1	1	100.0	-
합계	357	274	239	87.2	334	295	88.3	384	336	87.5	△0.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과 같이 일부 세부사업에서 2025년 성과지표가 미흡하거나 성과지표 달성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에 미달하였거나 달성이 저조한 일부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성과지표(단위)	2023년 달성률	2024년 달성률	2025년		
						목표	실제	달성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부지조성 및 인프라시설 완공도(%)	**89.6**	**99.0**	86	84.3	**98.0**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문대학 혁신지원(R&D)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102.7 (73.6)**	**101.5 (73.2)**	73.2	72.4	**98.9**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혼잡도로 건설 외	국가지원사업 도로개선 달성률(%)	**99.5**	**94.1**	46.2	44.7	**96.8**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BRT 구축	BRT 공정률(%)	**76.4**	**37.3**	44.6	16.7	**37.4**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입주기업 · 근로자 만족도 제고(점)	**99.6**	**89.8**	80	73.6	**92.0**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	기반시설 조성도(%)	**83.1**	**41.2**	85	63.3	**7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주택공급호수(호)	**121.9**	**138.0**	1,150	458	**39.8**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자율)	지역에너지 절감량(toe)	**103.1**	**122.7**	5,260	3,808	**72.4**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제주)	지역에너지 절감량(toe)	**-**	**37.8**	272	181	**66.7**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이행(%)	**70**	**70**	100	40	**40.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거점도시 외래관광객 방문 비율(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전주,목포,안동)(%)	**82.5**	**59.7**	3.6	2.25	**62.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제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참여 야간이용자수(만명)	**68.1**	**84.7**	72	53	**73.6**

(단위: %)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성과지표(단위)	2023년 달성률	2024년 달성률	2025년		
						목표	실제	달성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률(%)	100	99.8	97.2	97.1	99.9
산업통상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유치기반조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입주건수(건)	80	75	4	1	25.0
산업통상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투자촉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이행률(%)	90	93.2	100	70.6	70.6
			고용창출효과(명)	102.1	99.6	2,890	2,090	72.3
산업통상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투자촉진(세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이행률(%)	0	82.8	100	98.9	98.9
			고용이행률(%)	0	73.9	100	65	65.0
산업통상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요기반시설지원 (여수, 경산, 부산진)	주요기반시설 지원사업 공정률(%)	91.3	93.3	86.4	85.8	99.3
해양수산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어선청년임대	연안어선 지원 척 수 (어선 임대차 계약 건)	120	92	25	23	92.0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서해 5도 인구 유지율(%)	95.2	90.5	0.21	0.19	90.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국토교통부 소관의 **‘혼잡도로 건설’** 사업은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 혼잡 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순환도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24] 국가지원사업 도로개선 달성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각종 인·허가, 민원, 사업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 성과지표의 실적이 매년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음. 특히 해당 성과지표를 여러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어느 사업에서 성과 부진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지표의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추진 경과와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혼잡도로 건설(1939-300)

[국가지원사업 도로개선 달성률(%)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세부사업(내역사업) 현황]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혼잡도로 건설	광주북부순환도로, 상무지구~첨단산단, 월전동~무진로, 달서구 상화로, 정림중~버드내교, 엄궁대교, 대덕특구동측진입로, 농소~강동,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식만~사상, 금곡~대곡, 각화동~제2순환로, 황령3터널, 금호동~서광주로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
	초정~화명 광역도로	-
	다사~왜관 광역도로	-
	서대전IC~두계3가 광역도로	-
	조야~동명 광역도로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검단~대곡 광역도로	
교통시설 특별회계	인천서구거첨도~경기김포 약암리 광역도로	

주) 도로개선 달성률(%) = 도로신설·확장,시설개량에 따른 서비스 연장(km)÷전체 중장기계획대상 연장(km)
자료: 국토교통부

② 국토교통부 소관의 **'광역BRT 구축'** 사업은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 통행시간 단축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려는 것으로,[25] BRT 사업의 공정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성남 S-BRT, 공주-세종 BRT, 세종-천안 BRT, 제주 BRT 등 사업시행주체의 공정률 실적이 최근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현황 등 공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광역BRT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성과지표	측정방식	2025년 목표치 산출근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BRT 공정률	당해연도 사업의 예산배정액 대비 투자액으로 산정한 BRT 공정률(%)	최근5년간 사업시행주체 실집행률의 110% 반영	66.8	58.9	81.2	62	64.2	24	44.6	16.7

자료: 국토교통부

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BRT 구축(4500-383)

③ 국토교통부 소관의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사업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개발형·기반시설형 및 리모델링형 사업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26]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주택공급 호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성과지표의 경우 2024년까지는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2025년에는 목표치(1,150호)보다 실적(458호)이 크게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최근 사업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호)

성과지표	측정방식	2025년 목표치 산출근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주택공급 호수	기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주택호수	최근 3년(2021 ~ 2023) 기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주택공급호수의 평균 고려	650	852	852	1,039	899	1,241	1,150	458

자료: 국토교통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 및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사업은 지역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별특성에 맞게 중점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27] 지역 에너지 절감량(toe)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투입 규모(집행액)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2025년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 및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toe)

성과지표	측정방식	2025년 목표치 산출근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toe (자율)	예산액 × 에너지절감 효과지수 (toe/백만원)	5,260 = 12,799백만원×0.411toe/백만원	6,083	6,791	6,068	6,258	4,434	5,440	5,260	3,808
toe (제주)		272 = 664백만원×0.411toe/백만원	-	-	-	-	164	62	272	181

주 1) toe(에너지절감효과지수): 완료사업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국비지원 백만원당 에너지절감량 산출
2) 연도별 toe/백만원: 0.393('20년부터) → 0.411('23년부터) → 0.3326('26년부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6) 주택도시기금-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1520-992)

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5139-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계정)-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5139-301)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 및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사업의 집행액(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	6,176	5,348	7,878	12,799	6,864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399	399	397	637	92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으로,[28] 지역관광거점도시인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시에 대한 외래관광객 방문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중점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강릉, 전주, 목포, 안동시의 통합 성과(외래관광객 방문 비율)가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성과지표	측정방식	2025년 목표치 산출근거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관광거점도시 외래관광객 방문 비율(부산)	한국 방문 외래관광객 중 부산 방문 외래관광객 비율	최근 5개년 실적 평균치	12	17.6	12	16.2	15.6	16.4
관광거점도시 외래관광객 방문 비율(강릉,전주,목포,안동)	한국 방문 외래관광객 중 4개 거점도시 방문 외래관광객 비율		3.6	2.97	3.6	2.15	3.6	2.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⑥ 산업통상부 소관의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내역사업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촉진하려는 것으로,[29] 투자이행률(%), 고용창출효과(명), 고용이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투자이행률은 기업의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자 실적을, 고용창출효과는 투자에 따른 채용계획을, 고용이행률은 채용계획 대비 실제 채용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지표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4262-310)

2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투자촉진(3363-306), 지역투자촉진(세종)(3363-307)

따라서 일부 지표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난 만큼, 기업의 투자 실적과 채용계획 및 실제 채용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명, %)

성과지표	측정방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투자이행률 (%)	투자정산액/ 투자계획액	100	91	100	90	100	93.2	100	70.6
고용창출효과 (명)	기업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수	2,960	3,511	3,087	3,153	2,820	2,808	2,890	2,090
고용이행률 (%)	고용창출인원/ 고용계획인원	100	112	100	106.3	100	121.4	100	121.2

자료: 산업통상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세종)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명, %)

성과지표	측정방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투자이행률 (%)	투자정산액/ 투자계획액	100	99.7	100	0	100	82.8	100	98.9
고용창출효과 (명)	기업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수	45	0	48	110	45	190	56	100
고용이행률 (%)	고용창출인원/ 고용계획인원	100	91.9	100	0	100	73.9	100	65

자료: 산업통상부

⑦ 행정안전부 소관의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은 서해 5도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노후주택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30] 서해 5도 인구 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 사업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에도 인구 유지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사업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1236-300)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성과지표	측정방식	2025년 목표치 산출근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서해5도 인구 유지율	(서해5도 인구수/전국 郡 단위 지자체 인구수) × 100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있는 서해5도의 인구가 유지되는 비율을 목표치로 산정	0.21	0.21	0.21	0.20	0.21	0.19	0.21	0.19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과를 비교하거나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상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각 부처의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사업은 개별 사업을 통해 특정 수혜자나 산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고용 확대와 인구 유입 등 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이에 정책의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공통 성과지표”와 함께,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개별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보다 총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도별 역점과제와 공간발전구상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통(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일자리 수, 재정자주도) 또는 자율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 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각 부처는 지방공동화 대응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면서 지역 간 성과를 비교할 수 있으면서 대표성 있는 상위의 공통지표와 지방의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생활여건 및 발전 수준을 반영한 개별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성과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른 시·도별 성과지표 설정 현황]

시도	공통지표	자율지표
서울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일자리 수, 재정자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신규주택공급 물량,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
부산		1인당 지역총소득(GRNI), 지방세 징수율, 청년고용률, 창업기업 수, 소멸위험지역 가구 수
대구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 청년고용률, 창업률,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인천		온라인 열린시장실 참여자 수, 공보육 이용률, 청년고용률,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연안여객선 이용자 수
광주		글로컬대학육성, 창업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미래차부품업체전환, AI과제수행 기업,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
대전		창업기업 수, 외국인직접투자(FDI), 주택보급률, 1인당 공원면적(조성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울산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역대학 취업률, 전년대비 사업체 증감률,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전기자동차 누적보급대수
세종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건수, 전년대비 사업체 수 증가율, 관광객 수,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인원, 공공보육 이용률
경기		참여자 만족도,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조성,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탄소중립 펀드조성, 공공보육 이용률
강원		특별자치도 특례 수, 글로컬 대학 수, 사업체 증감률(최근 3년 평균), 관광객 수, 생활인구 수
충북		투자유치실적, 고용률(15~64세), 관광객 수, 농가소득액, 오송역 연간 이용객 수
충남		도민참여예산 반영률, 청년고용률, 기업유치건 수(연간), 여행지별 1회 평균 지출액, 최저주거 미달 가구 비율
전북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 청년농부 육성, 문화도시 지정, 광역교통시설도입 시·군, 온실가스 배출량
전남		재정자립도, 삶의 질 만족도(100점 만점), 제조업체 수, 청년고용률, 응급의료시설 취약인구 비율
경북		중앙-지방 간 세입 배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사업체 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지역 안전등급
경남		재정력 지수, 대학/전문대학 취업률, 제조업 생산지수, 국내 관광객 수,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제주		재정 규모, 지역대학 지역내 취업률, 수소생산규모, 관광조수입, 생애주기통합돌봄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p.37~70) 자료를 재작성

셋째,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수, GRDP 등 지역 성장지표의 목표치가 부적정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실적치가 정체되어 있으므로, 목표치의 설정 및 사업 효과 제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공통 성과지표인 "1인당 GRDP[31]" 와 "일자리 수" 를 설정하고 2023년과 2027년의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모든 시·도는 2023년 대비 2027년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1인당 GRDP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계획 첫해인 2023년부터 목표치와 실적치 간 격차가 약 8~28%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 등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미 2023년에 2027년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이 부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시·도별 1인당 GRDP 성과의 목표 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	계획			실적		(C-A)	(C-A)/A
	2023년 (A)	2027년 (B)	증감 (B-A)	2023년 (C)	2024년		
서울	49.7	57.5	7.8	58.8	61.2	9.1	18.4
부산	31.5	36.3	4.7	35.4	37.1	3.9	12.5
대구	25.5	32.3	6.8	30.7	31.4	5.2	20.3
인천	33.6	38	4.4	39.1	41.2	5.5	16.4
광주	29.7('21년)	37	7.2	32.1('21년)	37.7	2.4	8.1
대전	31.6	42.5	10.9	36.2	38.2	4.6	14.5
울산	71.5	75.9	4.4	80.8	85.2	9.3	13.0
세종	38	40	2	43.2	44.6	5.2	13.8
경기	38.9	41.5	2.6	43.2	47.0	4.3	10.9
강원	33.7	40.6	6.9	40.7	42.6	7.0	20.9
충북	46	55	9	53.8	56.3	7.8	17.0
충남	57.6	59.9	2.3	64.3	67.8	6.7	11.6
전북	31.2	38.5	7.3	36.1	38.0	4.9	15.6
전남	49.6	59.9	10.3	55.9	59.2	6.3	12.7
경북	42.9	49.5	6.6	48.8	52.3	5.9	13.7
경남	34	38.9	4.9	42.6	46.6	8.6	25.4
제주	30	34.5	4.5	38.6	39.9	8.6	28.6

자료: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p.37~70) 및 국가데이터처 KOSIS 자료를 재작성

31) 지역내 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 생산액을 의미함.

다음으로 지역별 일자리수의 경우, 2023년 실적을 계획과 비교(C-A)하면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실적이 계획에 미달하였으며, 2023년과 2025년 실적을 비교(D-C)한 결과에서도 3개 시·도의 일자리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시·도별 일자리 수 성과의 목표 달성 현황]

(단위: 천명)

시도	계획			실적			C-A	D-C
	2023년 (A)	2027년 (B)	증감 (B-A)	2023년 (C)	2024년	2025년 (D)		
서울	5,178	5,220	42	5,174	5,228	5,198	△4	24
부산	1,704	1,727	23	1,691	1,688	1,698	△13	7
대구	1,278	1,280	2	1,247	1,215	1,214	△31	△33
인천	1,681	1,721	40	1,655	1,696	1,715	△26	60
광주	775	790	15	769	774	776	△6	7
대전	788	988	200	797	789	811	9	14
울산	577.2	624.3	47.1	572	572	575	△5	3
세종	211	230	19	208	210	211	△3	3
경기	7,731	8,500	769	7,653	7,732	7,788	△78	135
강원	867	898	31	841	844	855	△26	14
충북	948	978	30	939	951	976	△9	37
충남	1,274	1,334	60	1,248	1,264	1,297	△26	49
전북	1,000	1,100	100	983	988	979	△17	△4
전남	1,030	1,058	28	1,019	1,004	997	△11	△22
경북	1,466	1,541	75	1,462	1,462	1,479	△4	17
경남	1,779	1,827	48	1,760	1,758	1,799	△19	39
제주	402	435	33	401	400	403	△1	2

주) 일자리 수 실적은 연도별 취업자 수로 산정
자료: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p.37~70) 및 국가데이터처 KOSIS 자료를 재작성

따라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성장지표의 실적치가 부진하거나 계획과 실적 간 괴리가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방의 재정자주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체사업 역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지자체 재정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재정자주도” 지표의 경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는 2027년 재정자주도가 2023년보다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도의 재정자주도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는 모든 시·도의 재정자주도가 2023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2027년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세입 중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함.[32)33)]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것은 자체 재원 활용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 사업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른 시·도별 재정자주도 성과의 목표 달성 현황]

(단위: %, %p)

시도	계획			실적			C-A
	2023년(A)	2027년(B)	증감(B-A)	2024년	2025년	2026년(C)	
서울	77.2	77.2	-	75.4	74.7	75.2	△2.0
부산	58.5	60.6	2.1	56.9	55.5	55.1	△3.4
대구	64.7	65	0.3	62.8	60.0	58.4	△6.3
인천	65	66.2	1.2	61.1	60.3	58.7	△6.3
광주	65.1	67.1	2	60.7	58.3	57.2	△7.9
대전	64.6	71.1	6.5	60.4	59.8	60.9	△3.7
울산	68	68.7	0.7	67.3	66.2	64.6	△3.4
세종	63.5	65.5	2	65.8	62.3	59.9	△3.6
경기	69.1	72.5	3.4	63.2	63.2	62.1	△7.0
강원	72.8	74.8	2	70.1	70.6	68.7	△4.1
충북	68.6	68.8	0.2	63.7	64.6	63.7	△4.9
충남	68.3	70	1.7	65.4	63.7	64.9	△3.4
전북	67.1	75	7.9	63.7	61.9	61.6	△5.5
전남	67.7	69.9	2.2	66.2	64.8	65.9	△1.8
경북	70.7	78	7.3	66.2	65.6	64.9	△5.8
경남	67.1	69.5	2.4	65.7	65.9	61.2	△5.9
제주	68.5	70.5	2	67.0	64.4	62.2	△6.3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p.37~70. 자료를 재작성

32)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냄.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33)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메타정보

따라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도 지표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 역량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사업 예산 지원 기준 및 배분 검토

첫째, 일부 사업은 지역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지원대상 지역 전체에 동일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비 지원 확대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고 함)에서는 보조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사업별로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인 '기준보조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제4조제1항 본문 관련)의 각 호에서 121개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지정하였음.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별표 1 제122호).[34]

또한 보조금법에서는 필요시 기획예산처장관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증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0조제1항).[35]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에 관련 산식이 명시(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되어 있음.[36]

---

34)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예산처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35)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36)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보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3)>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각 부처는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정함에 있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121개 사업을 제외하면 예산에 의해 국고보조율을 차등하여 정할 수 있음. 다만 차등을 두는 방식에 있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다르게 정하거나(제4조제1항 본문)[37] 기준보조율이 동일하더라도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고려하여 10~20% 범위에서 기준보조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제5조제1항), 국고보조율을 기준보조율 대비 상향조정하는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5조제2항).[38]

이는 국고보조율을 단일하게 적용할 경우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우려한 것임. 따라서, 지역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측면에서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국고보조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부처별 차등보조율 적용 현황을 보면, 지방공동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들 중 다수는 국고보조율을 단일하게 설정하고 있음.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 또는 자본보조(330-03목)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한 189개 사업 중 86.2% 비중인 163개 사업에서 국고 보조율을 단일하게 적용하였고, 13.8% 비중인 26개 사업에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하였음.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가. 계산식: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규모)}×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가. 계산식: {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37)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38) 「보조금법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25년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에서 부처별 보조율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전체		단일보조율 적용		지역별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사업 수	보조금 교부액 합계	사업 수	보조금 교부액 합계	사업 수	보조금 교부액 합계
노동부	1	125,492	-	-	1	125,492
교육부	3	1,677,203	3	1,677,203	-	-
국유청	2	700	2	700	-	-
국토부	44	1,530,247	43	1,408,979	1	121,268
기후부	27	2,406,827	22	2,020,298	5	386,528
농식품부	25	1,006,344	21	853,106	4	153,238
농진청	6	71,871	6	71,871	-	-
문체부	22	290,919	21	281,919	1	9,000
복지부	11	5,049,468	4	415,169	7	4,634,298
산림청	9	153,412	9	153,412	-	-
산업부	13	415,162	11	133,461	2	281,700
성평등부	5	1,249,385	1	548	4	1,248,837
중기부	3	112,854	3	112,854	-	-
해수부	10	249,742	10	249,742	-	-
행안부	8	1,322,725	7	323,125	1	999,600
전체	189	15,662,351	163	7,702,387	26	7,959,96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한 26개 보조사업 중에서도 국고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기준은 사업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됨. 이 중 18개 사업이 서울과 非서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근거로 국고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하였음.

비교적 세분화된 기준을 채택한 사업들 사이에서도 재정자주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급), 재정자립도(문화예술 창제작 거점조성 사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여부(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으로 기준이 상이하였음.

[2025년 사업별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현황]

(단위: %)

부처명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현황
노동부	균특(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재정자주도에 따라 구간별 차등 - 50% 미만(90) / 50-70%(80) / 70% 이상(30)
국토부	균특(지원)	도시재생사업	서울(40)/광역시(50)/도(60)
기후부	균특(지원)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서울(20)/나머지(50)
기후부	균특(지원)	하수관로정비	광역(30)/기초(60)
기후부	균특(지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광역(40)/기초(70)
기후부	균특(자율)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	서울(30)/나머지(40)
기후부	기후대응기금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광역(40)/기초(50)
농식품부	균특(자율)	반려동물인프라 구축(서울)	광역(40)/기초(30)
농식품부	균특(자율)	임대형스마트팜	50-70
농식품부	균특(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50-70
농식품부	축산발전기금	가축분뇨처리지원	40-50
문체부	일반회계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조성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구간별 차등(30-60)
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수당 지급	(서울(50)/나머지 70)±10%p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고려
복지부	균특(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울(30)/나머지(70)
복지부	균특(자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서울(50)/나머지(70)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울(30)/나머지(50)
복지부	일반회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울(30)/나머지(50)
복지부	균특(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수도권(20-50)/비수도권(50-80)
복지부	균특(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광역시(50)/도·시군구(60)
산업부	균특(지원)	투자기반유치조성	30-80
산업부	균특(지원)	지역투자촉진	45-75
성평등부	양성평등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울(30)/지방(50)/평택(70)
성평등부	일반회계	아이돌봄 지원	서울(30,50)/나머지(50,70)
성평등부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서울(50)/나머지(80)
성평등부	균특(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50-100
행안부	균특(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회 추경〉**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일반지역(20-28.5) / 인구감소지역(50) **〈2회 추경〉**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28.5)/수도권(50) /비수도권(61.5)/인구감소지역(66.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고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기준이 사업마다 다른 것은 사업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하면 최소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수도권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방공동화 및 지역균형성장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사업비의 과반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등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함)에서는 수도권(제2조제5호)·특수상황지역(제2조제10호)·농산어촌(제2조제11호)·인구감소지역(제2조제12호) 등을 별도로 정의됨.[39]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전제로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가 다수 규정되었음.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제13조제1항), 비수도권 지역 소재 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제15조제1호·제2호), 비수도권 지역 대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제23조제1항),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대한 지원(제24조),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제25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제26조) 등이 규정되어 있음.[40]

---

3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균형성장에 필요

실제로 각 부처가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들의 최근 5년간 집행액 현황을 보면, 5개년 평균 기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행액 비율이 26.4%,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행액 비율이 73.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지원이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최근 5년간 지방공동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수도권-비수도권 집행액 비교]

(단위: 백만원, %)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집행액(A)	비율(A/C)	집행액(B)	비율(B/C)	집행액(C)	비율
2021	3,990,855	26.7	10,973,927	73.3	14,964,782	100.0
2022	4,459,446	27.5	11,769,701	72.5	16,229,147	100.0
2023	4,881,228	27.2	13,055,701	72.8	17,936,930	100.0
2024	4,873,538	26.3	13,672,872	73.7	18,546,410	100.0
2025	5,464,453	24.3	17,032,222	75.7	22,496,675	100.0
5개년 평균	**4,733,904**	**26.2**	**13,300,885**	**73.8**	**18,034,789**	**100.0**

주)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합산한 것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시·도간 집행액을 분류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일부 사업은 지방공동화 및 지역균형성장 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사업비의 과반을 수도권에 지원하고 있어, 다른 사업들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들에 집중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사업[41]은 각 지역에 공공도서관의 연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세종을 제외한 각 지역에 2025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로 239억 7,000만원이 교부되었음.

최근 5년간 수도권에 과반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25년 수도권 투자비율은 58.6%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지원대상 인력의 수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된 것이나, 전체 지역이 동일한 국고보조율(50%)을 적용하고 있어, 수도권-비수도권의 재정여건 차이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최근 5년간 수도권 투자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집행액 합계(A)	수도권 (B)	수도권 투자비율 (B/A)
2021	일반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8,575	10,485	56.4
2022	일반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8,548	10,827	58.4
2023	균특(자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율)	21,305	12,161	57.1
2024	균특(자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율)	23,437	13,145	56.1
2025	균특(자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율)	23,970	14,049	5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 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 사업[42]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사업장·불법소각장 및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점검단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로 156억 4,200만원이 교부되었음.

최근 5년간 수도권 투자비율 현황을 보면, 전체 교부액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과반인 52.0% 수준임. 이는 지역별 신청수요에 맞춰 보조금을 교부한 결과이나, 전체 지역에 동일한 국고보조율(50%)을 책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의 재정여건 차이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율)(2133-302)

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1633-301)

[최근 5년간 수도권 투자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집행액 합계(A)	수도권 (B)	수도권 투자비율 (B/A)
2021	균특(자율)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	13,171	5,134	39.0
2022	균특(자율)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	11,562	4,620	40.0
2023	균특(자율)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	14,278	6,982	48.9
2024	균특(자율)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	15,719	8,281	52.7
2025	균특(자율)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	15,642	8,268	52.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시된 2개 사업은 사업수요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결과 과반의 사업비가 수도권에 배분되었음.

그러나 지방공동화 및 지역균형성장을 목적으로 실시 중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과반의 사업비를 비수도권 지역들에 지원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국고보조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재정 외 자금

가. 개 요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1)]

해당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이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모든 국가 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를 국가재정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명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적용받는 수입의 범위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각종 국세수입을 비롯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국가가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 국유재산이나 물품의 매각 대금이나 임대수입, 민간차입금, 국공채 매각대, 각종 수수료·벌금·과태료·과징금 등 일체의 수입이 모두 포함되며, 지출의 범위에는 인건비와 국가기관 운영비를 비롯하여 보조금이나 출연금과 같은 이전재원, 국유재산 취득 및 물품 획득에 소요되는 경비, 각종 융자금이나 출자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지출 등 국가 작용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일체가 포함됨.[2)]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 외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3조[3)], 제95조[4)] 또는 개별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문의: 02-6788-5691, 02-6788-5689

1)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증보판)」(2014), p.166 참조

3)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운용하는 자금 중 일부는「국가재정법」제53조 및 개별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산 외로 운용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상당 부분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등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음.

2025년 기준 재정 외로 운용되는 주요 10개 자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비롯한 157조원의 자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개발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재정 외로 운용되는 주요 자금 개관]

(단위: 억원)

자금명	관련 규정	주요 재원	주요 용도	운용 주체	2025년 규모
건강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1,325,806
장기요양보험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219,630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학생인건비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21,00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258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세특례제한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사업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218
위탁선거경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위탁단체의 경비 납부액	위탁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각 선거관할위원회	388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4)「국가재정법」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단위: 억원)

자금명	관련 규정	주요 재원	주요 용도	운용 주체	2025년 규모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광고수익금	국제행사 개최 및 광고물 등의 정비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옥외광고센터 등	225
농어촌상생 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금	농어촌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82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녹색자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복권기금 등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기능 증진에 소요되는 경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793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 (해양경찰청-해양환경공단 간 위·수탁 협약)	해양경찰청 교부액	해양오염사고 방제비용	해양환경공단	50
합 계					1,569,157

주)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총수입액(당해연도 수입액+전년도 잔액)임. 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2026년 4월 말 기준 잔액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상기한 10개 재정 외 자금의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액(2021년 9,313억원 → 2025년 1조 2,140억원), 지출액(2021년 8,916억원 → 2025년 1조 2,056억원), 누적 잉여금(2021년 2,216억원 → 2025년 3,640억원) 모두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바, 국가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차원에서 해당 자금들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재정 외로 운영되는 주요 자금의 연도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건강보험 재정	수입액	804,921	887,773	949,113	990,870	1,028,585
	지출액	776,692	851,482	907,837	973,626	1,023,589
	누적 잉여금	202,410	238,701	279,977	297,221	302,217
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입액	115,414	136,605	150,721	161,296	169,733
	지출액	105,668	119,941	136,966	152,937	167,703
	누적 잉여금	13,563	28,062	41,699	49,897	52,289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액	9,487	10,232	11,226	11,435	13,585
	지출액	7,973	9,335	10,512	10,677	12,374
	누적 잉여금	4,998	5,895	6,610	7,442	8,633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수입액	48	68	66	49	79
	지출액	5	21	29	21	38
	누적 잉여금	67	113	151	179	220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수입액	74	73	80	88	93
	지출액	63	70	61	67	71
	누적 잉여금	82	85	104	125	147
위탁선거경비	수입액	12	37	382	11	388
	지출액	12	37	382	11	388
	누적 잉여금	0	0	0	0	0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입액	318	236	275	290	225
	지출액	318	236	275	290	225
	누적 잉여금	0	0	0	0	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수입액	455	354	305	347	491
	지출액	310	333	392	456	389
	누적 잉여금	466	487	400	291	393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녹색자금)	수입액	587	702	737	741	789
	지출액	593	704	740	747	790
	누적 잉여금	16	14	11	4	4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수입액	-	1	2	2	1
	지출액	-	-	-	-	-
	누적 잉여금	44	45	47	48	50
합 계	수입액	931,316	1,036,081	1,112,907	1,165,129	1,213,969
	지출액	891,634	982,159	1,057,194	1,138,832	1,205,567
	누적 잉여금	221,646	273,402	328,999	355,207	363,953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이하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정 외로 운용되는 주요 자금의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 외 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내 편입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나. 자금별 검토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 필요

(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개관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고,[1]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제도임.[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3]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4]을 근거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장

---

1)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급여 및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수월액의 7.19%(2026년 기준)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지출 구조]

구 분		주요 내용
수입	보험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 (보수월액 대비 건강보험료율: 2025년 7.09%, 2026년 7.19%)
	정부지원금	- 일반회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단,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
지출	보험급여비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분
	관리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운영비 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수입·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13.14%(2026년 기준)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일반회계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수입·지출 구조]

구 분		주요 내용
수입	보험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5년 12.95%, 2026년 13.14%)
	정부지원금	-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부담금(일반회계): 인정자수, 이용률, 1인당 급여비 등 기준 산정
지출	장기요양 급여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분
	관리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운영비 등

주 1)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부담금 포함
2) 의료급여부담금: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2025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고,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원 이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 규모가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2016~2025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수 입	557,195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87,773	949,113	990,870	1,028,585
- 보험료	473,065	500,099	536,415	587,428	624,849	692,270	765,538	815,180	839,520	872,776
(증가율)	(7.4)	(5.7)	(7.3)	(9.5)	(6.4)	(10.8)	(10.6)	(6.5)	(3.0)	(4.0)
- 정부지원금	70,974	67,839	70,802	77,803	92,283	95,720	104,992	109,702	121,658	124,913
(정부지원율)	(15.0)	(13.6)	(13.2)	(13.2)	(14.8)	(13.8)	(13.7)	(13.5)	(14.5)	(14.3)
- 기 타 수 입	13,156	12,052	13,942	15,412	17,053	16,931	17,243	24,231	29,692	30,896
총 지 출	526,339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851,482	907,837	973,626	1,023,589
- 보험급여비	510,541	555,374	605,896	690,429	709,524	766,021	831,662	887,961	937,685	1,016,650
(증가율)	(9.8)	(8.8)	(9.1)	(14.0)	(2.8)	(8.0)	(8.6)	(6.8)	(5.6)	(8.4)
- 선지급					8,767	△8,756	△2		14,844	△14,844
- 기타사업비 등	15,798	17,539	17,041	18,457	19,425	19,427	19,822	19,876	21,097	21,783
수지 - 당기	30,856	7,077	△1,778	△28,243	△3,531	28,229	36,291	41,276	17,244	4,996
수지 - 누적	200,656	207,733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79,977	297,221	302,217
(지급가능월수)	(4.7개월)	(4.5개월)	(4.1개월)	(3.1개월)	(2.9개월)	(3.2개월)	(3.4개월)	(3.8개월)	(3.8개월)	(3.5개월)
보험료율	6.12	6.12	6.24	6.46	6.67	6.86	6.99	7.09	7.09	7.09
(인상률)	(0.9)	(-)	(2.04)	(3.49)	(3.2)	(2.89)	(1.89)	(1.49)	(-)	(-)
수가인상률	1.99	2.37	2.28	2.37	2.29	1.99	2.09	1.98	1.98	1.96

주 1) 현금흐름 기준
2) 정부지원율: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율
3) 기타수입: 이자수입 등
4) 선지급: 2020년 코로나19 확산, 2024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 완화 목적의 선지급
5) 기타사업비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을 위한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 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2025년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 및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 규모가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16~2025년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수 입	46,635	50,846	60,657	74,977	94,001	115,414	136,605	150,721	161,296	169,733
- 보험료	30,506	32,328	38,474	48,506	61,605	77,314	91,688	102,266	106,696	111,485
(증가율)	7.1	6.0	19.0	26.1	27.0	25.5	18.6	11.5	4.3	4.5
- 국고지원금	5,525	5,822	7,107	8,912	12,414	15,186	18,014	19,916	22,268	22,679
(국고지원율)	18.1	18.0	18.5	18.4	20.2	19.6	19.6	19.5	20.9	20.3
- 의료급여부담금	9,773	12,069	14,385	16,986	19,552	22,473	26,179	27,215	30,321	33,018
- 기 타 수 입	831	627	691	573	430	441	724	1,324	2,011	2,551
총 지 출	47,067	54,139	66,758	81,579	93,436	105,668	119,941	136,966	152,937	167,703
- 보험급여비	44,120	51,127	63,521	78,127	89,706	101,840	115,971	132,778	148,953	163,377
(증가율)	11.0	15.9	24.2	23.0	14.8	13.5	13.9	14.5	12.2	9.7
- 기타지출	2,947	3,012	3,237	3,452	3,730	3,828	3,970	4,188	3,984	4,326
수지 - 당기	△432	△3,293	△6,101	△6,602	565	9,746	16,664	13,755	8,359	2,030
수지 - 누적	21,773	17,684	10,996	4,136	4,475	13,563	28,062	41,699	49,897	52,289
(지급가능월수)	(7.0개월)	(5.0개월)	(2.5개월)	(0.8개월)	(0.7개월)	(1.9개월)	(3.5개월)	(4.6개월)	(4.9개월)	(4.7개월)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6.55	7.38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12.95
(인상률)	(-)	(-)	12.7	15.3	20.45	12.39	6.51	4.4	1.09	(-)
평균 수가인상률	0.97	4.08	11.34	5.36	2.74	1.37	4.32	4.7	2.92	3.93

주 1) 현금흐름 기준
2) 총재정(장기요양보험 재정+의료급여 재정) 기준
3) 국고지원율: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
4) 기타수입: 이자수입 등
5) 기타지출: 관리운영비 등
6) 당기수지: 총재정(장기요양보험 재정+의료급여 재정) 기준
7) 누적수지: 의료급여 재정을 제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재정부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2025년 9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기재정전망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 규

모가 매년 증가하여 2033년에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임. 이는 인구 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정책 추진이 확대될 경우 준비금 소진은 가속화될 수 있음.[5)]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기재정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수 입	110.6	118.0	124.5	131.2	137.9	144.7	148.8	152.6	156.4
지 출	112.1	119.2	126.3	134.0	141.8	150.0	158.4	167.2	176.2
재정수지	△1.5	△1.2	△1.7	△2.8	△3.9	△5.3	△9.6	△14.6	△19.8
준비금	28.3	27.1	25.3	22.6	18.6	13.3	3.7	△10.8	△30.6

주 1) 기획재정부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2025년 9월)에 따른 전망치임
2) 수입·지출의 주요 변수 가정
- 보험료율: 2025년 7.09% 이후 매년 2.01% 증가 및 2032년부터 8%(법정 상한) 유지
- 정부지원율: 보험료 수입의 14.4%
- 수가인상률: 매년 1.98% 증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재정부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2025년 9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도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다가 2030년에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중기재정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수입	18.5	19.8	21.0	22.4	23.5	24.8	25.8	26.8	27.8
지출	18.8	20.6	22.5	24.7	26.1	28.1	30.3	32.8	35.4
재정수지	△0.3	△0.8	△1.4	△2.3	△2.6	△3.3	△4.6	△6.0	△7.6
준비금	5.6	4.9	3.4	1.1	△1.4	△4.8	△9.3	△15.4	△23.0

주 1) 기획재정부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2025년 9월)에 따른 전망치임
2) 수입·지출의 주요 변수 가정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 정부지원율: 보험료 수입의 20.0%
- 수가인상률: 매년 3.88% 증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386~387p

(나) 검토의견

①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 재원이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적 통제 및 책임성 확보에 미흡하므로, 정부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6]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7]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

---

6)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민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법률상 조세는 아니지만,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의무적이고 보험료 미납 시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한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음.

우리나라 5가지 사회보험제도는 역선택 방지와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 강제성을 띠는 준조세에 기반하여 재정을 운용하는 특징이 있는데, 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각각 별도로 설치된 기금을 통해 그 수입과 지출을 국회가 심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자체 회계로 운용되고 있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8)]

료를 지급할 수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8) 정부지원금 등 일부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법률로 정해져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따라 건강보험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장기요양보험은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국회 심의 현황]

구 분	도입 연도	근거 법률	재정 구조	국회 심의
국민연금	1988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	기금 심의
고용보험	1995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기금	기금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19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기금 심의
건강보험	1977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자체 회계	없음
장기요양보험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자체 회계	없음

건강보험 재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과 지출의 의사결정 주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9]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9)「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의 의사결정 구조]

구 분		의사결정 주체	근거 규정
수입	보험료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정부지원금	-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국회: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연동)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지출	정책 수립	- 보건복지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개별 의사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급여 기준 등 심의·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결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승인 및 결산 점검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제39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과 유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있어[10]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과 지출의 의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사결정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의사결정 구조]

구 분		의사결정 주체	근거 규정
수입	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정부지원금	-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 예산안 심사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연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8조
지출	정책 수립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개별 의사결정	- 장기요양위원회: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결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승인 및 결산 점검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제39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연동되어 있는데 보험료율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정부지원금 역시 보건복지부의 재정 운용에 따라 그 규모가 영향을 받는 구조임.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는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재정 운용의 책임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크고, 정부지원금 규모의 증가는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재정법」[11]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

1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

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지원금 등 일부 예산만 반영되어 우리나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규모 및 총지출 규모가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재정으로 편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시범사업 등 각종 정부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021~2025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매

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년 약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었고, 전체 지급액 중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급액 비율이 약 70%에 달함.

[2021~2025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개, %)

연 도	총지급액(A)	종별 구분	기관수	지급액(B)	비율(B/A)	기관당 평균지급액
2021년	8,036	상급종합병원	42	5,767	71.8	137
		종합병원	297	2,269	28.2	8
2022년	8,245	상급종합병원	45	6,204	75.2	138
		종합병원	301	2,041	24.8	7
2023년	8,852	상급종합병원	45	6,456	72.9	143
		종합병원	314	2,397	27.1	8
2024년	7,948	상급종합병원	45	5,425	68.3	121
		종합병원	318	2,524	31.7	8
2025년	7,990	상급종합병원	47	5,745	71.9	122
		종합병원	318	2,245	28.1	7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당초 선택진료제도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급 편중 현상은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첩약[12] 건강보험 적용 등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13]

2021~2025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1~2025년 동안 총 11조 2,593억 3,9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건강생활실천지원

12) 첩약: 한의사가 한약재를 배합해 달인 액상 형태의 탕약

13)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금제 시범사업[14] 등 일부 시범사업은 복지정책에 가깝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15]를 거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나 적정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2021~2025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시범사업명	집행액
2021~2025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1,538,200
2021~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5,263,300
2021~2025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53,200
2021~2025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시범사업)	7,400
2021~2025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8,200
2021~2025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1,773
2021~2025년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2차 시범사업	43,540
2021~2025년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44,500
2021~2025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69,500
2021~2025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40,620
2021~2025년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1,501
2021~2025년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2,450
2021~2025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4,620
2021~2025년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111,800
2021~2025년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12,900
2021~2025년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20,800
2021~2025년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5,660
2021~2025년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28,600

14)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걷기 같은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개선 정도를 평가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립한 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음.

1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단위: 백만원)

연 도	시범사업명	집행액
2021~2025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2,789
2021~2025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248,600
2021~2025년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41,300
2021~2025년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1,306
2021~2025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1,097
2021~2025년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1,764
2021~2025년	암환자(장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1,052
2021~2025년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58
2021~2025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6,128
2021~2025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173
2021~2025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92
2021~2025년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902
2021~2025년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370
2021~2025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4,902
2022~2025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87,100
2022~2025년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1,710
2023~2025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14,900
2023~2025년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4,280
2023~2025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153,900
2023~2025년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3
2024~2025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498
2024~2025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9,760
2024~2025년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22,100
2024~2025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9,430
2024~2025년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1,050
2024~2025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335,695
2024~2025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ASP) 시범사업	72,900
2025년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30,600
2025년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9,500

(단위: 백만원)

연 도	시범사업명	집행액
2025년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181,716
2025년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2,800
2025년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기능보상 시범사업	4,000
2025년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3,100
합 계	-	11,259,339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16]이 일반병상 감축을 통해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줄이고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4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9조 9,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에 집행할 예정임.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대비 5%p 높은 요양급여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게 되는데,[17]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요양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율은 17.4%임.

16)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 요양급여 종별 가산율: 병원 5%, 종합병원 10%, 상급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지급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수	연 도	급여비		
			상급종합병원(A)	전체 요양기관(B)	상급종합병원 비율(A/B)
제1기	44	2012년	5,836,190	35,714,596	16.3
	43	2013년	6,416,833	38,124,824	16.8
		2014년	6,734,452	40,792,084	16.5
제2기	43	2015년	7,541,155	43,972,242	17.1
		2016년	8,642,229	48,731,225	17.7
		2017년	9,647,175	52,975,309	18.2
제3기	42	2018년	10,731,328	58,748,995	18.3
		2019년	11,937,249	64,888,129	18.4
		2020년	12,329,608	65,291,607	18.9
제4기	45	2021년	14,180,884	71,556,874	19.8
		2022년	15,001,675	79,509,908	18.9
		2023년	15,850,344	83,092,485	19.1
제5기	47	2024년	15,196,235	87,577,443	17.4

주 1)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른 것으로 2025년 통계연보는 2026년 4분기경 산출 예정
2)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지정됨
3) 2013년 1월 31일 춘천성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자진 반납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18]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편중 현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상급종합병원의 높은 요양급여 가산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은 대부분 정부 정책

18) 병원신문, “내년 국내 상급종합병원 50곳 이상 지정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2026. 4. 8.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2026. 4. 9.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66)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전 국민 단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금운용의 평가 등 「국가재정법」 상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19]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단기적 변동성이 큰 의료비 지출의 특성상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현행 방식대로 신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일반적인 국가 재정의 틀 속에서 논의될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20]

그러나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을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당사자의 자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기금의 경우 예산과 달리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 국회의 심의 없이 자체변경[21]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 단기적 변동성에 적시 대응도 가능함.

---

19)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0)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타 사회보험(현금급여, 정부-가입자)과 달리 현물급여·제3자 계약방식(보험자-가입자-공급자)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의료행위 및 신약 등의 급여 여부·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1)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제도의 특성상 다른 국가정책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낮고, 기금화할 경우 여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자산운용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기금운용평가[22]를 통해 보다 엄밀한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 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 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및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과도한 적립액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필요

(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및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25]에 근거하여 일

---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과 특례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과 특례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학생인건비통합관리"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9.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86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병행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할 수 있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기관계정**
가.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

정한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또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또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들의 학생인건비 또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통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개발과제별 잔액을 해당 계정에 적립하여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지급체계 마련을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제도임.

나.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 예정인 소속 전임교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비영리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거나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에 실시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6조에 따른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

2. 별표 5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개발기관 내 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이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구축되어 있고,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4.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5.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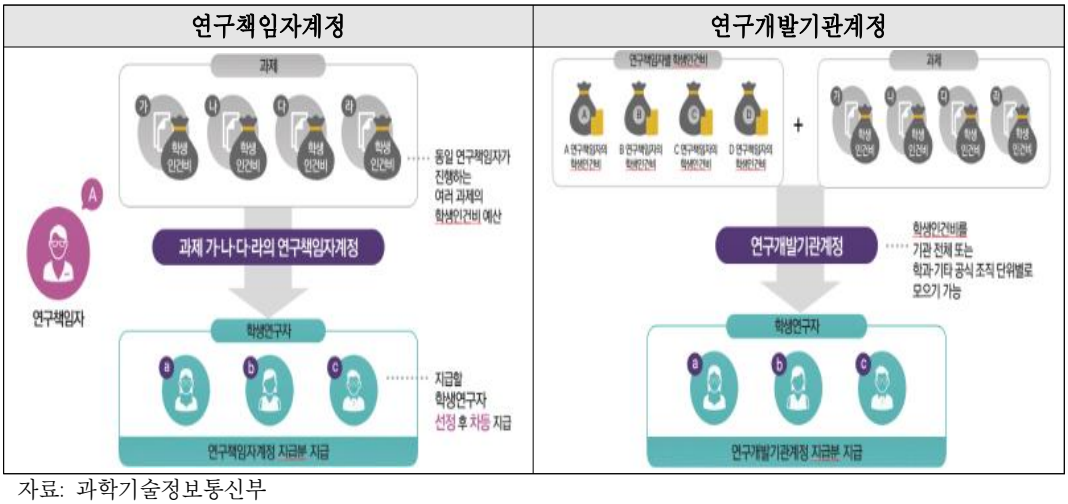
제101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10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비(이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라 한다)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비

2.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계정(이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 연구개발기관 내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하 "공동활용시설"이라 한다) 단위로 관리하는 **공동활용시설계정**,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적립단위별 계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도는 연구개발기관이나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통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각 계정별 적립 한도 범위 내에서 적립할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 금액을 적립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제도임.[26)]

---

26)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도 각 계정에 적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및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42억 5,370만원, 6,103만원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및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2.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 · 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3.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적립단위별 계정]

적립단위별 계정	적립 용도	적립 한도
연구개발기관계정	기관 전체 차원에서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 관리	10억원
공동활용시설계정	분석센터, 공동활용센터 등 시설 단위로 관리	7억원
연구책임자계정	특정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 관리	3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지급액 대비 초과 적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생인건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의 전환 등 과도한 적립액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제 중단 등 잔액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통합관리계정의 운영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당해연도 지급액보다 더 많은 수입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2021년 4,998억원에서 2025년 8,633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 대비 지급비율은 2021년 61.5%에서 2025년 58.9%로 감소하였음.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내역을 해당 과제의 사용실적보고서등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6조(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특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관리할 수 있다.

제109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자 사용)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제105조 각 호의 용도로 지출·관리하여야 한다.

[2021~2025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관 수		61	63	65	65	70
수입	전년도 잔액(A)	3,484	4,998	5,895	6,685	7,422
	당해연도 수입액(B)	9,487	10,232	11,226	11,435	13,585
	수입총액(C=A+B)	12,971	15,230	17,121	18,120	21,007
지출	학생인건비 지급액(D)	7,973	9,335	10,512	10,677	12,374
당해연도 지급액 초과 적립액(B-D)		1,514	897	714	758	1,211
초과 적립비율((B-D)/D)		19.0	9.6	6.8	7.1	9.8
당해연도 잔액(C-D)		**4,998**	**5,895**	**6,610**	**7,442**	**8,633**
지급비율(D/C)		**61.5**	**61.3**	**61.4**	**58.9**	**58.9**

주 1) 운영현황 점검을 위해 제출(2026년 4월 10일)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의 경우 추가 점검을 통해 변동될 수 있음

2) 2024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전용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전년도 잔액이 수정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2025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도 지급액 대비 초과 수입이 매년 발생하면서 연구시설・장비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2021년 67억원에서 2025년 220억원으로 세 배 증가하였고 수입 대비 지급비율은 2025년 14.7%로 저조한 수준임.[27)]

[2021~2025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관 수		53	65	71	73	77
수입	전년도 잔액(A)	24	67	114	151	179
	당해연도 수입액(B)	48	68	66	49	79
	수입총액(C=A+B)	72	135	180	200	258
지출	연구시설・장비비 지급액(D)	5	21	29	21	38
당해연도 지급액 초과 적립액(B-D)		43	46	37	28	41
초과 적립비율((B-D)/D)		860.0	219.0	127.6	133.3	107.9
당해연도 잔액(C-D)		**67**	**114**	**151**	**179**	**220**
지급비율(D/C)		**6.9**	**15.6**	**16.1**	**10.5**	**14.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이 2019년에 도입된 이후 연구과제 중에 신규 도입한 장비는 초기 몇 년간 고장 발생 확률이 낮으며,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연구시설・장비비가 집행되는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함.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경우 적립단위별 계정 대부분의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수요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3·2024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적립단위별 계정 집행률 현황]

(단위: 개, %)

구 분		집행률					합 계
		0%	0% 초과 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60% 이상 100% 미만	100%	
2023년	적립단위별 계정 수	269	37	27	28	5	366
	비 율	**73.5**	**10.1**	7.4	7.6	1.4	100.0
2024년	적립단위별 계정 수	296	44	28	42	8	418
	비 율	**70.8**	**10.5**	6.7	10.1	1.9	100.0

주 1) 적립단위별 계정: 연구개발기관계정, 공동활용시설계정, 연구책임자계정
2) 2025년도 자료는 2026년 8~9월 집계될 예정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및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지급액 대비 초과 적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28]과 달리 적립한도가 없어 학생인건비가 실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적립되고 있음.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수입 대비 지급비율이 50%[29]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일 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30]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
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
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29) 수입 대비 지급비율 기준은 2023년 이전까지 60%이었으나 연구자의 기준 완화 요청으로 2023년 50%로 기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전년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적립액의 20%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적립금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5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지급비율은 58.9%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기준(50%)에는 부합하나 적립금 규모가 8,633억원에 달하고 있고, 연구책임자계정 초과 적립액의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의 이체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전체 적립금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아 학생인건비의 과다 적립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또한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3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연구개발기

준이 완화되었음.

3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91조제4항·제7항에 따라 제7조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제9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동일한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제외한다)**과**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및 당해 연도 발생 이자수익의 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한다.)**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제9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의 합) × 0.2

3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정)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33]과 달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34] 연구개발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재정 누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지급액 대비 초과 적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생인건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의 전환 등 과도한 적립액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제 중단 등 잔액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통합관리계정의 운영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8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③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대비 남은 연구개발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 계정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3.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3) 국토교통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필요

(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개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은 택시운수종사자[35]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3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37]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3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6)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은 아님.

3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38]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4항에 따른 경감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1~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25년 총 경감액은 2,230억 4,000만원이고 이 중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4항에 따른 경감액은 88억 8,200만원임.

[2021~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제2항에 따른 경감액(90%)	167,312	163,888	175,970	200,479	203,006
제3항에 따른 경감액(5%)	9,220	8,979	9,568	10,869	11,152
제4항에 따른 경감액(4%)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	**7,341**	**7,146**	**7,635**	**8,684**	**8,882**
합 계(99%)	178,553	174,889	187,561	213,372	223,040

주) 제2항·제3항 및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각 항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4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일몰조항으로 신설(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후 일몰기한이 세 차례 연장[39]되었고 현행법에서는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 조세지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의 적절성이 낮고,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재정지출 방식이 더 안정적으로 정책대상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40]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21~2025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기금운용 수익금 이외에는 수입이 없는 구조로[41] 2025년 기금 수입액(결산상 잉여금 제외)은 92억 5,400만원임.

39) 1차 연장: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차 연장: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차 연장: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40)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18년 7월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임.

4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은 택시중고차(액화석유가스차량) 매각을 위한 대행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였으나, 법인택시 주행거리는 평균 50~70만km 수준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2020년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택시중고차 매각 대행사업이 부진하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택시수요 감소 등 경영난 심화로 택시사업자의 대행사업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2020년에 택시중고차 매각 대행사업을 중단함.
또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은 택시표시등 광고(GPS와 연동된 위치 기반 영상 광고)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행사를 선정하지 못해 해당 사업에 따른 수입은 없는 실정임.

[2021~2025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출연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7,341	7,146	7,635	8,684	8,882
기금운용 수익금	75	141	358	96	372
합 계	7,416	7,287	7,993	8,780	9,254

주 1) 결산상 잉여금은 제외
2) 기금운용 수익금: 정기・보통예금 이자수익
자료: 국토교통부

2021~2025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60억원 내외의 복지사업비와 5억~7억원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지출되었는데, 복지사업 내용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정밀건강검진),[4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자녀장학금 지원),[43] 택시운수종사자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44] 택시운수종사자 생계 지원[45] 등임.

[2021~2025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복지사업비	5,834	6,451	5,518	6,082	6,475
인건비	346	379	413	411	473
관리운영비	164	164	166	172	214
합 계	6,344	6,994	6,097	6,665	7,162

자료: 국토교통부

2019~2025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결산상 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지출액 대비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적립된 결산상 잉여금이 2019년 61억원에서 2025년 14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42) MRI, CT, 초음파, 암검사 등 종합검진 실비 지원(2년마다 1회, 최대 50만원)

43) 대학생 자녀학비 지원(1인당 1회 등록금만 가능, 200만원)

44) 암・백혈병・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판정자 치료비 지원(200만원)

45) 운행 중 또는 중증질환으로 사망한 운전자 유가족 지원(300만원, 중증질환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100만원)

[2019~2025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입액	119	84	74	73	80	88	93
지출액	58	74	63	70	61	67	71
누적 잉여금	61	71	82	85	104	125	147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기획재정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46]에 따른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심층평가 결과보고서[47]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목적세화(化)하여 직접보조금과 같이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지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정책수단의 적절성이 낮고, 이러한 방식의 지원 이후에도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목표의 적절성도 낮으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사업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성,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의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운영의 적절성도 낮다고 평가하였음.

조세지출사업은 공평한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그 본질이 숨은 보조금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최소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조세지출사업의 특성과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재원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사업은 정책대상(택시운수종사자)이 명확하여 정책대상에 대한 직접 재정지출이 가능하고, 일반택시의 매출규모와 부가가치세 결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조세지출 방식에 비하여 재정지출 방식이 더 안정적으로 정책대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일몰기한(2026년 12월 31일) 도래 이후에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영하여

46)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7)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2023. 9.)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48)]

48)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출 방식(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보다 현행 조세지출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토교통부는 만약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특정 직업 종사자(일반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감안한 각종 부가 조건 마련으로 수혜받는 운수종사자 수가 감소할 경우 노조의 반발 및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함.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편입 필요

(가) 위탁선거경비 개관

위탁선거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49]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50]에 따르면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개정,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이에 위탁선거경비 중 국가 부담분에 대해서는 위탁선거관리 예산사업에 편성되어 국회의 결산 과정을 거치지만, 위탁단체 부담분의 경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경비를 직접 수령 후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

49)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정의)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구 분	내 용
경비 산출	· 중앙위원회가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관할위원회 통지 · 관할위원회는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
납부 (위탁단체→ 선관위)	· 위탁선거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집행 (선관위)	·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업무별·시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 중앙, 시·도위원회는 통합적 사무수행을 통한 능률적 예산집행을 위해 관할위원회로부터 경비를 납부받아 일괄집행 가능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집행지침 및 회계실무요령에 의거하여 집행 · 집행잔액으로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등 목적 외 집행 불가
반환 (선관위→ 위탁단체)	· 중앙, 시·도위원회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 ·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통지
기타	·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 제출(관할위원회 → 상급위원회 → 중앙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위탁선거경비 중 위탁단체 부담분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5년 전국동시이사장선거 실시 등으로 인해 연도별 큰 편차를 보였음.

[2021~2025년 위탁선거경비 중 위탁단체 부담분의 집행 및 반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별 집행 및 반환 현황			
		납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반환액(=A-B)
2021	위탁선거관리	1,237	908	73.4	329
2022	위탁선거관리	3,703	2,387	64.5	1,316
2023	동시조합장선거관리	37,575	33,572	89.3	4,003
	기타 위탁선거관리	588	430	73.1	158
	합 계	38,163	34,002	89.1	4,161
2024	위탁선거관리	1,051	700	66.6	351
2025	동시이사장선거관리	36,812	21,160	57.5	15,652
	기타 위탁선거관리	2,023	1,151	56.9	872
	합 계	38,835	22,311	57.5	16,52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검토의견

위탁선거경비는 국가사무인 위탁선거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예산 체계 내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경비 중 대부분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편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53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34조 등과 같이 법령상 예외규정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51]

특히 위탁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국가사무이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탁단체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경비를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위탁선거에서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또한 국가예산 체계 내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위탁선거경비 중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예산은 2025년 기준 1억 3,600만원으로 전체 위탁선거경비(국가 부담분 및 위탁단체 부담분의 합인 389억 7,100만원)의 0.3%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위탁선거경비가 국회의 결산 심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이에 국회는 과거 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

5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경비 대상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총계주의 관련 내용]

구 분	시정요구사항(유형)
2023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2021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19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2018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2016회계연도 결산	・‘특별정려금’ 용어를 순화하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집행결과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자료: 각 회계연도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 선거를 제외한 선거의 위탁 여부가 위탁단체장의 사망・궐위 등의 사유로 결정되어 예산안 편성・심의 단계에서 선거의 규모・시기 및 그에 따른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위탁선거경비의 납부・집행 및 반환 절차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과 같이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연도별 위탁선거경비의 상당 부분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국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등 사전에 실시 여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위탁선거경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총계주의 위반 문제 해소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세입·세출예산 편입 필요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개관

옥외광고는 실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간판・현수막・벽보 및 이와 유사한 광고물[52]을 의미하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국가등이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를 이용하여 수행한 광고사업의 수익금을 의미함.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서울올림픽(1988년), 부산아시안게임(2002년), 한・일월드컵(2002년)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광고물 등의 정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당초 개별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수익금을 각자 조성・관리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률이 2007년 「옥외광고물법」으로 일원화되고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사업 수행자로 지정됨으로써 현재의 사업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의 대가인 수익금을 수령하며, 조성된 수익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1조[53]에 따라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50%,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각각 26%, 24%만큼 배분됨.

---

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매년 2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 및 사용되고 있으며, 2025년 수익금은 224억 6,800만원으로 전년(289억 9,400만원) 대비 22.5% 감소하였음.

[2021~2025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조성 및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조성액	사용 현황			
		계	국제행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옥외광고센터
2021	31,788	31,788	15,894	8,265	7,629
2022	23,573	23,573	13,081	5,456	5,036
2023	27,511	27,511	15,556	6,217	5,738
2024	28,994	28,994	14,497	7,539	6,959
2025	22,468	22,468	11,234	5,842	5,392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익금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53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34조 등과 같이 법령상 예외규정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54)]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조성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수익금을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억원 이상의 수익금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배분·집행되었음.

특히 2023년 이전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 상황을 이유로 매년 수익금이 유동적으로

54)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배분됨으로써 시행령 상의 수익금 배분 기준과 기관별 수익금 실배분비율이 상이하였음. 예컨대 2023년에는 국제행사 규모 축소로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익금이 추가로 배분된 바 있음.

[2019~2025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수익금 조성액	수익금 배분 현황						
		국제행사					지자체	센터
		소계	집행금	잔여금 배분	(지자체)	(센터)		
2019	34,369	17,185	1,180	16,005	15,033	972	8,928	8,256
2020	31,185	15,592	960	14,632	12,219	2,413	8,107	7,486
2021	31,788	15,894	750	15,144	15,144	-	8,265	7,629
2022	23,573	13,081	3,738	9,343	7,336	2,007	5,456	5,036
2023	27,511	15,556	11,144	4,412	4,350	62	6,217	5,738
2024	28,994	14,497	2,500	11,997	11,487	510	7,539	6,959
2025	22,468	11,234	11,080	154	-	154	5,842	5,392

자료: 행정안전부

[2019~2025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실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수익금 조성액	실배분 현황					
		국제행사 실집행		지방자치단체		한국옥외광고센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	34,369	1,180	3.4	23,961	69.7	9,228	26.8
2020	31,185	960	3.1	20,326	65.2	9,899	31.7
2021	31,788	750	2.3	23,409	73.6	7,629	24.0
2022	23,573	3,738	15.9	12,792	54.3	7,043	29.9
2023	27,511	11,144	40.5	10,567	38.4	5,800	21.1
2024	28,994	2,500	8.6	19,026	65.6	7,469	25.8
2025	22,468	11,080	49.3	5,842	26.0	5,546	24.7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국회는 과거 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기금화 등을 비롯한 국가재정 편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익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음.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대상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총계주의 관련 내용]

구 분	시정요구사항(유형)
2023회계연도 결산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수익금의 기금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수익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2022회계연도 결산	·행정안전부는 중장기적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는 방안 또는 기금화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익금 편성·집행에 대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거치도록 보완할 것(제도개선)
2017회계연도 결산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국회보고 등을 통하여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국가재정 내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자료: 각 회계연도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2025년 2월 관련 기금 신설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나, 기금 신설에 필요한 「국가재정법」 및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2026년 6월 말까지도 완료되지 않았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기금화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됨으로써 국가재정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 지원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세입·세출예산 편입 필요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농어촌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음.[55)]

---

5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조성 목표	매년 1,000억원, 총 1조원(법 제18조의2제4항 및 부칙 제2조)
운용 주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상생기금운영위원회 및 상생기금 운영본부 (법 제18조의2제2항)
출연 방식	기금 출연자가 기금의 용도 또는 사업내용을 지정하는 '지정기금'과 별도 조건 없이 출연하는 '비지정기금'으로 구분
사업 방식	재단, 기업, 그 외 주체(지자체 등)가 사업 기획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이 구분됨 (본부기획사업) 비지정기금과 출연자의 동의 하에 지정기금을 사용하여 운영본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직접 또는 위탁자 공모를 통해 추진 (공모사업) 지자체·농업단체 등이 공모를 통해 제안한 사업을 재단이 검토·선정한 후 지정기금과 연계 또는 비지정기금으로 추진 (기업자율추진사업) 출연자(기업)가 용도·사업을 지정하여 추진
사용처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연도별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3,174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민간기업의 출연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출연규모·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2021~2025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21	94	25,739	70	19,684	5	102	45,525
2022	101	15,945	111	19,245	7	226	35,417
2023	117	13,387	103	16,941	5	167	30,495
2024	116	13,626	88	20,944	9	81.5	34,652
2025	122	13,023	93	36,027	5	4.6	49,057
2017년 이후 누계	141	168,847	244	147,856	151	746.1	317,450

주) 2026년 4월 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사업(1,277억원), 공동협력사업(520억원), 복지증진사업(506억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교육·장학 (제1호)		복지증진 (제2호)		지역개발 (제3호)		공동협력 (제4호)		상품권 (제5호)		운용·관리 (제6호)		합계	
	사업	금액	사업	금액	사업	금액	사업	금액	사업	금액	사업	금액	사업	금액
2021	15	1,664	31	6,227	76	12,591	33	4,646	2	3,807	-	2,057	157	30,992
2022	13	554	30	5,464	65	15,440	32	5,660	1	4,211	-	2,020	141	33,349
2023	22	4,265	46	6,027	63	15,375	41	8,562	1	3,252	1	1,697	174	39,178
2024	16	1,197	51	8,619	96	22,955	27	6,903	1	3,895	2	2,048	193	45,617
2025	16	1,410	64	9,861	88	14,651	27	6,875	1	4,011	2	2,108	198	38,916
누계	118	13,158	301	50,581	529	127,725	237	51,996	11	23,225	6	13,479	1,202	280,164

주) 누계는 2026년 4월 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법령상 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53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34조 등과 같이 법령상 예외규정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56]

그런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기금

56)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의 조성 목표, 재원 및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자금을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비롯한 운영본부가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검토·선정하는 등 공공기관 출연금이 포함된 동 자금을 국가재정 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연도별 조성액이 매년 목표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만을 논의하고 있을 뿐 해당 기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금 조성기간 연장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인 재단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체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4.	다년협약 잔여분	계
조성액	30,965	23,159	22,593	37,595	45,525	35,417	30,495	34,652	49,057	4,947	3,035	317,450

주) 다년협약이란 출연기간을 다년으로 지정하여 연도별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협약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농어촌 상생에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된 것인데, 한-중 FTA 비준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공기관 출연금을 비롯한 공적 자금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직유관단체의 재량에 따라 운용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법령상 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통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동 자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57]

57)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 자발적 출연금의 자율성 등 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예산체계 편입 이전에 공공기관 출연금의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정부 차원에서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산림청 녹색자금의 세입·세출예산 편입 필요

(가) 녹색자금 개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함)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58]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거주·이용자,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산림복지기반을 조성하여 심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동 조항에 따르면 녹색자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59]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바, 복권수익금의 경우 법정배분액(복권수익금의 35%) 중 5.846%를 배분받고 있음.

한편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60]에 따라 맑

5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5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6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로 집행될 수 있는바, ①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식재 및 무장애나눔길 등을 조성하는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② 취약계층, 청소년,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에 집행되고 있음.

[녹색자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복권수익금, 녹색자금의 운용 수익금 등
운용 주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용처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식재 및 생활환경 개선, 무장애나눔길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 조성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료: 산림청

녹색자금의 연도별 조성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복권기금 전입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어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및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의 사업비로 지출되고 잔액이 기금에 반납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2021~2025년 녹색자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복권기금 전입금	57,477	69,057	72,576	72,967	77,528
이자수입	1,267	1,174	1,164	1,092	1,407
계	58,744	70,231	73,740	74,059	78,935

자료: 산림청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1~2025년 녹색자금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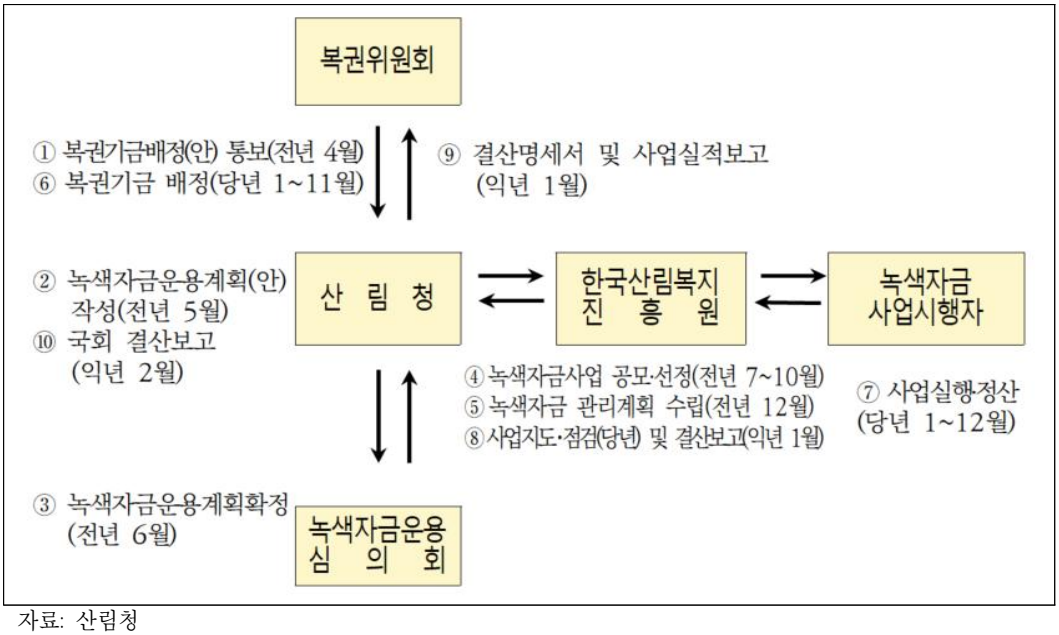
지출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57,477	69,057	72,702	73,264	77,528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8,622	9,612	9,612	11,350	9,310
무장애도시숲 조성	-	-	3,600	3,600	2,950
무장애나눔길 조성	8,778	12,092	11,275	13,612	13,948
치유의 숲 조성	-	122	798	4,711	2,769
민간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편의개선사업	-	1,280	1,280	1,280	1,280
체험교육나눔숲 조성	8,400	17,960	16,712	5,101	9,788
수목장림나눔숲 조성·지원	6,215	850	618	631	568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24,170	25,641	27,248	31,418	35,225
사업관리비	1,292	1,500	1,559	1,561	1,690
복권기금 반납액	1,853	1,372	1,307	1,471	1,449
계	59,330	70,429	74,009	74,735	78,977

자료: 산림청

녹색자금 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기관 등에 동 자금을 보조(보조율 50~100%)하고 있음. 자금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산림청은 녹색자금운용심의회를 거쳐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전년도 6월에 확정하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사업을 공모·선정하고 관리계획 등을 전년도 12월까지 수립함.

이후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이 배정되고 녹색자금 사업시행자가 녹색자금사업을 실행·정산하면,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복권위원회 및 국회에 결산 및 사업 실적을 보고함.

[녹색자금 추진체계]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녹색자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53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34조 등과 같이 법령상 예외규정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61]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색자금의 조성 및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자금을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인 복권기금으로부

6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터 전입받은 자금이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의기관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00억원 이상 집행되는 등 동 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회는 과거 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산림청으로 하여금 녹색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총계주의 준수를 주문한 바 있음.

[녹색자금 대상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총계주의 관련 내용]

구 분	시정요구사항(유형)
2024회계연도 결산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통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2023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자료: 각 회계연도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녹색자금 결산서를 보고하고 있어 동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사후적으로 결산 관련 내용만을 보고하는 현행 체계는 ① 보고 대상이 국회 전체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국회의 심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② 집행 이후 사후적인 보고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가 사전심사하는 절차는 구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통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동 자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의 운용 방식 개선 필요

(가)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개관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 지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62]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금임.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0억원을 해양환경공단에 교부하였고, 교부된 자금 중 2025년 12월 현재까지 방제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은 30억 7,000만원이며, 해양환경공단이 보관 중인 금액은 이자수익 20억 4,500만원을 포함한 49억 7,500만원임.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현황(2025.12. 기준)]

(단위: 백만원)

기간	해양경찰청 교부액(A)	해양환경공단 지출액(B)	이자수익(C)	잔액(A-B+C)
1998~2025	6,000	3,070	2,045	4,975

자료: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교부·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해양경찰청 교부내역				해양환경공단 지출내역	
연도	세부사업(사업코드)	비목	교부액	지출액	지출사유
1998	해양오염방제대책 (1111-211)	민간위탁금	1,500	-	-
1999	해양오염방제대책 (1111-211)	민간위탁금	500	6	해양오염사고 16건 방제비용
2000	-	-	-	7	
2001	-	-	-	149	
2002	-	-	-	200	
2003	-	-	-	252	해양오염사고 2건 방제비용
2004	-	-	-	49	해양오염사고 3건 방제비용
2005	-	-	-	59	해양오염사고 5건 방제비용
2006	-	-	-	6	해양오염사고 2건 방제비용

62) 해양수산부 소관 준시장형 공기업

(단위: 백만원)

해양경찰청 교부내역				해양환경공단 지출내역	
연도	세부사업(사업코드)	비목	교부액	지출액	지출사유
2007	-	-	-	1,823	해양오염사고 2건 방제비용
2008	-	-	-	9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2009	해양오염방제활동 (1401-301)	민간위탁금	1,000	31	해양오염사고 3건 방제비용
2010	해양오염방제활동 (1401-301)	민간위탁금	1,000	2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2011	해양오염방제활동 (1401-301)	민간위탁금	1,000	173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2012	해양오염방제활동 (1401-301)	민간위탁금	1,000	89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2013	-	-	-	-	-
2014	-	-	-	21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2015	-	-	-	195	해양오염사고 2건 방제비용
2016~2025	-	-	-	-	-
합계			6,000	3,070	

주) 민간위탁금은 2025년도 예산 비목상 민간위탁사업비(320-02)에 해당함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나) 검토의견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예산 외 적립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 및 자금 보유 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해양경찰청은 민간위탁금을 국고로 반납하고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되, 대규모 재정 소요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양오염 방제 예산의 편성·집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63]

63) 「국가재정법」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1999년 12월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민간위탁금을 계속 보관·운용하고 있음. 형식적으로는 단년도 계약을 반복 연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출예산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유보·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 및 세출예산 단년도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은 법률상 설치 근거를 가진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아님에도 장기간 누적·보유되면서 사실상 별도 자금처럼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법」 제95조의 자금 보유 제한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음.[64]

해양경찰청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방제 목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에 해양오염예방활동,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방제정 건조 등 해양오염 대응 관련 사업비로 총 292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65]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는 발생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재난 유형이라는 점에서 긴급 필요 시 이·전용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재정운용 원칙에 보다 부합함.[66]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 5. (생 략)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64) 「국가재정법」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65) [2026년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사업내용	2026년 예산액
해양오염예방활동(4333-300)	· 방제장비 및 물품 확보 · 방제 및 예방활동 지원 ·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6,070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4333-301)	·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구매 · 화학사고대응요원 활동 지원	850
방제정 건조(4334-300)	· 노후 방제정 대체건조, 다목적화학방제함 건조	22,315
합계		29,235

자료: 해양경찰청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공단에 유보되어 있는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을 국고로 반납하고,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되 대규모 재정 소요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양오염 방제 예산의 편성·집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67]

6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67)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공단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수탁 협약'을 2026년 8월 7일 해지하였고, 같은 날 해양환경공단은 보관 중이던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을 국고 반납하였음.

5. 정책펀드 사업

가. 개 요

(1) 현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펀드를 의미함. 2005년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모태펀드’가 결성된 이후 2010년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2011년 ‘산단환경개선펀드’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따라 펀드들이 조성되고 있음.

2025회계연도 정책펀드 사업은 15개 부처 26개의 세부사업에서 예산현액 2조 3,095억 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8,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2,600억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1,762억원) 등이 있음.

[2025년도 부처별 정책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000	800,000	800,000	800,000	880,000
문체부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05,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K-콘텐츠 펀드 출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35,000	55,000	55,000	55,000	45,000

문의: 02-6788-5701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K-콘텐츠 펀드 출자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	40,000	40,000	40,000	40,000	60,000
		K-콘텐츠 펀드 출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15,000	15,000	15,000	15,000	65,000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기업 육성펀드)	33,000	33,000	33,000	33,000	53,000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스포츠산업펀드)	30,000	30,000	30,000	30,000	40,000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176,200	176,200	176,200	176,200	-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	50,000	50,000	50,000	-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35,000	35,000	35,000	35,000	-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30,000	30,000	30,000	30,000	-
		국민성장펀드	-	-	-	-	1,000,000
과기 정통부	일반회계	AI혁신펀드	-	50,000	50,000	50,000	-
	정보통신 진흥기금	AI혁신펀드	45,000	100,000	100,000	100,000	-
		사이버보안 펀드조성	10,000	10,000	10,000	10,000	7,000
	과학기술 진흥기금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12,000	12,000	12,000	12,000	-
산업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119,300	119,300	119,300	119,300	72,5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기후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	-	-	-	-	74,000
	기후대응기금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45,604	45,604	45,604	45,604	53,155
기재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특별인프라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기획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BTL 특별인프라펀드	-	-	-	-	50,000
농식품부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55,000	55,000	55,000	55,000	50,000
해수부	일반회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국고여객선 건조 (국고여객선 펀드)	8,400	8,400	8,400	8,400	8,400
		해양모태펀드	-	-	-	-	15,000
	수산발전기금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안전펀드)	9,000	9,000	9,000	9,000	12,000
		수산모태펀드 출자	7,000	7,000	7,000	7,000	-
국토부	일반회계	해외인프라시장개척(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조성)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토교통 혁신펀드 (모태펀드 국토교통혁신계정 출자)	15,000	15,000	15,000	15,000	80,000
방사청	일반회계	방산수출 투자지원	20,005	20,005	20,005	20,005	30,005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지재처	일반회계	모태조합출자	8,000	8,000	8,000	8,000	-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대학창업활성화 (대학창업펀드)	7,500	7,500	7,500	7,500	7,500
방미통위	방송통신 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5,000	5,000	5,000	5,000	500
우주청	과학기술 진흥기금	뉴스페이스투자지원	3,500	3,500	3,500	3,500	100,000
복지부	일반회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K-글로벌 백신 펀드)	-	-	-	-	20,000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임상3상 특화 펀드)	-	-	-	-	60,000
행안부	일반회계	국민안전산업펀드조성	-	-	-	-	50,000
경찰청	일반회계	미래치안기반조성	-	-	-	-	5,000
합 계			1,779,509	2,309,509	2,309,509	2,309,509	3,248,06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정책펀드 사업의 결산액 규모를 보면,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4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5년 기준 2조 3,095억원으로 전년대비 5,403억원 증가하였음.

[2021~2025년 정책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증감액(B-A)
23,453	17,103	10,963	17,692	23,095	5,40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정책펀드 사업의 누적 재정투입 규모는 2025년 기준 18조 367억원이며, 누적 회수액은 8조 519억원으로 이 중 국고 귀속액은 3,370억원, 재투자액은 7조 853억원, 기타 비용은 6,296억원으로 나타남.

재투자액은 정책펀드에 다시 투입되어 계속 운영되는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누적 결산액에서 국고 귀속액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정책 펀드 내 정부 재원의 잔존 규모는 17조 701억원으로 나타남.[1)]

[정책펀드 사업 누적 현황]

(단위: 억원)

누적 결산액	누적 회수액 (A+B+C)				잔존액
		국고 귀속(A)	재투자(B)	기타(C)	
180,367	80,519	3,370	70,853	6,296	170,701

주 1) 정책펀드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2005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현황 기준
2) 기타: 펀드 관리보수, 회계감사 비용, 수탁은행 보수, 전산비용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잔존액에는 현재 투자·운용 중인 금액뿐만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 등이 반영되어 있어, 실제 운용 중인 자산의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유형별 현황

정책펀드는 운용구조에 따라 ① 모펀드-자펀드 방식과 ② 단일펀드 방식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음.

우선 '모펀드-자펀드' 방식은 정부가 모펀드(Fund of funds)에 출자하고, 모펀드가 다시 민간 운용사가 결성한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투자방식으로, 회수재원의 재투자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가능하고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펀드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음.

2025년도 정부 재정이 투입된 모펀드-자펀드 유형의 주요 펀드로는 중소기업모태펀드·혁신성장펀드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이 있음.

[2025년도 모펀드-자펀드 유형 펀드 현황]

(단위: 백만원)

유형	정책펀드명	부처명	모펀드 운용기관	2025년 결산액
모펀드-자펀드	중소기업모태펀드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기후부, 국토부, 지재처, 교육부, 우주청	한국벤처투자	1,469,604
	혁신성장펀드	금융위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176,200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금융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100,000
	특별인프라펀드	기재부	산은인프라자산운용(주)	100,000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농식품부, 해수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62,000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	기후부	한화자산운용	60,000
	기업구조혁신펀드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50,000
	원전산업성장펀드	금융위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35,000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국토부	삼성자산운용	30,000
	반도체생태계펀드	금융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30,000

(단위: 백만원)

유형	정책펀드명	부처명	모펀드 운용기관	2025년 결산액
	K-방산수출펀드	방사청	한국성장 금융투자운용	20,005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문체부, 방미통위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20,000
	합 계			2,152,80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일펀드’ 방식은 정부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개별 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책목적에 맞는 투자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고 정책효과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펀드 조성 시마다 예산심의와 결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모펀드-자펀드 방식에 비해 운용의 연속성과 유연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음.

2025년도 정부 재정이 투입된 단일펀드 유형의 주요 펀드로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안전펀드 등이 있음.

[2025년도 단일펀드 유형 펀드 현황]

(단위: 백만원)

유형	정책펀드명	부처명	펀드 운용기관	2025년 결산액
단일펀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119,300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해수부	세계로선박금융	20,000
	원양어선안전펀드	해수부	세계로선박금융	9,000
	국고여객선 펀드	해수부	세계로선박금융	8,400
	합 계			156,7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이하 정책펀드 사업에 대한 검토는 ① 펀드 설계 단계(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 주목적투자비율, 기준수익률 및 운용사 보수체계), ② 펀드 운용 단계(사전 계획 및 투자 검토, 자펀드 청산 지연 등 운용방식), ③ 사후관리 단계(운용손실 관리 및 회수재원 재투자 관리체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서술함.

먼저 펀드 설계 단계에서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민간자금 유인체계와 투자기준이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봄.

다음으로 펀드 운용 단계에서는 자펀드 결성 및 투자 과정의 적정성과 투자 지연, 사업 중단 및 청산 지연 등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검토함.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운용성과와 손실 발생 현황, 회수재원의 재투자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봄.

(1) 펀드 설계 단계

(가) 민간자금의 마중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임에도, 일부 펀드는 공공부문 출자비중이 높아 민간자금 유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펀드의 마중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펀드는 민간자본만으로는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시장실패 영역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출자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정부 재정은 마중물로서 일정 부분만 투입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민간자금이 유입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2021~2025년 정책펀드의 결성현황을 보면, 결성총액 66조 8,041억원 중 모태펀드 및 정책기관 등 공공부문 출자액은 22조 1,650억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펀드 출자자별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정책펀드	펀드 유형	공공				민간		결성총액
			비중	모태펀드	정책기관 등		비중	
증권시장안정펀드	모펀드	20,000	20.0	-	20,000	80,000	80.0	100,000
채권시장안정펀드	모펀드	220	20.3	-	220	866	79.7	1,086
혁신성장펀드	모펀드	64,439	25.8	-	64,439	185,340	74.2	249,779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	890	34.4	-	890	1,700	65.6	25,900
기업구조혁신펀드	모펀드	19,200	38.2	-	19,200	31,092	61.8	50,292
중소기업모태펀드	모펀드	76,441	44.0	63,625	12,816	97,320	56.0	173,760
PIS펀드	모펀드	9,392	41.7	-	9,392	13,123	58.3	22,515
GIF펀드	모펀드	1,000	45.5	-	1,000	1,200	54.5	2,200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모펀드	2,005	50.0	-	2,005	2,006	50.0	4,011
혁신모험펀드	모펀드	3,793	56.0	-	3,793	2,976	44.0	6,769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모펀드	7,193	56.6	6,680	513	5,521	43.4	12,713
반도체생태계펀드	모펀드	850	63.4	-	850	490	36.6	1,340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	모펀드	3,202	72.6	-	3,202	1,207	27.4	4,409
원전산업성장펀드	모펀드	1,040	91.1	-	1,040	101	8.9	1,141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단일	6,686	97.9	-	6,686	142	2.1	6,827
특별인프라 펀드	모펀드	2,000	100.0	-	2,000	-	-	2,000
국고여객선 펀드	단일	84	100.0	-	84	-	-	84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단일	2,390	100.0	-	2,390	-	-	2,390
원양어선안전펀드	단일	825	100.0	-	825	-	-	825
합 계		221,650	33.2	70,305	151,345	423,084	63.3	668,041

주 1) 2021~2025년 정부 출자액이 있는 펀드를 대상으로 작성

2) 정책기관 등: 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상 기금, 기타 모펀드,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공공기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펀드별 출자자 구성을 보면 정책목적과 시장여건에 따라 공공부문 출자 비중에 차이가 나타남.

① 증권시장안정펀드(20.0%)·채권시장안정펀드(20.3%) 및 혁신성장펀드(25.8%)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거나 민간 투자기반이 비교적 형성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부문 출자비중이 20~25% 수준으로 평균(32.3%)보다 낮게 나타남.

② 중소기업모태펀드(44.0%) 및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56.6%)는 정보 비대칭성과 초기 투자위험 등으로 민간자본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벤처형 정책펀드로[2], 정부 출자를 통해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마중물 기능이 특히 중요한 분야임.

그럼에도 공공부문 출자비중이 40~50%로 평균(32.3%)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공공부문 출자비중(56.6%)이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펀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의 투자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자금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 중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진·청년·지방·혁신모험 계정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의 정책분야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는 다수의 계정으로 구성되어있음.

2025년도 결성된 자펀드의 계정별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17개 계정에서 결성총액 17조 3,760억원 중 공공부문 출자액은 7조 6,441억원으로 4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국토교통혁신·스포츠·환경 계정 등 12개 계정에서 결성총액의 절반 이상이 공공부문 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2)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4.11.15.)
벤처형 펀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IPO, 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모태펀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혁신성장펀드가 대표적임.

[2025년도 중소기업모태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계정명	공공				민간		결성총액
		비중	모태펀드	정책기관 등		비중	
보건	1,640	34.9	1,200	440	3,056	65.1	4,696
중진	30,945	35.6	26,063	4,882	56,078	64.4	87,022
청년	2,910	41.4	2,280	630	4,116	58.6	7,026
특허	4,449	43.8	1,919	2,530	5,705	56.2	10,154
혁신모험	8,971	47.7	7386	1,585	9,816	52.3	18,787
연구개발특구	95	50.0	95	0	95	50.0	190
영화	1,881	53.6	1,871	10	1628	46.4	3,509
국토교통혁신	1,147	54.2	950	197	969	45.8	2,116
과기정통	3,566	56.8	2,540	1,026	2,713	43.2	6,279
문화	12,580	59.1	11,581	999	8,701	40.9	21,281
교육	473	59.5	445	28	322	40.5	795
지방	1,292	59.7	1,099	193	873	40.3	2,165
엔젤	573	62.9	494	79	339	37.1	912
기후에너지환경	2,363	63.7	2,268	95	1,347	36.3	3,710
스포츠	1,284	68.8	1,284	0	583	31.2	1,867
해양	646	69.5	600	46	283	30.5	929
관광	1,626	70.0	1,550	76	696	30.0	2,322
합계	**76,441**	**44.0%**	**63,625**	**12,816**	**97,320**	**56.0**	**173,760**

주 1) 2021~2025년 정부 출자액이 있는 펀드를 대상으로 작성
2) 정책기관 등: 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상 기금, 기타 모펀드,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공공기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34.9%)·중진(35.6%)·청년(41.4%) 및 특허(43.8%)) 계정은 공공부문 출자비중이 전체 평균(44.0%)을 하회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광(70.0%), 해양(69.5%), 스포츠(68.8%), 기후에너지환경(63.7%) 등은 공공부문 출자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정책분야의 특성과 민간 투자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정의 공공부문 출자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한 결과라는 설명임.

계정별 공공부문 출자비중은 정책분야의 특성·민간 투자여건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이나, 정책펀드의 목적이 정부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데 있는 만큼, 공공부문 출자비중이 높은 계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출자구조가 적정한 수준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③ 원전산업성장펀드(91.1%)·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98.0%)·특별인프라펀드(100%)·국고여객선펀드(100%) 및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100.0%) 등은 원전 공급망 육성,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공공성이 높고 투자 회수기간이 긴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공공부문 출자금이 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다만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만큼,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민간 재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책펀드의 정책목적과 사업성격 및 시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부문 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출자가 민간자금을 견인하는 마중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주목적투자비율 제고 필요

모태펀드는 일부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공공부문 자금 출자비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정부재정 일부가 주목적 투자대상 외의 대상에 투자되어 재정투입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최소한 공공자금 출자비율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책펀드는 민간의 과소투자 분야 또는 집중적 초기투자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을 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목적 대상에 투자하여야 하는 의무비율(이하 “주목적 투자비율”)을 100% 미만으로 설정함에 따라 운용사의 수익성 확보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금은 주목적 투자대상 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펀드의 조성 및 운용 목적 상 적어도 공공부문의 출자분(정부재정 및 회수재원)은 해당 펀드의 주요 투자목적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025년 운용 중인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자펀드 중 정책자금 출자비율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보다 높은 펀드가 다수 확인되었음.

[공공부문 자금 출자비율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보다 높은 펀드 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펀드	계정	자펀드명	주목적 투자대상	결성일자	모태 출자액 (A)	정책기관 등 출자액 (B)	결성 규모 (C)	공공자금 출자비율 (A+B)/C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진	OOOOOO	라이콘	2025-10-15	3,000	1,900	5,500	89.1%	60%
		OOOOOO	임팩트	2024-09-05	10,000	5,000	17,200	87.2%	60%
		OOOOOO	라이콘	2024-10-31	-	1,360	1,580	86.1%	60%
		OOOOOO	루키리그	2024-07-05	17,000	6,000	27,400	83.9%	60%
	청년	OOOOOO	청년창업	2025-10-14	18,000	24,500	50,000	85.0%	60%
	혁신 모험	OOOOOO	창업초기	2024-09-05	18,000	7,000	30,000	83.3%	60%
		OOOOOO	창업초기 일반	2025-09-30	15,000	7,600	27,800	81.3%	60%
		OOOOOO	창업초기	2024-08-27	10,000	3,000	17,000	76.5%	60%
		OOOOOO	창업초기 일반	2025-10-13	9,000	4,000	17,000	76.5%	60%
		OOOOOO	창업초기(소형)	2026-01-20	3,000	1,271	6,050	70.6%	60%
		OOOOOO	창업초기(소형)	2025-10-14	3,000	1,600	7,000	65.7%	60%

(단위: 백만원)

정책펀드	계정	자펀드명	주목적 투자대상	결성일자	모태 출자액 (A)	정책기관 등 출자액 (B)	결성 규모 (C)	공공자금 출자비율 (A+B)/C	주목적 투자 의무 비율
	지방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7-09	3,000	2,000	6,000	83.3%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7-29	3,000	1,000	5,000	8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8-28	3,000	1,000	5,000	8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7-17	1,800	300	3,000	70.0%	60%
		OOOOOO	지역 라이콘	2024-07-13	1,800	300	3,000	70.0%	60%
		OOOOOO	지역 라이콘	2024-08-12	3,000	500	5,000	70.0%	60%
		OOOOOO	지역 AC세컨더리	2024-07-16	5,000	2,000	10,000	70.0%	60%
	문화	OOOOOO	수출	2024-07-26	22,500	7,500	38,500	77.9%	60%
		OOOOOO	수출	2024-11-26	22,500	3,000	37500	68.0%	60%
		OOOOOO	IP	2025-11-24	30,000	5,500	50,500	70.3%	60%
		OOOOOO	IP	2024-08-07	30,000	3,500	50,050	66.9%	60%
		OOOOOO	신기술	2024-07-26	20,000	2,000	33,400	65.9%	60%
	중진 (복지)	OOOOOO	사회서비스	2024-09-24	50	-	70	71.4%	60%

주) 정책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 모펀드, 기금, 성장금융, 정책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는 ① 정책펀드를 위해 투입된 정부재정 중 일부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어 재정투입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고, ②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펀드의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민간자금이 사실상 전액 주목적 투자대상 이외에 투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투자의무비율 설정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기준수익률 설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첫째, 일부 정책펀드는 기준수익률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운용사의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 및 성과 제고 유인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목적과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수익률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펀드의 기준수익률이란 펀드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로 실제 출자금 대비 배분금액으로 산정한 연평균 수익률을 의미하며, 펀드 청산 후 실현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하게 됨.

따라서 기준수익률은 시장 평균 수준의 무위험·저위험 자산의 수익률과 정책목적 및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사의 적극적인 자산 운용 및 성과 제고 유인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모펀드-자펀드 유형 정책펀드의 운용기준을 보면, 기준수익률은 펀드 및 분야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8%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특별인프라펀드와 같이 연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가변형 방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책펀드는 펀드 존속기간 종료 후 청산 시 달성한 최종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고정형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 중 지식재산처의 중소기업모태펀드(IP직접투자 분야), 해양수산부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수산유통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소기업모태펀드(중저예산한국영화·한국영화메인투자) 등은 1~2%의 기준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모태펀드(공공기술사업화 분야) 등 다수 펀드에서 3% 기준수익률을 설정하고 있음.

[2025년도 모펀드-자펀드 유형 펀드의 운용 기준수익률]

부처명	정책펀드명 (계정명)	분야명	기준 수익률	존속기간
지재처	중소기업모태펀드 (특허)	IP직접투자	1%	8년
해수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수산투자)	수산유통	2%	8년
문체부	중소기업모태펀드 (영화)	중저예산한국영화, 한국영화메인투자 등	2%	6~7년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농식품)	청년기업성장, 스마트농업, 미래혁신성장	2%	8년

부처명	정책펀드명 (계정명)	분야명	기준 수익률	존속기간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모태펀드 (과기정통)	공공기술사업화, AI・SaaS, AI, 사이버보안	3%	8년
교육부	중소기업모태펀드 (교육)	대학창업	3%	10년 이내
문체부	중소기업모태펀드(관광)	관광기업육성	3%	8년
문체부	중소기업모태펀드 (스포츠)	스포츠출발, 스포츠산업, 스포츠전략, 스포츠산업	3%	5~8년
기후부	중소기업모태펀드 (기후에너지환경)	미래환경산업(그린스타업), 미래환경산업(사업화) 미래환경산업(스케일업)	3%	5년 이상
우주청	중소기업모태펀드 (과기정통)	뉴스페이스	3%	10년
문체부	중소기업모태펀드 (문화)	IP, 수출 등	3~5%	5년
중기부	중소기업모태펀드	창업초기, 재도전 등	3~7%	6~12년
문체부 방미통위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K-콘텐츠・미디어 전략	5%	8년
문체부	중소기업모태펀드 (문화)	글로벌 리그 펀드	-	8년
국토부	중소기업모태펀드 (국토교통혁신)	국토교통혁신(일반)	5%	8년 이상
금융위	기업구조혁신펀드	일반・지방행정	6%	15년
금융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일반・지방행정	7%	25년
금융위	반도체생태계펀드	일반・지방행정	7%	10년
금융위	원전산업성장펀드	일반・지방행정	7%	10년
금융위	혁신성장펀드	일반・지방행정	7~8%	10년
방사청	K-방산수출펀드	-	8%	10년
기후부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	환경	8%	30년
국토부	PIS 2단계 펀드	-	8%	30년
기재부	특별인프라펀드	교통 및 물류	국고채 (5yr) +1.1% 이내	10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6년 6월 기준 국고채(5년물) 연금리는 4.01% 수준으로, 일부 정책펀드는 기준수익률이 1~3%에 불과하여 1년간 무위험자산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도 낮은 수준의 성과만 달성하더라도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2021~2025년 청산된 자펀드의 평균 수익률 현황을 보면, 평균 기준수익률은 5.0%인 반면 평균 청산수익률은 7.4%로 나타나, 현재의 기준수익률은 운용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차등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음.

[2021~2025년 청산된 자펀드의 평균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정책펀드명	재정 투입규모 (예산 및 회수액 출자)	기준 수익률	청산 수익률
중소기업모태펀드	9,322	6.0%	**7.7%**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4,110	4.2%	0.5%
혁신모험펀드	1,276	7.2%	**58.4%**
혁신성장펀드	820	8.0%	0.7%
기업구조혁신펀드	211	6.8%	**10.3%**
합계	39,313	5.0%	7.4%

주) 기준수익률 및 청산수익률은 평균값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정책펀드는 수익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적인 민간 투자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준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시장금리나 일반펀드 수준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기준수익률은 운용사의 성과보수 지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운용사의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유인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특히 기준수익률은 운용사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와 별도로 성과보수의 지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시장 평균 수준의 무위험·저위험 자산 수익률과 정책목적·투자위험 및 분야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사의 투자유인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수익률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소기업모태펀드 및 농수산식품모태펀드는 동일한 투자분야 내에서도 자펀드별 기준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 성과보수 지급기준의 형평성과 성과평가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동일 분야 내 기준수익률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모태펀드 및 농수산식품모태펀드는 자펀드에 대한 성과보수를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수익률은 운용계획에서 투자분야별 하한을 마련하되 세부 적용은 자펀드 규약 협의 시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자펀드의 분야별 기준수익률 현황을 보면, 주목적 투자대상 및 투자목적이 같은 하나의 분야 내에서 자펀드별 기준수익률이 최대 4%p까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결성된 자펀드의 분야별 기준수익률 현황]

(단위: 개)

펀드명	계정	분야	2%	3%	4%	5%	6%	7%	8%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진	루키리그	-	-	-	4	-	4	1
		재도약	-	2	-	-	-	1	-
		라이콘	-	2	-	-	-	1	-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	-	-	12	-	8	1
		NEXT UNICORN PROJECT	-	-	-	5	-	2	4
	혁신모험	창업초기	-	-	-	13	-	1	1

(단위: 개)

펀드명	계정	분야	2%	3%	4%	5%	6%	7%	8%
	문화	문화일반	-	-	-	2	-	-	1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사업화)	1	-	-	1	-	-	-

주)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수산식품모태펀드 계정 중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를 대상으로 작성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분야별 기준수익률 하한을 제시하나, 운용사가 조합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민간 운용사별로 세부 투자 전략이 상이함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는 설명임.

기준수익률은 민간출자자 모집 난이도와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펀드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동일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정책목적을 가진 분야 내에서도 기준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자펀드 간 성과보수 지급기준의 형평성과 성과평가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 분야 내에서는 기준수익률의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3)]

(라) 관리 및 성과보수 지급기준 정비 필요

첫째, 정책펀드는 모펀드 결성액에서 모펀드 운용기관에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 지급액이 증가할수록 자펀드에 출자 가능한 재원이 감소하는 만큼, 정부는 관리보수는 펀드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상위 요율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수 지급체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책펀드 사업은 모펀드 결성액 중 일부를 모펀드 운용기관에 대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있음. 모펀드 운용기관에 대한 보수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모펀드 결성액 중 자펀드로 출자 가능한 재원이 감소하므로, 보수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일분야라 하더라도 자펀드별로 산업분야 및 투자 단계 등 세부 포트폴리오 전략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인 통제는 민간 투자 위축 및 펀드 결성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부는 정책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으로 최저 기준수익률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각각 자체적으로 운용지침 및 규약에 따라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

관리보수는 납입출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규모가 클수록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납입출자금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4%의 최저 요율이 적용됨.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각각 설계되어 있음.

[정책펀드별 모펀드 운용사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규정]

<table>
<tr><th>정책펀드</th><th>관리보수</th><th>성과보수</th></tr>
<tr><td>중소기업
모태펀드</td><td>
<table>
<tr><th>납입출자금 규모</th><th>연율</th></tr>
<tr><td>3,000억 이하 분</td><td>1%</td></tr>
<tr><td>3,000억 초과 6,000억 이하 분</td><td>0.8%</td></tr>
<tr><td>6,000억 초과 1조 이하 분</td><td>0.7%</td></tr>
<tr><td>1조원 초과 1.5조원 이하 분</td><td>0.6%</td></tr>
<tr><td>1.5조원 초과 2조원 이하 분</td><td>0.55%</td></tr>
<tr><td>2조원 초과 분*</td><td>0.4%</td></tr>
</table>
* 2조원 초과 시 5호에 의한 금액에 2조원 초과분에 대해 0.4% 곱한 금액을 합산
</td><td>○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률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기준수익률 초과액)의 일부를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table>
<tr><th>기준수익률
초과액</th><th>성과보수액</th></tr>
<tr><td>300억원 이하</td><td>기준수익률 초과액의
10%</td></tr>
<tr><td>3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td><td>30억원 + (300억원
초과액의 7%)</td></tr>
<tr><td>600억원 초과</td><td>51억원 + (600억원
초과액의 5%)</td></tr>
</table>
</td></tr>
<tr><td>농림수산
식품
모태펀드</td><td>
<table>
<tr><th>납입출자금 규모</th><th>연율</th></tr>
<tr><td>3,000억원 이하 분</td><td>1%</td></tr>
<tr><td>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분</td><td>0.6%</td></tr>
<tr><td>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분</td><td>0.4%</td></tr>
</table>
* 1조원 초과시 1조 × 0.7% 금액만 지급
</td><td>○ 매년 자펀드의 청산에 따라 배분받은 수익의 합이 당해연도 청산 자펀드에 대해 모태조합의 기준수익률(5%)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0% 이내를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td></tr>
</table>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에 따른 2021~2025년 관리보수·성과보수 지급액 현황을 보면, 2025년 기준 한국벤처투자는 관리보수 462억원, 성과보수 60억원을 지급받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관리보수 53.4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모태펀드의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B-A)/A]
중소기업 모태펀드	납입출자금	72,775	82,153	88,969	98,617	113,313	22.6
	운용 자펀드 규모(연말기준)	267,521	307,753	325,299	351,984	387,308	44.8%
	관리보수 지급액	306	350	379	416	462	33.8%
	성과보수 지급액	72	9	100	39	60	△20%
농림수산 식품 모태펀드	납입출자금	5,367.3	5,837.3	6,307.3	7,047.3	7,667.3	42.9%
	운용 자펀드 규모(연말기준) * 정산펀드 제외	13,130.9	15,337.9	16,879.6	18,686.3	21,170.7	61.2%
	관리보수 지급액	42.9	45.7	48.3	50.3	53.4	24.5%
	성과보수 지급액	-	-	-	-	-	-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① 구체적으로 관리보수에 있어서는 운용규모에 정비례하여 그 운용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입출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보수율이 낮아지도록 구간별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모태펀드는 납입출자금 2조원 초과분에 대해 0.4%의 단일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관리보수 산정 대상인 납입출자금 규모가 이미 2021년에 7조 2,775억원으로 최저요율 기준인 2조원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1조 3,313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장기간 최상위 구간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2조원 초과 구간은 추가로 세분화되지 않은 채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음.

한편 납입출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수령하는 관리보수 수익 및 내부유보금도 함께 증가하여, 관리보수는 2023년 379억원에서 2025년 462억원으로, 내부유보금은 583억원에서 866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4)]

4)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5월 관리보수 개편을 통해 2조원의 0.55%에 더하여 2조원 초과분의 0.4%를 관리보수로 지급하던 기존 체계를 10조원의 0.4%에 더하여 10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4%보다 낮은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는 입장임.

[연도별 한국벤처투자가 수령한 관리보수 및 내부유보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관리보수	379	417	462
내부유보금	583	722	866

주) 한국벤처투자는 출자금 규모가 2조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의 0.55%를, 2조원 이상인 경우 2조원의 0.55%에 더하여 2조원 초과분의 0.4%를 관리보수로 지급받고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최근 정책펀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상위 관리보수 구간을 추가로 세분화하는 등 규모의 경제가 관리보수 체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② 성과보수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달리 기준수익률 초과액의 규모에 따른 별도의 차등 지급기준 없이 기준수익률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2021~2025년에는 성과기준 미달 및 성과보수의 재투자로 인해 실제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향후 성과보수가 지급될 경우를 고려하여 성과보수 지급기준의 적정성과 정책펀드 간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중소기업모태펀드 및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자펀드 운용에 있어서, 기존의 관리보수·성과보수 지급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익률 제고와 조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 실적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인센티브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책펀드 사업은 모펀드 운용기관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자펀드 운용기관에도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계정·분야별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는 각 정책펀드의 투자 분야와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운용사의 조기 투자와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음.

우선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경우 관리보수는 일반적으로 조합 결성 후 3년까지는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후에는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다만 과기정통계정(메타버스 분야)과 스포츠계정은 조합약정총액의 1%를 기본 보수로 보장하는 한편 투자잔액에 따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스포츠계정(프로젝트 분야)은 기준수익률 초과 수익의 최대 30%까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일부 계정은 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낮추는 대신 성과보수 지급률을 높이는 연동형 보수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자펀드가 결성된 중소기업모태펀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 기준]

<table>
<tr><th>관리보수 지급기준</th><th>성과보수</th><th>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th></tr>
<tr><td>〈문화, 영화, 관광, 국토교통혁신, 교육, 기후에너지환경, 특허 계정〉
○결성일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td><td rowspan="3">기준수익률 초과 수익의 20% 이내</td><td rowspan="3">연동 가능</td></tr>
<tr><td>〈중진, 청년, 혁신모험 계정〉 ※ ①, ② 중 선택 가능
① ○결성일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② ○결성일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적용요율
○결성일 3년 이후 : 조합약정총액 × 연차별 하향 적용요율*
* 적용요율에서 매년 0.5%p 하향하되, 최저요율은 0.5%로 함</td></tr>
<tr><td>〈과기정통 계정〉 ※ 메타버스 외 분야의 경우 ①과 동일
- 과기정통계정 (메타버스 분야)
○결성일 3년 내: (조합약정총액 × 1%)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td></tr>
</table>

관리보수 지급기준	성과보수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스포츠 계정> ○ 결성일 3년 내 : **(조합약정총액×1%)**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기준수익률 초과 수익의 30% 이내 (프로젝트 외 분야의 경우 20% 이내)	
<보건 계정> ○ 성립일 2년 내: 약정총액 × 적용요율* ○ 성립일 2년 이후 만기까지: 투자잔액(일일평잔) × 적용요율*	기준수익률 초과 수익의 20% 이내	연동 불가
※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방식 ○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 관리보수율 최대 0.5%p 하향 및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단, 특허계정 11월 수시 출자사업의 경우 제외)		

주 1)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보건 외 계정)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의 경우, 2.1% 이하

(보건계정)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의 경우, 2.1% 이하

2) 보건계정의 성과보수의 경우 운용사 선택사항으로 Catch-up(40% 이내) 제안 시, 기준수익률(9%) 초과 시 총 누적이익의 20% 이내만 허용

자료: 한국벤처투자

그러나 2023~2025년 결성된 자펀드 현황에 따르면, 관리보수율을 인하하고 성과보수율을 높이는 연동형 보수체계를 선택한 자펀드는 전체 307개 중 12개(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인센티브가 실제 운용사에게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한편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관리보수의 경우 결성 후 3년까지는 조합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이후에는 투자잔액(분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하는 등 기본적인 보수체계는 중소기업모태펀드와 유사함.

다만 조기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연차별 투자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 투자금액의 1%를 조합재산 분배 시 모태펀드 분배재원에서 차감하도

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기준 농식품계정은 39개 조합 중 6개, 수산계정은 4개 조합 중 1개만이 추가 관리보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활용 사례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임.

[2025년 자펀드가 결성된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 기준]

관리보수 지급기준	성과보수	추가 관리보수
○결성일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기준수익률 초과 수익의 20% 이내	○ **연차별 목표비율* 이상 투자** 시, **초과달성분의 1%**를 조합재산 분배 시 모태펀드 분배재원에서 차감

주 1)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조합 약정총액이 100억원 미만: 연 3.0%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연 2.5%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 2.3%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600억원 초과: 연 2.1% 이하

2) 연차별 목표비율: (등록 후 만 1년) 출자약정총액의 40%, (2년) 70%, (3년) 9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계정·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관리보수·성과보수 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센티브 제도의 실제 활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 취지가 운용과정에서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이므로, 활용도가 낮은 제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지급요건이나 유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펀드 운용 단계

(마) 사전 계획 및 투자 검토 미흡으로 인한 투자 지연 및 사업 중단 문제

투자대상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으로 선정 이후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책자금의 적기 공급과 정책목적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는 투자처 선정 단계의 검토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정책펀드 사업은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모펀드 조성, 자펀드 결성, 투자대상 선정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구조이므로,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투자대상에 대한 검토가 미흡할 경우 투자집행 지연이나 사업 취소 등으로 이어져 정책자금의 적기 공급과 정책목적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산업통상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산업통상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정부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선정 이후 취소되는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25년에는 총사업비 1조 5,698억원 규모의 9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선정 이후 사업이 취소될 경우 산단환경개선이라는 당초 정책목적 달성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처 발굴 소요 시간 및 펀드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면 투자실적 부진 및 청산 지연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최근 대외환경 악화, 사업부지 확보 곤란, 인허가 지연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사업 선정 시에는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검토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취소된 9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2024년 2월 또는 6월에 선정된 후 불과 1년여 만에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투자처 선정 단계에서 사업성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초 투자처 선정 시 사업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내실화하여 선정 이후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바) 정책펀드 사업의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지연

정책펀드 사업은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지연으로 정책자금이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되거나 실제 투자집행이 늦어져 재정의 적기 투입 효과가 저하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정부는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는 정책자금이 출자되더라도 민간자금이 매칭되어 자펀드가 결성되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자펀드 결성 전까지 재정출자액은 모펀드 내에서 장기간 유보됨. 이에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 재정투입과 실제 투자와 시차가 발생하고, 적기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확대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이 중요함.

특히 자펀드 결성과 관련하여서는, 펀드 운용사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매년 11~12월 민간 금융사의 장부 마감(book closing) 시기에 자펀드 운용사의 자금확보가 어려워, 자펀드 결성 역시 상당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자펀드 운용사의 LP(Limited Partner) 유치가 용이하도록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운용사 선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자펀드 결성 이후의 투자 집행에 있어서도, 자펀드 운용사가 투자기간(통상 3~4년) 동안 적정한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성하기 위한 시일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자펀드 투자 지연으로 인하여 정부재정의 민간투자 유인효과(마중물 역할)가 감소하고, 모펀드에 유보된 미투자 재원은 그 기간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자펀드의 조기 투자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은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부처별 개별 펀드사업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① 국토교통 혁신펀드 1차년도 투자집행률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운용사 선정과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하여 매년 1차년도의 투자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운용사 모집 단계부터 유망 투자처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는 등 투자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혁신펀드가 도입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 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자펀드가 조성된 첫해의 투자 집행률(자펀드 결성금액 대비 투자집행금액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2023년에는 투자 집행실적이 없었고, 2024년에는 2.6%(385억원 중 10억원 집행), 2025년에는 4.5%(440억원 중 20억원 집행)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국토교통 혁신펀드 2020~2025년 1차년도 투자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결성금액		투자금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	정부출자	100	45.7 (26.9)	83.1	19.9	-	-	-
	민간출자	70						
2021	정부출자	200	-	10.0 **(2.8)**	86.0	82.8	46.0	79.7
	민간출자	156						
2022	정부출자	200	-	-	42.5 **(7.2)**	285.0	135.0	85.9
	민간출자	387						
2023	정부출자	150	-	-	-	0 **(0.0)**	121.2	56.9
	민간출자	97						
2024	정부출자	150	-	-	-	-	10.0 **(2.6)**	81.8
	민간출자	235						
2025	정부출자	150	-	-	-	-	-	20.0 **(4.5)**
	민간출자	29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1차연도의 투자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운용사 선정과 자펀드 결성, 투자 대상 발굴 및 심사 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펀드 결성 일정을 보면, ①운용사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와 평가 등에 3개월이 소요되고, ②이후 운용사가 관리할 자펀드 결성(민간출자자 모집)에 3개월 이상이 추가 소요되고 있음.[5)]

2025년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6월에 혁신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는 등 펀드 조성 시기를 전년도보다 약 3개월 앞당겨 9월부터 투자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은 여전히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정부 출자금의 집행 효율성과 투자 효과성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운용사 모집 단계부터 유망 투자처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거나 투자 심사 및 집행 절차를 조기에 병행 추진하는 등 1차년도 자펀드 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국토교통부는 펀드가 결성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25년 출자사업 진행시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함. 이는 자펀드 결성에 3개월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신속한 자펀드 결성 필요 (금융위원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대규모의 예산이 한국산업은행 모펀드계정에 유보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과정이 속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프로젝트별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자펀드 결성 기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상당수의 프로젝트에서 자펀드 결성 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2025년에도 모든 프로젝트(경남 거제, 전남 장성, 충남 태안)가 11월 이후에 선정되었고, 이 중 경남 거제와 충남 태안의 경우 2026년 4월 말 현재까지도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자펀드 결성이 만성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대규모의 예산이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계정에 유보되었고, 모펀드 약정액 또한 2026년 3월말 기준 6,000억원 중 3,228억원에 불과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관련 재원 흐름]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재정	산업은행 재정모펀드계정	지역활성화 투자모펀드	각 자펀드
투입액	200,000	200,000	21,200	20,847
잔액(연도말)	0	178,800	353	0

주) 2025년 말 기준이며, 펀드 운영비용 및 이자수익은 고려되지 않았음
자료: 금융위원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별 약정액 및 투자액 현황]

(단위: 억원)

지역명	프로젝트명	총사업비	모펀드 약정액	자펀드		
				결성여부	약정액	투자액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680	68	결성완료 (PF대출 모집 중)	136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876	39	투자완료 (공사 진행 중)	78	78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14,362	1,435	결성완료 (공사 진행 중)	2,872	835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8,191	786	재심사 중	1,572	-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900	90	결성완료 (PF대출 모집 중)	180	-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7,200	420	결성 중	840	-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3,959	372	투자완료 (공사 진행 중)	745	745
충남 태안	Seed Farm	177	18	결성 중	35	-
합 계		36,345	3,228	-	6,458	1,658

주) 2026년 6월 말 기준이며, 볼드 처리된 지역은 2026년 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을, 이탤릭 처리된 지역은 2026년 6월 기준 인구관심지역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유보금 및 모펀드 미약정액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펀드 결성 기한 연장 조건인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도로 명확히 설정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신속한 자펀드 투자 필요 (금융위원회)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제6호 펀드는 미국 관세 리스크 등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신속 대응 차원에서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펀드 투자 실적이 부진하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펀드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6호 펀드는 제3호 펀드와 유사하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주 투자 목적으로 하였으며, 전액 후순위로 출자되는 국가재정 500억원을 비롯한 정책자금 5,000억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의 매칭출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 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2차전지,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

[역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주요 현황]

구 분	제1호(2018)	제2호(2020)	제3호(2021)	제4호(2023)	제5호(2024)	제6호(2025)
재정출자액	-	750억원	675억원	-	500억원	500억원
투자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위주(대기업 포함)				
주 목적	조선·건설중장비·철강 등 전통제조업 분야 기업 지원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기업의 차입수요에 대응하여 투자 방식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 대비	한계·취약기업 증가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자금 공급	금리·물가 상승 등 경제 하방 압력에 따른 **구조조정 수요 대비**	美 관세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 대비**

자료: 금융위원회

위와 같은 조성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제6호 펀드는 2025년 말 기준 상대적으로 투자기간 및 운용기간이 짧은 프로젝트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전무하며, 2026년 4월 말 기준으로 결성 완료된 제6호의 4개 펀드 중 당초 조성 취지와 같이 주력산업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는 1개에 불과하는 등 투자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기업구조혁신펀드 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결성 현황			집행 현황		
구분	펀드 구분	자펀드 수	모펀드 총액	민간 자금	자펀드 결성(A)	투자업체 수	투자실적 (B)	집행률 (=B/A)
1호 (2018~)	소 계	12	5,415	11,026	16,441	48	15,995	97.3%
	프로젝트	6	1,415	4,798	6,213	5	6,213	100.0%
	블라인드	6	4,000	6,228	10,228	43	9,782	95.6%
2호 (2020~)	소 계	17	5,015	10,836	15,851	45	15,238	96.1%
	프로젝트	12	2,006	6,875	8,881	12	8,881	100.0%
	블라인드	5	3,009	3,961	6,970	33	6,356	91.2%
3호 (2021~)	소 계	13	4,510	13,283	17,793	45	17,181	96.6%
	프로젝트	7	1,510	8,770	10,280	7	10,280	100.0%
	블라인드	6	3,000	4,513	7,513	38	6,901	91.9%
4호 (2023~)	소 계	10	5,000	6,190	11,190	20	6,047	54.0%
	프로젝트	5	2,200	2,800	5,000	5	3,059	61.2%
	블라인드	5	2,800	3,390	6,190	15	2,988	48.3%

(단위: 억원, 개)

구 분			결성 현황			집행 현황		
구분	펀드 구분	자펀드 수	모펀드 총액	민간 자금	자펀드 결성(A)	투자업체 수	투자실적 (B)	집행률 (=B/A)
5호 (2024~)	소 계	6	5,000	8,647	13,647	16	4,031	29.5%
	프로젝트	-	1,650	1,850	3,500	-	-	-
	블라인드	6	3,350	6,797	10,147	16	4,031	39.7%
6호 (2025~)	소 계	1	5,000	4,088	9,088	-	-	-
	프로젝트	-	2,000	1,750	3,750	-	-	-
	블라인드	1	3,000	2,338	5,338	-	-	-
합계		59	29,940	54,070	84,010	174	58,492	69.6%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말 기준 제6호 프로젝트 펀드의 투자 실적 부재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과거 제1호 내지 제3호 운용 사례 대비 적정 진도율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기존 펀드와 제6호 펀드는 조성 배경과 취지가 상이하며, 제6호 펀드는 기존 펀드의 투자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 등의 위기 상황 대응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이므로 투자의 적정 진도율을 과거 운용 사례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초 제6호 펀드의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후 결성 지연 반복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펀드는 자펀드의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추가 유예기간 부여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용사 선정단계에서 결성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시장 공급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펀드 결성 현황을 보면, 2025년 운용사 선정 이후 결성된 펀드 중 최초 결성시한(3개월) 내 결성된 비율은 55%에 그쳤으며, 35%는 2차 결성시한(3~6개월)을 거쳐 결성되었고 10%는 추가 유예기간 이후에야 결성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펀드 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 분		정부 출자액	자펀드 조성 규모	선정 운용사	펀드 결성수 (비율) (a)	운용사 선정 후 펀드결성기간					
						1차 결성시한 (3개월 이내)		2차 결성시한 (3개월 초과~6개월)		추가 유예기간 (6개월 초과)	
						펀드 수(b)	비중 (b/a)	펀드 수(c)	비중 (c/a)	펀드 수(d)	비중 (d/a)
모태펀드 (문화)	2023	2,100	4,286	15	15(100)	6	40	6	40	3	20
	2024	3,500	6,791	15	15(100)	6	40	6	40	3	20
	2025	**3,550**	**5,168**	**15**	**12(75)**	**4**	**33**	**6**	**50**	**2**	**17**
모태펀드 (영화)	2023	250	530.4	3	3(100)	3	100	-	-	-	-
	2024	325	653	2	2(100)	2	100	-	-	-	-
	2025	**598**	**1,018.1**	**4**	**4(100)**	**4**	**100**	-	-	-	-
콘텐츠 전략펀드	2024	450	2,590	5	5	3	60	2	40	-	-
	2025	150	-	1	-	-	-	-	-	-	-
글로벌 리그펀드	**2025**	**40,000**	-	-	-	-	-	-	-	-	-
모태펀드 (스포츠)	2023	175	264	3	3(100)	1	33	2	67	-	-
	2024	374.5	541.5	4	4(100)	2	50	2	50	-	-
	2025	**350**	**500.2**	**4**	**4(100)**	**3**	**75**	**1**	**25**	**-**	**-**
모태펀드 (관광)	2023	300	430	2	2(100)	-	-	2	100	-	-
	2024	350	540.8	2	2(100)	-	-	2	100	-	-
	2025	**450**	**-**	**2**	**-**	**-**	**-**	**-**	**-**	**-**	**-**
2025		**44,948**	**6,686.3**	**25**	**20(80)**	**11**	**55**	**7**	**35**	**2**	**10**

주 1) 2025년 12월말 기준
2) 정부출자액 = 예산액 + 회수액
3) 선정 운용사 25개 중 5개의 경우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운용사 선정 이후 자펀드 결성이 지연될 시 정책자금의 시장 공급 또한 그만큼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제 투자수요와 시장여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였는지,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 역량을 적절히 평가하였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1차 결성시한 내 자펀드 결성 비율이 절반 수준(55%)에 그치고,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등 정책자금의 시장 공급 시기를 늦추어 정책효과를 저하시킨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용사 선정단계에서 민간출자자 모집 및 자펀드 결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 유예기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점검하여 정책자금의 시장 공급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6)]

⑤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 필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을 활용한 모펀드 결성 시 민간 출자자 모집에 실패하였고, 이후 자펀드 결성도 연내 완료되지 않아 투자 개시가 2026년 6월 이후로 지연되면서 정부재정의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펀드 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은 2024년 모펀드 결성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투자는 2025년 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으며,[7)] 2025년에도 총 200억원 예산(방미통위 50억원, 문체부 150억원)을 투입하여 추가 모펀드 결성이 추진되었으나, 민간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예산만으로 모펀드를 결성하기로 결정되었고 2025년 9월 26일 모펀드 결성이 완료되었음.

이후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12월 29일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조합 결성 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조합 결성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2026년 6월 이후에야 실제 투자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으로, 2025년도 예산의 투입효과가 2026년 6월 이후에야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예산을 활용하여 조성 중인 2호 펀드의 자펀드 운용사가 기한 내에 자펀드를 결성하여 실제 투자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

6) 또한 콘텐츠 전략펀드(2025.12.29.)·글로벌 리그펀드(2025.10.31.) 및 모태펀드 관광계정(2025.11.26)의 경우 운용사 선정 자체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운용사 공고 및 선정과정에서 추가 관리가 필요해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의 경우 운용사 조기 선정을 위해 전년 대비 공고 일정을 앞당겨 운영하였다는 설명임.
- 1차 정시 공고 : ('25) '25.2.3 → ('26) '26.1.23.
- 2차 정시 공고 : ('25) '25.3.24. → ('26) '26.3.23.

7)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간 각각 950억원 및 550억원을 출자하여 총 1,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민간 매칭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함.
2025년 10월1일 부터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 사업을 수행 중임.

하고, 2024년 예산을 활용하여 조성 중인 1호 펀드의 프로젝트 펀드 운용사 확보를 위한 추가 선정 절차는 2026년 6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므로 운용사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자펀드 운용사 선정 현황]

(단위: 억원, 개, 2026.5.29.기준)

지원 분야			모펀드		지정 출자	모펀드 출자 비율	목표 금액	결성 금액	운용사 수	비고
			재정	비재정	산은					
1호	블라인드 펀드	IP 확보	100	150	-	40% 이내	630	630	1	결성 완료
			160	240	-	40% 이내	1,000	905	1	결성 완료
		기술 심화	160	40	200	40% 이내	1,000	1,055	2	결성 완료
	프로젝트 펀드	1차	280	20	-	40% 이내	740	260	2개 이상[주2]	추가선정·결성중
		2차	100	150	-	40% 이내	630	110	1개 이상[주3]	추가선정·결성중
소계			800	600	200	40% 이내	4,000	2,960	7개 이상	-
2호	블라인드 펀드	IP 확보 및 기술 심화	200	-	-	40% 이내	500	-	1	결성중
합계			1,000	600	200	40% 이내	4,500	2,960	8개 이상	-

주1)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율은 50% 임
2) 현재 2개펀드 결성하였으나 잔여재원으로 추가 선정·결성 진행중
3) 현재 1개펀드 결성하였으나 잔여재원으로 추가 선정·결성 진행중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⑥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출자자금 투자집행 노력 필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가 2020~2025년까지 출자한 출자금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출자 후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6년 3월 기준 모태펀드 특허계정 내 출자금이 투자(자펀드 결성)로 이어진 성과를 살펴보면, 상당 규모의 투자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유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임.

예를 들어 2022년 특허기술사업화를 위해 총 2,261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되었으나 2026년 3월말 기준으로 534억 1,700만원의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잔여기간은 2년 미만임.

[2020~2025년 정부출자에 따른 모태펀드 특허계정 내 투자운용 현황(2026년 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분야	결성규모			투자 집행액 (B)	미투자 금액 (C=A-B)	운용 비용 (D)	예상 투자 여력 (C-D)	투자 잔여 기간
		정부 출자금	민간	총액 (A)					
2020년	IP기반 스타트업육성	5,000	4,000	9,000	7,616	1,384	900	484	-
	IP직접투자	24,000	16,700	40,700	36,920	3,780	4,070	-	-
	공공IP 사업화	18,500	30,250	48,750	46,438	2,312	4,875	-	-
	특허기술사업화	30,000	176,200	206,200	178,610	27,590	20,620	6,970	-
2021년	IP직접투자	30,000	20,400	50,400	47,404	2,996	5,040	-	4년미만
	IP크라우드펀딩	7,500	6,500	14,000	11,501	2,499	1,400	1,099	-
	특허기술사업화	12,500	380,000	392,500	352,336	40,164	39,250	914	1년미만
2022년	IP기반 지역기업	22,500	20,300	42,800	31,603	11,197	4,280	6,917	3년미만
	IP기반 창업기업	9,000	6,650	15,650	11,866	3,784	1,565	2,219	2년미만
	IP직접투자	36,000	24,200	60,200	31,700	28,500	6,020	22,480	2년미만
	특허기술사업화	12,500	213,600	226,100	150,073	76,027	22,610	53,417	2년미만
2023년	특허기술사업화	30,000	28,250	58,250	42,687	15,563	5,825	9,738	5년미만
2024년	IP직접투자	11,400	11,400	22,800	5,500	17,300	2,280	15,020	2년미만
	특허기술사업화	12,500	100,000	112,500	11,500	101,000	11,250	89,750	4년미만
2025년	IP직접투자	8,000	12,210	20,210	3,000	17,210	2,021	15,189	2년미만
	IP지역특화	5,000	-	-	-	-		-	-
	특허기술사업화	22,500	-	-	-	-		-	-

주 1) 운용비용(D)은 운용사 관리보수, 법률검토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펀드 청산 시 확정되나, 결성총액(A)의 10%로 임의 가정

2) 2025년 IP지역특화, 특허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 운용사 선정 후 자펀드 결성 중

자료: 지식재산처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투자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금액은 재출자 금액으로 활용하여 신규 자펀드를 결성하고 있으며, 운용사 선정 시 자펀드를 조기 결성하는 운용사에 가점부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5년 신규 출자된 'IP지역특화' 분야와 '특허기술사업화' 분야는 아직 모펀드 민간투자금도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운용사들이 기한 내 결성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펀드 결성시한을 3개월 연장한 경우가 존재하는 등 투자지연 및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8)]

지식재산처는 정부 출자금이 민간 투자 유치 및 실제 투자로 조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다만, IP지역특화 분야의 경우 2026년 7월 26일까지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26년 6월 4일에 결성됨.

(사) 청산시점 지연 최소화 등 펀드 운용방식의 개선 필요

정책펀드는 청산기한 연장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간 미청산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청산기한 연장이 관행화되고 정부재정의 적기 회수와 재투자가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회수·청산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펀드는 통상 7~8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운용사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며, 자펀드 규약상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말 기준 청산된 자펀드 182개 중 151개(83.0%)가 청산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나, 청산기한 연장이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반적인 운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연장된 자펀드의 평균 연장기간은 약 837일(2.3년)에 달하며, 이 중 52개는 3년(1,095일) 이상 장기간 연장되었고, 24개는 청산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음.

청산기한은 존속기간 종료 시 투자자산을 정리하여 정부재정을 회수하고 이를 새로운 정책수요에 재투입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청산기한 연장이 일반화될 경우 청산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청산기한이 연장된 자펀드 중 상당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기한 연장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기간 확보라기보다 수익성이 저조한 자산의 처분을 지연시키거나 향후 저가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다만 성급한 청산은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여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간 청산이 지연되고 수익률 개선의 가능성이 제한적인 자펀드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보다 신속한 청산을 우선 검토하고, 장기 연장 사례에 대해서는 연장 사유·잔여자산의 회수 가능성 및 정부재정 회수 시점 등을 점검하여 청산기한 연장이 저수익 자산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실제 개별 부처의 정책펀드 운영 현황을 보면, 청산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자산 매각 지연 등으로 청산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① 정책펀드의 존속기간 만료 후 신속한 청산 노력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존속기간이 만료된 펀드 51개 중 청산이 완료 펀드는 10개에 불과하므로, 정책펀드의 목적이 투자뿐 아니라 회수 재원의 재순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 실적뿐 아니라 청산·회수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2014~2025년 결성된 자펀드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펀드는 문화 36개·영화 8개·관광 2개 및 스포츠 5개 등 총 51개(결성액 1조 8,845억원)이나, 이 중 실제 청산이 완료된 펀드는 총 10개에 불과함.[9)]

[2014~2025년 결성된 자펀드 중 존속기간 만료 및 청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계정명	존속기간 만료 자펀드 수	펀드결성액	청산 펀드 수		미청산 사유
				기간 연장 펀드 수	
문화	36	774,050	9	8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SPC 청산을 통한 회수 예정
영화	8	187,700	1	1	
관광	2	42,000	-	-	
스포츠	5	84,500	-	-	
합 계	**51**	**1,088,250**	**10**	**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잔여자산 매도 지연, IPO 추진 및 SPC 청산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기간 연장을 거쳐 상당수 펀드의 청산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잔여자산 매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나,[10)] 존속기간 만료 펀드의 상당수가 장기간 미청산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관리체계가 청산 지연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9) 청산된 펀드 10개 중 9개 펀드의 경우 기간 연장을 거친 후 청산되었음.

10)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존속기간 종료까지 미처분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합원 동의를 거쳐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모태펀드의 경우 자펀드의 잔여자산 및 매각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청산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존속기간 만료 후 미청산 펀드에 대한 회수·청산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특히 장기간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로부터 청산지연 사유·대응조치 내용 및 회수계획 등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청산 지연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투자처 재선정으로 인한 청산시점 지연 최소화 필요 (산업통상부)

청산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지연 및 신규 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 청산이 지연되거나, 펀드 존속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투자 후 수익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청산 예정인 일부 펀드는 자산 매각 및 분양 지연으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이 도래한 펀드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매수수요 위축 등으로 미분양이 지속되어 2021~2025년 동안 5개 펀드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등 투자금 회수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산시점이 도래한 산단환경개선펀드 투자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조성 년도	산업 단지	사업내용 (투자대상)	펀드결성액			청산 계획	청산지연 사유
			총	정부	민간		
2011	반월	호텔 & 오피스텔	606	150	456	2026년	호텔 매각 진행 중이나, 시장침체 등 수요 부재로 매각 지연
2016	창원	지식산업센터	1,055	150	905	2026년	금융권의 지식산업센터 대출규제, 금리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 기업 신규수요 감소로 분양 지연
2016	익산	호텔·컨벤션 & 지식산업센터	657	220	437	2026년	호텔 매각 진행 중이나, 수요 부재로 매각 지연 금융권의 지식산업센터 대출규제, 금리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 기업 신규수요 감소로 분양 지연
2016	남동	지식산업센터	560	80	480	2026년	금융권의 지식산업센터 대출규제, 금리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 기업 신규수요 감소로 분양 지연

(단위: 억원)

조성 년도	산업 단지	사업내용 (투자대상)	펀드결성액			청산 계획	청산지연 사유
			총	정부	민간		
2016	청주	지식산업센터	930	150	780	2026년	금융권의 지식산업센터 대출규제, 금리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 기업 신규수요 감소로 분양 지연

자료: 산업통상부

[2021~2025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존속기간 연장사례]

(단위: 억원)

연장 연도	조성 연도	산업 단지	투자대상	펀드 규모	출자액		당초 존속기한	연장 존속기한	연장 사유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
					정부	민간			
2021	2011	반월	호텔& 오피스텔	606	150	456	11.12.29 ~21.12.29.	11.12.29. ~26.12.29.	호텔 자산가치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감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호텔경영 여건 악화 지속
2024	2014	구미	오피스텔	888	140	748	14.12.31. ~24.12.31.	14.12.31. ~29.12.31.	준공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수요는 있으나 실질적 매수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지속
2025	2015	부평	지식 산업센터	530	85	445	15.09.25. ~25.09.25.	15.09.25. ~27.09.25.	준공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수요는 있으나 실질적 매수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지속
2025	2015	성서	지식 산업센터	425	85	340	15.09.25. ~25.09.25.	15.09.25. ~27.09.25.	준공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수요는 있으나 실질적 매수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지속
2025	2015	시화	오피스텔	444	100	344	15.09.25. ~25.09.25.	15.09.25. ~27.09.25.	준공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수요는 있으나 실질적 매수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지속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대출규제 및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기업 수요가 감소하여 호텔 매각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최근 10년간(2016~2025년) 청산된 2개 펀드의 수익금 및 수익률 현황을 보면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할인분양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였는데, 존속기간이나 청산시점만을 연기할 경우 부실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할인매각의 가능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음.[11]

11)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존속기간 연장은 단순 연기가 아니라 자산별 운영 활성화 및 신규 수익원 발굴 등 자산가치 제고 노력을 병행하며, 시장 회복 시 수익 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2016~2025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청산 현황]

(단위: 백만원)

조합명 (펀드명)	선정일	만료일	청산일	청산		수익률 저조 사유
				수익금	수익률	
○○○	'12.12.27.	'22.12.27.	'22.12.16.	15,441	△3.49%	일부 근린생활시설 할인분양에 따른 청산손실
△△△	'13.12.17.	'23.12.18.	'22.12.16.	10,881	8.81%	-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미청산 및 존속기간을 연장한 펀드들의 수익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미청산과 존속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펀드들의 관리 방안도 사전에 준비하여 수익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자펀드 청산 지연 문제 (지식재산처)

2014~2025년간 결성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 18개 중 2026년 3월말 기준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5개에 불과한데, 적기 청산과 수익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14~2025년 결성된 자펀드 중 2026년 3월말 기준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는 18개이고, 이 중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5개에 불과함.[12)]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일부 펀드의 청산 지연은 자펀드 운용사가 수익 극대화 등을 위해 청산 연장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구주매각시스템에 잔여자산을 의무로 등록하게 하고, 이후 제3자에 구주를 매각하거나 운용사가 잔여자산을 직접 인수하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12) 자펀드는 통상 7~8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운용사는 자펀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며, 원칙적으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총회개최가 원칙이나, 90일 이내로 잔여자산 처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로 청산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내용〉

참고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공통 내용
(중략) ④ 청산인(운용사)은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펀드 청산이 지연될 경우 신규 정책펀드 출자나 재투자로 연결되지 못해 정책자금의 회전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매각 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 잔여자산이 부실·비유동 자산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할인매각의 가능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가급적 계획대로 자펀드의 청산과 수익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14~2025년 결성된 특허계정 자펀드 중 존속기간 만료 및 청산 현황]

(단위: 백만원)

조합명 (펀드명)	펀드결성액			결성일	만료일	기간연장 여부 (연장일수)	청산 여부	기준 (목표) 수익률	청산시 수익률	존속기관이 도과에도 불구한 미청산 사유
	총	모태	모태 외							
알ㅇㅇㅇㅇ조합	17,000	10,000	7,000	2014-02-28	2022-02-27	O (730일)	O	7%	7.32%	-
Iㅇㅇㅇㅇ조합	30,000	10,000	20,000	2014-07-11	2022-07-10	O (청산중)	X	5%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SPC 청산을 통한 회수 예정
Iㅇㅇㅇㅇ조합	10,000	8,000	2,000	2014-10-31	2022-10-30	O (424일)	O	7%	17.7%	-
Pㅇㅇㅇㅇ펀드	56,000	10,000	46,000	2014-12-05	2022-12-04	O (1,096일)	O	7%	7.12%	-
Kㅇㅇㅇㅇ조합	50,000	10,000	40,000	2015-02-10	2023-02-09	O (1,096일)	O	7%	7.77%	-
서ㅇㅇㅇㅇ조합	10,000	5,000	5,000	2015-07-06	2023-07-05	O (169일)	O	5%	19.4%	-
Bㅇㅇㅇㅇ조합	10,000	5,000	5,000	2015-10-02	2023-10-01	O (청산중)	X	5%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Iㅇㅇㅇㅇ조합	15,000	10,000	5,000	2015-11-13	2023-11-12	O (청산중)	X	5%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기존주주,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아ㅇㅇㅇㅇ조합	15,000	10,000	5,000	2016-04-25	2024-04-24	O (청산중)	X	6%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Mㅇㅇㅇㅇ펀드	15,000	10,000	5,000	2016-09-30	2024-09-29	O (청산중)	X	5%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단위: 백만원)

조합명 (펀드명)	펀드결성액			결성일	만료일	기간연장 여부 (연장일수)	청산 여부	기준 (목표) 수익률	청산시 수익률	존속기관이 도과에도 불구한 미청산 사유
	총	모태	모태 외							
알○○○○펀드	15,000	10,000	5,000	2016-06-21	2024-06-20	O (청산중)	X	5%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기존주주 및 신주 유상증자 시 구주매각 예정
I○○○○조합	15,000	10,000	5,000	2016-06-23	2024-06-22	O (청산중)	X	5%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제3자 매각, M&A를 통한 회수 예정
I○○○○조합	45,000	34,000	11,000	2016-09-09	2024-09-08	O (청산중)	X	6%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제3자 매각 및 M&A를 통한 회수 예정
I○○○○2호	20,000	10,000	10,000	2016-10-27	2024-10-26	O (청산중)	X	5%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SPC 청산을 통한 회수 예정
유○○○○조합	15,000	10,000	5,000	2017-09-26	2025-09-25	O (청산중)	X	6%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기존주주 및 신주 유상증자 시 구주매각 예정
B○○○○조합	15,000	10,000	5,000	2017-10-17	2024-10-16	O (청산중)	X	5%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시○○○○펀드	18,000	10,000	8,000	2018-01-08	2026-01-07	O (청산중)	X	5%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최대주주 및 신주 유상증자 시 구주매각 예정
2○○○○조합	76,500	5,600	70,900	2019-11-15	2024-11-14	O (청산중)	X	8%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자료: 지식재산처

(3) 사후 관리 단계

(사) 정책펀드 운용손실 발생 문제

정책펀드는 정부재정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청산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손실이 반복되는 운용사나 투자분야에 대해서는 운용성과와 투자심사 체계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운용사 선정, 출자기준 및 펀드 설계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펀드는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및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펀드의 성과는 단순한 투자집행 실적뿐 아니라 청산 이후의 수익률과 손실 발생 현황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여 향후 펀드 운용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청산된 자펀드의 정책펀드별 손익 현황을 보면, 일부 정책펀드는 청산 수익률이 양(+)임에도 운영비용 등을 차감한 정부 회수액 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글로벌콘텐츠(△16.2%)·해외진출(△7.1%)·제작초기(△10.6%) 등 개별 자펀드에서도 정부 출자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2021~2025년 청산된 자펀드 손익 현황]

(단위: 일, 백만원)

구 분	분야명	연장 일수	수익률	펀드 조성액		정부 회수액 (B)	손익 (B-A)
				정부(A)	민간		
중소기업모태펀드		1,058	10.5%	967,700	6913,430	1485,288	517,588
AAA	글로벌콘텐츠	1,522	△16.2%	40,000	83,640	14,065	△25,935
BBB	해외진출	182	△7.1%	16,000	24,000	894	△15,106
CCC	제작초기	1,461	△10.6%	14,000	8,500	4,797	△9,203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819	1.4%	203,000	140,520	192,871	△10,129
DDD	농식품	1,544	△7.9%	10,000	15,000	3,122	△6,878
EEE	수산	495	△7.3%	10,000	5,000	4,429	△5,571
FFF	수산	1232	△6.2%	10,000	5,000	6,452	△3,548
…							

(단위: 일, 백만원)

구 분		연장 일수	수익률	펀드 조성액		정부 회수액 (B)	손익 (B-A)
	분야명			정부(A)	민간		
혁신성장펀드		30	0.7%	79,999	185,053	76,977	△3,022
aaa	일반・지방행정	28	△12.6%	6,000	14,740	1,558	△4,442
bbb	일반・지방행정	28	△6.9%	6,000	14,000	1,921	△4,079
ccc	일반・지방행정	31	△9.3%	2,857	3,836	1,322	△1,535
…							
혁신모험펀드		-	78.4%	39,300	113,051	66,446	27,146
기업구조혁신펀드		86	7.8%	21,086	1202,219	25,031	3,945
ddd	일반・지방행정	605	△49.1	4,508	150,492	-	△4,508
…							
합 계		837	10.6%	1,289,999	7,352,054	1,821,582	531,583

주 1) 정책펀드별 연장일수의 경우 평균값 기준
2) 정책펀드별 수익률은 펀드 조성액을 가중치로 산정한 가중평균값 기준
3) 수익률이 양수이더라도 운영비용 등을 차감한 정부 회수액 기준으로는 펀드 조성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책목적 상 모든 펀드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일부 손실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정책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정부재정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정책펀드인 이상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과 관리가 필요할 것임. 특히 동일한 운용사 또는 특정 투자분야에서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시장여건의 영향인지, 투자대상 선정, 투자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책펀드의 운용성과는 민간 투자자가 해당 분야의 투자 가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점(benchmark)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낮은 수익률이나 반복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 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정책펀드의 투자집행 실적뿐 아니라 청산수익률과 손실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손실이 반복되는 운용사나 투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절차, 운용성과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운용사 선정, 출자기준 및 펀드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정책펀드의 운용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 정책펀드 회수재원 재투자 관리체계 강화 필요

정책펀드 회수재원의 재투자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책펀드 관련 자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개정된 법률 상 규정 내 명시되지 않은 정책펀드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 등으로 관리 대상 정책펀드의 범위를 정비하고, 회수재원 추계 및 재투자 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대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모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펀드는 자펀드가 청산되면 정부 출자금과 운용성과에 따른 정부 배분액이 발생하게 되며, 그동안에는 각 펀드의 규약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세부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재원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신규 자펀드 등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음.[13]

「국가재정법」 제17조는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14] 그 예외의

---

1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세부지침」 (p.228)

18. 출자금

ㅇ 정책목적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펀드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연간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펀드운용주체는 「펀드운용지침」에 따른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및 펀드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연간 펀드운용계획은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당해연도 출자한도, 출자분야, 투자의무비율, 기준수익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사항은 기금을 통한 펀드출자사업의 예에 따른다.

14)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에 열거하고 있음에도, 자펀드 청산금의 재투자는 그동안 법률상 근거 없이 집행지침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음.

이 경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05~2025년 누적 청산액 기준으로 보면, 정부 배분액 8조 519억원 중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3,370억원(4.2%)에 불과한 반면, 7조 853억원(88.0%)은 신규 자펀드 등에 재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정책펀드에서 청산금 재투자가 일반적인 운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 배분액 전액을 재투자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97.3%, 64.3%를 재투자하는 등 회수재원의 재투자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5~2025 부처별 펀드 누적 청산액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누적 청산액 (정부 배분액)	국고 귀속		재투자		기타	
			비중		비중		비중
중기부	48,245	-	-	46,966	97.3	1,279	2.7
문체부	10,659	-	-	6,849	64.3	3,810	35.7
농식품부	5,227	-	-	5,227	100.0	-	-
지재처	4,991	-	-	4,612	92.4	379	7.6
금융위	4,332	2,494	57.6	1,838	42.4	-	-
과기정통부	3,120	613	19.6	2,091	67.0	416	13.3
복지부	1,632	-	-	1,510	92.5	122	7.5
국토부	918	-	-	802	87.4	115	12.6
해수부	536	-	-	536	100.0	-	-
기후부	328	-	-	277	84.5	51	15.5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0.>

⑦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위: 억원, %)

부처	누적 청산액 (정부 배분액)	국고 귀속		재투자		기타	
			비중		비중		비중
산업통상부	263	263	100.0	-	-	-	-
노동부	151	-	-	145	95.9	6	4.1
교육부	117	-	-	-	-	117	100.0
합계	80,519	3,370	4.2	70,853	88.0	6,296	7.8

주 1) 정책펀드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2005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현황 기준
2) 기타: 펀드 관리보수, 회계감사 비용, 수탁은행 보수, 전산비용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2026년 3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명시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및 재투자 계획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국가재정법」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을 마련하였음.

[「국가재정법」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규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개정일: 2026.3.10. 시행일: 2026. 9. 11.

한편 「국가재정법」 제53조6항 및 제53조의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국가재정법」 제53조제6항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개별 법률이나 행정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정책펀드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등을 통해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회수재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모펀드-자펀드 유형 펀드 법령상 근거]

정책펀드명	부처명	법령상 근거
중소기업모태펀드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기후부, 국토부, 지재처, 교육부, 우주청	「벤처투자법」 제70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농식품부, 해수부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7조
특별인프라펀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행정규칙) 제36조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	기후부	「환경기술산업법」제6조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국토부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
K-방산수출펀드	방사청	「방위산업발전법」 제3조, 제10조, 제18조
반도체생태계펀드	금융위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금융위	-
기업구조혁신펀드	금융위	-
원전산업성장펀드	금융위	-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문체부, 방미통위	-

주) 정책펀드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2005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현황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국가재정법」 제53조의2는 회수재원 추계 및 재투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과정에서 출자 예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

가. 개 요

(1) 개념 및 배경

「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수출’은 물품·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를 고려하면 기업의 해외진출은 협의로 보면 해외직접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정부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수출 지원까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출 지원 사업을 포함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함.[1)]

2025년도 해외직접투자액은 7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여 2023년과 2024년의 감소세에서 다시 반등하였으며, 2025년도 수출액은 7,09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모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문의: 02-6788-5701

---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 확장 ·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021~2025년도 해외직접투자액 및 수출액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해외직접투자액 (증감률)	770.4 (32.4)	834.8 (8.4)	660.4 (△20.9)	661.3 (0.1)	718.8 (8.7)
수출액 (증감률)	6,444 (25.7)	6,836 (6.1)	6,322 (△7.5)	6,836 (8.1)	7,097 (3.8)

주) 해외직접투자액의 경우 총투자 기준이며, 수출액의 경우 통관기준임
자료: 「해외직접투자동향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26.3.
「연간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부, 2026.1.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국제통상 질서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정부는 2025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술 선도 성장을 기반으로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는 부처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해외거점 구축·해외마케팅·해외인증·정책금융 및 해외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다수 부처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사업 간 역할분담·연계성 및 정책수단의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관련 정책현황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시책은 통상진흥 시책의 기본방향,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무역·통상 협상 추진방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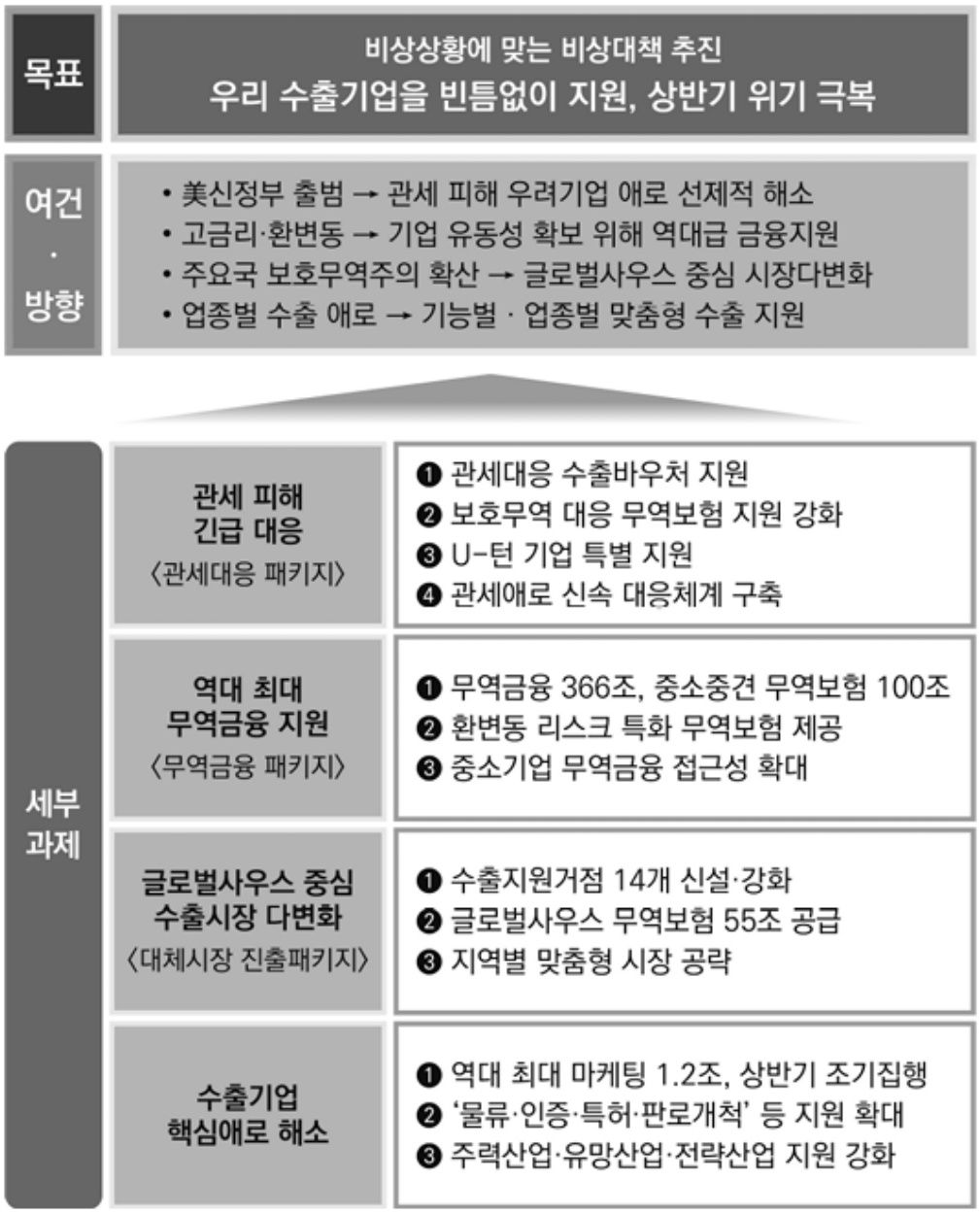
「2025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2025.3.31.)은 미국의 관세조치, 고금리·환변동,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여건에 대응하여 관세피해 긴급 대응, 무역금융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전략을 제시하였음.

이어 「2026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2026.3.30.)은 소비재·전력기기·바이오·방산·원전 등 8대 전략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수출 지원체계 혁신 및 수출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3대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품목·시장 다변화, 전략산업 중심의 수출 확대 및 수출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2) 「대외무역법」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진흥 시책의 기본 방향
2.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 · 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5. 통상 관련 정보수집 · 분석 및 활용 방안
6.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5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자료: 「2025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산업통상부, 2025.3.

(3)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수출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조 8,817억 5,7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액(2조 592억 3,200만원) 대비 8,225억 2,500만원(39.7%) 증가하였음. 한편, 2025년도 예산액 2조 9,968억 2,700만원 대비 결산액은 2조 8,817억 5,7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2%로 나타남.

2025년 해외진출기업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미국 관세조치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결산액이 2024년 450억원에서 2025년 3,800억원으로 3,350억원(744.4%) 증가한 데 더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결산액이 1,055억 2,200만원(94.4%),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업 결산액이 1,369억 5,000만원(39.6%)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

[2025년 부처별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 결산액(A)	2025년		증감액 (B-A)	2026년 예산액
				예산액	결산액(B)		
중기부	일반회계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18,525	18,525	18,525	-	23,325
		수출지원기반활용	111,838	217,360	217,360	105,522	250,203
		여성기업육성	3,956	3,956	3,956	-	4,286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0,779	92,058	91,905	1,126	105,756
	중진	글로벌화지원플랫폼	33,189	31,589	31,300	△1,889	31,589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345,500	482,450	482,450	136,950	416,378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1,130	17,550	17,356	6,226	18,585
	소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	-	-	9,520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101,930	79,695	79,695	△22,235	78,719
산업부	일반회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9,806	88,750	88,726	8,920	81,620
		무역보험기금출연	45,000	380,000	380,000	335,000	170,500
		무역보험환급금등	12,816	17,284	12,500	△316	20,200
		세계엑스포참가지원	16,705	10,390	10,318	△6387	14,048
		수출경쟁력강화지원	42,612	47,501	47,501	4,889	41,404
		수출지원기반활용	86,394	180,171	180,171	93,777	214,074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 결산액(A)	2025년		증감액 (B-A)	2026년 예산액
				예산액	결산액(B)		
		해외진출기반구축	975	829	829	△146	746
		해외플랜트진출확대	8,974	8,200	8,200	△774	8,200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금지급	374,248	477,000	377,392	3,144	400,021
기후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30,000	60,000	60,000	30,000	60,000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0,414	30,265	30,032	△382	31,20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400	1,024	1,024	624	824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	270	593	593	323	493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	-	-	-	8,247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21,149	86,163	86,163	65,014	19,726
		전력해외진출지원	8,463	33,336	33,185	24,722	31,400
	기후대응기금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6,395	-	-	-	-
농식품부	농특회계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	-	975	975	975	975
		농산업수출활성화	6,031	10,024	10,024	3,993	9,159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93,705	92,729	92,729	△976	112,851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9,047	9,910	9,401	354	11,944
		농식품시장개척	2,228	4,804	4,804	2,576	4,685
		농식품해외시장진출	50,264	51,289	51,289	1,025	57,602
	농지기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999	2,835	2,835	△164	2,710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6,700	6,000	6,000	△700	4,000
방사청	일반회계	방산고도화지원	14,574	21,887	21,887	7,313	51,238
		방산수출 투자지원	-	20,005	20,005	20,005	30,005
		방위산업 수출지원	79,524	71,611	71,611	△7,913	65,696
		방위산업 이차보전	8,549	6,029	5,517	△3,032	6,324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7,718	22,663	22,613	14,895	37,150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	8,000	8,000	8,000	1,200
		국가간협력기반조성	4,570	4,880	4,880	310	5,88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 결산액(A)	2025년		증감액 (B-A)	2026년 예산액
				예산액	결산액(B)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4,864	3,821	3,821	△1,043	3,126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	2,641	2,952	2,952	311	2,910
		연구산업육성사업	1,010	700	700	△310	700
		DB산업육성	720	560	560	△160	-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457	381	381	△76	457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150	142	142!	150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100	100	100	-	-
	지특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	-	5,000	5,000	5,000	11,550
	방발기금	ICT창의기업육성	8,072	5,695	5,695	△2,377	4,786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8,860	6,765	6,765	△2,095	4,200
		정보통신방송해외진출지원	986	725	725	△261	565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51,853	27,026	27,026	△24,827	8,993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682	505	505	△177	505
		차세대 방송미디어 산업 선도 기반 조성	-	1,000	972	972	692
	정보통신 진흥기금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2,267	1,440	1,261	△1,006	989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	1,000	1,000	1,000	-
		해외IT지원센터운영	6,905	6,502	6,502	△403	6,502
문체부	일반회계	게임산업육성	12,454	14,408	13,597	1,143	10,711
		미술진흥기반구축	-	1,430	1,430	1,430	1,430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5,755	6,881	6,730	975	7,738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활성화	1,000	2,950	2,950	1,950	3,85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4,300	2,532	2,532	△1,768	1,770
	관광진흥 개발기금	공예관광산업육성	950	-	-	△950	-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7,019	7,840	7,579	560	7,840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20,629	24,770	24,449	3,820	23,823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 결산액(A)	2025년		증감액 (B-A)	2026년 예산액
				예산액	결산액(B)		
해수부	일반회계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	-	-	-	3,000
		해양수산 딥테크 육성 기술개발	-	1,500	1,500	1,500	2,750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674	3,682	3,675	3,001	-
	지특회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	-	-	-	6,682
	교특회계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590	600	600	10	900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542	542	542	-	1,042
	농특회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46,386	52,145	52,145	5,759	76,987
지재처	일반회계	IP-R&D전략지원(R&D)	2,693	2,970	2,964	271	2,020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6,837	7,533	7,519	682	5,784
		기술 분쟁대응 지원	9,723	7,480	7,471	△2,252	7,324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5,390	8,098	8,070	2,680	17,097
		지식재산 창출지원	19,281	16,368	16,350	△2,931	19,882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	1,820	1,820	1,820	1,820
국토부	일반회계	물류산업지원	110	110	110	-	110
		철도산업발전지원	-	2,288	2,222	2,222	2,288
		해외인프라시장개척	22,465	25,676	20,955	△1,510	25,551
복지부	일반회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4,180	6,585	6,585	2,405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	-	-	-	48,026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2,244	2,320	2,246	2	-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5,417	5,906	5,167	△250	8,940
		제약산업 육성지원	1,683	1,613	1,613	△70	-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531	640	582	51	640
산림청	일반회계	국제산림협력	438	447	428	△10	447
	농특회계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11,167	13,240	13,228	2,061	12,908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2,635	2,409	2,323	△312	4,299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 결산액(A)	2025년		증감액 (B-A)	2026년 예산액
				예산액	결산액(B)		
외교부	일반회계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437	411	398	△39	380
		해외진출기업 활동 지원	1,768	1,809	1,644	△124	1,809
농진청	일반회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1,835	2,160	1,677	△158	1,944
금융위	일반회계	핀테크 지원 사업	352	1,310	1,300	948	1,200
우주청	일반회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	805	805	804	△1	1,135
기상청	일반회계	기상산업활성화	879	786	786	△93	639
동포청	일반회계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208	570	516	308	200
노동부	일반회계	노사발전재단지원	200	400	400	200	400
기재부	일반회계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운영	566	506	369	△197	75
법무부	일반회계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197	337	329	132	273
교육부	일반회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150	150	150	-	200
소방청	일반회계	소방산업육성지원	148	148	148	-	248
합 계			2,059,232	2,996,827	2,881,757	822,525	2,802,775

주 1) 2024년, 2025년, 2026년 해외진출기업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된 사업 대상 기준
2) 2025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부처별 결산 현황

부처별 결산 현황을 보면 24개의 부처 중 산업통상부가 1조 1,056억 3,3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9,425억 4,7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2,109억 9,7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1,780억 5,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2025년도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 부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부처	세부 사업수	주요 산업분야	2024 결산액(A)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결산액(B)	증감(B-A)	
산업부	9	전 산업 분야	667,530	1,210,125	1,105,633	△104,492	950,813
중기부	8	전 산업 분야	716,847	943,183	942,547	225,700	938,361
기후부	6	환경・에너지・재활용	96,891	211,381	210,997	114,106	151,895
농식품부	8	농식품・농산업	170,974	178,566	178,057	7,083	203,926
방사청	4	방위산업	102,647	119,532	119,020	16,373	153,263
과기정통부	20	클라우드・AI・ICT	101,705	99,865	99,600	△2,105	90,355
문체부	7	저작권・콘텐츠・게임	52,107	60,811	59,267	7,160	57,162
해수부	6	해운・물류・수산	48,192	58,469	58,462	10,270	91,361
지재처	6	전 산업 분야	43,924	44,269	44,194	270	53,927
국토부	3	물류・건설・철도	22,575	28,074	23,287	712	27,949
복지부	5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14,055	17,064	16,193	2138	57,606
산림청	2	조림・육림・임산물가공	11,605	13,687	13,656	2,051	13,355
조달청	1	정부조달	2,635	2,409	2,323	△312	4,299
외교부	2	전 산업 분야	2,205	2,220	2,042	△163	2,189
농진청	1	농산업	1,835	2,160	1,677	△158	1,944
금융위	1	핀테크	352	1,310	1,300	948	1,200
우주청	1	우주항공	805	805	804	△1	1,135
기상청	1	기상산업	879	786	786	△93	639
재외동포청	1	소비재・첨단제조	208	570	516	308	200
고용부	1	전 산업 분야	200	400	400	200	400
재경부	1	전 산업 분야	566	506	369	△197	75
법무부	1	전 산업 분야	197	337	329	132	273

(단위: 개, 백만원)

부처	세부 사업수	주요 산업분야	2024 결산액(A)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결산액(B)	증감(B-A)	
교육부	1	에듀테크	150	150	150	-	200
소방청	1	소방용품 제조업	148	148	148	-	248
합 계			2,059,232	2,996,827	2,881,757	822,525	2,802,77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유형별 결산 현황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은 지원 내용별로는 ①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등 인프라 조성, ② 외국으로의 물품 및 용역 등 이전을 위한 수출 지원, ③ 현지 법인 설립과 같은 해외 사업화 지원으로 분류되고,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① 융자, 이차보전, 보증 등 금융지원과 ② 인력양성, 기술지원, 마케팅 등 비금융 지원으로 구분됨.

[수출·해외진출기업 지원 유형 구분]

지원 내용별		지원 방식별	
인프라 조성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시설·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금융**	융자, 이차보전, 보증, 보험, 정책펀드, 세제지원 등
수출	수출 계약·판로개척·마케팅 등 직접적인 수출 활동 지원	**비금융**	인력양성, 기술지원·인증, 마케팅, 상담 및 컨설팅, 판로개척, 수출 바우처, 정보화, 연구지원, 창업지원 등
해외 사업화	현지 법인 설립, 제품 현지화, 인증 취득 등 현지 사업 정착 지원		

지원 내용별로 보면, 2025년도 결산 기준 수출 지원 사업이 2조 3,416억 4,200만원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하여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해외 사업화 지원과 인프라 조성은 각각 2,084억 9,400만원(7.2%), 1,990억 7,400만원(6.9%)으로 나타남. 복합 사업과 기타 사업은 각각 595억 9,400만원(2.1%), 729억 5,300만원(2.5%) 수준임.

[2025년도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 내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	2025 결산		2026 예산
				비중	
수출 지원	1,635,077	2,448,511	2,341,642	81.3%	2,288,935
해외 사업화 지원	180,555	204,869	199,074	6.9%	213,988
인프라 조성	114,036	209,827	208,494	7.2%	155,921
복합 (2개 유형 이상)	52,250	60,461	59,594	2.1%	72,936
기타	77,314	73,159	72,953	2.5%	70,995
합 계	2,059,232	2,996,827	2,881,757	100.0%	2,802,77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지원 방식별로 보면, 2025년 결산 기준 금융형 사업은 1조 3,994억 3,600만원(48.6%), 비금융형 사업은 1조 4,823억 2,100만원(51.4%)으로 비금융형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형 사업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2025년 결산 기준 보험·보증 사업이 7,698억 9,200만원(2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융자 5,034억 4,100만원(17.5%), 정책펀드 800억 500만원(2.8%), 이차보전 361억 100만원(1.3%), 자금지원 61억 9,500만원(0.2%) 순으로 나타남.

비금융형 사업은 복수유형 지원 사업을 제외할 경우, 현지화·사업화 사업이 3,299억 500만원(1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5년도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	2025 결산		2026 예산
				비중	
금융	855,533	1,504,853	1,399,436	48.6%	1,168,308
보험・보증	432,064	874,284	769,892	26.7%	590,721
융자	352,200	503,450	503,441	17.5%	437,378
정책펀드	30,000	80,005	80,005	2.8%	90,005
이차보전	30,846	36,819	36,101	1.3%	37,817
자금지원	6,195	6,195	6,195	0.2%	8,247
비금융	1,203,699	1,491,974	1,482,321	51.4%	1,634,467
마케팅・판로개척	321,471	324,202	323,065	11.2%	338,413
현지화・사업화	234,359	330,831	329,905	11.4%	364,374
기술지원・인증	42,601	108,972	105,672	3.7%	41,635
상담・컨설팅	73,310	72,542	72,080	2.5%	100,085
복수유형 지원	480,105	624,401	620,573	21.5%	777,967
기타	51,853	31,026	31,026	1.1%	11,993
합 계	2,059,232	2,996,827	2,881,757	100.0%	2,802,77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의 총괄 관리체계 미흡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은 다수 부처가 분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총괄 관리기관이 부재하고 사업 간 역할분담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회계연도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은 24개 부처에서 3만 5,166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만 4,504개사(41.2%)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을 지원하였고, 산업통상부(1만 3,785개사, 39.2%), 지식재산처(2,051개사, 5.8%) 순으로 나타났음.[3)]

이처럼 다수 부처가 각각의 정책목적과 소관 산업의 특성에 따라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전체 차원에서 사업 간 역할분담과 연계성, 유사·중복 여부 및 지원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임.

특히 해외진출 지원은 해외거점 구축, 판로개척, 마케팅, 인증·기술 지원 및 현지 사업화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이 연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부처 간 지원체계의 연계 여부가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러나 현재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의 관리체계를 보면,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관리방식도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원 기업 수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수로, 동일 기업이 여러 사업에 선정된 경우 중복 집계된 수치임.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의 총괄 관리 주체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은 소관 부처 차원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개별 사업수행 기관을 총괄 관리기관으로 운용하고 있음.

[2025년도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 총괄관리기관 현황]

(단위: 개)

부처	세부사업 수	총괄관리기관 현황
과기정통부	20	과기정통부(자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중기부	8	중기부(자체)
기후부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국제에너지기구, 전력기금사업단
농식품부	8	농식품부(자체)
문체부	7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콘텐츠진흥원
해수부	6	해수부(자체)
산업부	9	산업부(자체)
방사청	4	방사청(자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재처	6	지재처(자체)
복지부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토부	3	국토부(자체)
외교부	2	외교부(자체), 재외공관
산림청	2	산림청(자체)
조달청	1	조달청(자체)
농진청	1	농진청(자체)
금융위	1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우주청	1	-
기상청	1	기상청(자체)
동포청	1	-
노동부	1	노동부 (자체)
기재부	1	-
법무부	1	-
교육부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방청	1	소방청(자체)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계획 측면에 있어서도 총괄관리 기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정부의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보면 ‘8대 전략분야 중점지원’, ‘수출 지원체계 혁신’,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상위 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 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아래 각 부처와 기관의 추진사업을 과제별로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개별 사업 간 연계방안이나 역할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사업 간 중복을 조정하거나 지원기업 및 성과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계획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6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향후 계획]

정책과제	소관부처/기관	추진시기
1. 8대 전략분야 중점지원		
· 한류박람회 개최, K-뷰티 상설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산업/문체/복지부/관계부처	연중
· 역직구 온라인몰 구축	산업부	'26. 下
·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26. 1Q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복지부	'26. 下
· 對中 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수립	관계부처 합동	'26. 1Q
· K-뷰티·K-푸드 사절단, '중동 K-할랄푸드페어'	무역협회/농식품부	연중
· 정부협력채널 통한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지원	산업/기후부	연중
· K-바이오·백신 펀드,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복지부	연중
·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방사청/산업부	'26. 上
· 한-UAE CEPA 등 기체결 FTA 발효 추진	산업부	연내
· 한-미 조선협력 등 활용 수출연계 프로젝트 발굴	산업부	연중
· 중소형 조선사 7,400억원 RG 특례보증	산업부	연중
· EU CBAM, 철강 TRQ 대응	산업부	연중
2. 수출 지원체계 혁신		
· 대-중소 상생협력 확대(수출공급망강화보증)	산업부	연중
· AI 산업 특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재경부/수은	'26. 1월
· 신흥시장 진출기업 수출금융 우대	재경부/수은	연중
· 무역보험법 개정 추진	산업부	연중
· 산업 AI 전시회 시범개최	산업부	'26. 10월
· My K-Festa 확대 개최	문체부/관계부처	'26.6월

정책과제	소관부처/기관	추진시기
· 민관합동 전시산업 발전 TF 구성	산업부/관계부처	'26. 上
· 대한민국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수립	산업부	'26. 2Q
· AI 수출비서 서비스 개시	산업부	'26. 下
· 무역 AI 협력포럼 출범	산업부	'26. 2Q
· 5개 지역 K-마루 시범 구축 MOU 체결	재경부	'26. 1Q
· 무역장벽 119 원스톱 통합상담 체계 마련	산업부	'26. 3월
3.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26. 3월
· 5극 3특 성장엔진기업 대상 무역보험 우대 신설	산업부	'26. 下
·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26. 3월
·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 15개 지정	산업부	'26. 3월
· 긴급지원바우처 특화서비스 신규 도입	산업부	'26.1월
· 온라인 수출바우처 신설	중기부	연내
·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	산업부	연내
· 전문무역상사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연중

자료: 「2026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따라서 다수 부처에 분산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연도별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4)]

4) 이와 같은 관리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발의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지원체계가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되어있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략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 전담기관 지정, 지원정책 간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42, 2025.12.30. 발의)

(2) 해외거점 설치·운영체계의 개선 필요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은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나,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면서 동일 국가·도시 내 유사 기능의 해외거점이 중복 설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거점 운영비용 중 인건비·임차료 등 운영성 경비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해외거점의 기능과 역할, 운영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동일 국가·도시 내 해외거점의 중복 문제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이 동일 국가·도시 내에서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는 해외거점 간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처 간 협업과 기능 연계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가별 해외거점 현황을 보면, 중국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가 37개의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9개 부처가 33개의 거점을 운영하는 등 동일 국가에 여러 부처가 각각 해외거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2025년도 해외진출 기업 지원 관련 해외거점 국가별 현황]

(단위: 개)

국가	운영부처	센터	국가	운영부처	센터
중국	과기정통부(2), 농식품부(4), 문체부(2), 산업부(20), 중기부(4), 지재처(2), 해수부(3)	37	탄자니아	재경부(1), 산업부(1)	2
미국	과기정통부(3), 농식품부(2), 문체부(2), 방사청(1), 복지부(1), 산업부(8), 중기부(5), 지재처(2), 해수부(2)	26	튀르키예	문체부(1), 산업부(1)	2
베트남	과기정통부(2), 국토부(1), 농식품부(2), 문체부(1), 복지부(1), 산업부(3), 재경부(1), 중기부(3), 지재처(1), 해수부(1)	16	체코	산업부(1)	1
일본	과기정통부(1), 농식품부(2), 문체부(3), 산업부(4), 중기부(2), 지재처(1), 해수부(1)	14	헝가리	산업부(1)	1

(단위: 개)

국가	운영부처	센터	국가	운영부처	센터
인도	문체부(1), 산업부(6), 재경부(1), 중기부(1), 지재처(1)	10	홍콩	농식품부(1)	1
인도네시아	국토부(1), 농식품부(1), 문체부(1), 복지부(1), 산업부(2), 재경부(1), 중기부(1), 해수부(2)	10	핀란드	산업부(1)	1
러시아	농식품부(2), 문체부(1), 산업부(4), 중기부(1)	8	그리스	산업부(1)	1
독일	과기정통부(1), 농식품부(1), 문체부(1), 산업부(3), 중기부(1), 지재처(1)	8	나이지리아	산업부(1)	1
태국	농식품부(1), 문체부(2), 산업부(1), 중기부(1), 지재처(1), 해수부(1)	7	뉴질랜드	산업부(1)	1
싱가포르	과기정통부(1), 문체부(2), 산업부(1), 재경부(1), 중기부(1)	6	도미니카 공화국	산업부(1)	1
프랑스	농식품부(1), 문체부(1), 방사청(1), 산업부(1), 중기부(1), 해수부(1)	6	루마니아	산업부(1)	1
UAE	과기정통부(1), 국토부(1), 산업부(1) 농식품부(1), 문체부(1), 중기부(1)	6	모로코	산업부(1)	1
멕시코	문체부(1), 산업부(2), 중기부(1), 지재처(1)	5	모잠비크	산업부(1)	1
브라질	농식품부(1), 문체부(1), 산업부(1)	3	벨기에	산업부(1)	1
사우디 아라비아	국토부(1), 문체부(1), 산업부(1), 중기부(1)	4	벨라루스	산업부(1)	1
캐나다	문체부(1), 산업부(2)	3	불가리아	산업부(1)	1
폴란드	문체부(1), 방사청(1), 산업부(1)	3	세르비아	산업부(1)	1
필리핀	문체부(1), 산업부(1), 재경부(1)	3	스위스	산업부(1)	1
호주	문체부(1), 산업부(2)	3	슬로바키아	산업부(1)	1
방글라데시	국토부(1), 재경부(1), 산업부(1)	3	아제르바이잔	산업부(1)	1
라오스	농식품부(1), 재경부(1), 산업부(1)	3	알제리	산업부(1)	1
말레이시아	농식품부(1), 산업부(1)	2	에콰도르	산업부(1)	1
스페인	문체부(1), 산업부(1)	2	오만	산업부(1)	1
영국	문체부(1), 산업부(1)	2	요르단	산업부(1)	1
우즈베키스탄	농식품부(1), 재경부(1), 산업부(1)	3	우크라이나	산업부(1)	1
칠레	농식품부(1), 중기부(1), 산업부(1)	3	이라크	산업부(1)	1
캄보디아	산업부(1), 재경부(1)	2	이란	산업부(1)	1
케냐	국토부(1), 재경부(1), 산업부(1)	3	이스라엘	산업부(1)	1
남아공	농식품부(1), 산업부(1)	2	조지아	산업부(1)	1
이탈리아	문체부(1), 산업부(1)	2	카타르	산업부(1)	1
가나	재경부(1), 산업부(1)	2	코트디부아르	산업부(1)	1

(단위: 개)

국가	운영부처	센터	국가	운영부처	센터
과테말라	농식품부(1), 산업부(1)	2	쿠바	산업부(1)	1
대만	해수부(1), 산업부(1)	2	쿠웨이트	산업부(1)	1
몽골	재경부(1), 산업부(1)	2	크로아티아	산업부(1)	1
미얀마	재경부(1), 산업부(1)	2	파나마	산업부(1)	1
스리랑카	재경부(1), 산업부(1)	2	파라과이	산업부(1)	1
스웨덴	문체부(1), 산업부(1)	2	파키스탄	산업부(1)	1
아르헨티나	문체부(1), 산업부 (1)	2	포르투갈	산업부(1)	1
카자흐스탄	중기부(1), 산업부(1)	2	리비아	산업부(1)	1
페루	국토부(1), 산업부(1)	2	네덜란드	산업부(1)	1
이집트	재경부(1), 산업부(1)	2	덴마크	산업부(1)	1
에티오피아	재경부(1), 산업부(1)	2	오스트리아	산업부(1)	1
콜롬비아	재경부(1), 산업부(1)	2	수단	산업부(1)	1
			시리아	산업부(1)	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일본 도쿄는 동일 도시에 7개 부처가 9개의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의 거점은 시장 정보 제공, 해외 비즈니스 지원, 입주공간 제공, 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 대상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해외진출 초기 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 및 해외 비즈니스 기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025년도 해외진출 기업 지원 관련 해외거점 운영 현황 (일본 도쿄)]

(단위: 백만원)

부처	센터명	주요기능	2025년 비용
농식품부	aT 해외지사	마케팅, 시장정보제공, 수출보험, 전문인력 양성 등	5,511
문체부	비즈니스센터	기업 비즈매칭, 컨설팅, 마케팅 지원, 시장정보 제공 등	3,706
	해외기업지원센터	거점 기반 현지화 및 해외 비즈니스 확장 지원	
중기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사무공간 제공,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시장정보 제공 등	1,250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종합지원 플랫폼, 액셀러레이팅, 사업화, 투자유치, 입주공간 지원 등	965
과기부	IT지원센터	입주공간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115

(단위: 백만원)

부처	센터명	주요기능	2025년 비용
해수부	무역지원센터	수출지원・무역애로 해소・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	515
지재처	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애로상담・법률자문 등	343
산업부	KOTRA 무역관	해외시장 개척, 지사화 사업, 시장정보 수집, 한국투자기업 상담, 지원, 설명회 등	7,937

주) 2025년 비용의 경우 국비, 기관 자체부담 등을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양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확인되는데, 하노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가 총 8개의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동일 도시에 운영하면서 입주공간 제공, 시장정보 제공,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등 해외진출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케팅, 시장정보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공간 제공 등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유사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해외진출 기업 지원 관련 해외거점 운영 현황 (베트남 하노이)]

(단위: 백만원)

부처	센터명	주요기능	2025년 비용
농식품부	aT 해외지사	마케팅, 시장정보제공, 수출보험, 전문인력 양성 등	4,874
문체부	비즈니스센터	기업 비즈매칭, 컨설팅, 마케팅 지원, 시장정보 제공 등	1,057
과기부	IT지원센터	입주공간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115
중기부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종합지원 플랫폼, 액셀러레이팅, 사업화, 투자유치, 입주공간 지원 등	702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사무공간 제공,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시장정보 제공 등	377
국토부	인프라협력지원센터	인프라 분야 정부 간 협력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269
기재부	해외사무소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발굴 등 지원, 현지동향조사, 현지 정부・기관・진출기업・국제기구 등 네트워킹	623
산업부	KOTRA 무역관	해외시장 개척, 지사화 사업, 시장정보 수집, 현지 네트워크 구축, 한국투자기업 상담, 지원, 설명회 등	4,811

주) 2025년 비용의 경우 국비, 기관 자체부담 등을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거점이 동일 국가・도시 내에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소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거점 간 정보와 네트워크가 연계되지 못하고 운영 자원이 분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분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사무소 통합 플랫폼인 'K-마루(K-MARU)'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K-마루는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사무소를 통합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해외거점의 분산 운영과 기능 연계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5)]

따라서 관계부처는 동일 국가・도시 내 해외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유사 기능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기능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외거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정부는 2026년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통합 운영하는 'K-마루(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5개 해외거점을 선정하여 2026년 9월부터 2029년 1월까지 KOTRA를 비롯한 7개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공동 입주하는 협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임.

(나) 해외거점 예산의 운영성 경비 비중 과다 문제

해외거점 운영비용 중 인건비·임차료 등 운영경비가 42.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외거점별 운영 실적과 기업지원 성과를 점검하여 운영경비와 사업비 간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 효율성이 낮은 거점은 기능 조정 등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해외거점의 총 운영비용 현황을 보면, 인건비(789억 1,300만원), 임차료(599억 1,700만원) 및 기타운영비(278억 2,900만원) 합계가 1,666억 5,900만원(42.5%)인 반면, 실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수행에 직접 투입된 사업비는 2,256억 2,400만원(57.5%)으로 나타남.

[2025년도 해외거점 인력 및 비용 투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부처	센터	인력			비용			
			파견	현지 채용	인건비	임차료	기타 운영비	사업비
농식품부	aT 해외지사 (19)	95	39	56	9,506	4,155	3,835	52,343
	KOTRA 무역관 (5)	56	13	43	-	-	-	2,372
	극동영농지원센터 (1)	2	2	1	211	19	212	96
중기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1)	67	21	46	3,087	8,556	1,922	955
	코리아스타트업센터 (5)	20	5	15	1,588	3,582	346	1,545
과기정통부	IT 지원센터 (7)	34	7	27	1,409	2,835	867	1,034
	글로벌혁신센터 (4)	27	2	25	2,272	445	244	1,609
해수부	무역지원센터 (11)	31	11	20	2,257	1,404	664	2,122
	해양플랜트 (1)	6	1	5	157	40	5	134
지재처	지식재산센터 (10)	23	9	14	1,980	350	-	1,454
문체부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 (3)	3	-	3	107	473	47	1,385
	비즈니스센터 (28)	84	28	56	1,378	6,214	7,516	6,221
국토부	인프라협력센터 (7)	18	7	11	878	469	306	126
방사청	국제계약지원단 (2)	12	11	1	61	761	670	27
	방산협력지원단 (1)	3	3	-	-	139	56	2
재경부	해외사무소 (18)	69	33	36	995	2,842	2,474	-

(단위: 명, 백만원)

부처	센터	인력			비용			
			파견	현지 채용	인건비	임차료	기타 운영비	사업비
복지부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3)	15	4	11	296	119	15	180
산업부	KOTRA 해외무역관 (131)	902	398	504	52491	27475	8609	153,523
	플랜트수주지원센터 (11)	9	-	9	179	4	27	20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40)	3	-	3	61	35	14	292
합 계		1,479	594	886	78,913 (20.1%)	59,917 (15.3%)	27,829 (7.1%)	225,624 (57.5%)

주 1) 비용의 경우 국비, 기관 자체부담 등을 포함
2) 농림축산식품부 KOTRA 무역관은 기존 KOTRA 무역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인건비・임차료 및 기타운영비는 KOTRA의 기본 운영예산으로 충당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해외거점은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으로서 일정 수준의 운영경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운영경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실제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외거점별 운영 실적과 기업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운영경비와 사업비 간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이 낮은 거점에 대해서는 기능 조정이나 운영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관리체계 미흡

(가) 동일 기업에 대한 반복지원 문제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에서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정 기업에 지원이 장기간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 필요성 및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기업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추진사업 기준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총 3만 5,166개사이며,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만 4,504개사(41.2%)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부 1만 3,785개사(39.2%), 지식재산처 2,051개사(5.8%), 해양수산부 1,933개사(5.5%), 농림축산식품부 1,556개사(4.4%) 순으로 나타남.

[2025년도 해외진출 기업 지원 공모사업 현황]

(단위: 개)

부처명	지원기업 수	비중	주요 사업
중기부	14,504	41.2%	수출바우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전자상거래수출 등
산업부	13,785	39.2%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지사화사업, 해외전시회 등
지재처	2,051	5.8%	지식재산 창출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 등
해수부	1,933	5.5%	수산물해외시장개척(국제박람회・바우처 등)
농식품부	1,556	4.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식품해외시장진출 등
기타 12개 부처	1,337	3.8%	과기정통부・문체부・기후부・방사청 등
합 계	35,166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의 지원 실태를 보면, 동일 기업이 동일 사업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1년 만기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기존 수혜업체의 비중은 98.4%에 달한 반면 신규 지원업체의 비중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연속하여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는 145개사로 전체 지원업체의 약 66%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융자액은 3,830억 3,200만원으로 전체 융자액의 83.7%에 달하였음.

[2023년-2025년 글로벌육성지원 융자 사업 집행내역]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총 융자액 (백만원, A)		453,646	453,646	457,660	1년만기 운영자금
융자업체수(개)		226	234	220	-
기존업체 비율		97.2%	95.8%	98.4%	전년대비 기존업체 융자액 비율
신규 업체 비율	융자액	2.8%	4.2%	1.6%	전년대비 신규 업체수 및 융자액 비율
	업체수	11.5%	10.3%	5.0%	
5년이상 융자업체	업체수	134	144	145	당해연도 포함 최근 5년 연속 융자지원
	융자액(B)	388,719	382,247	383,032	
	비중(B/A)	85.7%	84.3%	83.7%	
평가 탈락 비율 (%)		0.8%	1.5%	0.4%	신청업체 대비 미배정업체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이행 의무와 국산 농산물 사용 의무 등으로 인해 신규업체의 진입 부담이 높아 기존업체에 융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융자는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이라는 점에서, 동일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신규 수출업체의 정책자금 접근 기회를 제약하고 정책자금의 순환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동일 사업 내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장기간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다수 부처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중복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업별 지원이력과 지원내용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중복지원 검증체계 미흡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은 부처별 중복지원 검증체계가 상이하고 일부 사업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중복지원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은 다수의 부처가 유사한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 기업이 여러 부처의 사업에 중복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각 부처는 공고·신청·선정 단계에서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검토 방식은 부처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부처별 중복지원 검토체계를 보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e나라도움·보탬e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나 NTIS·DTiMS 등을 활용한 시스템 조회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6]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청기업으로부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또는 자가점검표를 제출받아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5년도 해외진출 기업 지원 검토 체계 현황]

유형 구분	부처명	검토 방식
시스템 조회형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조달청, 기후부, 방사청, 해수부, 과기정통부	e나라도움·보탬e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NTIS·DTiMS 등 중복성 검증시스템 활용
자기기재(확약서)형	지재처, 과기정통부	신청 시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자가점검표' 제출 요구
유관기관 개별확인형	산업부, 방사청, 해수부, 소방청, 과기정통부, 문체부	KOTRA, 중진공, 창업진흥원 등 사업별 유관기관 개별적으로 중복수혜 여부 확인
미실시	해수부	없음

주) 동일 부처가 2개 이상의 중복 검토 방식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유형에 중복하여 기재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는 사업, 과제, 연구자,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R&D 지식정보 포털임.
국방과학기술정보서비스(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DTiMS)는 국방 R&D 및 방위산업 관련 정책, 과제, 기술, 인력, 연구시설·장비 등의 정보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는 국방 분야 전문 포털임.

또한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은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중복수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부의 일부 사업은 중복지원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은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이 서로 달라 일정 수준의 중복수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동일 기업이 유사한 지원내용을 여러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중복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부처는 최소한의 공통적인 중복지원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중복지원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보완 필요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은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가 미설정되어 있거나 사업 수행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목적과 직접 연계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확대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관리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집행 결과와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과지표는 단순한 사업 수행실적이 아니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음.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 성과지표를 보면, 지원기업 수, 컨설팅 건수 등 사업의 투입 또는 활동실적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어, 실제 정책성과와 무관하게 지원규모 확대만으로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으며, 정책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해외진출 기업 지원 사업 성과지표 사례]

부처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현황
문체부	게임산업 육성	게임 해외시장 진출지원 비즈매칭 지원 건수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대상 건수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	컨설팅 제공건수, 진출 기회 제공 건수, 정보제공 건수 등
과기정통부	차세대 방송미디어 산업 선도 기반 조성	미디어기업 정책지원 건수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의 경우, 컨설팅 지원 건수, 현지 입주 지원, 리셉션 개최 건수 등 사업 수행실적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매출, 수출실적,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		
	목표	실적	달성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심화컨설팅 지원	6건	6건	100%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현지 입주 지원	30개사	30개사	100%
주요 전시회 연계 홍보부스 운영,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2건	2건	1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성과지표가 사업 수행실적 중심으로 설정될 경우, 예산 투입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이 실제 확대되었는지, 수출 및 해외매출 증가 등 정책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업 간 성과를 비교하거나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계부처는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 수행실적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해외매출, 신규 거래처 확보 등 사업목적과 직접 연계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확대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기타사례

이와 별도로 2025회계연도 각 부처 결산 검토 과정에서는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①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의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조달청)

G-PASS 기업 본래의 사업목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관리 방안 등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을 검증받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G-PASS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12월 말 기준 1,501개 기업이 지정되었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G-PASS기업 해외수출 현황을 보면, G-PASS 기업 지정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정기업의 해외수출실적은 그에 비해 정체된 수준이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G-PASS기업으로부터 수출 실적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제출받아 G-PASS기업의 해외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G-PASS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 지정기업의 40% 수준이며, 매년 늘어나는 지정기업 수에 비해 해외수출 금액 역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연도별 G-PASS기업 해외수출 현황]

(단위: 개사, 백만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정기업 수(A)	1,022	1,114	1,263	1,422	1,501
해외수출 기업 수(B)	393	434	470	557	631
비중(B/A)	(38.5%)	(39.0%)	(37.2%)	(39.2%)	(42.0%)
해외수출 금액	1,246	1,507	1,633	1,628	1,716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조달청은 G-PASS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본래의 사업목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달청은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 지원 사업,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해외시장진출 지원 사업과 G-PASS기업 지정 제도의 연계 방안 마련 등 해외수출실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관리방안[7]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해외진출 성과관리 필요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받은 이후 기업의 해외출원 실적이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식재산처는 참여 기업의 해외출원 실적을 관리하는 등 해외출원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디자인·브랜드 개발과 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하나, 2021~2025년간 개발된 디자인·브랜드의 출원실적은 국내 출원만 관리되고 해외출원 실적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8]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기업은 국내출원을 통해 권리 범위와 시장 반응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국내권리화를 기반으로 우선권을 확보한 뒤 주요 수출국에 해외출원을 연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독립적이고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업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브랜드도 해외출원이 있어야 해외에서 권리를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7) 대상기업으로부터 해외조달시장 수출 실적을 제출받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8) 유사 지표인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지원받은 기업 중 이후 해외 권리화까지 지원받은 기업 수의 경우, 2025년 기준 249개 기업이 디자인 또는 브랜드 지원을 받았으나 95개(38.15%) 기업만 해외권리화 지원을 받아 주로 중소기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2025년 기준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받은 기업의 60% 이상이 해외권리화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였으므로, 지식재산처는 향후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해외출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사업 참여 후 해외권리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신규 해외비즈니스 센터 개소 지연 부적정 (문화체육관광부)

해외거점 운영 사업은 해외비즈니스센터 개소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 총 5곳의 신규 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사업 추진 결과 인력 미파견·사업지 변경 등으로 개소 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미국(댈러스)·폴란드·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 및 칠레 등 5개소의 신규 거점 개소를 추진하였으나, 연내 인력 파견 및 개소가 완료된 곳은 폴란드·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소에 불과하고, 미국(댈러스)은 파견 인력 미선발로 센터 개소가 보류되었으며, 칠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상하이)으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3년간 해외비즈니스센터가 1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운영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추가 배정된 인력은 10명에 불과하여 숙련된 파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칠레의 경우 남미 지역에 이미 2개 거점이 운영 중인 점과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비한 중국 시장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해외비즈니스 센터 설치는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현지 수요·인력 확보 가능성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거점 확대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이 이루어진 이후 인력 확보 문제로 개소가 보류되거나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것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운영 여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 및 유사 사업 추진 시 운영 여건, 인력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해외비즈니스센터 신규거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해외진출 기업 지원 기준 현실화 필요 (산업통상부)

개별지원 사업은 지사화 사업 신청 무역관 소재 도시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가 존재하므로,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영세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사화사업 업무매뉴얼」을 통해 지사화사업 신청 무역관 소재 도시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선정) 불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지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지사화 사업을 지원받은 사례가 5건 확인되었음.

[지사화사업 업무매뉴얼 중 지원(선정) 불가 기업]

다. 평가 시 참고사항
1) 지원(선정) 불가 기업 : 대기업 및 출자회사, 유관기관, 현지거점 보유기업, 휴 · 폐업 기업
①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갱신 · 발표하는 대기업* 및 소속회사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유관기관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ALIO 등재 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 출자 또는 민간기관
* 다수의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 등의 경우 회원사 지원을 위한 협회 명의의 가입이 불가능하며, 회원사의 개별 가입 필요
* 단, 차후 사업 취지 및 필요성 검토 후, 해외진출지원 등 공사와 협업이 가능한 선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원 가능
③ 현지거점 보유기업 : 지사화사업 신청 무역관 소재 도시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현지 법인이 무역관 소재 도시에 없는 경우 지원 가능**
④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지원받은 기업은 현지에 직원 1인만 파견한 영세 사업자이거나 현지 거래 관행 등에 따라 형식적인 지사만을 설립한 경우로 지사화 사업이 종료될 경우 향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이었다고 설명함.

[2025년 현지거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화 사업이 지원된 사례]

무역관 (국가)	기업명	현지 거점 보유 기업명 (진출형태, 진출연도)	지사화 사업 유형	협약기간	지사화사업 지원 사유
마드리드 (스페인)	(주)○○○○	○○○○ ○○○○○○○○○○○○○○ ○.○○ (판매법인,2022)	긴급 지사화	2025.5.12. ~2025.8.9.	파견 1인 법인
비엔티안 (라오스)	㈜○○○ ○○○	○○○○○○○ ○○○○○○ ○○○ ○○○○ ○○., ○○○. (지사/지점,2020)	거래선 관리	2025.7.1. ~2026.6.30.	지사만 설립 인력 없음
로스 앤젤레스 (미국)	(주)○○○○	○○○○ ○○○ ○○○. (판매법인,2014)	일반 지사화	2025.7.1. ~2026.6.30.	파견 1인 법인
도쿄 (일본)	주식회사 ○○○○	○○○○○○○○○○ ○○○○○○○., ○○○. (서비스법인,2015)	일반 지사화	2025.5.1. ~2026.4.30.	파견 1인 법인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 ○○○○	○○○ ○○○○○ ○○○○○○○○○○ ○○, ○○○ (지사/지점,2016)	일반 지사화	2025.7.1. ~2026.6.30.	파견 1인 법인

자료: 산업통상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거점의 물리적인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사화 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보다 기업의 영세성 또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사화사업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해외거점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필요 시 지사화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⑤ 수출바우처 서비스 공급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중 서비스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선 산업통상부에 있어서는 2025년 수출바우처 서비스 지원 건수 및 바우처 금액을 살펴보면,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분야’에 집중되어있으며, 분야별 수행기관 현황을 보면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의 전체 수행기관 중 서비스를 미제공한 수행기관은 약 45.8%이고, 국제운송은 29.5%임.

[2025년 수출바우처 서비스 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단위: 건, 백만원, %)

서비스분야	서비스 건수	비중	바우처 금액	비중
조사/일반 컨설팅	586	2.5	5,586	4.4
디자인개발	1,678	7.1	8,969	7.1
브랜드개발/관리	78	0.3	935	0.7
홍보동영상	503	2.1	6,718	5.3
통번역	333	1.4	521	0.4
역량강화 교육	297	1.3	313	0.2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4,178	17.7	40,770	32.3
해외규격인증	2,989	12.6	9,858	7.8
특허/지재권	2,716	11.5	8,241	6.5
홍보/광고	1,637	6.9	11,779	9.3
국제운송	7,891	33.4	29,517	23.4
서류대행/현지등록	302	1.3	682	0.5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247	1.0	2,071	1.6
무역보험보증	200	0.8	329	0.3
총합계	23,635	100.0	126,288	100.0

주) 바우처 금액은 기업분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5년 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현황]

(단위: 개사, 건, %)

구분	분야별 수행기관수(A)	서비스 제공 건수	2025년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B)	
				비율(B/A)
조사/일반 컨설팅	297	1,980	108	36.4
디자인개발	545	6,618	123	22.6
브랜드 개발/관리	54	367	18	33.3
홍보동영상	347	1,872	89	25.6
통번역	61	1,040	11	18.0
역량강화 교육	49	746	14	28.6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277	2,293	127	45.8
해외규격인증	99	2,028	15	15.2
특허/지재권	402	7,662	50	12.4
홍보/광고	326	2,545	129	39.6
국제운송	319	4,458	94	29.5
서류대행/현지등록	91	612	37	40.7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101	425	30	29.7
무역보험보증	-	-	-	-

주) 분야 간 중복 포함(수출바우처 수행기간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자료: 산업통상부

수행실적이 없는 공급기업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기관 간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공급 기업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유인이 악화될 수 있고, 일부 공급기업들의 경영악화나 부실 등이 바우처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 바우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자격 연장여부를 2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고 수입실적 등이 없는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있으며,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적이 없는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미수임 현황 및 계약종료 예정 안내 등으로 수임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나, 처음부터 충분한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춘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는 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어서도, 2025년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수행기관(분야 간 중복 포함) 2,943개사 중 1,605개사(54.5%)는 2025년 1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없고, 그 중 374개사(12.7%)는 2023~2025년 3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수행기관 등록 후 실제 서비스 수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록 후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참여기업으로부터 선호가 낮아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간 서비스 미제공 수행업체의 경우에는 수출바우처 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수출바우처 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현황]

(단위: 개, 건)

구분	분야별 수행기관 수	서비스 제공 건수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	
			2025년	2023~2025년
국제 운송	319	1,808	158	59
디자인개발	541	2,216	251	43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100	88	67	12
브랜드개발/관리	51	173	28	6
서류대행/현지등록	90	187	61	11
역량강화 교육	49	288	23	4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76	997	161	56
조사/일반 컨설팅	290	641	186	51
통번역	59	564	15	4
특허/지재권	401	3,133	125	23
해외규격인증	99	631	32	7
홍보/광고	325	246	261	60
홍보동영상	343	230	237	38
사후정산	-	10,347	-	-
합 계	2,943	21,549	1,605	374

주 1) 분야 간 중복 포함(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2) 타 중앙행정기관 소관 수출바우처 수행 실적은 미반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⑥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시정 필요 등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원분을 비롯하여 매년 수출바우처 중 일부가 공시된 사용기한 도과 후에 사용되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가 공시된 사용기한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수출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설정하였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을 포함하여 3차에 걸쳐 공고·선정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세 차례 모두 사용기한을 2025년 내로 설정하였음.

[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추진 일정]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3차
모집 공고	23.1.27.	23.5.10.	24.1.23.	24.6.17.	24.12.30.	25.4.10.	25.5.20.
신청기간	23.1.16. ~23.2.2.	23.7.1. ~24.3.31.	24.1.23. ~24.2.13.	24.6.17. ~24.7.4.	25.1.7. ~25.1.23.	25.4.10. ~25.4.21.	25.5.20. ~25.5.30.
선정일	23.3.31.	23.6.30.	24.4.29.	24.8.30.	25.4.14.	25.5.21.	25.7.18.
바우처 사용기간	23.4.1. ~23.12.31. (9개월)	23.7.1. ~24.1.31. (7개월)	24.4.1. ~24.12.31. (9개월)	24.7.1. ~25.1.31. (7개월)	25.3.1. ~25.11.30. (9개월)	25.4.1. ~25.12.31. (9개월)	25.6.1. ~25.12.31. (7개월)
사업기간	23.4.1. ~24.2.29. (11개월)	23.7.1. ~24.3.31. (9개월)	24.4.1. ~25.2.28. (11개월)	24.7.1. ~25.3.31. (9개월)	25.3.1. ~26.1.31. (11개월)	25.4.1. ~26.2.28. (11개월)	25.6.1. ~26.2.28. (9개월)

주 1) 각 연도 1차, 2차는 일반바우처 기준임
2) 2025년도 사업은 2026년 2월 사업기간 종료 이후 현재 정산 진행 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일부 기업이 사업기간을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오인하여 사용기한 도과 후에도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음. 연도별 공시된 사용기한을 도과하여 사용된 수출바우처는 금액 기준 2023년 208억원, 2024년 71억원, 2025년 193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속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사용기한(12월 31일까지)을 도과하여 연내 미집행된 수출바우처 규모가 건수 기준 11.6%, 금액 기준 9.7%에 달하였음.

[연도별 공시된 사용기한을 도과하여 사용된 수출바우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사용기한 도과 이후 사용된 규모(A)		전체 규모(B)		비중(=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기준	금액 기준
2023	3,752	20,811	20,245	112,457	18.5	18.5
2024	1,616	7,105	19,129	103,890	8.4	6.8
2025	4,229	19,291	36,613	199,008	11.6	9.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사업기간이 차년도 6월 말 이후까지 연장되면서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9]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따라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늦어도 차년도 2월 말까지는 실적보고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로는 사업기간이 만성적으로 연장되면서 매년 6월 말 이후에 직전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8월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이 지연된 것임.

이와 같은 보조금 정산 지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 사용기간 보장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해 가급적 사업기간 내에 기업이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 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정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사용기한을 도과한 사용 건에 대해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에 맞춰 보조사업 종료일을 회계연도 말일보다 6개월 이상,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회계연도 말일보다 8개월 이상 늦은 시기로 설정하는 것은 회계연도 내 실적보고서 제출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가 공시된 사용기한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보조금 정산 지연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AI 지원 사업

가. 개 요

(1) 인공지능의 정의 및 인공지능 지원 사업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음.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동 법률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의미하고,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함.[1)]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2)]

문의: 02-6788-5697

---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생략)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제1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는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열되어 있음.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

법률 조항		내용
제13조 제1항	제1호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 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제2호	인공지능기술의 연구 · 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제3호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 ·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제4호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제5호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 ·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제2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제3호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제4호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제5호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 ·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제6호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제7호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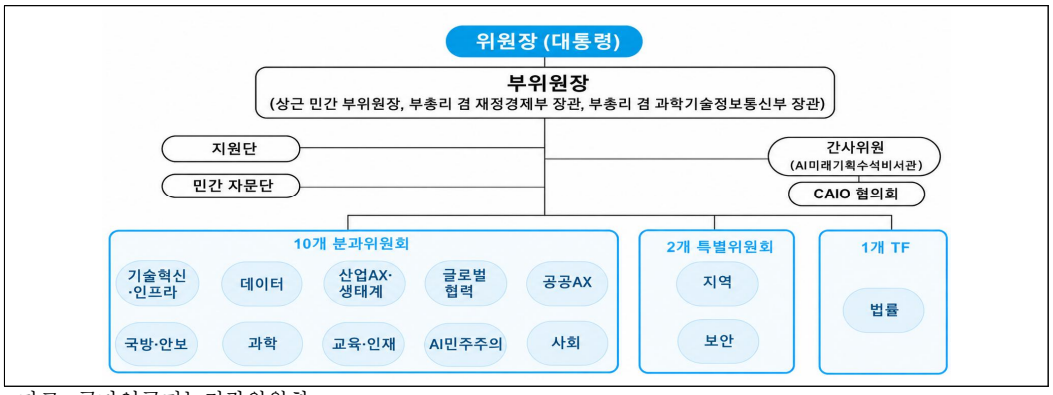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및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조정과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인공지능 관련 위원회를 구성 및 재편하게 되었음.

2024년 9월 26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25년 9월 4일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과 동시에 시행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로 재편하였음. 참고로 AI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제7조에 설치 근거가 있음.[3)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



자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전략위원회는 2025년 9월 8일 공식 출범하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2026년 7월말 기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8명과 민간위원 36명 및 83명의 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둔다.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비 AI전략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중장기 전략,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등 심의·의결 범위가 확대되었고, 위원 및 부위원장이 증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명하는 등 산하 협의회가 신설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현황]

구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2024.9.~2025.9.)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5.9.~)
역할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등	※ 심의·의결 범위에 아래 사항 추가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구성	·위원 45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0명, 부위원장 3명으로 확대 ·민간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정부위원으로 포함
산하 협의회 신설	-	·위원회 참여 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명 ·인공지능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신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

자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련 기사 참고하여 재작성

2026년 2월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이하 “행동계획”)을 의결하였음.

행동계획은 AI혁신 생태계 조성・범국가 AI기반 대전환・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의 세 개 정책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AI혁신 생태계 조성은 AI고속도로 구축・차세대 AI 기술 선점・AI핵심인재 확보・AI모델 확보・AI규제혁신의 다섯 가지 전략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은 산업AX・공공AX・지역AX・AI기반 문화강국 및 AI기반 국방강국의 다섯가지 전략분야로 구성되어있고,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는 AI기본사회와 글로벌 AI이니셔티브의 두 가지 전략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대표과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025년도 AI 사업 결산 개요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AI와 관련된 사업은 39개 부처에 총 360개가 존재하였고, 예산 약 6조 605억 5,800만원 중 5조 9,735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었음.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2개 사업에 3조 5,119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산업통상부가 33개 사업에 7,687억 1,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0개 사업에 6,04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2025년						2026년		
	사업 수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A)	집행액 (B)	집행률 (B/A)	사업 수	본예산	제1회 추경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해당없음								
대통령경호처	해당없음								
국회	9	18,439	18,439	18,439	28,658	155.4	9	54,020	54,020
국가인권위원회	해당없음								
법무부	3	45,340	45,340	45,340	45,192	99.7	3	47,774	47,774
법제처	1	513	513	513	512	99.8	1	3,344	3,344
감사원	1	704	704	704	704	100.0	-	-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해당없음								
대법원	1	4,706	4,706	4,706	578	12.3	2	10,817	10,817
헌법재판소	해당없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해당없음								
국가보훈부	해당없음								
공정거래위원회	해당없음								
금융위원회	2	176,699	176,699	176,699	176,698	99.9	2	968	968
국민권익위원회	1	2,361	2,361	2,361	2,337	98.9	1	3,381	3,38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500	1,500	1,500	1,500	100.0	1	2,660	2,660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해당없음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해당없음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2025년						2026년		
	사업 수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A)	집행액 (B)	집행률 (B/A)	사업 수	본예산	제1회 추경
국세청	1	-	-	-	391	-	3	4,761	4,761
관세청	1	500	500	500	493	98.6	1	500	500
조달청	해당없음								
국가데이터처 (舊 통계청)	6	1,201	1,201	1,201	1,132	94.3	9	3,010	3,010
교육부	13	32,168	32,168	35,704	35,288	98.8	13	122,225	150,525
국가교육위원회	해당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2	1,518,218	3,393,549	3,554,109	3,511,910	98.8	124	3,969,355	3,969,855
우주항공청	4	6,169	6,169	6,169	6,161	99.9	5	8,172	8,17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舊 방송통신위원회)	9	24,435	45,435	45,435	45,435	100.0	5	16,360	16,360
원자력안전위원회	1	646	646	646	646	100.0	3	1,646	1,646
외교부	1	10,605	10,605	10,605	10,490	98.9	1	10,741	10,741
통일부	1	2,785	2,785	2,785	2,777	99.7	1	2,785	2,785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해당없음								
재외동포청	해당없음								
국방부	9	38,852	38,852	38,852	38,488	99.1	24	128,757	128,757
병무청	1	5,525	5,525	5,525	5,466	98.9	1	8,057	8,057
방위사업청	6	131,381	131,381	101,381	67,101	66.2	6	42,293	42,293
행정안전부	12	52,116	52,116	52,116	51,290	98.4	14	77,964	77,964
경찰청	6	11,509	11,509	11,509	10,816	94.0	5	14,532	14,532
소방청	해당없음								
인사혁신처	해당없음						2	1,192	1,1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당없음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해당없음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당없음								
문화체육관광부	12	103,028	124,528	145,528	145,029	99.7	15	157,465	157,465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2025년						2026년		
	사업 수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A)	집행액 (B)	집행률 (B/A)	사업 수	본예산	제1회 추경
국가유산청	1	-	-	1,200	1,194	99.5	-	-	-
농림축산식품부	12	109,677	109,677	110,139	109,894	99.8	18	243,238	243,238
농촌진흥청	해당없음								
산림청	2	4,700	5,075	5,075	4,885	96.3	1	2,025	2,025
해양수산부	19	84,038	84,038	84,038	83,970	99.9	17	126,023	126,023
해양경찰청	2	2,141	2,141	2,141	2,129	99.4	3	8,797	8,797
산업통상부 (舊 산업통상자원부)	33	734,806	768,886	777,006	768,711	98.9	35	1,094,700	1,163,200
지식재산처 (舊 특허청)	4	7,083	7,083	7,083	6,979	98.5	2	4,108	4,108
중소벤처기업부	10	373,225	383,225	604,225	604,220	100.0	16	937,321	992,321
보건복지부	16	95,882	95,882	106,200	105,787	99.6	14	140,460	140,460
식품의약품안전처	4	3,951	3,951	3,951	3,949	99.9	7	37,249	37,249
질병관리청	1	60	60	60	59	98.3	1	60	60
기후에너지환경부 (舊 환경부)	11	39,129	39,129	54,129	52,384	96.8	29	404,548	464,257
기상청	1	3,598	3,598	3,598	3,571	99.2	1	6,353	6,353
고용노동부	2	8,259	8,259	8,259	5,610	67.9	15	267,173	267,173
국토교통부	8	31,127	31,127	31,127	31,110	99.9	7	36,542	36,542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해당없음								
새만금개발청	해당없음								
성평등가족부 (舊 여성가족부)	해당없음								
전체	360	3,687,076	5,649,362	6,060,558	5,973,544	98.6	417	8,001,376	8,213,385

주 1)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전용 등으로 집행률이 100.0% 이상이 될 수 있음
2) 국세청의 경우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전용을 통해 AI 전화상담을 운영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GPU 구입 및 활용 리스크 관리 필요

GPU(Graphics Processing Unit)는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처리 구조를 갖춘 반도체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어 AI 산업의 핵심 연산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공공 부문 첨단 GPU 5만 2,000장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GPU 확보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의 세 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됨.

[정부 GPU 확보 계획(안)]

(단위: 만장)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합 계	1.3	2.4		1.5		+@	5.2+@
□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2025년도 제1회 추경)	1.3	-	-	-	-	-	1.3
□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2026년도 본예산)	-	1.5	-	-	-	-	1.5
□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	0.9	-	-	-	-	0.9
□ 한국산업은행출자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	-	-		1.5		+@	1.5+@

자료: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 2025.12.18.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중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신규 추진되었으며, 내역사업인 GPU 서버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해 1조 4,608억원을 투입하여 네이버클라우드(H200 3,056장), NHN클라우드(B200 7,656장), 카카오(B200 2,424장)를 사업자로 선정해 총 1만 3,136장의 GPU를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GPU 중 정부활용분 10,456장은 국가 AI 프로젝트, 산학연 연구개발, 스타트업 AI 서비스 고도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순차 배분을 개시하였음.[5)6)]

5) 본문의 H200, B200은 NVIDIA에서 제작한 GPU 기종으로, 학습 벤치마크(MLPerf Training v4.1) 결과 B200이 H200 대비 사전학습·파인튜닝 속도가 약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남.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국내 GPU 확보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됨에 따라 산·학·연의 GPU 수요가 적기에 충족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현재 계속 추진 중인 각 사업의 일정 및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되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5월 수립한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에서 GPU 확보·구축 및 순차 서비스 개시 시점을 2025년 10월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자 선정(2025.7.28.) 이후 GPU 구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산·학·연 배분은 2026년 3월에야 시작되었음.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경우,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GPU 가격 급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찰이 4차례 유찰되었으며, 2024년 3월~10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예산 1,554억원을 추가 투입하였고, 사업 추진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2025년 5월에야 사업자를 선정하였음.[7)]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의 경우, 정부가 민간 주도 SPC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공공지분 51% 구조, 민간 매수청구권 조항, 국산 AI 반도체 활용 의무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1·2차 공모가 연달아 유찰되었으며, 이후 정부 지분율 완화 등 공모 조건을 조정한 3차 공모에서 삼성SDS 주도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하여 2026년 5월 11일 최종 선정(실시협약 체결)되었고, 당초 2027년 개소 목표에서 2028년 가동 목표로 일정이 변경되었음.

이처럼 세 사업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됨에 따라 산·학·연의 GPU 수요가 적기에 충족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각 사업의 일정 및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6) 정부활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GPU를 구축한 CSP사에 대한 운영비 성격으로 CSP가 자체 활용하며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통해 AI 산업·연구 현장의 부족한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고, 자체 AI 모델·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할 계획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당초 2023년 8월경 계약 체결을 전제로 2024년 10월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2026년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임.

둘째, 2026년 4월부터는 장비 등록 시 해당 장비에 포함된 GPU 현황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4월 이전에 구축된 장비의 경우 GPU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재원이 투입된 GPU 자원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GPU는 AI 서비스 개발 및 다양한 R&D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확보한 GPU는 공공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보유 및 활용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GPU 구축 현황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자원의 중복 구축 또는 구축 후 미활용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어려우며, 향후 GPU 관련 예산 편성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국내 GPU 현황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그런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GPU 관련 사업은 GPU 구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에서 GPU를 활용하거나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GPU 구매를 포함하게 되는 사업도 다수 존재하며, 후자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이 GPU 확보가 아닌 만큼 구축된 GPU 자원의 현황이 별도로 집계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GPU 서버 등 고가의 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함)에 등록되어 있으나, 2026년 4월 이전까지는 GPU가 포함된 서버 단위로 등록이 이루어져 GPU 자체의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2026년 4월부터는 장비 등록 시 해당 장비에 포함된 GPU 현황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였음.[8)]

---

8)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별표 1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나. "연구시설"이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10.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제28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

다만 2026년 4월 이전에 구축된 GPU에 대하여는 여전히 현황 파악이 곤란한 상황으로, 정부는 2026년 4월 이전에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에도 GPU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ZEUS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GPU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지원하는 사업들 중 일부에서 공공분야 지분 축소 및 지원 내용 완화, 사업수행자(CSP) 자체 활용분 인정에 따른 과도한 이익 귀속 등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GPU지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은 민·관 출자를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여 첨단 AI반도체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

2025년 추진 과정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이 부재하여 두 차례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민간기업 선정에 실패한 이후 공공지분 감소(51% 이상→29%), 매수청구권 조항 삭제 및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 삭제 등 공모요건을 수정하여 2026년 5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음.

[2025년도 한국산업은행 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현황]

구분	추진일정
2025.1.22.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 발표
2025.1.23.~5.30.	1차 공고 (사업설명회: 1차 2.7., 2차 3.7.)
2025.6.2.~6.13.	2차 공고
2025.9.8.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안) 발표
2025.9.8.~10.21.	3차 공고 (사업설명회: 9.11.)
2026.3.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5.11.	실시협약 체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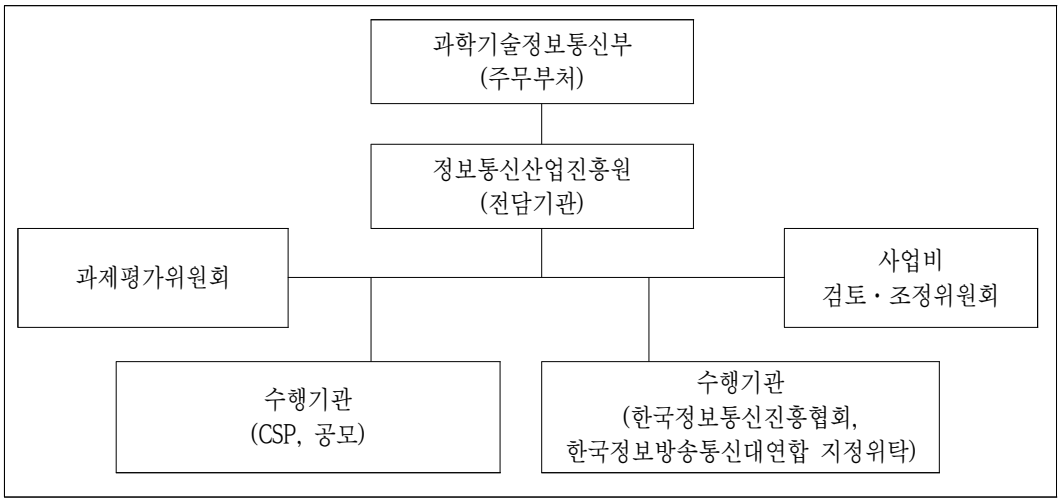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공공성 축소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정된 공고서에는 'AI컴퓨팅 서비스 경쟁력 및 요금'과 관련하여 대학·연구소, 중소·스타트업 등의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지원, 정부사업 연계 등 AI 정책 수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한 연구시설장비를 제27조에 따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또한 공모요건이 수정되면서 매수청구권이 삭제되었는데, 수정 공고의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공공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 여건, 민간 참여자 의견 등에 따라 논의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공공출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함.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GPU 서버 확충'**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예산 전액을 출연한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사업수행자(CSP: Cloud Service Provider)로 선정하고 사업수행자가 GPU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사업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PU 서버 확충 사업 추진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PU 서버 확충 사업 참여자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계획 수립, 재원 조달, 예산배분 등 사업 총괄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기획, 협약체결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 -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보고 등
수행기관 (CSP)	- GPU 자원 구축 - GPU 자원 활용 및 운영 지원
수행기관 (지정위탁)	- GPU 자원 배분・운영 - GPU 자원 사용 신청기관 평가, 회계정산, 활용현황 모니터링 - GPU 구축사업 대국민 홍보, 성과발표회 개최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축한 GPU 서버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사업수행자에게 부여(자체활용분)하여 GPU 서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GPU 서버는 'WBL 프로젝트'[9] 참가팀을 포함한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자체활용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도록 한 것은 공급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GPU 공급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경우에 따라 과도한 수익이 CSP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학·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CSP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10]

정부는 향후 GPU지원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 WBL(World Best LLM) 프로젝트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정예팀을 선발하고 대형언어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 그래픽 처리 장치 등 핵심 인프라와 인재 유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10) 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중에는 자체적으로 AI 개발을 병행하는 기업들도 있으므로 국비로 구축한 GPU 서버 중 유휴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관련 법령이나 협약 등을 위반하여 활용할 유인이 있음. ②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GPU 서버 대신 국비로 구축한 GPU 서버를 우선 활용하여, 자사 소유 GPU 서버의 물리적 감가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음. ③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GPU 서버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GPU 서버 운영·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추후 서버 운영·관리 위탁 계약 갱신 시점에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음.

(2) AI인재 양성

2025년 4월 25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의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①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중심으로 AI과목 중점과정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② AI와 반도체 등 전략기술 및 첨단·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급 혁신 인재양성을 강화하며, ③ AI분야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지원체계와 실무·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제시됨.

또한 2025년 11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에서는 ① 맞춤형 AI교육 확대로 초·중·고등학생 AI역량을 함양하고, ② 고등교육 역량 결집으로 다층적 AI인재를 강화하며, ③ 모두의 AI실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확대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추진방향]

비전	**모두의 역량으로 여는 AI강국, 인재로 도약하는 세계 3강**
목표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교육** **세계 3강을 견인하는 다층적 인재 양성**
추진과제	**맞춤형 AI 교육 확대로 초·중·고등학생 AI 역량 함양** ① 초·중등학교 AI 기본교육 확대 ② 학생 특성을 고려한 AI 교육 지원 ③ 초·중·고 AI 교육 기반 강화
	고등교육 역량 결집으로 다층적 AI 인재양성 강화 ① AI 혁신인재 양성 파이프라인 구축 ②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AI 융합인재 양성 지원 ③ 모든 학생의 AI 기초역량 함양 지원 ④ 지역 기반 AI 인재양성 거버넌스 구축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확대 ① 재직자 등 기업이 원하는 AI 실무역량 강화 지원 ② 전 국민 대상 양질의 AI교육 기회 확대 ③ 경제적 부담없는 AI교육·활용 기회 확대

자료: 교육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2025.11.10.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6년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는 AI혁신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AI핵심인재 확보’를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AI 역량’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인재 확보’라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2개 과제를 제시하였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AI핵심인재 확보 부분]

비전	**‘모든 국민을 위한 AI 역량’,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인재 확보’**
목표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기본역량을 보장하는 학습 경로를 구축하여 누구나 AI를 이해·활용·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둘째, 초·중·고 공교육 체제를 혁신하여 전 학년에 걸친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을 교과·수업·학교 운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고,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내용·방법을 정교화한다. 셋째, 대학·대학원을 중심으로 국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산업 연계경로를 고도화하여 고급 역량 인재의 성장 경로를 확장한다. 넷째, 글로벌인재 유치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병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인재가 국내에서 교류하고 성장하는 AI핵심인재 확충 생태계를 구현한다.
추진과제	① AI시대 국가교육 체계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②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③ 초중등 전학년에서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④ 초중등 AI 실습 교육 플랫폼 구축 ⑤ 평가 제도 및 입시 제도 혁신 ⑥ AI시대 교사 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⑦ 정보 교사 임용 확대 및 교원 전문성 강화 ⑧ AI영재교육 체계 재설계 ⑨ 대학 및 대학원 AI 인재 양성 ⑩ 산업 AX 역량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⑪ 최고 수준 AI 전문가 유지 및 유치 ⑫ AI 인재 경력 단절 해소

자료:「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첫째, 초·중·고 AI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집행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특별교부금 방식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교육 재원 배분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11]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총 5,551억 2,200만원(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3,323억 1,900만원·방과후교육 활성화 2,108억 300만원·교육혁신 우수 교육청 재정지원 120억원)의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음.

[2025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교부액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332,319
방과후교육 활성화	210,803
교육혁신 우수 교육청 재정지원	12,000
합계	555,122

자료: 교육부

현재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12][13]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12) 정부는 2029년까지 운영하여 3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일부 이견이 있음.

AI·디지털 교육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지역 간 디지털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공통적인 인프라와 운영 기준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축소되고 특별교부금이 확대되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AI·디지털교육 혁신은 특별한 재정수요라기 보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금의 성격과 일부 거리가 있으며, 3년간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연장 여부 결정 시 특별교부금 방식의 적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AI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배분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일부 AI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되어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비수도권지역에서도 균형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AI 인재양성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수도권에서도 AI 교육과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5년 진행된 일부 AI 인재양성 사업은 전체 교육 참여인원 중에서 수도권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70%가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운영 양상이 나타났음.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산학연계멘토링및인턴십'** 사업은 국내 ICT·SW 분야 대학생들의 실무(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계 전문가와의 멘토링 프로젝트 및 국내·외 기업 인턴십을 지원하는 것이나 전체 참여인원 2,262명 중 약 74.2%인 1,678명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참여하였음.

13) 참고로 교부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임.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및 과도한 현금성 지출 개선 등을 사유로 폐지 후 개편을 검토 중이며, 교육부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미래교육과 돌봄 등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참여인원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예시)]

(단위: 명,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참여인원 (A)	비율 (A/(A+B))	참여인원 (B)	비율 (B/(A+B))	참여인원 (A+B)	비율
과기부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인공지능연구 거점프로젝트	121	83.4	24	16.6	145	100.0
과기부	대학디지털 교육역량강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인력양성	231	100.0	-	-	231	100.0
		ICT산학연계 멘토링및인턴십	1,678	74.2	584	25.8	2,262	100.0
과기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채용연계형SW 전문인재양성	450	71.5	179	28.5	629	100.0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1,712	70.0	732	30.0	2,444	100.0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560	72.7	210	27.3	770	100.0
		AI·디지털기반 미디어융합인재	291	73.5	105	26.5	396	100.0
과기부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877	73.4	318	26.6	1,195	100.0
과기부	최고급AI해외 인재유치지원	최고급AI해외 인재유치지원	220	91.3	21	8.7	241	100.0
과기부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교육훈련 (오픈랜인력양성 프로그램)	11	100.0	-	-	11	100.0
과기부	디지털선도 기술핵심 인재양성	교육훈련 (ICT명품인재양성)	476	100.0	-	-	476	100.0
		교육훈련 (학석사연계ICT 핵심인재양성)	737	71.4	295	28.6	1,032	100.0
		교육훈련 (산학연계AI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98	100.0	-	-	98	100.0
산업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기업성장성강화	1,634	100.0	-	-	1,634	100.0
중기부	창업성공 패키지	스타트업 AI기술 인력양성	142	71.0	58	29.0	200	100.0
방사청	전문인력 양성사업	방위사업계약학과 지원사업	58	100.0	-	-	58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수도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비해 연구·교육 기반 시설(인프라) 등 보유자원이 부족하여 공모 등의 형태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대학과 연구기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인공지능 선도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셋째, 일부 AI 인재양성 사업의 경우 과제선정이 지연되거나 중도탈락 인원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발생하는 등 계획대로 인재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AI 인재양성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사업은 WBL 프로젝트 참가팀으로 선정되는 5개 기관이 필요로 하는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WBL 선정팀 5개 중 1팀만 연계를 희망함에 따라 나머지 4개 과제는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협약체결이 예정보다 지연되었음.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사업 과제별 협약체결 현황]

과제명	협약 체결일	2025년 과제 수행 기간	비고
정예 연구진 결집을 통한 초거대 LLM/VLM 고도화 및 아세안 언어 확장 기술 개발	'25.8.27.	5개월	WBL 참가팀 연계 과제
AI 신약개발을 위한 글로벌 AI 인재 유치	'25.9.29.	4개월	
멀티 에이전트형 AI 기반 기업정보 및 지식보호 통합 플랫폼	'25.9.29.	4개월	
산업 제조 설비의 자율 제어 프레임워크를 위한 Physics-Aware Physical AI	'25.9.29.	4개월	
실세계 조작과 보행을 위한 멀티모달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AI 모델 개발	'25.9.29.	4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AI 컨소시엄)'**,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AI·D 30+집중캠프)'**,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AI·D 묶음강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업들은 참여 후 중도탈락률이 15% 이상으로 나타났음.

중도탈락률이 높을 경우 훈련생 모집·강사 초빙·시설 및 장비 구축 등에 투입된 재정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훈련을 위해 투입된 재원이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수행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추진된 AI 인재양성 사업 중 중도탈락률이 15% 이상인 사업]

(단위: 명,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참여인원 (A)	중도탈락 인원(B)	수료인원	중도 탈락률 (B/A)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AI 컨소시엄) ※ 일반학습자 공유 교육과정	1,580	254	1,326	16.1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AI·D 30+집중캠프)	7,487	2,259	5,228	30.2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AI·D 묶음강좌)	8,461	5,372	3,089	63.5
과기부	디지털전문·융합 인재양성	이노베이션아카데미	75	31	44	41.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AI 인재양성 사업이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참여 후 중도에 탈락하는 인원의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AI 분야 정책펀드

첫째, 2025년 AI분야를 지원하는 펀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자펀드 결성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는데, 정부는 관련 정책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AI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AI 혁신펀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초 계획액 450억원을 출자하여 조성 예정이었던 자펀드 3개 중 2개는 2025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결성되었으나 나머지 1개는 계획과 달리 2026년 6월 현재까지 결성되지 못하고 있음.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혁신펀드 펀드 결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 사업명	자펀드 투자분야(대상)	2025년 펀드결성액			펀드 조성 공고일	펀드 결성일	펀드 존속 기한
			총	정부	민간			
과기부	AI 혁신 펀드 (정진)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	57,000	15,000	42,000	'25.2.26.	'25.11.20.	'33.12.14.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	48,500	15,000	33,500	'25.2.26.	'25.12.16.	'33.12.17.
		SaaS 제공 또는 SaaS로 전환 중인 중소기업 혹은 인공지능(AI) 사업 관련 중소기업	**결성 예정**	**15,000**	**결성 예정**	**'25.12.8.**	**결성 예정**	**결성 예정**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	40,000	20,000	20,000	'25.5.30.	'25.12.26.	'34.1.11.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	33,000	15,000	18,000	'25.5.30.	'26.2.27.	'34.3.3.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	56,300	20,000	36,300	'25.5.30.	'26.2.25.	'34.3.2.
과기부	AI혁신 펀드 (일반)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	56,500	25,000	31,500	'25.7.14.	'25.12.18.	'33.12.23.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	87,000	25,000	62,000	'25.7.14.	'26.3.26.	'34.4.1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혁신성장펀드를 운영하고 AI 산업을 지원하였는데, 2025년 3월 31일에 세 개 자펀드에 대한 펀드조성을 공고하였으나, 2025년 12월 30일에서야 펀드가 결성되었음.

[2025년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 사업명	자펀드 투자분야(대상)	2025년 펀드결성액			펀드 조성 공고일	펀드 결성일	펀드 존속 기한
			총	정부	민간			
금융위	산업은행 출자(혁신 성장펀드)	1. 혁신성장공동기준 영위 중소중견기업 2. 혁신성장공동기준 중 AI기반 산업 관련 분야 영위 중소·중견기업 등	189,000	18,000	171,000	’25.3.31.	’25.12.30.	’34.1.7.
		1. 혁신성장공동기준 영위 중소중견기업 2. 혁신성장공동기준 중 AI기반 산업 관련 분야 영위 중소·중견기업 등	145,000	18,000	127,000	’25.3.31.	’25.12.30.	’34.1.6.
		혁신성장공동기준 영위 중소·중견기업 등	320,000	24,500	295,500	’25.3.31.	’25.12.30.	’34.1.12.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I 산업을 지원하는 펀드의 결성이 지연될 경우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결성 지연이 반복되면 정책펀드에 대한 시장신뢰가 저하되어 향후 민간 출자자의 참여 의지가 악화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AI 산업을 지원하는 펀드의 경우 가급적 계획대로 자펀드가 결성되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과거 AI분야에 대한 투자 자금 모집 실적이 검증된 운용사를 선정하거나, 기한 내 결성한 운용사에 대해 후속 출자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결성이 지연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감점 또는 선정제한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AI분야 정책펀드는 민간 출자금보다 정부 출자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정책펀드의 목적을 고려해 AI 산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사업의 경우 AI분야 투자를 위해 스마트농업펀드 및 청년기업성장 펀드 등 총 세 건의 자펀드가 결성되었음.

펀드결성액 중 정부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스마트농업펀드'가 59.7%, '청년기업성장펀드'가 63.1%, '미래혁신성장펀드'가 57.0%로 나타났는데, 2024년 기준 모태펀드 결성액 중 23.0%가 정책금융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14)]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사업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 사업명	자펀드 투자분야(대상)	펀드결성액		
			총	정부	민간
농식품부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스마트농업펀드]** * ICT 및 각종 첨단 기술과 농업 생산을 비롯한 농업 밸류체인 전반을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 분야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 농업용 로봇 무인화, 빅데이터, AI 데이터 솔루션, 이력관리 유통 플랫폼)	20,100 (100.0)	12,000 (59.7)	8,100 (40.3)
		[청년기업성장펀드] * 농식품 제조 및 플랫폼 개발 분야 등을 비롯한 농식품 전후방 산업	50,100 (100.0)	31,600 (63.1)	18,500 (36.9)
		[미래혁신성장펀드(푸드테크+그린바이오)] *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인 푸드테크 분야, AI 기반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분야	20,000 (100.0)	11,400 (57.0)	8,600 (43.0)

주) 2025년 예산은 제2회 추경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년 연도별 모태펀드 결성 출자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책금융	금액	25,947	34,045	31,951	21,770	24,226
	비중	26.0	19.1	18.1	16.7	23.0
민간부문	금액	73,912	144,436	144,450	108,558	81,324
	비중	74.0	80.9	81.9	83.3	77.0
합계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4)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정부 출자금 비중은 2024년 55.5%, 2025년 35.4%로 감소하였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로 투자 생태계 조성이 촉진되고 있다는 입장임.

정부가 모태펀드에 예산을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운용사를 선정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뒤 자펀드를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정부 재정이 마중물로 기능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나,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투자되는 AI분야 자펀드의 경우 민간 투자를 충분히 유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향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펀드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펀드를 통한 AI 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정부 민간 AI 구독료 집행 관련 문제점

첫째, 2025년 중 다수의 부처에서 내부 업무용으로 상용AI 서비스 구독료를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 기준이 미비하여 부처별로 이를 일반수용비 또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집행하는 등 집행비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관련 지침 제·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정부는 내부직원의 업무를 위해 AI 서비스 구독료를 집행하였는데, 일부 부처는 이를 소모성 물품의 구입 등에 사용되는 비목인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함.

[2025년도 AI 구독료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사례]

(단위: 천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비목	이용 서비스	집행명	사용대상	사용 기간	집행일	집행액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지원 (공정거래정책알리기)	일반수용비 (210-01)	챗GPT	콘텐츠 제작용 AI프로그램 구독료 (챗GPT)	내부직원 업무용	'25.9.8 ~'26.9.7.	'25.9.25.	935
감사원	감사연구활동경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PRO	AI 구독료 지급 요청	내부직원 업무용	'25.8.1 ~8.31.	'25.8.22.	309
관세청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Claude	직원 AI 활용 지원을 위한 'chat GPT' 계정 배정 3차	내부직원 업무용	'25. 7.~9.	'25.8.6.	6,892
국가 데이터처	국가통계정책추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10.14 ~'26.10.14.	'25.10.27.	875

(단위: 천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비목	이용 서비스	집행명	사용대상	사용 기간	집행일	집행액
대법원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사법 정보화 업무지원용 상용AI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7.7. ~'26.7.6.	'25.7.25.	4,596
병무청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6.11. ~7.10.	'25.6.25.	1,150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업무용 프로그램 구독료 지급	내부직원 업무용	'25.1.8. ~2.7.	'25.1.8.	33
보훈부	보훈정책홍보	일반수용비 (210-01)	챗gpt AI 어시스턴트	보훈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간이용권 대금 지급 요청	내부직원 업무용	'26. 1.~12.	'25.11.26.	2,432
중기부	벤처정책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PLUS	인공지능 챗봇 사용료	내부직원 업무용	'25.7.16 ~'26.7.15.	'25.7.21.	478
지재처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생성형 AI 구독료 (CHAT GPT)	내부직원 업무용	'25.2.27 ~3.27.	'25.3.10.	145
동포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생성형AI(chatGPT) 월 구독료	내부직원 업무용	'25.5.9. ~6.8.	'25.5.22.	643
개보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7.9. ~12.17.	'25.7.10.	738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1.24. ~2.23.	'25.2.11.	32
행복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12.1. ~'26.11.30.	'25.12.30.	989
공수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Chat GPT 구독료 지급	내부직원 업무용	'25.8.24 ~9.24.	'25.9.10.	850
헌재	본부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지급	내부직원 업무용	'25.7.18. ~8.18.	'25.7.18.	31
권익위	청렴권익국제교류	일반수용비 (210-01)	DeepL	국제교류담당관실 업무지원 번역 누리집 연간 이용권 결제	내부직원 업무용	'25.5.27 ~'26.5.27.	'25.6.7.	482

(단위: 천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비목	이용 서비스	집행명	사용대상	사용 기간	집행일	집행액
유산청	본청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9.1 ~9.30.	'25.9.25.	31
새만금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9.23 ~10.22.	'25.10.14.	662

주) 각 부처가 제출한 집행 현황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실제 AI 구독료 집행액은 더 큼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등의 경우 내부직원의 업무를 위한 AI 구독료를 일반수용비 외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자산취득비(430-01) 및 기타운영비(210-16) 등으로 집행하였음.

[2025년도 AI 구독료를 일반수용비 외 비목으로 집행한 사례]

(단위: 천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비목	이용 서비스	집행명	사용대상	사용 기간	집행일	집행액
식약처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8.1. ~8.31.	'25.8.27.	1,129
국방부	정보보호 (2131-307)	자산취득비 (430-01)	ChatGPT Business	ChatGPT 라이선스 구매	내부직원 업무용	'25.12.2. ~ '26.12.1.	'25.12.5.	1,960
행안부	본부기본경비 차관보실(총액)	기타운영비 (210-16)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11.23. ~12.22.	'25.11.23.	29
		기타운영비 (210-16)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12.23. ~'26.1.22.	'25.12.23.	29

주) 각 부처가 제출한 집행 현황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실제 AI 구독료 집행액은 더 큼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I 구독료 집행에 비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부처 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처 내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소방청・교육부・인사혁신처・통일부・금융위원회 등의 부처는 유사・동일한 AI 구독료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기도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집행하기도 하였음.

[2025년도 AI 구독료를 일반수용비(210-01) 또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집행한 사례]

(단위: 천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비목	이용 서비스	집행명	사용대상	사용 기간	집행일	집행액
문체부	문화행정공동 활용체계구축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업무 활용 디지털서비스 구독료 지급	내부직원 업무용 (부서용)	'25.3. ~'26.2	'25.3.11.	4,356
	기관운영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업무 활용 디지털서비스 구독 비용 지출	내부직원 업무용 (기관 간부용)	'25.11. ~'26.10.	'25.10.29.	18,414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5.19 ~'26.5.18.	'25.5.20	85
	국민문화활동지원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 3.~9.	'25.12.5.	272
법무부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12.25 ~26.1.24.	'25.12.25.	33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11.25 ~12.24.	'25.11.25.	33
	기관운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Perplexity, Claude	AI 플랫폼 구독 관련 정보통신망 요금	내부직원 업무용	'25.10.15 ~11.1.	'25.12.4.	314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Perplexity, Claude	AI 플랫폼 구독 관련 정보통신망 요금	내부직원 업무용	'25.11.2 ~11.30.	'25.12.4.	258
소방청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1.19 ~2.19.	'25.2.10.	30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분석·개발)	'25.1.19 ~2.19.	'25.2.10.	298
	119종합상황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AI플랫폼 사용료 납부	내부직원 업무용	'25.8.12 ~8.31.	'25.8.25.	62

(단위: 천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비목	이용 서비스	집행명	사용대상	사용 기간	집행일	집행액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Perplexity	AI플랫폼 사용료 납부	내부직원 업무용	'25.8.12 ~8.31.	'25.8.25.	56
교육부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4531-302)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7.7. ~26.7.7.	'25.7.7.	843
	기금운영비 (사학진흥기금)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6.23. ~7.23.	'25.7.23.	278
			GAMMA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6.23. ~7.23.	'25.7.23.	14
인혁처	행정효율성제고 및역량개발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등	생성형 AI 활용 자기주도학습 소요비용	내부직원 업무 및 학습용	'25.4. ~12.	'25.12.23. '25.12.29.	490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인공지능 유료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이용	내부직원 업무용 (6개 계정)	'25.12. ~'26.3. (4개월)	'25.12.3.	1,582
통일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전산소모품 구입	내부직원 업무용	'25.4. ~'26.3.	'25.4.1.	3,475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AI활용 통일교육 기반구축 사용권 구매	내부직원 업무용	'25.2 ~'26.1.	'25.2.25.	8,871
금융위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일반수용비 (210-01)	ChatGPT	국제업무 프로그램 사용료	내부직원 업무용	'25.11.21. ~'26.11.21.	'25.12.10.	1,985
			Otter.ai	국제회의용 녹취프로그램 사용료	내부직원 업무용	'25.1.2. ~12.31.	매월 집행	590
	본부 기본경비 (비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ChatGPT	챗GPT 서비스 구독	내부직원 업무용	'25.9.19 ~11.19.	'25.10.27.	590

주) 각 부처가 제출한 집행 현황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실제 AI 구독료 집행액은 더 큼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유사·동일한 AI 구독료를 각 부처에서 자율적인 판단하에 상이한 비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이 통일화되거나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특히「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15]·「2025년도 예산총칙」 제10조[16] 및「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향후 AI 구독료 납부 및 추가 구독 등을 위해 각 부처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타 사업 예산이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자체 이용권의 범위]

1. 2025년도 예산총칙에서 정한 아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소관 내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나' 항목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다' '라' '사' '아' '자'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나.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생략)

자료:「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따라서 정부는 체계적인 업무용 AI 구독료 편성·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침에 관련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2025년 예산 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둘째, 정부는 보안 등을 위해 업무용으로 외부 상용 AI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지침과 부처별 개별지침 등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AI를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2023년 6월 「챗GPT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2025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음.

가이드북은 내부망 전용 AI시스템·내부업무용 AI시스템의 외부망 연계 및 대민서비스용 AI시스템의 내부망 연계 등 구축 유형별 보안대책 중점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기관에서 상용 AI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검토가 필요한 보안위협과 보안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각 부처도 해당 지침을 준용·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개요]

제1장 AI시스템 개요 및 보안위협	
	제1절 AI시스템 개요
	제2절 AI시스템 보안위협·사례
	제3절 수명주기별 보안위협
제2장 AI시스템 보안대책	
	제1절 보안대책
	제2절 구축 유형별 보안대책 중점사항 1. 내부망 전용 AI시스템 2. 내부업무용 AI시스템의 외부망 연계 3. 대민서비스용 AI시스템의 내부망 연계
	제3절 상용 AI서비스 활용
제3장 에이전틱·피지컬 AI시스템 보안대책	
	제1절 에이전틱 AI보안대책
	제2절 피지컬 AI보안대책
제4장 결론	

자료: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다만,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은 권고사항으로 각 기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챗GPT 등 외부생성형 AI서비스를 단순 구독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관 차원에서 민감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부처는 가이드북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외부 상용AI의 이용에 대한 자체 지침이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부재로 인해 부처 차원의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위협 예방·대응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17]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소관사항이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18] 및 제8조[19]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이에 따라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국정원에서 발간한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을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배포하였고 국정원에서 세부 가이드가 나오면 자체 지침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외부 상용AI를 업무에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사항을 규정한 일반적인 지침과 각 부처별 상황에 맞는 개별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7)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조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이하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이하 "사이버보안 업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2.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3.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19)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5) 기타 검토사항

첫째,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AI사업은 사업비를 출연받은 전담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이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100% 선금 지급하였는데, 폐업이나 횡령 등 수행기관의 경영상 위험 및 결과물 품질 저하에 대한 관리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정부는 향후 AI 사업 추진 시 선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은 전담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에 따라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하게 되며, 동 규정들은 선금 지급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20]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은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 예규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21]

---

2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④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21)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이상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각 전담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금 지급 한도가 70% 이내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나, 기획재정부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른 선금지급한도를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에 따라 각 전담기관이 선금을 100% 지급할 수 있게 되었음.[22)]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담기관은 과제 수행기관이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AI사업 과제비를 아래와 같이 100% 선금지급하였음.

[2025년 AI사업 중 과제 수행비용을 100% 선금으로 지급한 사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최종과제 수행기관 유형	과제 분류	비고
지역디지털 인재양성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	기업+기관 컨소시엄	본예산 +추경	기존 협약을 수정하여 예산 교부 (본예산: 분할교부 추경: 일괄교부)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WBL 프로젝트 데이터 지원	기업+기관 컨소시엄	추경	선금 전액 지급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	GPU임차	기업	추경	일부 계약에 대하여 선금 전액 지급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AI반도체 실증지원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AX실증지원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최적화설계지원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PINN 모델 제조 융합데이터 수집·실증	기업+기관 컨소시엄	추경	선금 전액 지급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기업+기관 컨소시엄	추경	선금 전액 지급
공공AX 프로젝트	-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중 선금지급 확대 관련 내용 발췌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5.12.31.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내수·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더라도,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를 100% 선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 수행기관의 폐업·횡령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환수하거나 사업을 정상화할 수단이 제한되며, 분할지급 방식에 비해 결과물의 품질을 담보할 수단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집행 필요성 외에 수행기관의 재정 위험 및 결과물 품질 저하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AI 사업 추진 시 과제비를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일부 AI관련 사업들에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타 사업 추진에 예산이 사용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 규모의 확대·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는 편성이나 집행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23)]

그런데 2025년 정부가 추진한 일부 AI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된 사례가 발견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사업 및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두 사업은 각각 설계에 필요한 IP활용을 지원하고 각 부처 소관업무에 AI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 확충’**,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 예산의 일부를 **‘APEC 2025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기업부스 조성 지원’** 및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 관련 법률 검토’** 등에 사용하였는데, 두 사업은 GPU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기업부스 조성이나 타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법률 검토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음.

---

2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임차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PU 임차 단가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계획대비 150% 이상의 임차 물량이 확보되었고, 이 과정에서 초과 확보된 물량의 일부가 **‘특화 AI FM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활용되었는데, GPU 임차지원 사업의 목적이 WBL프로젝트 참가팀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서에 특화 AI FM 프로젝트 사업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예산을 집행한 측면이 있음.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예산을 2026년도 신규사업인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 사업의 과제 기획 지원에 활용하였는데,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 사업은 부처 소관 분야의 AX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다부처사업의 일환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음.[24)]

향후 정부는 AI사업 추진 시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타 사업 추진·기획, 행사·공모전 등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업통상부의 비R&D AI 기반구축 사업들의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획평가관리비 편성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AI분야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적정 수준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제1항2호 등에 근거하여 비R&D사업으로 산업기술 연구장비나 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을 촉진하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음.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선정·평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통상 사업비의 3%를 기획평가관리비로 책정하고 있으나, AI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의 비율이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예를 들어 AI분야를 지원하는 사업들의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의 비율은 4.7%~5.3%로 나타났으나, 타 분야는 일반적으로 1.5%~3.7% 수준에서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나타났음.

---

24)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기획 과정에서 국산 NPU를 최대한 활용하는 실증사업으로 논의되었고, 이를 위해 국산 NPU의 활용 범위, 우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국산 NPU 실증·확산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에서 국산 NPU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연관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임.

[2025년 산업통상부 비R&D 기반구축 사업 사업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2025년 사업비 및 기평비 집행		
			사업비(A)	기평비(B)	B/A
일반	**No-Code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AI**	**2,138**	**112**	**5.2**
일반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구축**	**AI**	**1,910**	**90**	**4.7**
일반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AI**	**2,128**	**112**	**5.3**
지특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	**5,626**	**294**	**5.2**
일반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 구축	뿌리산업	1,973	-	-
일반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1,258	42	3.3
일반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기업성장성강화 -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로봇산업	2,920	84	2.9
일반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기업성장성강화 -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실증)	로봇산업	1,128	32	2.8
일반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농기계	2,157	72	3.3
일반	디지털융합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정밀기계	2,904	96	3.3
일반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바이오산업기반구축)	바이오	15,158	344	2.3
일반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	백신	4,116	61	1.5
일반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백신	3,667	60	1.6
일반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	산업환경	2,872	100	3.5
일반	수평적 EV(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	자동차	1,315	36	2.7
일반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자동차	1,776	50	2.8
일반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자동차	776	24	3.1
일반	서비스 맞춤 모빌리티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자동차	2,040	60	2.9
일반	특장차수소파워팩기술지원기반구축	자동차	2,134	66	3.1
일반	xEV보호차체얼라이언스기업지원플랫폼구축	자동차	3,492	108	3.1
일반	바이오트윈기반미래차부품고도화기반구축	자동차	1,067	33	3.1
일반	모빌리티실제환경모사전자파장애평가시스템구축	자동차	2,522	78	3.1
일반	수출주도미래차산업혁신성장기술지원	자동차	6,000	180	3.0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2025년 사업비 및 기평비 집행		
			사업비(A)	기평비(B)	B/A
일반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자동차	2,480	80	3.2
일반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자동차부품 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 구축	자동차	3,104	96	3.1
일반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자동차	1,552	48	3.1
일반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자동차	1,940	60	3.1
일반	미래차 전용플랫폼 지원 XR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자동차	2,425	75	3.1
일반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생산 기반구축	자동차	2,775	80	2.9
일반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자동차	291	9	3.1
일반	모빌리티 인증부품 산업육성 기반조성	자동차	1,940	60	3.1
일반	미래차 첨단 ECU 생태계 활성화	자동차	1,940	60	3.1
일반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자동차	2,910	90	3.1
일반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자동차	1,455	45	3.1
일반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자동차	2,910	90	3.1
일반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평가 플랫폼 구축	자동차	3,055	95	3.1
일반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	자동차	4,850	150	3.1
일반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조성	자동차	2,425	75	3.1
일반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자동차	1,610	50	3.1
일반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조선	968	32	3.3
일반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기반조성	조선	1,646	54	3.3
일반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조선	4,588	152	3.3
일반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DX)지원사업	조선	2,186	77	3.5
일반	조선해양기자재디지털협업플랫폼구축	조선	1,258	42	3.3
일반	친환경선박 수리 · 개조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	조선	2,730	92	3.4
지특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	4,334	226	5.2
일반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제조실증 기반구축	전기전자	1,160	40	3.4
일반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반도체	3,127	113	3.6
일반	지능형반도체 개발 실증지원	반도체	2,617	95	3.6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2025년 사업비 및 기평비 집행		
			사업비(A)	기평비(B)	B/A
일반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반도체	2,316	84	3.6
일반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반도체	1,900	100	5.3
일반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지원	반도체	2,895	105	3.6
일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배터리	1,600	50	3.1
일반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	배터리	3,375	125	3.7
일반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배터리	6,200	200	3.2
일반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배터리	1,853	67	3.6
일반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배터리	3,100	100	3.2
일반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공정고도화플랫폼구축	배터리	2,316	84	3.6
일반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사업	탄소섬유	5,115	186	3.6
일반	나노소재 ·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바이오	3,281	119	3.6
일반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반도체	9,300	210	2.3
일반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구축	반도체	2,400	-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별로 편성하여 관리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25] AI분야 기반구축 사업의 적정 수준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5) 산업통상부는 또한 사업의 특성과 운영 소요를 고려하여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해왔고, 이에 따라 2025년 일부 AI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타 분야 사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다만,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분야별 편차를 해소하고 기획평가관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을 일괄적으로 사업비의 3%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향후에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관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임.